조선왕조실록

숙재양성지편

김포문화원

文襄公 訥齋 梁誠之 선생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의 文集

김 포 문 화 원

文襄公 訥齋 梁誠之 先生은 太宗15年(1415) 9月 9日 誕生하여 成宗13年(1482) 6月 11日 壽68歲로 卒하다.

先生은 世宗~成宗年間의 15世紀 後半과 正祖年間의 18世紀 後半 兩時代에 걸쳐서 우리나라 社會政治思想에 큰 影響力을 끼친 大學者요, 또 思想家이며 經綸家이고 實學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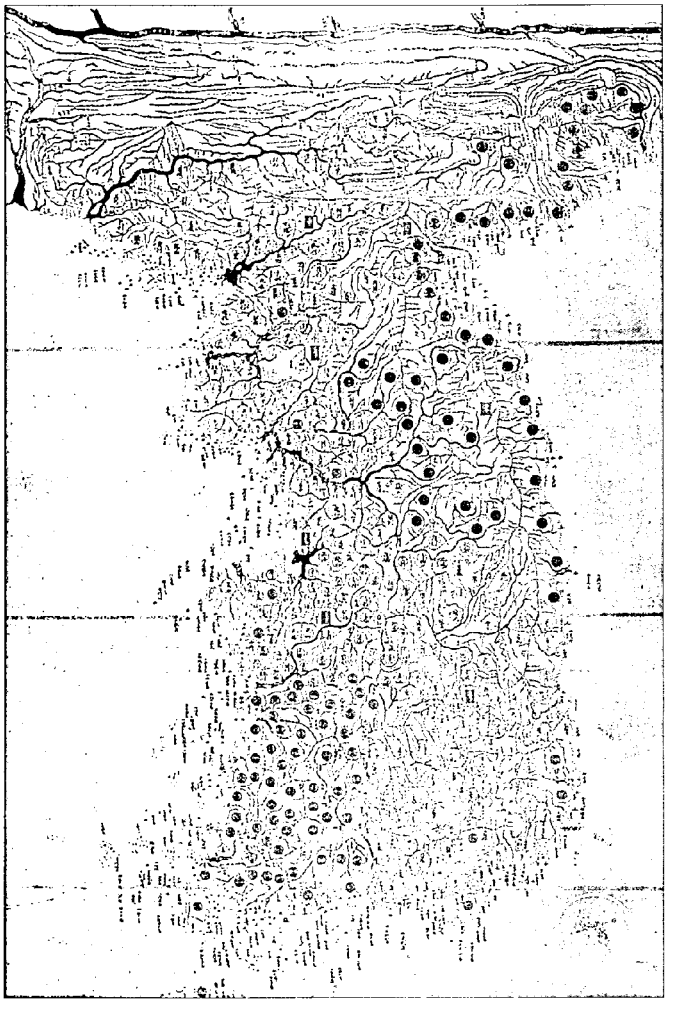
朝鮮王朝가 政治, 經濟, 文化的으로 安定과 隆盛의 絕頂을 맞이하였던 15世紀 後半期의 6代 王朝(世宗~成宗)를 섬기면서 40餘年에 걸친 官職生活의 大部分을 館閣의 學者로서 國家의 文敎事業에 큰 功績을 남겼으며, 國政 各分野 全般에 걸친 數十萬言의 上奏文을 獻策하여 뛰어난 經綸家로서의 面目을 發揮하여 王朝로부터 稱頌을 받았다.



文襄公 訥齋 梁誠之 影幀

世宗 23年(1441) 俱中生員·進士兩試及第하고, 同年에 連捷文科及第하여 集賢殿學士를 시작으로 成宗朝까지 6朝를 섬기시면서 先生은 世祖元年 原從功臣 2等, 成宗3年에 佐理功臣 3等에 綠勳되었다. 그리고 主要著書로서는 高麗史·東國輿地勝覽·皇極治平圖·八道圖 외 60余種이 있고, 세조10年에 求賢試에 급제, 世祖11年에 拔英試 2等, 成宗12年에 文臣廷試에 장원급제 하고, 工曹判書 2회 大司憲 2회 知中樞府事 등을 지내고 純誠明亮 佐理功臣 崇政大夫行 吏曹判書兼 判義禁府事 知經筵事 知春秋館事 成均館事 判書雲觀事 訓鍊觀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奉朝賀 封南原君 諡 文襄公이다.

朝鮮八道地圖



양성지 선생이 만든 동국지도의
모사본으로 추정되는 지도

• 동국지도는 문양공 눌재 양성지 선생과 정척선생이 왕명에 의하여 세조9년(1463)에 실측하여 9년에 걸쳐 만든 오방색(五方色)인 청·백·적·흑·황색으로 아름답게 만든 색채 본 지도이다.

• 동국지도는 지리적인 전문성과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국가 만세의 보배"가 되게 하라는 세조의 당부와 기대 등을 고려해 볼 때 동국통감 편찬에 비견할 만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 동국지도의 모사본으로 추정되는 조선팔도지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는 북으로는 요하와 흑룡강을 굵은선으로 강조하여 만주까지 우리나라라고 표시하여 관심을 보여준 것은 선생이나 세조의 적극적인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대마도를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놓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암시하였으며,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선생은 민족주체사상가이며 실학자로서 우리나라를 만리지국(萬里之國)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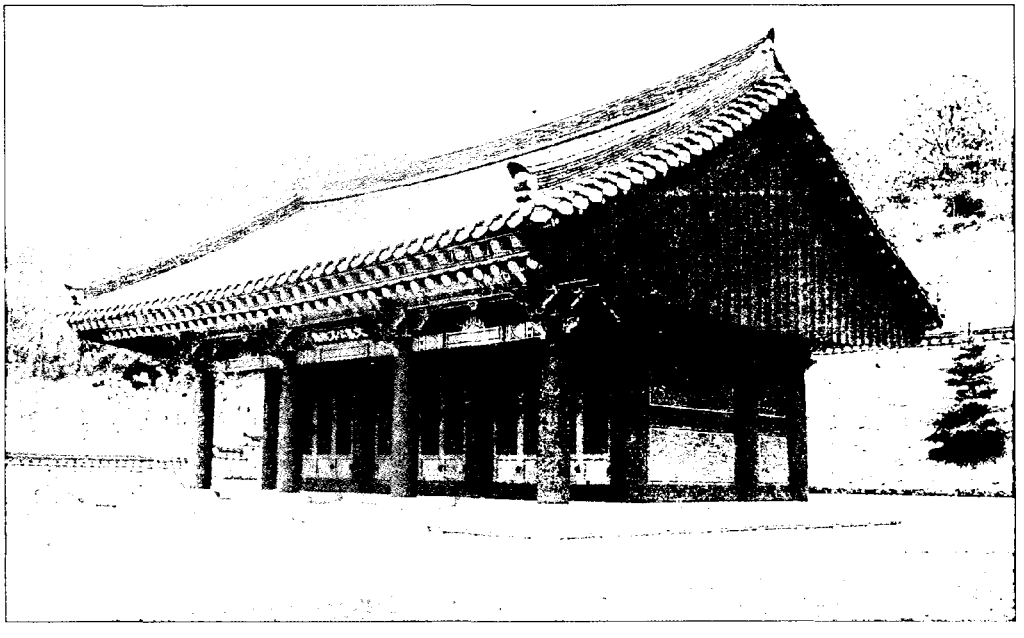
• 이밖에도 세조·성종 때에 선생이 새로 개척된 3군 지역을 그린 여연(閭延)·우예(虞芮)·무창(茂昌)의 삼읍도(三邑圖), 국경지역의 방어시설을 그린 연변성자도(沿邊成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제주 세읍도(濟州三邑圖)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한영우 교수, 사학사연구, 1981. 조선전기 사회사상연구, 1983. 우리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2001.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박사, 한국고지도발달사, 1999. 참조.



守安祠 : 文襄公 訥齋 梁誠之 先生 不祧廟 全景

• 所在地 : 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208番地



文襄公 不祧廟 : 梁誠之 先生 不遷位 및 影幀을 모신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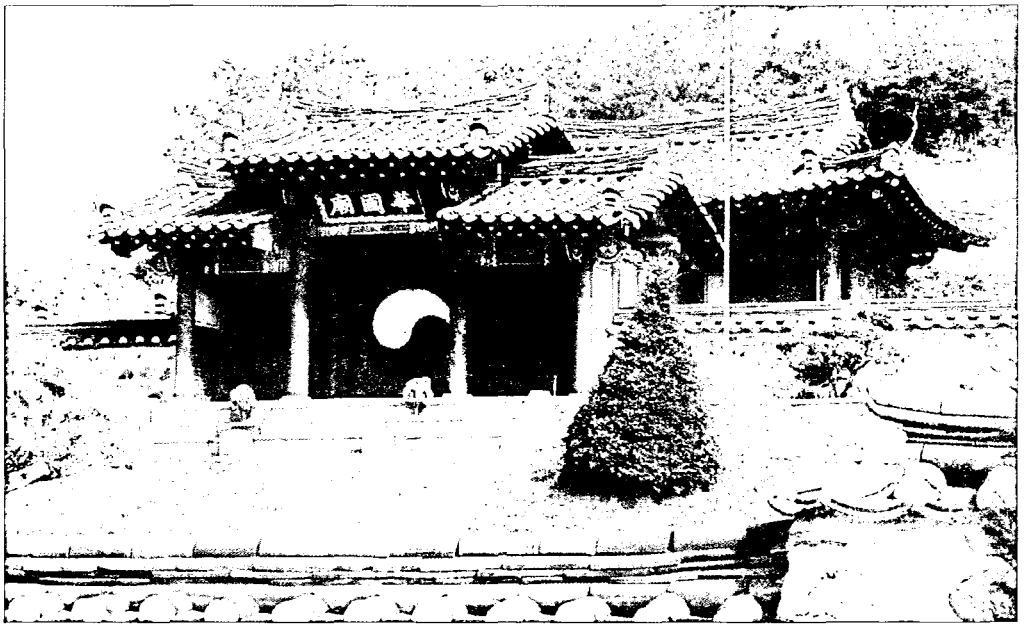
• 所在地 : 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208番地



大浦書院：文襄公 訥齋 梁誠之 先生을 추모하여 세운 서원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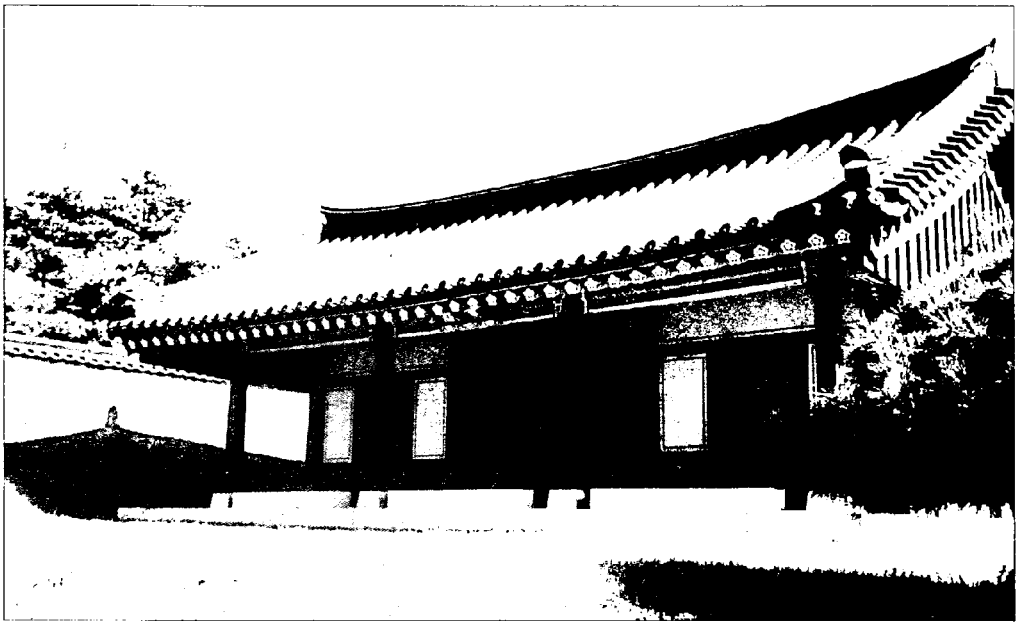
(金浦市 鄕土遺跡 第1號)

• 所在地：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산32-3



大浦書院 華國廟：內三門 · 本廟 · 訥齋 梁誠之 先生 位牌 모신 곳

• 所在地：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산32-3



大浦書院 東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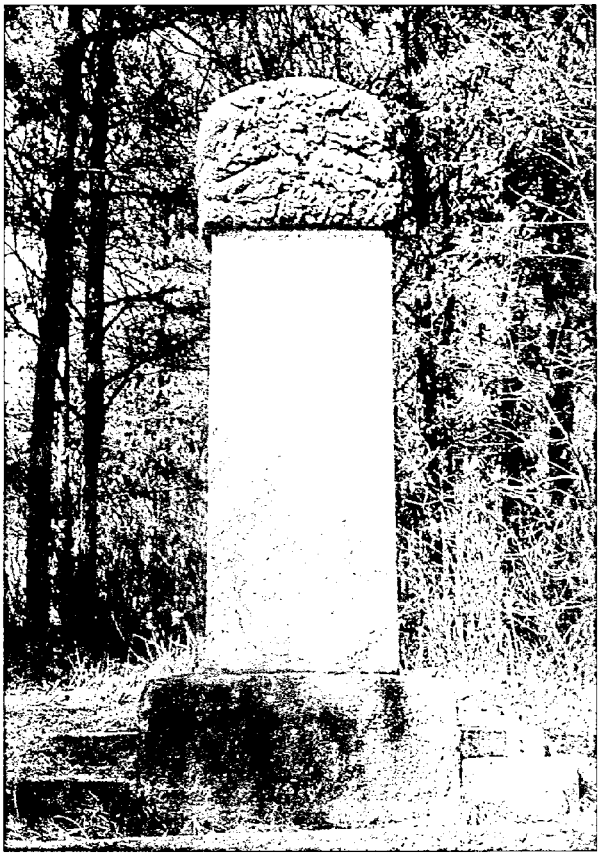
• 所在地 : 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산32-3



大浦書院 西齋

• 所在地 : 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산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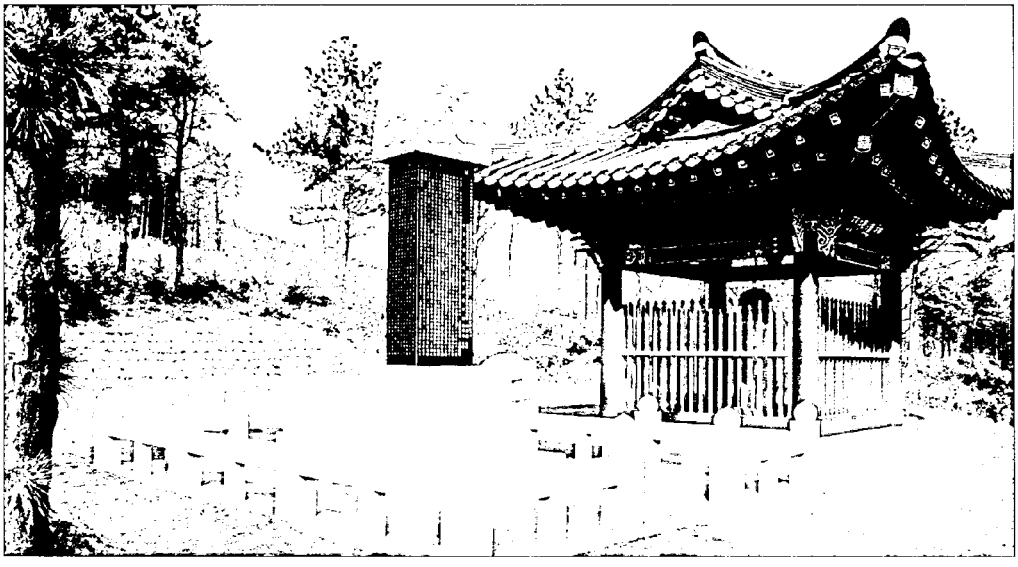
•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244-9
• 시대: 중종14년 (1519)
• 규모: 總高 256㎝ 碑高 150㎝ 幅 75㎝ 厚 24㎝
• 조각: 本碑는 이수(璃首) 비갓은 如意珠를 中心으로 두 마리 龍이 마주 올려다 보고 있으며 운문(雲紋)에 전체가 감싸여 있고 측면은 꼬리가 운문에 싸여 있어 碑가 寫實的으로 彫刻되어 있다.



文襄公 訥齋 梁誠之 先生 神道碑
문양공 눌재 양성지 선생 신도비

• 비문 내용 약기

- 공은 성종 13년 6월 11일 逝去하니 향년 68세이다. 임금께서 크게 슬퍼하여 2일 동안 정사를 철회하고 유사를 보내며 禮葬하였다.
- 공의 성은 梁이요. 휘는 誠之 자는 純夫 호는 訥齋이며, 태종 15년(1414) 9월 9일 탄생하여 6세 始讀하여 9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다. 세종 23년에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연달아 문과에 급제하여 40여년 간의 관직 생활은 대부분 관각의 學者로서 국가 문교사업에 큰 공적을 남겼고, 집현전에 들어간 16년, 전교를 맡은 것이 22년, 춘추관 겸직 34년, 홍문관과 예문관 근무가 16년, 과거 참시관 및 讀卷官 16회로 인재를 뽑았다.
- 공은 세조원년에 원종2등 공신, 성종3년에 좌리3등 공신에 녹훈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高麗史 · 東國與地勝覽 · 八道圖 等外 60余種의 著書와 數10萬言의 上奏文을 獻策하여 뛰어난 경륜가로서 면목을 발휘하였다.
- 공은 세조10년 求賢試에 급제, 세조11년 拔英試에 2등, 성종12년 文臣廷試에 장원급제하시고 工曹判書 2회, 大司憲 2회, 知中樞府事 등을 지냈다.
- 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行 吏曹判書兼 判義禁府事 知經筵事 知春秋館事 成均館事 判書雲觀事 訓練觀事 弘文觀大提學 藝文館大提學 奉朝賀 封南原君 諡文襄公이다.



神道碑를 세운 지 500餘年이 지나 碑가 磨耗되었으므로 碑閣을 세우고 그 옆에 神道碑를 다시 彫刻하여 세웠는 바 同碑는 많은 資料를 蒐集하여 徹底한 考證을 거쳐 烏石碑身에 이수〈璃首〉 교룡갓 리부〈璃趺〉 교룡좌대로 竪立하였으며, 本 神道碑의 碑文은 慕齋 金安國 先生이 撰하였음.

• 所在地 : 京畿道 金浦市 陽村面 大浦里 2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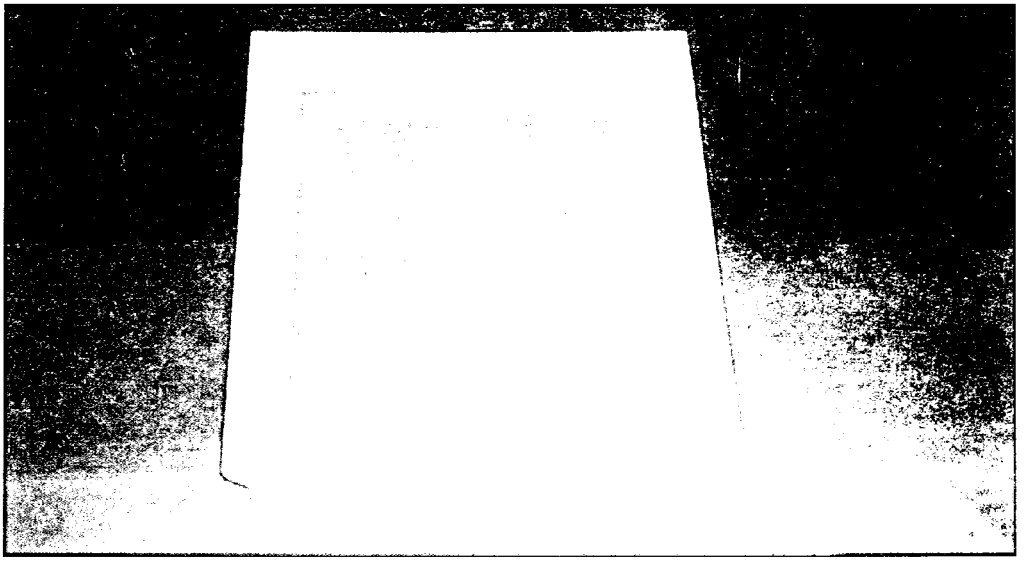


文襄公 梁誠之 先生 幽宅

• 公은 1482년 6월 11일 壽68세로 逝去하니 임금께서 슬퍼하여 조정 정사를 2일간 철회하고 有司에 命하여 禮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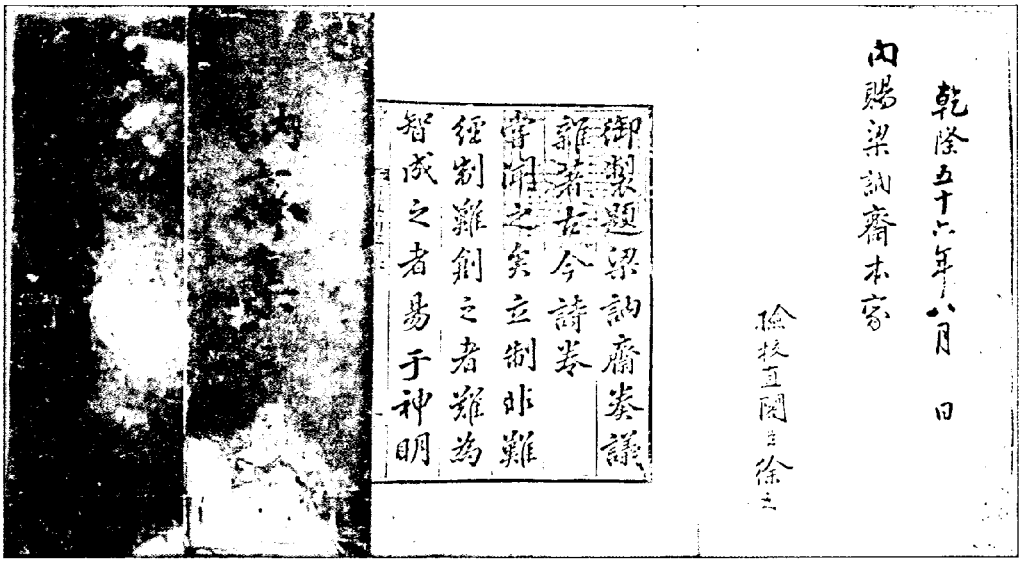
• 公은 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行 吏曹判書兼 判義禁府事 知經筵事 知春秋館事 成均館事 判書雲觀事 訓練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奉朝賀 封南原君 諡文襄公이고, 配位는 1504년 3월 6일 逝去하니 貞敬夫人 原州邊氏 (乾坐巽向).

• 소재지 :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32-2



文襄公 梁誠之 살던 곳 表石

• 이 부근이 조선조 홍문관 대제학 등을 지낸 양성지 선생이 살던 곳
서울특별시에서 정도 600년 사업이 일환으로 세운 표석임.
서울特別市 1996年 7月 指定 第156號
所在地: 서울特別市 中區 仁峴洞 1街 40番地



文襄公 訥齋 梁誠之 先生 御製題 訥齋集
正祖 15年(1791)에 王命으로 刊行된 訥齋集 原本
南原梁氏 文襄公 本家(宗家) 保存



눌재 양성지 선생 지리산 찬시비

詩文

지리산 (智異山)

智異蒼蒼倚半空	지리산은 울창하게 반공 위에 기대이고
千巖萬壑灑飛淙	천개쯤 되는 바위 만개나 될 골짜기 상쾌한 물소리에 물보라가 날으네
洞中靑鶴應斯我	마을 속 청학동은 아마 나를 비웃으리라
胡不來聞岳寺鍾	왜 악사(岳寺)의 종소리를 들으려 오지 않느냐고

문양공(文襄公)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 선생에 관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기(史記)

차 례

발간사 1

축 사 2

서 문 7

○ 국역 조선왕조실록 기사

《 단어 검색 - 양성지[전체] ... 347 》

□ 세종 9년 (1건) 30

□ 세종 18년 (1건) 36

□ 세종 19년 (1건) 43

□ 세종 25년 (1건) 49

□ 세종 26년 (1건) 51

□ 세종 28년 (1건) 54

□ 세종 29년 (1건) 55

□ 세종 30년 (2건) 59

□ 세종 31년 (1건) 70

□ 세종 32년 (2건) 72

□ 문종 즉위년 (5건) 86

□ 문종 1년 (1건) 101

□ 문종 2년 (1건) 102

□ 단종 즉위년 (1건) 105

□ 단종 1년 (3건) 112

□ 단종 2년 (6건) 116

□ 단종 3년 (1건) 122

□ 세조 1년 (4건) 123

□ 세조 2년 (11건) 143

□ 세조 3년 (9건) 164

□ 세조 4년 (2건) 182

□ 세조 5년 (4건) 184

□ 세조 6년 (6건) 186

□ 세조 7년 (4건) 195

□ 세조 8년 (4건) 198

□ 세조 9년 (13건) 201

□ 세조 10년 (21건) 213
□ 세조 11년 (20건) 251
□ 세조 12년 (31건) 270
□ 세조 13년 (32건) 298
□ 세조 14년 (11건) 339
□ 예종 즉위년 (4건) 358
□ 예종 1년 (20건) 363
□ 성종 즉위년 (1건) 412
□ 성종 1년 (6건) 414
□ 성종 2년 (5건) 428
□ 성종 3년 (6건) 433
□ 성종 4년 (2건) 437
□ 성종 6년 (2건) 438
□ 성종 7년 (2건) 450
□ 성종 8년 (26건) 452
□ 성종 9년 (17건) 484
□ 성종 10년 (7건) 532
□ 성종 12년 (22건) 544
□ 성종 13년 (7건) 569
□ 성종 14년 (1건) 581
□ 성종 18년 (1건) 583
□ 연산군 4년 (1건) 584
□ 연산군 11년 (1건) 585
□ 중종 13년 (1건) 586
□ 중종 30년 (1건) 588
□ 중종 32년 (1건) 595
□ 선조 35년 (1건) 602
□ 인조 15년 (1건) 603
□ 숙종 26년 (1건) 610
□ 정조 즉위년 (1건) 611
□ 정조 5년 (2건) 614
□ 정조 15년 (1건) 616
□ 정조 16년 (1건) 618
□ 정조 17년 (1건) 620
□ 정조 20년 (1건) 624
□ 정조 21년 (1건) 627

연 보 630

發刊辭



조선의 자주성을 높였던 위대한 학자

본원에서는 지난해에 『조선왕조실록 중봉 조헌편』에 이어 금년도에는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눌재 양성지 선생님은 우리 고장 김포시의 위상을 높여주신 뛰어난 인물이십니다. 눌재선생님께서는 조선초 세종~성종때까지 활약한 대학자로서 조선의 자주성을 높이고자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민족 특유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결정체이며, 우리나라의 방대한 역사자료로서 조선시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법률 등 다양하고 귀중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눌재 선생님의 업적은 너무나도 위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눌재선생님의 활동상과 업적들을 발췌하여 현대어로 풀이함으로써, 쉽게 접할수 없었던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지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포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본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들과 그분들의 업적을 발굴, 보전, 전승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책이 발간되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산파 역할을 아끼지 않으신 눌재사상연구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책이 눌재 선생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보다 널리 김포시민에게 애독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6. 9.

김포문화원장 조 한 승

축 사



눌재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양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번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록한 소중한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21만 김포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눌재 양성지 선생은 조선 태종 15년에서 성종 1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민족주체사상을 일깨워주신 분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식을 두루 갖추신 대학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학자이면서도 성리천학만이 아닌 실용을 중요시하며, 국력배양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약 40여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경학, 사학, 문학, 병학, 지리, 의학, 음악, 농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수양과 방대한 저술을 남긴 분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 선생 관련 자료집은 고결한 선생의 업적을 시대별, 유형별로 구성 정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로 풀이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양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김포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계신 위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더운 여름날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6. 9.

국회의원 유 정 복

축 사



역사에 길이 남을 눌재선생의 사상을 선양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우리 고장의 대표적 인물이시고 일찍이 조선왕조 500년간 제1의 경륜가로 꼽았던 눌재 양성지 선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사(正史)인 조선왕조실록에서의 기록을 찾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 篇』을 발간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무척 다행한 일이며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눌재 양성지 선생은 조선 초기 경제, 사회, 국방, 지리, 교육, 예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신 대학자이자 위대한 성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의 사상만이 조명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에서는 2004년 눌재사상에 대한 종합적 조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는 실록에서의 업적과 기록을 발췌 정리한 본서를 발간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눌재 양성지 선생께서는 세종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6왕조에 걸쳐 벼슬을 역임하시는 동안 모든 분야에 끼친 공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세조는 선생을 가리켜 "해동의 제갈량"이라고 칭할 정도로 당시 사리를 가장 똑바로 이해 하셨던 경륜가였다고 합니다. 중국 고대의 요순만을 이상적인 군주로 떠받드는 시절에 "단군을 국조"로 모셔 받들기를 주장하였으며, 중국의 역사만을 일반 교과서로 사용하던 시절에 우리 동국사(東國史)를 배울 것을 주장하였으며, 중국 풍속에 휩쓸리던 시기에 나라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인물이십니다. 선생은 지금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등 역사적 정체성을 흔드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한 듯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한 위대한 성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현은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깊은 연구를 지속하여 그 역사적 사료를 축적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들에게는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전 국민에게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조한승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 발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사상을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훌륭한 교육자료가 되고 우리시 역사 문화가 한 걸음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6. 9.

김 포 시 장 강 경 구

축 사



김포시 역사 이해와 사랑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원하며...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신 문양공 눌재 양성지 선생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고장의 위인을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 책자를 발간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한승 김포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책자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눌재 양성지 선생은 김포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서 자주적인 역사 인식 아래 국가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국방과 지리, 의학, 음악, 농법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하셨고, 정치의 근본은 민생의 안정에 있다는 선생의 말씀과 애민 · 애족의 정신은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정착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주체사상의 선구자인 눌재 선생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 문화적 주체성의 유지 계승을 강조하였고 그 뒷받침으로 민생의 증진과 국방의 강화를 역설하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東北工程"(동북공정)이란 국가적 계획으로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의 왜곡날조에 미리 대비한 듯한 주장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50여년 전의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지 못할 때 그 역사는 진정한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 책자의 발간을 통하여 21만 김포시민의 문화정서 함양, 자긍심 고취는 물론 김포시 역사 이해와 사랑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06. 9.

김포시의회 의장 안 병 원

축 사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 책자 발간을 축하하며..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던 지루한 장마를 보내고 보다 큰 도약을 위하여 더욱더 강건해진 마음으로 맞이하는 8월, 김포사랑을 위해 따뜻한 가슴과 넘치는 열정으로 앞장서 온 김포문화원의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빠르게 지나쳐 버리는 메마른 시간들 사이에서 날로 그 의미를 잃어 가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란 말이 아쉽기만 한 요즘입니다. 이 시기에 눌재 양성지 선생을 다시 조명해 봄으로써 조상들의 숨결과 민족성의 향기를 올곧게 피워 내려는 이번 김포문화원의 발간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눌재 양성지 선생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양식이 될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가 담겨진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눌재 양성지 선생의 자취를 되새겨 보면서 올바른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정성과 의지로 가꾸어 가야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역사에서 배우는 슬기를 지녀야 한다.' 는 눌재 양성지 선생의 신조는 우리 후손들이 가꿔야 할 소중한 정신문화라 할 것입니다. 이를 이어받아 아름다운 사업을 일궈나가는 김포문화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기에 우리 김포교육 미래가 더욱 더 희망의 빛으로 가득함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수호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책자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한승 김포문화원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김포교육청 교육장 유 필 선

축 사



후대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사상에 영향

눌재 양성지 선조(先祖)께서 서거하신지 300여년 뒤 정조(正祖)의 어명에 의하여 《눌재집(訥齋集)》 이 발간된지 200여년, 일차 사료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실린 눌재 선조 관련 문집이 김포시문화원의 주관으로 발간됨은 우리 문중의 경사 중의 경사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조께서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상소를 많이 하시어 세조가 "나의 제갈량" 이라고 격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상소에 선조님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왕명으로 편찬된 눌재집의 규장각 제학 이복원(李福源)이 지은 눌재집발(訥齋集跋)을 보면, "신이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선 역대의 사적을 적은 책)의 이야기를 듣고서 책을 구하여 읽어 보았더니, 나라 안의 명신들이 올린 주의(奏議, 상소)에서 오직 눌재 양문양공(梁文襄公)이 올린 주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상소에 나타난 사상은 민족주체사상, 국방사상, 애민사상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에 관한 상소로 세조 때 상비군 15만, 예비군 15만 도합 30만에 58만의 조정(助丁)이 딸려서 약85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국민개병 체제를 갖추기도 하였습니다(실록,문집 참조). 이러한 군대가 그 후로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임진왜란·병자호란 같은 국난과 일본에 강제로 합방 당하는 국치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께서 제작하신 동국지도는 지금 전해지지 않으나, 그 모사본으로 남아 있는 조선팔도지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는 오늘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요하의 동쪽 "만리 영토"가 우리나라의 강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대마도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시도하는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대항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 문집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역사적 교훈을 줌으로써 미래의 역사 발전의 방향을 조명하는 자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독려하신 조한승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발췌 및 원고 정리 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김기열 박사님, 그리고 이 책의 제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씨티21신문사 전광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와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6. 9.

남원양씨문양공대종회 회장 양 재 동

序文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 선생은 조선 태종 15년(1415) - 성종 13년(1482), 성은 양(梁), 본관은 남원(南原), 휘(諱) 성지(誠之), 자(字) 순부(純夫), 호(號) 눌재(訥齋), 시호(諡號)는 문양공(文襄公)이다.

세종 23년(1441)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를 시작으로 성종조까지 6조(朝)를 섬기면서 순성명량(純誠明亮) 좌리공신(佐理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행(行)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知經筵) 춘추관사(春秋館事) 성균관사(成均館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봉조하(奉朝賀) 봉남원군(封南原君) 시호(諡號) 문양(文襄), 이외에 주요 관직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 2회.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 2회,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歷任)하였으며, 봉명회주사(奉命回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세조조에 2등 공신, 성종조에 3등 공신, 세조조 구현시(求賢試)에 장원급제, 세조조에 발영시(拔英試)에 2등 급제, 성종조에 당상관을 대상으로 한 역사와 율시(律詩) 시험에서 수석(首席)하였다.

집현전 근무가 16년, 전교(典敎)를 장악함이 22년, 춘추관 근무를 겸한 적이 24년, 홍문관에 16년, 과거를 맡아 인재를 선발하는 참시관(參試官), 독서관(讀書官)으로 각각 16번, 악학도감(樂學都監) 제조(提調)도 겸직하였으며, 외직으로 호남관찰사를 지낸 적도 있다.

눌재 선생은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학식으로 6대 왕조를 섬기면서 관직 생활 40여년의 대부분을 관각(館閣 : 홍문관, 춘추관, 예문관)에 근무하였다. 문신이 가장 선망하는 자리인 양관(兩館 :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선생은 정치 · 윤리 · 문학 · 사서 · 경학 · 지리 및 지도 · 법률 · 농목 · 의학 · 병법 · 음악 등에 수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애국과 애민에 관한 수많은 실용적인 정책을 상소를 올려 제시하였다.

■ 선생의 저서 또는 편술(編述)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괄호안은 집찬, 독찬 등 표시

사서(史書) : 오왕조실록일기(五王朝實錄日記)(參修) 고려사(高麗史)(參修)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集撰)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集撰) 동국통감(東國通鑑)(集撰) 치평요람(治平要覽)(集撰) 명황계감(明皇戒鑑)(譯進)

경학 : 동국도경(東國圖經)(獨撰)

지리서 및 지도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集撰)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集撰) 연변방수도(沿邊防戍圖)(獨撰)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獨撰) 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獨撰) 팔도도(八道圖)(獨撰) 여연·무창·우예삼읍도(閭延·茂昌·虞芮三邑圖(獨撰)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獨撰) 삼국사절요지리지(三國史節要地理志)(獨撰)

문학 : 동문선(東文選)(集撰) 열성어제시(列聖御製詩)(集撰)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獨撰)

정치 :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獨撰) 유선서(諭善書)(獨撰)

윤리 : 오륜록(五倫錄)(集撰) 삼강사략(三綱史略)(集撰)

의학 : 의방유취(醫方類聚)(校進)

농목 : 농잠서(農蠶書)(獨撰) 목축서(畜牧書)(獨撰)

병법 : 손자주해(孫子注解)(注解)

법률 : 경국대전(經國大典)(校進) 대명강해율(大明講解律)(校進) 율학해의(律學解疑)(校進) 율학변의(律學辨疑(校進)

음악 : 평삭방송(平朔方頌)(獨撰) 친사문묘송(親祀文廟頌)(獨撰)

기타 :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獨撰) 주의(奏議)(10券) 가집(家集)(6권)

선생은 수십만 언의 상소를 올렸다.

사헌부에 들어가서 탄핵을 상주한 일이 20번이며, 그밖에 평시에도 편의(便宜, 꼭 해야 될 일)한 일을 올린 상소가 44문제에 333조목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것이 모두 24가지였으며, 종사의 대계(종실과 사직의 중대한 계책)를 건의한 일이 3번, 조정의 중대 정책에 관한 일이 2번, 성상의 마음가짐에 대한 충직한 간언을 2번이나 올리었다. 사헌부에 있으면서 대관의 기강을 3번이나 떨쳐 일으키었고, 또 변방의 방비에 관한 것이 5번, 국방 전반에 관한 것 및 병사의 양성과 편성에 대한 비계(秘計)가 10번이나 된다(김안국(金安國) 지음 남원군 신도비명(南原君 神道碑銘). 정조 때 규장각 제학 이복원(李福源)이 지은 눌재집발(訥齋集跋)을 보면,

"신이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선 역대의 사적을 적은 책)의 이야기를 듣고서 책을 구하여 읽어 보았더니, 나라 안의 명신들이 올린 주의(奏議, 상소)에서 오직 눌재 양문양공(梁文襄公)이 올린 주의가 가장 많았다. ... 모재(慕齋) 김공(金公, 金安國)이 공의 비문을 써서 이르기를 주의(奏議)가 10권이라 하

였고, 괴애(乖崖, 金守溫)도 또한 서문(남원군주의서문(南原君奏議序文)에서 8권이라 하였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2가지의 주의(奏議, 상소)가 있을 뿐이다."

고 하였지만, 유사 이래 선생만큼 국가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 많이 상소한 이가 없다.

그 가운데 특히 돋보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독립성과 문화적 자주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역설하였고, 요동 동쪽 만리에 걸친 우리나라 강토를 살리고 지켜나가기 위해 국방을 강화할 것을 주청(奏請)한 것이다.

선생의 상소 등에 나타난 사상은 크게 민족주체사상, 국방사상, 애민사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민족주체사상 : 여기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 태종 세종 때 변계량(卞季良)이 우리나라 시조 단군을 의식해 중국의 황제만이 하는 제천(祭天)을 우리나라도 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선생도 제천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동에 웅거하여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교천향제(郊天 : 국왕이 천신(하늘)에게 제사지내던 일, 동지에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하지에 북교에서 땅에 제사함. 饗帝 : 선왕께 합제하는 것 - 편집자) 하였으므로 제천의식을 거행할 것을 상소함으로써 제후 국가로는 행할 수 없는 제천 행사가 부활되어 세조가 원구단(圜丘壇)에서 친제(親祭)하기도 하였다. 이 제천론은 단군을 독립된 국가 시조로 의식한 것이 근거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세조실록 세조 3년 3월 15일조. 세조실록 세조 10년 1월 15일조. 변계량, 춘정집春亭集. 눌재집 권 2 便宜二十四事, 便宜十二事. 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34-36 참조).

●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안팎이 산과 강으로 되어 있어 넓이가 몇 만리(里)이고, 호수(戶數)가 수백 만이며(戶數百萬), 군사가 1백 만으로, (중국의) 요(堯)임금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周)나라에는 신하가 되지 않았고, 원나라(元)와 위(魏)나라와는 (우방으로) 통호(通好)하였으며, 연(燕)나라에는 한때 의지하였으나, 수(隋)나라는 6개 사단(六師)이 (우리나라에) 대패(大敗)하였고, 당(唐)나라는 손님으로 대우하였고, 요(遼)나라의 침략군은 한 사람도 살려 보내지 않았으며, 송(宋)나라는 우리가 섬겼고, 금(金)나라는 우리를 부모(父母)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원(元)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 :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또한 삼한(三韓)이라 이르고 구하(九下 : 중국의 주변에 있는 9개의 독립국)의 나라라고 하며 요동(遼東)의 동쪽 1백 80리에 연속된 산맥(連山)을 경계로 하여 갈라놓았습니다(把截)"(예종실록 예종 1년 6월 29일조).

●"우리 동방은 세세로 요수의 동쪽을 차지하여 만리의 나라라 불렸으며, 삼면이 바다로 가로막히고, 일면이 산을 등지고 있어서 구역이 스스로 나뉘고 풍기가 또한 (중국과) 달랐다."(우리나라 강역은) 요하를 경계로 하여 요동과 장백 이남을 포함하는 만리의 강토를 우리의 영토로 해야 할 것이나, 우선은 적어도 명황제가 스스로 약속한 것처럼 요동의 180리에 위치한 연산(連山 : 만주 本溪縣)으로 경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따라서 명(明)이 요동지방의 동팔참로(東八站路)에 장장(長墻)을 설치하고 개주(開州 : 지금의 만주 봉성(鳳城) 지방)에 진(鎭)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중국에 요청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북방의 경비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성종실록 성종 12년 10월 17일조).

고 주청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구강(舊疆)인 요동을 수복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중국(明)이 이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저지하여 최소한도 연산 이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199쪽 참조).

눌재 선생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개척한 요동 동쪽 만리지국의 영토를 고수해야 한다는 신념에 찬 상소는 이미 예종 때에도 다음과 같이 올린 바 있다.

"요동(遼東)의 동쪽 1백 80리는 연산(連山)을 경계로 하여 파질(把截)을 삼았으니, 성인(聖人)께서 만리를 헤아려 밝게 보시는데 어찌 토지가 비옥하여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수백 리의 땅을 버려 그 곳을 비게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동교(東郊)의 땅은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지키어 양국(兩國)의 강역(疆域)을 서로 섞일 수 없게 하였으니, 만약 혹 서로 섞인다면 흔단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건대, 중국에서 장차 동팔참(東八站)의 길에 담장[墻]을 쌓아서 벽동(碧潼)의 경계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이는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만약 혹 담장을 쌓는다면 도로 내지(內地)가 되어서 진실로 좋은 땅이 될 것이니, 그 유망(流亡)하는 자가 어찌 옛날보다 만만배(萬萬倍)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해(害)의 첫 번째입니다. ... "(예종실록 예종 1년 6월 29일조).

눌재 선생이 우리나라를 "대동(大東)"이라 부르며, 우리 민족의 강토는 본래 요동부터 만리지국(萬里之國)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실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염원을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생의 다음과 같은 상언(上言)에도 선생의 우리나라 역사인 고구려, 발해에 대한 의식과 자주사상을 볼 수 있다.

"신(臣)이 《당사(唐史)》를 살펴보건대, 발해(渤海)의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前麗]의 옛 장수인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망했으므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동국(東國)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의 융성(隆盛)한 것은 다만 발해(渤海)만 일컬었을 뿐이고 삼한(三韓)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신(臣)은 가만히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요제(堯帝)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土地)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되고, 생치(生齒)가 번성(煩盛)하고 군사와 마필(馬匹)이 강성하고 백관(百官) 제도가 성대한데, 비록 별도로 연호(年號)는 세우지 못하지마는 유독 고구려(高句麗)의 옛 것을 계승하여 절일(節日)을 일컬을 수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3월 15일조).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오늘날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국가적 계획으로 압록강 · 두만강 이북의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의 왜곡 날조에 미리 대비한 듯한 주장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550여년 전의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 중국에 대한 사대를 조선조 3대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였던 당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여 "당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군자의 나라'라 하고, 송나라에서는 '예의의 나라'라고 불렀으며, 문물의 아름다움은 중화와 짝이 된다"고 하였다(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

우리나라의 대외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싸워 '십전이칠승(十戰而七勝)(열번 싸워 일곱번 이김)', 북방민족과는 '십전이오승(十戰而五勝)(열번 싸워 다섯 번 이김)'의 기록을 거두었다(세조실록 권34 세조10년 8월 1일조). 그러므로 金나라는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라 불렀고(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조)."전조의 태조(太祖, 고려 태조)가 삼한(三韓)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원(改元)하여서 종실(宗室)을 칭하였고, 금(金)나라 사람이 추대하여 황제(皇帝)로 삼았고, 고황제(高皇帝, 명 태조)는 스스로 성교(聲敎)가 있다고 하게 하였다(예종실록 예종 1년 6월 29일조). 우리나라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조선)세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융성을 이루어 일본 여진의 사신이 항상 수백명씩 내조(來朝)하여 궐정(闕廷)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를'벼슬하고 싶은 나라'또는'천당(天堂)'이라고 칭송하였다고 하였다(성종실록 성종 12년 10월 17일조).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사대하는 것은 이소사대(以小事大)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보국(保國)을 위하여 큰 나라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대의 예는 자주할 수도 없는 것이니, 사명(使命)을 번거롭게 하지 말며 사대의 체통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였다(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조 참조).

비록 우리나라가 중국의 번국(藩國)으로 봉정(封定)되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번국이란 기내(畿內)의 제후(諸侯)에 비할 것은 아니며(예종실록 예종 1년 6월 29일조), 또한 번국의 형세는 기내의 형세와는 다르므로 중국의 복리(腹裏)에 비할 바가 아니다(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조) 라고 하였다.

눌재 선생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사대로 중국에 동화되는 것을 염려하였다. 선생은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주성을 유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이 들으니, 서하(西夏)는 나라의 풍속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년 동안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서하(西夏)의 경종(景宗) 이원호(李元昊)는 영웅인데 말하기를, 비단옷과 쌀밥은 오랑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여진족이 세운)금나라의 세종도 또한 항상 상경(上京)의 풍속을 생각하여 종신토록 잊지 않았다고 하며, (거란족이 세운)요나라에서도 남부(南府)와 북부(北府)가 있었습니다. (몽고족이 세운)원나라에도 몽관(蒙官)과 한관(漢官)이 있었는데, 원나라 사람들도 그들의 근본을 중하게 여겼으므로 비록 중원을 잃었어도 사막 이북의 땅은 옛날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은 대대로 요하 동쪽에 살면서 만리(萬里)의 나라라 불렸으며, 삼면은 바다로 막히고 한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구역이 스스로 나뉘어졌으며 풍기(風氣)도 또한 다릅니다. 단군 이래로 관을 설치하고 주(州)를 두어 따로 문화가 있습니다. 전조(前朝)(고려) 태조도 훈서(訓書)를 지어 온 나라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의관과 언어를 모두 본속(本俗, 본래의 풍속)에 따르게 하였으니, 만일 의관과 언어를 중국과 다르지 않게 한다면 민심에 정함이 없이 (중국의 제후국가인)제(齊)나라로도 가고 노(魯)나라로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조와 몽고 사이에 있어 전조에 불평이 있는 무리들이 서로 이어 투화(投化)하여 국가가 심히 편하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의관은 조복(朝服) 이외에는 반드시 중국제도를 다 따르지 못하게 하고, 언어는 사신을 통하는 이외엔 반드시 (우리 고유의) 옛 풍속을 변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비록 연등놀이나 돌던지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옛 풍속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조).

"수(隋)나라와 당(唐)나라가 기세를 부리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우리를 신하로 삼지 못하였습니다. 요

(遼)나라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예의 법도를 지켰으며, 금(金)나라는 부모의 나라라고 불렀으며, 송(宋)나라도 예의를 갖추어 손님 대접을 하였으며, 원(元)나라도 사돈을 맺었지만 수십년 동안 병란을 일으켜 서 끝내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처남이니 장인이니 하고 불렀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엣날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황제(高皇帝, 조선 태조)께서 왕위에 오르시어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시었으나, 나라 안이 겨우 안정되던 때여서 공격하지 못하고 위엄을 보이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은 행인을 잡아다가 욕을 보이고 해마다 세폐(歲幣, 매년 10월에 토산품과 보화와 인질을 바침)를 증가시켜 곤란을 주다가 무진(戊辰, 세종 30년)에 이르러 노여움이 비로소 가시어 번국(藩國, 제후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번국이 된 형세는 나라 안의 사정과 달라서 큰 나라를 섬기는 도리를 불가불 다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하여서도 안 됩니다. 고려때에는 일가라는 뜻으로 종(宗)이라고 호칭하면서 연호의 원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자질구레한 절차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의를 다하면 그만입니다. 이제부터는 준례대로 하는 은전(恩典, 큰 나라에서 내리는 특전)은 표만을 붙여서 사례하고 번거롭게 사신을 보내지 말도록 하시어 평안도의 백성들을 편하게 살도록 하시고 사대(事大)의 모양새만을 갖추도록 하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조).

"(우리)동방의 사람들은 중국의 부성(富盛)한 일은 잘 알면서도 우리나라의 일들은 상고하지 않으니, 아주 옳지 못합니다"(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조).

하니, 세조도 "너의 소(疏)는 모두가 매우 긴절한 것이다"고 하였다(세조실록1 세조 1년 7월 5일조).

눌재 선생은 위와 같이 문화적 자주성을 살려야 민족이 보존될 수 있음을 먹거리, 의복까지 거론하며 언어와 풍속, 음악과 무용, 심지어 민속놀이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힌 위대한 선각자(先覺者)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눌재 선생은 전강(殿講)(어전에서 문신 또는 성균관 유생들에 대해 보이던 경서에 대한 시험)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 중국 사서와 함께 동국사략(東國史略), 고려사(高麗史) 등 우리나라의 사서를 진강(進講)하여 전대(前代)의 성패를 상고하고 당금(當今)의 치도(治道)를 논하게 할 것(세조실록 세조 12년 11월 4일조)과, 과거시험 과목에삼국사기, 고려사 등 국사도 포함시킬 것(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을 주청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역사 유지 보존을 위하여 관청에서 작성한 기록 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사대사고(四大史庫) · 홍문관 · 각 관부(官府) · 사관(史館) 등에 수장 보관하여 만세에 대비할 것을 상소하였다(성종실록 성종 13년 2월 13일조).

● 선생은 악학제조(樂學提調)로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데, 중국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궁중 악무(음악과 무용)를 우리 고유의 향악을 중심으로 개혁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종묘제례악인 '정대업(定大業)' 과 '보태평(保太平)'은 선생의 구상으로 제작된 것이다(세조실록 세조 6년 4월 22일조. 세조실록 세조 9년 11월 15일조. 세조실록 세조 10년 1월 15일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눌재 선생의 사상은 "그 시대에 그런 분이 계셨구나"하는 감탄이 절로 나옴과 동시에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국사학계의 태두이신 한영우 교수도 필자에게 이렇게 감탄하면서 극찬하였다.

이상의 기록에 의거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눌재 선생은 민족주체사상의 선구자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 문화적 · 역사적 주체성의 유지 · 계승을 강조하고, 그 뒷받침으로 민생의 증진과 국방의 강화를 역설한 선구자이다. 특히 태평한 시기에 국방의 강화를 역설하였다는 사실(史實)은, 사적인 의견에 그칠 수 있는 개인의 문집으로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국왕께 상소한 인물로서 눌재 선생만한 이는 유사 이래 없다. 선생의 거듭된 상소로 볼 때 생각이 체계화된 사상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방사상 : 선생은 국방강화대책으로 변방수비 10책, 동서양계방비 등 12사(事), 평안도 편의사(便宜事 : 꼭 해야만 될 일) 18사, 국가에서 꼭 해야만 될 24사, 12사, 4사, 오위부의 형식과 명칭 등 군사정책 10책, 군국이 꼭 해야만 될 일 10사 2소, 북방 방어 3회 22소, 국경 방어 4책, 군사제도에 대한 4사, 병사에 대한 6책, 군국의 비밀 계책 2사 등이 있는 것만 보아도 선생의 국방 강화 사상을 알 수 있다.

눌재 선생은 병법과 무략(武略)에도 해박 정통하여 군정과 양병, 비변(備邊)에도 주옥같은 위국대계를 여러 차례 상주(上奏)하여, 연변방술도 연변자성도 양계연변방술도 등 국방을 위한 지도와 함께 국방 비책을 독찬(獨撰)하여 헌상하였으며, 문묘만 있으므로 무성묘(武成廟, 무묘)를 세워서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유금필 본조(本朝)의 하경복(河敬復) 최윤덕(崔潤德) 등 우리나라의 역대 명장 18위를 배향하여 문묘의 제도대로 봉사하자고 하였다(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 요(遼)와 금(金)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춘추로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여 무사들의 사기 진작과 무풍 장려를 도모할 것을 건의하였다(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

일조).

● 선생은 군호의 우휼(優恤)을 역설하면서 신라의 유속을 본받아 전사상자에 대해 숭작(崇爵)함으로서 그 무훈의 영예로움을 포상하고 유족들을 관록으로 부양하여 순국(殉國)에 대한 특휼(特恤) 은전(恩典)을 베풀 것을 상주하였으니(세조실록 세조 10년 8월 1일조). 당시의 숭문경무(崇文輕武)로 문약에 흘러 국방의 소홀을 우려한 일대 개혁 조치였다.

● 선생은 정병주의를 제창하면서 호적 정리와 시재(試才) 선병(選兵)과 독신 면역을 군국의 3대 원칙으로 주창하였다(세조실록 세조 3년 3월 15일조. 세조실록 세조 10년 8월 1일).

● 선생은 다음 상소와 같이 신분을 초월한 국민개병제의 확립을 주장하였으며,

"서울에서는 문무백관(文武百官)과 밭을 받은 유음(有蔭)·성중 애마(成衆愛馬)·전함 각품(前銜各品)과 생원(生員)·진사(進士) 등의 호(戶)는 도성위(都城衛)라 칭(稱)하고, 각사(各司)의 이전(吏典)과 제색 장인(諸色匠人)·공사 천구(公私賤口) 등 잡호(雜戶)는 도성군(都城軍)이라 칭(稱)하며, 이 외에 한량 자제(閑良子弟)나 연장 생도(年壯生徒)도 모두 초출(抄出)하여 군사를 삼고"(세종실록 세종 32년 1월 15일조).

● 전국의 긴요한 요새지(要塞地)를 변방에만 지정한데 대하여 내지(內地)의 요새지를 지적하면서"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백성을 위급한 속에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京外)의 성문 수비(城門守備)와 진관(津關)의 금방(禁防)도 또한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소홀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성보(城堡)를 수선하고 관방(關防)을 정하여야 할 것을 주청하였다(세종실록 세종 32년 1월 15일조).

● 부대 개편도 주장하였는데, 세종 말년(세종 32년, 1450)에 올린 비변십책(備邊十策)을 보면, 국방의 주체가 되는 지방 군사(軍士)가 연호잡색군(煙戶雜色軍)까지 합쳐 10여만 명 밖에 되지 못하고 그나마 잡색군을 제외한 현역 군사는 수만 명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여 적어도 15만명의 정병과 5,6만 호(약 15만 명)의 연호잡색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30만 대군의 건군(建軍)이 선생의 기본 목표였다(세종실록 세종 32년 1월 15일조).

● 100호가 되는 현(縣)에는 의창(義倉)에 민간용 500석과 군량미 500석, 1,000호가 되는 군(郡)에는 민간용과 군량미를 각각 5,000석, 각 읍(邑)에는 그 호구(戶口) 비례로 할당하여 10년을 기한으로 저장해서 백성의 구제와 국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예종실록 예종 1년

6월 29일조).

이밖에도 선생의 국방강화를 위한 일련의 군정개혁안으로서 제안한 각종 방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헌책이 채택되어 특히 국방이 강화되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적에 시달리는 국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눌재 선생의 국방 강화를 위한 선견지명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의 구구절절한 선진적인 애국 애민 사상은 두고두고 후세의 귀감이 될 것이다. 주위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선생의 교훈을 명심하여 특히 국방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 선생의 국방에 관하여 임금께 한 직언(直言)의 한 구절을 든다.

"신이 다시 생각건대, 국가는 한 시대에 고식(姑息)되지 말고 만세의 계책을 세워야 하며 무사한 것을 요행으로 삼지 말고 만전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천하에 금 그릇에 비길 만한 것은 잘 보전하여 깨트리지 말며, 산하(山河)가 금에 비길 만한 것은 지켜서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은 신이 감히 입으로 말하지 못하며 글로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들어맞지 않게 된다면 국가의 복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반드시 후세의 근심꺼리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세(事勢)를 논하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구구한 견마지성(犬馬之誠)을 다할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성종실록 성종 12년 10월 17일조).

하였으니, 선생의 국방을 위한 충심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눌재 선생은 국방을 위하여 지도의 제작도 주도하였다. 세조 때 요새지 중심의 방위체제를 탈피하여 진관(鎭管)체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국적 방위체제를 수축하였으며, 고구려의 옛땅을 수복하여 만주로 진출하려는 팽창노선을 추구하였다. 이 정책은 세조 자신과 세조의 제갈량이라고 불린 눌재 선생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동국통감의 편찬 시도가 바로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의식을 지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눌재 선생의 주도로 이루어진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이었다(한영우 · 안휘준 ·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아

름다움, 효형출판, 2001, 32쪽 참조). 선생은 이밖에도 국방을 위한 지도, 연변방수도(沿邊防戍圖)(독찬獨撰)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독찬獨撰) 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독찬獨撰) 팔도도(八道圖)(獨撰) 여연·무창·우예삼읍도(閭延·茂昌·虞芮三邑圖)(獨撰)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獨撰) 등도 제작하였다(성종실록 성종 13년 2월 13일조).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선생의 지도 제작은 국방을 위한 것이었다. 동국지도는 당시 중국땅에 편입된 고구려 영토까지 그려져 있어 선생의 국토 의식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 보존을 위하여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국방 강화에 관한 가장 많은 상소를 하며 국방에 관심을 기울인 이는 눌재 선생만한 이가 없다.
우리나라 역사상 문양공 눌재 선생만큼 민족 자주, 민족 주체의식을 갖고 국방 강화 및 민생 안정에 관한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렇듯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위대한 선각자요, 선견지명을 가진 대경륜가였다.

오늘날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 역사를 비롯하여 고조선 및 발해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기도(企圖)가 진행되고 있고, 서구 문화에 경도(傾倒)되어 문화적 자주성을 망각한 문화적 사대주의가 우려되는 이 시대에, 일찍이 눌재 선생이 강조한 우리 민족의 문화적 · 역사적 주체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강화를 다짐하면서 선생의 사상을 높이 현양(顯揚)하여야 할 것이다.

3. 애민사상 : 선생의 애민 · 중민(重民)사상도 각별하였으니, 제시한 대책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다.

● 눌재 선생은 민생 안정과 복지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바다나 강에 제방을 쌓아(방천防川 색포塞浦 제언堤堰 해택海澤) 경지의 유실을 막고 개간과 수리 사업을 함으로써 경지 면적을 확대하여 생업이 없는 사람(遊手)에게 농경에 종사토록 하고 농한기에는 무예를 습득하게 해야 한다고 주청하였다(세조실록 세조 11년 6월 1일조).

● 선생의 애민사상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성인을 내신 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마음을 받들어서 만민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성인이옵니다. 우리나라 주와 군에는 모두 수령을 두어서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여 백성들을 입히고 먹이오며, 또 각 고을마다 교수와 훈도를 두어서 백성들에게 경학과 예의를 가르치고 계시니 성인과 인군과 스승의 책무는 참으로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다만 질병의 우환만은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통이 되고 있으니, 불가불 담당 관직을 새로 만들고 직책을 나누어 맡겨서 역질로 죽거나 젊어서 죽는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야 하옵니다"

고 하면서 각 도호부 · 군 · 현에서 학생을 뽑아 전의감(典醫監)에서 교육 시킨 후 부역을 면제해 주고 백성들을 치료케 하여 그 성과에 따라 벼슬과 상벌을 내리도록 하고 3년마다 교대를 시키도록 할 것을 주청하면서 "임금님의 정사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예종실록 예종1년 6월 29일조).

● 눌재 선생은 백정에게는 양민이 될 길을 열어주고, 노비의 노역을 편중(偏重)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천민들의 생활의 향상도 배려하였다(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

눌재 선생의 애민 사상 가운데 각 지방에 백성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든가, 특히 백정에게 양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노비의 노역을 과중하게 시키지 말 것을 주청한 것 등은 특별한 것으로 선생의 애민사상은 천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서울대 한영우 교수는 눌재 양성지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애국과 애민으로 집약하였다. 한 교수는 전자는 대외사상이요, 후자는 대내사상이지만 양자가 표리 관계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였다(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83, 226쪽 참조).

● 눌재 선생은 그의 저술로 보아서도 다방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다. 이는 세조 12년 신숙주, 최항, 강희맹, 양성지 등 12명에게 역(易)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醫) 복서(卜筮) 시문(詩文) 서법(書法) 율려(律呂) 농잠(農蠶) 목축(畜牧) 역어(譯語) 산법(算法) 제서(諸書)의 유취(類聚)를 간선(揀選)토록 한 실록의 한 기사(記事)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세조실록 권4

세조 12년 10월 2일조). 또한 그 실례를 들면, 세조가

"내가 잠서(蠶書)를 줄여서 만들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고 쉽사리 거행(擧行)시키려고 하는바 ... 우리나라의 인재(人才)로써 옛 글을 경솔히 고친다면 반드시 많은 착오(錯誤)를 초래(招來)할 것이니, 도리어 옛 것을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 마침내 행 대호군(行大護軍)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책의 오자(誤字)를 교정(校正)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8월 20일)."

이 사실로도 선생의 학문이 다방면으로 뛰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눌재 선생은 당시의 유학인 성리학에도 깊었으니, 중종대의 성리학자 김안국(金安國)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에는 눌재 선생의 학문을 평하여 "가까이는 포은(圃隱) 및 야은(冶隱)과 접하고, 멀리는 염락(濂洛)에 소급한다"고 하였음에도 알 수 있다.

사림파 유신들이 우리나라 성리학의 종사(宗師)로 추앙하고 있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눌재 선생이 최초로 주청하였다. 눌재 선생이 집현전 직제학이던 세조 2년(1457)에 이미 문묘에 배향한 설총 최치원 안향에 이어 쌍기 최충 이제현 정몽주 권근을 문묘에 배향하도록 주청하면서 이제현 정몽주 권근은 "그 문장과 도덕이 사람마다 모두 만세의 수범이 될만하다고 하니, 빌건대, 모두 선성(先聖)에 배향하여 후인을 권장케 하소서"(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28일조) 하였다. 포은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논의는 이것이 첫 발단이 된 것이다(이재호(李載浩), 정포은 비충신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의 비정(批正), 우석(宇石), 1985, 104 - 105쪽 참조). 포은 선생의 문묘 배향은 눌재 선생의 주청을 시발로 논의가 거듭되다가 중종 12년에 결정되었다(중종실록 권10 중종 12년 9월 기축己丑조).

그러나, 선생은 성리학자였지만, 성리학의 도식적 수용에 미무르지 않았으며 성리학 일변도로 치우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 눌재 선생은 악무(樂舞)의 개혁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눌재 선생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악학궤범(樂學軌範)의 편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세조대의 악장 혁신 운동에 앞장서서 민족예악을 일으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선생은 악무(樂舞)에 관심을 갖고 무(舞)에 대한 도구와 소용되는 인원을 토대로 보태평도(保太平圖)와 정대업도(正大業圖)를 제작하였다.

선생은 우리나라의 주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 여진의 음악의 채용을 위하여 '번악부(藩部樂)'을 제정할 것을 주청하였다. 번부악의 제정은 조선조가 일종의 황제국이거나 주변국가

의 맹주임을 전제로 한 악무 인식이다. 중국의 음악인 당악(唐樂)을 억지로 수용하여 아악(雅樂)으로 격상시켜 연희한 것과는 달리 번부악으로 왜와 여진의 사신을 영접하자는 주장은 중국이 이부악(夷部樂)을 제정하여 사이(四夷)의 악무를 천하통치의 시각에서 활용하는 의도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주변국을 경영하는, 민족의 주체성을 세우려는 선생의 경륜에서 나온 것이다.

일찍이 세종때 박연(朴堧)이 구악(舊樂)을 정리하면서 향악은 보잘 것 없다고 하면서 명나라의 대성악(大晟樂)을 극구 찬양한 결과 박연이 정리한 아악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생은 아악을 우리 고유의 음악인 향악(鄕樂)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향악을 중요시하여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새로운 악무로 당시의 악무를 개혁하였다. 선생의 이러한 악장의 정리는 유교의 예악(禮樂)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그 실용성을 추구한 경세적이고 주체적인 음악관을 갖고 있었다(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 신두환, 조선전기 민족예악과 관각문학, 국학자료원, 84 - 93 쪽 참조).

눌재 선생의 애민 사상 가운데 각 지방에 백성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든가, 특히 백정에게 양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노비의 노역을 과중하게 시키지 말 것을 주청한 것 등은 특별한 것으로 선생의 애민사상은 천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눌재 선생의 거듭된 애국 상소를 보면, 때로 국왕으로부터 "우활(迂闊)하다" 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나라의 제반 경세 제도에 대해 시대에 앞서가는, 진취적인 개혁 · 혁신을 지향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진정한 개혁주의 사상가의 풍모를 상기하게 한다.

선생의 구구절절한 선진적인 애국 애민 사상은 두고두고 후세의 귀감이 될 것이다. 주위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선생의 교훈을 명심하여 특히 국방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조가 눌재집 편찬의 서문에서 눌재 선생의 학문을 다음과 같이 극찬하여

"문양은 평생에 유용한 학문을 하여(文襄平生好有用之學) 조정의 문물제도(朝章)와 국가의 규율법전(國典)이며 병사와 농업(兵農), 지리 등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이로움과 해로움, 인습할 것과 고칠 것 등의 큰 줄거리를, 누에고치의 명주실을 풀어 벗기듯이 거듭거듭 조징을 위하여 진언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의론에는 왕왕 주관이 없고 허황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그 일의 효능이 후세에 와서 걸실된 것은 마치 맑은 단술의 근본이 밭을 가는 쟁기와 보습에서 비롯된 것과 같고, 갓과 옷의 기원이 배 짜는 바디와 북에서 시작된 것과 같음을, 공의 글을 읽는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 이 책은 경세 제도의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斯卷也固經制之左鑑而), 이 각재가 특별히 그 시초가 될 것인즉, 이 글을 우선 책의 머리에 적어서 다음 사람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정조가 세조때 눌재 선생이 건의한 규장각(奎章閣) 설치를 회고하여 규장각의 설치를 명하고 눌재 선생의 문집을 왕명으로 편찬케 하면서 선생의 학문을 "有用之學"(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학문), "經制之左鑑"(경세 제도의 거울)이라고 하는 등 극찬을 하였으며, 규장각이 조선 후기 실학의 근원지가 되었으며, 규장각 각신을 지낸 30인이 눌재 선생의 외후손임을 기이하게 여긴 정조가 그 외예(外裔)들을 문집에 기록하게 해 둔 사실 등은 조선 후기 실학이 선생의 학문적 업적에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 것이다.

정조가 눌재 선생의 학문을 "유용한 학문"이라 하고, 눌재집을 편찬한 규장각 각신 30인이 눌재 선생의 외후손이었다는 사실은 정조 때 규장각 각신을 중심으로 꽃피운 조선 후기 실학은 눌재 선생의 다방면에 걸친 실용의 학풍을 이어받았다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눌재 선생은 다음 실록의 기록을 보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방민족인 요나라나 금나라의 국방을 위한 풍속이나 왜국의 갑옷을 모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의 북학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춘추(春秋)의 대사(大射)입니다. 대개 금인(金人)은 요(遼)나라의 풍속을 이어 받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늘에 절하고 버드나무를 쏩니다. 이것은 비록 중원(中原)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또한 번국(藩國)의 성사(盛事)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해동(海東)에 웅거(雄據)하여 삼국(三國)으로부터 전조(前朝)에 이르기까지 교천(郊天)과 향제(饗帝)(교천향제(郊天 : 국왕이 천신에게 제사지내던 일, 동지에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하지에 북교에서 땅에 제사함. 饗帝 : 선왕께 합제하는 것 - 편집자) 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로 그 옛 것을 다 따르지 못하더라도 요(遼)·금(金)의 고사(故事)를 조금 모방하여 3월 3일과 9월 9일은 친히 교외(郊外)에 거둥하시어 대사례(大射禮)를 행하고, 해마다 상례로 삼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거의 우리의 무위(武威)를 크게 떨치고 사기(士氣)도 또한 증가하여 스스로 일국 일대(一國一代)의 풍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경(五京)을 증치(增置)하는 것입니다. 대개 요(遼)·금(金)·발해(渤海)도 아울러 오경(五京)을

세웠고, 전조(前朝)도 사경(四京)을 세웠는데, 본조(本朝)에서는 단지 한성(漢城)·개성(開城)의 양경(兩京)만을 설치했을 뿐이니, 대동 산해(大東山海)의 험함과 주·부(州府)의 성함을 가지고서 단지 양경만을 두었으니 어찌 흠결(欠缺)하지 않겠습니까"(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조).

●"기계(器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우리 본국(本國)의 군용(軍容)은 심히 광채가 없고 기계도 또한 모두 좋지 않사오니,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왜인(倭人)이 돼지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고 치밀하며 경편(輕便)하다 하오니, 비옵건대, 중외(中外)에서 모두 모방하여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하물며 돼지가죽은 얻기가 쉬운 물건이겠습니까"(세종실록 세종 32년 1월 15일조).

이 문집(실록 기사를 모은 문집)을 발간하면서 참고로 일러두고자 하는 것은 성종대 이후로 사림파 유신들이 등장하면서 선생에 대한 탄핵 상소가 거듭되었고, 특히 선생의 말년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적극 도운 훈구대신 한명회(韓明會), 이미 사거한 신숙주(申叔舟)의 아들 신정(申瀞)과 더불어 선생이 집중적으로 탄핵을 받았지만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생은 실용적으로 정당하게 치부(致富)하여 복록(福祿)을 누렸을 뿐이다. 다만 청빈낙도(淸貧樂道)가 아닌 실용적으로 청부낙도(淸富樂道)하였을 뿐이다.

*

눌재 선생은 관직에서 은퇴한 후 김포가 좋아서 별장을 짓고 아들 4형제와 함께 와 사시다가 이곳에 내외분의 묘소와 신도비, 사당으로 부조묘(不祧廟)인 수안사(守安祠)와 선생을 추모하여 세운 대포서원(大浦書院)이 있다.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 예종 2년-성종 19년, 1420-1488) 선생이 지은 "통진현(通津縣) 대포곡(大浦谷) 별서(別墅) 낙성기(落成記)"-눌재집 중 원집(訥齋集 中 原集) 권6 부록을 보면,

"통진에 속한 현을 수안(守安)이라고 한다. 지역은 바다 가에 있고, 토지는 비옥하다. 결찬 들녘에는 산수의 경개가 좋고 물고기는 많으며 벼도 잘 된다. 우리 어른 남원군의 별장이 거기에 있다. 아들 찬(瓚:당시 동부승지임)이 공을 모시고 함께 사는 별장의 우편에 마을이 있고, 마을 서쪽에는 작은 봉우리가 동그스름하게 퍼져 있는데, 큰 아들 원(瑗)이 그곳에 살며, 둘째 아들 수(琇)는 언덕 마루 북쪽의 동우리 우편에 살고 , 넷째 아들 호(琥)는 동리의 좌편에 살고 있다."

* 장남 원-大護軍, 차남 수-정선군수, 삼남 찬-승지, 사남 호- 직산현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통진현(通津縣) 제영(題詠) 팔영(八詠)과 눌재집 중 원집 권6 부록(訥齋集 中 原集. 卷六 附錄)에 서거정(徐居正 : 세종 2년-성종 19년, 1420-1488, 6대에 걸쳐 임금을 섬기며 6조의 판서를 역임한 한국 역사상 문명 높은 문장가) 선생이 목안정(木雁亭)에서 지은 유명한 팔경시(八景詩)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양공 눌재 양성지 선생은 조선시대 김포현에 사셨으며, 김포를 위해 노력하셨음이 문헌으로 고증된다. 이는 조선시대 왕명으로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중종25년, 1530)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포현(金浦) 산천(山川) 굴포(堀浦) : "강매세조교 기비부자 **현인양성지**위공조판서 계치도선(江每歲造橋 其費不貲 縣人梁誠之爲工曹判書 啓置渡船 : 강(굴포강)에 해마다 다리를 놓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아 **본현 사람(縣人) 양성지**가 공조판서가 되었을 때 임금께 아뢰어서 건너다니는 나룻배를 설치하였다)."

눌재 선생은 일찍부터 김포에 살고 싶어 하시는 시를 남겼다. 눌재 선생이 김포에 사는 친구이자 배천(白川) 조씨(趙氏) 중봉(重峰) 조헌(趙憲) 선생 선조이신 조원희(趙元禧) 선생의 집에 찾아와 지은 시에 "지접고양응유주 ... **통진오유의** 일호내방 고인려(通津吾有意 一壺來訪 故人廬 : 고양땅 가까우니 응당 술이 있을 것이고 ... **통진에 자리잡고 나도 살고파서** 술 한병 들고 친구집에 찾아왔네" - 눌재집 중 원집 권5 고금시 김포조원희 촌거,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포현 제영(訥齋集 中 原集 卷五 古今詩 金浦趙元禧村居, 新增東國輿地勝覽 金浦縣 題詠)조에도 이 시가 기록되어 있다.

눌재 선생이 활약하던 특히 성종 때는 고려말 포은 *정몽주 선생을 종사(宗師)로 하는 성리학의 학통을 이어 받아 절의(節義 :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과 세조 왕위 찬탈시의 단종에 대한 충의)를 숭상하며 재야(在野)에 묻혀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한 사림파 유학자들이 득세한 때이기도 하다. 성종 때부터 기성(旣成)세력인 훈구 대 신흥(新興)세력인 사림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고, 신흥 사림들은 훈구 대신들을 부패한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정계에서 물아내기 위하여 연일 비리(非理) 상소가 이어졌다.

눌재 선생 뿐만 아니라 기성세력인 훈구파(勳舊派)에 속했던 인물에 대한 사신(史臣)의 평론(史論)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이 작용한 것이다.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 영남학파) · 이이(李珥, 기호학파)로 이어진다. 기대승(奇大升), 《高峯集》 〈論思錄〉, "以東方學問相傳之次言之 則以夢周爲東方理學之祖 吉再學於夢周 金叔滋學於吉再 金宗直學於叔滋 金宏弼學於宗直 趙光祖學於宏弼 自有源流也" 참조.

*사림파는 정몽주의 제자 고려 유신(遺臣) 길재가 고향의 전원산림(田園山林)에 은퇴하여 후진 양성에 힘쓴 결과, 그의 문하에서 김숙자가 배출되었는데, 숙자는 세조가 즉위한 후에 밀양에 돌아가 제자를 양성하였다. 숙자의 문하에서 그의 아들 김종직이 나왔고, 종직은 영남 유학의 사종(師宗)이 되었다. 종직에 이어 김굉필, 김일손(金馹孫) 등 유명한 학자들이 성종 때에 관계에 대거 진출하여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와 춘추관 등에 포진하였다. 이들 김종직 문하의 세력을 사림파라고 하는데, 그 위세는 대단하였고 종래부터 정계에 뿌리박고 벌족(閥族)을 이룬 기성세력인 훈구파와 대립하였다. 이 대립은 훈구파의 반격으로 나타나 *무오사화(연산군 4년, 1498)에 이어 갑자사화(연산군 10년, 1504)를 일으켜 사림파 수십명씩 처형되었다. 이 두 사화(士禍)로 김종직 일파가 실각한 후에도 당쟁은 그칠 사이가 없었다. 중종 14년(1519)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비롯한 신진 사림들 수십명이 처형되었다. 이때 조광조의 무죄를 주장하는 유생 1,000여명이 궁중에 들어가 대성통곡하면서 광조의 석방을 호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림파 유신들이 우리나라 성리학의 宗師로 추앙하고 있는 포은(圃隱) 鄭夢周 선생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눌재 선생이 최초로 주청하였다. 눌재 선생이 집현전 직제학이던 세조 2년(1457)에 이미 문묘에 배향한 설총 최치원 안향에 이어 쌍기 최충 이제현 정몽주 권근을 문묘에 배향하도록 주청하면서 이제현 정몽주 권근은 "그 문장과 도덕이 사람마다 모두 만세의 수범이 될만하다고 하니, 빌건대, 모두 先聖에 배향하여 후인을 권장케 하소서"(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丁酉조)하였다. 포은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논의는 이것이 첫 발단이 된 것이다(李載浩, 정포은 비충신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의 批正, 宇石, 1985, 104 - 105쪽 참조). 포은 선생의 문묘 배향은 눌재 선생의 주청을 시발로 논의가 거듭되다가 중종 12년에 결정되었다(중종실록 권10 중종 12년 9월 己丑조).

*무오사화(연산군 4년, 1498)는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춘추관의 사관으로서 성종실록에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실은 것에 대하여 이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방한 글이라고 훈구파들이 연산군에게 고해바침으로써 이미 죽은 스승 김종직의 묘를 파헤쳐 부관(副棺)참시(斬屍)하고, 김일손 등 사림파 수십명을 처형 또는 귀양, 파면하였다.

*훈구파(勳舊派)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적극 협조하거나 즉위 후에도 관직에 있던 관료파 학자들로 정인지, 한명회, 권남, 정창손, 신숙주, 최항, 양성지, 서거정, 이석형, 강희맹, 이극돈 등 세조의 공신들로서

높은 관직에 기용되었고, 관찬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수차에 걸친 공신전의 지급으로 막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눌재 선생은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2일자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고(告)하기를,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두려워하는 빛이 있으니, 반드시 *음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어느 사람인들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양성지로 말하면 온 관사(官司)의 사람들이 잡혀 갔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느냐? 양성지는 나를 따른 지 오래이니,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구치관(具致寬)이 말하기를,

"양성지에게 만약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근일에 윤대(輪對)할 적에 그가 어찌 밀책(密策)을 올려 왔겠습니까?"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유성원(柳誠源) 등과 협의가 져 있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 이미 실정을 알았다. 옛날에 방현령(房玄齡)이 태종(太宗)을 배반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을 때에 즉시 고발한 자의 목을 베었었다. 지금은 말하는 자를 막을까 염려하여 다만 <그 말을> 물리칠 뿐이요, 죄줄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구치관을 시켜 양성지를 불러 천천히 그 일을 말해 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니, 양성지가 명을 받고 감격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눌재 선생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림파들은 서상(敍上)한 바와 같이 고려 조선 왕조의 교체와 세조의 왕위 찬탈 등의 정변에 절의를 지키거나 초연한 자세를 견지한 유학자들이다. 훈구파들은 조선 건국 초부터 국정에 참

여, 중앙 관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관료유학파(官僚儒學 : 官學派)들이다. 이 관학파들은 세종대에 "유학사상을 응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학술과 문화를 창조"(유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198쪽) 하였고, 이후 "1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국권을 세우고 착실하게 발전 시켰으며"(유승국, 동상), "세조 · 성종대에 이룩했던 치화(治化)의 성세"(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146쪽)도 이들의 공로였고, "15세기 초에도 제도문물의 정비와 주자학적 실천윤리의 보급은 주로 관학파에 의해 실시되었던"(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출판부, 1979, 7쪽) 것도 이들이었다(이상 김홍경, 《조선 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한길사, 1996, 21쪽 참조).

세조대부터 중신이던 눌재 선생은 서상(敍上)한 바와 같이 훈구 대신이었기에 절의(節義)를 숭상하던 사림파 사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역대의 훈구파들에 대한 사론(史論)이 그러하듯 눌재 선생에 대해서도 젊은 사림파가 담당하였던 사신의 평론에 비판적인 대목이 많다.

눌재 선생은 그 말년에 젊은 신진 사림파들로부터 탐오(貪汚)하다는 풍문에 근거해 또는 이렇다 할 공덕(功德)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때, 성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양성지의 인품에 대해 논의하게 한 결과에 대해

"내가 이를 의논하라고 명한 것은 다만 중론(衆論)이 어떤가를 보고자 한 것뿐이었는데, 또 의논한 바를 보니, 지위가 높은 자는 그대로 동일(同一)한 말을 했고, 지위가 낮은 자도 또한 그대로 같은 말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성종실록 권104, 중종 10년 5월 5일조)

라고 하였다. 당시 "지위가 높은 자" 즉 훈구 대신들은 같은 논조로 탄핵의 불가를 아뢰었고, "지위가 낮은 자" 즉 신진 사림들은 한결같이 탄핵에 찬성하였다는 이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눌재 선생은 말년에 한명회(韓明澮)와 이미 졸(卒)한 신숙주의 아들 신정(申瀞)과 더불어 집중적인 배척을 받았다. 세조 의 왕위 찬탈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명회, 신숙주와 함께 척결(剔抉)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한명회에 대해서 '나는 훈구(勳舊)가 있어서 비록 불경죄를 범하더라도 전하께서 죄주지 못할 것이며 조정에서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심정으로 불경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서도 훈구 대신들에 대한 비난을 읽을 수 있다.

선생이 탐오(貪汚)하였다면서 요청한 탄핵에 대해 성종 8년 10월 11일 성종실록의 기사(記事)를 보면, 임금이 좌우(左右)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실록(實錄)을 상고하니 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사건은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구차스레 변명하였다.[苟容]'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대간(臺諫)의 말은 진실로 헛된 것이다." 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말하기를,

"신이 친히 예종(睿宗)의 명(命)을 받들고서 국문(鞫問)하였는데, 과연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전하께

서 신하들이 말하면 들어주시고 계책을 올리면 따르시니 진실로 아름다운 미덕(美德)이십니다. 그러나 신진(新進)의 인사(人士)들이 마땅히 간(諫)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간(諫)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풍문(風聞)을 거론(擧論)하여 탄핵(彈劾)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대신(大臣)들이 반드시 서로 평안하지 못할 것이며 그 조짐이 또한 장차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취모구자(吹毛求疵)하여 남의 숨겨진 허물을 논(論)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동년 10월 12일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과 헌납(獻納) 김괴(金塊)가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일은 사림(士林)에서 시끄럽게 떠든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니, 듣는 자들이 누군들 놀라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 등이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명하시어 실록(實錄)을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대간(臺諫)이 반드시 사책(史策)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무슨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풍문(風聞)을 거론하여 탄핵한 다음이라야 옹폐(壅蔽)의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종 12년 11월 20일에 집의 윤기반과 정언 윤석보가 양성지의 숭정대부에 제수된 일에 대하여 아뢰자 이를 좌우에게 물었을 때, 윤석보(尹碩輔)는 말하기를, "좌우에서 (양성지가) 구신(舊臣)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하니 더 말할 것 없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예의(禮義)와 글 잘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져 있어서 글 잘하는 사신이 오면 반드시 시(詩)를 주고 받기를 요구하니 젊은 문신(文臣)은 학문을 게을리 할 수 없으며, 대신(大臣)은 그 임무가 중대하여 학문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과시(科試)를 명령하였고 양성지(梁誠之)가 수석을 차지했었다. 또 양성지는 선왕(先王)의 구신(舊臣)이어서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려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 훈구라는 이유로, 구신(舊臣)이라는 이유로 기성세력을 배척한 당시 신진 인사(사림)들의 정치적 동향(動向)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성종은 눌재 선생에 대한 거듭된 탄핵 요청에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억측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물리쳤다(성종 실록 권135, 중종 12년 11월 20일조).

역사적 인물은 명암(明暗)이 있듯 반드시 공과(功過)가 있다. 문양공 눌재 선생은 과(過)보다 공(功)이 더 많은 역사적 인물임은 이상의 실록의 기록이 증언해 주고 있으며, 선생의 위대한

선각자적 사상과 업적은 후세에 많은 교훈(敎訓)을 주고 있다.

우리 김포에서는 매년 축제(김포문화예술제) 때 눌재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눌재 사상 연구에는 이 실록 문집과, 정조가 왕명으로 편찬하여 눌재 종가에 하사한 눌재집을 남원 양씨 문양공 대종회에서 발간, 원문과 국역을 아울러 실은 국역 눌재집 상 · 중 · 하권 등이 일차 사료가 될 것이다.

2006. 9.

김포 풍년마을 우거(寓居)에서

문학박사 金 淇 烈

○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사기(史記)

* 참고(편집자 주) : 《 세종 037 ... 》에서 이 맨 처음 숫자는 실록의 권수 표시임. 세종실록 권37 이란 표시임. 그 다음은 년, 월, 일.

* 본문에 고딕체로 표기한 부분은 편집자가 눈길에 잘 뜨이게 바꾼 것이다.
* # 표시는 윤월임.

세종 9년

《 세종 037 09/09/29(갑인) / 전 좌군 동지총제 박초가 경원의 군대를 용성으로 옮기는 것의 불가함을 아뢰는 글에 양성지 등이 전지를 받들어 첨부하다 》

임금이 정흠지(鄭欽之)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대간이 여러 번 양녕(讓寧)의 일을 말하였으나 내가 끝내 윤허하지 않았더니, 두 번이나 사장(辭狀)을 바치었으나 내가 또 들어주지 않고 회유(回遊)하기를, '앞으로 만약 불러 볼 때는 먼저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 알리겠다.' 하였다. 내가 서울 안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불러 보고자 하는데 하물며 지금 행차하게 되매 겨우 30리 가량 떨어져 있으니 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랴. 정부와 육조에 전유(傳諭)시켜 비록 말이 있더라도 나는 윤허하지 않을 것이니 아울러 이를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정미년 8월 일에 전 좌군 동지총제 박초(朴礎)가 말씀을 올리기를,

"근자에 경원(慶源)으로 옮겨 배치하는 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명령이 내릴 그 당시, 신은 8월 11일에 외조모의 기일(忌日)을 만나 휴가로 13일까지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입직(入直)을 하여도 전유(傳諭)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은 의논을 올리는 반열(班列)에 있었으면서도 양일(兩日)의 회의를 모두 참예하지 못했습니다. 물러와서 생각해 보니, 교명(敎命)이 이미 내렸는데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예가 아니므로, 신은 죄가 됨을 생각지 않고 잠정적으로 들은 바로써 어리석은 포부(抱負)를 대략 진술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의논을 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지금의 경원(慶源)은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끼고 서북쪽으로는 적수(賊藪)와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므로 읍(邑)을 만들 수 없으니, 물러나서 용성(龍城)에 배치(排置)하는 것이 좋겠으며, 용성에 웅

거하여 수비하고 방어(防禦)한다면 편리했으면 했지 조금도 걱정될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천명(天命)을 받게 되면 토지와 인민은 안으로 선군(先君)에게 받아서 그 강계(疆界)를 엄하게 수비하고 우리의 적자(赤字)를 보전하고 그치지 않으면 날로 나라를 백 리나 개척하게 되니, 신은 조종(祖宗)의 전한 땅을 다른 나라의 소유로 맡겨서 더욱 그들의 몹시 탐내고 엿보는 마음을 내게 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해치게 되니,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첫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북쪽 변방은 곧 고려의 상신(相臣) 윤관(尹瓘)이 개척하여 비(碑)를 세운 땅이 경계가 되었습니다. 중세(中世)에 이르러 예전 공주(孔州)로 한계를 옮겼다가 이에 우리 왕조(王朝)에 미치게 되고, 또 옮겨 지금의 경원(慶源)이 되었으니, 만약 옛날 모양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碑)를 세웠던 땅에 경계를 만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공주(孔州)의 성(城)에 이르러 읍(邑)을 만드는 것이 옳겠습니다. 두 번이나 옛날의 땅을 줄여서 지금의 경원부(慶源府)를 만드는 것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 또 다시 그 땅을 줄여서 용성(龍城)에 나가 배치하여 야인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계책은 추진시킬 수 없사오니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둘째의 이유입니다.

성상(聖上)께서는 가만히 계시기만 하여도 문덕(文德)이 저절로 펴어지고, 문무의 장상(將相)들이 외방의 방비를 분담(分擔)하여 호령(號令)을 하면서 혹은 덕을 선포(宣布)하여 불러서 위안하기도 하고, 혹은 적을 방어(防禦)하여 승리하기도 할 것이온데,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않고 그 내왕하는 것을 꺼려서 모두 땅을 줄이는 일로써 의논을 올리게 되니, 그들이 과연 국가를 위하여 생각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임금의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지극한 생각을 체득(體得)하지 못하고, 그 지키는 임무에 태만하여 생각하기를 깊지 않음이 이와 같다면 비록 용성(龍城)에까지 땅을 줄이더라도 걱정이 없겠습니까. 한갓 지키는 것만 허비하고 지키는 근본이 덕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령 용성에서 또 줄어들어 가까운 땅에 배치하더라도 형세는 역시 같이 되어 걱정이 한없이 많게 될 것이므로, 실을 정리하면서 헝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세째 이유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변(安邊) 이북은 군사들이 가서 지키는 것이 이미 폐단이 있고, 또 내금위의 갑사(甲士)로 같이 지키게 하는 것도 불편하므로, 만약 용성으로 옮긴다면 방어하기가 쉬울 것이니 어찌 군사를 더 보내어 둔수(屯守)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나, 이것이 어찌 장구(長久)한 계책이겠습니까. 만약 용성을 경계로 삼는다면 지금의 경원이 이미 적수(賊藪)가 될 것이므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될 것이니 경계가 될 만합니다. 진실로 의논하는 사람의 말로 논한다면 우리의 군사를 옮겨서 저들의 요해지(要害地)를 지키게 되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천하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북방을 지키는 것이 어찌 모두 근처(近處)의 군사이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두 읍(邑)이 강성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북방을 지키는 남방의 병졸을 다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네째 이유입니다.

신은 지금 땅을 줄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대강 들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 두 읍(邑)의 포치(布置)의 적당함과 수어(守禦)의 방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경원(慶源)에 고랑거리(高郎居里)가 있고 경성(鏡城)에 용성(龍城)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적의 갈림길로서 수어(守禦)의 요충지(要衝地)입니다. 지금 두 읍(邑)에서 모두 군사를 나누어 둔을 치고 지키는데 또한 본읍(本邑)과 서로 떨어지기가 멀지 않은 곳에 유수(有數)한 군졸을 나누어서 버티어 지키게 하니, 형세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경원은 고랑거리에, 경성은 용성에 성을 쌓고, 읍을 만들기에 적당한 길지(吉地)를 가려서 옮겨 배치하고 모두 외면의 울타리를 만들어 군병은 읍성(邑城)의 한 곳에 둔수(屯守)하고, 농민은 읍성 이남의 내면(內面)에 살게 하고는, 그 백성 중에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가려서 천호(千戶)는 4품(品)에 한하고, 백호(百戶)는 7품에 한하게 하고, 통주(統主)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가 되는데, 모두 토관(土官)의 첨직(添職)으로써 제수하여 백성을 관할하게 하되, 혹은 5, 60호(戶), 혹은 7, 80호로 하고 많아도 1백 호는 넘지 못하도록 표준을 삼고, 부근의 사람을 등록시켜 통속(統屬)하여 1둔(屯)을 만들어 목책(木柵)을 견고하게 만들게 하는데, 그 목책의 수효는 거주하는 백성들의 많고 적은 데 따라서 안배하여 설치하고, 농사철에 당하면 각기 소속된 목책에 모여 거처하되 망보는 사람을 별도로 정하여 시각마다 태만하지 않고 변고에 대비(對備)하도록 하며, 각기 군장(軍裝)을 가지고 목책과 가까운 곳에서 대(隊)를 만들어 농사에 힘쓰게 하고, 변고가 있으면 낮과 밤에 연화(烟火)와 나팔 소리로써 서로 맞추어 서로 응하여 그 둔책(屯柵)에 빨리 들어가서 굳게 지키어 보전할 것이며, 병마사는 그 유군(遊軍)을 거느리고 급히 구원하여 승리하게 하며 농한기에는 읍성에 자주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무릇 병농(兵農)에 관한 모든 일은 수령(守令)과 장수들이 일정한 시기도 없이 고찰 응판(應辦)하여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원·경성 두 읍의 인민 내에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장용(壯勇)한 군정은 비록 많지마는, 겨우 호수(戶首)의 명자(名字)만 등록되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되지 않으므로 거개 누락된 것이 많은데, 만약 끝까지 조사하여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인심이 부동(浮動)할 것이오니, 그대로 고과(考課)하지 않고 이전 사람의 그르친 일이 구애된다면 백성들이 통속(統屬)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가 희망하여 힘써 싸워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상등은 3등급을 뛰어올려 주고, 중등은 2등급을 뛰어올려 주고, 하등은 1등급을 뛰어올려 주어서, 토관(土官)의 첨직(添職)으로 상주게 할 것이며, 아전과 역자(驛子)에게는 왜적을 잡은 염간(鹽干)의 예에 의거하여 공패(功牌)를 주어 역(役)을 면하게 하고는 그 성공한 등급을 따라서 차차로 관직을 상주게 할 것이며, 공사 천구

(公私賤口)에게는 돈과 물건으로써 상주어 기개를 격려하고 심정(心情)을 창달(暢達)하게 할 것이며, 그 경계에 자원하여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은 허락할 것입니다. 두 읍(邑)의 인물이 은성(殷盛)하기를 기약하여 연도(年度)를 제한하여 공부(貢賦)와 조세(租稅)를 일체 모두 감면하여 주고, 한결같이 수어(守禦)하고 힘써 싸우는 것으로 생계에 전일(專一)할 수 있게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다만 무휼(撫恤)을 더하여 은혜와 위엄을 보인다면 사람마다 모두 죽기를 결단하고 싸울 마음이 있을 것이니, 적게는 능히 둔책(屯柵)을 지켜서 환란을 면할 것이며, 크게는 그 장수를 따라서 싸우면 이기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공격하면 빼앗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므로, 수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땅은 넓어지고 백성은 많아질 것이오니, 그 효과가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읍(邑)을 공주(孔州)의 성(城)에 옮기는 것이 옳겠는데 그로 인하여 비(碑)를 세운 경계를 회복함이 어찌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만약 둔책(屯柵)을 파수하고 누락된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등록하게 되면 거주하는 백성의 많은 것이 어찌 통속(統屬)이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세째는 야인은 견융(犬戎)의 남은 종족으로서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짐승과 같아서,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원망이 있으면 보복하게 되니, 이를 대우하는 방법은 그 무위(武威)만 믿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로써 이를 복종시키고 또한 물질로써 이를 꾀어야만 되니, 때때로 와서 변방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오래 된 노여움으로 인하여 그 원망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온 것이 어찌 마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롭지 못하면 갑자기 돌아갔다가 얼마 안 가서 정성스럽게 하여 귀순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임금의 덕을 깊이 감사하여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이 지금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두 읍(邑)의 사람이 다시 원한을 맺을 인연이 없다면 저들이 비록 짐승의 마음일지라도 또한 양지(良知)가 있으니 어찌 교화를 막아 조정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준수(俊秀)하여 시위(侍衛)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많고 적은 것을 구애(拘礙)하지 말고 허락하여, 이를 무마(撫摩)하여 건국 초기의 예(例)와 같이 대우한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벼슬하고 아우가 형에게 벼슬하게 되니, 비록 그 땅에 처해 있더라도 어찌 마음을 달리 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를 교화시킨다면 모두 우리의 백성이 될 것이니 원수가 된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마는 저 사람들의 한때의 기뻐하고 노여워함도 또한 중간에서 통역해 말하는 사람의 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시키되 너무 자주 하지 말도록 하고, 불화의 단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서둘러서 화목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들은 본디 통속(統屬)이 없으므로 비록 도적질을 하고자 하더라도 다만 같이 거처하는 무리들과 모의할 뿐이며 여러 종족과 함께 행하지 않는 까닭으로, 만약 따라서 도적질을 한 자가 있더라도 전사(戰死)하거나 혹은 말이 죽으면 반드시 배나 값을 징수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자가 적게 되니 오히려 이것이 한 가지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원한이 생길 이유가 없게 된다면 변고가 없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이를 행하는 것

은 그 사람에 있을 뿐이오니, 은혜와 위엄을 겸해 다할 수 있는 노성한 사람을 뽑아서 위임한다면 그제야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수어(守禦)하는 군사 안에서 내금위의 갑사는 서울을 지키는 용사들이니 조정에 돌려보내어 시위에 충당할 것이며, 그 외의 번드는 군사들은 잠정적으로 그 전에 소속대로 하여 멀고 가까운 것을 분간하여 적당히 교대하여 비어(備禦)하게 하고 은성한 시기에 이르러 그만둘 것입니다.

그 네째는 옛날에는 둔군(屯軍)은 변방에서 사변이 없으면 경작하고 사변이 있으면 전쟁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경작하면서 전쟁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훌륭한 계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임금의 덕화(德化)가 널리 입혀져서 역심(逆心)을 가진 자도 순종하게 되어 사졸들이 한가로이 잠자고 있으면서 편안한 처지에서 피로한 적군에게 대비하고 있으니, 그 두 곳에 둔수(屯守)하는 유군(遊軍)으로 하여금 반드시 가까운 땅의 비옥한 들판에 적당히 경작하게 하고는 변고가 있으면 싸우게 하여 경작하면서 전쟁하는 계책을 본받게 할 것입니다.

두 읍에 거주하는 백성 안에서 만약 서울과 다른 도(道)의 각 고을에서 도망해 온 아전·관노(官奴)·역자(驛子)와 각 관사(官司)의 노비는 본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영구히 그 고을에 소속시키고, 사처(私處)에서 노비가 나타나서 잡히면 그 고을 수령(守令)은 나이와 이름을 일일이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형조에 공문을 보내고, 형조에서 계문하여 전농시 소속의 혁파된 사사(寺社)의 노비는,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는 그 본 고을에 주어 충당시켜 또한 그 고을에 소속시킨다면 인물이 자연적으로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이 지계(地界)는 신이 친히 본 땅이 아니므로 논한 바가 모두 억측한 말이 되어 혹시 적중(適中)하지 않을는지 염려되지마는, 그러나 옛날 사람이 묘당(廟堂)에 앉아서 서로 옳다 그르다 하면서 천하의 계책을 결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신은 우리나라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함께 말하는 사람은 이 방면(方面)의 사람이요, 함께 의논하는 사람도 임무를 경험한 신하입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마는 어찌 감히 보지 않은 것을 핑계하고 마침내 입을 다물고 말을 아니 하겠습니까. 신은 성상께서 염려하심을 깊이 생각하여 평소의 쌓인 회포를 다 말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말은 관사(官司)에 명하여 참고하여 말을 채택하여 절충해서 시행하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사오며 군민(軍民)에게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천순(天順) 7년 3월 일에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신(臣) 신숙주(申叔舟)·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신 권남(權擥)·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신 최항(崔恒)·신 어효첨(魚孝瞻)·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신 이극감(李克堪)·신 **양성지(梁誠之)** 등은 삼가 전지를 받들어 이에 첨부함.

【원전】 3 집 94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세종 18년

《 세종 074 18/09/30(임술) / 신개가 북쪽 변방에 대한 방략을 논하여 올린 글에 양성지 등이 전지를 받들어 첨부하다 》

병진년 7월 일에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 신개(申槩)가 상언하기를,

"신(臣)이 그윽히 생각하옵건대, 북쪽 변방에 대한 방략(方略)은 적을 방어하고, 적과 화호(和好)를 통하면서 죄목(罪目)을 들어 정벌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변경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여 적이 감히 엿볼 수 없게 한다면 진실로 좋은 방책(方策)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안남도의 변경을 지키러 가는 군사는 타고, 짐을 싣는 말이 한 사람 앞에 각기 3, 4필씩이나 되옵는데, 큰 산고개를 넘으면 죽고 쓰러지는 것이 앞뒤에 연달아 있어 이를 짊어지고 가게 되오며, 번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말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10필에 항상 7, 8필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 해가 아니오니, 두서너 해 후에는 마병(馬兵)이 계속하게 어렵게 될까 매우 염려됩니다. 변장(邊將) 된 사람은 이러한 폐단을 돌보지 아니하고 엄하게 독려하여 징발하는데도, 오히려 적의 침략을 당함이 근일과 같다면, 방어가 또한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화호(和好)를 통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자녀(子女)와 옥백(玉帛)을 써서 그의 욕심을 채워 주어야만 되겠사오니, 나라에서 이를 당해내겠습니까. 하물며 땅강아지와 개미 같은 미물(微物)과 벌과 전갈 같은 독으로써 제 마음대로 침략을 감행(敢行)하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강화(講和)에 구구히 마음을 쓰겠습니까. 죄목을 들어 정벌하는 일은 다만 한때의 노력(勞力)뿐이오니, 옛날 사람의 이른바, '잠깐의 수고로 영구히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군(行軍)을 규율 있게 하고, 가까운 공을 탐하지 않으며, 허세(虛勢)를 일삼지 말고서, 기어이 그 추장(酋長)을 사로잡아 군전(軍前)에 와서 항복하게 한 후에야 그만둔다면, 남도(南道)의 폐단을 근절하고 북방의 걱정을 덜며, 화호(和好)를 통하는 계책도 또한 점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종(操縱)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괴수(魁首)의 조회를 받고, 그 자제(子弟)를 볼모로 잡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대저 그들이 침략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비록 모욕을 당하고도 큰 도량으로 그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휼(恩恤)을 더하면서 정벌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난 해의 원한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서 반드시 보복을 행하려는 것일까요, 욕심이 한정이 없어서 우리의 재화(財貨)를 탐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변장(邊將)이 태만하고 용렬한 때문일까요, 사졸(士卒)들이 겁내고 약한 때문일까요. 그들 뜻이 이 몇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소인은 이(利)만 보게 되면 감히 불의(不義)한 일을 하여 뒷날에 해가 있을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 야적(野賊)들은 마음속에 몇 가지의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돌이켜 보건대, 아

무리 하여도 자기에게는 조금도 해로울 걱정이 없었은즉, 무엇을 꺼려서 침략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적해(賊害)는 이미 이와 같사온데, 우리는 오히려 오욕(汚辱)을 용납하고 피해를 감춰 가면서 그들과 서로 겨루지 않고 객관(客館)에 들여 대접하고, 상을 싸서 주는 것이 전일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들이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슬피 울면서, 저의 죄를 나물하여 정벌함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 겨를도 없을 것이온데, 도리어 그 독을 더욱 부리오니, 그들이 덕(德)과 의(義)를 보기를 그게 다 무엇이냐 하는 듯이 합니다. 이런 일을 다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참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변(沿邊) 지방에 있는 백성에게 어찌 하겠으며, 변경을 지키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어찌 되겠습니까. 대저 적을 제어하는 방법은, 저들이 해독을 함부로 부리는데 우리가 엄한 위세를 보이지 않으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이 귀순하는데 우리가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이지 않으면, 저들은 도리어 원심(寃心)을 품고 침략함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반드시 그 형세를 보고 그 변하는 것을 살펴서, 혹은 은전(恩典)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위세를 보이기도 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략(智略) 중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어리둥절하여 일의 실마리를 찾아 알지 못하게 한 후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야인(野人)들에게 은전(恩典)을 보인 일은 본시부터 행하여 왔지마는, 위엄을 보인 일은 겨우 한 번 행하였사오되, 역시 그 몸둥이와 배와 가슴은 능히 건드려 보지 못하고, 다만 그 피부와 터럭만 상하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들이 뒤를 추격할까 두려워하여 군대들의 짐과 군기(軍器)와 마필(馬匹)을 반수 이상이나 내버리고 이틀 걸을 길을 하루에 걸어 도망해 돌아왔으니, 이는 다만 그들의 원한과 분노를 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겁내는 것만을 보여서 그들의 업신여기는 마음만 길러 주었을 뿐이니, 어찌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옛날 사람의 이른바, '오면 이를 방어하고, 가거든 이를 쫓아 치지 말라.'고 한 것은, 군대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큰 땅을 차지하고 상거(相去)가 멀리 떨어지고 막힌것을 이름이니, 일찍이 이같이 작은 도적이 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좀도둑질하는 것을 이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유묘(有苗)가 복종하지 않을새, 순제(舜帝)가 이를 정벌했으며, 험윤(玁狁)이 세력이 성하매,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6월에 군사를 일으켰으며,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이 함께 군사를 일으키매, 노(魯)나라 백금(伯禽)이 이를 정벌했는데, 고금에 이 일을 칭찬했으니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신은 그윽히 보건대, 조정의 의논이 죄목을 들어 정벌하는 데 미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군사를 크게 일으키게 될까 이것을 꺼린 때문인가 하옵는데, 다만 이 조그만 도적을 정벌하는 데에 어찌 크게 군사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식견이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날랜 군사 수천 명만 쓴다면 대우 쉽게 치워버리게 될 것이니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마는, 적을 얕잡아보고 경솔히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병가(兵家)에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충분히 계획한 후에라야 군사

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주(李滿住)가 이미 도적질을 하고서 그 죄를 면하려고 뒤를 이어 사람을 보내니, 그 계책이 또한 심히 간사합니다. 그 도적질한 사유를 문죄(問罪)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며, 이미 문죄(問罪)를 한다면 그 사신을 머물러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인구와 말·소를 죽이고 노략한 것이 거의 수백에 이르렀사온데, 만약 또 그 온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 회답하는 예(禮)를 후하게 하여 보낸다면, 이는 곧 그들의 쳐들어온 것을 잘하였다고 상을 주는 것이 됩니다. 원컨대, 그 사신을 잡아 머물러 두고, 그 중에서 다만 그 사신 한 사람만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이만주가 전후에 사로잡아 간 인구와 말·소를 전부 돌려보내어 변장(邊將)에게 넘겨주기를 기다려, 그 후에야 지금 보낸 사람들을 돌아가게 허락할 것이라.' 하여, 사인(使人)이 왕래하여 되풀이하면서 힐문(詰問)하게 된다면, 쳐들어오려는 계획이 혹시 저지(沮止)될까 하옵니다. 만일에 혹시 다시 사납고 교만한 태도를 부려서 귀순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전단(戰端)을 여는 것이 되므로, 우리 군사는 더욱 정당하고 용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신을 머물러 두면 그들의 노여움을 갑자기 격발시키게 되니 옳지 않다고 한다면, 또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주의 보낸 사람이 6명인데, 그 중 1명은 힘써 구하여 왔으며, 1명은 고하지 않고 몰래 왔다고 하오니, 그 말은 비록 믿지 못할 것이지마는, 그가 서로 통하고자 하는 뜻은 전부터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의 사신의 옴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니, 저들과 같은 비천(卑賤)하고 간교(奸狡)한 것을 비록 마땅히 교호(交好)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러나, 그들의 보낸 사신을 이미 물리치지 아니하고 대접을 후하게 할진댄, 사람을 보내어 답례(答禮)하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모략과 용맹이 있는 몇 사람을 널리 뽑아서 사신을 보낸 데 대한 답례라고 일컬어, 혹은 상사품(賞賜品)을 가지고 그 사신과 함께 보내어 교호(交好)하는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분잡(紛雜)하게 왕래하면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라는 뜻으로써 달랜다면, 혹은 몸소 와서 조회하기도 하고, 혹은 자식을 보내어 입시(入侍)하기도 할 것이오니, 형세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의 거처와 형세며, 그들의 많고 적음과 방비의 있고 없는 것을 살필 수가 있을 것이며, 또는 그들 중에 우리에게 귀부(歸附)하고자 하는 자들을 천천히 관찰하여 넌지시 관직을 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이익으로써 달랜다면, 그들 중에서 곤궁한 사람이 있으면 형세가 장차 오게 되어, 저들의 모든 정상(情狀)과 모든 계획을 모두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동두리부화(童豆里夫化)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해 왔는데, 그가 이만주의 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이 비록 정직하지는 못한 점이 있으나, 그러나, 오래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실상을 말할 것입니다. 또 제가 말하기를, '곤궁하여 귀화(歸化)하기를 굳이 구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어찌 강제로 돌려보낼 필요야 있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이 사람을 강제로 보낸다면 후에는 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후에 오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저들의 소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신의만 있다면, 그들의 배반해 온 신하와 도망해 온 관리들은 진실로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이지마는, 그들의 하는 짓으로 본다면 반드시 신의로써 우리에게 보답할 리가 없습니다. 적을 제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마는, 만약 적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저쪽 땅에서 오는 사람들을 모름지기 온갖 방법으로 오게 하고, 중한 상으로 불러 들여서, 그들을 써서 반간(反間)으로 삼고, 그들을 써서 첩자(諜者)로 삼아, 그곳의 산천의 형세가 험준하고 평탄한 것과 길의 돌고 바른 것과 멀고 가까운 것을 알아서, 번갈아 왕래하면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죄목을 들어 정벌한다고 선언(宣言)하고 저들의 반응을 살펴, 방비함이 있거든 그만두고 행하지 아니하여, 이같이 하기를 서너 너덧 번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태만하여져서 방비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후에 틈을 타서 군사를 숨겨 가서 습격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의 무리가 우리의 울타리가 된 까닭으로, 홀라온(忽剌溫)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만주를 정벌하여 그들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게 한다면, 홀라온이 옮겨 오게 되므로 변방의 걱정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은 홀라온의 사는 땅은 우리와 서로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평탄하고 험준한지도 알지 못하오며, 또 그들의 거주하는 것과 이사(移徙)하는 상태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함부로 의논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리와 형세로써 살펴보옵건댄, 홀라온이 진실로 옮겨 와서 살고자 한다면 이만주를 보기를 노예(奴隷)와 같이 여길 것이니, 어찌 이만주의 백명 남짓한 잔약하고 파리한 군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홀라온은 지금 있는 굴혈(窟穴)에 거주한 지가 몇 해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사오나, 이웃에 도적이 없고 큰 환난도 없었사온데, 그 옛 땅을 버린다는 것은 아마 그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침략하기 위하여 그 편을 이익으로 삼는다면, 지난 해 정월에 이만주에게 인도되어 와서 여연(閭延)을 침략한 일이 있었으나, 소득도 없이 돌아갔으므로, 도리어 이만주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여 욕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비록 그들이 온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이만주의 무리가 거짓으로 핑계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고, 그 실상은 오지 아니하였은즉, 이것도 또한 우리를 침략함을 이롭게 여기지 않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변경에 쳐들어와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노략하는 것이 여러 번에 이르러 그치지 않는 이만주를 우리의 울타리라고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섬 오랑캐를 보건대, 그 중에 혹은 예의(禮義)의 한 끝을 조금 아는 자가 있사오니, 그들은 예의로써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옳으려니와, 그 부모를 죽이는 것은 짐승도 이를 하지 않고, 홀로 올빼미[鴟梟]와 경짐승[獍]만이 그리 하게 되는데, 야인(野人)은 부로(父老)들을 쏘아 죽이니, 곧 올빼미와 경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의로써 야인을 대우하는 것은 올빼미와 경짐승을 예의로써 길들이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날에 송(宋)나라 양공(襄公)은 초(楚)나라 사람과 홍(泓)에서 싸우면서 적군(敵軍)을 험지(險地)에서 누르지 아니하고, 적군이 전열(戰列)을 이루기 전에는 공격하는 북을 치지 아니한다고 하다가 크

게 패전하였으므로, 춘추(春秋)에 이를 매우 폄론(貶論)하였으니, 그것은 작은 명예만 꾸미려 하여 큰 덕에는 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국과 전쟁하면서 작은 예절을 지킨다고 하여 패전을 하게 된 것은 성인(聖人)이 오히려 이를 폄론(貶論)하였는데, 하물며 올빼미와 경짐승과 같은 종류를 대우하면서 예의에만 얽매인다면, 이것은 도리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만이 이를 그르게 여길 뿐 아니라, 하늘도 또한 이를 싫어할 것입니다. 금년은 한재(旱災)가 더욱 심하므로 군사를 움직이는 일은 진실로 의논할 수가 없겠지마는, 그러나, 신은 연사(年事)의 풍년·흉년과 형세의 느즈러진 것과 급한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편안하고 고요한 것에만 습관이 되어, 무릇 이웃 도적을 대할 적에는 오직 예의만 차리려 들고 군사를 일으켜 그 죄 있는 자를 정벌하여 그들의 광포한 태도와 완강한 기세를 꺾어서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영구히 편안케 하는 계책은 미처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이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 적은 그 추장(酋長)은 평안도 연변(沿邊)의 수령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그 무리들의 수효는 평안도 작은 현(縣)의 사람보다 많지 않으며, 그 사납고 용맹스러움은 평안도 여러 부대(部隊)의 군졸들보다 능히 낫지 못하며, 그 군기(軍器)의 많음과 그것의 굳세고 날카로움은 평안도 한 고을의 저장된 병장기에 미치지 못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욕을 당함이 그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변장(邊將)이 그 적임자(適任者)가 아닌 데 있는 것이니, 진실로 그 적임자만 얻게 된다면, 도성 밖의 조그만 도적의 정벌에는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한 도(道)의 병력(兵力)으로써 능히 이를 쳐부술 수가 있을 것이오니, 그 지휘(指揮)는 반드시 다 조정에서 내려야 할 것이 아니며, 그 군졸은 다른 도(道)에까지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시기를 타서 기회에 대응할 형세가 되었다면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행하는 것도 또한 옳겠습니다. 옛날에 한(漢)나라 조충국(趙充國)이 4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구군(九郡)에 둔쳐 있은즉, 흉노(凶奴) 10여만 명이 이 소식을 듣고 물러갔으며, 당(唐)나라 이덕유(李德裕)가 나가서 검남(劒南)과 서천(西川)을 지켜서 주변루(籌邊樓)를 세우고 장의성(仗義城) 등을 쌓으니, 두쪽 변방이 점차로 두려워하여 남조(南詔)는 포로 4만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청하니, 그 일이 지극히 크고 그 공이 심히 컸지마는, 방략(方略)이 모두 조정의 의논에서 나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지금 변경의 방비는 법금(法禁)이 엄밀한 까닭으로, 변장(邊將)이 비록 기이한 계책[奇計]을 내어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앞뒤를 두려워하고 움추려서 자유스럽지 못하여, 무릇 사변(事變)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조정에 품고(稟告)하게 됩니다. 대저 기회는 잠깐 동안에 변하는데 천 리 밖에서 명령이 돌와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니, 갔다가 돌아오는 기일이 거의 달포가 넘게 되어 일의 기회는 이미 놓치게 되오니, 어찌 기이한 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모신(謀臣)과 변장(邊將)들에게 밝게 신칙하여 항상 적을 제어하고 치욕을 씻는 것으로써 일을 삼아, 이를 생각하고 이에 생각을

두어,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디어 대체(大體)를 먼저하고 고식(姑息)은 뒤로 돌리며, 여러 계책을 써서 모략(謀略)을 넓히고, 시기를 기다릴 때에는 실력을 길러서 시기를 보아 움직이게 하고, 변장과 진장(鎭將)이 만약 기이한 꾀와 좋은 계책이 있어서, 기회를 결정하고 공을 이룰 만한 형세를 이르게 할 수 있거든, 완급(緩急)을 살피고 경중(輕重)을 헤아려 먼저 군사를 조발(調發)하고 나중에 아뢰게 하되, 꼭 승리할 것을 기약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조그만 신의와 작은 예절에 구애하지 말고, 순전히 바른 도리를 써서 작은 도적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신이 또한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마땅히 군사를 움직인다면 가서 정벌한다는 의사로써 개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거듭 주장(主將)에게 명하여 출발할 때에 대중(大衆)에게 맹세하기를, '야적(野賊)이 완흉(頑凶)하여 침략하여 해독을 부린 것이 서너너덧 번에 이르러, 마침내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은 그 아비를 잃게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잃게 되었으며, 재물과 축산(畜産)이 이 때문에 텅 비게 되어, 원망하는 소리가 위로 하늘에 들리니, 성상(聖上)께서 죄 없는 백성이 작은 도적의 손아귀에 빠져 있음을 민망히 생각하사, 위로 천자(天子)에게 아뢰어 이미 윤허(允許)를 받으셨으므로, 마침내 신(臣) 아무를 명하여 삼군(三軍)을 통솔하여 거느리고 가서 나쁜 무리를 정벌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맹세하는 말을 밝게 들으라. 너희들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살펴 가리심은 하늘 뜻에 있으니, 상벌(賞罰)이 엄하고 명백하여 결단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신 아무는 친히 임금의 교명(敎命)을 받자왔으니, 교지에, '적의 괴수를 사로잡아 죽인 사람은 상으로 벼슬 5등을 승진시키고, 자제(子弟)를 죽인 자를 사로잡은 사람은 4등을 승진시키고, 억세고 용감한 적을 사로잡거나 죽인 사람은 3등을 승진시키고, 평인(平人)을 죽인 자를 사로잡았거나 죽인 사람은 수효를 조사하여 차등이 있게 승진시키고, 향리(鄕吏)·역자(驛子)·염간(鹽干)·공천(公賤)·사천(私賤) 중에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구실을 면제하고 관직으로 상주게 하며, 적인(賊人)의 가재(家財)를 모두 나누어 주게 할 것이다. 만약 전진(戰陣)에 임하여 적군과 맞설 적에,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고 앉고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라도 군령에 어긋난다면, 마땅히 진영(陣營) 앞에서 이를 죽이고 용서함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를 들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교지로써 삼군(三軍)에게 선포한다면, 사람마다 그 용기가 백배나 더하여 분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움에 나아갈 것입니다.

신은 성상의 특수하옵신 은혜를 잘못 입게 되었사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발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옵지마는, 그러나 재주가 용렬하고 식견이 천박하여 정사를 건의하여 밝힌 바가 없으며, 다만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맹세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일의 기회가 있음을 만나 혹은 어리석은 소견을 내기도 하고, 혹은 이상한 소문도 얻으면 취하고 버림을 가릴 여가도 없이 문득 위에 올려서 허튼소리나마 가려 보실까 엎디어 바라옵나이다. 신은 통분한 마음이 지극하옵기로 말씀이 지리번잡하옴을 깨닫지 못하고 성상의 위엄을 모독하였사오매, 진실로

황공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말씀을 올립니다."

하였다.

천순(天順) 7년 3월 일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신(臣) 신숙주(申叔舟),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신 권남(權擥),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신 최항(崔恒), 신 어효첨(魚孝瞻),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신 이극감(李克堪), 신 **양성지(梁誠之)** 등은 삼가 전지(傳旨)를 받들어 이에 더 붙임.

【원전】 4 집 31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세종 19년

《 세종 076 19/03/13(계묘) / 예조에서 악 · 해 · 독 · 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하다 》

예조에서 여러 도의 순심 별감(巡審別監)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악(嶽)·해(海)·독(瀆)·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경기. 나라에서 행하는 임진현의 덕진(德津)은 중사(中祀)이고, 단의 위판(位版)은 덕진지신(德津之神)이라고 쓰며, 위의 위판을 간직하여 두는 실(室)은 교지에 의하여, 단유(壇壝)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조성하되, 신주(神廚)·고방(庫房)·재실(齋室)을 아울러 조성할 것. 마전현(麻田縣)의 고려 시조 이하 4위는 중사이고, 사우(祠宇)는, 태조 신성 대왕(太祖神聖大王)은 남향이며, 현종 원문 대왕(顯宗元文大王)은 동쪽에 있고, 문종 대왕은 서쪽에 있으며, 충경왕(忠敬王)은 동쪽에 있고, 면장(面帳)과 좌자함(座子函)의 칠은 그 도로 하여금 개조할 것. 임강현(臨江縣)의 오관산(五冠山)은 소사(小祀)이고, 단의 위판은 오관산지신(五冠山之神)이라 쓰며, 적성현(積城縣)의 감악산(紺嶽山)은 소사이고, 사묘(祠廟)의 위판은 감악산지신(紺嶽山之神)이라 쓰며, 양주부(楊州府)의 양진(楊津)은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양진지신(楊津之神)이라 써서, 소재관(所在官)이 제사지내게 할 것. 해풍군(海豊郡)의 백마산(白馬山)은 단의 위판에 백마 호국지신(白馬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임강현의 용호산(龍虎山)은 사묘에 위판이 없고, 다만 쇠로 부어 만든 승상(僧像)만이 있는데, 다른 예에 의하여 위판을 배설(排設)할 것. 인천군의 자연도(紫燕島)·수심도(水深島)·용류도(龍流島)·고도(孤島), 【이상은 같은 군(郡)의 땅이다.】 송가도(松家島)·장봉도(長峰島)·검대도(黔對島), 【이상은 강화의 땅이다.】 소홀도(召忽島)·영흥도(靈興島)·독우도(犢牛島), 【이상은 남양의 땅이다.】 용매도(龍媒島), 【연안의 땅이다.】 구음도(苟陰島)·어울도(馭鬱島)·미정도(彌正島)·마전도(麻田島)·구상도(構桑島)·대인도(大忍島), 【이상은 여러 도에 있는 것으로서 소재처를 알 수 없다.】 상항의 여러 섬들은 원도(猿島)의 단에서 이끌어 청하여 치제(致祭)하였는데, 위의 여러 섬에 있는 것으로서 타관에 있는 것은 각각 소재관에 보내어 사전에 고쳐 기록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섬은 도태(淘汰)하여 버릴 것. 강화부의 마리산(摩利山)은 단의 위판에 마리산 산천지신(摩利山山川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산천' 두 글자는 삭제할 것. 가평현(加平縣)의 화악산(華岳山)은 단이 현내(縣內)의 평지에 있어, 이끌어 청하여 제사지내고 있고, 위판은 화악 호국지신(華岳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산기슭에 단을 설치하고, 또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강원도. 나라에서 행하는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쓰며, 원주의 치악산은 소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치악지신(雉嶽之神)이라 쓰며, 회양부(淮陽府)의 의관령(義

館嶺)은 소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의관령지신(義館嶺之神)이라 쓰며, 덕진 명소(德津溟所) 사묘의 위판은 덕진 명소지신(德津溟所之神)이라 써서 소재관이 제사지낼 것. 이천현(伊川縣)의 덕진 명소(德津溟所)는 단의 위판에 덕진 명소 호국지신(德津溟所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홍천현(洪川縣)의 팔봉산은 사묘의 위판에 팔봉산 대왕지신(八峰山大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대왕' 두 글자는 삭제할 것. 또 사묘가 산 위에 있어서, 대단히 험하여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 청하건대, 땅을 가려서 단을 설치할 것. 원주 관할 안의 주천현(酒泉縣) 거슬갑산(琚瑟岬山)은 사묘가 현내의 평지에 있고, 위판에 거슬갑산지신위(琚瑟岬山之神位)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위(位)' 자는 삭제하고, 다시 산기슭에 땅을 가려서 단을 설치할 것.

함길도(咸吉道). 나라에서 행하는 정평부(定平府)의 비백산(鼻白山)은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비백산지신(鼻白山之神)이라 쓰며, 영흥부(永興府)의 비류수(沸流水)는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비류수지신(沸流水之神)이라 써서, 소재관이 제사지낼 것. 영흥부의 영흥 성황(永興城隍) 사묘의 위판은 영흥 성황지신(永興城隍之神)이라 쓰고, 현덕진(顯德津)과 백두산의 단 위판은, 하나는 백두산지신(白頭山之神)이라 쓰고, 하나는 현덕진지신(顯德鎭之神)이라고 썼는데, 위의 백두산은 본국의 경내가 아니고, 현덕진(顯德鎭)은 고려 때에 혁파하여 별로 영험이 없으니, 청하건대, 모두 사전에서 삭제할 것. 말응도(末應島)·미물곶(未勿串)·성도(聲島)·북도(北島)·서도(鼠島)·저도(猪島)·고비도(古非島)·갈도(葛島)·소도(小島)·웅망도(熊望島)·송도(松島)·골성(骨城) 이상 여러 섬은 주산인 말응도의 단에 이끌어 제사지내고, 위판 열 둘에는 각각 제도지신(諸島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각각 아무 섬의 신[某島之神]이라고 쓰고, 또 한 읍내에서 치제하는 여러 섬이 많으면 10여 섬에 이르는데, 부득이하여 치제하고 있는 여러 섬 이외에, 그 나머지의 혁제(革除)할 만한 곳은 혁제할 것. 함흥부의 함흥 성황(咸興城隍)은 사묘의 위판에 함흥 성황 호국백신(咸興城隍護國伯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백(護國白)' 세 글자는 삭제할 것. 화도의 단 위판에는 화도 압병지신(花島壓兵之神)이라고 썼는데, 이끌어 청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땅을 가려서 옮겨 제사지낼 것. 의천군(宜川郡)의 소의달성(所衣達城)·백두입석(白頭立石)·원총성(遠葱城)·두총성(豆葱城)·대아성(大牙城)·내신성(內神城)·창액성(昌額城)·유촌성(柚村城)·동빌성(東伐城)·이증성(泥甑城)·만곡성(萬谷城)·백산평파(白山平波) 【이상은 있는 지면(地面)을 알 수 없다.】는 모두 이끌어서 소의달성(所衣達城)에서 제사지내는데, 위의 소의달성의 제소가 용진현(龍津縣)에 있으니, 청하건대, 용진현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여러 성은 혁파하여 없앨 것. 안변부(安邊府)의 정도(井島)·학포열도(鶴浦列島)·익곡성(翼谷城)·익곡낭성(翼谷狼城), 【이상은 본부의 땅이다.】 신도(新都)·소의달성(小衣達城)·초도(草島), 【이상은 의흥(宜興) 땅이다.】 웅도(熊島)·안도(鞍島)·흑도(黑島), 【이상은 영흥(永興) 땅이다.】 화도(花島)·산도(蒜島), 【이상은 함흥(咸興) 땅이다.】 천도(穿島), 【흡곡(歙谷) 땅이다.】 웅천

(甕遷)·외저도(外猪島)·난도(卵島), 【이상은 통천(通川) 땅이다.】 도비곶(道非串)·능도(菱島)·연도(連島)·미연도(未然島)·흑악(黑嶽)·소을별도(所乙伐島)·창성(槍城)·이산성(二山城)·실직판휴곡(實直板休谷)·직악천현(直嶽遷峴)·이악(泥嶽)·돌도(突島)·내저도(內儲島)·눌도(訥島)·구수도(狗首島)·직부도(直父島)·외흘니곤(外屹泥坤)·산산(蒜山)·낭곶(狼串)·황도(荒島)·견인도(見人島)·사지포(史知浦)·도림성(道臨城)·두광(豆廣)·황술(荒述)·증미(甑尾)·황석자(黃石子)·해성(海城)·각산의 유성(柚城)·창성(槍城)·골목액(骨木額)·송산(松山)·탄항(炭項)·관적술(關賊述)·저산(猪山)·대사간봉(大沙間峰)·이을악(伊乙嶽), 【이상은 여러 섬에 있는 것으로서 소재를 알 수 없다.】 단의 위판 59개에 각각 안변부 모도지신(安邊府某島之神)이라 쓰고, 위의 여러 섬을 이끌어서 부내에서 제사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해변 낭성포(狼城浦) 근처로 단을 옮겨서 치제(致祭)하고, 타도·타관에 있거나, 소재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섬은 이미 앞에서 의논하였음. 또 59도의 신을 한 곳에 합하여 제사하여 위판은 59인데, 전물(奠物)은 다만 소사 한 위만 베푸는 것이 심히 미안하니, 청하건대, 위마다 각각 전물을 베풀 것.

충청도. 나라에서 행하는 직산현(稷山縣)의 백제 시조는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백제 시조라 쓰고, 공주·웅진은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웅진지신이라 쓰고, 계룡산은 소사이고 묘의 우판은 종이를 바르고 계룡산지신이라 쓰고, 단양군의 죽령산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죽령산지신이라 쓰고, 위의 제사지내는 곳은 선덕 7년의 수교에 의하여 죽령산 기슭으로 옮길 것. 충주의 양진 명소(楊津溟所)는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양진 명소지신이라 쓰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할 것. 진천현(鎭川縣)의 태령산(胎靈山) 단 위판은 태령산지신이라 쓰고, 화인현의 미곡성 묘 위판은 미곡성지신(味谷城之神)이라 쓰고, 문의현(文義縣)의 양성(壤城) 묘 위판은 문의군(文義郡) 양성지신(壤城之神)이라 썼는데, 청하건대, '문의군' 세 글자를 삭제할 것. 대흥현(大興縣)의 대잠도(大岑島) 묘 위판은 대잠도 호국지신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할 것. 덕산현의 가야갑(伽倻岬) 묘 위판은 가야갑지신이라고 썼는데, 위의 신위판을 성황 위판(城隍位版)과 연하여 배설하고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사를 행하니, 청하건대, 단을 산기슭에 조정하여 치제(致祭)할 것. 서천군(舒川郡)의 웅진 명소(熊津溟所) 단의 위판은 웅진 명소지신이라고 쓸 것.

전라도. 나라에서 행하는 남원부(南原府)의 지리산은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지리산지신이라고 쓰고, 나주의 남해는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남해지신이라고 쓰고, 금성산(錦城山)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금성산지신이라고 써서, 소재관이 제사를 행할 것. 전주의 성황단(城隍壇) 위판은 전주 성황지신(全州城隍之神)이라 쓰고, 용담현(龍潭縣)의 웅진 분소(熊津墳所) 단위판은 웅진분소지신이라 쓰고, 담양부의 용진 분소(龍潭墳所) 단 위판은 웅진 분소지신이라고 썼는데, '분(濆)' 자는 사전에 의하여 '분(墳)' 자로 고칠 것. 무진군의 무등산 묘 위판은 무등산 호국백지신위(護國伯之神位)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백위 네 글자를 삭제할 것. 나주의 앙암 용진 단 위판은 앙암 용진지신(仰岩龍津之神)

이라 썼는데, 위의 제사하는 곳이 물로 백 보 가량이나 막히어, 물에 잠기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 청하건대, 높은 언덕으로 옮겨서 배설할 것.

경상도. 나라에서 행하는 울산군의 우불산(于弗山)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우불산 지신이라 쓰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할 것. 고성현(固城縣)의 상박도(上樸島)·하박도(下樸島)·욕질도(褥秩島) 단은 합하여 한 단으로 만들고, 위판은 하나는 상박도 호국지신, 하나는 하박도 호국지신, 하나는 욕질도 호국지신이라 쓰고, 위의 제사하는 곳이 세 섬에서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이 아니니, 바다에 가깝고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을 택해서 옮겨 배설하여 단을 합하고, 세 섬의 신위판을 각각 배설하고 전물(奠物)도 각각 베풀어 치제하고, 모두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할 것. 상주 남술서치봉(南述西鴟峰) 묘의 위판은 남술서치봉지신이라고 쓰고, '치(鴟)' 자는 사전에 의하여 '치(鴙)'로 고칠 것. 문경(聞慶) 관할 안의 가은현(加恩縣) 재목산(梓木山)의 묘 위판은 재목산 호국지신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하고, 본현에 합속(合屬)한 호계현(虎溪縣)의 장산(獐山) 묘 위판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니, 청하건대, 장산지신이라고 쓰고, 유후사(留後司)와 소재관에서 제사를 행할 것. 개성의 대정묘(大井廟)는 신상을 북벽에 배설하고 또 동북 벽에 자신의 그림을 배설하여 항상 음사(淫祀)를 행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우물가의 가까운 땅을 택하여 단을 설치하고, 위판에는 대정지신이라고 써서 제사를 행할 것.

황해도. 나라에서 행하는 풍천군의 서해는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서해지신(西海之神)이라 쓰고, 해주의 우이산(牛耳山)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우이산지신이라 쓰고, 장연현(長淵縣)의 아사진(阿斯津) 송곶(松串)은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아사진 송곶지신이라 쓰고, 장연현의 장산곶은 소사이고, 위판에는 장산곶지신이라고 쓸 것.

평안도. 나라에서 행하는 평양부의 평양강은 중사이고, 단의 위판은 평양강지신이라 쓰고, 기자는 중사이고, 전의 위판은 조선 시조 기자(朝鮮始祖箕子)라 쓰고, 단군은 중사이고, 고구려 시조는 중사이며, 전의 단군 위판은 조선 단군이라 쓰고, 고구려 위판은 고구려 시조라 쓸 것. 구진 익수(九津溺水)는 소사(小祀)이고, 단위 위판에는 구진 익수지신(九津溺水之神)이라 쓸 것.

위의 여러 도의 악(嶽)·해(海)·독(瀆)·산천은 묘를 세우거나, 혹은 단을 설치하고, 혹은 단과 묘를 아울러 설치하여, 사우의 간수가 혹은 많고 혹은 적고 합니다. 지금 예전 제도를 상고하면, 당나라 개원례(開元禮)에 오악(五嶽) 사독(四瀆)을 제사하는 데에 모두 단이 있고, 송나라 개보 5년에 조서를 내려 악·독과 동해·남해의 묘에 각각 본현의 현령으로 묘령(廟令)을 겸하게 하였고, 송나라 진종은 전천(전川)에 하독묘(河瀆廟)를 두게 하였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역대에 단을 설치하고 혹은 사당을 설치하여, 연혁의 제도가 같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나라에서 행하는 곳에는 사묘를 세우되, 그 단유(壇遺)를 헐고, 신주(神廚)와 고방(庫房)은 각각 두 간을 짓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곳에는

단이나 묘를 설치한 대로 따르고, 사묘가 없는 곳에는 신주를 두는 집과 신주·고방을 또한 짓게 하고, 그 단과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양인이나 보충군·공천(公賤)중에서 일소마다 각기 2호를 정하여, 부역을 면제하여 항상 간수하며 청소하게 할 것.

1. 제복(祭服)은 경기의 나라에서 행하는 제소(祭所)에는 이미 일찍이 제조하여 내려 보냈고, 그 나머지 각도는 그 도로 하여금 각사의 노비의 신공과 신세포(神稅布)를 써서 점차로 만들게 할 것.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쓰게 할 것.

1. 여러 제사[諸祀]의 의식(儀式)내에 제사의 신단(神壇)과 묘원(廟園)밖의 30보에는 땔나무와 짐승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경작(耕作)과 행인을 금하게 되어 있으니, 청하건대, 의식에 의하여 초목과 행인을 금하고, 또 소나무를 심게 할 것.

1. 신위판(神位版)의 제도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주현의 사직 신패(社稷神牌)는 높이가 2척 2촌, 나비가 4촌 5푼, 두께가 9푼이고, 좌고(座高)가 4촌 5푼, 나비가 8촌 5푼, 두께가 4촌 5푼이라.' 하였고, 《원사(元史)》에는 '사직 신위판은 밤나무를 쓰되, 바탕을 희게 하고 검게 쓴다.'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 제주의(題主儀)에는 '글씨를 다 쓰고 나서 광칠(光漆)로 거듭 칠한다.'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이미 선덕 6년에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써서, 악·해·독·산천의 위판 제도를 상정하였는데, 지금 각처의 신위판이 소나무나 혹은 가목(椵木)으로 만들고, 혹은 종이를 바르고 혹은 붉고 검은 칠을 하고, 혹은 글씨를 쓰지도 아니하여, 체제가 한결같지 아니하고, 독은 전연 만들지도 않으니, 청하건대, 규식(規式)에 의하여 개조하게 할 것.

1. 단유(壇遺)의 제도는 선덕 6년에 본조에서 상정하여, 중사인 악·해·독은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의 제도에 의하여, 방이 2장 3척, 높이가 2척 7촌이고, 양쪽에 유가 있으며, 소사인 명산·대천의 단과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단은 영성단(靈星壇) 제도에 의하여, 방이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고, 한 유에 네 군데로 섬돌을 내되, 각기 3급(級)입니다. 지금 각 고을의 제단이 고저와 광협(廣狹)이 한결같지 아니하니, 본조에서 수교한 규식에 의하여 고쳐 쌓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악·해·독·산천의 단이나 묘가 고제(古制)가 아닐 뿐더러, 국도에서 제사지내는 산천·풍운뢰우 및 선잠(先蠶)·선농(先農)에 모두 단만 있고 묘가 없으니, 외방의 악·해·독·산천에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곳으로서 사묘가 없는 곳은 반드시 묘를 세울 것이 없고, 단이나 묘를 모두 예전대로 하게 하고, 신주를 간직하는 집과 신주·고방을 짓는 것은, 인가가 멀리 떨어져서 해곡(海曲)과 심산(深山)에 비록 간수하는 사람을 정하더라도 수호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나라에서 행제(行祭)하는 곳에는 신주와 고방 각기 두 간을 풍년을 기다려서 짓고, 소재관이 제사지내는 곳으로서 신주를 두는 집과 주고(廚庫)를 짓지 않은 곳은 관사 안의 깨끗한 곳을 가려서 따로 집 한 채를 짓고, 신판과 제기를 간직하여

두되, 제사 때에 임하여 재계하고 목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지내는 곳으로 운반하게 하고, 단과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호를 택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위임하여 정하소서. 인천의 자연(紫燕) 등 12섬과 의천(宜川)의 소의달성(所衣達城) 등 13성 안변(安邊)의 정도(井島) 등 59섬과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섬과 성을 도태하여 버릴 일과, 영흥의 말응도(末應島)에 이끌어 청하여 치제(致祭)하는 여러 섬 중에 혁제(革除)할만한 곳으로서 혁제할 일은 별로 이해가 없으니, 아직 예전대로 하게 하고, 전물(奠物)의 품수(品數)도 역시 예전대로 하게 하며, 제복은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 및 무녀(巫女)·경사(經師)의 공포(貢布)와 신세포(神稅布)를 써서 점차로 만들고, 나머지는 예조에서 의논한 대로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58 면

【분류】 *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전사(前史)

세종 25년

《 세종 102 25/10/27(무신) / 황희 · 신개 · 하연 등을 불러 공법에 관해 전지의 심사 범위와 경차관 분견 여부, 양전의 실시 등을 의논하는데, 양성지 등에게도 의견을 구하다 》

황희(黃喜)·신개(申槩)·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권제(權踶)·정인지(鄭麟趾)를 불러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기를,

"각도의 전지(田地)를 1, 2년 동안에 고쳐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직은 구전안(舊田案)을 가지고 그 전품(田品)을 살펴서 먼저 5등으로 나누되,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고쳐 만들어 9등으로 조(租)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가하다면 금년에 하삼도의 전지를 전부 심사하게 할 것인가. 전라도만 심사하게 할 것인가, 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낼 경우에는 보는 것이 각각 달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 한결같지 않을까 염려되니, 따로 대신 한 사람을 보내어 도맡아 그 일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떻겠는가. 또 양전(量田)의 일은 가볍지 않으니, 금년에는 아직 금천(衿川)·수원(水原) 등지에만 시험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삼도(三道)에 모두 공법을 행하였으니, 지금 전지의 품등을 나누는 것을 단지 전라도에만 행하고 경상도·충청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조(收租)의 법이 피차 한결같지 않으니 삼도를 아울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옵니다. 다만 흉년을 당하여 따라 대신을 보내는 것이 실은 폐단이 있으니, 지금 경차관(敬差官)을 위임하여 보내어 감사로 하여금 그 일을 겸하여 맡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시험하여 양전(量田)하고자 한다면 금천(衿川)의 전지는 5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수원부(水原府)를 시험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금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또 대사헌 민신(閔伸)·집의 임인산(林仁山) 장령 조자(趙孜)·지평 신자수(申自守)·좌사간 신기(愼幾)·지사간(知司諫)·신자근(申自謹)·헌납 김순(金淳)·좌정언 윤면(尹沔)·우정언 우계번(禹繼蕃)·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직전(直殿) 이계전(李季甸)·김문(金汶), 응교 정창손(鄭昌孫)·노숙동(盧叔同), 교리(校理) 어효첨(魚孝瞻)·수찬 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송처검(宋處儉), 박사 이개(李塏)·이예(李芮)를 불러 이르기를,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제도를 고쳐 공법으로 하였으니, 삼도에 시행(試行)하겠지만, 교왕과직(矯枉過直)이 되어서 백성들이 혹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내가 이미 공법의 불편한 것도 알았고, 또 처음에 공법을 편하다고 한 것은, 공법을 행하고자 하면 전제(田制)를 바루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해는 9등을 나누고 전지는 5등으로 나누어 그 조(租)를 거두려고 하니, 또한 염려되는

것은 토전(土田)을 고쳐서 측량하는 것이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매,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우선 구전적(舊田籍)을 가지고 전품(田品)을 살펴 헤아려서 먼저 5등으로 나누게 하고,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고쳐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만들어서 해[年]의 상등·하등을 보아 9등의 세를 거두려는 것이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니, 모두 가하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전품(田品)을 나눈다면 8도가 다 그러하지마는, 금년은 우선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우선 수원(水原)·양주(楊州) 등지에 시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가."

하니, 신(伸)이 아뢰기를,

"양전(量田)을 고치면 실은 편익하오나 갑자기 행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선 양전하기 전에 먼저 전품(田品)을 나누어 세(稅)를 거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기·인산·자근·자·자수·계번은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좋은 법이니, 그 법을 행하고자 하면 어찌 작은 폐단을 헤아릴 것입니까."

하고, 순은 말하기를,

"해를 9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이 앞서 각도에서 해의 등급을 나누는데 대개는 하등 해를 중등 해로, 중등 해를 상등 해로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나누어 9등으로 만들게 하더라도, 누가 능히 연분(年分)을 정하여 살피어 9등을 만들겠습니까."

하고, 면은 말하기를,

"이것은 비록 좋은 법이라도 흉년 때에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만리·계전·문·창손·숙동·효첨·위지·성지·처검·개·예는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급급히 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풍년을 기다리고, 또 해를 9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하니 다만 3등 혹은 5등으로 나누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4 집 519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세종 26년

《 세종 106 26/11/16(신묘) / 집현전에 명하여 장차 중궁의 모친이 죽었을 때 중궁의 상례에 대해 의논하게 한 후 양성지 등에게 상례제도를 의논하여 올리라고 명하다 》

임금이 진양대군(晋陽大君) 이유(李瑈)에게 명하여 집현전에 전지하기를,

"중궁(中宮)의 아버지가 죄를 받아 죽었는데, 처자(妻子)는 관노비(官奴婢)가 되고, 태종(太宗)께서 의를 끊어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중궁으로 하여금 상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뒤에 태종의 유언(遺言)으로써 그 어머니의 관비(官婢)된 문서를 삭제하여, 설날이 되면 중궁이 혹 그 집에 거둥하여 헌수(獻壽)도 하고, 혹 궁중에 맞아 들여 모자간의 예절을 행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그 모친의 병이 위독하니, 만약 상사가 난다면 중궁이 상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전(古典)에 상고하여 의논해서 올리라."

하니,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 직전(直殿) 김문(金汶)·이계전(李季甸),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노숙동(盧叔仝) 등이 의논하기를,

"신들이 삼가 상고하오니 한(漢)나라 상관 걸(上官桀)·상관 안(上官安)의 종족이 멸망당할 때에 황후(皇后)는 나이 적어 공모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므로 폐위되지 않았는데, 황후의 모친이 죽으매 무릉(茂陵)의 동곽(東郭)에 장사하고, 그 원읍(園邑)에 2백 집을 두어 장승(長丞)으로 받들어 지키게 하고, 황후가 자기 사사 종들을 시켜서 걸과 안의 무덤을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그윽이 생각하오니, 부인이 남편의 집에 시집가면 그 친정 어버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오며, 더구나, 지금 지존(至尊)께서는 이미 의리로써 사은(私恩)을 끊어서 예절을 차릴 수 없사온데, 중궁은 지존과 한몸으로서 종묘(宗廟)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면서 어떻게 혼자서 그 모친의 상례를 행하겠습니까. 전일(前日)에 태종께서 하신 처치는 권변(權變)으로서 중용에 맞는 것이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전(致奠)하는 일 같은 것은 한(漢)나라 상관 황후(上官皇后)의 사사 종들로 뫼를 지키게 한 고사(故事)에 의하여 사사로 그 정례(情禮)를 표하게 되면 거의 사은(私恩)과 공의(公義)가 함께 맞아서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기년상(期年喪)은 대부(大夫)에까지 이른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상복(喪服)은 기년(期年) 이하는 제후(諸侯)에서 끊고 대부(大夫)에서 강등(降等)한다.' 하였고, 《의례(儀禮)》의 상복도(喪服圖)에는 '방계(傍系)의 기복(期服)은 끊는다.'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동진(東晋)의 왕삭지(王朔之)가 묻기를, 「지존(至尊)이 왕후의 부친에 복(服)이 있는가.」 하니, 범영(범寧)이 대답하기를, 「왕이 천하(天下)에 대한 것과 제후가 나라 안에 대한 것이 그 뜻이 다를 것이 없다.」 하였는데, 지금도 그 말을 대개 준용할 만하다.' 하였고, 또 '효무 황제(孝武皇帝)

태원 원년(泰元元年)에 왕진군(王鎭軍)이 죽으니 복제(服制)를 3일로 하였다.' 하였고, 또 《개원례(開元禮)》에는 황후가 친부모가 죽으면 거애(擧哀)하고 시마 3월(緦麻三月)의 복(服)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윽이 《중용(中庸)》과 《의례(儀禮)》에 있는 것으로 상고하건대, 황후 부모의 상례에 대하여 삼대(三代) 이전에는 필시 그에 관한 제도가 없었고, 진(晋)나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3일복(三日服)의 의논이 있었고, 또 당나라 때에 거애(擧哀)와 시마(緦麻)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전(通典)》에 의하면 공족(公族)의 죄악에 복을 끊는다는 의논이 있고, 한나라 상관 왕후는 사사 종들로 하여금 걸(桀)과 안(安)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무리 지친이라도 죄악이 있어서 의리가 끊어졌으므로 정례(情禮)를 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날 초상 때에 이미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끊어서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정례(情禮)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중궁께서 평일에 모친을 만나 본 것은 일시적 사사 은정이매, 의리에 해될 것이 없겠으나, 복제와 장례에 있어서는 일이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이니 앞과 뒤를 달리 했다 같게 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왕세자가 우의정 신개(申槩)·좌찬성 하연(河演)·도승지 이승손(李承孫)·집현전 직제학 신석조(辛碩祖)·직집현전 김문(金汶)·이계전(李季甸)·응교 노숙동(盧叔仝)·수찬 **양성지(梁誠之)** 등을 불러 보고 임금의 분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심 정승(沈政丞)이 죄를 받은 뒤에 그의 친족은 다 노비에 몰입(沒入)하고, 그 집을 몰수하였더니, 그 뒤에 대신들이 그 집과 재물을 돌려주기를 청하므로 태종께서 허락하셨고, 또 태종께서 내리신 유교(遺敎)가 있어서, 병진년에 가뭄으로 인하여 심씨의 관비(官婢)된 문서를 삭제해 주자고 말하는 이가 있기에 허락하였으니, 그 죄는 이미 완전히 씻어졌다. 지금 만약 외고집으로 법에 얽매여서 상례(喪禮)를 행하지 못하면 너무 박하지 아니한가. 그러니 중궁의 상례 행할 제도를 의논하여 올리라."

하니, 신개 등이 아뢰기를,

"죄를 받은 뒤에 태종의 유교를 받들어 이미 그 죄를 용서하고 천적(賤籍)까지 삭제하였으며, 또 부인(夫人)의 직첩(職牒)까지 받아서 대궐에도 출입하였으니, 신들은 중궁중께서 행상(行喪)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옵니다."

하고, 이승손과 김문 등의 의논은 전(前)과 같았다. 노숙동이 다시 아뢰기를,

"그 죄가 비록 씻어졌다 해도 선왕께서 이미 끊으셨으니, 중궁은 지존(至尊)과 일체(一體)로서 종묘를 모시고 제사로 받드시는 터이어늘, 지존께서 그 정례(情禮)를 다하지 못하시는데 중궁께서 어떻게 행할 수 있사오리까."

하였다. 세자가 이런 말을 가지고 위에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동 등이 강상(綱常)으로써 말하는 것은 이치가 있을 듯하나, 그러나, 그것은 변통성 있는 의리

를 생각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중궁이 상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정리(情理)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저 어미가 아비에게 쫓겨나면 마땅히 복(服)을 강등(降等)함은 예로부터 제도가 있는 것이니, 대부인(大夫人)이 비록 용서를 받지 못하고 천안(賤案)에서 삭제되지 못했다 할지라고, 중궁이 그 어버이가 아니라고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상례를 행하는 것이 옳겠다. 다시 의논해 보라."

하니, 신개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고, 이승손·김문 등은 아뢰기를,

"아비에게 쫓겨난 것과 임금에게 죄를 얻은 것이 그 사이에 차이가 있사오나, 그러나, 천안에서 삭제되지 못하였으면 평인(平人)이라면 오히려 상례를 행할 수 있겠으나, 중궁은 지존의 배필이시니 지존과 한몸이온데, 대부인이 태종께 득죄하였은즉 아비에 쫓겨난 어미와 다를 것이 없사오니, 상례를 행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다시 그대로 위에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장(國葬)이나 거애(擧哀)나 조상(弔喪) 같은 행사들은 나로서 하지 않겠으나, 중궁은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하고, 집현전에 명하여 황후로서 상례(喪禮) 행하는 옛 제도를 상고하여 올리게 하고, 이어서 의정부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게 하니, 영의정 황희가 의논하기를,

"이미 죄를 용서하였으니 왕비는 의리상 상례를 행하여야 하며, 국장으로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나이다."

하고,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권제(權踶)·이숙치(李叔時) 등이 의논하기를,

"상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며, 국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원전】 4 집 59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세종 28년

《 세종 114 28/11/08(임신) / 《태조실록》을 어효첨과 양성지로 하여금 초록하여 바치게 하였다 》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내전(內殿)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첨입(添入)하게 하니,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얕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령하여 내전(內殿)에 들여오게 함을 돌리고, 춘추관 기주관(記注官)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記事官)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

【원전】 4 집 711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세종 29년

《 세종 115 29/02/16(무신) / 의주 상정관이 관복 길흉의 제도를 바친 데 대하여 양성지 등이 의견을 말하다 》

이 앞서 의주 상정관(儀注詳定官)이 사왕(嗣王)의 즉위(卽位)하는 의식을 찬술(撰述)하면서 관복(冠服) 길흉(吉凶)의 제도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기를,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붕어(崩御)하매, 강왕(康王)은 마면(麻冕)·보상(보裳)을 입고,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은 마면(麻冕)·의상(蟻裳)을 입었으며, 강왕이 이미 고명(顧命)을 받고 나가서 응문(應門) 안에 있는데 제후들이 들어와서 재배하고 나가니, 강왕이 상복(喪服)을 도로 입었습니다.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삼년(三年)의 상(喪)에 이미 성복(成服)했는데, 이를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은 어느 때에도 옳을 것이 없다. 태사(太師)가 책명(冊命)을 받들어 왕에게 상차(喪次)에서 주고, 제후들은 들어와서 노침(路寢)에서 곡(哭)을 하고 왕을 상차(喪次)에서 뵈옵고, 왕은 상복 차림으로 교계(敎戒)를 받아야 할 것이니, 성인(聖人)이 다시 나더라도 이 말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며, 반자선(潘子善)이 소씨(蘇氏)의 설(說)을 물으니, 주자(朱子)가 대답하기를,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예절은 사서인(士庶人)과 같지 않으니, 대개 세대(世代)를 바꾸어 왕위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마땅히 그 예절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왕후(王侯)는 나라로써 집을 삼게 되니 비록 선군(先君)의 상(喪)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平服)으로 입게 되는 것이다.' 하였으며, 추씨(鄒氏)는 말하기를, '소씨의 설(說)은 곧 예절의 정도(正道)요, 주자의 설(說)은 곧 예절의 권도(權道)이니, 만약 나라에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를 사용하여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개유(凱覦)하는 마음을 근절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두 가지 설(說)을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주자(朱子)는 또 말하기를, '강왕(康王)이 참최(斬衰)의 상복을 벗고 곤면(衮冕)을 입은 것이 예절에 있어서는 그릇된 것인데, 공자(孔子)께서 이를 취하였으니 또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사 예법(禮法)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며 이 직책에 당했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廢棄)했을 것이다.' 고 하였으며,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주자의 설(說)은 당제례직(當制禮職) 1조(條)는 진실로 소씨(蘇氏)의 설을 주장했으나, 답반자선(答潘子善) 1조(條)는 반드시 소씨의 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다만 두 가지 설(說)이 어느 것이 먼저 한 말이며, 어느 것이 뒤에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들 둘 다 그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하연이 아뢰기를,

"마면·보상의 제도는 뒷세상에 전하지 않았으며, 한(漢)나라로부터 역대(歷代)의 새 임금이 제위(帝

位)에 오를 적에는, 면복(冕服)을 입기도 하고 혹은 길복(吉服)을 입기도 하여, 그 제도가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 새 황제께서 면복 차림으로써 고명(顧命)을 받고 제위(帝位)에 오르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조복(朝服)을 착용하였으니, 꼭 주자(朱子)의 이른바, '비록 선왕(先王)의 상(喪)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平服)을 입는다.'는 뜻이오니, 원컨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황희·우찬성 김종서·좌참찬 정분·우참찬 정갑손이 아뢰기를,

"주 왕가(周王家)의 마면(麻冕)은 그 길복을 조금 변한 것인데, 그 후로부터 혹은 길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면복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상(初喪)에 순전히 길복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왕위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큰일인데 순전히 흉복(凶服)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오니, 길복과 흉복의 중간을 참작하여 사군(嗣君)은 현곤포(玄袞袍)와 익선관(翼善冠)을 사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집현전(集賢殿)에 전지하기를,

"상복(喪服)의 길복과 흉복에 관해서는 소씨(蘇氏)와 주씨(朱氏)의 설(說)이 있으니 진실로 경솔히 논정(論定)할 수가 없으며, 추씨(鄒氏)의 설(說)도 또한 정설(定說)은 되지 못한다. 지금 현곤포·익선관을 사용하자는 의논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선관과 현곤포는 제도가 매우 간략하니 본디 평상시에 일하고자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주 큰 중대한 일인데 평상시의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 직금용장(織金龍章)과 자삼(紫衫)에 비교하면 무엇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는 이 예절은 옛사람도 결정하기를 어렵게 여겼으니,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厚)하게 한데 실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행하지 않은 예절을 한 때에 참작하여 결정하고 나서, 뒷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상(不祥)함을 비난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부교리(副校理) 김예몽(金禮蒙)·이현로(李賢老), 수찬(修撰) **양성지(梁誠之)**·성삼문(成三問), 부수찬(副修撰) 정창(鄭昌)·이예(李芮), 박사(博士)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이 아뢰기를,

"소씨(蘇氏)는 비록 강왕(康王)의 일로써 예절에 어긋났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주자(朱子)와 섭씨(葉氏)·여씨(呂氏)·진씨(陳氏)가 모두 반드시 소씨의 설(說)을 취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이 성덕 원로(成德元老)로써 국사(國事)를 맡아 보았으니, 국가의 큰일에는 반드시 서로 되풀이하면서 자세히 의논하였을 것이며, 결단코 바쁘게 서둘러서 실례(失禮)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후에 한(漢)나라·당(唐)나라의 새 군주가 제위(帝位)에 오를 적에는 모두 책명(冊命)의 예절을 행하면서 군주와 신하들이 길복을 사용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면복(冕服)을 사용하니, 원컨대 성주(成周)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여 하소서."

하고, 직제학 김신민(金新民)·응교(應敎) 최항(崔恒)·교리(校理) 신숙주(申叔舟)는 아뢰기를,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 예절은 진실로 마땅히 엄격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바야흐로 슬퍼서 가슴을 치고 뛰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은 인정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유(先儒)의 설(說)이 같지 않은데, 추씨(鄒氏)가 이를 절충(折衷)하여 소씨(蘇氏)의 설로써 예절의 정도(正道)라 하고, 주자의 설로써 예절의 권도(權道)라 하면서 두 가지 설(說)을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을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대개 소씨의 설을 적당하게 여겼으나 주자의 설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權道)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설(說)을 살펴본다면, 두 분의 설(說)은 분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결정된 것입니다. 대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정도(正道)를 지켜서 시행해야 될 것인데 어찌 권도를 따르겠습니까. 하물며 선군(先君)의 상복(喪服)을 입고 선군의 명령을 지키면서 또 하필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은 뒤에야 예절에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기를, 사군(嗣君)이 왕위에 오르면 마땅히 흰 의복을 입어야 될 것이니, 비록 흰 의복이라도 왕위에 오른 예절에 있어서는 무엇이 엄격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직제학 이계전(李季甸)과 박사(博士) 한혁(韓奕)은 아뢰기를,

"천하의 도리는 상경(常經)도 있고 권도(權道)도 있으니, 상경이란 것은 만세(萬世)의 상도(常道)이고 권도란 것은 한 때의 용법(用法)입니다. 강왕(康王)이 면복(冕服)을 사용한 것은 한 때의 권도에서 나온 일이고 만세에 변경할 수 없는 상경(常經)은 아닙니다.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즈음에 그때의 적의(適宜)한 것으로 인하여 권도의 예절을 행하는 것은 옳겠지마는,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을 만드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주자(朱子)가 다만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살펴본다면, 가령 예법(禮法)을 제정하는 직책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으로써 만세 통행(通行)의 전례(典禮)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傳旨)에, '그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厚)하게 한데 실수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한 군데로 귀착되는 의논입니다.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흉복을 입는 것은 예절의 정상(正常)인데, 뒷세상 사람이 어찌 그것을 불상(不祥)한 일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반드시 흉사(凶事)를 무릅쓰고 길복을 입는 것을 상서[祥]라고 함은 실상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사오니, 청하옵건대 소씨(蘇氏)의 설을 따르소서."

하고, 응교(應敎) 어효첨(魚孝瞻)은 아뢰기를,

"경상(經常)과 권도(權道)는 진실로 모두 성현들의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을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예로부터 변례(變禮)를 제정하여 만세(萬世)에 법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설사 예절을 제정하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니, 이것

은 변경할 수 없는 정론(定論)입니다. 만약 예절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경상(經常)에 의거하여 법을 만들어야만 될 것이고, 그 예절의 변경은 진실로 마땅히 때에 따라서 중도(中道)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변례(變禮)를 제정하여 만세(萬世) 통행(通行)의 예절을 만들고자 한다면, 혹시 뒷세상 사람의 평판을 일으킬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교리(校理) 이석형(李石亨)은 아뢰기를,

"예절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성주(成周)의 즈음에 지극히 성대하고 지극히 구비하여 뒷세상에서 이를 능히 비평할 수 없으니, 강왕(康王)의 마면·보상(麻冕黼裳)의 제도를 참작하여 성복(盛服)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변례(變禮)를 보이고서 흉복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선군(先君)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절을 존중하여 현곤포와 익선관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고서 주악(奏樂)에 무도 산호(舞蹈山呼)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뒷세상의 통행(通行)하는 전례(典禮)를 삼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하연·김종서·정분·정갑손과 예조 판서 정인지, 공조 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권맹경(權孟慶),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 참판 민신(閔伸),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조 참판 유의손(柳義孫)이 의논하여, 마침내 면복(冕服)으로써 결정을 하였다.

【원전】 5 집 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식생활(食生活) / *역사-고사(故事)

세종 30년 《 양성지 - 세종 30년 .... 2 건 》

세종 120 30/05/09(계사) / 병축의 아내의 상사에 대해 양성지 등에게 의논하다
세종 120 30/05/15(기해) / 지대구군사 이보흠의 사창 사의에 대해 양성지 등 집현전의 의견을 참고케 하다

《 세종 120 30/05/09(계사) / 병축의 아내의 상사에 대해 양성지 등에게 의논하다 》

처음 종실(宗室)의 이담(李湛)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씨가 죽으매 백씨의 소생인 이효손(李孝孫)이 상(喪)을 입지 않았다. 이씨의 소생인 이성손(李誠孫)이 헌부(憲府)에 고하니, 헌부에서는

"병축(並畜)의 아내라고 하여 가리켜 아무 어머니라 할 수 없다."

하여, 예조로 하여금 법을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도 말하기를,

"예전 제도가 없으니 억측으로 의논하기 어렵다."

하므로, 이때에 이르러 세자에게 명하여 도승지 이사철(李思哲)·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을 인견하고 물으니, 사철은 말하기를,

"입법하기 전에 똑같이 얻은[並畜] 아내는 아내라고 통칭하니, 효손(孝孫)이 마땅히 3년복을 입어야 하고, 또 사당에 부제(祔祭)하고 종실(宗室)에서는 각각 그 복대로 입고, 조의(弔儀)·부의(賻儀)·치제(致祭)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고, 계전(季甸)은 말하기를,

"집에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천하의 정한 도리이니, 병축(並畜)의 아내라도 일체로 의논할 수 없사오나, 효손이 또한 복을 입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년상(朞年喪)을 입는 것이 마땅하고, 조의·부의·치제와 종실이 각복 기복(各服其服)하는 것과 사당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신은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매, 세자가 말하기를,

"만일 3년복을 입으면 마땅히 사당에 부제(祔祭)하여야 한다."

하니, 계전(季甸)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禮)의 큰 절문(節文)이어서 용이하게 의논하여 정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와 집현전(集賢殿)으로 더불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이에 예조 판서 허후(許詡)·참판 유의손(柳義孫)과 계전(季甸)은 아뢰기를,

"예(禮)에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지 아니하고, 대부(大夫)는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정한 도리입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두세 아내를 함께 얻은 것은 오로지 기강(紀綱)이 무너져서 예를 어기고 분수를 범한 일이고, 처음부터 국가의 정(定)한 제도가 아닙니다.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존비(尊卑)가 상등(相等)한 병축(並畜)의 아내는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을 분간하여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되, 노비(奴婢)는 여러 아내의 자식에게 평균하게 나누어 준다.' 한 것 같은 것은 특히 전·후처의 자식이 서로 적(嫡)을 다투기 때문에 우선 권의(權宜)의 법을 세워서 한 때의 폐단을 구제한 것이고, 만세에 통행하는 정전(正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간(分揀)이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예(禮)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의리로 연유한 것입니다. 또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치고, 노비를 고르게 나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작과 전토는 국가에서 주는 공기(公器)이고, 노비(奴婢)는 한 집에서 서로 전하는 사사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제(服制)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공법(公法)이니, 《육전(六典)》에 비록 논급하지 않았더라도 만일 의논하여 정한다면 어찌 노비(奴婢)를 가지고 예를 삼을 수 있습니까. 두세 아내에게 병행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담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함께 소생이 있으나, 백씨는 종신토록 함께 살아 집을 차지하여 봉제사를 하였고, 이씨는 오랫동안 하방(遐方)에 있어서 원래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죽으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두 아내의 아들이 똑같이 3년상을 입고, 남편의 족당(族黨)도 모두 해당한 복을 입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치부(致賻)·치제(致祭)하고, 백씨의 아들 효손(孝孫)은 마땅히 사당에 봉사(奉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옛날에 왕비(王悲)가 한(漢)나라 말년을 당하여 경사(京師)에 계책을 올리다가, 오(吳)나라·위(魏)나라가 분단되어 막힘을 만나서, 처자는 오나라에 있고, 자신은 위나라에 머물러 있어 다시 아내를 맞아 창(昌)을 낳았는데, 뒤에 비(悲)의 먼저 아내가 죽으매, 창(昌)이 상(喪)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복을 입기를 청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의 크게 금하는 것이니, 창(昌)이 만일 전 어머니를 추복(追服)하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버이를 내치는 것이고, 두 적(嫡)의 예(禮)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쟁단(爭端)을 열어놓고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교훈이 될 수 없으니, 창(昌) 등은 마땅히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왕비의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오나라에 있는 아내가 이미 먼저 장가든 아내이고, 의리를 잡아서 절개를 지켰어도 오히려 아울러 높이어 추복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이겠습니까.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소생모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비의 후취한 아내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침이라 이미 불가하거늘 하물며, 몸이 제사를 주장하는 적자(嫡子)가 되어 아비의 후처의 상을 입고, 조상의 3년 동안의 제사를 폐하면 더욱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禮)에 첩모(妾母)를 위해서도 복(服)을 입는다 하거늘, 하물며 아비의 똑같은 아내에게 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손이 아직 권전(權典)에 따라서 재최 기년(齋衰朞年)을 입는 것이 정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만일 기년복을 입는다면 첩모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나,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율문(律文)에는 첩모를 위하여 비록 기년복을 입으나, 《가례(家禮)》에는 시마(緦麻)만 입고, 국제(國制)에도 다만 30일의 휴가만 주니, 무슨 혐의쩍을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소생의 어미라도 만일 아비가 살아있거나, 혹 내쫓김을 당하면 기년상을 입는데, 지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음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또 부당(夫黨)의 복으로 말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월례 범분(越禮犯分)의 아내가 되었으니, 예관(禮官)이 법에 의거하여 제도를 의논하는 데에는 어찌 감히 틀린 것을 본받아서 정적(正嫡)에 견주겠습니까. 하물며 사제(賜祭)·치부(致賻)하는 것은 임금의 은수(恩數)이니, 병축(倂畜)의 두 아내에게 더욱 아울러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손이 봉사하는 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제주(題主)할 즈음에 무슨 어미라고 호칭(號稱)하겠습니까. 비(妣)라고 하자니 친어미에 의심스럽고, 계비(繼妣)라고 하자니 그 어미가 내침을 당한 것처럼 혐의스러우니, 이씨를 사당에 부제(祔祭)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억지로 쇠란(衰亂)한 때의 일을 인습하여 월례 범분(越禮犯分)한 아내를 아울러 두 적(嫡)으로 인도하여 사제(賜祭)·치부(致賻)와 종친(宗親)의 복과 사당에 봉사하는 것을 일체로 시행한다면, 이미 《예경(禮經)》의 실린 것이 아니고, 또 《육전(六典)》의 본의가 아니니,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집현전 응교 어효첨(魚孝瞻)의 의논도 이와 같고, 도승지 이사철(李思哲),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 직제학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 응교 신숙주(申叔舟), 교리 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 부교리(副校理) **양성지(梁誠之)**, 수찬 정창(鄭昌)·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부수찬(副修撰) 이승소(李承召)·서거정(徐居正), 정자(正字) 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예(禮)에는 정(正)과 변(變)이 있으니, 만일 일의 난처한 것을 만나면 예가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大夫)가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예의 정(正)이요, 병축(並畜)의 두어 아내를 아울러 아내라고 통칭하는 것은 예의 변(變)입니다. 고려 말년에 사대부가 두세 아내를 아울러 얻어서 드디어 풍속이 되었는데, 국초에도 그대로 인습하여 마지않다가, 영락(永樂) 11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을 세우고 한계를 정하여, 무릇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를 얻은 자는 먼저 아내로 적처를 삼게

하되, 본년 이전에 아울러 얻은 자는 전후를 논하지 않고 다만 존비가 상등한 것으로 아내라고 통칭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당시에 나라에 정한 제도가 없고 습관 풍속이 인습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고, 한두 사람의 월례 범분한 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하여 한 때 권의(權宜)의 변례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국가에서 밝게 금장(禁章)을 세워 두 아내를 병축(並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도를 넘고 예를 참람하게 하였다면 월례 범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마는, 이담(李湛)의 일은 온 세상이 모두 다 그러하니 습속(習俗)을 죄주는 것이 가하지마는, 유독 담(湛)에게만 흐르는 풍속에서 뛰어나지 못하였다고 죄를 돌린다면 불가할 듯합니다. 가령 취처(聚妻)하는 데에 친영(親迎)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은 우리 습속의 폐단인데, 지금 만일 친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례(正禮)로 하지 않았다고 한두 사람에게만 죄를 돌린다면 어찌 이것이 옳다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변례(變禮)를 만들어서 모두 아내로 이름하여 《육전(六典)》에 실었으니, 경중(經重)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가 이미 아내로 얻었고, 국가에서도 아내로 논한데다 자식도 또한 생시에 어머니로 섬겼으니, 어찌 죽은 뒤의 그 복(服)만을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담(湛)이 이씨에게 장가든 것이 입법하기 전에 있었으니, 백씨·이씨가 원래 존비의 혐의가 없은즉 효손이 이씨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어야 하고, 사당에 부(祔)하는 것도 의심이 없고, 이미 담(湛)의 처가 되었으니, 부당(夫黨)에서 각각 그 복을 입는 것도 의심이 없으며, 또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는 임금의 은수(恩數)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일 은혜가 있는 것이면 비록 서얼(庶孼)이라도 미쳐 가는데, 하물며 이미 담의 처가 되었으니, 사제와 치부가 더욱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두 아내에게 아울러 행하는 것으로써 혐의를 하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육전등록(六典謄錄)》의 「함께 봉작(封爵)할 수 없지만, 그 전토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에 두 적처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뜻이다.'고 하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오로지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과 동거하고 않은 것으로 분간을 한 것이요, 두 적처의 혐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작을 봉하고 전토를 준 것으로 적(嫡)을 삼는다면 정적(正嫡)은 마땅히 선후로 중함을 삼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한 때의 은정(恩情)으로 구별을 하겠습니까. 입법한 뜻은 대개 생각하기를 고루 아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에서 은정이 중한 것을 택하여 다르게 한 것뿐이요, 유독 한 사람을 가리켜 적처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뒤에 장가든 아내를 이미 월례범분한 아내라고 말한다면 적처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은정의 얕고 깊은 것에 따라 후처도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때가 있으니, 아울러 봉하고 전토를 주지 못하는 것은 예에 두 적처가 없는 의리에 연유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과 뒤가 서로 어그러져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왕창(王昌)의 일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의논하는 사람이 혹은 복을 입어야 한다 하고, 혹은 입지 않아야 한다 하고, 혹은 각

각 그 어미의 복을 입어야 한다 하여 여러 의논이 분운(紛紜)하였으나, 그 일은 이와 같지 않으니 의거하여 증거를 삼을 수 없는가 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의 소생모가 아직 살아 있으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3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것이라.' 하지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효손이 이씨 보기와 성손(誠孫)이 백씨 보기가 다 같이 아비의 아내인데, 만일 효손이 스스로 자기 어미를 내치는 것을 혐의하여 이씨의 복을 입지 않으면, 후일에 성손이 또한 어찌 백씨의 상을 입어서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형제가 서로 길가는 사람이 되어, 아비의 아내를 그 어미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정리에 가깝겠습니까. 생시의 병축(並畜)은 이미 적첩(嫡妾)의 분간이 없음이니, 죽은 뒤에 상을 입는 것이 어찌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우선 권전(權典)에 따라서 재최(齋衰) 기년을 입어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첩모(妾母)는 다만 30일 휴가만 주니 이것과는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기년(朞年)은 율문(律文)의 첩모(妾母)의 복인데, 지금 이씨는 첩모가 아니니 까닭없이 복을 감등하면 의리에 미안한 것입니다. 대개 첩이 아니면 적(嫡)이고 적이 아니면 첩이어서, 반드시 여기에 하나는 차지할 것입니다. 이미 효손이 적모 3년의 복을 입을 수 없다 말하고, 또 첩모의 30일 휴가에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적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나가나 물러가나 의거할 데가 없어서, 예전 법제에 없는 복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 불가할 듯합니다.

혹은 또 의심하기를 제주(題主)할 때에 칭호가 곤란하다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모(前母)·계모(繼母)의 봉사(奉祀)하는 칭호가 역시 선현이 정한 것과 고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대부의 집에서 의리로 일으켜서 칭호를 정한 것이니, 어찌 홀로 여기에서 칭호가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제사를 폐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두 어미를 아울러 부묘(祔廟)할 수 없다.' 하는데, 가령 백씨가 무후하고 성손이 봉사(奉祀)한다면 이씨로 부묘하겠습니까, 백씨로 부묘하겠습니까. 이씨로 부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아비의 전처를 내치는 것이고, 백씨로 부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것이니 부득불 아울러 부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손이 이씨에게 대하여서도 성손이 백씨에게 대하여서와 같으니, 어찌 그 사이에 경중을 따져서 사당에 부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저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에서 크게 금하는 것이니, 국가에서 그때에 당하여 대의(大義)로 판단하여 결단코 먼저 장가든 아내로 적처를 삼았다면 오늘에 이런 의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입법을 하여 통하여 아내라고 이르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분별하면 법을 세워 신(信)을 보이는 의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세에도 장애되는 것이 많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미 해를 제한하여 정한 법이 있으니 만세에 통행하는 법이 아니오매, 원래 쟁단을 열어 놓고 문란을 조장할 근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두 가지 의논을 가지고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예관의 의논이 옳으나 《육전등록(六典謄錄)》 선왕(先王)의 정제(定制)에 비록 두세 아내라도 모두 적처로 허락하였으니, 무릇 상제(喪制)에 있어서 어찌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철(思哲) 등의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하였다. 계전(季甸)이 또 불가한 것을 조목조목 진달하였는데,

"1. 천하의 일이 경(經)과 권(權)에 지나지 않으니, 경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정도(正道)이고, 권이라는 것은 변하여 중도를 얻는 것입니다. 비록 입법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삼강(三綱)·오상(五常)은 만고에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입법한 연후에야 강상(綱常)이 바른 것을 얻게 되겠습니까.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상을 어지럽힌 것을 변하여 중도를 얻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비록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선왕의 정제(定制)가 두세 아내라고 모두 적처로 허락하였으니, 무릇 상제(喪制)를 어떻게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하자마는, 두세 아내가 귀천이 모두 같아서 정확하게 아무를 가리켜 적(嫡)이라, 아무를 가리켜 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가의 노비(奴婢)는 고루 나누게 하였으니, 이것은 특히 한 집의 일이고, 봉작(封爵)과 급전(給田)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에게만 주니, 이것은 국가의 공론이 변으로 중도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상제를 일체로 시행하면 《육전(六典)》의 뜻과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변으로 중도를 얻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등록(謄錄)》은 한때의 일이겠습니까.

1. 《예기(禮記)》에, '소공(小功)은 추복(追服)하지 않는다.'는 주(註)에, '정복(正服)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정복(正服)이 아닌데 종친(宗親)이 추복하는 것은 또한 미안할 것 같습니다.

1. 계모(繼母)를 사당에 부묘하는 것을 장자(張子)는 말하기를, '한 당(堂) 안에 어떻게 두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가. 첫째 아내로 부묘하고 계실(繼室)은 따로 한 사당을 세우는 것이 가하다.' 하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무릇 배우(配耦)는 다만 한 사람을 쓰는 것이니, 봉사하는 사람이 재취의 소생이면 곧 소생모로 배향하고, 만일 재취가 자식이 없으면 혹 딴 자리에 부(附)하라.' 하였으니, 대개 계실(繼室)은 부모를 봉양하고 집을 잇고 제사를 받들고 후사(後嗣)를 잇는 데에 없을 수 없으니, 그 예의 바른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데, 정자·장자의 의논이 이와 같이 같지 않다가 주자(朱子)에 이른 연후에 함께 부묘한다는 의논이 정하여졌으니, 병축(並畜)의 두세 아내를 변(變)으로 중도를 얻었다 하여 사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일 아울러 부묘하기로 의논이 정한다면 집을 차지하고 제사를 받드는 먼저 아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후처의 제사를 받들게 되니, 변으로 중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의논이 이와 같고, 정부(政府)의 의논이 또한 이와 같고, 삼년상을 입는 것이 또한 후한 일이니, 복을 입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마는 함께 사당에 부묘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

합니다. 신이 제 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예에 어긋나면 후세에 비방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세자(世子)를 명하여 계전(季甸)을 인견하고 인하여 내제서(內製書)를 보이고 말하기를,

"이 글이 네 뜻과 같다. 그러나 전지(傳旨)를 내려 의논하면 반드시 내 뜻이 향하는 것을 보아서 부화(附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네 이름을 써서 네 의논처럼 하여 문신(文臣) 6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두세 아내를 모두 적처로 논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아들을 위하여 말한 것이다. 만일 그 바른 것을 의논하려고 하면 비록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족세(族勢)라든지 성례(成禮)라든지 처음부터 경중의 분별이 없으니, 지금 모씨(某氏)의 아들을 첩자라 하고, 모씨(某氏)의 아들을 적자라 하면, 그 사람의 억울한 것뿐 아니라, 당시에 쓰이고 있는 선비가 사세가 부득이하여 내쫓기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이 권제(權制)를 세웠으니, 그 아내의 봉작(封爵)은 둘로 할 수 없어서 다만 한 사람에게 베풀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국가의 입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작을 명한 것이 다만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처(正妻)가 되는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니, 마땅히 부묘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아비에게 은의(恩義)가 이미 경하고 국가에서도 작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비록 정모(正母)라고 하지 않아도 가하다. 이미 정모라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기년을 입어야 한다. 혹은 말하기를, '기년복을 입으면 아비의 첩과 복이 같으니 불가하다.'하나, 예(禮)란 궁하면 같아진다는 것이 성경(聖經)에도 많이 있다. 비록 기년을 입더라도 무슨 혐의스러울 것이 있는가. 정모로 여기지 않아서 기년을 입는다면 사당에 부묘하지 않는 의리가 분명한 것이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모는 비록 많으나 모두 부묘하니, 지금 이 두어 어미를 모두 적모로 한다면 부묘만 하지 않는 것이 가한가.' 한다. 이 말도 그럴듯하나, 계(繼)의 한 글자가 그 의리가 심히 발라서 예의 경(經)이 되니, 그러므로 마땅히 부묘하여야 하고, 병축(並畜) 두 글자는 그 의리가 바른 것이 아니어서 예의 권(權)이 되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작명을 받은 어미가 이미 부묘하고 자기 소생 어미는 부묘하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딴 곳에 제사하여야 한다. 자기 어미가 비록 작명은 얻지 못하였더라도 자기가 상을 입는 것은 마땅히 3년을 입기를 상례(常禮)대로 하여야 한다. 가령 소생모가 아비에게 쫓겨났더라도 그 자식을 정(正)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미를 적(嫡)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이 꼭 이것과 같다. 국가에서 다만 한 사람에게 작을 명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작을 명하지 않았으니, 작을 명하지 않은 뜻은 곧 국가에서 내친 것이다. 국가에서 비록 내쳐서 작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어미는 적으로 일컫

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식은 정(正)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한갓 《육전(六典)》의 정적(正嫡)으로 병칭(幷稱)한다는 조문만 고집하고 국가에서 명작한 것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뜻을 연구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에 6품 이상이 의논하였는데, 대사헌 윤형(尹炯) 등 32인은 계전(季甸)의 의논과 같고, 병조 참판 김조(金銚) 등 42인은 사철(思哲)의 의논과 같고, 이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참판 이심(李諗)·참의 변효경(卞孝敬)은 말하기를,

"예에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천하 고금이 함께 아는 것이므로, 성인이 변례를 의논한 것이 비록 많으나 모두 논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조 말년에 두세 아내를 병축하였으니 월례 범분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영락(永樂) 11년에 비로소 엄하게 금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만, 그 은의의 얕고 깊은 것을 의논하여 비록 후처라도 종신토록 동거하였으면 작을 주고 밭을 주었으니, 이것은 욕심을 방종하고 문란을 조장하게 함이라 할 수 있으니, 어째서 그 당시의 유사가 법을 의논한 것이 이렇게 초초(草草)하였습니까. 지금 정전(正典)에 싣지 않고 《등록(謄錄)》에 수록한 것뿐이니, 구원하게 세상을 가르치는 뜻이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도 의거하여 정법(定法)으로 삼을 수 없고 국가에서도 또한 월례(越禮)한 자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마땅히 왕비(王悊)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두 아내의 아들이 각각 그 복을 입되, 만일 예의 변한 것을 극진히 하려 한다면 또한 최복(衰服)을 입는 데 불과하고, 혹은 변복(變服)하고 회장(會葬)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견기·참판 이선제(李先齊)는 말하기를,

"지금 예관(禮官)의 의논을 보니 예(禮)의 경(經)을 말한 것이 더할 수가 없으나, 이씨가 담(湛)의 처가 되었으니 효손으로 하여금 첩모(妾母)의 복을 입게 하는 것이 가합니까. 집현전은 예(禮)의 변(變)을 말한 것이 곡진하여 남은 것이 없으나, 병축(並畜)의 아내를 억지로 전모(前母)·후모(後母)에 비기어 아울러 부묘하는 것은 국전(國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경(禮經)》에서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백씨·이씨를 담(湛)이 이미 아내로 거느렸으니, 효손·성손이 모두 어미로 섬기어 백씨가 죽으면 성손이 재최(齋衰)의 복을 입고, 이씨의 죽음에 있어서는 효손이 마땅히 부재모상(父在母喪)의 복에 의하여 기년의 복을 입고, 봉사(奉祀)하는 것은 백씨는 마땅히 사당에 부묘하고, 이씨는 따로 사당을 지어 별도로 제사하여 대강 노중자(魯仲子)의 법을 모방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씨가 더 높아서 부묘한 것이 되지 않고, 이씨가 낮은 데에 거하여 별사(別祀)한 것이 되지 않아서, 이름은 비록 같으나 예(禮)는 스스로 구별되고, 실상은 다르지 않으나 분수는 스스로 정하여져서, 예전 도리에 합하고 지금의 마땅함을 얻어서, 예는 조금 변하여졌으나 대경(大經)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형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참판 조수량(趙遂良)은 말하기를,

"마땅히 왕비의 고사에 의하여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하나, 동하여 아비의 아내라 하였은즉 또한 복이 없을 수도 없으니, 마땅히 권전(權典)에 따라 기년상을 입고, 30일 휴가를 주는 것이 가하고,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는 더욱 두 아내에게 아울러 행할 수 없고, 부당(夫黨)에서도 또한 두세 아내의 복을 두루 입을 수 없고,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주장하는데 소생모가 아직 살아 있으니, 이씨를 장차 무슨 칭호로 제주하여 사당에 부묘하겠습니까. 마땅히 성손으로 하여금 따로 사당을 짓고 봉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경창부 윤(慶昌府尹) 정척(鄭陟)은 말하기를,

"효손이 이씨에게 있어 비록 계모의 정당한 것은 아니나, 아직 《육전(六典)》의 선후처의 법에 의하여 계모에 견주어 의복(義服) 3년을 입고, 후일에 이르러 백씨의 상에 성손이 또한 의복 3년을 입되, 봉사하는 것은 성손이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봉작(封爵)·급전(給田)에 이르러서는 담(湛)이 이미 득죄한 사람이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사제(賜祭)·치부(致賻)도 역시 종친의 예이니 한결같이 예관(禮官)의 의논에 따라 정지하소서."

하고, 그 나머지는 혹은 강등하여 첩모의 복을 입자 하고, 혹은 기년을 입고 사당에 아울러 부묘하자 하고, 혹은 3년복을 입고 백씨가 죽은 뒤를 기다려서 아울러 부묘하자 하여,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임금이 계전(季甸)에게 이르기를,

"효손은 이씨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고, 성손은 따로 다른 곳에 이씨를 봉사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도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이해 12월에 이르러 예조에서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사철(思哲)과 계전(季甸)이 또한 아뢰기를,

"입법 전에 이와 같이 한 자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한 뒤에는 단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무얼 반드시 입법할 것이 있습니까. 다만 효손이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으나, 역시 기년상이니 삼년상이니 정할 것이 없이 하는 대로 맡겨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그 종형(從兄) 이확(李穫)을 시켜 복을 입지 않는 잘못을 말하게 하였다. 효손이 비로소 상을 입었는데 이미 기년이 가까왔다.

【원전】 5 집 64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세종 120 30/05/15(기해) / 지대구군사 이보흠의 사창 사의에 대해 양성지 등 집현전의 의견을 참고케 하다 》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유시하기를,

"네가 아뢴 사창 사의(社倉事宜)는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행하기 어렵다.' 하고, 또 집현전에 내려 의논하니, 혹은 '우선 시험하자.' 하고, 혹은 '행할 수 없다.' 하여, 여러 의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장(社長)의 상직(賞職) 절차는 의거하여 정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사창(社倉)의 법은 주문공(朱文公)이 이미 행하였고, 또 네가 바야흐로 뜻을 날카롭게 하여 영위하니, 우선 한 읍에 시험하여 백성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네가 시험하되 그 포치(布置)의 방략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고 누그러지게 하여 번요(煩擾)하게 하지 말라. 집현전의 의논을 동봉(同封)하니 아울러 참고하라.

1.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 직제학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 직전(直殿) 이석형(李石亨), 교리 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 부교리 **양성지(梁誠之)**, 수찬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부수찬 서거정(徐居正)은 말하기를, '사창(社倉)의 법은 전현(前賢)이 이미 시험한 것이니, 행하는 것이 적당함을 얻으면 참으로 보흠(甫欽)의 말한 것과 같아서 심히 백성에게 편하지마는, 의논하는 자가 이 법이 비록 실상은 백정을 위하여 베푼 것이나, 이식(利息)을 취한다는 이름이 대체에 누가 될 것 같고, 또 사장(社長)을 다 청렴하고 근실한 사람으로 얻지 못하면 혹은 벼슬을 얻기를 바라고, 혹은 나머지를 훔치려고 엿보아 이자를 취하기에 힘써,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도에 지날 것입니다. 혹은 환수하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다만 부호(富戶)에만 주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며, 기타 침어(侵漁)하고 횡포한 것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혜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먼저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의논하건대, 대저 입법하는 처음에 영영 끝내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도 오래 되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거늘, 하물며 이 법은 이해(利害)에 대한 의논이 이제 이미 분분하니, 마땅히 영갑(令甲)보다 먼저 익히 강구하여 자세히 절목(節目)을 가하여 우선 크고 작고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같지 않은 두어 고을에 수년 동안을 시행하여 그 법의 이해와 민정의 편의 여부를 증험하여 과연 이익이 있고 해가 없다면 두루 여러 도에 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응교 어효첨(魚孝瞻)은 말하기를, '사창(社倉)의 법이 뜻은 아름다우나 거두고 흩고 판비하고 모으고 하는 것이 유약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교활한 아전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자고로 재리의 권세를 관장하면서 혜택이 능히 백성에게 미쳤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보흠(甫欽)이 환상(還上)의 폐단을 의논하기를, 「15두가 거의 18, 9두에 이르는데, 사창의 이자 취하는 것은 3두에 불과하니, 환상에 비교하면 큰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니, 지

금 사창의 법으로 본다면 15두에 이자 3두를 거두니, 이것은 18두이나 호횡(豪橫)한 아전이 거두면 반드시 20여 두에 이를 것이니, 폐단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비록 백 가지 교묘한 말로 실지로 폐단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신은 믿지 않습니다. 대개 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민정(民情)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민정이 싫어한다면 필경은 반드시 백성을 병들이고 말 것이니, 이익이 비록 백 배가 되더라도 행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행해야 한다면, 청하옵건대 4, 5군현(郡縣)에 4, 5년을 행하여 백성들의 편의 여부를 익히 경험하기를 기다려서, 인하여 더 자세히 물어보아서 수령(守令)과 사장(社長)이 모두 행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반드시 한 고을 백성이 모두 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다만 한 고을의 백성뿐 아니라, 반드시 4, 5고을 백성이 모두 행할 수 있다고 말한 연후에 행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응교 신숙주(申叔舟)·교리 이개(李塏)·수찬 정창(鄭昌)은 말하기를, '근년에 흉년이 서로 겹치어 민생이 조잔하고 병들어 의창(義倉)의 환자도 오히려 상환하지 못하는데, 또 사창(社倉)을 세워 이자를 취하면 백성이 견디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본래는 백성을 위하고자 함인데 대체에는 실상 누가 있습니다. 또 거두고 흩는 사이에 간사하고 횡포한 것이 날로 불어서 폐해가 장차 만 가지로 될 것이니, 도리어 국가의 백성을 구제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사창(社倉)은 전현이 이미 행한 법이라고 말하지마는, 이것도 역시 특별히 한 고을에 시험한 것이니, 천하에 반포함에 미쳐서는 과연 모두 폐단이 없었겠습니까. 한갓 선유(先儒)가 이미 시험한 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반드시 행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묘전법(靑苗錢法)으로 보더라도 당초에 섬서(陝西)에서 시험할 때에는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천하에 통행함에 이르러서는 사해(四海)가 떠들썩하고 모두 그 폐해를 받았으니, 어찌 한 곳에서 편하였다 하여 사방에 통하여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릇 법을 세우는 데는 민정(民情)과 사세(事勢)의 마땅히 할 것으로 따르는 것이 귀하고, 억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사창(社倉)의 법은 반드시 시험한 연후에 그 불가한 것을 알 것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하였다.

【원전】 5 집 68 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세종 31년

《 세종 123 31/02/05(병진) /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양성지 등과 논의하다 》

춘추관에서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기를 논의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사관(史官)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유성원(柳誠源)·이효장(李孝長)·이문형(李文炯) 등은 의논하기를,

"사기(史記)를 짓는 체(體)는 반드시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이 있어서, 사적(事跡)을 갖추 실어 각각 조리가 관통(貫通)됨이 있어야 하니,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 이후로 모두 이 체를 이어받아서, 고치는 이가 없고, 편년법(編年法)은 본사(本史)를 은괄(檃括)하여 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사를 짓지 아니하고 곧 편년에다 갖추 싣고자 하니, 서술하기가 심히 어렵고, 따로 세계(世系)와 지리(地理)가 있으니, 쓸데없이 덧붙임이 심하며, 또 범례(凡例) 안에 조회·제사·가구 경행(街衢經行)·춘추 장경도량(春秋藏經道場)·생신 수하(生辰受賀)·왕자 탄생·사교 예물(賜敎禮物)·인일 반록(人日頒祿)·연향 중국 사신(燕享中國使臣)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예사 일이라 하여, 약(略)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만 처음 보는 것만 썼으니, 만약 본사(本史)가 있고 편년(編年)을 짓는다면 가하거니와, 이제 본사가 없는데 이처럼 요약(要略)하면 자못 사체(史體)를 잃은 것이오니, 원컨대, 역대 사가(史家)의 구례(舊例)에 의하여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을 남김없이 갖추 쓴 뒤, 이에 편찬한 편년(編年)에다가 다시 깎고 보태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본사(本史)와 아울러 전하게 하면, 옛 사람의 역사를 닦는 제도에 거의 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려의 사적이 본래 거칠고 빠진 것이 많아서, 기·전·표·지 등을 만들고자 하여도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전사(前史)의 열전(列傳)에 한 사람의 일을 겨우 두어 줄만 쓴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마땅히 전(傳)을 세워야 할 사람이 있으나, 사기에 행한 사적을 잃어서 전을 실을 수 없는 것과, 사적(事迹)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비록 빠뜨릴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진실로 제작(制作)하는 일이 제도에 합당함을 얻으면, 일의 어렵고 쉬움과 더디고 빠른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효첨(魚孝瞻)·김계희(金係熙)·이물민(李勿敏)·김명중(金命中) 등은 논의하기를,

"사기를 짓는 체는 반드시 기·전·표·지를 세우는 것이 진실로 상례(常例)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없어 수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체례(體例)가 빠지고 간략하여 옛 사람의 지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비록 이룩될지라도 도리어 볼 만한 것이 못될 것입니다. 송조(宋朝)의 일로 보건대, 본사(本史) 외에 전문(全文)이 있고, 또 속편(續編)이 있으니, 원컨대, 《송사(宋史)》 전문의 예에 의하여 지금 편찬한 《고려사》에다 다시 교정을 더하여 예전대로 반행

(頒行)하고, 기·전·표·지의 저작을 만일 아니할 수 없다면 아직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니, 지관사(知館事)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가 두 논의를 가지고 아뢰매, 효첨 등의 논의에 따랐다. 종서와 인지가 동궁에 들어가 뵙고 아뢰기를,

"편년체(編年體)에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려고 하면 뜻을 통하지 못하는 예(例)가 많으니, 석조 등의 논의에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동궁이 들어가 아뢰매, 임금이 기·전·표·지로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다.

【원전】 5 집 117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세종 32년 《 양성지 - 세종 32년 .... 2 건 》

세종 127 32/01/15(신묘) /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가 올린 비변에 대한 열 가지 방책①
세종 127 32/01/15(신묘) /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가 올린 비변에 대한 열 가지 방책②

《 세종 127 32/01/15(신묘) /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가 올린 비변에 대한 열 가지 방책① 》

집현전 부교리(集賢殿副校理) **양성지(梁誠之)**가 비변(備邊)에 대한 열 가지 방책을 올렸는데, 첫째에 이르기를,

"국가의 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계획은 먼저 결정하여야 하오니, 계획을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만사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옵니다. 지금 북방(北方)의 일을 혹은 '방금 태평한데 무슨 외환(外患)이 있겠는가.' 하고, 혹은 이르기를, '달달(達達)이 수천리 밖에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관계 있는가.' 하옵는데, 신이 가만히 보옵건대, 원 태조(元太祖)가 중원(中原)에 들어올 때에 20나라를 멸(滅)하고 서하(西夏)까지 미쳤으며, 하(夏)나라가 망하자 금(金)나라를 침범하였고, 금나라가 망하매 송(宋)나라를 침범하였사온데, 송나라와 금나라가 채 망하기 전에 친히 서역(西域)을 정벌하여 철문관(鐵門關)에까지 이르고, 또 서이(西夷)와 남이(南夷)를 해도(海道) 수만리 지방까지 정벌하였사오며, 세조(世祖) 때에 와서는 동쪽으로 일본(日本)을 정벌할 때 수십만의 군사를 죽이면서도 마지 않았고, 고려(高麗)를 정벌할 때는 군사를 움직이기 무려 70년에 군사의 힘을 다하고 무기를 있는 대로 썼사오니, 대개 습속(習俗)이 그러한 것이옵니다. 하물며 이미 중국에 자녀(子女)와 옥백(玉帛)의 있는 곳을 알고 벌써 힘들여 빼앗아 가지고 있음에오리까. 80년 동안을 비록 사막(沙漠) 지방에서 살면서 어느 때고 하루라도 중국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먼저 삼위(三衛)를 탈취하여 중국의 번리(藩籬)를 제거하였고, 다음에는 해서(海西)의 여러 종족을 위협하여 그의 도당(徒黨)을 만들고서, 이에 길을 나누어 남쪽으로 내려오니 관외(關外)가 크게 진동하매, 천자(天子)가 친히 정벌하다가 도리어 되놈에게 함몰되니, 되놈의 기병이 이긴 기세를 타서 곧바로 황성(皇城) 밑까지 쳐들어 왔으니 그 병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중국 고황제(高皇帝)의 어지러움을 발거(拔去)한 공(功)과 오늘날 갑병(甲兵)의 성(盛)한 것으로도 한번 싸워서 패함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거든, 하물며 병력이 이만 못한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어찌 동방(東方)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개의하지 않는 것은 한참 중원(中原)에다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침에 요동(遼東) 땅을 얻게 되면 동정(東征)의 군사가 저녁에 나올 것이옵고, 비록 요동에서 뜻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다른 길을 거쳐 우리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신이 지나간 일로써 상고

하오면, 적인(敵人)이 지경을 침범할 때에 처음에는 압록강(鴨綠江)의 험한 것을 지키다가 중간에는 안주(安州)나 평양(平壤)의 요충에서 막아내고, 마지막에서 절령(岊嶺)에 책(柵)을 세워 막는데, 절령(岊嶺)으로 관문(關門)을 삼게 되오면 어찌할 수 없게 되옵니다. 저들이 이미 장성(長城)의 험한 것을 넘어 황성(皇城)의 곁에까지 들어갔는데 어찌 압록강을 건너 서울 근처까지 오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범찰(凡察)과 만주(滿住)와도 틈이 생긴 지가 여러 해 되었으므로 또한 반드시 그 위력을 빌어서 그의 뜻을 펴보려 할 것이오니, 변흔(邊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생민(生民)의 화(禍)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경(邊境)의 일이 비록 반드시 조석(朝夕) 간에 있는 것은 아니오나, 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르기를, '적이 만일 침범하여 짓밟는다면 겸손한 말과 후한 선물로써 한때의 환란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오나, 신이 전조(前朝)를 보건대, 원(元)나라를 섬긴 뒤에도 살례탑(撒禮塔)·차라대(車羅大)·홍다구(洪茶丘)의 침략하는 군사가 없는 해가 없었사오니, 이것들은 예절과 신의로써 상대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만약에 우리 병력이 부족하다면 달달(達達)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부득이하여 권도(權道)에 좇아 수호(修好)하는 것이오니 모름지기 한번 대승(大勝)하여야 옳을 것이옵니다. 저들이 우리의 병력이 서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후에야 감히 가볍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여 봉강(封疆)을 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요(遼)와 금(金)에게 한 것이 이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려면 화친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모두 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감히 장수와 군졸을 뽑고 군량을 저축하며 기계(器械)를 준비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는 것이 당금(當今)의 급무(急務)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하고, 둘째에 이르기를,

"사졸(士卒)을 뽑는 것입니다. 대개 사졸은 나라의 조아(爪牙)로서 전조(前朝)에서는 42도부(都府)를 두고 정병(精兵) 12만 명을 양성했던 고로 능히 이웃 나라를 넘보게 되어, 비록 요(遼)와 금(金)이 서로 번갈아 중국에 들어가도 문정(門庭)에 근거(根據)되어 범(犯)하지 못하였압고, 또 당 태종(唐太宗)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연수(延壽)와 혜진(惠眞)이 정병(精兵) 15만 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고려 태조(高麗太祖)가 백제(百濟)를 평정할 때도 정병 11만 명을 사용하였사오며, 정종(定宗) 때에 와서 거란(契丹)의 꾀를 듣고 30만 군졸을 가려 뽑아서 이름하기를 광군(光軍)이라 하였다가, 강조(康兆)가 거란을 막을 때에 30만 명으로 막았고, 강감찬(姜邯贊)이 거란을 패퇴(敗退)시킬 때에는 20만 명으로 물리쳤으며,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평정할 때에는 17만 명으로, 신축년(辛丑年) 홍건적(紅巾賊)을 평정할 때에는 20만 명을 사용하였사온데, 지금은 군사의 수효가 서울의 시위 군사(侍衛軍士)를 제외하면 군사가 겨우 10여 만이온데, 선군(船軍)이 일부분이고 시위 진군(侍衛鎭軍)과 수성군(守城軍)이 일부분이며 연호 잡색군(烟戶雜色軍)이 일부분이므로 선군(船軍)은 다

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또한 쓸 수 없고, 잡색군(雜色軍)은 관호(官戶)나 혹은 향리(鄕吏)나 혹은 천례(賤隷)로서 모두 연호(烟戶)의 집사인(執事人)이옵고, 다만 시위 진군(侍衛鎭軍) 수만 기(數萬騎)만이 조발(調發)할 수 있는 군사입니다. 이것은 군액(軍額)은 비록 있사오나 정병(正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기에 한심(寒心)하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호구(戶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사람들이 많이 누적(漏籍)되고, 또 제색 잡역인(諸色雜役人)이 군목(軍目)에 예속되지 않은 것이 많은 까닭이옵니다. 옛날 당나라 장수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평정하고 호수를 조사한 것이 70만을 내려 가지 않았사온데, 신라(新羅)의 수효는 그 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또한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동서(東西)가 1천 4, 5백 리이고 남북(南北)이 1천 2, 3백 리가 되니, 그 사이에 70만 호(戶)는 될 것이고 호(戶)마다 세 사람의 장정이 나오면 무릇 2백 10여 만 명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성인(聖人)이 만리(萬里) 밖을 밝게 본 말이옵니다. 우리 나라가 삼한(三韓)을 통합한 왕업에 의거하여 휴양(休養)하기를 오래 하였으면서도 호수(戶數)가 수십 만에 불과하다 하오니, 이 어찌 호구(戶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군사의 수효가 옛날같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호구(戶口)가 밝지 못한 것은 입법(立法)한 것이 엄(嚴)하지 못하고 수령들이 마음을 다하지 못한데 있사오며, 또 정치의 편안한 데에만 빠져서 평소에 구처(區處)하지 않은 때문이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하삼도(下三道)의 기선군(騎船軍)·진군(鎭軍)·시위패(侍衛牌)가 비록 이름은 3,4장정에서 군사 한 명을 시킨다 하오나 남는 장정[餘丁]이 심히 많사옵고, 또 서원(書員)·일수(日守)는 그 수효가 한이 없사오며, 연해 주군(沿海州郡)에 이르러는 부강(富强)한 호(戶)의 공사천구(公私賤口)와 양인(良人)으로서 병역을 도피(逃避)한 자가 몇 천 명이 되는지 알 수 없사오니, 이는 군적(軍籍)이 잘못되어 감(減)해지는 것이옵니다. 대저 변란(邊亂)이 있으면 중외(中外)가 소연(騷然)하다가 조금 성식(聲息)이 없으면 당초부터 염려하지 아니하니, 이는 무사(無事)하다고 하여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백성이 수고롭다 하여 아니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만일에 때에 임박하여 하려면 인심(人心)이 경동(驚動)하고 처치(處置)가 마땅함을 잃어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오니, 어느 때에 단련하여 군사를 만들겠습니까. 이른바 밭에서 농사짓는 백성이나 시정(市井)의 무리들로서 우리의 행진(行陣)이나 어지럽게 하여 우리의 대사(大事)를 실패하게 하면서 쓸데없이 군량만을 허비할 뿐으로, 만일에 옛날 수효[舊額]만을 내는 데 그친다면 군사가 많지 않을 것이옵고, 연호(烟戶)까지 모두 뽑아낸다면 군사가 정예(精銳)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연호(烟戶)가 모두 군사가 되어 병역에 종사하게 된다면 누가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며, 누가 물건을 운반하며, 누가 기계(器械)를 준비하며, 누가 성보(城堡)를 수리하여 지키겠습니까. 이는 더욱 불가하오니 연호(烟戶)와 잡색(雜色)으로써 수성군(守城軍)을 삼고 양민(良民)을 모두 징발해서 군사를 삼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그 초출(抄出)하는 방법은 경중(京中)에서는 한성부(漢城府)와 사부(四部)에서 하

고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대소(大小) 각 호(戶)에 기한을 엄하게 정하여 다시 십오(什伍)의 제도와 호구(戶口)의 법을 정하되, 5가(家)로 소통(小統)을 삼고 10가(家)로 1통(統)을 삼아서 매호(每戶)마다 호구(戶口)의 유무(有無)를 살피고 호구(戶口)에 장정의 탈루(脫漏)를 살피게 하여, 이같이 해서 한명의 장정을 누락시킨 자는 경외(京外)나 존비귀천(尊卑貴賤)을 물론하고 삼절린(三切隣)과 감고(監考)·권농(勸農)·관령(管領)을 모두 정한 곳에 입거(入居)시키고, 가(家)를 누락시킨 자는 오가(五家)와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또한 모두 입거(入居)시키며, 공사 천구(公私賤口)를 숨긴 자나 양민으로 역을 도피한 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소서. 또 호패법(號牌法)을 행하여 중외(中外)의 대소인(大小人)으로 하여금 나이 15세 이상이면 모두 이를 차게 하고, 따라서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서울에서는 사헌부(司憲府)와 한성부(漢城府)에서 위조(僞造)한 것과 사사로이 서로 빌려 쓰는 것을 고찰(考察)하여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율(律)'로써 과죄(科罪)하며, 모든 나라 사람들로서 호구(戶口)가 없고 호패(號牌)가 없는 자는 공사 천구(公私賤口)는 양계(兩界)의 잔망(殘亡)한 고을의 관노비(官奴婢)로 정속(定屬)시키고, 백성과 양반(兩班)은 양계(兩界)의 극변(極邊)에다 충군(充軍)시키소서. 따라서 사실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여 범인(犯人)의 밭과 가산(家産)으로써 상(賞)주는 것에 충당하되, 먼저 이 뜻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여 과단성 있게 시행하오면 누락된 장정이 거의 다 나오게 되어 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입거(入居)시키는 법은 너무 중하니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이오나, 신은 생각하옵기를, 법을 세우는 데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하여 숨은 인호(人戶)는 지금의 큰 폐단이옵고, 입거(入居)하는 일은 상정(常情)으로 모두 싫어하는 바이므로, 큰 폐단을 제거하려면 싫어하는 일로써 제지할 것입니다. 이미 입거(入居)하는 것이 싫은 줄 알면 또한 감히 국민을 숨겨주지 못할 것이옵고, 알고서도 이를 범한다면 이른바 도망시켜 준 장본인[逋逃主]이오니 죄를 준들 무엇을 동정할 것입니까. 금령(禁令)을 엄하게 세우는 것이 세상을 어거하는 떳떳한 법은 못되오나, 사람으로서 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이익이 세 가지가 있사오니, 양민(良民)이 모두 나오게 되면 군사의 수효가 족할 것이옵고, 공천(公賤)이 모두 나오게 되면 관청[公室]이 족할 것이옵고, 사천(私賤)이 모두 나오게 되면 사대부(士大夫)가 족할 것이옵니다. 이에 외방에는 밭을 받은 유음인(有蔭人) 및 전함 품관(前銜品官)으로서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과 문·무과(文武科) 출시(出身)의 생원(生員)·진사(進士)·교도(敎導) 등의 호(戶)는 수성위(守城衛)라 칭(稱)하고, 향리(鄕吏)·역자(驛子)·진간(津干)·목자(牧子)는 수성군(守城軍)이라 칭(稱)하며, 이외에 위로는 품관(品官)의 자제(子弟)와 연장(年壯)한 생도(生徒)로부터 아래로는 백정(白丁)·양민(良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출(抄出)하여 군사를 삼고, 강장(强壯)한 자를 택하여 호수(戶首)를 삼으며, 또 연호(烟戶)·잡색(雜色)을 이미 수성호(守城戶)라 칭하였으니, 전일에 양인(良人)으로 수성

군(守城軍)이 된 자는 수효가 많지 못하고 별로 일정한 구실[役]이 없사오니, 모두 혁파하여 기선군(騎船軍)이나 진군(鎭軍)에 분속(分屬)시키고, 서원(書員)과 일수(日守)도 또한 차등 있게 액수(額數)를 정하여, 이로써 다시 선택을 가하면 시위패(侍衛牌) 3만 명과 진군(鎭軍) 3만 명과 선군(船軍) 6만 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잡색군(雜色軍)도 또한 5,6만 호(戶)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문무백관(文武百官)과 밭을 받은 유음(有蔭)·성중 애마(成衆愛馬)·전함 각품(前銜各品)과 생원(生員)·진사(進士) 등의 호(戶)는 도성위(都城衛)라 칭(稱)하고, 각사(各司)의 이전(吏典)과 제색 장인(諸色匠人)·공사 천구(公私賤口) 등 잡호(雜戶)는 도성군(都城軍)이라 칭(稱)하며, 이 외에 한량 자제(閑良子弟)나 연장 생도(年壯生徒)도 모두 초출(抄出)하여 군사를 삼고, 또 서울의 시위패(侍衛牌)와 무수전패(無受田牌)를 혁파하여 갑사(甲士)와 방패(防牌)에 분속(分屬)시키고, 충순위(忠順衛)와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내금위(內禁衛)와 별시위(別侍衛)에 이속(移屬)시키고 보충군(補充軍)으로써 조례(早隷)를 삼되, 조례(早隷)로 방패(防牌)와 별군(別軍)을 만들면 총통위(銃筒衛)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오니 모두 혁파하여 방패(防牌)와 육십(六十)에 소속시키고, 또 차비군(差備軍)을 혁파하고, 또 양인(良人)으로서 장인(匠人)에 투속(投屬)된 자도 혁파하고, 또 도부외(都府外)를 혁파하여 방패(防牌)로서 순작(巡綽)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고, 사옹(司饔)과 충호위(忠扈衛)의 각사(各司) 이전(吏典)도 모두 구액(舊額)을 감(減)하여 이로써 다시 선택을 가하면 내금위(內禁衛) 3백 명, 별시위(別侍衛) 6천 명, 갑사(甲士) 9천 명, 방패(防牌) 9천 명, 섭육십(攝六十) 3천 명, 총통위(銃筒衛) 3천 명을 얻을 것이오니, 이같이 하며 외방 군사[外兵]는 기병(騎兵)·보병(步兵)이 각각 6만이 되고, 서울 군사[京軍]는 기병·보병이 각각 1만 5천 명이 되어 기병과 보병이 상반(相半)하고 서울과 외방이 득중(得中)하여, 도합 정병(精兵) 15만 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외방의 양반(兩班) 각호(各戶) 외에 군사로서 노비(奴婢)가 없는 자는, 갑사(甲士)는 4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고, 시위군(侍衛軍)·진군(鎭軍)·선군(船軍)은 3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고, 방패(防牌)·육십(六十)·총통위(銃筒衛)는 2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고, 기타 연호(烟戶)는 3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으면, 1정(丁)도 군적(軍籍)에 붙여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한 군사도 단정(單丁)으로 입호(立戶)함이 없게 되어, 연호(烟戶)가 모두 성(城)을 지키게 되고 양민(良民)이 모두 종군(從軍)하게 될 것입니다. 인하여 아름다운 이름으로 고쳐서 내금위(內禁衛)는 충용위(忠勇衛), 별시위(別侍衛)는 충무위(忠武衛), 갑사(甲士)는 무녕위(武寧衛), 시위패(侍衛牌)는 무평위(武平衛), 진군(鎭軍)은 진변위(鎭邊衛), 선군(船軍)은 진해군(鎭海軍), 방패(防牌)는 보승군(保勝軍), 섭육십(攝六十)은 보첩군(保捷軍), 총통위(銃筒衛)는 극적군(克敵軍), 근장(近仗)은 공학군(供鶴軍)이라 하여 이와 같이 하면 군호(軍號)가 정제(整齊)하여 사기(士氣)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 군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빠짐없이 하는 데 있고, 또한 정예(精銳)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교련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오니, 외방(外方)의 진군(鎭軍)은 진병마사(鎭兵馬使)에게, 선군(船軍)은 만호(萬戶)에게, 시위패(侍衛牌)는 수령(守令)에게 붙여서 각기 사장(射場)을 두게 하고, 다시 약속(約束)을 세워 습사(習射)·습진(習陣)시키되, 월말(月末)에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감사(監司)가 그 근태(勤怠)를 상고해서 올려 주거나 내치게 하고, 서울의 군사는 본훈련관(本訓練觀)에서 주장하되 남부(南部)는 남대문(南大門) 밖에, 동부(東部)는 동대문(東大門) 밖에, 서부(西部)는 반송정(盤松停)에, 중부(中部)는 수구문(水口門) 밖에다 각각 사장(射場)을 축조(築造)케 하고,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내금위(內禁衛)·번상 시위패(番上侍衛牌)로 하여금 번들어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까운 곳에 가서 습사(習射)하거나 습진(習陣)하게 하여, 그 능부(能否)를 상고해서 상벌(賞罰)을 시행하게 하고, 보병(步兵)에 이르러서도 역시 습장(習杖)·습진(習陣)하도록 하고, 입직 군사(入直軍士)와 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는 진무소(鎭撫所)로 하여금 법식에 따라 습사(習射)시키되, 만일 혹시라도 변경(邊境)에 변란이 있으면 선군(船軍) 6만 명을 제한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9만 명으로 평안도(平安道)의 의주(義州)·삭주(朔州)·강계(江界)·희천(熙川)·영변(寧邊)·안주(安州)·평양(平壤)과 함길도(咸吉道)의 회령(會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경성(鏡城)·마천령(磨天嶺)·마운령(磨雲嶺)·갑산(甲山)·함흥(咸興)과 황해도(黃海道)의 절령(岊嶺)·극성(棘城) 등처에 적당히 나누어 두고, 혹 싸우거나 혹은 지키면서 기회에 따라 방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사와 말이 정강(精强)하여 전수(戰守)의 준비가 완전할 것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병법에 이르기를, '선봉(先鋒)을 가리지 않는 군사는 패한다.' 하였으니, 대개 전봉(前鋒)은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양진(兩陣)이 서로 어울려 승부(勝否)를 결단하지 못할 때나 위급한 때에 이르러서는 선봉(先鋒)의 예졸(銳卒)이 철기(鐵騎)로써 짓밟지 않으면 불가하오니, 주(周)나라의 호분(虎賁)과 송(宋)나라의 배외군(背嵬軍)과 금(金)나라의 화모군(花帽軍)과 서하(西夏)의 철요자(鐵鷂子)가 이것이옵니다. 이제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가 곧 가려 뽑은 것이오니, 비옵건대, 용감한 군사 3백 인을 다시 가려 뽑아서 내금위(內禁衛)를 충실하게 하고, 또 행병(行兵)할 때를 당하면 미리 돌기(突騎) 수백 인을 가려 뽑아서 선봉(先鋒)으로 대비케 할 것이오며, 또 금인(金人)은 철기(鐵騎)에 두꺼운 갑옷을 입혀 좌우익(左右翼)으로 나누어 두었다가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에 이를 사용하되, 해상(海上)에서 일어나서 향하는 바가 앞이 없으므로, 모두 이로써 이기게 되어 '괴마(拐馬)'라 부르고, 이름하기를 '장승군(長勝軍)'이라 하였사온데, 그 제도는 지금 자세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생각건대, 장사(壯士)를 뽑아서 철기(鐵騎)를 태워 단병(短兵)을 가지고 적진을 함락시키는 것이오니, 비옵건대,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을 9백 명으로 정하여 평시에는 서울과 외방에서 마필(馬匹)을 조습(調習)시키고, 인하여 치고 찌르는 법을 가르쳐서 선봉으로 쓰거나, 혹은 유혁(遊奕)으로 사용하면, 다른 군사를 허비할 필요 없이 그 몰아쳐 달리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가

히 공을 세울 것입니다."

하고, 셋째에 이르기를,

"장수(將帥)를 택할 것입니다. 대개 장수는 삼군(三軍)의 사명(司命)이오니 그 용맹으로만 취하는 것은 불가하옵고, 또한 문인(文人)으로서 약간의 무예(武藝)를 안다는 것만으로 취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전조(前朝)에서 유장(儒將)을 많이 썼사온데, 강감찬(姜邯贊)·김부식(金富軾)·조충(趙沖)·김득배(金得培)가 이것입니다. 만일 무신(武臣)으로써 장수를 삼는다면 또한 문신(文臣)을 써서 부장(副將)을 삼아 서로 더불어 문무가 겸제(兼制)되어 그 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쇠망할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 번 추밀(樞密)에 들어가면 곧 원수(元帥)에 배명(拜命)되어서 왜구(倭寇)의 침범을 받게 되었으니, 가히 한(恨)스럽습니다. 그러하오나, 장수를 가리는 방법은 반드시 소질이 있는 자를 모아 두었다가 가리기를 지극히 정밀하게 한 연후에야 가할 것이옵니다. 지금 무예(武藝)의 기록은 장수를 가리는 데 필요한 것이오니, 비옵건대, 다시 의정부(議政府)와 병조(兵曹)에 명령하시어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 및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의 패두(牌頭)와 외방의 감사(監司)·수령(守令)과 수륙 장수(水陸將帥)·만호(萬戶)·천호(千戶) 등으로 하여금 각기 장수가 될 만한 자 서너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모두 성명을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헤아려서 1,2품의 대장(大將) 10인을 얻게 하고, 3, 4, 5, 6품으로 편비(偏裨) 1백 인을 얻게 하고, 참외(參外)와 성중(成衆)·위사(衛士)·초택(草澤) 가운데서 장래에 쓸 만한 자 3백 인을 얻게 하면, 간청한다고 하여 천거한 것이 아니옵고 피하려고 한다 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므로,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오니, 특별히 장수록(將帥錄)을 작성하여 어소(御所)에 올리고 정부(政府)와 병조(兵曹)에 각각 한 벌씩 간수하여 하여 급작스런 때에 쓸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 또 장수는 모름지기 명망(名望)이 있어 인심(人心)을 습복(襲服)시킬 수 있는 자로 삼아야 할 것이온데, 만약 재간은 장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부하[下僚]에게 눌리는 자는 조금 그 직질(職秩)을 후하게 하여 그 재능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작명(爵命)이 너무 극(極)하면 또한 부릴 수 없습니다. 지금 무과(武科)의 강경(講經)을 글[經]의 수를 한정하지 않고 점수[分晝]를 후하게 하므로, 무사(武事)에 모자라는 자도 많이 합격되오니, 비옵건대, 이 뒤로는 다만 사서(四書) 중에서 일서(一書)만 강(講)하게 하거나 오경(五經) 중에서 일경(一經)만 강(講)하게 하고, 혹은 다만 무경 칠서(武經七書)만 강(講)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그 양성(養成)하는 방법도 조(趙)·송(宋)의 무학 고사(武學故事)와 또한 우리 나라의 습독(習讀)하는 제도에 따라 나이 40세 이하의 내금위·별시위·갑사 중에서 기량(器量)과 지식이 있고 문자(文字)를 해득한 자를 자원(自願)에 따라 훈련관(訓鍊觀)에 입학시키되, 번들어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무경(武經)을 습독(習讀)하게 하고, 그 모든 조건과 격식은 대략 성균관(成均館)의 예

(例)를 모방하여, 학관(學官)은 무경(武經)에 정통(精通)한 자를 가려 장관(長官)을 삼아서 가르치게 하소서."

하고, 넷째에 이르기를,

"군량을 저축하는 것이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비록 10만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고 하루의 양식밖에 없으면 하룻 동안의 군사밖에 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용병(用兵)의 도리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사를 일으킬 때면 농사가 때를 잃어 의례 흉년드는 해가 많고, 조전(漕轉)하는 비용도 또한 적지 않아서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족식(足食)의 근본이 쓸데없는 벼슬을 도태시키는 데에 있사오니, 급하지 않은 사무는 정지시켜서 백성의 힘을 빼앗지 말도록 하여 힘써 농사짓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 수리(水利)를 일으키거나 혹은 둔전(屯田)을 시행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벼슬을 파는 법령이온데, 대개 벼슬을 파는 데는 공상(工商)·천례(賤隷) 외에 양인(良人)을 가려 함흥(咸興)이나 평양(平壤) 이북에 곡식을 바치는 자에게 서반(西班) 군직(軍職)을 주되, 종9품은 1백 석, 정9품은 2백 석으로 예(例)를 삼아, 종5품은 9백 석, 정5품은 1천 석으로 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1백 석마다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되 모두 5품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곡식을 내지(內地)에 바치는 자는 그 수량을 배(倍)로 하게 하여, 만일 2백 석을 바치면 한 자급을 올려 주되 모두 녹봉(祿俸)은 주지 말고 뒤에 재주에 따라 쓰게 하며, 가문(家門)이 좋고 인망(人望)이 있는 자는 역시 현관(顯官)으로 등용할 것이되, 이는 곡식을 얻는 방법으로서 지극히 긍색하고 급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5 집 15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참(兵站)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원(元) / *외교-왜(倭)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호구(戶口) / *신분(身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과학-지학(地學)

《 세종 127 32/01/15(신묘) /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가 올린 비변에 대한 열 가지 방책② 》

다섯째에 이르기를,

"기계(器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은 듣자옵건대, 조조(晁錯)가 말하기를, '기계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 군사를 적에게 주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대저 중국이 전쟁[戎馬]을 버티어 가는 것은 오직 기계의 정교함에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唐史)》에 이광필(李光弼)의 능한 것을 기록하

기를, '광필(光弼)이 명령을 내리면 정기(旌旗)의 정채(精彩)가 일변(一變)한다.' 하였고, 한세충(韓世忠)의 기계(器械)가 정교(精巧)함을 《송사(宋史)》에서도 또한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본국(本國)의 군용(軍容)은 심히 광채가 없고 기계도 또한 모두 좋지 않사오니,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왜인(倭人)이 돼지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고 치밀하며 경편(輕便)하다 하오니, 비옵건대, 중외(中外)에서 모두 모방하여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하물며 돼지가죽은 얻기가 쉬운 물건이겠습니까. 철갑(鐵甲)은 중국의 예(例)에 따라 채백(彩帛)으로 장식하고, 지갑(紙甲)은 홍색(紅色)·황색(黃色)·청색(靑色)으로 물들이거나, 혹은 초(楚)나라 사람의 충갑(兕甲)의 뜻을 써서 거죽에는 방색(方色)에 무늬가 있는 옷을 입게 하고 투구에도 모두 치마[簑]를 달게 하며, 말다래[馬紫]의 꾸밈새도 청색(靑色)과 홍색(紅色)을 금(禁)하지 말게 하여 적인(敵人)의 눈에 현혹되도록 하고, 우리 삼군(三軍)의 기세를 장(壯)하게 할 것이며, 또 노시(弩矢)라는 것은 역대로 중국의 장기(長技)로서 이른바 만노구발(萬弩俱發)이란 것입니다. 송(宋)나라에는 구우노(九牛弩)·상자노(床子弩) 따위의 제도가 있었고, 신라(新羅)의 노(弩)도 또한 1천 보(步)까지 이르렀는데, 당나라 임금이 이를 구하여 갔으나 끝내 기술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전조(前朝)의 말경부터 비로소 듣지 못하였사오니, 비옵건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고 중국에 물어서 군진(軍陣)에서 쓰도록 할 것이옵고, 또 성(城)을 지키는 도구도 그곳에서 마땅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성(城)을 공격하는 도구도 역시 폐하지 말 것이니, 비록 국토를 벗어나서 행병(行兵)하지 않을지라도, 만일에 적병이 갑자기 들어와서 변성(邊城)을 빼앗아 웅거하기를 고려 때 강동(江東)의 도적과 같이 하면 장차 무엇으로 공격할 것입니까. 고사(古史)에 이르기를, '동인(東人)이 성을 지키기를 잘하는데 모든 방어하는 기계가 하나도 전하는 바가 없다.' 하였사오니, 운제(雲梯)·아거(鵝車) 같은 것도 비록 전사(前史)에는 실려 있어도 눈으로는 볼 수 없사오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고 중국에 물어서 중외(中外)의 성(城)에다 만들어 분치(分置)하게 하소서."

하고, 여섯째에 이르기를,

"성보(城堡)를 수선하고 관방(關防)을 정할 것입니다. 대개 군진(郡鎭)이라는 것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임금이 험한 곳에 성보를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옵니다. 송(宋)나라에서는 긴요한 군(郡)과 다음으로 긴요한 군(郡)의 분별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는 산천(山川)이 험조(險阻)하고 현진(縣鎭)이 서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진실로 무사(無事)할 때에 잘 강구해서 마땅하고 적합하게 처치(處置)한다면, 적이 비록 이를 버리고 깊이 들어오려 하여도 장차 그 뒤에 거리낄 것을 염려할 것이오나, 만일에 처치(處置)하기를 엉성하게 한다면 도리어 적인(敵人)의 도움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 연변 주군(沿邊州郡)을 국가에서 이미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곳으로 나누었으나, 변방 땅을 전부 긴급한 곳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이 이제 내지(內地)까지도 아울러 논하여 외람되이 억지의 의논

을 드리옵니다. 함길도 회령(會寧)은 범찰(凡察)이 옛날에 살던 곳이옵고, 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은 모두가 강변(江邊)이옵고, 경성(鏡城)은 용성(龍城)의 좁은 목[애]이 있으며, 이성(利城)에는 마운령(磨雲嶺)이 있고, 단천(端川)에는 마천령(磨天嶺)이 있으며, 갑산(甲山)은 서북쪽 모퉁이가 날카롭고 들어갔고, 함흥(咸興)에는 함관령(咸關嶺)이 있고, 또 한 도(道)의 근본으로 요긴한 곳이며, 길주(吉州)는 동량북(東良北)과 연(連)하였고, 북청(北靑)도 역시 갑산(甲山)의 요충(要衝)이며, 홍원(洪原)에는 대문령(大門嶺)과 정평(定平)의 고 관문(古關門)이 있고, 영흥(永興)에는 용흥강(龍興江)이 있으며, 덕원(德源)에는 철관(鐵關)이 있고, 안변(安邊)에는 철령(鐵嶺)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평안도인데, 의주(義州)는 압록강(鴨綠江)에 의지하였고, 삭주(朔州)는 적로(賊路)로서 평탄하고 넓으며, 강계(江界)는 곧 강변(江邊)의 거진(巨鎭)이고, 희천(熙川)에는 직유령(狄踰嶺)이 있으며, 또 강계(江界)는 적로(賊路)이고, 영변(寧邊)은 한 도(道)의 중진(重鎭)이며, 안주(安州)에는 청천강(淸川江)과 고 안북진(古安北鎭)이 있고, 평양(平壤)에는 대동강(大同江)이 있으며, 또한 도(道)의 근본으로 긴요한 곳이고, 여연(閭延)은 곧 적(賊)의 요충이며, 박천(博川)에는 큰 강이 있고, 성천(成川)도 역시 요지(要地)이옵니다. 다음으로는 황해도(黃海道)인데, 황주(黃州)에는 극성(棘城)이 있고, 서흥(瑞興)에는 절령(岊嶺)이 있어 긴요한 곳이옵고, 곡산(谷山)은 함길도(咸吉道)와 연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江原道)인데, 회양(淮陽)은 철령(鐵嶺)을 의지하였고, 강릉(江陵)은 영동(嶺東)의 대부(大府)입니다. 다음으로 요긴한 곳은 경상도(慶尙道)인데, 김해(金海)와 창원(昌原)은 모두 대마도(對馬島)의 요충으로서 요긴한 곳이고, 상주(尙州)는 영남(嶺南)의 대목(大牧)이며, 안동(安東)도 또한 중요한 곳이고, 경주(慶州)는 곧 고려(高麗)의 동경(東京)이며, 진주(晋州)는 남도(南道)의 거읍(巨邑)이고, 성주(星州)에는 금오 산성(金鰲山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全羅道)인데, 전주(全州)는 남도(南道)의 요충(要衝)이고, 남원(南原)은 운봉(雲峯)의 요충이며, 나주(羅州)는 남방(南方)의 대목(大牧)입니다. 다음에 긴요한 곳은 충청도(忠淸道)인데, 충주(忠州)는 조운(漕運)이 모이는 곳이고, 공주(公州)에는 금강(錦江)이 있으며, 다음에 긴요한 곳은 경기(京畿)인데, 경성(京城)이 긴요하고, 개성부(開城府)는 곧 전조(前朝)의 고도(古都)이며, 양주(楊州)는 후보(後輔)가 되고, 광주(廣州)에는 산성(山城)이 있으며, 수원(水原)은 곧 남도(南道)의 요충이고, 원평(原平)은 바로 임진(臨津)의 요충이며, 강화(江華)는 수로(水路)가 험하고, 고려 때의 강도(江都)로서 다음입니다. 이상의 여러 주진(州鎭)과 관방(關防)은 긴급한 것이 있고 다음으로 긴급한 것이 있으니, 다음으로 긴급한 것은 아직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고, 그 긴급한 것으로서 이미 성을 쌓은 곳은 수리할 것이고, 쌓지 못한 곳은 각기 부근 고을의 연호 군정(烟戶軍丁)으로 농사짓는 틈[農隙]을 가려서 진력(盡力)하여 쌓게 하면, 이는 백성을 위하는 것으로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남방(南方)의 요긴한 고을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든 것은 대개 변경(邊境)에 일이 있으면 근본되는 땅을 더욱 견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물며, 적(敵)을 막는 방책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이 모여 살 곳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강계(江界)·잔도(棧道)·절령(岊嶺)·극성(棘城)·용성(龍城)·마천령(磨天嶺)·마운령(磨雲嶺)·함관령(咸關嶺)·철령(鐵嶺) 등지에는 모두 석보(石堡)를 쌓아서 방어하는 곳으로 만들고, 또 산성(山城)은 고려(高麗)의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도적(圖籍)을 상고하여 형세(形勢)를 살펴서, 신료(臣僚)들을 나누어 보내되, 반드시 읍(邑)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혹 깊고 먼 곳이라도 너덧 고을에서 한 군데의 험애(險隘)한 곳을 얻게 하여, 부근의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적당히 쌓게 하면 거의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백성을 위급한 속에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京外)의 성문 수비(城門守備)와 진관(津關)의 금방(禁防)도 또한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일곱째에 이르기를,

"근본(根本)을 장(壯)하게 할 것입니다. 대개 서울은 근본이 되는 땅이니, 근본의 땅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방의 민심이 또한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대저 성곽(城郭)이 견고한 연후에야 민심이 안정되어 사수(死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성(京城)의 뒷산 암석 사이에 쌓은 것은 법(法)대로 되지 아니하여 옹성(甕城)이 없고 적대(敵臺)가 없으니, 혹시라도 적변(賊變)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수어(守禦)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일이 생기기를 기다려 쌓는다면 민심이 반드시 동요될 것이오니, 모름지기 요새 쌓아야 거의 견문(見聞)에 놀랍지 않고 민심이 영원히 안정될 것입니다. 백성의 힘이 남아 돌아가게 되면 중흥(中興)하는 성(城)은 하늘이 만들어 주는 경험이오니, 경기(京畿)와 경성(京城)에 인부를 징발하여 쌓게 하면 만세(萬世)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게 또 생각하기를, 국가의 대적(大敵)은 으레 서북쪽에서 오는데, 이제 강창(江倉)이 강변(江邊)에 있으니 이것이 염려되옵니다. 비옵건대 용산(龍山)에 창성(倉城)을 쌓고 서강창(西江倉)을 합병하여 하나로 만들어, 상류(上流)에서 조운(漕運)하여 오는 것은 두모포(豆毛浦)에다 창고를 지어 간수하게 하고, 성을 쌓아서 보호하게 하면 군국(君國)의 일로서 하늘같이 여기는 바는 공지(空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 곳에만 오로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또 벌아현(伐兒峴)에서 한강(漢江)에 이르기까지 성을 쌓게 하면, 비록 적변(敵變)이 있을지라도 성동(城東)까지 올 수 없을 것이고, 또 장의(藏義)의 서쪽 산골 요해지(要害地)에도 역시 행성(行城)을 쌓아 방어하게 하면, 도적이 감히 갑자기 뒷산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여덟째에 이르기를,

"먼저 스스로를 다스[自治]릴 것입니다. 대개 고금 천하의 국가 일은 자치(自治)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자치(自治)가 이미 엄(嚴)하면 비록 외적의 침범이 있을지라도 근심될 것이 없습니다. 자치(自治)한 도(道)는 다름이 아니오라 민심(民心)을 잃지 않는 데 있을 뿐이옵고, 민심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근일에 성을 쌓는 일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면치 못하오니,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복(福)이 아닙니다. 또 왜인(倭人)을 대우하는 방법도 평시에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아홉째에 이르기를,

"행성(行城)을 의논할 것입니다. 대개 행성(行城)을 쌓는 것은 국가의 중사(重事)이온데, 신이 듣자오니, 성을 쌓는 곳이 서쪽으로 인산(麟山)에서부터 동쪽으로 경흥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里)로서, 해마다 춘추(春秋)로 수만 명의 장정을 징발하여 수월(數月) 동안 역사시켜도 그 쌓는 바가 수십 리에 불과하다 하옵니다. 그러하온 즉, 비록 수십년이 된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일을 마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역사하여 백성을 수고시키면서 폐단이 없는 것이 어찌 있겠사오며, 하물며 성보(城堡)를 비록 쌓았다 하여도 한 번 비가 내리면 그만 무너지게 되니, 만일 보수하여 고치지 않으면 쌓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길이가 수천리나 되는 곳에 무슨 군사를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성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비어(備禦)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하물며 서북 지방은 사신(使臣)의 영송(迎送)에 피폐되었고 방수(防戍)에 지쳤으며, 기근(飢饉)까지 겹쳤는데, 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백성이 많이 유리(流離)하여 여염(閭閻)이 거의 비었으니, 혹시라도 변경(邊境)에 변란이 있게 되면 토병(土兵)이 모두 없어졌으니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미 피로한 백성이 아직 숨을 돌리기도 전에 이제 천하가 바야흐로 전쟁을 시작하려 하오니, 다시 변방 백성을 수고시킴이 가하겠습니까. 동북 지방은 백성의 힘이 약간 후(厚)하고 성터[城基]도 또한 덜하오니 가하다고 할 수 있사오나, 5진(鎭)은 지세(地勢)가 현격하게 먼데 회령(會寧)과 종성(鍾城)은 목축(牧畜)의 이익이 있고 온성(穩城)과 경원(慶源)은 땅이 기름지고 물산(物産)이 풍요한 곳이라 칭(稱)하며, 경흥(慶興)은 어염(漁鹽)의 이익이 있는 곳으로 다른 날에 변진(邊塵)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적인(狄人)들이 다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적병(賊兵)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들이 피로하여 지탱하지 못하고 성곽(城郭)조차 없으면, 그 득실(得失)이 전일(前日)과 같을 것이옵고, 성곽(城郭)이 이미 견고하다 하여도 이런 변란을 만나면 어찌 적인(狄人)의 도움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욱 염려되옵니다. 그러하오나, 5진(鎭)을 취하고 버리는 것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사옵고, 다만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경성(鏡城)에 관청을 설치하고 용성(龍城)의 요충을 지키게 하여 만전(萬全)의 계책을 도모함이 가할 것입니다. 또 행성(行城)이란 것은 작은 적[小敵]을 방비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대적(大敵)이 길을 나누어 돌입(突入)한다면 어디에 행성(行城)이 있으며, 또 어디에 구자(口子)가 있겠습니까. 대적(大敵)을 만나기 전에 작은 적을 방비하기 위하여 먼저 피로하게 함이 옳겠습니까. 지금 행성(行城)을 중하게 여기고 주진(州鎭)의 성(城)을 가벼이 여기는데, 가사(假使) 행성(行城)은 쌓기 쉬우니 행성(行城)에 의지할 만하다고 하다가, 만일에 적병(狄兵)이 행성(行城)을 넘어 들어오고, 내지(內地)에 견고한 성(城)이 없으면 우리나라

의 백만(百萬)의 생명이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신이 아뢴 바 성을 쌓고 성을 수리할 곳이 행성보다 배(倍)나 되옵는데, 그러한 것은 신이 백성을 역사시켜 성을 쌓는 것만을 그르다 하여 국가의 대계(大計)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읍성(邑城)이 급하고 행성은 급하지 아니하므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급하지 않을 것을 뒤에 하자는 것이온데, 힘이 행성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행성(行城)을 쌓는 힘을 주진(州鎭)의 성(城)을 쌓는 데에 옮기시면 생민(生民)의 다행이고 국가의 다행이옵니다. 또 강변(江邊)에 군사가 적기 때문에 남도(南道)의 군사로서 방수(防戍)하게 하고 입거(入居)시키는 호(戶)로써 채우고 있사온데, 만약에 구자(口子)를 혁파하지 아니하면 남도(南道)의 방수(防戍)가 그치지 않을 것이옵고, 방수(防戍)가 그치지 아니하면 남도의 백성들이 편할 날이 없을 것이오니, 비옵건대, 강변(江邊)의 구자(口子)와 신설(新設)하는 소읍(小邑)을 혁파하시어, 그 군민(軍民)과 병장(兵仗)을 모두 강계(江界) 등 3,4 긴요한 고을에 모으시고, 인하여 희천(熙川)을 중진(重鎭)으로 삼아 척후(斥候)를 멀리 보내고 봉수(烽燧)를 삼가게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병력(兵力)이 완전하고 처치(處置)가 마땅하여, 만세(萬世)토록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장책(長策)이 될 것입니다."

하고, 열째에 이르기를,

"왜인(倭人)을 비어(備禦)할 것입니다. 대개 지난 가을에 대마도(對馬島) 왜인이 양식을 구하기를 마지 않았사온데, 신이 이를 듣고 생각하기를, 예로부터 모두 북방의 염려되는 것은 알면서 남쪽 도적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에 격노(激怒)하여 모두 일어나면 바닷가 수천 리에 농사꾼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졸(士卒)들은 분명(奔命)하여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오니, 어찌 이보다 백배(百倍)만 되오리까. 국가에서 종씨(宗氏)를 대우함에 매우 잘하고 있었사오니, 비옵건대, 구례(舊例)대로 조금 우대(優待)하여 비록 요구하고 졸라대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들어줌이 마땅하고, 만일에 명분(名分)이 없이 주는 것을 그르다 한다면, 종정성(宗貞盛) 등의 작명(爵命)을 더해 주고 인하여 녹봉(祿俸)이라 하여 주오면 명분도 바르고 말[言]도 순하며, 저들도 또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해(沿海) 포구(浦口)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반드시 후일에 변방의 근심이 될 것이오나, 오늘날 북방에 일이 있으므로 경솔히 움직일 수 없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모두 뽑아서 군사를 삼아 만일에 공로가 있으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옵고, 만일에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처치(處置)하기는 우리 손아귀에 달렸습니다. 신이 다시 반복(反覆)하여 생각하옵건대, 성을 쌓는 폐단을 제거하면 북방의 백성이 편안할 것이옵고, 왜인을 대우하는 도리를 다하면 남방의 백성이 편안할 것이오니, 군졸을 가려 뽑고 기계를 준비하며, 군량을 저축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며, 현장(賢將)을 택하여 이를 맡겨 상벌(賞罰)을 밝게 하여 통솔하게 하고, 안으로는 근본이 되는 곳을 튼튼하게 하고 밖으로는 대국(大國)을 섬기는 체도(體道)를 지키소서. 이렇게 하오면 내치(內治)가 지

극히 잘되어 우리 나라 수천 리 산해(山海)의 험조(險阻)와 수십 만 사졸(士卒)의 힘으로 만세(萬世)토록 대동(大東)을 지킬 수 있을 것이오니, 어찌 적인(狄人)의 침략을 두려워할 것이옵니까."

하였는데, 비답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5 집 15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人事)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과학-지학(地學)

문종 즉위년 《 양성지 - 문종 즉위년 .... 5 건 》

문종 002 00/07/06(무신) / 이채, 양성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신미에게 승직을 제수하다

문종 002 00/07/15(정사) / 직제학 박팽년이 신미 칭호의 부당함을 상소할 때 양성지 등의 말한 바를 거론하다

문종 003 00/09/07(무신) / 공조 판서 정인지가 문과의 가액 선발 절목을 아뢰자 의정부 등과 의논하게 할 때 양성지가 의견을 말하다

문종 003 00/09/17(무오) / 왕세자가 처음으로 서연을 열다. 양성지 등이 소학을 강론하였다. 유성원과 이극감으로 세자의 시학을 삼다

문종 003 00/09/27(무진) / 죽은 중추 이진이 첩의 아들을 과거에 내보내려고 적처를 버린 일을 양성지 등이 의논하다

《 문종 002 00/07/06(무신) / 이채, 양성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신미에게 승직을 제수하다 》

이채(李寀)를 흥록대부(興祿大夫) 의성군(誼城君)으로, 박종우(朴從愚)를 성록대부(成祿大夫)로, 정종(鄭悰)을 숭덕대부(崇德大夫)로, 김종서(金宗瑞)를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으로, 정분(鄭苯)을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 최사의(崔士儀)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이천(李蕆)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정인지(鄭麟趾)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권맹손(權孟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선(李宣)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양(李穰)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황치신(黃致身)·김청(金聽)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견기(李堅基)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안진(安進)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이사철(李思哲)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기건(奇虔)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안완경(安完慶)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선제(李先齊)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사순(李師純)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황수신(黃守身)·김자옹(金自雍)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조석강(趙石岡)·성승(成勝)·신자근(申自謹)·박호문(朴好問)·유익명(兪益明)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심(李審)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임효신(任孝信)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이계전(李季甸)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완지(金侃之)를 좌승지(左承旨)로, 정이한(鄭而漢)을 우승지(右承旨)로, 정창손(鄭昌孫)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문기(金文起)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승지(李崇之)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윤은(尹殷)·이종목(李宗睦)·김원(金元)·박효함(朴孝諴)·성급(成扱)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영구(李英耉)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조서안(趙瑞安)을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로, 신

숙청(辛俶晴)을 경상 우도 병마 절제사(慶尙右道兵馬節制使)로, 남우량(南佑良)을 경상좌도 수군 처치사(慶尙左道水軍處置使)로, 이사임(李思任)을 경상우도 수군 처치사(慶尙右道水軍處置使)로, 권맹경(權孟慶)을 전라도 수군 처치사(全羅道水軍處置使)로, 유강(柳江)을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로, 김유양(金有讓)을 판의주목사(判義州牧事)로, 김수연(金壽延)을 판삭주도호부사(判朔州都護府事)로 삼고, 또 중[僧] 신미(信眉)를 선교종 도총섭(禪敎宗都摠攝) 밀전정법(密傳正法) 비지쌍운(悲智雙運) 우국이세(祐國利世) 원융무애(圓融無碍) 혜각 존자(慧覺尊者)로 삼고, 금란지(金鸞紙)에 관교(官敎)를 써서 자초폭(紫綃幅)으로 싸서 사람을 보내어 주었는데, 우리 국조(國朝) 이래로 이러한 승직(僧職)이 없었다. 임금이 이 직을 주고자 하여 일찍이 정부(政府)에 의논하고, 정부에서 순종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마침내 봉작(封爵)하게 되었는데,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박종우(朴從愚)가 좌찬성(左贊成)이 되어 불사(佛事)를 의논할 때, 말이 매우 간절하고 정직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박종우가 무엇을 안다고 이같이 말하는가?"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의 직책을 파하고 정1품을 주었다. 정분(鄭苯)은 반차가 정인지(鄭麟趾)의 아래에 있었는데, 뛰어서 찬성(贊成)을 제수하니, 사론(士論)이 좋지 못하였다. 이천(李蕆)은 무예(武藝)로 일어나 성품이 매우 정밀 교묘하여, 오래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가 되었는데, 뇌물을 많이 받아들이므로 세종(世宗)께서 듣고 드디어 제조(提調)를 갈았으나 무릇 교묘한 일에 관계되는 것은 이천에게 명하여 감독 주장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대우가 높았으며, 세종(世宗)과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산릉(山陵)을 쓸 때에 모두 제조가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승진하여 1품에 제수되었다. 이사철(李思哲)은 오래 도승지(都承旨)로 있었는데, 뛰어서 가정(嘉靖)을 제수하였고, 김원(金元)은 신빈(愼嬪)의 아비인데, 특히 병조(兵曹)에 명하여 입직(入直)은 시키지 말고 순작(巡綽)으로 수반(隨班)하게 하였다. 박효함(朴孝咸)과 윤은(尹殷)은 불사(佛寺)를 영선(營繕)한 공로로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또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 세 도감(都監)과 수기(壽器)를 맡은 자에게 모두 한 자급(資級)씩 올려 주었다. 임금이 장차 세자(世子)를 봉하려고 하여 황보인(皇甫仁)을 사(師)로 삼고, 정갑손(鄭甲孫)·권맹손(權孟孫)·허후(許詡)·이선제(李先齊)를 빈객(賓客)으로 삼고, 또 박팽년(朴彭年)을 보덕(輔德)으로 삼고, 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을 필선(弼善)으로 삼고, 이개(李塏)·**양성지(梁誠之)**를 문학(文學)으로 삼고,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을 사경(司經)으로 삼고, 서강(徐岡)·최선복(崔善復)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원전】 6 집 25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인물(人物)

《 문종 002 00/07/15(정사) / 직제학 박팽년이 신미 칭호의 부당함을 상소할 때 양성지 등의 말한 바를 거론하다 》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박팽년(朴彭年) 등이 상서하기를,

"신 등은 대간(臺諫)에서 신미(信眉)의 일을 논하여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듣고, 분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무릇 호(號)를 가하는 것은 존숭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의 공덕이 있으면 올리고, 장상(將相)이 공훈이 있으면 주는 것으로, 그 예가 대단히 성한 것입니다. 후세의 인주(人主)가 불법을 존숭하고 혹 망령되게 중에게 준 자가 있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간흉 교활한 난신적자의 무리가 남의 집과 나라를 패망시킨 것이 많습니다. 신미(信眉)는 간사한 중입니다. 일찍이 학당(學堂)에 입학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음란하고 방종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학도들이 사귀지 않고 무뢰한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 아비 김훈(金訓)이 죄를 입게 되자, 폐고(廢錮)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몰래 도망하여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아비가 늙고 병든 몸으로 그의 속이고 유혹하는 말을 믿고 일찍이 술과 고기를 끊었다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때마침 여름으로 더운 날인데, 이 중이 그 아비에게 참회(懺悔)하고 백 번 절할 것을 권하여 마침내 이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만일 《춘추(春秋)》의 법으로 논하면 이것이 진실로 아비를 죽인 자입니다. 대개 이 중은 참을성이 많고, 사람을 쉽게 유혹하며, 밖으로는 맑고 깨끗한 듯이 꾸미고, 속으로 교활하고 속이는 것을 감추어, 연줄을 타서 이럭저럭하여 궁금(宮禁)에 통달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인군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치는 큰 간인(姦人)입니다. 만일 큰 간인이 아니면, 어찌 선왕을 속이고 전하를 혹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겠습니까? 만일 이 거조가 선왕께서 나왔다고 한다면, 선왕이 이 중을 아신 것이 하루가 아닌데, 일찍이 이 의논을 내지 않으시었으니, 어찌 공의(公議)가 있는 일은 인주(人主)도 경솔히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어찌 감히 선왕도 경솔히 하지 못한 일을 단행하며 의심하지 않습니까? 비록 선왕이 이미 이 일을 하시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공의(公議)로 고치는 것이 대효(大孝)가 되는 데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왕이 감히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갑자기 호를 주어 그 책임을 선왕에 돌리는 것이 가합니까? 인주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껴야 하고, 우국 이세(祐國利世)란 칭호는 비록 장상(將相)과 대신(大臣)에게 주더라도 오히려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그 가부를 살핀 뒤에 주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노간(老奸)이겠습니까? 그가 우국 이세(祐國利世)하지 못할 것은 사람마다 다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께서도 스스로 믿으실 것입니다. 어째서 감히 무익한 일을 하여 만대의 웃음거리를 만드십니까? 하물며 전하께서는 새로 보위(寶位)에 올라서 안팎이 촉망(囑望)하고 있으니, 마땅히 하루하루를 삼가서 한 호령을 내고 시행하는 것을 모두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오기를 기약하여, 조종(祖宗)의 사업을 빛내고 키워야 하

는데, 어째서 간사한 말에 빠지고 간사한 중에 유혹되어, 지극히 높은 칭호를 주어 그 도(道)를 고취(鼓吹)하십니까?

옛부터 인군이 처음에는 정대하여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재위한 지 오래 되어 가다듬는 정신이 조금 풀리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틈을 타서 끝을 마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지 겨우 두어 달이 넘었고, 산릉(山陵)이 겨우 끝나고 정사를 하는 처음에 제일 먼저 이 일을 거행하여서, 시초가 이미 크게 바르지 못하니 그 끝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민의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서 사라집니다. 이 칭호가 한 번 나오자 그 무리가 은총을 빙자하고 독수리처럼 떠벌리고 과장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한 존자(尊者)로 봉한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부처라 하고 미연히 쏠려 가니, 얼마 안 가서 이적(夷狄)의 금수(禽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邪正)의 소장(消長)과 풍속의 이역(移易)과 국가 존망의 기틀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일에 무엇이 이보다 더 크기에 조금도 경동(警動)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북쪽 오랑캐가 충만하여 중원(中原)이 어지럽고, 서북의 야인(野人)이 일찍부터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면 지금 이미 연결되었으니, 하루아침에 앞잡이가 되어 크게 침입하면, 그 변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가다듬고, 용도를 절약하고, 군량을 저축하기에 황황급급해야 하고, 다른 일을 할 여가가 없을 날인데, 어찌 한가히 편안하게 놀며 허무(虛無)에 뜻을 둘 때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연(廓然)히 강한 결단을 돌이키어 간사한 자를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고, 급히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고, 먼 변방에 물리쳐 두어서 시초를 바루는 도를 삼가시고, 일국 신민의 여망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였다. 소(疏)가 올라오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상소 안에 말한 선왕을 속이고 전하를 미혹하게 하였다는 것은, 속인 것은 무슨 일이며, 미혹한 것은 또 무슨 일인가? 또 선왕을 속일 때에는 어째서 간하지 않고, 지금에야 이런 말을 하는가? 또 신미(信眉)가 아비를 죽였다는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이 무리를 불러서 딴 곳에 두고, 하나하나 추궁하여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곧 불러 물으니, 박팽년(朴彭年)이 말하기를,

"이 중이 심히 간사합니다. 선왕으로 하여금 존숭하여 봉작(封爵)을 허락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선왕을 속인 것이요, 또 전하로 하여금 존숭하여 봉작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를 미혹한 것입니다. 선왕 때에는 비록 높이고 믿기는 하였으나 따로 봉숭(封崇)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것이요, 전하에 이르러 첫 정사에 특별히 작호(爵號)를 주고 성대한 예를 거행하므로, 감히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아뢴 것입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비 김훈(金訓)이 영동현(永同縣)에 살고 있었는데, 신미가 일찍이 김훈에게 권하여 술과 고기를 끊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김훈이 현령(縣令)

박여(朴旅)를 가서 보니, 박여가 말하기를, '늙은이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는다.' 하고 김훈에게 고기를 권하였습니다. 김훈이 먹고 돌아와서 신미에게 말하니, 신미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거의 부처가 다 되었는데, 오늘 고기를 먹었으니 일은 다 틀렸습니다. 청컨대 참회하여 부처님께 백 번 절하소서.' 하니, 김훈이 믿고 참회례를 행하여 팔뚝을 태우며 백 번 절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신이 이 말을 춘추관(春秋館) 여러 관원에게 들은 지가 오랩니다. 이개(李塏)·**양성지(梁誠之)**·이예(李芮)·허조(許慥) 등의 말이 같았고, 이승소(李承召)·송처검(宋處儉)·서거정(徐居正)·서강(徐岡) 등의 말도 또한 특히 같습니다. 다만 이 말을 근일에 유성원(柳誠源)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한 같았습니다. 다만 이 말은 김윤복(金閏福)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이것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여섯 승지(承旨)를 함원전(含元殿)에서 인견하고 소(疏) 중의 불공한 말을 일일히 지적하고, 또 우승지(右承旨) 정이한(鄭而漢)과 전명(傳命)하는 내시 김득상(金得祥)으로 하여금 이 소를 가지고 정부 당상(政府堂上)의 집에 가서 의논하여 오게 하였는데, 황보인(皇甫仁)이 의논하기를,

"소(疏)의 말 가운데 누(累)가 선왕에게 미친 것이 있어, 비록 불공한 데에 관계되었지만, 자고로 인신(人臣)이 감히 말하고 극진히 간하자면 박절(迫切)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한 것이니, 비록 이보다 지나치더라도 또한 책할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간신(諫臣)의 벌을 논하는 것은 정치 체제에 어떠합니까?"

하였다. 나머지 여러 상신(相臣)의 의논도 대략 모두 같았다. 정이한 등이 돌아와 아뢰었다. 처음에 집현전(集賢殿)에서 상소하기를 의논할 때 직제학(直提學) 최항(崔恒)과 직전(直殿) 이석형(李石亨)·성삼문(成三問) 등은 그 의논에 따르지 않았다.

【원전】 6 집 254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 문종 003 00/09/07(무신) / 공조 판서 정인지가 문과의 가액 선발 절목을 아뢰자 의정부 등과 의논하게 할 때 양성지가 의견을 말하다 》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문과(文科)의 가액(加額)과 시험보아 뽑는 절목(節目)을 아뢰니,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선제(李先齊)·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 등이 의논하기를,

"문과(文科)의 수효는 33인인데도 문관(文官)의 참외(參外)가 55인이므로, 해마다 자리에 결원(缺員)이 많이 있게 되니 메워 보충하지 못한다면 부득이해서 또 별시(別試)를 설치하여 뽑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자(士子)가 학업(學業)을 배양(培養)할 여가도 없으며, 마음도 또한 부동(浮動)하게 되어, 제배(除拜)의 저술을 다투어 베껴서 요행을 바라는 풍습(風習)이 크게 일어납니다. 또 지방의 과거(科擧) 보는 선비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여 선비를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니, 마땅히 시험보는 해에 50인을 뽑고, 별시(別試)는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학업(學業)에 전심(專心)하도록 하소서. 또 주군(州郡)의 교관(敎官)이 결원(缺員)이 있으면 대개 교도(敎導)로써 임명하여 사유(師儒)가 많지 못한 것은 또한 그 폐단입니다."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은 의논하기를,

"33인이 정원(定員)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인재(人才)가 옛날보다 더 많지도 않고 또 관직을 비우고 결원(缺員)되는 폐단도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성헌(成憲)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시학(視學)하고 선비를 뽑는 것은 조종(祖宗)의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성대(盛大)한 행사이니, 50명의 정원을 뽑고서 시학까지 폐지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는 의논하기를,

"신이 지난 해에 문과(文科)의 정원 수[額數]를 첨가(添加)하기를 청하니, 세종(世宗)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33인 안에서도 혹시 문리(文理)를 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감히 많이 뽑을 수가 있는가?' 하시므로, 신이 또 청하기를, '그렇다면 재능에 따라서 선비를 뽑되, 혹은 3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4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50명에서 그치기도 하면서, 50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렇다면 유사(有司)가 된 사람이 비록 혹시 재주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50명을 채워 뽑게 될 것이니, 선거(選擧)가 정도에 지나침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시므로, 신이 부끄러워 땀을 흘리면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훈(聖訓)이 매우 간절하고 환하게 명백하므로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하연(河演)은 의논하기를,

"문과(文科)의 초장 의의(初場疑義)는 지금에 와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장(秋場)은 해가 짧으니, 마땅히 표(表) 1장(場), 부(賦) 1장(場), 책(策) 1장(場)만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종서(金宗瑞)·정갑손(鄭甲孫)·허후(許詡) 등이 의논하기를,

"초장(初場)에는 경학(經學)을 시험하고, 중장(中場)에는 문사(文詞)를 시험하고, 종장(終場)에는 시무(時務)를 시험하게 되니, 과거(科擧)의 격례(格例)에 해가 짧고 긴 이유로써 경학(經學)을 시험보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거 보는 선비가 의의(疑義)를 처음 익히고 난 후에 생원시(生員試)

에 나가고, 의의(疑義)를 익히지도 않고서 사부(詞賦)와 책문(策問)을 익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경학(經學)을 밝히는 것은 어찌 반드시 상시로 이습(肄習)한 연후에야 능히 의의(疑義)를 제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장(初場)은 그전대로 따라 의의(疑義)로써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선제(李先齊)는 의논하기를,

"추장(秋場)은 해가 짧으니, 초장(初場)의 의의(疑義) 내에서 오경(五經)의 경의(經義)를 각기 1개씩만 시험하고 의문(疑問)은 제외시키고, 중장(中場)의 부·표(賦表) 내에서 표(表)만 시험하고 부(賦)는 제외시키고, 종장(終場)은 그전대로 따라 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척(鄭陟)은 의논하기를,

"초장(初場)은 의의(疑義)를 시험하고, 중장(中場)은 부·표(賦表)를 시험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이니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장(秋場)은 해가 짧으니, 초장(初場)은 의의(疑義)를 시험하고, 중장(中場)은 표(表)를 시험하고, 종장(終場)은 그전대로 따라 하소서."

하였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신석조(辛碩祖), 직제학(直提學) 노숙동(盧叔仝), 직전(直殿) 이석형(李石亨), 응교(應敎) 김예몽(金禮蒙), 교리(校理) 이개(李塏), 수찬(修撰)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서거정(徐居正), 부수찬(副修撰) 윤기견(尹起畎)·윤자운(尹子雲)·허조(許慥), 박사(博士) 서강(徐岡)·한계희(韓繼禧)·최선복(崔善復),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김순(金淳)·김지경(金之慶), 기사관(記事官) 김한계(金漢啓)·김명중(金命中) 등은 의논하기를,

"과목(科目)의 정원[額]은 고려(高麗)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진실로 고칠 만한 폐단은 없겠습니다. 지금 시장(試場)의 일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다만 33인만 뽑더라도 정문(程文)이 격식에 맞는 것은 1, 2편(篇)에 지나지 않으므로, 겨우 1, 2분(分)을 얻은 사람까지도 또한 모두 뽑아서 그 수효를 채우게 되니, 지금 만약 정원을 더 보탠다면 아마 취재(取才)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만약 문신(文臣) 참외(參外)의 자리에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는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삼관(三館)의 사무는 바쁘지 않으므로 1식년(式年) 동안에 비록 결원(缺員)이 있더라도 특별히 폐단의 일은 없을 것이니 정원을 더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초장(初場)에서 의의(疑義)를 시험하는 것은 그들이 경서(經書)를 강습(講習)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경서(經書)를 강(講)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의의(疑義)로써 시험하게 되며, 또 삼장(三場)에는 부·표(賦表)와 책문(策問)으로써 시험하게 되니, 이장(二場)을 하는 것은 많고 적은 것을 참작하여 헤아려 제도를 만든 것인데, 지금 의의(疑義)를 없애고 부·표(賦表)를 가지고 나누어 초장(初場)·중장(中場)을 삼는다면 이는 경서(經書)는 폐지하고서 다만 이장(二場)으로써 선비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 추장(秋場)이 해가 짧다고 한다면 책문(策問)을 제술하는 공력(功力)도 부·표(賦表) 양편(兩篇)보다 아래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책문(策問)을 이미 나눌 수 없는데도 어찌 부·표(賦表)를 나누어 이장(二場)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

니까? 또 중국의 해시(解試)도 모두 가을에 하고, 삼장(三場)의 증감(增減)도 없는데, 하물며 부(賦)는 다만 사장(詞章)의 소기(小技)인데, 부(賦) 1편(篇)을 가지고 책문(策問)에 준하여 나누게 된다면 경중(輕重)이 균등(均等)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으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두 법은 모두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원을 첨가해야 한다는 일은 또한 세종조(世宗朝)에서도 헤아려 의논했는데도 마침내 시행되지 못했는데, 지금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처음에 갑자기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고치시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집현전 행 직제학(集賢殿行直提學)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이예(李芮)·이승소(李承召),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 김윤복(金閏福)·박원정(朴元貞)·전효우(全孝宇)·금이영(琴以詠)·김용(金勇) 등은 의논하기를,

"우리 국조(國朝)의 식년(式年) 과목(科目)의 수효는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진실로 구습(舊習)에 따라 행해야 하겠지마는, 그러나 시대에 따라 손익(損益)이 된다면 법도 또한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歷代)의 선비를 뽑는 정원[額]은 많고 적은 것이 정원이 없는데, 우리 국조(國朝)의 33인의 정원은 어디에 의거해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비를 뽑는 것은 관직에 보충하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에는 문관(文官)의 결원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경하여 융통시켜서 그전의 정원보다 조금 증가시켜 관직에 결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다만 50인으로써만 제한하여 그 얻은 바 정문(程文)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입니다. 초장(初場)의 의의(疑義)는 시험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평소부터 이습(肄習)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종장(終場)의 대책(對策)이 초장(初場)의 의의(疑義)와 중장(中場)의 부·표(賦表)와 많고 적은 것이 서로 비등(比等)하니, 반드시 해가 짧은 이유로써 유독 초장과 중장만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경중(輕重)을 비교하여 그 폐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잗다랗고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삼장(三場)의 제술(製述)하는 법은 진실로 그전대로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별시(別試)는 선비의 마음으로 하여금 경솔히 흔들리게 할 것이니 자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문과(文科)의 별시(別試)는 본디는 좋은 뜻이었지마는, 그러나 인심(人心)이 부동(浮動)되어 능히 전심(專心)해서 학업을 익힐 수가 없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별시는 없애고 식년(式年)에 이르러 50인만 뽑아서 일정한 정원[定額]으로 삼도록 하소서. 초장(初場)의 의의(疑義)는 본디는 사서(四書)의 의문(疑問)되는 점과 오경(五經)의 뜻[義]만 상고하였는데, 지금 임시로 강경(講經)을 폐지하고, 또 의의(疑義)까지 없애게 되니, 이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모두 합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표(賦表)를 나누어 이장(二場)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모람(冒濫)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전대로 따라 행하여 의의(疑義)로써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원전】 6 집 27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문종 003 00/09/17(무오) / 왕세자가 처음으로 서연을 열다. 양성지 등이 소학을 강론하였다. 유성원, 이극감으로 세자의 시학을 삼다 》

왕세자(王世子)가 비로소 서연(書筵)을 열어 사부(師傅)·빈객(賓客)과 더불어 상회례(相會禮)를 행하고, 사부(師傅)인 하연(河演)·좌빈객(左賓客) 정갑손(鄭甲孫)·우빈객(右賓客) 권맹손(權孟孫)·좌부빈객(左副賓客) 허후(許詡)·우부빈객(右副賓客) 이선제(李先齊)·좌보덕(左輔德) 신석조(辛碩祖)·우보덕(右輔德) 노숙동(盧叔仝)·좌필선(左弼善) 이석형(李石亨)·우필선(右弼善) 김예몽(金禮蒙)·좌문학(左文學) 이개(李塏)·우문학(右文學) **양성지(梁誠之)**·좌사경(左司經) 유성원(柳誠源)·우사경(右司經) 이극감(李克堪)·좌정자(左正字) 서강(徐岡)·우정자(右正字) 최선복(崔善復) 등이 앞에 나아가 《소학(小學)》을 강론(講論)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내가 동궁(東宮)에 있을 적에는 박중림(朴仲林)과 최만리(崔萬理)가 시학(侍學)이 되었으니 지금도 이 예(例)에 의하여 서연관(書筵官)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라."

하였더니, 승지(承旨) 등이 서연 당상관(書筵堂上官)으로 하여금 이를 선발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하연(河演)·정갑손(鄭甲孫)·허후(許詡) 등이 유성원(柳誠源)과 이극감(李克堪)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모두 신진(新進)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 하고는,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경연관(經筵官)과 서연관(書筵官)을 구애하지 말고 다시 의망(擬望)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에 노숙동·김예몽·유성원·이극감을 의망(擬望)하여 아뢰므로, 임금이 마침내 유성원과 이극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명령하기를,

"이제 그대들을 세자(世子)의 시학(侍學)으로 삼아 세자에게는 붕우(朋友)의 예절로써 대하도록 할 것이니 그대들도 또한 붕우(朋友)처럼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기를 펴지 못하여 할말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경서(經書)의 의리(義理)와 고금(古今)의 격언(格言)에 있어서는 조용히 부드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깨닫는 바가 있도록 하라."

하고는, 이어서 날마다 들어와서 시강(侍講)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6 집 28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문종 003 00/09/27(무진) / 죽은 중추 이진이 첩의 아들을 과거에 내보내려고 적처를 버린 일을 양성지 등이 의논하다 》

처음에 졸(卒)한 중추(中樞) 이진(李蓁)의 전처(前妻) 김씨(金氏)가 어리석고 또 계사(繼嗣)가 없는 이유로써 다시 최씨(崔氏)에게 장가들어 두 사람을 한 집 안에 거느리고 산 지가 몇 해나 지나게 되었다. 정묘년 가을에 이르러 최씨의 사위가 무과(武科)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훈련관(訓鍊觀)에서 과거 보러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진이 상언(上言)하여 사정을 호소하니 국가에서 논정(論定)하기를 김씨(金氏)를 적처(嫡妻)로 삼고 최씨(崔氏)를 첩(妾)으로 삼아 이를 이이(離異)시켰는데, 그 후에 이진이 최씨(崔氏)와 이혼(離婚)하지 않으려는 뜻으로써 상언(上言)했더니 세종(世宗)께서 우대하여 이를 허가하여 최씨(崔氏)를 김씨(金氏)와 더불어 처음과 같이 함께 살도록 하였다. 이진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니, 김씨(金氏)의 외백고(外伯姑)인 홍인신(洪仁信)의 아내에게 서신(書信)을 보내기를, '저의 아내 김씨(金氏)는 대모(大母)를 전적으로 의뢰(依賴)하고 있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병인(病人)이지만 기별(棄別)한다는 글도 없으면서 거느리고 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이진이 마지못해서 기별(棄別)한다는 글을 만들고 노비(奴婢)의 문권(文券)까지 합하여 보내 주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진은 죽었다. 이진의 뜻을 추구(推究)한다면 김씨(金氏)를 미워서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최씨(崔氏)를 적처(嫡妻)로 삼아서 자손(子孫)을 쓰려고 한 계책일 뿐이었다. 김씨(金氏)의 조카 김상안(金尙安)이 그 귀종(歸宗)의 설(說)을 인용(引用)하여 사헌부(司憲府)에 호소하니,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진(李蓁)이 첩의 소산(所産)으로 하여금 사로(仕路)에 통하려고 하여 조강지처(糟糠之妻)를 경솔히 버렸기에, 일찍이 다시 합가(合家)하도록 명령했는데도 거의 죽게 될 때에 다시 내쫓아 족친(族親)에게 호구(糊口)하도록 하였으니, <이진은> 죽어도 또한 죄가 남게 됩니다. 마땅히 김씨(金氏)로 하여금 이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첩의 아들로 하여금 봉양(奉養)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진이 이미 죽었으므로 다시 합가(合家)시킬 길도 없으며, 의리가 끊어진 남편의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실로 적당치 못한 일입니다. 첩의 아들 이배인(李培仁)이 김씨(金氏)로써 수양(收養)한 적모(嫡母)로 삼아 아버지의 유언(遺言)을 핑계삼아 집에서 봉양하려고 했지마는, 그러나 김씨(金氏)는 수양(收養)한 아들이 아니라고 물리치고 있으며, 또 이진이 이미 버린 아내로써 아들에게 유언(遺言)하여 집에서 봉양하도록 하는 것이 정리(情理)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김상안(金尙安)은 김씨

(金氏)가 이진(李蓁)과 더불어 동거(同居)할 때에도 상시 진퇴(進退)하여 화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내쫓김을 당하고 연로(年老)하여 후사(後嗣)도 없으면서 죽을 지경에 가까이 있는데, 효도로써 봉양한다고 핑계하고서 서로 송사를 하여 다투게 되어서 그 이익을 탐내어 부끄럼도 없이 노비(奴婢)와 재물을 차지하려는 계책이 환하게 되었으니, 비록 전례(前例)로는 마땅히 귀종(歸宗)시켜야 할 것이지만, 그 뜻대로 노비(奴婢)를 주어서 그 욕심을 이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홍인신(洪仁信)의 아들 홍양(洪陽)은 김씨(金氏)에게 이성(異姓)의 소속(疎屬)이 되므로 평소부터 친목(親睦)하는 뜻도 없었는데, 밤을 이용하여 데리고 가서 농장(農場)에 두고서 스스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서울에 불러 와서 묻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사고(事故)를 핑계하고서 즐거이 거느리고 오지도 않으며, 노부(老婦)를 몰래 꾀이기를 어린애를 제어하듯이 하니, 그의 음휼(陰譎)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지금 본부(本府)에서 여의(女醫)를 보내어 김씨(金氏)에게 정원(情願)을 물으니, 무릇 일용 행사(日用行事)에 관한 일도 분명히 개설(開說)하지도 못하고, 이진(李蓁)의 성명(姓名)과 존몰(存沒)도 또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로써 미루어 본다면 그가 홍양(洪陽)의 집에 그대로 거처하고 있다는 말은 김씨(金氏)의 정원(情願)이 아니고, 실상은 홍양의 몰래 꾀인 데서 나온 것입니다.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이익을 탐내는 무리들이 전민(田民)을 빼앗기를 꾀하여 벌떼처럼 일어나 다투어 송사하게 되니, 선비의 풍습(風習)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인륜(人倫)과 풍속에 관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씨(金氏)는 이미 노비(奴婢)와 토전(土田)이 있으니 족친(族親)의 집에 우거(寓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노비(奴婢)가 있는 상주(尙州)로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하기를,

"홍양(洪陽)은 소원(疎遠)한 족속(族屬)으로서 김씨(金氏)의 전민(田民)을 탐내어 몰래 숨겨서 맞이해 두었으니 지취(志趣)가 탐욕이 많습니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엄하게 징벌(懲罰)하여 귀종(歸宗)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형(尹炯)·참판(參判) 기건(奇虔)·참의(參議) 김연지(金連枝)는 의논하기를,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귀종(歸宗)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의리인데, 그 족친(族親) 중에서 기탁(寄托)할만한 사람을 골라 그로 하여금 봉양(奉養)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때가 없이 고찰(考察)하여 그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소서."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과 참의(參議) 홍심(洪深)은 의논하기를,

"홍양(洪陽)이 소원(疎遠)한 족속(族屬)으로서 평소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지 않고 있다가 이진(李蓁)이 죽은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탐하여 맞이해 청하니 간휼(姦譎)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마땅히 귀종(歸宗)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형조 참판(刑曹參判) 안완경(安完慶)은 의논하기를,

"김상안(金尙安)이 본종(本宗)의 지친(至親)으로서 이익을 탐내어 고소(告訴)했으니 진실로 일컬을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여자(女子)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귀종(歸宗)하는 것이 예절이니 본종(本宗)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승지(承旨) 정창손(鄭昌孫)과 김문기(金文起)는 의논하기를,

"만약 반드시 김상안(金尙安)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김씨(金氏)의 본종(本宗)의 친족(親族)이 또한 많이 있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봉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최항(崔恒)·직전(直殿) 성삼문(成三問)·교리(校理) 이개(李塏)·부교리(副校理) 이승소(李承召)·부수찬(副修撰) 허조(許慥)·수박사(守博士) 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귀종(歸宗)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의논입니다. 비록 김상안(金尙安)의 의도(意圖)가 완전히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기탁(寄託)할 수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귀종(歸宗)의 의리가 이미 중요하니 사람이 적당치 않다고 해서 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돌아갈 만한 이가 있으면 김상안(金尙安)에게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은 의논하기를,

"홍양(洪陽)과 김상안(金尙安)이 김씨(金氏)를 서로 봉양하려고 다투는 것이 과연 모두가 효양(孝養)의 성심(誠心)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의 꾀 가운데 빠져서 김씨(金氏)를 쓸데없는 곳에 버리기보다는 다시 이진(李蓁)의 집으로 보내어 최씨(崔氏)의 아들로 하여금 생존할 때는 봉양하고 죽고 난 후에는 수빈(守殯)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혜(趙惠)는 의논하기를,

"김씨(金氏)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 이진(李蓁)의 첩자(妾子)인 이배인(李培仁)을 양육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서 전민(田民)을 나누어 주어서 그 제사를 받들게 하려고 했으니, 마땅히 이배인에게 부탁하여 이진(李蓁)의 적처(嫡妻)와 첩(妾)의 문란한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김씨(金氏)를 공처(公處)에 불러 와서 그 정원(情願)을 들어 구처(區處)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승지(承旨) 이사순(李師純)·이계전(李季甸)·김완지(金完之)·정이한(鄭而漢)은 의논하기를,

"국가의 대법(大法)은 한 사람의 몸이 생존하고 사망한 이유를 가지고 경솔히 버리거나 존치(存置)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진(李蓁)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를 의논한다면 마땅히 이진이 이유도 없이 적처(嫡妻)를 버린 죄를 다스려 완취(完聚)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진이 죽은 이

유로써 <김씨(金氏)에게> 귀종(歸宗)하기를 경솔히 허가하여 국가의 대법(大法)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적처(嫡妻)와 첩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 집안에서 같이 살도록 한 것은 세종(世宗)의 명령이고, 기별(棄別)하는 일은 이진(李蓁)의 본의(本意)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명칭을 바로잡고 분수(分數)를 정하여 김씨(金氏)를 옛날의 거처에 돌려보내어 최씨(崔氏)의 아들로 하여금 적모(嫡母)로서 봉양하도록 하고, 김씨(金氏)가 죽고 난 후에는 이진(李蓁)의 가묘(家廟)에 합사(合祀)하도록 하는 것이 의리에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김씨(金氏)의 재물과 노비[蒼赤]는 일체 김씨(金氏)의 구처(區處)에 따르게 할 것인데, 만약 최씨(崔氏)의 아들이 정성을 다해서 봉양했는데도 김씨(金氏)가 마침내 구처(區處)함이 없다면 저절로 국가의 성법(成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주(尙州)를 농토(農土)가 있는 곳이라 해서 김씨(金氏)의 의사를 어겨서 강제로 보낸다면 이것이 어찌 방출(放黜)과 다르겠습니까? 김상안(金尙安)의 송사(訟事)는 과연 대의(大義)를 생각해서 김씨(金氏)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재물을 탐내고 있다면 김씨(金氏)를 김상안(金尙安)이 거주하는 상주(尙州)의 땅으로 보내는 것은, 이것이 김상안의 꾀 가운데 빠져서 그의 이욕을 탐내는 마음만 이루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씨가 어리석고 사람의 등류와 같지 않아서 지각(知覺)이 전연 없으므로, 노비[蒼赤]와 재물을 그로 하여금 구처(區處)시킬 수 없으니 상주(尙州)에 보내는 것을 어찌 그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하겠는가?'고 하지마는 이것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여의(女醫)와 더불어 이야기한 말을 살펴보건대, 그 10분의 안에서 7분은 옳은 말이 되니 진실로 정신이 어두워 망령된 생각으로 인사(人事)를 살피지 못하여 지각(知覺)이 전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물을 그의 구처(區處)에 맡겨 두는 일이 어찌 옳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상주(尙州)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뜻의 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데도 강제로 이를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함이 명백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진(李蓁)이 생존할 때에 내쫓은 아내를 죽은 후에 완취(完聚)시키는 것은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최씨(崔氏)의 아들은 김씨(金氏)로 인하여 서자(庶子)가 되니 어찌 정성을 다해서 그를 받들겠습니까? 귀종(歸宗)시키는 일이 옳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는데,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부인(婦人)을 내쫓아 귀종(歸宗)시키는 것이 비록 정론(正論)이라 하지만, 법에 의거하여 완취(完聚)시키는 것은 국가의 대전(大典)인데, 이진(李蓁)이 적처(嫡妻)를 내쫓은 것은 곧 임종시(臨終時)의 난명(亂命)이므로 국가의 죄인(罪人)이 된 것이니 국가에서 그대로 두고 논죄(論罪)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논죄한다면 어찌 이진(李蓁)이 죽은 이유로써 그 난명(亂命)을 인정하고서 그 대전(大典)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의리에 합당하므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최씨(崔氏)의 아들이 능히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는 의논이 유사하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이미 그 적서(嫡庶)를 분변하였으니 비록 김씨(金氏)가 떠났더라도 최씨(崔氏)의 아들이 마침내 적자(嫡

子)가 될 이치가 없으니, 어찌 이로써 혐오(嫌惡)를 삼겠습니까? 또 이진(李蓁)의 아비 이민도(李敏道)는 태조(太祖)를 만나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여 벼슬이 재보(宰輔)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중국(中國)에서 피란(避亂)해 왔기 때문에 이진(李蓁)이 오로지 김씨(金氏)의 노비를 등록하여 문호(門戶)를 세웠으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최씨(崔氏)에게 장가들었지마는 능히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김씨(金氏)가 노인(路人)이 된다면 이진(李蓁)의 문호(門戶)는 장차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씨(崔氏)의 아들이 김씨(金氏)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든다면 김씨(金氏)의 노비도 혹시 차지할 수 있는 이치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싫고 꺼려서 봉양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김씨(金氏)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거처로 돌아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하고, 최씨(崔氏)의 아들로 하여금 적모(嫡母)로서 받들고 몸이 죽고 난 후에는 사당(祠堂)에 합사(合祔)케 한다면 국가의 대법(大法)에도 어긋나지 않고 훈신(勳臣)의 가세(家世)도 잃지 않고, 세종(世宗)께서 동거(同居)하게 한 명령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김씨(金氏)가 죽은 후에도 또한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는 귀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참판(參判) 정척(鄭陟)·참의(參議) 민공(閔恭)은 의논하기를,

"김씨(金氏)가 전민(田民)이 많이 있으니 비록 거두어 봉양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한 안심(安心)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어찌 강제로 모인(某人)으로 하여금 거두어 봉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정적으로 다른 데에 의거하여 그만 내버려두고서 논하지 말고 김씨(金氏)로 하여금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갑(甲)에게든지 을(乙)에게든지 그 가는 데로 맡겨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직제학(直提學) 박팽년(朴彭年)·직집현전(直集賢殿) 이석형(李石亨)·교리(校理) **양성지(梁誠之)**·부교리(副校理) 이예(李芮)·수찬(修撰) 유성원(柳誠源)·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성(異姓)으로서, 어떤 사람은 족속(族屬)으로서 수양(收養)과 시양(侍養)을 하는 일이 세상의 풍조(風潮)가 모두 이러한데, 어찌 유독 김씨(金氏)에게만 강제 귀종(歸宗)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만 내버려두고서 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정리(情理)에 합당하겠습니다. 만약 김씨(金氏)가 죽고 난 후에 족인(族人)이 전민(田民)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국법(國法)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와 참의(參議) 임효신(任孝信)은 의논하기를,

"그 전민(田民)이 스스로 봉양(奉養)할 만하면 그 재산이 넉넉한 종의 집에 부탁하여 그 몸을 마치도록 하고, 만약 몸이 죽은 후에 전민(田民)을 구처(區處)하는 것은 다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와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 위에 아뢰니, 임금이 허후(許詡)와 박팽년(朴彭年)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6 집 290 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 *신분(身分)

문종 1년

《 문종 010 01/11/25(기미) / 집현전 교리 양성지가 강무장 주위에 사는 백성들의 금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토록 건의하다 》

정사(政事)를 보고, 윤대(輪對)하였다. 집현전(集賢殿) 교리(校理)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근년에 강무장(講武場)을 크게 넓히어 금수(禽獸)가 번성(繁盛)하여 화곡(禾穀)을 해치니, 주민의 태반이 유리(流離)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유망(流亡)하였으나 공부(貢賦)는 옛날과 같으니, 가령 1호(戶)가 머물러 살아도 전일 여러 호수의 역(役)을 바치게 되므로 날로 더욱 조잔(彫殘)하여 백성들이 전전(轉轉)하고 이리저리 해매게 되므로 노루나 사슴이 인가(人家)의 부엌에 들어와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김완지(金完之)가 횡성현(橫城縣)에 이르러 부락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 뜰 가운데서 곡성(哭聲)을 듣고 물으니, 말하기를, '백성의 밭이 단지 1결(結)이 있는데 화곡(禾穀)이 차츰 익어가서 이를 가지고 처자를 부양하려고 하였는데 어젯밤에 노루와 사슴의 피해를 받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으니 백성이 어찌 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크게 울었으므로 김흔지도 슬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군(郡)도 역시 그러하니, 빌건대 정부(政府)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의논하여, 철원(鐵原)·평강(平康)·이천(伊川)·양평(楊平)·지평(砥平)·춘천(春川)·홍천(洪川)·횡성 이외에는 헤아려 <공부(貢賦)를> 파하여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김흔지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으니, 그 글이 아침이나 저녁에는 이를 것이다. 글이 이르면 즉시 구처(區處)하겠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국가(國家)에서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한 것은 그 조석(朝夕)으로 의논하고 생각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너희들이 모든 국가의 일에 대하여 극진하게 의견을 말하고 숨김이 없으니, 내가 대단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예의(銳意)로 다스림을 구하여 여러 신하가 윤대(輪對)하면 반드시 언사(言辭)와 안색(顔色)을 바로 하고 듣는 데 매우 열심이었고 고달픔을 몰랐으며, 혹은 해가 중천(中天)에 이르러도 수라를 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또 야대법(夜對法)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원전】 6 집 45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 / *군사-병법(兵法)

문종 2년

《문종실록》 편수관 명단

경태(景泰) 5년 갑술 4월에 춘추관(春秋館)에서 왕명(王命)을 받아서 찬술(撰述)하기 시작하여, 경태 6년 을해 11월에 마쳤습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한다.】

영관사(領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란 동덕 좌익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영의정부사 영경연예문관서운관사 세자사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領經筵藝文館書雲觀事世子師河東府院君) 신(臣)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추충 좌익 공신 숭정 대부 의정부 우찬성 집현전 대제학 세자 좌빈객 겸 판이조사 봉원군(推忠佐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集賢殿大提學世子左賓客兼判吏曹事蓬原君) 신(臣) 정창손(鄭昌孫)

수충 위사 협찬 정란 좌익 공신 숭정 대부 병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겸 성균 대사성 세자 이사 한성군(輸忠衛社協贊靖難佐翼功臣崇政大夫兵曹判書集賢殿大提學兼成均大司成世子貳師韓城君) 신(臣) 이계전(李季甸)

정헌 대부 예조 판서 지경연사(正憲大夫禮曹判書知經筵事) 신(臣) 김조(金銚)

동지관사(同知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란 공신 가선 대부 사헌부 대사헌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 영성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集賢殿提學同知經筵事寧城君) 신(臣) 최항(崔恒)

가선 대부 예조 참판 세자 우부빈객(嘉善大夫禮曹參判世子右副賓客) 신(臣) 하위지(河緯地)

편수관(編修官)

통정 대부 이조 참의(通政大夫吏曹參議) 신(臣) 어효첨(魚孝瞻)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송처관(宋處寬)

기주관(記注官)

절충 장군 의흥 시위사 상호군(折衝將軍義興侍衛司上護軍) 신(臣) 권기(權技)

통정 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通政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이석형(李石亨)

통정 대부 행 지승문원사(通政大夫行知承文院事) 신(臣) 김득례(金得禮)

통정 대부 행 직예문관(通政大夫行直藝文館) 신(臣) 이비(李棐)

중직 대부 예문관 직제학(中直大夫藝文館直提學) 신(臣) 안지귀(安知歸)

중직 대부 사헌 집의(中直大夫司憲執義) 신(臣) 이예(李芮)

중직 대부 성균 사성 지제교 겸 지승문원사(中直大夫成均司成知製敎兼知承文院事) 신(臣) 유성원(柳誠源)

중직 대부 행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中直大夫行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양성지(梁誠之)**

중훈 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김지경(金之慶)

봉정 대부 행 종부 소윤(奉正大夫行宗簿少尹) 신(臣) 장계증(張繼曾)

봉정 대부 행 종부 소윤(奉正大夫行宗簿少尹) 신(臣) 강노(姜老)

봉열 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세자 좌필선 겸 좌중호(奉列大夫直集賢殿知製敎世子左弼善兼左中護) 신(臣) 이승소(李承召)

조산 대부 집현전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 겸 부지승문원사(朝散大夫集賢殿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兼副知承文院事) 신(臣) 조근(趙瑾)

조산 대부 행 집현전 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朝散大夫行集賢殿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홍응(洪應)

조산 대부 행 교서 교리 겸 승문원 교리(朝散大夫行校書校理兼承文院校理) 신(臣) 성희(成熙)

조봉 대부 수 부지통례문사(朝奉大夫守副知通禮門事) 신(臣) 김명중(金命中)

조봉 대부 집현전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奉大夫集賢殿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이극감(李克堪)

조봉 대부 행 성균 직강(朝奉大夫行成均直講) 신(臣) 이함장(李諴長)

통선랑 행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郎行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서강(徐岡)

통선랑 행 이조 좌랑(通善郎行吏曹佐郎) 신(臣) 김필(金필)

통선랑 행 이조 좌랑(通善郎行吏曹佐郎) 신(臣) 김덕원(金德源)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 예조 좌랑(通善郎行禮曹佐郎) 신(臣) 이계전(李季甸)

봉직랑 행 공조 좌랑(奉直郎行工曹佐郎) 신(臣) 이익(李翊)

봉직랑 행 승문원 부교리(奉直郎行承文院副校理) 신(臣) 강미수(姜眉壽)

봉직랑 행 훈련 주부(奉直郎行訓鍊注簿) 신(臣) 유자문(柳子文)

승의랑 성균 주부 겸 동부 유학 교수관(承議郎成均注簿兼東部儒學敎授官) 신(臣) 이유의(李由義)

승의랑 성균 주부 겸 서부 유학 교수관(承議郎成均注簿兼西部儒學敎授官) 신(臣) 안중후(安重厚)

선교랑 수 성균 주부 겸 동부 유학 교수관(宣敎郎守成均注簿兼東部儒學敎授官) 신(臣) 박찬조(朴纘祖)

승훈랑 행 예문 봉교(承訓郎行藝文奉敎) 신(臣) 윤자영(尹子滎)

선무랑 행 예문 봉교(宣務郎行藝文奉敎) 신(臣) 이제림(李悌林)

선무랑 행 예문 봉교(宣務郎行藝文奉敎) 신(臣) 최한보(崔漢輔)

선무랑 행 예문 봉교(宣務郎行藝文奉敎) 신(臣) 민정(閔貞)

선교랑 행 예문 봉교(宣敎郎行藝文奉敎) 신(臣) 권이경(權以經)

선교랑 행 예문 대교(宣敎郎行藝文待敎) 신(臣) 이문환(李文煥)

계공랑 행 예문 대교(啓功郎行藝文待敎) 신(臣) 유질(柳質)

무공랑 행 예문 검열(務功郎行藝文檢閱) 신(臣) 김겸광(金謙光)

통사랑 행 예문 검열(通仕郎行藝文檢閱) 신(臣) 안신손(安信孫)

계공랑 행 예문 검열(啓功郎行藝文檢閱) 신(臣) 김이용(金利用)

계공랑 행 예문 검열(啓功郎行藝文檢閱) 신(臣) 김영견(金永堅)

통사랑 행 예문 검열(通仕郎行藝文檢閱) 신(臣) 윤민(尹愍)

【원전】 6 집 497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단종 즉위년

《 단종 004 00/11/05(계해) / 이숙번의 처 정씨가 재산을 사위에게 주도록 한 남편의 유서를 고치는 일을 상언한데 대해 양성지 등이 의견을 말하다 》

앞서 이숙번(李叔蕃)의 처 정씨(鄭氏)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의 부처(夫妻)는 노비(奴婢)·전지(田地)·가사(家舍)·재산(財産)을 함께 서명(署名)하여 문권(文券)을 작성하였고, 맏사위인 전 현감(縣監) 강순덕(姜順德)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모두 죽고 난 뒤에 내가 전의 문안(文案)을 고치고자 하여 강순덕으로 하여금 가져오라 하였으나, 강순덕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써 모자(母子)의 의리를 어기었습니다. 또 그 조카 강희맹(姜希孟)을 수양(收養)하여 후사(後嗣)로 삼았다고 칭탁하고, 노비를 마음대로 여러 조카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의 자손에게는 1구도 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남편의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육조(六曹)와 대성(臺省)·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공조 판서(工曹判書) 이사철(李思哲)이 의논하기를,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것과 한 가지이니,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내가 남편이 작성해 놓은 문서를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들이 부모의 문서를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씨가 이숙번이 살았을 때 이미 함께 문서를 작성하여 전지와 노비와 가재(家財)를 여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이숙번이 죽고 난 뒤에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들어주면 특별히 아내가 그 남편이 한 일을 고칠 수 있게 해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윤리(倫理)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간사한 아들이 아비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 어미를 꾀이고 농간질하여 아비와 함께 가진 어미의 재산을 침탈하게 되면 풍속을 해치게 되고 장차 분운(紛紜)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의 고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르지 못한 아들이 법을 믿고 어미를 업신여겨 불순한 데 이르를 것이니, 이 문제는 실로 세상의 풍교(風敎)에 관계되는 일로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는 이숙번의 문서에 따르고, 정씨의 토지와 노비는 정씨의 소원에 따르면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형(尹炯)·참판(參判) 이사순(李師純)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부모가 자손에게 노비·전지·가사·재물을 마음대로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법입니다. 자손이 부모에게 어찌 불순할 이치(理致)가 있겠습니까? 강순덕은 정씨의 사위이고 강희맹이 강순덕의 후계자이면 이들은 모두 정씨의 자손입니다. 이미 정씨 자손이 되었으면, 무릇 주고 빼앗는 일은 오로지 정씨에게 있습니다. 만약 정씨로 하여금 자기 집의 노비·전지·재물을 마음대

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강상(綱常)이 무너지고 인정과 이치에 합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에 옳지 않는 부모는 없다.' 하였으니, 하나같이 정씨의 정원(情願)에 따라야 강상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교화(敎化)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참판(參判) 정척(鄭陟)·참의(參議) 김유온(金有溫) 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은 아내 정씨와 함께 지난 을미년에 양가(兩家)의 노비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숙번은 경신년에 죽었고, 장녀(長女)인 강숙덕의 아내가 후사(後嗣)가 없어서 강순덕은 아내 이씨와 함께 의논하여 지난 신유년에 조카 강희맹(姜希孟)을 후사로 세워서 아들로 삼고 노비·전지·재물·가사를 모두 전해 받게 하였습니다. 이씨가 죽은 후 강희맹이 상복을 입고 상제(喪制)를 마친 후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지금 정씨가 관부에 고발하여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것은 오로지 장녀가 후사 없이 죽은 뒤 부부의 노비와 전장(田莊)이 자손 외의 사람에게 전해지고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꾀가 간사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부모가 아들에게 노비와 재물을 마음대로 주고 빼앗는 것은 고금이 모두 그러합니다. 어미가 비록 노비 1구와 물건 하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된 자가 어찌 원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씨의 고장(告狀)이 잘못된 것이라 하고 강순덕이 그대로 재물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것은 모자의 은혜를 해치는 것이고 강상(綱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숙번의 살아 생전에 일찍이 준 노비와 전장(田莊), 그리고 한천(韓蕆)이 준 노비와 전장을 추탈(追奪)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대로 강순덕에게 주어 강희맹에게 전하게 하고, 정씨의 자기 노비는 정씨가 구처(區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민신(閔伸)·참의(參議) 변효경(卞孝敬) 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이 정씨와 함께 의논하여 딸인 강순덕의 아내에게 작성해 준 노비 문권(文券) 안에는 자손 이외의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 도로 빼앗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딸이 살아 있을 때 강희맹을 후계로 세웠는데,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까지 아울러 도로 빼앗으려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정씨의 노비·전지·가산은 그대로 강희맹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겸지사(兼知事) 이축(李蓄)은 의논하기를,

"정씨가 이숙번이 살아 있을 때, 같이 의논하여 문권(文券)을 작성하였고, 또 강순덕 역시 이씨가 살아 있을 때 같이 의논하여 강희맹을 후사로 세웠는데, 지금 정씨가 딸이 죽고 또 후사가 없다는 것으로써 도로 빼앗고자 꾀하는 것이니, 다시 고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극관(趙克寬)·참의(參議) 이인손(李仁孫)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노비를 주고 빼앗는 것은 재물 주인의 구처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순덕이 정씨의 사

위로서 죽은 아내의 노비와 재산을 모두 가지고자 하여 장모[妻母]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록 자기의 문서에는 간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모두 노비와 재물은 이미 그가 문권을 작성해 놓고 죽어서 정씨가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죽고 난 뒤에는 당연히 강희맹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만약 정씨의 노비와 재산을 그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정과 이치에 합당치 않으니, 마음대로 구처하게 할 것입니다. 또 강순덕이 딸의 남편으로서 다만 오로지 갖고자 하여 장모[妻母]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뢰어 분쟁을 일으킨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강희맹이 이미 후사로 세워졌다면 정씨의 외손(外孫)인데, 아직 가서 뵙지도 않았으니, 또한 불순(不順)합니다.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규명하여 과죄(科罪)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의논하기를,

"강순덕의 장모 정씨가 노비와 전지의 구처를 장고(狀告)한 것은 사리(事理)에 맞는 일이니, 그 소원대로 허락하소서."

하고, 대사헌(大司憲) 성봉조(成奉祖)·장령(掌令) 이보흠(李甫欽)·박대손(朴大孫)·지평(持平) 김윤복(金閏福)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정씨는 또한 강순덕의 아내가 후사 없이 이미 죽었으니, 부부가 함께 준 문권을 가지고 고치려 하는 것은 비록 불순한 것과 같으나, 그러나 정씨가 가난하여 자활(自活)할 수 없고 그 아들 이정(李楨)과 딸인 김해(金賅)의 아내가 모두 살기가 어려워 어미의 빈궁(貧窮)함을 구제할 수 없는데, 가령 강순덕의 아내가 생존해 있다면 그 어미의 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비록 죽었더라도 그 전지와 노비를 그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어서 생업이 이미 풍족하다면 강순덕의 정씨에 대한 모자의 의리가 오히려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정씨의 곤궁(困窮)함을 보았다면 진실로 호소(呼訴)를 기다리지 않고 의리상 마땅히 돌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돌보아 줄 마음은 없고, 진(秦)나라가 월(越)나라 보듯이 하다가 호소를 하기에 이르러서도 주지 않으니, 이것은 장모와 더불어 쟁탈(爭奪)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본[綱]이 되는 것이 비록 천하의 큰 법칙이지만, 아들의 어미에 대한 의리도 과연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풍속의 야박하고 잔악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숙번이 오늘의 형세를 본다면 차마 죽은 딸을 사랑하고 살아 있는 처자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또 정씨가 강순덕의 전지와 노비· 재물을 모두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는 것은 참으로 많고 돌려받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으며, 다른 무리들이 애증(愛憎)으로써 남편의 명령을 함부로 고치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강순덕의 전지와 노비를 일체 정씨의 처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모자 사이의 대의(大義)를 보존(保存)하게 하면 부부의 근본[綱]에 있어서도 또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신석조(辛碩祖)·응교(應敎) **양성지(梁誠之)**·교리(校理) 이예(李芮)·부교리(副校理) 유성원(柳誠源) 등이 의논하기를,

"부모가 이미 서로 의논하여 노비와 토지를 아들과 사위에게 나누어 준 뒤에 스스로 다시 고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으니 잘못하는 일이 아니며, 이것은 스스로 한집안 일이니 재주(財主)의 처분대로 맡기는 것이 상례(常例)일 뿐입니다. 이로써 논하면 정씨의 일은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미 남편과 함께 문권(文券)을 작성하였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 아내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니다만, 그러나 문권을 작성할 때 남편이 혼자서 하고 아내가 참여할 수 없었다면 논의할 만하지만, 이미 부부가 함께 재주(財主)가 되어 나누어 주었다면, 그 뒤에 다시 고치는 데에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일체(一體)이며 같은 재주인데 어찌 아비와 어미 사이에 <권리>의 무겁고 가벼움이 있겠습니까? 정씨가 구처하도록 맡기소서."

하고, 부제학(副提學) 최항(崔恒)·직제학(直提學) 박팽년(朴彭年)·직전(直殿) 김예몽(金禮蒙)·응교(應敎) 이개(李塏)·교리(校理) 이승소(李承召)·부교리(副校理) 이극감(李克堪)·부수찬(副修撰) 한계희(韓繼禧)·최선복(崔善復)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이미 그 아내와 더불어 가산(家産)을 함께 나누어 자손에게 주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이 죽은 뒤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의 명령이 혹 이치에 어긋나더라도 자손은 굽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씨가 이숙번(李叔蕃)이 죽고 난 뒤에 스스로 사의(私意)로써 이미 작성한 문권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남편을> 따르지 않는 아내가 되는 것이며 정씨가 문권을 고치고자 하는데 강순덕이 거부하고 주지 않는 것은 불순한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혹 말하기를, '강순덕이 장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모자의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일이다.' 합니다만, 정씨가 문권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부부의 근본인, 즉 삼강(三綱)의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어찌 전자(前者)의 과실만 중하고 후자의 과실이 가볍다 하겠습니까? 관부(官府)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만이지만 깨닫고서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희맹의 경우는 이미 강순덕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정씨가 그 외조모가 되었으니, 외손으로써 논하지 않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정씨가 강희맹에게 허물을 돌리는 말은 그 뜻이 사의(私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사(後嗣)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법입니다. 어찌 이로 인하여 드디어 뒷날 법이 무너질 단서(端緖)를 열어 놓겠습니까? 마땅히 정씨로 하여금 남편의 명령을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고, 강순덕을 죄 주어서 불순함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고, 직제학 신숙주(申叔舟)가 의논하기를,

"이숙번이 살았을 때 작성해 둔 문권을 이숙번이 이미 죽었는데 참으로 정씨가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가 살아 있으면서 자기 집의 전지와 노비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정리(情理)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숙번의 전지와 노비는 그의 옛 문권에 따르도록 하고, 정

씨가 그 자기집에서 상속 받은 전지와 노비는 그의 옛 문권에 따르도록 허락하면 인정이나 대의(大義)에도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부수찬(副修撰) 서강(徐岡)은 의논하기를,

"부처(夫妻)가 문권을 함께 작성하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 그 아내로 하여금 다시 고칠 수 있게 한다면, 무식한 부인들이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제대로 마음대로 나누어 주지 못하다가 죽고 난 뒤에 마음대로 변경하여 나누어 주는데, 대개 애증(愛憎)에 따라서 많고 적고 무겁고 가벼움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자식 된 자는 비록 억울하여도 의리상 마땅히 스스로 직소하지 못하니, 이로써 관부(官府)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대저 자식이나 사위 된 자는 이미 그 어버이를 소송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미나 장모로 하여금 그 문권을 고칠 수 있게 하면 이것은 무지한 부인의 마음에 따라 변경하는 단서를 크게 일으키는 일이 되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씨가 이숙번과 함께 문권을 같이 작성하여 강순덕에게 주었다가 이숙번이 죽고 난 뒤에 또 이를 빼앗아서 고치고자 하니, 이것은 사의(私意)입니다. 강순덕이 문권을 <정씨에게> 바치지 않은 것은 혹 불순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위가 장모에게 또한 당연히 직소하지 못하는 것은 어미와 아들의 예로써 논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정씨가 이숙번의 문권을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임효인(任孝仁)·지 사간원사(知司諫院事) 김길통(金吉通) 등이 의논하기를,

"부부는 일체이며 죽은 아내의 물건은 남편이 주인이 되며 죽은 남편의 물건은 아내가 또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씨는 이미 남편 이숙번과 함께 의논하여 문권을 작성하였는데, 자기의 노비도 역시 아울러 기재(記載)하였습니다. 어찌 오로지 이 숙번만의 문서로 보고 정씨를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강순덕은 정씨에게 있어서 실로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씨가 원래의 문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강순덕이 명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불순한 일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문서를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정씨로 하여금 다시 주고 빼앗지 못하게 한다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한 아들만 혼자 부유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가난하여 그 어미가 비록 노비를 고쳐 나누어 주고자 하더라도 <부유한> 아들이 강순덕의 예를 반드시 빌어서 거절하고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니, 어미와 아들의 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이로 말미암아 아비가 죽고 나면 자식이 문득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두려우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혹은 말하기를, '부자(父子)와 부부(夫婦)는 함께 삼강(三綱)에 들므로 부인의 도리가 남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는데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문서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하지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부부 사이는 만나고 헤어짐이 있으나 부자 사이에는 도리를 끊을 수가 없으니, 어찌 가볍고 무거운 구분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정씨는 남편의 문서를 불의(不義)를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물을 돌려서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되면 누가 즐겨 남의 후사가 되려 하겠는가? 후사를 세우는 법이 이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후사를 세우는 법은 국가가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동정한 데서 나왔을 뿐입니다. 형제나 친척의 아들로써 후사 세우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자식이 없음을 슬퍼할 뿐이며 자기의 아들을 형제나 친척의 후사로 허락하는 자도 또한 그 형제나 친척의 자식이 없음을 동정한 것 뿐입니다. 어찌 노비와 전장을 전해 주는 것이 없겠으며, 후사가 된 사람도 또한 어찌 이것을 바라고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까? 강순덕 부부의 노비와 재물을 지금 혹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강희맹이 또한 상속받을 것이 없다 하여 후사가 된 것을 그만두겠습니까? 만약 어떤 자의 말과 같이 지금 남의 후사가 된 자가 모두 이익을 탐내어 어버이를 꺼리고 친상(親喪)을 낮추어 입는다면 슬프게도 비루한 일입니다.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강순덕의 처가 이미 강희맹을 아들로 삼았으니, 그 노비는 반드시 강희맹에게 전해 주고자 할 것이지, 어찌 형제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가? 인정(人情)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에는 강순덕의 처의 노비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마땅히 마음대로 구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강순덕의 장모가 본래의 재주(財主)이니, 주고 빼앗을 권한이 그 손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문서는 지극히 공정한 것인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부인이 혹 사사로운 정으로 이를 다시 바꾸는 폐단은 염려할 바가 있다.'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어미가 하는 일이 비록 혹 고르지 않더라도 감히 입을 열어 다툴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천하에 나쁜 부모는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식이 그 어미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아비의 문서만을 채택하고 어미의 시비(是非)를 다투는 아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이숙번의 노비는 옛 문서에 그대로 따르고 정씨의 노비는 그 마음대로 구처하기를 허락하라.'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정씨가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이숙번의 노비까지를 화회(和會)해서 다시 나눈다면 그 아들 된 자가 어미의 잘못을 지적하여 관청에 고발할 수 있으며, 관청에서는 또한 이것을 청리(聽理)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수양자(收養子)나 시양자(侍養子)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는 법은 고쳐 줄 수 있게 하는 법식이 《육전(六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노비를 나누어 주는 법은 처음부터 언급(言及)하지 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 정씨의 청원에 따르면 인륜(人倫)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좌헌납(左獻納) 송인창(宋仁昌)·우헌납(右獻納) 조원희(趙元禧) 등은 의논하기를,

"이숙번은 이미 아내 정씨와 함께 의논하여 노비와 전지를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 문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이숙번이 이미 죽었으니, 정씨가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가령 이숙번이 살아 있어도 정씨의 뜻과 같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순덕의 처가 아들이 없어서 장차 강희맹을 후사로 삼아 집에 데려다 길렀고 이숙

번도 이것을 눈으로 보았으며, 죽을 때까지 감히 이의가 없었습니다. 정씨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여 문서를 고치지 않다가 오늘에 이르러 문득 다른 마음이 생겨서 강희맹을 보고는 자기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죽은 남편이 이미 작성한 문서를 고치고자 하니, 부인으로서 남편을 따르는 의리가 어떠하겠습니까? 후사를 세우는 법으로 말한다면, 강희맹은 이미 강순덕의 치를 어미로 삼았으니, 이숙번은 그의 외조부이며, 정씨는 외조모입니다. 어찌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국가가 법을 세운 뜻이 특히 후사가 없는 것을 동정하여 <후사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한 것 뿐인데, 어찌 노비의 상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렸겠는가?'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후사를 세우는 법을 베풀어서 모든 집안 일에 있어서 모두 자기 아들과 같이 하는데, 어찌 아들이 되었으면서 부모의 노비를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강순덕 부부의 장획(臧獲)은 강희맹이 참으로 당연히 물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정씨의 소원을 따르면, 신 등은 간악한 무리가 이것을 빙자하여 그 아비가 죽은 후에 어미를 꾀어 남편이 작성한 문서를 어지럽게 변경하게 하고, 심지어는 동기(同氣)를 서로 죽이며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습속(習俗)을 어지럽히는 자가 계속해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또 남의 후사 된 자가 하나 뿐이 아닌데, 간혹 정씨와 같은 자가 있어서 이를 본받고 모방하여 딸의 노비를 모두 빼앗으면 그 분운(紛紜)함을 수습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이숙번이 이미 작성한 문서에 따라서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의리를 나타내고, 국가의 후사하는 법을 무겁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정씨가 또 상언하기를,

"육조(六曹)와 대성(臺省)에서 의논하여서 계달한 후 지금까지 구처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부모가 자손에게 노비·전지·가재를 마음대로 주고 빼앗으면 자손은 한결같이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고금의 상사(常事)입니다. 강순덕이 정씨의 사위로서 정씨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분재 문권(分財文券)을 감추어 두고 내어 놓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남이 매우 심합니다. 정씨의 노비와 가재를 모두 정씨의 구처에 따르며, 이숙번의 노비와 농사(農舍)는 정씨가 생전에는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난 뒤에는 이숙번의 문건에 의하여 물려주고, 한천(韓천)의 노비와 가재는 정씨의 정원(情願)에 의하여 구처하며, 또 강순덕의 불순의 죄는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551 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단종 1년 《 양성지 - 단종 1년 .... 3 건 》

단종 005 01/01/07(을축) / 직집현전 양성지가 군신 사이에 서로 닦아야 할 도에 대해 상서하다
단종 008 01/10/17(경자) / 세조가 양성지를 시켜 《조선도도》 1건 등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다
단종 009 01/11/02(갑인) / 양성지가 정부에서 평안도 변방에 대신을 보내어 살펴본 후에 수비를 거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청하다

《 단종 005 01/01/07(을축) / 직집현전 양성지가 군신 사이에 서로 닦아야 할 도에 대해 상서하다 》

직집현전(直集賢殿)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기를,

"신이 그윽이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나이 어리신 몸으로 어렵고 큰 기업(基業)을 계승하셨으니, 조종(祖宗)의 부탁(付托)이 중(重)하지 않을 수 없고, 신민의 여망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명(天命)은 헤아리기 어렵고 인심(人心)은 무상(無常)하여, 한 번 생각을 공경히 하지 않으면 만사(萬事)의 차질을 가져오고, 한 번 일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무궁한 근심을 남기게 됩니다. 《서경(書經)》에서 이른바, '<천명(天命)>은 끝없이 복되기도 하고[無疆惟休] 끝없이 근심되기도 한다[無疆惟恤]'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임금이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할 요소가 세 가지가 있으니, '인(仁)'과 '명(明)'과 '강(剛)'입니다. '인'이란 것은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것[愛養]을 이르고, '명'이란 것은 선악(善惡)을 분별하는 것을 이르며, '강'이란 것은 소인(小人)을 물리쳐 멀리 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가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임인(任人)'과 '종간(從諫)'과 '상벌(賞罰)'입니다. 마땅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만사(萬事)가 다스려지고, 간(諫)함을 좇으면 만가지 선(善)한 일이 모이며, 신상 필벌(信賞必罰)하면 선(善)이 권하여지고 악(惡)이 징계되어서, 일세(一世)를 고무(鼓舞)할 수 있습니다. 아아, 하늘이 백성을 만들어 내었으되 스스로 다스려질 수 없게 하여, 임금에게 의지하고, 임금이 백성을 어루만지되 홀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신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안으로는 의정부(議政府)가 백관을 총관(摠管)하고, 육조(六曹)가 서무(庶務)를 관장하여, 마땅히 그 책임이 위로는 성덕(聖德)을 보양(輔養)하고, 아래로는 민생을 부지런히 구휼(救恤)하며, 인재를 전형(銓衡)하여 뽑되 반드시 사람을 가리고, 세금을 부과하되 반드시 떳떳함이 있어야 하며, 예(禮)와 교(敎)는 반드시 수명(修明)하여야 하고, 병정(兵政)은 반드시 떨쳐 일으켜야 하며, 형벌(刑罰)은 반드시 공평하고 관대하여야 하며, 영선(營繕)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여야 하니, 온갖 집사(執事)를 반드시 삼가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밖으로는 감사

(監司)가 한 지방[方面]을 통할(統轄)하고, 수령(守令)이 군읍(郡邑)을 다스리어, 민생(民生)의 질고(疾苦)를 감사가 살피고, 수령의 탐학(貪虐)을 감사가 핵실하여, 농사를 권장하여 생활을 후하게 하고, 학교를 일으켜서 풍속을 바르게 하며, 부역(賦役)을 매기되 고르게 하는데 힘쓰고, 옥사(獄事)를 판결하되 밝고 마땅하게 함을 기하며, 이(利)를 일으키고 해(害)를 제거하여, 백성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는 한 지방을 맡아 제어[控制]하고, 제진(諸鎭)·제포(諸浦)에는 모두 신지(信地)가 있으니, 모름지기 사졸(士卒)들을 정용(精勇)하게 하고, 군기(軍器)를 견고하고 날카롭게 하며, 성보(城堡)를 수선하고, 군량을 풍족하게 하되, 훈련(訓鍊)을 반드시 부지런히 하고, 순찰[候邏]을 반드시 삼가며, 군졸(軍卒)을 어루만져 양성하여, 나라의 방패가 되도록 함을 직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후설(喉舌)이고, 대간(臺諫)은 나라의 이목(耳目)이니, 승정원(承政院)은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바르게 하고, 기무(機務)를 모두 관장하며, 사간원(司諫院)은 임금의 결함을 보충하고 과실을 간(諫)하며, 사헌부(司憲府)는 백사(百司)를 숙청(肅淸)하고, 조정(朝政)의 득실(得失)과 이치(吏治)의 선악(善惡)을 규찰하지 않음이 없어, 이것으로써 직분을 삼아야 합니다. 전하께서도 또한 정학(正學)을 부지런히 하셔서 다스림의 근원을 밝히어 내시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시어 훈도(薰陶)에 이로움이 되게 하시고, 대신(大臣)을 믿고 부리시며 언로(言路)를 넓게 여시어 날로 더욱 신중히 하시고, 삼가시기를 시종(始終) 한결같이 하소서. 그러면 서로 더불어 상하(上下)가 동심(同心)하고, 중외(中外)가 협력(協力)하여, 태평(太平)의 지치(至治)를 무궁토록 길이 보전(保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군신(群臣)들 중에 아첨하여 잘 보이려 하고, 이리 붙고 저리 붙어 환심만 사기에 급급하며, 탐욕을 부리어 백성을 해치며 공사(公事)를 배반하여 사리(私利)를 취하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 떳떳한 형벌이 있으니, 반드시 죄를 주어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착(鼂錯)이 말하기를, '인정(人情)은 수(壽)하려 하지 않음이 없으니, 삼왕(三王)이 이를 살리어서 상(傷)하지 않았으며, 인정(人情)은 부(富)하려 하지 않음이 없으니, 삼왕이 이를 후(厚)하게 하여 곤궁(困窮)하지 않았으며, 인정은 안일(安逸)하려 하지 않음이 없으니, 삼왕이 그 힘을 덜어서 <힘이> 지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유념(留念)하시면, 나라가 크게 다행할 것이며, 백성이 크게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에 보이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양성지의 상소는 군신(君臣) 사이에 서로 닦아야 할 도(道)를 논한 것이니, 우납(優納)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6 집 56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 단종 008 01/10/17(경자) / 세조가 양성지를 시켜 《조선도도》 1건 등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다 》

세조가 정인지(鄭麟趾)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우공 지리(禹貢地理)의 제도가 있었고, 또 주관 관제(周官官制)의 글이 있다. 지리와 관제는 대(代)마다 각각 닦았으니, 본조(本曹)에서도 마땅히 옛일을 모방하여 《조선도도(朝鮮都圖)》 1건, 《팔도각도(八道各圖)》 1건, 《주부군현각도(州府郡縣各圖)》 1건 및 백관의 관명(官名)·직사(職事)·관리의 수(數)를 만들어서 옛 것을 상고하고 상정(祥定)하여 국가 만세의 보배를 삼아야 하겠다."

하고, 인하여 누가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냐고 물었다. 정인지가 직전(直殿) **양성지(梁誠之)**를 천거하기를, 그는 일찍이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를 편수하였으니, 마땅히 이 사람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양성지를 시켜 관장하게 하였다.

【원전】 6 집 629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 *출판-서책(書冊)

《 단종 009 01/11/02(갑인) / 양성지가 정부에서 평안도 변방에 대신을 보내어 살펴본 후에 수비를 거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청하다 》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의 장성(長城)의 역사(役事)는 비록 파(罷)하였으나,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우예(虞芮) 등의 고을이 강변(江邊)에 격(隔)하여 있으므로, 남도(南道)의 군사들이 대령(大嶺)을 넘어 방수[戍守]하기 때문에, 인마(人馬)가 모두 피곤하고, 전지(田地)와 가산(家産)을 모두 팔게 되어, 이로 인하여 <군사들이> 도산(逃散)하여 요변(遼藩)으로 유입(流入)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비록 <여연·무창·우예 등> 3읍(邑)을 버린다 하더라도 큰 강(江)이 경계를 한(限)하여 띠[帶]처럼 둘러 있으므로, 우리의 봉강(封疆)은 예전과 같습니다. 비옵건대 3읍의 수자리를 거두어 자성(慈城)으로 경계를 삼아 남도(南道)의 백성을 쉬게 하고,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

하니, 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신들도 역시 이 폐단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일개 유생(儒生)의 말에 따라 변방의 수비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하오니, 청컨대 대신을 보내어 살펴 본 연후에 이를 결정하소서."

하였다. 뒤에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를 보내어 편부(便否)를 살펴 보게 하니, 박종우도 또한 양성지의 말과 같으므로 곧 3읍을 파하였다. 이때 변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다시 3년 안에 파하지 않으면 점차 병민(兵民)이 스스로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원전】 6 집 636 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단종 2년 〈 양성지 - 단종 2년 .... 6 건 〉

단종 010 02/01/27(기묘) / 직집현전 양성지가 《황극치평도》를 편찬하여 바치다
단종 010 02/02/09(경인) / 양성지가 시전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한성부의 간사한 아전들을 엄히 다스리기를 청하다
단종 011 02/04/17(무술) / 세조가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만들고자 하다. 양성지는 지도에 밝으므로 지도 제작의 지시를 받다》
단종 011 02/06/01(임오) / 검토관 양성지가 흉배를 입어서 조장을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단종 011 02/07/07(병진) / 사헌부에서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음한 죄를 추핵하다
단종 012 02/10/13(신묘) / 사간원에서 경기도의 실농을 이유로 양성지의 지도 제작을 연기하도록 하고 재상 경차관의 수를 줄일 것을 청하다 〉

〈 단종 010 02/01/27(기묘) / 직집현전 양성지가 《황극치평도》를 편찬하여 바치다 〉

직집현전(直集賢殿) **양성지(梁誠之)**가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편찬하여 바쳤다. 그 그림의 중심에 '황극(皇極)'이라 하고, 【위에 쓰기를, '인(仁)으로써 마음을 가진다.' 하고, 아래에 쓰기를, '공경(恭敬)으로써 자리에 임한다. 하고, 왼쪽에 쓰기를 '시비(是非)를 밝게 변별(辨別)한다'하고, 오른쪽에 쓰기를, '간사하고, 아첨하는 것을 굳게 제어(制御)한다.' 하였다.】 위에 '하늘을 공경한다.[敬天]' 하고, 【왼쪽에 쓰기를, '한 가지 정사(政事) 한 가지 사건이라도 사리에 어긋나게 하지 아니하여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오직 하늘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직 임금이 하늘을 받들어 하늘의 마음을 받든다.' 하고, 오른쪽에 쓰기를,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하여 몸을 굽혀서 행실을 닦아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한다.' 하였다.】 아래에 '백성을 사랑한다.[愛民]'하고, 【왼쪽에 쓰기를, '형벌(刑罰)을 줄여서 오래 살게 한다.' 하고, 가운데 쓰기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적게 하여서 넉넉하게 한다.' 하고, 오른쪽에 쓰기를, '역역(力役)을 아껴서 안정시킨다.' 하고, 다음 왼쪽에 쓰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여 먹는 데 굶주리지 아니하고 입는 데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 하고, 다음 오른쪽에 쓰기를, '학교(學敎)를 일으켜서 집에서는 효도하게 하고 나라에서는 충성하게 한다.' 하였다.】 왼쪽 어깨에 '선조를 받든다.[奉先]' 하고, 【효(孝)로써 종묘(宗廟)를 받든다.】 오른쪽 어깨에 '큰 나라를 섬긴다.[事大]' 하고, 【예(禮)로써 중국(中國)을 섬긴다.】 왼쪽 발에, '이웃 나라와 통교한다.[交隣]' 하고, 【때때로 조빙(朝聘)하여 사명(辭命)을 좋게 하고, 늠사(廩賜)를 후(厚)하게 하여 은혜로운 위엄을 보인다.】 오른쪽 발에, '변방을 방비한다.[備邊]'하고, 【장수(將帥)를 골라서 사졸(士卒)을 훈련하고, 양

향(糧餉)을 저축하고, 기계(器械)를 정비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고, 관방(關防)을 정하고, 봉수(烽燧)를 삼가고, 척후(斥候)를 멀리 한다.】 다음 왼쪽에, '마음을 바로 한다.[正心]' 하고, 【팔정(八政)에 관용하고 시(時)와 술을 경계하고, 유연(遊宴)을 금하고, 성색(聲色)을 멀리 하고, 매[鷹]와 개[犬]를 멀리 하고, 올바른 학문에 부지런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토목(土木)을 절약하고, 불신(佛神)을 물리치고, 병전(兵戰)을 삼가고, 재화(財貨)의 이익을 물리친다.】 '몸을 닦는다.[修身]' 하고, 【공검(恭儉)하고 부지런하고 삼가서 위의(威儀)가 법받을 만하고, 언어(言語)가 따를 만하고 기거(起居)에 절도가 있고, 섭양(攝養)에 도리가 있다.】 '집을 다시린다.[齊家]' 하고, 【저부(儲副)를 중하게 여기고, 적첩(嫡妾)을 밝게 하고, 중관(中官)을 어거하고, 소수(小竪)를 제어(制御)하고, 종친(宗親)을 화목하게 하고, 외척(外戚)을 대접하고, 안팎[內外]을 분별하고, 간알(干謁)을 근절한다.】 '나라를 다스린다.[治國]' 하고, 【법도(法度)를 세우고, 호령(號令)을 삼가고,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삼가고, 명기(名器)를 아끼고, 완급(緩急)을 살피고, 분경(紛更)을 근절하고, 예악(禮樂)을 밝히고,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고, 권도(權道)와 기강(紀綱)을 장악하고, 가혹한 순찰(巡察)을 경계하고, 신하(臣下)들을 예대(禮待)하고, 문(文)과 무(武)를 동일하게 한다.】 다음 오른쪽에, '사람을 임용한다.[任人]' 하고, 【군자(君子)를 나오게 하고, 소인(小人)을 물러가게 하고, 사람을 널리 구(求)하고, 사람을 정(精)하게 고르고, 사람을 신중하게 쓰고, 사람에게 전(專)적으로 맡기고, 참언(讒言)이 틈타지 말게 하고, 편벽 되게 신용하지 않는다.】 '간언을 받아들인다.[納諫]' 하고, 【남의 현부(賢否)를 논하지 말게 하고, 말의 나온 곳을 묻지 말고, 임금의 악(惡)함을 드러내어 말하지 말게 하고, 자기의 정직(正直)을 팔아 말하지 말게 하고, 오로지 그 장점만을 취하고 그 단점을 책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상준다.[賞善]' 하고, 【상을 함부로 주지 말고, 상을 아끼지 않는다.】 '악한 것을 벌준다.[罰惡]'하고, 【실형(失刑)하지 말고 왕형(枉刑)하지 않는다.】 또 다음 왼쪽에, '안으로 백관(百官)을 바로잡는다.' 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총괄하고, 육조(六曹)에서 서무(庶務)를 다스리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고, 경연(經筵)에서 논사(論思)를 주장하고, 사헌부(司憲府)에서 규찰(糾察)을 맡아 보고, 사간원(司諫院)에서 간쟁(諫諍)을 맡아 본다.】 '한 도(道)를 다스리면 나라가 흥(興)하지 않음이 없다.' 하고, 【요(堯)임금·순(舜)임금을 법받으면 1인이 귀해지고 사경(四境)이 넉넉하여지고, 자손(子孫)이 이를 보호한다.】 또 다음 오른쪽에 '밖으로 8도(八道)를 위무(慰撫)한다.' 하고, 【감사(監司)·수령(守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절제사(節制使)·첨사(僉使)가 진(鎭)의 병사를 거느리고, 처치사(處置使)·만호(萬戶)가 선군(船軍)을 거느린다.】 '한 도(道)를 어지럽히면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다. 【걸(桀)임금·주(紂)임금을 법받으면 하늘에 스스로 절연(絶緣)되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서 몸도 또한 보존하지 못한다.】

그 서문(序文)은 이러하였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이 정치를 하는 도리는 《육경(六經)》에 실려 있어 환하게 고증할 수 있으나, 전하께서 어린 나이에 만기(萬機)의 번거로움으로 진실로 이를 마음에 일일이 체득(體得)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요체(要諦)를 뽑았습니다. 신이 정치를 하는 방도와 성현(聖賢)의 교훈(敎訓)으로 내리신 말씀과 경사(經史)의 흥망(興亡)의 자취와 조종(祖宗)의 경국제세(經國濟世)한 법을 차례로 고찰하고 방촌(方寸)의 마음을 되풀이하여 황극(皇極)의 방위(方位)에 의거하여 치평(治平)의 소도(小圖)를 만들어서 바칩니다. 그 강(綱)이 모두 19개인데, 그 목(目)은 91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를 어좌(御座)의 오른쪽에 걸어 두시고 매양 아침·저녁으로 이를 보신다면 지키는 것이 간편하더라도 능히 번거로운 것을 어거할 수가 있고, 힘쓰는 것이 적더라도 능히 많은 것을 제어(制御)할 수가 있을 것이니, 거의 치도(治道)에 만의 하나라도 보탬이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전】 6 집 668 면
【분류】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단종 010 02/02/09(경인) / 양성지가 시전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한성부의 간사한 아전들을 엄히 다스리기를 청하다 》

경연관(經筵官)이 《맹자(孟子)》를 강(講)하다가 '시전(市廛)에는 과세(課稅)하지 아니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지금 한성부(漢成府)에서 시전(市廛)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아전(衙前)들이 지극히 간사하오니, 엄히 징치(懲治)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무릇 아전들이 용사(用事)하는 것은 여러 사(司)에 나누어 정했기 때문이었다.

【원전】 6 집 670 면
【분류】 *상업-시장(市場) / *왕실(王室) / *행정(行政)

《 단종 011 02/04/17(무술) / 세조가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만들고자 하다. 양성지는 지도에 밝으므로 지도 제작의 지시를 받다 》

세조(世祖)가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의논하여 만들고자 하여,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강희안(姜希顔)·직전(直殿) **양성지(梁誠之)**·화원(畵員) 안귀생(安貴生)·상지(相地) 안효례(安孝禮)·산사(算士) 박수미(朴壽彌)와 더불어 삼각산(三角山)·보현봉(普賢峰)에 올라가서 산의 형상과 물의 줄기를 살피어 정하고, 세조(世祖)가 서울의 지도를 수초(手草)하였다. 정척은 산천의 형세를 잘 알고, 강희안은 그림을 잘 그리며, 양성지는 지도에 밝았으므로, 또한 참여한 것이었다.

【원전】 6 집 680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 *출판-서책(書冊) / *신분-중인(中人)

《 단종 011 02/06/01(임오) / 검토관 양성지가 흉배를 입어서 조장을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지금 사서인(士庶人)의 의제(儀制)에 금령(禁令)을 다 없애면 신은 상하(上下)의 차등이 없을까 두려워하니, 청컨대 흉배(胸背)를 입어서 조장(朝章)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6 집 68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 단종 011 02/07/07(병진) / 사헌부에서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음한 죄를 추핵하다. 양성지 등은 조율하여 시행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김중렴(金仲廉)·진무(鎭撫) 이행검(李行儉)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1백대에 처하여야 하고,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정흥손(鄭興孫)·안치강(安致康)·매우(梅佑)·별좌(別坐) 박대손(朴大孫)·김숙(金瀟)과 호조 좌랑(戶曹佐郞) 권온(權溫)과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 최윤중(崔允中)·김영전(金永湔)·임숙(任淑)·노삼(魯參), 진무(鎭撫) 노호(盧皓)·박훤(朴萱)·권숭지(權崇智)·유맹돈(柳孟敦)·권윤인(權允仁)·유혜(柳蕙)·박공신(朴恭信)·이항전(李恒全)·지혼(池渾)·나치정(羅致貞)·정윤신(鄭允

信)·이계중(李繼重)·정인충(鄭仁忠)·민순(閔諄)·조수무(趙秀武)는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관습도감 부사(慣習都監副使) 김자안(金自安)·예조 좌랑(禮曹佐郎) 정문형(鄭文炯)·주서(注書) 권윤(權綸)은 장(杖)은 80대에 처하여야 하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이석형(李石亨)·이개(李塏), 직전(直殿) 유성원(柳誠源)·**양성지(梁誠之)**, 응교(應敎) 이예(李芮), 교리(校理) 이극감(李克堪), 수찬(修撰) 이파(李坡)·최선복(崔善復)·박기년(朴耆年)·김수령(金壽寧)·심신(沈愼), 박사(博士) 노사신(盧思愼)·성간(成侃), 춘추관 겸관(春秋館兼官) 이조 정랑(吏曹正郎) 조근(趙瑾)과 성균직강(成均直講) 이함장(李誠長)·주부(注簿) 김명중(金命中)·교서 교리(校書校理) 성희(成熙)·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이유의(李由義)·훈련 주부(訓鍊注簿) 유자문(柳子文)·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강미수(姜眉壽)·공조 좌랑(工曹佐郎) 이익(李翊)·성균 주부(成均注簿) 박찬조(朴纘祖)·봉교(奉敎) 윤자영(尹子濚), 대교(待敎) 이제림(李悌林)·최한보(崔漢輔), 검열(檢閱)·권이경(權以經)·김겸광(金謙光), 감찰(監察) 안중후(安重厚)·민규(閔奎) 등은,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병조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은 성상께서 재탁(裁度)하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

"김자안(金自安)·정문형(鄭文炯)·민순(閔諄)·노삼(魯參)·김영전(金永澱)·정인충(鄭仁忠)·이계중(李繼重)·나치정(羅致貞)·지혼(池渾)·이항전(李恒全)·박공신(朴恭信)·권윤인(權允仁)·유맹돈(柳孟敦)·권숭지(權崇智)·매우(梅佑)·김숙(金瀟)·안치강(安致康)·정흥손(鄭興孫)·권온(權溫) 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최윤중(崔允中)·김중렴(金仲廉) 등은 각각 태(笞) 4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며, 권윤(權綸)·임숙(任淑)·조수무(趙秀武)·정윤신(鄭允信)·노호(盧皓)·유혜(柳蕙)·박대손(朴大孫)·이행검(李行儉)·박훤(朴萱) 등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니,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의 관원과 이계전(李季甸)도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691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단종 012 02/10/13(신묘) / 사간원에서 경기도의 실농을 이유로 양성지의 지도 제작을 연기하도록 하고 재상 경차관의 수를 줄일 것을 청하다 》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가 실농(失農)하였는데, 지도(地圖)를 만드는 일 때문에 직집현전(直集賢殿) **양성지(梁**

誠之)를 보내어 화원(畵員)을 거느리고 땅을 보러 갔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이 일은 비단 경과(經過)하는 제읍(諸邑)뿐만 아니라 반드시 머물러 묵는 촌락(村落) 사이에 소요(騷擾)를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지도는 오늘날의 급무(急務)가 아니니 아직 명년(明年)를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또 듣건대 재상(災傷)을 조사하기 위한 경차관(敬差官) 4인을 전라도에 보낸다 하는데, 본도(本道)는 해마다 가뭄으로 인하여 실농(失農)하고 금년은 더욱 심하니, 청컨대 경상도의 예(例)에 의하여 2인만 보내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원전】 6 집 710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 *정론-간쟁(諫諍)

단종 3년

《 단종 013 03/02/09(을유) / 양성지 등의 지도를 살펴 정하는 일을 가을까지 나누어 보내도록 아뢰다 》

사인(舍人) 조효문(趙孝門)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직집현전(直集賢殿) **양성지(梁誠之)** 등을 하삼도(下三道)에 보내어 지도(地圖)를 살펴서 정한다고 하나, 그러나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이 장차 이를 것이고, 또 농사철을 당하여 혹시 백성들을 번요(煩擾)스럽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보내는 자는 모두 신진(新進)의 무리이니, 그 지도(地圖)에 차오(差誤)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금년 봄에 우선 경기(京畿)만을 시험하고, 오는 가을까지 기다려서 나누어 보내소서. 《관제(官制)》도 또한 시기에 맞추어 할 일은 아니니, 지금 《정관정요(貞觀政要)》의 주석(注釋)을 다는 것과 《문종실록(文宗實錄)》을 수찬(修撰)하는 것이 거의 끝나 가니, 청컨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유자들로 하여금 찬정(撰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13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서책(書冊) / *역사(歷史)

세조 1년 《 양성지 - 세조 1년 .... 4 건 》

세조 001 01/07/05(무인) / 민심 수습·제도 정비·강명·예법 등에 관한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문

세조 002 01/08/12(을묘)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에 명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다

세조 002 01/11/10(신사) / 평안도 경차관 양성지가 여연·무창·우예의 지도를 바치고, 도내 편의 사건을 아뢰다

세조 002 01/12/27(무진) /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과 직제학 양성지 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①

《 세조 001 01/07/05(무인) / 민심 수습 · 제도 정비 · 강명 · 예법 등에 관한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문 》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그 문무(文武)의 비상하신 자질로써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공경히 종묘(宗廟)에 알현하시니, 이는 정히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림을 도모하여 서정(庶政)을 일신하게 하실 때입니다. 신이 비졸(鄙拙)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선 조그마한 소견을 가지고 우러러 성총(聖聰)에 번독하는 바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으로 굽어 살피소서.

1.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대개 인주가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 그 장단이 바로 민심을 어느 정도 얻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날 때면 반드시 폐해를 제거하고 인민을 구제하는 정신으로 앞에서 창업해 놓으면 이를 계승하는 임금이 다시 그 인민을 능히 사랑해 길러 그 은택이 인심 속에 흡족히 배어 있으므로 비록 쇠잔한 세대에 이르러도 선왕의 덕을 생각하여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경사(經史)를 가지고 상고컨대,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비로소 왕업을 열어 놓으니, 무왕(武王)이 이어서 능히 그 공훈을 이루었고, 성왕(成王)·강왕(康王)이 서로 이어가며 백성을 무육(撫育)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굳게 뭉쳐 8백 년에 이르도록 잊지 않았고, 한(漢)나라의 고제(高帝)가 진(秦)나라와 항우(項羽)의 포학(暴虐)을 제거하고 천하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혜제(惠帝)·문제(文帝)·경제(景帝)가 서로 이어가며 인민을 편안하게 휴식시키고 그 정치가 백성을 기르는 데 있었으며, 광무(光武)가 다시 중흥하였고 명제(明帝)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치의 기본을 삼았기 때문에 그의

역년(曆年)이 4백 년에 이르렀으며,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이 고조(高祖)를 도와 수(隋)나라의 난(亂)을 평정하고 몸소 태평 세월을 이룩하였고, 현종(玄宗)에 이르러서도 개원(開元)의 치(治)가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년(曆年)이 거의 3백 년에 이르렀으며, 송(宋)나라의 태조(太祖)는 상성(上聖)의 자질로써 오계(五季)의 난(亂)을 평정하였고 사종(四宗)이 번갈아 일어나서 백 년간 무사하였다가 고종(高宗)이 강남으로 건너갔으나 <남송(南宋)> 효종(孝宗)도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인주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3백 년간 비록 민·광(閩廣) 지방에 힘을 못펴고 지냈지만 민심은 하루같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송(宋)나라의 원가(元嘉)와 수(隋)나라의 문제(文帝)와 주(周)나라의 세종(世宗)과 금(金)나라의 대정(大定)에 이르러서는 소강(小康)을 이루었다고 이를 수 있으나, 혹은 창업한 뒤에 쌓아 나가는 공이 없었고, 혹은 대를 이어 수성(守成)에 힘쓰는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장구한 역년(曆年)을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 주(周)나라의 인후(仁厚)함과 한(漢)나라의 관인(寬仁)함과 당(唐)나라의 인의(仁義)와 송(宋)나라의 충후(忠厚)와 더불어 같은 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방(東方)으로 말하면 전조(前朝)의 태조(太祖)가 삼한(三韓)을 통일하여 그 공덕(功德)이 사람들 머리 속에 남아 있었고, 그 뒤에 성종(成宗)·목종(穆宗)·현종(縣宗)·덕종(德宗)·정종(靖宗)·문종(文宗)·선종(宣宗)·숙종(肅宗)·예종(睿宗)·인종(仁宗)의 10대에 걸쳐 모두가 백성을 기르는 데 힘썼기 때문에 그 역년(曆年)이 5백 년을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 신성(神聖)하신 자질로써 백성을 도탄(塗炭)에서 건지셨고, 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께서 서로 대를 이어 일어나셔서 도(道)가 몸에 배시고 정사를 잘 다스리시어 인민이 편안하고 물자가 풍성하게 되었으므로 그 역년(曆年)의 장구할 것을 실로 쉽게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도 또한 하늘이 군왕을 세워 백성을 사랑하게 한 마음과, 전대(前代)에서 민심을 얻어 긴 역년(曆年)을 누리게 된 효험을 가지고 반복해 생각하시고 순전히 생민의 산업을 기르고 민간의 숨은 고통을 구휼(救恤)하는 것을 일삼아 하신다면 본조의 성업이 곧장 단군(檀君)·기자(箕子)와 삼국(三國), 그리고 전조(前朝)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란 다름 아닌,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며 형벌을 덜어 주는 세 가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1. 제도(制度)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성을 휴양해 생식(生息)하도록 하는 것은 본시 인군의 선무(先務)이나,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도 또한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며, 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규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본시 이것은 거행하고 저것은 벌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제를 고정하지 않으면 한때의 전장(典章)을 수시로 세우고 고치게 되어 후세 자손들이 실로 빙고(憑考)하여 의지할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周)나라의 성왕(成王)·강왕(康王)이 예악(禮樂)을 제작하였고, 한(漢)나라의 무제(武帝)는 한가(漢家)의 법도를 세웠으며, 당(唐)나라에서는 정관(貞觀)·개원(開元) 연간에 다같이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 한 조대(朝代)의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다만 송(宋)나라의 신법(新法)의 제도가 너무 번거로워서 또한 화(禍)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세우지 않을 수도 없으면서 또한 급작스럽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에서는 전조(前朝) 때 토지 제도의 전시과(田柴科)와 군사 제도의 부위제(府衛制)의 제도가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하여 잘 정제(整齊)되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전제(田制)가 문란해져서 사전(私田)으로 되면서 겸병(兼倂)과 양탈(攘奪)이 자행되어 산과 내로써 토지의 경계로 삼았으며, 병제(兵制)는 폐하여져서 사병(私兵)이 되었으므로 몽고(蒙古)와 왜구(倭寇)가 번갈아 침입해 와도 방어할 만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본조(本朝)에 와서는 태조(太祖)·세종(世宗) 때 《원전(原典)》과 《속전(續典)》이 있었고, 또 《등록(謄錄)》이 있었으니, 이는 모두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제(田制)와 의주(儀註)가 아직 일정한 법제를 이루지 못하였고, 병제(兵制)와 공법(貢法)도 임시로 적당하게 한 법이 많았으니, 어찌 성대(盛代)의 불충분한 전장(典章)이 아니겠습니까? 빌건대 대신(大臣)에게 명하시어 이에 다시 검토(檢討)를 더하여 한 조대(朝代)의 제도를 정하시어 자손 만대의 법칙으로 삼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전대(前代)를 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저 당·우(唐虞)와 삼대(三代)의 정치는 본시 만대 제왕의 귀감(龜鑑)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漢)·당(唐)·송(宋)·금(金)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찌 모두 법받을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다만 세상의 운수가 후하고 박함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漢)나라의 문제(文帝)를 법받는다면 백성을 기르는 정치가 지극할 것이며, 한(漢)나라의 고제(高帝)·광무제(光武帝)와 당(唐)나라 태종(太宗)의 난(亂)을 뿌리뽑고 세상을 건진 공을 어찌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규모(規模)와 기상(氣象)의 광명 정대함을 주자(朱子)는 이르기를, '요·순(堯舜)과 합치한다.'고 하였으며, 금(金)나라 세종(世宗)의 대정(大定) 연간의 정치는 전대사(前代史)에서도 이를 칭송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당·우(唐虞)와 삼대(三代)를 법받으시고 겸하여 한(漢)·당(唐)·송(宋)·금(金)의 정치를 취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방 사람들이 다만 중국의 부성(富盛)함만을 알고 동방의 일들을 상고할 줄 모르는 것은 몹시 불가한 일이니, 빌건대 전조(前朝)의 태조(太祖)가 백성을 구제한 것, 성종(成宗)이 제도를 정비한 것, 현종(顯宗)이 수성(守成)한 것, 문종(文宗)이 양민(養民)한 것을 모범(模範)으로 삼고, 또 의종(毅宗)이 시주(詩酒)를 좋아한 것, 충렬왕(忠烈王)이 응견(鷹犬)을 좋아한 것, 충혜왕(忠惠王)이

연유(宴遊)를 즐긴 것, 공민왕(恭愍王)이 신돈(辛旽)을 서용한 일들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대 역사에서 구하는 것이 오히려 조종(祖宗)에서 구함만 같지 못하니, 원컨대 태조(太祖)의 용지(勇智)와, 태종(太宗)의 영명(英明)과, 세종(世宗)의 예악(禮樂)의 제작 및 생민(生民)의 무양(撫養)과, 문종(文宗)이 문교(文敎)에 전념하시면서도 무비(武備)를 잊지 않으신 일들을 모범으로 삼으시면 반드시 멀리 다른 데서 구하지 않으셔도 그 다스리는 방법이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1. 대체(大體)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인주의 직책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며 어진 이를 서용하여 백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넓은 집과 고운 방석 위에 계실지라도 항상 성려(聖慮)를 더하셔서 현재 여러 관서의 백관(百官)은 무슨 일이 급하며 팔도(八道)의 폐단은 어느 것이 심한가를 살피소서. 이리하여 평안도(平安道)는 유리(流離)하여 옮긴 인민들을 소생 회복케 할 대책을 의논하여 절제사(節制使)를 정하고 관사(官司)를 설치할 지역을 정할 것이며, 함길도(咸吉道)는 육진(六鎭)의 편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고려하여 용성(龍城)에 영(營)을 설치하여서 편리함을 생각할 것이며, 황해도(黃海道)의 역질(疫疾)은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고, 강원도(江原道)의 강무장(講武場)은 어느 것을 없앨 수가 있으며, 경기(京畿) 백성들의 부세(賦稅)는 어떻게 하면 번거롭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요역(徭役)이 무겁지 않게 하겠습니까? 또 하삼도(下三道)는 공법(貢法)의 시행을 살펴 대납(代納)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충청도(忠淸道) 이남은 누호(漏戶)의 금령(禁令)을 더욱 엄하게 하고, 경상도(慶尙道)는 왜인(倭人)을 지대(支待)하는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라도(全羅道)는 제주(濟州)의 수령을 잘 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외방(外方)의 폐단으로서 큰 것은 모두 열거(列擧)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안으로 이조(吏曹)에서는 관제(官制)를 정하고, 호조(戶曹)에서는 전제(田制)와 공부(貢賦)를 정하며, 예조(禮曹)에서는 의주(儀注)를 정하며, 병조(兵曹)에서는 병제(兵制)를 정하고 진법(陣法)을 심의할 것이며, 형조(刑曹)에서는 노비(奴婢)의 번상(番上)하는 법을 정하고, 공조(工曹)에서는 국토의 지도(地圖)와 지적(地籍)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의(謀議)는 의정부(議政府)에 위임하고, 출납(出納)은 승정원(承政院)에 위임하고, 간쟁(諫爭)과 탄핵(彈劾)은 대간(臺諫)에게 위임하고, 논사(論思)는 강관(講官)에게 위임하고, 직사(職事)를 맡기는 일은 육조(六曹)에 위임할 것이며, 인민을 침해 수탈한 외리(外吏)에 이르러서는 창고리(倉庫吏)를 죄주고, 외방의 군민(軍民)은 감사(監司)와 수령(守令)과 대소의 수륙 장수(水陸將帥)로 하여금 이를 단련해서 기르게 하면 내외 백관의 직무가 또한 다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周)나라에서 민심을 얻은 소이연(所以然)을 생각하고, 한(漢)나라와 같은 제도를 세우며, 전대의 정치를 본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을 채용하여 일은 미연에 생각하고, 시종 근신하면서 안

정(安靜)을 다스림의 바탕으로 삼고, 강명(剛明)을 행정의 자세로 삼으며, 국속(國俗)을 변경하지 않고, 예로써 중국을 섬기며, 신료(臣僚)를 대접하기를 법도 있게 하고, 문무(文武)를 대하기를 하나같이 하시면, 인군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결단코 유실함이 없을 것입니다.

1. 작은 일에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변고(變故)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은 이를 소홀하게 여겼다가 결국 망하였으니, 진(秦)나라는 형벌로 망하였고, 전한(前漢)은 외척(外戚)으로 망하였고, 후한(後漢)은 환관(宦官)과 무장(武將)으로 망하였고, 위(魏)나라는 종실(宗室)이 약하여 망하였고, 진(晉)나라는 강호(羌胡)의 처치를 잘못하여 망하였고, 양(梁)나라는 불교를 숭상하고 후경(侯景)을 받아들여서 망하였고, 수(隋)나라는 연유(宴遊)와 고구려(高句麗)의 정벌로 망하였고, 당(唐)나라는 안으로 양귀비(楊貴妃)를 총애한 것이 화(禍)의 시초가 되어 번진(藩鎭)과 환관(宦官)이 번갈아 난역(亂逆)을 선동해서 망하였고, 후당(後唐)은 창우(倡優)로 망하였고, 송(宋)나라는 왕안석(王安石) 때문에 망하였는데, 왕안석이 신법(新法)을 세우고 나서 수대(數代) 사이에 군자와 소인이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남송(南宋)이 망한 것은 원(元)과 더불어 금(金)나라 사람을 협공한 것이 실책이었고, 요(遼)나라는 응견(鷹犬)으로 망하였고, 금(金)나라는 근본이 되는 땅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망하였고, 원(元)나라는 오랑캐로서 중국에 들어가 주인이 되니 정령(政令)에 기강(紀綱)이 없어 온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으니, 이는 족히 따를 만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동방의 신라(新羅)가 망한 것은 여왕의 황음(荒淫) 때문이었고, 백제(百濟)가 망한 것은 갑작스런 승리로 적을 멸시한 때문이었으며, 고구려(高句麗)가 망한 것은 강한 것만 믿다가 병력이 궁진한 때문이었습니다. 전조(前朝)는 처음에는 무신(武臣)의 원한을 사게 되어 대권(大權)을 결취 당하였고, 중간에는 고임받는 무리가 그 세력을 믿고 정사를 해쳤으며, 마침내에는 권세 잡은 간신들이 정권을 쥐고 백성을 침해하였는데, 왜구(倭寇)가 네 차례나 침입하여 인민이 생활에 안정하여 살 수가 없게 되어서는 나라를 유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본조(本朝)는 조종(祖宗)의 공과 덕이 전조에 양보할 것이 없고 가법(家法)의 정대함은 훨씬 앞서고 있으나, 다만 전조 병제(兵制)의 훌륭한 점은 비록 오늘에 와서도 아직 쉽게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시고, 생민을 위하여 극진하게 하시어 일언일동(一言一動)이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고, 일정 일사(一政一事)에도 사리에 합당하도록 힘쓰시어 쉬운 것도 어렵게 도모하시고,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면, 종사와 생민을 위하여 크게 다행하겠습니다.

1. 그 시초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인군이 즉위한 처음에는 백관이 우러러 보고 만민이 의지해 기대하며, 인국(隣國)도 주의 깊게 듣고 보는 바 되어, 자손만대의 터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인주가 신하를 지휘하는 권세를 조종하면 한 세상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사진(仕進)

을 구하는 사람들이 혹은 변방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혹은 토목(土木)의 역사를 가지고, 혹은 불·신(佛神)의 일을 가지고, 혹은 사장(詞章)을 가지고, 혹은 성색(聲色) 또는 화리(貨利), 혹은 응견(鷹犬)과 국얼(麴櫱)을 가지고 틈을 타고 그 틈에 뛰어들어서 분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주가 어느 한 가지 일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초에 삼가지 않았으므로 그 종말은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정치하기는 어렵지 않으니, 먼저 그 나라 거실(居室)에게 원망을 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주가 간(諫)하는 것을 따르면 사대부(士大夫)의 마음이 흡연(翕然)히 합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반대가 될 것입니다.

1. 안정(安靜)을 숭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개 조심스럽게 수성(守成)해 나가는 인군은 근신하여 이미 이루어진 규모를 지켜 나갈 따름입니다. 만일 구제해야 할 폐단이 있으면 점차 이를 개정하여 전의 법규와 같게 할 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생선(生鮮)을 삶는 것과 같다고 옛사람은 말하였습니다. 능히 소요스럽지만 않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민심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 나라의 근본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니, 송(宋)나라의 신법(新法)이 곧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스러운 법은 본래 경장(更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군이 숭상할 것은 안정(安靜)뿐입니다. 한사(漢史)에 이르기를, '청정(淸靜)을 이루니 백성이 드디어 안정하게 되었다.'고 함은 이를 말한 것입니다.

1. 강명(剛明)을 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군의 덕은 인(仁)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인후(仁厚)한 것은 강명한 것과 상반(相反)되는 것 같기도 하나, 강명하지 않으면 내알(內謁)이 성행(盛行)하게 되며, 따라서 중귀(中貴)가 교만하여 전횡(專橫)하게 마련이고, 그 아래 조그마한 액예(掖隷)까지도 방자하게 됩니다. 척리(戚里)는 은총만 믿으며, 권신(權臣)은 대권(大權)을 절취하게 되고, 사신(詞臣)은 총애만을 취하며, 간신(姦臣)·영신(佞臣)을 좌우로 맞아 아첨하는 무리들이 그 뜻을 얻게 되면 비록 인후한 정치를 행함이 있어도, 그 뜻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인군의 덕이 마땅히 강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예법(禮法)은 본국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은 듣건대 서하(西夏)는 그 나라의 예속(禮俗)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원호(元昊)는 본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금의(錦衣)와 옥식(玉食)은 번국(蕃國) 사람 체질에 편리한 것이 아니다' 하였고, 금(金)나라의 세종(世宗)도 또한 매양 상경(上京)의 풍속을 생각하며 종신토록 잊지 않았습니다. 요(遼)나라에서는 남부(南府)·북부(北府)가 있었고, 원(元)나라에서는 몽관(蒙官)·한관(漢官)이 있었는데, 원나라 사람은 그 근본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비록 중원(中原)을 잃었어도 사막(沙漠) 이북의 본토는 옛과 같았습니다.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遼水)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萬里之國)이라 불렀습니다. 삼

면(三面)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區域)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풍토(風土)와 기후(氣候)도 역시 달라서 단군(檀君) 이래 관아(官衙)와 주군(州郡)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성위(聲威)와 교화(敎化)를 펴 왔으며, 전조(前朝)의 태조(太祖)는 신서(信書)를 지어 국민을 가르쳤는데, 의관(衣冠)과 언어(言語)는 모두 본국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의관과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면 민심이 정착되지 않아서 마치 제(齊)나라 사람이 노(魯)나라에 간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전조 때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서로 잇달아서 몽고(蒙古)로 투화(投化)한 것은 한 국가로서는 매우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의관은 조복(朝服) 이외에 반드시 다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고, 언어는 통사(通事) 이외에 반드시 옛 습속을 변경하려 할 것이 아니며, 비록 연등(燃燈)·척석(擲石)이라 할지라도 역시 옛 습속을 좇아도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1. 사대(事大)하기를 예(禮)로써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예법의 상도(常道)로서, 예로부터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실로 동방에 위치한 황복(荒服)의 땅입니다. 멀리 해뜨는 해변에 위치해 있고 또 산과 계곡의 천험(天險)의 지리(地利)를 가지고 있어서 수(隋)·당(唐)의 창성(昌盛)함으로도 오히려 신하로 삼지 못하였으며, 요(遼)나라는 인국(隣國)의 예로 대하였고, 금(金)나라는 부모의 나라로 일컬었으며, 송(宋)나라는 빈례(賓禮)로 대하였고, 원(元)나라는 혼인을 서로 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元)나라는 전쟁을 일으킨지 수십 년에 마침내 신하로 복속케 하였고 비록 생구(甥舅)로 일컬었으나, 동국(東國)의 모든 일은 옛날과 아주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고황제(高皇帝)께서 즉위하시고 군병을 일으키려 하자 천하가 비로소 평정하여졌으니, 이 군병을 일으키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것이 없어 행인(行人)을 구속하여 욕을 보이기도 하고, 세폐(歲幣)를 늘려 곤란을 주기도 하다가 그 뒤 무진년에 이르러 황제의 위엄과 노여움이 비로소 그쳤고, 번국(蕃國)으로 봉(封)하는 일도 정하여졌던 것인데, 번국의 사세는 기내(畿內)의 사세와 다르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법을 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자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조에서는 종(宗)이라 일컫고 개원(改元)하였는데, 오늘에 있어서 소소한 절차를 반드시 전례에 구애받을 것은 없고 다만 그 성의를 다할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례의 은공(恩貢)에 표문(表文)을 붙여 치사하고 사명(使命)을 번거롭게 하지 말며, 평안한 백성을 좀 휴식케 하시면서 사대(事大)의 체통을 유지하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1. 신료(臣僚)를 대접함에 있어 법도(法度)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군은 그 존귀함이 아무도 더불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예로써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감히 간(諫)하는 자를 명예를 구하는 행위라고 이르지 못하며, 부지런하고 재간(才幹) 있는 자를 녹봉 받기 위한 행위라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명예를 구하고 녹봉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용감하게 간한 것과 재간과 근면한 그것을 취할 뿐입니다. 나아가서 사상(死喪)에 즈음하여는 은혜를 베풀고, 형옥(刑獄)에 계류된 사람이라도 예로써 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와 같이 충후(忠厚)한 풍속으로 선비를 대접하여 하나의 풍속을 이루게 되면, 백대를 내려가도 그 사대부가 역시 충후한 마음으로 웃사람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1. 문무(文武)를 하나 같이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문무 사이에는 시기(猜忌)와 혐오(嫌惡)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문리(文吏)는 세력도 있고 청요(淸要)의 직위를 가지는데, 무반(武班)은 근로하면서도 권세가 없어, 만일 인주가 편파적으로 문신을 믿고 언어(言語)와 예모(禮貌)에 있어 그들을 대하는 것이 혹 다르게 되면, 전조 때 경계(庚癸)의 사건이 실로 염려됩니다. 의종(毅宗) 이후 충렬왕(忠烈王)에 이르기까지 무신이 권병(權柄)을 잡고는 온 조정을 죽여 없애버린 것이 거의 다 문무 사이에 서로 얽힌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정부와 승정원(承政院)을 비롯하여 대간(臺諫)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무로 교체해 가며 임명하고 있어, 그 배려 또한 주도(周到)합니다. 그러나 병조(兵曹)와 진무소(鎭撫所)의 사령(使令)·영사(令史)들이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를 대하는 것이 몹시 까다롭고 박하며, 시위패(侍衛牌)에 이르러서는 마치 노예(奴隷)처럼 보곤 합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께서 문무를 대하심이 하나같다고 이를 만합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 백 년을 승평(昇平)하더라도 오늘의 일들을 잊지 않으시면 종사(宗社)와 신민을 위하여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마광(司馬光)이 이르기를, '인군이 마음을 가지는 데 가장 긴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어질고 밝고 용감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긴요한 것이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사람을 가려서 맡기고, 간(諫)하는 것을 따르며, 상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고 하여 이로써 소(疏)를 지어 4조(四朝)에 바쳤는데, 신도 역시 이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반복 참작하여 임신년 겨울에 상왕(上王)께 바쳤습니다. 이제 그 고본(藁本)이 승정원에 있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하여 그 1통(通)을 베껴서 올리도록 하시고 특히 예람(睿覽)하여 주시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임신년에 올린 소(疏)와 행성(行城)을 파하자는 소를 가져다 보고, **양성지(梁誠之)**에게 이르기를,

"너의 두 가지 소(疏)는 모두가 매우 긴절한 것이었다."

하였다.

【원전】 7 집 6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歷史) / *무역(貿易)

《 세조 002 01/08/12(을묘)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에 명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다 》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지리지(地理誌)》를 편찬하게 하고 아울러 지도(地圖)를 그리게 하였다.

【원전】 7 집 79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02 01/11/10(신사) / 평안도 경차관 양성지가 여연·무창·우예의 지도를 바치고, 도내 편의 사건을 아뢰다 》

평안도 경차관(平安道敬差官) **양성지(梁誠之)**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 등 세 고을의 지도(地圖)를 가지고 와서 바치고, 또 도내의 편의한 사건들을 조목별로 아뢰기를,

"1. 강변에 위치한 여러 군의 방어가 매우 긴급한데, 성보(城堡)가 허술하고 군졸이 고단하고 약한데, 더욱이나 도로가 험준하고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잠도 편히 못자고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에 비하면 십분(十分) 근고(勤苦)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심(聖心)이 이를 통찰하시고 특히 변방을 방수하는 장리(將吏)들에게 주과(酒果)를 내리시니, 성은이 지극히 흡족합니다. 빌건대 다시 사랑과 위로를 더하셔서 양계(兩界)의 교도(敎導)의 예에 의하여, 변군(邊郡)에 차임할 때는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하시고, 그 3년간 무사히 수어(戍禦)한 자는, 해임하는 날 반드시 청요(淸要)한 직임을 제수(除授)하소서.

1. 양계(兩界)의 갑사(甲士)는 다년간 외지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직임에 제수(除授)되어도 전의 수직(受職)한 고신(告身)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받은 고신을 서경(署經)하지 않기 때문에, 벼슬이 참상(參上)에 이른 자도 간혹 한 통의 고신도 없는 수가 있습니다. 빌건대 구례(舊例)를 거듭 밝혀서 매양 제수할 때는, 병조(兵曹)는 감사(監司)에게 이관(移關)하고, 감사는 각 군읍에 행이(行移)하여, 즉시 전에 수직한 직임의 계급(階級)을 상고하여, 간원(諫院)에 회보(回報)하여 서경하면, 해당 관사(官司)에서는 즉시 그 도(道)로 밀봉해 내려서 일일이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작질(爵秩)과 직함(職銜)은 신자(臣子)에 있어서는 사생(死生)을 막론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령귀 만호(池寧貴萬戶) 같은 칭호는 무신(武臣)들이 간혹 일컫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지명(地名)은 그 연혁(沿革)이 무상하여 후세에 가서는 어떤 관직인지도 모르게 됩니

다. 빌건대 모두 아름다운 칭호로 고쳐서 모주(某州) 모처(某處)의 만호(萬戶)라 일컫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변방에서 죽는 일이더라도 자손까지도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1.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 등의 고을은 강변에 포열해 있는데, 이제 이 세 고을을 혁파하고 자성(慈城) 1군(郡)이 홀로 적의 요충(要衝)을 막고 있습니다. 만일 야인(野人)이 무창(茂昌)의 죽전현(竹田峴)으로부터 상봉포(上奉浦)에 이르고, 두가을현현(豆加乙獻峴)으로부터 하봉포(下奉浦)에 이르며, 또 여연(閭延)의 신로현(新路峴)으로부터 금창동(金昌洞)에 이르고, 우예(虞芮)의 신로동(新路洞)으로부터 혼야동(昏夜洞)에 이르며, 소보리(小甫里)로부터 허공교(虛空橋)에 이르게 되면, 자성의 인민들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봉포·하봉포와, 금창동·혼야동에 새로이 목책(木柵)을 설치하였으나, 모두 권관(權管)이 부방(赴防)하고 있어, 방어의 모든 일이 소활(疏闊)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만호(萬戶)를 제수하지는 못하더라도, 허공교·금창동·상봉포 등지에 우선 만호를 두어, 변방의 수어를 굳게 하소서.

1. 신이 자성(慈城) 허공교 구자(虛空橋口子)를 보니, 동쪽 산언덕에 행성(行城)을 보완하여 설치하기를 마치 제방(堤防)을 쌓듯이 하였으나, 평시에는 성 위를 지나서 우예(虞芮)와 통하고, 유사시에는 행성을 굳게 지켜서 적의 길을 막았는데, 이제 우예를 철폐하게 되면, 허공교가 바로 적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청컨대 행성(行城) 수십 보(數十步)를 헐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당관(當關)한 자가 없더라도 적이 스스로 날아서 건너지는 못할 것입니다.

1. 신은 듣건대, 자성군(慈城郡)에 여기(厲氣)가 크게 성하여, 그 전염(傳染)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남자는 가끔 면하기도 하지만, 여자는 백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경내(境內)에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서 인근 고을에 구혼(求婚)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는다 하니, 실로 괴이한 일입니다. 청컨대 좋은 의원(醫員)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구료하여 치료하도록 하소서.

1. 강계 병마사(江界兵馬使)가 본부(本府)를 버리고 만포(滿浦)로 부방(赴防)하고 있는데, 만약 적기(賊騎)가 병력을 나누어서 만포를 포위하고는 곧장 읍성(邑城)으로 달려가게 되면, 근본이 되는 곳을 방어할 군사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함길도(咸吉道) 여러 진(鎭)의 예에 의하여, 토관직(土官職) 수십(數十) 자리를 설치하고는, 남도(南道) 및 강변 사람들로 교체해 임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강계가 또한 변지 사람들의 사환(仕宦)하는 곳이 되며 평시의 방어도 착실하게 되어, 비록 변고가 있게 되어도 동요(動搖)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강계부(江界府)가 산 밖에 떨어져 있어, 만약 큰 적당이 돌입하여 성을 포위하게 되면, 외로운 성에 구원의 길이 끊어질 것이 몹시 우려됩니다. 본부 남쪽의 적유령(狄踰嶺)은 사실상 남으로 지향

하는 첩경(捷徑)인데도, 이에 봉화(烽火)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강변을 따라 의주(義州)에 이르러서 다시 서울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믿을 만하지 못할까 생각됩니다. 청컨대 연대(煙臺)를 증설하여, 적유령을 지나서 희천(熙川)과 영변(寧邊)을 거쳐 봉호가 서로 조응(照應)하도록 하게 하소서.

1. 강계(江界)에는 군량(軍糧)의 저축이 부족하고, 또 본부의 인민들이 미곡을 가지고 남도(南道)로 가서 소금을 사 가지고 오기 때문에, 농우(農牛)와 전마(戰馬)가 태반이나 지쳐서 죽곤 합니다. 청컨대 매년 안주(安州) 등지에서 선군(船軍)이 구운 소금을 영변부(寧邊府)의 강변까지 배로 실어다 놓고는, 강계의 인민으로 하여금 본부에 쌀을 납부하고, 영변에 가서 소금을 받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만 하면, 군수(軍需)가 자연히 충실하게 되고, 우마(牛馬)도 피로하여 모손(耗損)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영변(寧邊) 이북과 자성(慈城) 이남의 합배(合排)한 인민으로 부실(富實)하여 갑사(甲士)에 입속(入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시험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합배한 인민이 본래 천례(賤隷)가 아니고, 변방에서 생장하여 기력이 또한 장하니, 그 갑사가 되려고 원하는 자는 충보(充補)를 허용하고 부근의 한민(閑民)으로서 그의 부역을 대신 정하도록 하소서.

1. 귀성(龜城)은 사통오달(四通五達)한 곳인데, 박서(朴犀)·김경손(金慶孫)은 여기에 의거해서 사수(死守)하였고, 이제 다시 읍을 설치하니 참으로 좋은 계책(計策)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온 인민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제 다시 귀주(龜州)를 설치한다면, 정주(定州)는 다만 해변의 한 고을이 되고 말 것이니, 청컨대 정주(定州)의 길 위의 땅을 다 구주에 속하게 하고, 곧 목(牧)으로 승격하게 하소서.

1. 운산군(雲山郡)의 옛 운산(雲山) 지역은 영변(寧邊)·가산(嘉山)·박천(博川)의 세 고을의 지경을 넘어서 정주(定州)의 땅과 서로 접하고 있었으니, 이는 개 이빨처럼 서로 엇물려 있는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운산에 이 땅이 없어서 어염(魚鹽)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희천(熙川) 등 수십 주(數十州)가 모두 산골짜기에 있어서 어염의 생산이 없는데, 어찌 유독 운산의 까닭으로 해서 그 강역(疆域)을 문란케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옛 운산은 정주에 환속(還屬)하도록 하소서.

1. 안주성(安州城)은 북쪽으로 청천강(淸川江)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는 곧 고구려(高句麗)가 수(隋)나라 군병을 대패시킨 곳입니다. 이제 그 성자(城子)가 낮고 미약하니, 청컨대 이를 고쳐서 쌓도록 하소서.

1. 옛 강동(江東)은 사실상 적이 침입해 오는 길의 요충(要衝)입니다. 청컨대 삼등(三登)의 치소(治所)를 옛 강동으로 옮기고, 삼강군(三江郡)이라 일컫게 하소서.

1. 평양성(平壤城)은 대동강(大同江) 서북쪽에 있는데, 적의 무리가 만약 사면을 포위한다면, 비록 원병(援兵)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접전(接戰)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의 동북·동남 두 모퉁이

에 모두 성자(城子)를 쌓아서 강변과 서로 연접하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적이 쉽게 이르지 못하고 성의 동쪽으로는 큰 강의 험준함을 잡게 될 것입니다. 외성(外城)은 바깥으로 강물과 암석(巖石)의 험준함이 있고, 안으로는 천정(泉井)과 풍요한 토지가 있으나, 혹시 적의 점거(占據)하는 바가 되면, 복배(腹背)로 적(敵)을 받게 되어, 내성(內城)의 수비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고성(古城)을 증축(增築)하도록 하소서.

1. 도내(道內)의 민폐 중에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란, 오직 사신을 맞고 짐바리를 호송하는 것과, 관부(館夫)를 유지하는 세 가지 일뿐인데, 관부의 폐단으로는 한 몸으로 몇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곡진한 포치(布置)를 더하도록 하소서.

1. 양계(兩界)에 토관(土官)을 설치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에, 백관 위사(衛士)로부터 이전(吏典)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은전(恩典)의 혜택을 입었으나, 오직 토관만이 아직 입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조관(朝官)의 예에 의하여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하게 하소서.

1. 모든 도(道)에 익(翼)을 설치한 것은 도성(都城)으로부터 외번(外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으레 서군(西郡)을 우익 (右翼)으로 삼고 동군(東郡)을 좌익(左翼)으로 삼았는데, 유독 양계(兩界)와 황해도(黃海道)는 동군을 우익으로 삼고 서군을 좌익으로 삼았으니, 이는 유달리 중앙으로부터 외방을 통제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모든 다른 도의 예에 따라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원전】 7 집 95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行政) / *인사-관리(管理) / *보건(保健) / *과학(科學) / *정론(政論)

《세조 002 01/12/27(무진) /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 과 직제학 양성지 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① 》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踶))·전의위(全義尉) 이관(李梡)·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민공(閔恭), 경창부 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인순부 윤(仁順府尹) 권총(權聰)·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예조 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

剛)·부윤(府尹) 김돈(金墩)·중추원 사(中樞院使) 안지(安止)·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행 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炅)·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첨지중추 민발(閔發)·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최득룡(崔得龍)·상호군 이비(李埤)·첨지중추 이원기(李元寄)·도호부사(都護府使) 구문신(具文信)·호군(護軍) 정차량(鄭次良)·행 상호군(行上護軍) 정종(鄭種), 상호군 전순의(全循義)·임지의(林之義), 행 상호군 이효지(李孝智)·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첨지중추(僉知中樞) 고득중(高得中)·첨지중추 하우명(河友明),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상호군 이장(李場)·전광의(全光義), 내시부사(內侍府事) 안충언(安忠彦)·상호군 최숙정(崔叔井)·목사(牧使) 김담(金淡)·행 호군(行護軍) 배상문(裵尙文)·상호군 이연손(李延孫)·목사 홍익생(洪益生)·동판내시(同判內侍) 지덕수(池德壽)·응교(應敎) 서강(徐岡)·사예(司藝) 김유(金莠)·훈련 부사(訓鍊副使) 송중문(宋仲文)·응교(應敎) 주소(朱邵)·동지내시(同知內侍) 윤언행(尹彦行)·교리(校理) 한계희(韓繼禧), 행 호군 이흥덕(李興德)·김이(金彛),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경지(曹敬智), 호군 배맹달(裵孟達)·김유례(金有禮), 정랑(正郎) 윤사흔(尹士昕)·판관(判官) 이징규(李澄圭)·호군 평순 만호(平順萬戶) 맹준(孟峻)·정언(正言) 최선복(崔善福)·감찰(監察) 정침(鄭沈), 사직(司直) 안유(安愈)·최적(崔適)·하호(河浩), 행 사정(行司正) 박성손(朴星孫)·사직 이팔동(李八同)·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사직 임원준(任元濬)·훈련 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상호군 박불동(朴佛同)·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哉)·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부윤 마승(馬勝)·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도절제사 하한(河漢)·행 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판한성(判漢城) 기건(奇虔)·판한성 이견기(李堅基)·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증 사헌부 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행 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중추원 부사 이사명(李思明)·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粹)·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

(柳子偕)·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파원 위(坡原尉) 윤평(尹坪)·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부윤 이명겸(李鳴謙)·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송처관(宋處寬), 중추원 사(中樞院使) 이승평(李昇平)·절제사(節制使) 이종효(李宗孝)·판도호부사(判都護府事) 변효경(卞孝敬)·절제사 유익명(兪益明)·관찰사(觀察使) 유규(柳規)·참판 이보정(李補丁)·관찰사 이석형(李石亨)·행 목사(行牧使) 김억지(金億之)·행 상호군(行上護軍) 박소(朴昭)·부제학(副提學) 김신민(金新民)·중추원 사 이변(李邊)·도절제사 이화(李樺)·절제사 강순(康純)·상호군 이효례(李孝禮)·첨지중추 마흥귀(馬興貴)·직제학 **양성지(梁誠之)**·첨지중추 낭이승거(浪伊升巨)·상호군 선석년(宣錫年)·사헌 집의(司憲執義) 이예(李芮)·겸 군기 감정(兼軍器監正) 심중은(沈仲恩)·직제학 강희안(姜希顔)·부정(副正) 주상례(朱尙禮)·우사간(右司諫) 이영견(李永肩)·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김득례(金得禮)·장령(掌令) 신영손(申永孫)·경력(經歷) 심치(沈寘)·주부(主簿) 강자의(姜子儀)·판사(判事) 매우(梅佑)·상호군(上護軍) 조지당(趙之唐)·직접현전(直集賢殿) 이승소(李承召)·판관(判官) 유균(柳均)·사직(司直) 이임미(李林美)·부사직(副司直) 민운(閔惲)·직제학(直提學) 김지경(金之慶)·행 사직(行司直) 김길호(金吉浩)·호군(護軍) 김유선(金有銑)·군사(郡事) 윤기견(尹起畎)·양운석(梁雲石), 행 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호군(護軍) 김문달(金文達)·행 사정(行司正) 서수(徐綏)·정랑(正郎) 강희맹(姜希孟)·검상(檢詳) 김위(金瑋)·사예(司藝) 김질(金礩)·정랑 홍연(洪演)·응교(應敎) 조근(趙瑾)·서령(署令) 김경손(金慶孫)·정랑 최사로(崔士老)·소윤(少尹) 장계증(張繼曾)·군사(郡事) 김윤복(金閏福)·소윤 강노(姜老)·판내시(判內侍) 홍득교(洪得敎)·행 동첨내시(行同僉內侍) 임동(林童)·행 동첨내시 이득부(李得富)·판내시 안노(安璐)·행 지내시(行知內侍) 윤득부(尹得富)·정랑(正郎) 김서진(金瑞蓁)·군사(郡事) 전가생(田稼生)·주부(注簿) 홍일동(洪逸童)·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군사 이유약(李有若)·도관찰사(都觀察使) 민건(閔騫), 정랑 이문형(李文炯)·성임(成任)·강미수(姜眉壽), 좌랑(佐郎) 이계손(李繼孫)·행 부사직(行副司直) 오연(吳衍)·좌랑 배효숭(裵孝崇), 도사(都事) 강효문(姜孝文)·직강(直講) 이익(李翊)·좌랑 이윤인(李尹仁)·부정(副正) 최효생(崔孝生)·판사(判事) 선형(宣炯)·사직(司直) 이득림(李得霖)·호군(護軍) 지유원(池有源), 사직 맹득미(孟得美)·석자의(石子議), 좌랑(佐郎) 김덕원(金德源)·직강(直講) 이계전(李季甸)·좌랑 안초(安迢)·교리(校理) 정문형(鄭文炯)·좌랑 오백창(吳伯昌)·사직(司直) 구문로(具文老)·행 사정(行司正) 허형손(許亨孫)·참군(參軍)·이숙기(李淑琦)·주부(注簿) 노경신(盧敬信)·행 사직(行司直) 황석생(黃石生)·행 부사정(行副司正) 유종화(柳從華)·행 사직 김일용(金日容)·사직 김효조(金孝祖)·호군(護軍) 민

형손(閔亨孫)·행 사정(行司正) 양처공(梁處恭)·판관(判官) 홍귀해(洪貴海)·사정(史正) 홍백연(洪伯涓)·부사정(副司正) 김기(金耆)·직장(直長) 이인규(李仁畦),

부사직(副司直) 유산보(兪山寶)·조주(曹柱)·이종경(李宗慶)·이순경(李順慶), 행 사용(行司勇) 유포(柳晡), 현감(縣監) 이계중(李繼重)·이계중(李係重), 행 사직(行司直) 김경손(金敬孫)·상호군(上護軍) 이중윤(李中允)·직장(直長) 송숙기(宋叔琪)·호군 안운수(安雲壽)·주부(注簿) 안의(安義)·봉훈랑(奉訓郎) 김득문(金得門)·부지사(副知事) 민희(閔僖)·선무랑(宣務郎) 이옥림(李玉林)·행 판관(行判官) 박지(朴枝), 사직(司直) 홍효손(洪孝孫)·이중말(李仲末), 군사(郡事) 김증(金曾)·박종대(朴宗大), 호군 박훤(朴萱)·행 사정(行司正) 이윤약(李允若)·판사(判事) 조유신(趙由信), 군사(郡事) 이전수(李全粹)·조원희(趙元禧), 사인(舍人) 이효장(李孝長)·부사정(副史正) 최계근(崔繼根), 사정 이미성(李美成)·하숙전(河叔傳), 대호군(大護軍) 이거을다개(李巨乙多介)·행 호군(行護君) 김가신(金可伸), 행 사직(行司直) 장평(張平)·마우기(馬右其), 호군 낭삼파(浪三波)·사직 배우문(裵珝文)·대교(待敎) 이문환(李文煥)·사직 남치효(男致孝)·주부(注簿) 김석제(金石梯), 사알(司謁) 조이생(趙異生)·최유지(崔有池), 부사정(副司正) 이득행(李得行)·부사정 원처중(元處中)·사용(司勇) 김의지(金義智), 부사정 전습(田濕)·김순거(金舜擧)·김상미(金尙美), 직장(直長) 박서창(朴徐昌)·호군 조경지(趙敬智)·부사직(副史直) 주비(周備)·부사정 이숭무(李崇茂)·사약(司鑰) 진수(陳守)·사용 강자흥(姜子興)·판관 주호(朱瑚)·행 호군(行護君) 박수미(朴壽彌), 겸교리(兼校理) 전동생(田桐生)·조변안(曹變安), 교리(校理) 홍응(洪應)·군사(郡事) 나치정(羅致貞)·부사직(副司直) 정충원(鄭忠源)·겸교리(兼校理) 이상(李相), 현감(縣監) 임숙(任淑)·김호인(金好仁), 좌랑(佐郎) 정종주(鄭宗周)·부교리(副校理) 정효항(鄭孝恒)·겸박사(兼博士) 임효검(林孝儉)·정자(正字) 조지(趙祉)·권지 정자(權知正字) 구치동(丘致峒)·지사(知事) 최사유(崔士柔)·부교리 조안정(趙安貞)·박사(博士) 허적(許迪)·권지 정자(權知正字) 이극기(李克基)·저작(著作) 윤효손(尹孝孫), 권지 정자 박숙진(朴叔蓁)·양순석(梁順石)·김자정(金自貞), 검열(檢閱) 윤민(尹愍), 권지 정자 윤기반(尹起磻)·정자(正字) 정이아(鄭以雅)·사직(司直) 김유지(金有智)·장령(掌令) 이함장(李함長)·판관(判官) 임효선(林效善)·사예(司藝) 박인(朴璘)·행 사정(行司正) 김경장(金慶長)·지형조사(知刑曹事) 최중겸(崔仲謙)·도사(都事) 민순손(閔順孫)·판관 김영유(金永濡)·목사(牧使) 황보공(皇甫恭), 정랑(正郎) 최한경(崔漢卿), 이한겸(李漢謙), 대교(待敎) 유지(柳軽)·소윤(小尹) 민효열(閔孝悅)·부사(府使) 조계팽(趙季砰)·행 지사(行知事) 조상치(曹尙治)·판사 민원(閔瑗)·주부(注簿) 신자교(申子橋)·군사(郡事) 모순(牟恂)·겸 종학 박사(兼宗學博士) 이뇌(李賴)·직집현전(直集賢殿) 남수문(南秀文)·현감(縣監) 김한계(金漢啓)·좌랑(佐郎) 윤배(尹培)·사정(司正) 권경행(權景行)·군사(郡事) 김수온(金守溫)·감정(監正) 박제함(朴悌諴)·현감 김영전(金永湔)·정랑(正郎) 우계번(禹繼藩)·상호군(上護軍) 안위(安位)·겸 종학 박사(兼宗學博士) 원자직(元自直)·직제학(直提學) 안지귀(安知歸)·판사(判事) 이형(李逈)·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말(金末)·중추원 부사 조어(趙

峿), 교리(校理) 이파(李坡)·박건(朴楗), 수찬(修撰) 김수령(金壽寧)·행 주부(行注簿) 이우(李堣)·군사(郡事) 김숙검(金叔儉)·행 정자(行正字) 권징(權徵)·저작(著作) 신의경(辛義卿),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이계신(李繼善)·행 부정자(行副正字) 권제(權踶), 좌랑(佐郎) 윤필상(尹弼商)·강복(姜輻), 저작 정충기(鄭忠基)·감찰(監察) 유계번(柳季潘)·정자(正字) 이근(李覲), 권지 정자(權知正字) 최응현(崔應賢)·성수린(成壽麟)·백사수(白思粹)·신말주(申末舟)·고태익(高台翼), 부정자(副正字) 강기수(姜耆壽)·경력(經歷) 하길지(河吉之)·좌랑(佐郎) 권지(權至), 부수찬(副修撰) 노사신(盧思愼)·성간(成侃)·정효상(鄭孝常),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조무영(趙武英)·동첨지돈녕(同僉知敦寧) 이서(李墅)·승훈랑(承訓郎) 안훈(安訓)·승의랑(承議郎) 정심(鄭深)·부사직(副司直) 정윤각(鄭允恪)·통선랑(通善郎) 안극사(安克思)·주부(注簿) 송문림(宋文琳)·행 호군(行護軍) 허곤(許棍)·소윤(少尹) 송처검(宋處儉)·판사 이종검(李宗儉)·행 사용(行司勇) 함귀(咸貴)·동부지(同副知) 윤흠(尹欽)·수사직(守司直) 이계정(李季甸)·행 사용 윤사례(尹思禮)·감찰(監察) 이증석(李曾碩)·지통례(知通禮) 김수(金脩)·행 부사직(行副司直) 조숙생(趙肅生)·호군(護軍) 김효온(金孝溫)·부사직 원자정(元自貞)·소윤 나인(羅寅)·직강(直講) 조추(趙秋)·소윤 신후갑(愼後甲)·교리(校理) 권절(權節)·주부(注簿) 이지행(李墀行)·능직(陵直) 이철견(李鐵堅)·사직(司直) 고수겸(高守謙)·행 호군(行護軍) 손계조(孫繼祖)·승의랑(承議郎) 신수지(申守祉)·부윤(府尹) 이심(李諶)·부사(府使) 이언(李堰)·사예(司藝) 홍경손(洪敬孫)·현감(縣監) 정명응(丁明應)·헌납(獻納) 고태필(高台弼)·군사(郡事) 김호(金澔)·판관(判官) 윤영의(尹永義)·녹사(錄事) 서중성(徐仲誠)·행 부사직 장맹도(張孟道)·사정(司正) 여근도(呂近道)·행 사정(行司正) 김산해(金山海)·사정 김사일(金思一)·주부(注簿) 박근(朴瑾), 학유(學諭) 박계성(朴繼姓)·남승보(南勝寶), 저작 김성원(金性源), 훈도(訓導) 김구영(金九英)·김지(金祉), 감찰(監察) 이질(李垤)·권지 학유(權知學諭) 박치명(朴致明)·권지 정자(權知正字) 김부필(金富弼)·훈도(訓導) 김병문(金炳文)·군사(郡事) 이계수(李桂遂)·좌랑(佐郎) 김용(金勇)·행 호군(行護軍) 이갑충(李甲忠)·만호(萬戶) 이종덕(李宗德), 부사직(副司直) 유숙(柳塾)·유양(柳壤), 부사정(副司正) 이창(李昌), 사직 유인효(兪仁孝)·이손경(李孫景), 행 사정(行司正) 우효선(禹孝先)·부사직 김석산(金石山)·소윤(小尹) 조철산(趙鐵山)·행 사직(行司直) 박지(朴之)·호군(護軍) 이계흥(李季興), 사직(司直) 차석견(車石堅)·전숭제(全崇悌), 부사직 설순조(薛順祖)·사용(司勇) 양사제(楊斯悌)·진용 교위(進勇校尉) 설창신(薛昌新)·행 사정(行司正) 설성(薛成)·사직 홍지(洪漬)·호군 장이생(張二生)·사직 송석순(宋碩孫)·사용 이효명(李孝明)·사직 권마(權摩)·사정(司正) 윤사지(尹思智)·행 사용(行司勇) 유인습(柳仁濕)·군사(郡事) 서조(徐遭)·현감(縣監) 이순백(李淳伯)·부사정(副司正) 손효윤(孫孝胤)·승훈랑(承訓郎) 신선경(愼先庚)·

대호군(大護軍) 윤오(尹塢)·참의(參議) 나홍서(羅洪緖)·행 사직(行司直) 조욱(趙頊)·만호(萬戶) 한자침(韓自琛), 호군(護軍) 이후(李逅)·한상완(韓尙完), 상호군(上護軍) 김효당(金孝當)·훈도(訓導) 민우증

(閔友曾)·좌랑(佐郎) 조원지(趙元祉), 훈도 조서정(趙瑞廷)·인순부 승(仁順府丞) 정극인(丁克仁)·권지 학유(權知學諭) 김영벽(金映璧)·훈도 하한근(河漢根)·교수관(敎授官) 최수지(崔水智)·감찰(監察) 정침(鄭忱)·훈도 김효신(金孝新)·판관(判官) 김계원(金繼元)·감찰(監察) 김한(金漢)·호군(護軍) 오익창(吳益昌)·대호군(大護軍) 윤신우(尹莘遇)·행 사용(行司勇) 전계원(全繼元)·훈련 녹사(訓鍊錄事) 이수붕(李壽朋)·행 부사정(行副司正) 하기린(河起麟)·행 사용 신흥례(申興禮)·사직(司直) 이근효(李近孝), 권지 훈련 녹사(權知訓鍊錄事) 최명전(崔命全)·강근손(姜謹孫), 사정(司正) 한계사(韓繼思)·권지 훈련 녹사 김석종(金錫宗)·사정(司正) 강전(姜專)·권지 참군(權知參軍) 권효신(權孝信)·권지 훈련 녹사 노지(盧祉), 사정 박유손(朴有孫)·이지정(李之楨)·인진행(印珍行)·전자완(全自完), 권지 훈련 녹사 황진손(黃振孫)·사직(司直) 이청신(李淸新), 권지 훈련 녹사 김효손(金孝孫)·정승중(鄭承重), 행 녹사(行錄事) 이종연(李宗衍)·사직 남지(南贄)·사용(司勇) 이종생(李從生)·과의 장군(果毅將軍) 연수염(延壽恬)·부사(府使) 조규(趙珪)·현령(縣令) 조유(趙瑜)·행 주부(行注簿) 김명중(金命中)·사직 이찬원(李贊元)·사용 이효손(李孝孫)·만호(萬戶) 이승명(李承命)·군사(郡事) 이염의(李念義)·사정(司正) 노덕기(盧德基)·판통례문(判通禮門) 윤삼산(尹三山)·영평위(鈴平尉) 윤계동(尹季童)·부윤(府尹) 홍심(洪深)·행 상호군(行上護軍) 조연(趙璘)·행 사용(行司勇) 이세량(李世樑)·판관(判官) 이형손(李亨孫)·행 상호군 신자수(申自守)·부교리(副校理) 홍약치(洪若治)·교수관(敎授官) 유자문(柳子文)·도사(都事) 이유의(李由義)·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감찰(監察) 전효우(全孝宇)·좌랑(佐郎) 박찬조(朴纘祖)·정랑(正郎) 한서봉(韓瑞鳳)·부사직(副司直) 김상진(金尙珍)·주부(注簿) 윤자영(尹子濚)·봉례(奉禮) 이제림(李悌林)·감찰 최한보(崔漢輔), 봉교(奉敎) 권이경(權以經)·김겸광(金謙光), 대교(待敎) 민정(閔貞), 검열(檢閱) 안신손(安信孫)·김이용(金利用), 행 사정(行使正) 박부(朴부), 사정 정종아(鄭從雅)·판관 이계창(李繼昌)·훈도(訓導) 정지소(鄭至韶), 권지 정자(權知正字) 유천(柳阡)·김윤종(金潤宗), 현감(縣監) 김서(金漵)·권지 정자 신복륜(申卜倫), 권지 학유(權知學諭) 이삼산(李三産)·최청(崔청), 훈도(訓導) 김해(金咳)·권지 학유 김적복(金積福)·훈도 남기(南기), 권지 학유 조호지(曹好智)·박맹지(朴孟智)·훈도 문소조(文紹祖)·감찰(監察) 이원효(李元孝), 권지 학유 조극치(曹克治)·이문요(李文饒), 검열(檢閱) 김영견(金永堅)·소윤(小尹) 한치인(韓致仁)·부사(府使) 양인백(楊仁伯)·주부(注簿) 유오(柳塢)·군사(郡事) 정결(鄭潔)·유수(留守) 김세민(金世敏)·부사정(副司正) 김삼산(金三山)·부윤(府尹) 이순지(李純之), 녹사(錄事) 김신조(金愼祖)·오창(吳彰)·박종무(朴宗武)·최치당(崔致塘)·홍범(洪範)·문자수(文自修)·전세적(錢世積), 현감(縣監) 이수생(李壽生), 지인(知印) 문한생(文漢生)·유효지(柳孝池), 녹사(錄事) 안계의(安季毅)·호군(護軍) 장서(張瑞)·상호군(上護軍) 동간고(童干古)·사정(司正) 손계온(孫繼溫)·행 사정(行司正) 조계손(調繼孫)·행 현감(行縣監) 조맹손(曹孟孫)·행 부사정(行副司正) 박철산(朴鐵山)·사용(司勇) 김계종(金繼宗), 녹사(錄事) 김익륜(金益倫)·하맹산(河孟山)·김종(金鍾)·조순경(趙順敬)·강정(姜精)·염순(廉淳)·나달선(羅達線), 현감 박

거명(朴居明)·녹사 박계종(朴季宗)·행 부사직(行副司直) 박한생(朴漢生)·훈도(訓導) 손차면(孫次綿), 권지 학유(權知學諭) 임수경(林秀卿)·김계금(金係錦)·곽자용(郭自容), 권지 정자(權知正字) 구자평(仇自平)·행 사용(行司勇) 박순달(朴順達), 권지 훈련 녹사(權知訓鍊錄事) 최계한(崔季漢)·이황진(李黃振), 사직(司直) 노윤필(盧允弼), 진의 부위(進義副尉) 조윤하(曹允夏)·이담(李聃), 경창부 승(慶昌府丞) 이숙함(李淑瑊)·사정(司正) 이철명(李哲命)·진의 부위 윤원동(尹元同)·사정 박사형(朴思亨)·진의 부위 박종문(朴宗文)·우군 사용(右軍司勇) 이규(李珪)·우군 사정(右軍司正) 허인(許麟), 권지 훈련 녹사 조경치(曹敬治)·오자경(吳子慶), 알자(謁者) 장말동(張末同)·사정 최함(崔涵)·사용(司勇) 인경(印卿)·호군(護軍) 김숭해(金崇海)·승의 교위(承義校尉) 김인지(金靭之)·수의 교위(修義校尉) 나문수(羅文繡), 돈용 부위(敦勇副尉) 최신지(崔信之)·최한지(崔漢之), 진용 부위(進勇副尉) 이말봉(李末奉)·승의 부위(承義副尉) 김계돈(金繼敦)·수의 부위(修義副尉) 김말손(金末孫), 진의 부위(進義副尉) 장영진(張永珍)·김자유(金自柔), 수의 부위 최준(崔浚)·이우(李遇)·김효생(金孝生)·백귀령(白龜齡)·이효량(李孝良)·백신손(白信孫)·유태종(劉泰從)·한후생(韓厚生)·신한생(申漢生)·이시영(李時榮)·이맹정(李孟禎), 진의 부위 정중손(鄭仲孫)·김자옥(金自玉)·이형(李衡)·유귀(柳龜)·최자청(崔自淸)·엄유경(嚴有敬), 승의 부위(承義副尉) 남치목(南致睦)·돈용 부위(敦勇副尉) 최림(崔霖), 사정(司正) 성장(成章)·견중달(甄仲達), 수의 부위 정기효(鄭起孝)·한상문(韓尙文)·진척(陳滌)·오준동(吳峻童)·봉극순(奉克純)·김경희(金敬熙)·조맹손(曹孟孫)·서민(徐敏)·황보종(皇甫種)·김여인(金汝仁), 진무 부위(進武副尉) 김자하(金自河)·전호인(全好仁), 진의 부위(進義副尉) 이종수(李從遂)·이산택(李山澤)·최장(崔章)·오변은(吳變殷), 승의 교위(承義校尉) 최급(崔汲), 사정(司正) 이덕유(李德裕)·승의 부위(承義副尉) 정문치(鄭文治)·부사정(副司正) 예인호(艾仁浩), 사용(司勇) 신치복(申致復)·정지주(鄭至周)·박치명(朴致明)·이맹근(李孟根)·이원양(李原瓖)·황신지(黃信之), 수의 부위 박재문(朴載文)·김자렴(金自廉)·주계생(朱繼生)·윤처신(尹處信)·정덕행(鄭德行)·이종실(李種實)·권효(權曉)·장계창(張季昌)·안극유(安克柔), 돈의 부위(敦義副尉) 박맹손(朴孟孫)·부사정(副司正) 최경의(崔景義), 수의 부위(修義副尉) 공명선(孔明善)·김욱(金澳)·이초(李紹)·안효문(安孝文)·황무(黃茂)·나귀정(羅貴貞)·이계선(李季善)·손중혁(孫仲赫), 승의 교위(承義校尉) 조경소(曹敬所)·수의 교위(修義校尉) 윤흔(尹昕),

사정(司正) 이시(李蒔)·안승조(安承祖), 부사정(副司正) 소균(蘇鈞)·신한(辛瀚), 행 사용(行司勇) 오유현(吳惟顯), 수의 부위 오윤생(吳尹生)·이복동(李復東)·정사(鄭仕)·최택(崔澤)·김계주(金季珠)·이응선(李應善)·장경지(張敬之)·강연(姜演)·한승조(韓承祖), 진의 부위(進義副尉) 손효정(孫孝貞), 사직(司直) 박문회(朴文會)·전실(田實)·박초(朴超), 부사직(副司直) 원효정(元孝貞)·오사하(吳事夏)·배경량(裵敬良), 사정(司正) 김경의(金敬義)·신효의(申孝義)·강유지(康有智)·김극경(金克敬)·이효공(李孝恭)·백분(白墳), 부사정(副司正) 최중수(崔仲水)·염포(廉抱)·정복례(鄭卜禮)·오치지(吳致智)·유순손(柳順孫)·유춘기(柳春寄),

사용(司勇) 심말생(沈末生)·최영하(崔永河)·임해산(林海山)·이득부(李得夫)·김하창(金河昌)·

이온(李溫), 사직 홍우전(洪禹傳)·조숭헌(趙崇憲), 부사직(副司直) 이수인(李守仁)·고의지(高義智)·배문욱(裵文郁)·안근(安謹), 사정(司正) 김효검(金孝檢)·손경종(孫敬宗)·박안지(朴安止)·박승무(朴升茂)·윤신손(尹信孫), 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陟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박거형(朴居亨)·장효생(張孝生)·배유인(裵有仁)·강극명(姜克明)·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행 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수의 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진의 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 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김소생(金小生), 진의 부위 이안(李岸)·장중경(張仲敬)·노원말(盧元末)·최운걸(崔雲傑)·김복리(金福利)·김계남(金繼南)·손성우(孫成佑)·박만(朴萬)·신귀존(申貴存)·배안습(裵安濕)·유중련(劉仲連)·박귀성(朴貴成)·김귀치(金貴致)·윤산(尹山)·신경선(申敬善), 수의 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 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서경(徐敬)·김을부(金乙富)·박계무(朴戒茂)·한신(韓信)·박유산(朴由山)·최철생(崔喆生)·왕치손(王致孫)·김효례(金孝禮)·김중정(金仲情)·강득(姜得), 진무 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김거손(金居孫), 진의 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임복정(林福汀)·김수(金守)·김휴(金休)·김치강(金致江)·한귀견(韓貴堅)·이약로(李若老)·하인귀(河仁貴)·최중산(崔仲山)·이신(李信)·정수(丁守)·김영남(金永南)·수의 부위(修義副尉)·김처인(金處仁)·조송(趙松)·최원(崔元), 진무 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 부위 김여수(金儷水)·전을생(全乙生)·임유생(林有生)·정유달(鄭有達)·김벌개(金伐介)·김중근(金仲斤)·김중련(金仲連)·전수(全守)·정효생(鄭孝生)·김특생(金特生)·김광신(金光信)·원명례(元明禮)·박생(朴生)·정연수(鄭延守)·최해(崔海)·김수강(金守江)·양중생(梁仲生)·박득현(朴得賢)·김여생(金麗生), 수의 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김효손(金孝孫)·진무 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 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고을부(高乙夫)·심의(沈義)·박금산(朴今山)·서문(徐文)·박중남(朴仲南)·최득강(崔得江)·김이장(金以장)·김성미(金成美)·안호생(安浩生)·박계생(朴戒生)·조맹희(趙孟熙)·심극인(沈克仁)·김효지(金孝智)·윤잠(尹岑)·정효산(趙孝山)·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알자 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임희무(林希茂)·김호의(金好義)·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이운강(李云江)·김효윤(金孝潤)·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조대덕(趙大德)·유여평(兪汝平)·김자려(金自麗)·구복상(仇復祥)·배돈(裵敦)·정효신(鄭孝信), 행 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배상례(裵尙禮)·조예산(趙禮山)·한자렴(韓自廉)·김성기(金成己)·이옹(李雍)·임의민(林義民)·김경동(金敬童)·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고치화(高致和)·진무 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박건원(朴乾原)·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양안위(楊安渭)·이지화

(李之華)·변이문(卞以文)·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장좌원(張佐元)·이복산(李福山)·전유선(全有先)·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사용 정산휘(鄭山彙)·사직 홍영호(洪永湖)·권지참군(權知參軍) 허탁행(許倬行)·전사(典事) 황윤례(黃允禮)·행 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행 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사정(司正) 김화(金和)·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나잉질동(羅仍叱同)·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차마류(車馬硫)·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사직(司直) 김검(金劍)·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羣子)·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행 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원전】 7 집 10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세조 2년 《 양성지 - 세조 2년 .... 11 건 》

세조 003 02/01/12(임오) / 동부승지 이휘가 이석산의 살인범이 민발임을 아뢰었으나 믿지 않다. 양성지에게 관작 1자급을 더하여 주었다

세조 003 02/01/25(을미) / 시강관 양성지가 내조한 왜인·야인에게 궁마를 내려주지 말도록 청하다. 경연관의 진언을 독려하다

세조 003 02/02/20(기미) / 경연에서 시독관 양성지가 언로를 열 것을 청하다

세조 003 02/03/18(정해) / 경연에서 시강관 양성지가 강경을 위한 권학 방법에 관하여 아뢰다

·오경·문묘 세조 003 02/03/28(정유)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①

세조 003 02/03/28(정유)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②

세조 003 02/04/15(갑인) / 경회루에서 진법과 사서오경을 강하게 하다. 이징석의 활솜씨를 칭찬하다. 이개 · 양성지에게 술을 올리게 하다

세조 004 02/05/21(기축) / 경연에서 양성지가 밤에 공신들과 연회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세조 004 02/05/26(갑오) / 시강관 양성지가 세종조에 상정한 의주를 책으로 만들 것 등을 청하다

세조 004 02/06/02(경자)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죄줄 수 없다고 하다

세조 005 02/11/09(을해) / 상참을 받은 후 하성위·윤사로·권남 양성지 등을 머물게 하여 시식하다

《 세조 003 02/01/12(임오) / 동부승지 이휘가 이석산의 살인범이 민발임을 아뢰었으나 믿지 않다. **양성지(梁誠之)**에게 관작(官爵)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었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이어서 상참관(常參官)을 모두 전(殿)에 오르도록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가 민발(閔發)이 이석산(李石山)을 죽인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의심하여 민발이 한 짓이 아니라 하고, 먼저 대신(大臣)들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의심할 만합니다."

하였다. 집의(執義) 이예(李芮), 지평(持平) 윤자(尹慈) 등이 아뢰기를,

"그 방(坊)의 관령(管領)을 다시 추국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헌납(左獻納) 구종직(丘從直)도 또한 말하기를,

"다시 추국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세자(世子)더러 이르기를,

"너는 구종직의 사람됨을 아느냐? 참으로 어진 선비이니라."

하였다. 구종직이 또 아뢰기를,

"이석산(李石山)의 <사건에> 사련(辭連)된 사람을 방면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면서, 말이 매우 지리(支離)하니,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명하여 끌어 내게 하였다. 이예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대간(臺諫)과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임금이 주연(酒宴)이 한창 벌어질 무렵에 입시(入侍)한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품은 바를 진술하게 하니,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大臣)들을 특별히 예우(禮遇)하여, 매양 술자리를 베푸시고 서로 환락하심은 지극한 성사(盛事)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은 성체(聖體)에 병환이 생기실까 두려우니, 청컨대 절음(絶飮)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크게 탄복하여 칭찬하며 말하기를,

"오직 너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명하여 **양성지(梁誠之)**에게 관작(官爵)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었다.

【원전】 7 집 11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03 02/01/25(을미) / 시강관 양성지가 내조한 왜인 · 야인에게 궁마를 내려주지 말도록 청하다. 경연관의 진언을 독려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이 파(罷)하자, 시강관(侍講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을 접대(接待)할 때에 증유(贈遺)하는 물건이 너무 많아 장차 잇대기가 어려울 것이 염려되고,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내조자(來朝者)에게 궁마(弓馬)를 내려 주시는데, 궁마는 바로 적의 침략을 막는 기구이니 가볍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며, 저 사람들이 우리 나라 궁시(弓矢)의 제도를 보고 경리(輕利)하다고 생각하여 본뜰 수도 있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강무(講武)하는 것은 병사(兵事)를 익히려는 소이(所以)입니다. 전조(前朝)의 공민왕(恭愍王)은 평시에 무사(武事)를 익히지 아니하다가 졸지에 홍적(紅賊)이 입경(入境)하였음을 듣고 후궁(後宮)과 더불어 후원(後苑)에

서 보마(步馬)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가소(可笑)로운 일이니, 대소(大小)의 강무(講武)는 모두 일시(日時)를 정하여 소삭(疏數)의 마땅함을 얻게 하면, 임금의 거동(擧動)은 절조가 있고 군사(軍士)의 노고와 편안함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는 내가 생각하여 하는 것이며, 군사(軍士)를 비유하건대, 말[馬]이 편하면 병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시일을 정함은 불가한 것이다. 야인(野人)에게 비록 궁시를 내려 주더라도 한 번 장마를 지나면 곧 무용(無用)하게 될 것이며 말을 내려 준 것도 또한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경연(經筵)은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하여 치도(治道)를 강론(講論)하려는 소이(所以)이며 단지 강독(講讀)하는 것뿐만이 아닌데, 근일의 경연관(經筵官)은 진언(進言)을 하는 자가 없으니 나를 두려워하여 하지 않는 것인가?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엄동[隆冬]과 성하(盛夏) 외에는 날마다 경연을 강(講)하라."

하였다. 양성지가 또 지도(地圖)·관제(官制) 등의 일을 아뢰므로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니, 양성지는 지도와 관제를 찬수(纂修)하는 것으로써 기용(起用)되었다고 동료들이 비난하였다.

【원전】 7 집 11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03 02/02/20(기미) / 경연에서 시독관 양성지가 언로를 열 것을 청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인주(人主)의 일신(一身)은 신민(臣民)의 위에 처하였으니,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생(民生)의 이해[利病]를 말하는 자가 없다면 얻어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大臣)은 고임을 아껴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소신(小臣)은 죄를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니, 청컨대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서 착한 것을 따르시고 비록 혹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언로를 열음은 국가의 복(福)이다. 성탕(成湯)은 대성인(大聖人)이나 오히려 간쟁(諫諍)을 따르고 어기지 않았거늘, 하물며 나 같은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너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양성지가 또 형벌(刑罰)을 신중히 하고, 작상(爵賞)을 중하게 하며, 급사중(給事中)을 설

치하고, 《고려사(高麗史)》를 반포하는 등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벼슬과 상이 지나친 것은 나 역시 알고 있으나, 급사중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원전】 7 집 116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 *역사(歷史) / *행정(行政)

《 세조 003 02/03/18(정해) / 경연에서 시강관 양성지가 강경을 위한 권학 방법에 관하여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과거(科擧)의 초장(初場)에서 강경(講經)하게 한 뒤부터는 거자(擧子)가 모두 다 경학(經學)에 유심(留心)합니다. 그러나 사서(四書) 오경(五經)은 호번(浩繁)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이학(理學)에 정(精)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전조(前朝)에는 '구재(九齋)의 법'이 있었고, 한(漢)나라 때에는 전문(專門)의 학(學)이 있었는데, 다시 행할 만하니, 특별히 거자를 위하여서 뿐만이 아니고 집현전(集賢殿)이나 삼관 유생(三館儒生)도 또한 강습(講習)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로지 1서(一書)만 연구하면 학문이 넓지 못하여 혹 걸리고 막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세종조(世宗朝)에 명(命)을 받고 제서(諸書)와 경사(經史)를 찬술하여서, 많이 섭렵(涉獵)하고 율려(律呂)와 풍수(風水)의 서책에 이르기까지 강구(講究)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들 서책은 진실로 강독(講讀)시킬 만한 것이 못된다. 《역(易)》과 같은 서책은 지극히 정미(精微)하여 상경(上經)·하경(下經)은 깨치기 쉬우나 도설(圖說)·계사(繫辭)는 더욱 정미(精微)하니, 이 책에 밝으면, 이른바 '바닷가에서 <물을> 본 자는 물의 <깊음을> 말하기 어렵다.'고 한 것처럼 많은 서책을 다스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밝아질 것이다. 그 권학(勸學)하는 방법을 너는 집현전에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12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 세조 003 02/03/28(정유)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 · 종사 · 과거 · 기인 등에 관한 상소① 》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엎드려 보니, 주상 전하께서는 상성(上聖)의 자질로서 대위(大位)에 영광스럽게 오르시어 고금(古今) 치란(治亂)의 자취와 민속(民俗)의 간난(艱難)한 일을 통찰(洞察)하지 않음이 없으시고 소간(宵旰)으로 부지런히 도치(圖治)하셔서 우리 조선 억만 년 태평 성업의 기틀을 닦으시니, 진실로 삼한(三韓)에서 한 번 번성할 때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조정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병(利病)을, 대신(大臣)은 꾀하고 대간(臺諫)은 이를 논의하며, 기타의 시종(侍從)하는 직사(職事)들도 논사(論思)함에 있는데, 신은 용렬한 자질로써 경악(經幄)을 시종함을 얻어서도 조금의 성효(成效)도 없어 성덕(聖德)에 보답함이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무릇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은 미충(微衷)이라도 상량하여 확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만(萬)의 일(一)이라도 비익(裨益)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히 편의(便宜) 24사(事)를 가지고 조목을 기록하여 바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聖鑑)하여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1. 춘추(春秋)의 대사(大射)입니다. 대개 금인(金人)은 요(遼)나라의 풍속을 이어 받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늘에 절하고 버드나무를 쏩니다. 이것은 비록 중원(中原)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또한 번국(藩國)의 성사(盛事)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해동(海東)에 웅거(雄據)하여 삼국(三國)으로부터 전조(前朝)에 이르기까지 교천(郊天)과 향제(饗帝)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로 그 옛것을 다 따르지 못하더라도 요(遼)·금(金)의 고사(故事)를 조금 모방하여 3월 3일과 9월 9일은 친히 교외(郊外)에 거둥하시어 대사례(大射禮)를 행하고, 해마다 상례로 삼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거의 우리의 무위(武威)를 크게 떨치고 사기(士氣)도 또한 증가하여 스스로 일국 일대(一國一代)의 풍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 오경(五京)을 증치(增置)하는 것입니다. 대개 요(遼)·금(金)·발해(渤海)도 아울러 오경(五京)을 세웠고, 전조(前朝)도 사경(四京)을 세웠는데, 본조(本朝)에서는 단지 한성(漢城)·개성(開城)의 양경(兩京)만을 설치했을 뿐이니, 대동 산해(大東山海)의 험함과 주·부(州府)의 성함을 가지고서 단지 양경만을 두었으니 어찌 흠결(欠缺)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원나라 세조(世祖)는 우리에게 의법은 본속(本俗)을 따를 것을 허락하였고, 고황제(高皇帝)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성교(聲敎)를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동교(東郊)의 땅은 진실로 복리(腹裏)에 비할 것이 아닌 때문입니다. 빌건대 경도(京都)인 한성부(漢城府)를 상경(上京)으로 삼고, 개성부(開城府)를 중경(中京)으로 삼고, 경주(慶州)를 동경(東京)으로 삼고, 전주(全州)를 남경(南京)으로 삼고, 평양(平壤)을 서경(西京)으로 삼고, 함흥(咸興)을 북경(北京)으로 삼아, 각각 토관(土官)을 설치하고 군병(軍兵)을 가정(加定)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거의 형세의 승(勝)함을 얻어 위급(危急)할 때에도 또한 족히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악진해독(嶽鎭海瀆)입니다. 대개 일대(一代)의 흥(興)함에는 반드시 일대(一代)의 제도가 있었으며, 본조(本朝)의 악진해독(嶽鎭海瀆), 명산 대천(名山大川)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흥강(龍興江)은 우리 태조(太祖)께서 흥운(興運)하신 땅이고, 묘향산(妙香山)에 이르러서는 단군(檀君)이 일어난 곳이며, 구월산(九月山)에는 단군사(檀君祠)가 있고, 태백산(太白山)은 신사(神祠)가 있는 곳이며, 금강산(金剛山)은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고, 장백산(長白山)은 선춘령(先春嶺)의 남쪽 갑산(甲山)의 북쪽에 있어 실로 나라의 북악(北岳)이 됩니다. 임진(臨津)은 나라의 서쪽 관문이고, 용진(龍津)은 나라의 동쪽 관문이며, 낙동강(洛東江)은 경상도의 대천(大川)이고, 섬진(蟾津)은 전라도의 대천입니다. 박천강(博川江)은 곧 옛 대령강(大寧江)이며, 보리진(菩提津)·오대산(五臺山)에 이르러서는 모두 사전(祀典)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 동해·남해·서해의 신사(神祠)는 모두 개성(開城)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方位)가 어긋납니다.

빌건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고정(考定)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삼각산(三角山)을 중악(中岳)으로 삼고, 금강산을 동악(東岳)으로 삼고, 구월산(九月山)을 서악(西岳)으로 삼고, 지리산(智異山)을 남악(南岳)으로 삼고, 장백산(長白山)을 북악(北岳)으로 삼고, 백악산(白岳山)을 중진(中鎭)으로 삼고, 태백산(太白山)을 동진(東鎭)으로 삼고, 송악산(松嶽山)을 서진(西鎭)으로 삼고, 금성산(錦城山)을 남진(南鎭)으로 삼고, 묘향산(妙香山)을 북진(北鎭)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동해신(東海神)을 강릉(江陵)에, 서해(西海)는 인천(仁川)에, 남해(南海)는 순천(順天)에, 북해(北海)는 갑산(甲山)에 이제(移祭)하고, 용진(龍津)을 동독(東瀆)으로 삼고, 대동강(大同江)을 서독(西瀆)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강(漢江)을 남독(南瀆)으로 삼고 두만강(豆滿江)을 북독(北瀆)으로 삼고, 또 목멱산(木覓山)·감악산(紺岳山)·오관산(五冠山)·계룡산(鷄龍山)·치악산(雉岳山)·오대산(五臺山)·의관령(義館嶺)·죽령산(竹嶺山)을 명산(名山)으로 삼고, 웅진(熊津)·임진(臨津)·보리진(菩提津)·용흥강(龍興江)·청천강(淸川江)·박천강(博川江)·낙동강(洛東江)·섬진(蟾津)으로 대천(大川)을 삼아 예(例)에 따라 치제(致祭)하여 【양진(楊津) 두 곳, 덕진(德津) 두 곳, 가야진(伽耶津)·주흘산(主屹山)·우불산(亏佛山)·우이산(牛耳山)·비백산(鼻白山)·장산곶이[長山串]·아사진(阿斯津)·송곶이[松串]·비류산(沸流山)·구진 익수(九津溺水)는 개혁함이 옳습니다.】 일대의 사전(祀典)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사전(祀典)에 실린 산천은 고금으로 모두 34인데, 옛 것을 따른 것이 17, 이제(移祭)한 것이 4, 새로 오른 것이 13, 영구히 고칠 만한 것도 또한 13입니다.

1. 번부악(蕃部樂)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중국의 악(樂)은 아악(雅樂)·속악(俗樂)·여악(女樂)·이부(夷部)등의 악이 있는데, 본조(本曹)에서 사용하는 것은 헌가(軒架)·고취(鼓吹)·동남(童男)·기녀(妓女)·가면 잡희(假面雜戲) 등의 제도(制度)가 있으니, 대저 악(樂)이란 형상[象]을 이루는 것입니

다. 태조께서 천운을 타고 흥기하심으로부터 태종·세종께서 서로 이으시니 동린(東隣)의 헌침(獻琛)과 북국(北國)의 관색(款塞)으로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들어 아악(雅樂)·속악(俗樂)이 모두 바르게 되었으나 홀로 번악(蕃樂)은 아직 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상께서 용비(龍飛)하여 대위(大位)에 새로 등극하시어 일본(日本)·여진(女眞)의 사자가 와서 즉위를 하례하는 자가 항상 수백 인이 궐정(闕庭)에서 절하고 뵈오니, 해동(海東)의 문물(文物)이 이때보다 성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건대 일본의 가무(歌舞)로써 동부악(東部樂)을 삼고, 여진의 가무로써 북부악(北部樂)을 삼아서 일본악(日本樂)은 삼포(三浦)의 왜인에게 익히게 하고, 여진악(女眞樂)은 5진(五鎭)의 야인에게 익히게 하되, 그 의관 제도(衣冠制度)가 괴이(怪異)하고 기초(譏誚)의 형상이라 하지 말고, 동사(東使)에게 잔치하면 겸하여 북악을 쓰되 동악은 쓰지 않고, 북사(北使)에게 잔치하면 겸하여 동악을 쓰되 북악은 쓰지 않으며, 중국 사신[中國使]에게 잔치하면 아울러 동악·북악을 쓰고 나아가 조정에서도 이를 쓰고 종묘(宗廟)에도 주악하게 하여, 태평한 다스림을 분식(賁飾)하고 우리 조종(祖宗)의 업(業)을 빛나게 하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1. 관례(冠禮)를 의행(議行)함입니다. 대개 예전에 남자는 20세이면 관(冠)을 한 것은 성인(成人)의 도(道)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송(宋)나라 말년에 진사(進士) 윤곡(尹穀)은 성중(城中)에 갇혀 있으면서 관례(冠禮)를 행하여 향인(鄕人)이 이를 기롱하자 대답하기를, '아이들[兒曹]로 하여금 관대(冠帶)하게 함은 선인(先人)을 지하에서 뵙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으니, 그 관례(冠禮)를 중하게 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동방(東方)은 고려[前朝] 명종(明宗) 때에 원자(元子)가 관례를 행하였고 그 뒤로는 듣지 못하였으니, 빌건대 예관(禮官)에 명하여 고례(古禮)를 전채(傳採)하고 겸하여 시왕(時王)의 제도를 상고하여 위로는 종실(宗室)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에 이르기까지 나이 13세이면 관례(冠禮)를 행하게 하여 입자(笠子)·두건(頭巾)·사모(紗帽)로써 삼가(三加)를 하고, 혹은 사모(紗帽)·복두(幞頭)·양관(梁冠)을 사용하며, 그 미관자(未冠者)는 입학(入學)을 불허하게 하고, 혼가(婚嫁)·종사(從仕)에 능히 선왕(先王)의 제도를 회복하여 크게 외국의 누(陋)를 변하게 하소서.

1. 복색(服色)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복색의 제정은 상하(上下)를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풍속을 한결같이 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나라 사람들은 흰 것[白]을 숭상하고, 명(明)나라 사람은 검은 것[黑]을 숭상하며, 일본에 이르러서는 푸른 것[靑]을 숭상하여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방은 조관(朝冠)과 공복(公服)을 실상은 중국(中國)을 의방하였으되, 상시(常時)에는 백의(白衣)를 입기를 좋아하니 마음대로 잡색(雜色)을 쓰는 것은 심히 비리(鄙俚)합니다.

빌건대 공복(公服)의 제도에 따라 당상관(堂上官) 이상을 한 색으로 하고, 6품 이상을 한 색으로 하고, 유품원(流品員)·성중관(成衆官)·의관 자제(衣冠子弟)를 한 색으로 하고, 제위 군사(諸衛軍士)를 한 색으로 하고, 경중과 외방[京外]의 양인(良人)·이서(吏胥)를 한 색으로 하고, 공사 천구(公私賤口)·공장(工匠)을 한 색으로 하여, 이로써 품질(品秩)을 따라 점차로 입게 하든가, 혹은 한 색을 순용(純用)하게 해서 국속(國俗)을 정제(整齊)하시고 여복(女服)에 이르러서는 또한 모두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1. 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衣裳)의 제도는 남녀(男女)와 귀천(貴賤)을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하민(下民)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그러나 장의를 의상(衣裳)의 사이에 입어 3층(層)을 이루게 하고 점점 서로 본따서 온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史文)에 이른바 '복요(服妖)'라는 것입니다. 전일에 중국[中原]의 여자가 많이 좌임(左衽)하는 옷을 입었는데, 보고 듣는 자가 모두 길조(吉兆)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제 여자가 남복(男服)을 입는 것도 또한 어찌 경사로운 징조라 하겠습니까? 더구나 후세(後世)에 있어서도 여자는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입는 것이 가장 고법(古法)에 가깝게 되는데, 만약 이와 같이 마음대로 한다면 남녀의 의복은 스스로 제도를 같이하여 이르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니, 어찌 지금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유사(攸司)에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입는 자는 그 옷을 거두어 동서(東西) 활인원(活人院)에 나누어 두었다가 가난하고 병든 자의 옷으로 쓰소서.

1. 전대(前代)의 임금과 재상(宰相)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신(臣)이 그윽이 명나라 제사(諸司)의 직장(職掌)을 보니, 관원을 보내어 역대(歷代)의 군상(君相)을 제사하는데 대뢰(大牢)로써 쓰니 심히 성거(盛擧)입니다. 본조는 역대의 군왕이 도읍하였던 곳에서 산제(散祭)하는 데도 혹은 당연히 제사지내야 할텐데 제사하지 않는 것이 있고 혹은 배향(配享)한 대신(大臣)이 없어 흠전(欠典)된 것 같으니, 바라건대 매년 봄·가을로 동교(東郊)에서 전 조선왕(前朝鮮王) 단군(檀君), 후 조선왕(後朝鮮王) 기자(箕子), 신라(新羅)의 시조(始祖)·태종왕(太宗王)·문무왕(文武王), 【두 왕은 고구려·백제를 통합하였음.】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영양왕(嬰陽王), 【수병(隋兵)을 대패(大敗)시킴.】 백제(百濟)의 시조, 고려(高麗)의 태조(太祖)·성종(成宗)·현종(顯宗)·충렬왕(忠烈王) 이상 12위(位)를 합제(合祭)하고,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인문(金仁問)·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 백제의 흑치상지(黑齒常之)와 근일에 정한 전조(前朝)의 배향 16신(配享十六臣)과 한희유(韓希愈)·나유(羅裕) 【합단(哈丹)을 막는 데 공이 있었음.】·최영(崔瑩)·정지(鄭地) 【왜구(倭寇)를 막는 데 공이 있었음.】 등을 배향(配享)하게 하소서.

1. 전대(前代)의 능묘(陵墓)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신(臣)이 《속육전(續六典)》을 보니, 고려(高

麗)의 태조·현종(顯宗)·문종(文宗)·원종(元宗) 4능(陵)은 각각 수호(守護)하는 자 2호(戶)를 정하여 초채(樵採)를 금하게 하고, 태조의 능(陵)에는 1호를 더하게 하였으니 심히 성덕(盛德)입니다. 그러나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역대 군주(歷代君主)가 비록 모두 공덕(功德)이 백성에게 있지 않았더라도 또한 모두 일국(一國)의 인민이 함께 임금으로 모셨으니, 그 있는 데를 살피지 못한 자는 그만이지만, 그 능묘가 여고(如古)하되 호리(狐狸)로 하여금 능히 곁에 구멍을 뚫게 하고 초채(樵採)하는 자로 위를 다니게 하면 어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빌건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전 조선(前朝鮮)·후 조선(後朝鮮)·삼국·전조(前朝)가 도읍했던 개성(開城)·강화(江華)·경주(慶州)·평양(平壤)·공주(公州)·부여(扶餘)와 김해(金海)·익산(益山) 등지의 능묘가 있는 곳을 자세하게 심방(尋訪)하게 하여 그 공덕이 있는 자는 수릉(守陵)에 3호(戶)를 두고, 별다른 공덕이 없는 자는 2호를 두되, 정비(正妃)의 능묘에도 역시 1호를 두어, 부세(賦稅)를 견감(蠲減)하고 요역(徭役)을 면제하며 그 초소(樵蘇)함을 금하게 하고, 이어서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춘추(春秋)로 살펴보고 치제(致祭)하게 하소서.

1.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입니다. 대개 동방(東方)은 기자(箕子)가 수봉(受封)한 이후로부터 홍범(洪範)의 유교(遺敎)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여, 당(唐)나라에서는 '군자(君子)의 나라'라 하고, 송(宋)나라에서는 '예의(禮義)의 나라'라 칭하였으니, 문헌(文獻)의 아름다움은 중국[中華]을 모의(侔擬)하였으되, 문묘(文廟)에 배식(配食)한 자는 오직 신라의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고려의 안향(安珦) 3인뿐입니다.

신이 들으니, 학사(學士) 쌍기(雙冀)는 전조(前朝)에 있어서 처음으로 과거(科擧)를 설치하여 문풍(文風)을 진작(振作)하였고, 문헌공(文獻公) 최충(崔冲)은 또 구재(九齋)를 설치하여 재생(諸生)을 교육하였으며,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본조의 문충공 권근(權近)에 이르러서는 그 문장(文章)과 도덕(道德)이 사람마다 모두 만세(萬世)의 수범(垂範)이 될 만하다고 하였으니, 빌건대 모두 선성(先聖)에 배향(配享)하여 후인(後人)을 권장하게 하소서. 만약 '동방의 현자(賢者)가 어찌 옛사람과 같을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 공자·맹자의 뒤에도 또한 정주(程朱)가 있었고, 또 어진 자 되기가 이같이 어려우면 후인이 어찌 성현(聖賢)을 배우겠습니까? 중국의 배향자(配享者)는 과연 모두 공자·맹자, 정주(程朱)와 같으며 동방의 선비는 모두 중국 사람만 같지 못하겠습니까? 대저 임금[人主]은 모름지기 일대 정사를 시행하여 권징(權懲)하는 뜻을 보인 뒤라야 사람이 보고 들으며 동(動)하고, 풍속(風俗)을 옮겨 고칠 것입니다.

1. 무성(武成)을 입묘(立廟)하는 것입니다. 대개 문무(文武)의 도(道)는 천경 지위(天經地緯)와 같으니 편벽되게 폐할 수 없습니다. 당(唐)나라 숙종(肅宗)은 태공(太公)을 높여서 무성왕(武成王)을 삼아 입묘(立廟)하여 향사(享祀)하기를 문선왕(文宣王)과 더불어 비등하게 하여 뒤에는 역대(歷代)

양장(良將) 64인을 배향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은 선성(先聖)의 제사를 위로는 국학(國學)으로부터 아래로는 주·군(州郡)에 이르렀으되, 무성왕(武成王)은 사우(祠宇)가 없고 단지 둑신(纛神) 4위(位)만을 제사지내니 어찌 궐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훈련관(訓鍊觀)은 곧 송나라의 무학(武學)이니, 빌건대 둑소(纛所)를 훈련관에 병합하고 무성묘(武成廟)를 세워서 제례(祭禮)와 배식(配食)은 대략 문묘(文廟)의 제도에 따르고, 또 신라의 김유신(金庾信),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 고려의 유금필(庾黔弼)·강감찬(姜邯贊)·양규(楊規)·윤관(尹瓘)·조충(趙冲)·김취려(金就礪)·김경손(金慶孫)·박서(朴犀)·김방경(金方慶)·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方實)·최영(崔瑩)·정지(鄭地), 본조(本朝)의 하경복(河敬復)·최윤덕(崔閏德)을 배향하게 하소서.

1. 공신(功臣)을 배향(配享)하는 것입니다. 대개 본조의 전후 5공신(五功臣)은 모두 충의위(忠義衛)에 속(屬)하고, 삼조(三朝)에 원종(原從)한 사람도 또한 모두 유죄(宥罪)하여 뒤에 등록하였으니, 원(元)나라의 사겁설(四怯薛)과 송(宋)의 녹수룡(錄隨龍)과 더불어 은총(恩寵)을 더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전조(前朝)의 배향 대신(配享大臣)은 공신이라 칭하여 매양 큰 은례(恩禮)로써 반드시 자손을 녹용(錄用)하였습니다. 본조(本朝)의 오묘(五廟)에도 모두 배위(配位)를 두었으니 모두 다 공은 왕실(王室)에 있고 은택(恩澤)은 생민(生民)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빌건대 5공신의 예(例)에 따르든가, 혹은 원종(原從) 제인(諸人)의 사호(賜號)에 따라 배향 공신(配享功臣)은 모두 유후(宥後)하고 세록(世祿)하게 하소서. 또 전조와 본조의 장상(將相)으로서 공덕이 백성에게 있는 자의 자손도 또한 수방(搜訪)하여, 특별히 은명(恩命)을 더하면, 전인(前人)은 명명(冥冥)한 속에서 감격하고 후인(後人)도 또한 능히 만세(萬世)에 권장할 것입니다.

1. 문익점(文益漸)·최무선(崔茂宣)의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들으니, 성인(聖人)이 제례(祭禮)를 제정할 제, 백성에게 본받게 <착함>을 베풀면 제사하였고, 능히 대환(大患)을 막으면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에는 예전에 목면(木綿)의 종자(種子)가 없었는데, 전조의 문익점(文益漸)이 봉사(奉使)로 원(元)나라에 체류하여 비로소 얻어다 심어서 드디어 일국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귀천(貴賤)·남녀(男女) 할 것 없이 모두 면포(綿布)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신라(新羅) 때부터 단지 포석(砲石)의 제조만 있고 역대(歷代)로 화약(火藥)의 법이 없었는데, 전조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처음으로 화포(火砲)의 법을 원(元)나라에서 배워 가지고 돌아와 그 기술을 전하니, 지금은 군진(軍鎭)에서 사용하여 이로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최무선(崔茂宣)의 공은 만세(萬世)토록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였으며, 문익점(文益漸)의 공은 만세토록 백성의 이(利)를 일으켰으니, 그 혜택을 생민(生民)에게 입힘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빌건대 2인의 관향(貫鄕)인 고을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봄·가을에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고, 그 자손은 공신으로 칭하여 유죄(宥

罪)하고 녹용(錄用)하게 하소서.

1. 시신(侍臣)의 음자(蔭子)입니다. 대개 본조에서 승음(承蔭)하는 법(法)은 곧 당(唐)나라의 자음(資陰)과 송나라의 임자(任子)의 뜻이니, 그 사대부(士大夫)를 대우하는 은덕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그 법은 3품 이상의 관원 외에는 단지 일찍이 대간(臺諫)과 정조(政曹)를 경유한 자의 아들만을 승음(承蔭)하여 신참(新參)한 지 수일이면 곧 감찰(監察)에 제배(除拜)되어 음덕이 자손에게 미치나, 어떤 이는 수십 년을 시종(侍從)하였어도 음덕이 후손에게 미치지 못한 자가 있으니 참으로 가석(可惜)합니다. 더구나 《송사(宋史)》에서는 재집(宰執)·시종(侍從)·대간(臺諫)을 아울러 말하였으니, 빌건대 4품 이하, 6품 이상의 관각(館閣) 양제(兩制)에 시종한 제신(諸臣)의 아들은 특별히 승음(承蔭)을 허락하소서.

1. 문무(文武)의 과법(科法)입니다. 대개 지금 문과(文科)의 초장(初場)에서 강경(講經)할 때, 《사서(四書)》·《오경(五經)》 외에 《한문(韓文)》·《유문(柳文)》 등의 글 같은 것을 임의(任意)로 시강(試講)하니 참으로 정규(定規)가 없고, 중장(中場)은 아울러 고부(古賦)를 시험하니 본래 급무(急務)가 아닙니다. 또 진사(進士)를 이로써 뽑으며 종장(終場)은 제사(諸史)와 시무(時務)를 비록 참작하여 출제(出題)하나 역대의 일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권도(權道)의 말로 대답하기를, '한(漢)나라·당(唐)나라의 다스림을 어찌 족히 오늘날에 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취하는 자도 또한 뜻[意]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학(史學)이 불명(不明)하여 심히 불가합니다.

또 무과(武科) 시험에 《사서(四書)》·《오경(五經)》을 아울러 강하게 함도 미편(未便)하니, 빌건대 《무경칠서(武經七書)》 외에는 《장감(將鑑)》·《병감(兵鑑)》·《병요(兵要)》·《진설(陣說)》만을 강(講)하고, 문과(文科)는 《사서》·《오경》 외에 《좌전(左傳)》·《사기(史記)》·《통감(通鑑)》·《송원절요(宋元節要)》·《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高麗史)》 만을 강하며, 중장을 표(表)·전(箋)을 시험하여 신자(臣子)로 임금 섬기는 글을 익히게 하고, 교조(敎詔)를 시험하여 군상(君上)이 영하(令下)하는 글을 익히게 하며, 종장(終場)에는 역대와 시무를 번갈아 출제하되, 만일 금년에 역대(歷代)를 시험하였으면 명년에는 시무(時務)를 시험하여, 이것으로 제도를 정하여 과거(科擧)의 법을 새롭게 하소서.

1. 아들을 보내어 입학(入學)하는 것입니다. 대개 자제(子弟)의 입학은 그 이로움이 여섯 가지 있으니, 어진 사우(師友)를 얻어 의난(疑難)을 질문함이 하나요, 어진 사대부에게 친자(親炙)하여 그 기질(氣質)을 훈도(薰陶)함이 둘이며, 인심(人心)·풍속(風俗)과 피차의 형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음이 셋이오, 친히 문헌(文獻)의 아름다움과 예악(禮樂)·명물(名物)을 보고 점점 습속(習俗)의 누(陋)를 고침이 넷이요, 혹은 분전(墳典)을 구구(購求)하여 궐유(闕遺)를 보충함이 다섯이요, 인하여 중국의 어음(語音)을 배움으로써 상역(象譯)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여섯입니다.

이제 비록 주청(奏請)하더라도 윤허(允許)를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바라건대 입조(入朝)하는 행리(行吏) 때마다 집현전(集賢殿)·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 가운데서 학문이 정숙(精熟)하고 문장이 민섬(敏贍)하며 기국(器局)이 굉원(宏遠)한 자 각 1인을 선택하여 취차(就差)하여 들여 보내 유학(遊學)하게 한다면 거의 소견(所見)이 넓어지고 소득도 또한 많아져서 모두 국가의 유용(有用)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원전】 7 집 121 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정(軍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지학(地學) / *예술-음악(音樂)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衣生活) /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 / *인사(人事) / *농업-면작(綿作) / *교육(敎育) / *군사-군기(軍器)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03 02/03/28(정유)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② 》

1. 기인(其人)의 법(法)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대개 고려[前朝]의 태조(太祖)가 삼한(三韓)을 통일(統一)하고 토호(土豪)를 호장(戶長)으로 삼아 향직(鄕職)을 설치하고는 인하여 모든 군리(郡吏)의 자손으로 하여금 '기인(其人)'이란 칭호로 분번 시위(分番侍衛)하게 하니, 곧 옛날에 아들을 볼모[質子]로 하는 뜻입니다. 뒤에 이르러서는 보기를 천례(賤隷)같이 하여 고역(苦役)을 하게 하였으니 심히 무리(無理)한 데에 미쳤습니다. 또 기인(其人)이 번상(番上)할 때 혹은 백성에게 포화(布貨)를 거두고 혹은 전산(田産)을 팔아서 바리에 싣고 오니, 이에 부상(富商)·대고(大賈)는 그 값을 받고 그 구실[役]을 대신하되 그 값은 6삭(朔)에 45필(匹)이니, 이것은 백성(百姓)의 고혈(膏血)을 긁어서 경사(京師)의 유수(遊手)하는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대저 향리(鄕吏)로 간활(姦猾)한 자가 비록 많으나, 그러나 일읍(一邑)의 서무(庶務)와 함께 상공(上供)하는 모든 일과 조운(漕運)·영송(迎送)하는 긴고(緊苦)의 업무를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차마 고역(苦役)까지 또 시키겠습니까? 더구나 3정 1자(三丁一子)를 가려서 이서(吏胥)를 삼았고, 정과(正科)에 등제(登第)한 데 이르러서는 어엿한 벼슬에 올라서 나라의 장상(將相)이 된 자가 진실로 일족(一族)에 그치지 않사오니, 또한 선비는 농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찌 반드시 천례(賤隷)로 더불어 함께 고역(苦役)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구실[役]이 중함으로 기인이 아니면 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의 뜻은 기인의 여력(膂力)이 아니더라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백성의 고혈을 긁어서 부인(富人)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 부인(富人)도 또한 그 값으로써 신목(薪木)을 바꾸어 이바지하고 그 나머지로 이(利)를 삼으니, 그 백성으로 긁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사(諸司)의 외방 노자(外方奴子)는 3정(丁)을 1호(戶)로 삼아, 1호(戶)는 5년에 한 번 번상(番上)하되, 비자(婢子)는 1년에 1필(匹)의 포목[布]만을 수납하였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기인(其人)의 법을 파하고, 선상 노자(選上奴子)를 가정(加定)하게 하여, 3노자(三奴子)로써 기인의 구실[役]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같이 하면 관가의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말이 불가하다면 우선 수년 동안 시험하소서.

1. 의논하여 분대(分臺)를 파(罷)하는 것입니다. 대개 대신(臺臣)을 분견(分遣)하는 것은 본래 수령(守令)의 탐포(貪暴)함을 규찰(糾察)하고 민생의 휴척(休戚)을 살피는 것이니, 그 명분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으며, 그 위령(威令)이 어찌 한때에 미연(靡然)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국의 8도(道)에는 3백 34주(州)를 설치하여 도(道)에는 각각 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를 두고, 주(州)에는 각각 수령(守令)·교관(敎官)이 있으며, 혹은 소윤(少尹)·판관(判官)이 있고,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가 있으며, 진(鎭)에는 병마사(兵馬使)·만호(萬戶)·천호(千戶)가 있고, 또 수륙(水陸)에 찰방(察訪)·검률(檢律)·교유관(敎諭官)이 있어 그 수가 적지 않은데, 또 대원(臺員)을 보내니 어찌 백성은 적은데 관(官)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관찰사는 곧 이른바, '외방의 헌사(憲司)'로서 수령을 출척(黜陟)하는 자인데, 어찌 반드시 다시 대관(臺官)을 보내어 관찰사의 권한을 가볍게 하겠습니까? 관찰사의 권한만 가볍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수령으로 더불어 동심(同心)하여 내용을 덮어두고 분대(分臺)의 거핵(擧劾)을 회피하여, 분대로 하여금 단지 대강(大綱)만을 거핵하게 할 뿐이니, 더욱 보내지 않음만 같지 못합니다. 만약에 적당하지 못한 일이나 숨겨 있는 일을 적발하게 한다면, 그 흐르는 폐단은 취모멱자(吹毛覓疵)하여 관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여 그 수족(手足)을 편히 둘 수 없게 할 것이며, 더욱 소민(小民)에게 능상(陵上)하고 고알(告訐)하는 풍습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근일 입법(立法)한 초기인데도 오히려 과중(過中)한 폐단이 있거늘, 어찌 다른 때에 영영 한 가지 폐단도 없음을 알겠습니까?

대저 국가의 정령(政令)은 진실로 부드럽게 나약할 수도 없고 또한 급박하게 몰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와 당(唐)나라 선종(宣宗)은 모두 강명(剛明) 총찰(聰察)로써 정치를 하였으되, 한(漢)·당(唐)의 왕업은 드디어 쇠잔하였으니, 그렇다면 강명하고 총찰함이 마치 원기(元氣)를 작상(爵喪)하는 부근(斧斤)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관유(寬裕)로써 정사를 하시고 가급(苛急)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시며, 근일의 분대(分臺)의 법을 파하시고, 전일의 행대(行臺)의 법[規]을 따르시어, 그 수령의 불법은 오로지 관찰사에 위임하여 고핵(考劾)하고 전최(殿最)하게 하면, 자연히 관리는 탐잔(貪殘)하는 습속을 감히 자행하

지 못하며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입니다.

1. 주군(州郡)의 노비(奴婢)입니다. 대개 외방(外方)의 관노(官奴)는 그 수효가 고르지 않습니다. 가령 경주 향교(慶州鄕校) 같은 데는 수백 호(數百戶)에 이르고, 평양(平壤)의 관노(官奴)도 또한 수천 호인데, 잔군(殘郡)은 수효가 10호도 차지 못합니다. 공부(貢賦)와 빈려(賓旅)의 번거로움은 타군(他郡)과 더불어 심히 비슷하지 않아서, 혹은 인리(人吏)의 아내가 도로(道路)에 부대(負戴)하는 자가 있으니, 진실로 고르지 못합니다. 빌건대 제사(諸司)의 노비로 잔군(殘郡)과 또 그 인근(隣近)에 있는 자를 잔군(殘郡)에 헤아려 주고, 이어서 타군(他郡)의 수효가 넘치는 관노로서 그 사(司)에 충급(充給)하면, 거의 노일(勞逸)이 고르고 주군(州郡)도 충실할 것입니다.

1. 백정(白丁)을 구처(區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척(禾尺)'이라 하고 혹은 '재인(才人)', 혹은 '달달(달달)'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제민(齊民)하는 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백정(白丁)이라 칭하여 옛 이름[舊號]을 변경하고 군오(軍伍)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仕路)를 열어 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 된 자는 5백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므로 유속(遺俗)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취(屯聚)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혼가(婚嫁)하는데, 혹은 살우(殺牛)하고 혹은 동량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또 전조(前朝) 때, 거란(契丹)이 내침(來侵)하니, 가장 앞서 향도(嚮導)하고 또 가왜(假倭) 노릇을 해 가면서, 처음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더니 경상도에까지 만연(蔓延)하여 장수를 보내어 토평(討平)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대소(大小)의 도적으로 체포된 자의 태반이 모두 이 무리입니다. 친척(親戚)과 인당(姻黨)이 팔도(八道)에 연면(連綿)하여, 적으면 기근(饑饉)되고, 크면 난리를 일으키니, 모두 염려가 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는 따로 1호(戶)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모두 갑사(甲士)·시위(侍衛), 진군(鎭軍)의 봉족(奉足)을 삼아 일일이 끼어 살게 하고, 이어서 그 다른 군으로 왕래함을 금하며, 그 홀로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혹 자기들끼리 서로 혼취(婚娶)하거나 혹은 도살(屠殺)을 행하며, 혹 구적(寇賊)을 행하고 혹은 악기(樂器)를 타며 구걸하는 자를 경외(京外)에서 엄히 금(禁)하여, 그것을 범한 자는 아울러 호수(戶首)를 죄 주고 또 3대(三代)를 범금(犯禁)하지 않는 자는 다시 백정이라 칭하지 말고, 한가지로 편호(編戶)하게 하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이 농상(農桑)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도적이 점점 그칠 것입니다.

1. 제주(諸州)의 판관(判官)입니다. 대개 관(官)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州)는 부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사객(使客)이 때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는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聽理)하겠습니까? 의창(義倉)이 염산(斂散)을 호활(豪猾)한 이에게 위임하여 백성의 해(害)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빌건대 경기(京

畿)는 수원(水原)·양주(楊州)에, 경상도는 선산(善山)·성주(星州)·김해(金海)·밀양(密陽)에, 전라도는 광주(光州)·남원(南原)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判官)을 두게 하소서.

1. 제진(諸鎭)에 위(尉)를 두는 것입니다. 대개 진(秦)나라 법(法)에 매양 군수(郡守)는 치민(治民)을 하고 위(尉)는 치병(治兵)을 하였으며, 전조(前朝)에서는 서북면(西北面)에 분도 장군(分道將軍)을 설치하여 병사(兵事)를 주관하고, 또 진장(鎭將)을 두고 또 현위(縣尉)를 두었습니다. 이제 8도(八道) 61처(處)에 모주(某州)·모도(某道)라 일컫고, 또 모진(某鎭)이라 일컬으며, 혹은 좌우익(左右翼)을 영도(領導)하고 혹은 스스로 한 진(鎭)이 되어, 모두 군병(軍兵)을 두고 단련(團鍊)하게 하여 불우(不虞)를 경계하니, 진실로 양법(良法)입니다. 그러나 수령은 부서(簿書)를 회계(會計)하고 사객(使客)을 지대(支待)하며, 전곡(錢穀)을 출납(出納)하고 사송(詞訟)을 청리(聽理)하며, 농사(農事)를 권장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모든 민사(民事)를 오히려 판리(辦理)할 수 없는데, 또한 어찌 전심(專心)으로 치병(治兵)하여 위급(危急)한 때에 대비하겠습니까? 빌건대 각진(各鎭)의 예(例)에 따라 위(尉)를 두되, 만약 모두 둘 수가 없다면, 그 판관(判官)이 있는 곳은 또 무장(武將)으로 교차(交差)하고, 판관이 없는 곳은 특별히 위(尉)를 설치하게 하소서.

1. 경도(京都)의 사보(四輔)입니다. 대개 경도는 곧 이른바 '북한 산성(北漢山城)'입니다. 삼국 시대(三國時代)에 있어서는 3국이 교전(交戰)하던 땅이며, 고려[前朝]가 3국을 통합하고 본조(本朝)가 도읍을 정한 뒤로는 이곳을 가지고 사방(四方)을 공제(控制)하니, 예전에는 사방으로부터 중앙(中央)을 서로 다투었으나, 이제는 중앙에 있으면서 그 형세를 알 만합니다.

삼산(三山)은 북을 진압하고, 한강[大江]은 남을 에워싸고 서(西)에는 임진(臨津)을 두고 동(東)에는 용진(龍津)을 두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도리(道里)가 고르며, 조운(漕運)이 모이고 축목(畜牧)이 편리하여 경도의 사면 수십 리의 땅을 두고 보면, 그것이 천작(天作)의 땅임을 알 만합니다. 또 석성(石城)이 호거(虎踞)하고 조시(朝市)가 기포(碁布)하며, 궁궐(宮闕)은 엄숙(嚴肅)하고, 여염(閭閻)은 은부(殷富)하니, 진실로 만세(萬世)의 왕업을 이룩할 것입니다. 단지 이제 중외(中外)에 익진(翼鎭)을 열치(列置)하였으되, 경도(京都)의 기내(畿內)에는 단지 3진(鎭)만을 설치하였으니 참으로 미편(未便)합니다.

또 부평부(富平府)는 비록 옛 안남(安南) 땅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있어서는 실제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원평부(原平府)는 임진(臨津)의 험한 곳에 웅거하고, 또 교하(交河)를 제휴하고 풍덕(豊德)을 끌음으로써 왜구(倭寇)를 해구(海口)에서 액수(扼守)할 만합니다. 수원부(水原府)는 본시 관찰사(觀察使)의 관사를 둔 땅이며, 전조(前朝)에 홍적(紅賊)이 남하(南下)할 때에는 여기를 경유하여 사통 오달(四通五達)할 땅이니, 빌건대 전조의 좌보(左輔)·우보(右輔)의 예(例)에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後輔)로 삼고, 수원(水原)을 전보(前輔)로 삼고, 광주(廣州)를 좌보(左輔)로 삼고, 원평(原平)

을 우보(右輔)로 삼으면, 전후 좌우에 모두 거진(巨鎭)이 있으되 동남의 2진(二鎭)은 강외(江外)에 있고, 서북의 2진은 강내(江內)에 있어, 남북의 형세가 고르고 경사(京師)가 더욱 장대(壯大)할 것입니다.

또 경성(京城)의 10문(十門)은 동대문(東大門) 외에는 모두 옹성(擁城)이 없으니, 모름지기 풍년을 기다렸다가 아울러 축조(築造)하게 하소서. 혹자는 이르기를, '저 도적으로 하여금 내지(內地)에 이르게 하면, 나라는 나라가 아닐텐데 어찌 축성에 힘쓰겠는가? 더구나 승평 백년(昇平百年)에 어찌 도적이 있겠는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성곽(城郭)의 나라입니다. 수초(水草)를 따라 행국(行國)할 수는 없으니, 그 성곽을 갖추는 일은 완만(緩慢)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려의 현종(顯宗)은 거란(契丹)에게, 고종(高宗)·원종(元宗)은 몽고(蒙古)에게, 공민왕(恭愍王)은 홍적(紅賊)에게 모두 성(城)의 나쁨으로 인하여 무궁한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과 고종·원종의 시대는 그만두더라도 현종(顯宗) 때에는 어찌 당당하지 못해서 이런 환난(患難)이 있었으며, 더구나 전일에 중국(中國)에서도 또한 변란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이르기를, 만일 '주·진(州鎭)에 성(城)이 있어도 족히 적(賊)을 무휼(撫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몽인(蒙人)에게 중국이 <침입당한 것이> 어찌 장성(長成)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만일 말하기를, '강역(疆域)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세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달(達達)에게 연경(燕京)이 어찌 수천 리만 되겠습니까? 다만 적인(敵人)의 침공이 없을 뿐이니, 다만 우리의 방비가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어찌 수천 리의 대국으로서 그 만의 하나라도 무사함을 요행으로 여기겠으며, 또 어찌 백년토록 무사할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깊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여 권권(拳拳)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1. 제도(諸道)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방금 진(鎭)을 설치하였으나, 또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여덟이고, 마땅히 감할 곳이 하나이며, 합병하여 1진(鎭)으로 할 곳이 둘이고, 스스로 1진이 될 곳이 하나입니다. 평안도 자성(慈城) 같은 곳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니, 마땅히 스스로 1진이 될 만한 곳입니다. 대저 제도(諸道)의 주군(州郡)에 모두 익·진(翼鎭)을 설치하였는데, 이미 요긴한 군(郡)이 아니면 각각 자체가 하나의 진으로 될 필요가 없으며, 황해도 장연(長淵)·풍천(豊川)·강령(康翎)과 옹진(甕津)은 마땅히 각각 합병하여 1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京畿) 부평부(富平府)는 반드시 진(鎭)을 설치할 곳이 아니며, 평안도 희천(熙川)에 이르러서는 적유령(狄踰嶺)이 웅거(雄據)하고, 박천(博川)은 대강(大江)이 있으며, 삼등(三登)은 평양(平壤)의 동북로(東北路)의 요해(要害)이며, 함길도(咸吉道) 회령(會寧), 동창(童倉)의 구거(舊居)와 황해도 서흥(瑞興)은 절령(岊嶺)에 웅거하고, 경기 수원(水原)은 남로(南路)의 요충(要衝)이며, 원평(原平)은 임진(臨津)에 의지하고, 경상도 울산(蔚山)은 왜선(倭船)이 이르러 정박하는 곳이며, 또 왜인(倭人)이 거류(居留)하고 있으니, 모두 마땅히 진(鎭)을

설치할 곳입니다.

소신(小臣)은 계유년 겨울부터 상지(上旨)를 외람되게 받고 경기 지도(京畿地圖)와 팔도 지도(八道地圖)를 고정(考定)하였으니, 이로써 모든 경내(境內)의 산천의 액색(阨塞)과 도로(道路)의 원근(遠近)과 일체 주·진(州鎭)의 일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감히 관견(管見)을 진달(陳達)하여 두세 번에 이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으로 수찰(垂察)하소서."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원전】 7 집 12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농업-권농(勸農) / *과학-지학(地學)

《 세조 003 02/04/15(갑인) / 경회루에서 진법과 사서오경을 강하게 하다. 이징석의 활솜씨를 칭찬하다. 이개 · 양성지에게 술을 올리게 하다 》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宗親)·재추(宰樞)·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재추(宰樞)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자 이징석(李澄石)·윤암(尹巖)·박강(朴薑)·유응부(兪應孚)·이수의(李守義)·홍윤성(洪允成)·박거겸(朴居謙)·민발(閔發) 등과 내금위 겸사복관(內禁衛兼司僕官) 등을 뽑아 과녁을 쏘아 승부(勝負)를 겨루게 하고, 또 습진 훈도(習陣訓導)를 불러 진법(陣法)을 강(講)하게 하며, 집현전(集賢殿) 관원은 《사서(四書)》·《오경(五經)》을 강(講)하게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이개(李塏),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수가 많으니 형세가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집현전(集賢殿)·겸사복관(兼司僕官)의 하위(下位)에 있는 자 1인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한다면 이것은 군신(群臣)이 모두 술을 올린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임금이 집현관(集賢官)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사람은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고 유자(儒者)는 일찍이 학문(學問)하여 의리(義理)를 알고 있으므로, 그 마음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특하다."

하고, 인하여 정창손(鄭昌孫)에게 이르기를,

"앵무(鸚鵡)는 말을 잘하되 나는 새[鳥]에 틀림없고, 성성(猩猩)이도 말을 잘하되 금수(禽獸)를 떠

날 수 없다. 범인(凡人)은 오히려 그 직(職)에 능히 종사하여 그 힘으로 먹는데, 종친(宗親) 같은 이는 부귀(富貴)한 데서 생장하여 이 이치를 알지 못한다. 경(卿)은 이미 종친 제조관(宗親提調官)이 되었으니, 마땅히 항상 이를 효유하라."

하니, 정창손이 즉시 두루 효유하러 종친 자리에 있다가 사관(史官)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상교(上敎)가 지극하니, 모름지기 상세히 써서 후세에 보이게 하시오."

하였다. 임금이 집현관(集賢官)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마땅히 실학(實學)에 힘써야 하며 실학이 근본이다. 국가는 사장(詞章)을 쓰기에 간절한 까닭으로 부득이 사장을 써서 사람을 취하나, 스스로 하는 도(道)에 있어서는 실학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너희들이 경서를 강론함에 창달(暢達)한 자가 있지 않으니, 또한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내 너희들로 하여금 바라는 바에 따라 《사서(四書)》·《오경(五經)》 중 각각 1서(書)를 읽게 하고 내가 때때로 친강(親講)하려고 한다."

하였다. 이징석(李澄石)이 아뢰기를,

"공조 판서 김문기(金文起)·좌참찬 강맹경(姜孟卿)은 비록 선비라 하더라도 사후(射侯)를 잘 합니다."

하고, 청하여 과녁을 쏘게 하였다. 강맹경(姜孟卿)이 연중(連中)하므로 궁시(弓矢)를 내려 준 뒤에, 김문기(金文起)도 연중하니 또 궁시를 내려 주었다. 김문기는 쏜 숫까치[籌]가 강맹경보다 많아서 김문기에도 환도(環刀)를 더 내려 주었다. 이징석은 나이가 70을 넘었는데도 과녁을 쏘는 것이 오히려 건장하니, 임금이 그 활을 취하여 당겨보고 이르기를,

"이 활은 강한데 장군은 늙었어도 더욱 건장하니, 사람을 만날 적마다 오히려 선우(單于)를 참(斬)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구나. 내가 이징석(李澄石)의 형제를 왕돈(王敦)·왕도(王導)를 삼겠노라." 【이징석(李澄石)의 아우 이징옥(李澄玉)은 반역(反逆)으로 복주(伏誅)되었다.】

하고, 명하여 어좌(御座)의 병풍을 거두게 하여, 우의정 이사철(李思哲)에게 내려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그전에 경(卿)과 더불어 중국 조정에 입조하던 그림[朝天圖]이다."

하였다.

【원전】 7 집 12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사상-불교(佛敎) / *역사(歷史)

《 세조 004 02/05/21(기축) / 경연에서 양성지가 밤에 공신들과 연회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시독관(侍讀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대신(大臣)들을 우대하여 여러 번 그 집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중에 민가 사이를 세자(世子)의 훈신(勳臣)과 함께 행차하시니, 신은 불가하게 여깁니다. 숙위(宿衛)하는 금병(禁兵)에게도 일시 술을 내리지 마시고, 변진(邊鎭)의 군사들에게도 명일(名日)에 연회하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시며, 의창(義倉)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한 곡식은 다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곡진하게 조치하게 하시며, 도성(都城)과 모든 진성(鎭城)에는 아울러 옹성(擁城)을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功臣)들과 밤에 연회하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좌승지 구치관(具致寬)이 아뢰기를,

"신도 한명회(韓明澮)와 함께 또한 아뢰려고 하였는데, 양성지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강(講)이 끝난 뒤에 부 검토관(副檢討官) 임원준(任元濬)이 집현전(集賢殿)으로 물러나와 그 말을 하니, 이개(李塏)가 그 말을 듣고 박기년(朴耆年)에게 눈짓을 하면서 말하기를,

"양공(梁公)은 경제(經濟)의 재사(才士)라고 하더니, 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구나."

하자, 박기년도 즉시 눈짓을 하면서 입술을 비쭉거렸다. 대개 그들의 간악한 음모를 알아맞힌 것을 미워해서였다.

【원전】 7 집 13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관방(關防)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정론(政論)

《 세조 004 02/05/26(갑오) / 시강관 양성지가 세종조에 상정한 의주를 책으로 만들 것 등을 청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시강관(侍講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여름철에 반빙(頒氷)할 때에 입직(入職)하는 군사에게도 또한 얼음을 내려 주고, 사부 학당(四部學堂)은 구례(舊例)에 의하여 여름철[夏天] 도회(都會)를 열고, 세종 조에 상정(詳定)한 의주(儀註)는 문신으로 하여금 잘 베껴서 책을 만드소서. 중국에서는 이문(里門)을 설치하여 도둑을 막는다고 하니, 청컨대 도성(都城)에 이문(里門)을 설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儀州)는 하위지(河緯地)로 하여금 집현전(集賢殿)에 나아가 찬록(撰錄)하게 하겠지만, 이문(里門)은 설치할 수가 없다."

하였다.

【원전】 7 집 13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04 02/06/02(경자)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죄줄 수 없다고 하다 》

어떤 사람이 고(告)하기를,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두려워하는 빛이 있으니, 반드시 음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어느 사람인들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양성지로 말하면 온 관사(官司)의 사람들이 잡혀 갔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느냐? 양성지는 나를 따른 지 오래이니,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구치관(具致寬)이 말하기를,

"양성지에게 만약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근일에 윤대(輪對)할 적에 그가 어찌 밀책(密策)을 즐겨 올렸겠습니까?"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유성원(柳誠源) 등과 혐의가 져 있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 이미 실정을 알았다. 옛날에 방현령(房玄齡)이 태종(太宗)을 배반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을 때에 즉시 고발한 자의 목을 베었었다. 지금은 말하는 자를 막을까 염려하여 다만 <그 말을> 물리칠 뿐이요, 죄줄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구치관을 시켜 양성지를 불러 천천히 그 일을 말해 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니, 양성

지가 명을 받고 감격하였다.

【원전】 7 집 135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세조 005 02/11/09(을해) / 상참을 받은 후 하성위 · 윤사로 · 권남·양성지 등을 머물게 하여 시식하다 》

상참(常參)을 받은 뒤에, 명하여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玖)·영응 대군(永膺大君)·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이인손(李仁孫)·이조판서(吏曹判書) 권남(權擥)·도진무(都鎭撫) 봉석주(奉石柱), 승지(承旨) 및 나주 목사(羅州牧使) 김가(金가)·좌보덕(左輔德) **양성지(梁誠之)**를 머무르게 하여 시식(侍食)하였다.

【원전】 7 집 15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세조 3년 《 양성지 - 세조 3년 .... 9 건 》

세조 007 03/03/12(을해) / 정창손·박강등과 분대와 수령의 일등 지방의 민정에 대해 논의하며 양성지 등과 시식하다

세조 007 03/03/15(무인) / 판서운관사 양성지가 전적·사직·존호·경연 등의 일에 대해 상언하다

세조 008 03/06/16(무신) / 당직 도진무 윤자운·박강 등과·신숙주·권남 등을 불러 잔치를 베풀 때 양성지 등을 불렀다

세조 008 03/06/28(경신) / 판서운관사 양성지가 용비어천도 서문을 바치다

세조 008 03/08/02(계사) / 세자의 병으로 양성지 등을 각지에 보내 향과 축물을 내리고 기도하게 하다

세조 009 03/09/18(기묘) / 양성지로 하여금 예문관의 책을 간행케 하려 하자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책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다

세조 009 03/10/22(임자) / 양성지가 윤대하여 성균관·사부 학당 유생의 행행시 시립을 폐지토록 건의하다

세조 009 03/10/22(임자) / 양성지가 둔전·용관·사졸 등에 관해 올린 편의 사항 4조

세조 009 03/10/27(정사) / 홍익생·양성지·윤길생을 첨지중추원사로 삼다

《 세조 007 03/03/12(을해) / 정창손 · 박강등과 분대와 수령의 일등 지방의 민정에 대해 논의하며 양성지 등과 시식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참(常參)할 때에 통례문(通禮門)의 관원이 잘못하여 오배(五拜)하라고 창(唱)하였는데, 예(禮)를 마치고 난 후에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정창손(鄭昌孫)·호조 판서 박원형(朴元亨)·이조 판서 권남(權擥)·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박강(朴薑)·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순지(李純之)·예조 참의(禮曹參議) 이극배(李克培)가 물러와서 아뢰기를

"통례문(通禮門)의 관원이 비록 실수를 했지마는, 신(臣) 등도 또한 예의(禮儀)에 어긋났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무엇이 예의(禮儀)에 어긋났음이 있겠는가? 경(卿) 등은 마땅히 빨리 들어오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 등이 승지(承旨) 등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판사(判事) **양성지(梁誠之)**와 더불어 시식(侍食)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분대(分臺)를 보내는 일은 그것이 불편(不便)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또한 그것이

폐해(弊害)가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다만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경계하여 반성(反省)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분대(分臺)가 이르는 곳에는 수령(守令)들이 두려워하여 몸을 움츠리게 되니, 무릇 할 만한 일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法)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수령(守令)들의 날마다 쓰고 상시로 행하는 데에는 법(法) 밖의 일이 많이 있는데, 교활한 이속(吏屬)과 간사한 백성이 수령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곁에서 엿보고 있다가 모두 고소(告訴)하려고 하니, 이런 까닭으로 수령들은 고소하려는 데에 겁이 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박강(朴薑)은 아뢰기를,

"신(臣)이 근일(近日)에 삼도(三道)의 공부(貢賦) 사무를 순찰(巡察)했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오히려 거절하면서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시기에 맞추어 해야 할 일을 진실로 창졸히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은 그러하다. 수령(守令)의 위세(威勢)를 모두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고알(告訐)의 풍습(風習)을 금지시키려고 한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고소(告訴)도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면 또한 죄를 가(加)하지 않는 법인데, 미천한 백성이 사분(私憤)과 사소한 원망을 가지고 없는 죄를 꾸며 무함해 고소하기까지 하니, 이런 풍습이 날로 커지면 아래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무고(誣告)한 사람을 어찌 죄주지 않겠는가? 이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사(有司)가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못한 때문이다. 대저 어가(御駕) 앞에서 친히 소장(訴狀) 고발을 받고, 또 분대(分臺)를 보내어 민정(民情)을 묻는 것은 모두가 민정(民情)을 널리 물어서 언로(言路)를 열고자 한 것이다. 말이 비록 적중(的中)하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加)하지는 않는데, 만약 법사(法司)에 고발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무고(誣告)를 조사하여 죄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권남이 아뢰기를,

"무고(誣告)를 처벌하는 법은, 청컨대 해당 관사(官司)에 교지(敎旨)를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대신(大臣)들이 모두 이를 듣고, 사관(史官)과 주서(注書)도 또한 이를 기록하였으니, 어찌 별도로 교지(敎旨)를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7 집 18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세조 007 03/03/15(무인) / 판서운관사 양성지가 전적 · 사직 · 존호 · 경연 등의 일에 대해 상언하다 》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였는데, 상언은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성덕 대공(盛德大功)으로써 보위(寶位)에 빛나게 앉아서 상제(上帝)에게 교사(郊祀)하고 태조(太祖)를 배향(配享)했으며, 또 선성(先聖)을 공손히 알현(謁見)하고는 과거(科擧)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았으니, 개국(開國)한 이래로 매우 성대한 행사(行事)입니다. 이는 꼭 신자(臣子)가 순수하고 결백한 한 마음으로 지치(至治)를 보좌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臣)은 용렬한 자질로써 오랫동안 시종(侍從)의 직책에 외람히 있었으므로,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예람(睿覽)에 우러러 모독(冒瀆)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감(聖鑑)으로 재택(裁擇)하소서.

1. 친히 적전(籍田)을 밭가는 조목입니다. 대개 옛날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가 모두 친히 적전(籍田)을 갈면서 삼추(三推)·구추(九推)의 구별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성(粢盛)을 공급하고 백성의 식생활(食生活)을 중시(重視)하여 경홀(輕忽)히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바로 지금 상제(上帝)에서 교사(郊祀)하여 이미 광고(曠古)의 성전(盛典)을 거행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몸소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친히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적전(籍田)을 밭가는 예(禮)를 행한다면 장차 상제(上帝)께서 굽어 살펴서 마땅히 풍년이 드는 상서(祥瑞)가 있음을 볼 것이며,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이 우러러보고서 또한 농사(農事)의 지중(至重)한 것을 알고는 농토(農土)에 즐거이 달려갈 것입니다. 임금의 발이 한 번 움직이면 삼한(三韓)이 기뻐서 몸을 솟구쳐 춤추듯이 할 것이니, 그 일이 간책(簡策)을 빛나게 하여 은택(恩澤)이 생민(生民)에게 미침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옛날의 성대한 예(禮)를 반드시 다 거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1. 사직(社稷)의 배위(配位)에 관한 조목입니다. 신(臣)이 《제사직장(諸司職掌)》을 상고해 보건대,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는 사직(社稷)에 제사지내면서 황고 인조(皇考仁祖)를 배향(配享)하였으며, 조송(趙宋)도 또한 희조(僖祖)를 불천지위(不遷之位)로 삼았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환조(桓祖)께서 우리 태조(太祖)를 탄생(誕生)하시어 이 백성을 구제하고 큰 왕업(王業)을 터전잡게 했으니, 쌍성(雙城)의 전역(戰役)은 실제로 내응(內應)이 되었습니다. 쌍성(雙城)이 수복(收復)됨으로써 함길도(咸佶道)의 구성(九城)의 지역(地域)이 수복(收復)되었으며, 구성(九城)이 수복됨으로써 정병건졸(精兵健卒)이 모두 우리의 소용이 되었으니, 그 공덕(功德)의 성대함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원컨대 옛 제도에 의거하여 환조(桓祖)를 국사(國社)에 배향(配享)하도록 하소서. 또 명(明)나라도 태조(太祖) 때에 있어서 인조(仁祖)로써 배향(配享)을 삼았는데, 태조(太祖) 후에는 혹 태조(太祖)를 배향(配享)했는지는 또한 알 수가 없으니, 원컨대 중원(中原)에 들어가서 예관(禮官)에게 이를 물어서 배위(配位)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위의 조목은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겠다."

하였다.

"1. 존호(尊號)를 더 올리는 조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은 달효(達孝)일 것이다.'하였으니, 두 성인(聖人)을 달효(達孝)라 일컫는 것은 무왕(武王)은 천명(天命)을 받았으며, 주공(周公)은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덕을 성취시켜 명당(明堂)에 종사(宗祀)하여 하늘에 배향(配享)시키고, 또 태왕(太王)과 왕계(王季)를 추존(追尊)하여 왕(王)으로 삼았으므로, 이른바 모두가 달효(達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殿下)께서 친히 상제(上帝)를 남교(南郊)에 제사지내고 태조(太祖)를 배향(配享)하였으니, 곧 무왕(武王)·주공(周公)의 달효(達孝)와 같습니다. 지금 번잡한 의식을 거행하여 성대히 존호(尊號)를 받았으니,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큰 경사(慶事)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하향(夏享)에 친히 태묘(太廟)에 강신제(降神祭)를 지내고, 조성(祖聖)의 존시(尊謚)를 더 올려서 효도(孝道)의 도리를 넓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거의 전대(前代) 성인(聖人)의 효도에 진실로 합할 것입니다. 신(臣)이 전조(前朝)를 살펴보건대, 현종(顯宗)은 영명(英明)한 군주인데 역대(歷代)의 존시(尊謚)를 더 올리고 중외(中外) 산천(山川)의 신기(神祇)에게도 또한 미호(美號)를 가(加)했으니, 곧 이런 뜻입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위의 조목은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겠다."

하였다.

"1.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컫는 조목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옛날의 제왕(帝王)들이 모두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컫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효도로써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宣布)하는 까닭입니다. 동방(東方)에서는 고려(高麗)의 성종(成宗)이 처음으로 생일을 천추절(千秋節)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후에는 역대(歷代)에서 모두 명칭(名稱)이 있었으니,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러서는 수원절(壽元節)이라 일컬었습니다. 전대(前代)의 역사를 상고해 본다면, 요(遼)나라와 금(禁)나라에서 사개(使价)를 보내어 와서 생신(生辰)을 하례(賀禮)하게 했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다만 탄일(誕日)이라 일컬어 예(禮)가 매우 간략(簡略)했으니, 본시 불가(不可)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당사(唐史)》를 살펴보건대, 발해(渤海)의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前麗]의 옛 장수인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망했으므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동국(東國)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의 융성(隆盛)한 것은 다만 발해(渤海)만 일컬었을 뿐이고 삼한(三韓)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신(臣)은 가만히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요제(堯帝)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土地)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되고, 생치(生齒)가 번성(煩盛)하고 군사와 마필(馬匹)이 강성하고 백관(百官) 제도가 성대한데, 비록 별도로 연호(年號)는 세우지 못하지마는 유독 고구려(高句麗)의 옛 것을 계승하여 절일(節日)을 일컬을 수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될 수가 없다."

하였다.

"1. 경연(經筵)에 나아가는 조목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고금(古今)의 제왕(帝王)들은 비록 총명이 세상에 으뜸가는 자질이 있더라도 견문(見聞)이 넓은 학문은 반드시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서사(書史)를 강론(講論)하였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군주(君主)의 한 마음은 온갖 중요한 정사[萬機]를 재제(裁制)하고 있으므로 지극히 번거롭고 또 괴로우니, 하루 동안에도 모름지기 한 번 경서(經書)를 읽어서 성려(聖慮)를 깨끗이 해야만 마음이 욕심이 없고 밝아져서, 온갖 이치가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인물의 현우(賢愚)를 식별(識別)함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이간(離間)할 수가 없게 되며, 일을 처리함이 적당해져서 정사(政事)가 한 일에만 편중(偏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정(先正) 정초(鄭招)는 사송(詞訟)을 판결할 적에는 반드시 경서(經書)를 보았으니, 또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원컨대 경연(經筵)을 회복시켜 녹관(祿官)과 겸관(兼官)을 두기를 서연(書延)의 제도와 같이 하여, 날마다 윤번(輪番)으로 진강(進講)시켜 성학(聖學)을 더욱 부지런하게 한다면, 거의 고문(顧問)에 도움이 있을 것이고 사책(史冊)에 빛남이 있을 것이며, 제도를 상고하고 전분(典墳)을 지키는 데도 옳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 경연(經筵)이 이미 폐지되어 갑자기 설치할 수가 없다면, 원컨대 중조(中朝)

의 춘방(春坊)으로써 한림(翰林)을 겸무(兼務)시키는 예(例)에 의거하여 서연관(書筵官)으로써 윤번(輪番)으로 진강(進講)하도록 하소서. 소신(小臣)은 경악(經幄)에 떠나 있어도 그래도 서연(書筵)에는 모실 수 있는데, 또 서연(書筵)에 나오게 되면 점차로 임금의 성덕(盛德)을 친히 의지할 수가 없으니, 견마지성(犬馬之誠)을 견딜 수가 없으므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서 아룁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군주(君主)가 온갖 중요한 정사를 보고 난 여가에 경사(經史)에 마음을 두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다. 나는 운수(運數)가 평탄하지 못해서 여가가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일이 많으니 <이것이> 한 가지이고, 세종(世宗) 때부터 수찬(修撰)의 일을 위촉받은 것이 많으니 <이것이> 두 가지이고, 지금 세자(世子)를 위해서 삼조 내록(三朝內錄)을 찬집(撰集)하고 있으며, 또 실록(實錄)·산서(産書)·육전(六典) 등의 일은 모두 내가 친히 보고 정한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이고, 또 내가 나이 이미 불혹(不惑)이 되었으니 어찌 반드시 서생(書生)과 같겠는가? <이것이> 네 가지이고, 또 진법(陣法)을 익히고 무예(武藝)를 연습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약(仁弱)에 실수할까 염려가 되니 <이것이> 다섯 가지이다."

하였다.

"1. 국가의 서적(書籍)을 간직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서적은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조(前朝) 때에는 서적을 산 속에 있는 절에 간직하였는데, 본조(本朝)에 이르러 비로소 3개의 사고(史庫)를 충주(忠州)·성주(星州)·전주(全州) 등 고을에 설치했으니, 생각이 매우 주밀(周密)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臣)이 듣건대, 간직한 것이 반드시 모두가 비서(秘書)가 아니므로, 반드시 비서(秘書)가 모두 간직되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3개의 사고(史庫) 안에 긴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는 모두 찾아내도록 하고, 선원록(璿源錄) 및 승정원(承政院)·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官)의 문서(文書)를 취(取)하여 책 3건(件)을 선택(選擇)하도록 하고, 또 동국(東國)에서 찬술(撰述)한 여러 서책(書冊)과 제자백가(諸子百家)·문집(文集)·주군(州郡)의 도적(圖籍)도 모두 구하여 사들이고, 또 1건(件)은 《송사(宋史)》·《원사(元史)》 등의 책과 같이 모두 전하여 베껴 써서 3개의 사고(史庫)에 간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이는 유사(有司)에게 독려(督勵)하겠다."

하였다.

"1. 풍속을 순후(淳厚)하게 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국가의 풍속은 삼강(三綱)을 유지(維持)하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은 군신(君臣)·부자(父子)의 인륜(人倫)이 질서가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지

마는, 그러나 잠정적으로 일에 견주어 논한다면 수령(守令)이란 사람은 백성의 부모(父母)입니다. 전일에 유서(諭書)가 내릴 적에는 본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원망을 호소하고 탐포(貪暴)한 관리를 징벌(懲罰)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긴요하지 않는 잡사(雜事)를 진소(陳訴)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아랫사람으로서 웃사람을 없신 여겨 고알(告訐)하는 풍습(風習)이 크게 일어나서, 한 사람의 일에 한 동리가 이에 화(化)하게 되고, 한 동리의 일에 한 고을이 이에 화하게 되고, 한 고을의 일에 한 도(道)가 이에 화하게 되어 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니, 이런 풍습(風習)을 커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풍습은 한번 이루어지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비록 자기의 일이라도 원통하고 억울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소장(訴狀)을 받아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받아서 처리한 것도 무고(誣告)인 경우에는 반좌(反坐)하도록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고알(告訐)이 그쳐지고 탐포(貪暴)도 또한 스스로 중지될 것입니다. 또 노비(奴婢)의 분수는 군신(君臣)과 같으니 사망(死亡)과 환난(患難)을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스스로 가법(家法)이 있지마는, 창졸의 변고가 전조(前朝)의 홍건적(紅巾賊)의 시기와 같이 발생된다면 그 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노비(奴婢)로서 본주인이 수재(水災)·화재(火災)·도적·질병(疾病)·사망(死亡)의 환난(患難)을 만난 것을 보고서 능히 부지(扶持)하고 구호(救護)하는 자는 관청에 알려서 노비(奴婢)를 놓아 양인(良人)으로 만들게 하고, 그 주인이 죽어서 3년 동안을 여묘(廬墓)한 자도 또한 그 역(役)을 면제해 주게 하소서. 또 본조(本朝)의 평민(平民)의 여자는 진실로 논할 것도 없지마는, 양가(良家)의 부녀(婦女)가 절개를 지키는 행실은 취(取)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찌 능히 집집마다 다 그렇겠으며, 백년을 하루와 같이 하겠습니까? 원컨대 금후에는 능히 그 남편을 수재(水災)·화재(火災)·도적(盜賊)·질병(疾病)·사망(死亡)에서 부지(扶持)한 사람과 나이 20세가 되어 과부(寡婦)가 되었으나 10년에 이르도록 절개를 지킨 사람은 그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고, 그 집의 정역(丁役)을 영구히 면제해 주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고알(告訐)하는 풍습(風習)은 내가 바야흐로 마음을 써서 금지시키려고 하는 때이다. 무고(誣告)를 반좌(反坐)시키자는 의논은 매우 좋다. 노비(奴婢)를 놓아 양인(良人)으로 만들자는 설(說)은 의정부(議政府)에 내리도록 하겠다."

하였다.

"1. 의제(儀制)를 정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예절(禮節)은 3천 3백의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조목은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家禮)의 다섯 가지뿐입니다. 길례(吉禮)란 것은 조정(朝廷)의 예절이고, 군례(軍禮)란 것은 병진(兵陣)의 예절이고, 빈례(賓禮)란 것은 교린 사대(交隣事大)의 예절이고, 가례(嘉禮)란 것은 혼인(婚姻)이고, 흉례(凶禮)란 것은 상장(喪葬)입니다. 원컨

대 세종조(世宗朝)에서 새로 찬술(撰述)한 의주(儀注)를 가지고 참작하여 이를 고정(考定)하여서, 특별히 일대(一代)의 전례(典禮)를 이루어 조정의 의식과 병진(兵陣)의 법으로 하여금 질서가 정연하여 차례에 있어서 서로 문란하지 않도록 하고, 삼례(三禮)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예조(禮曹)에 내리겠다."

하였다.

"1. 호적(戶籍)을 밝히는 조목입니다. 대개 《주례(周禮)》에, '무릇 백성은 금년에 난 아이로부터 그 이상은 모두 호적(戶籍)에 기록하고, 3년 만에 대비(大比) 하여 왕(王)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 이를 받아서 천부(天府)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본조(本朝)는 호구(戶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에서는 대부분 1정(丁)을 1호(戶)로 삼고,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및 함길도(咸吉道)의 육진(六鎭)에서는 혹은 수십 인(數十人)을 1호(戶)로 삼기도 하는데, 경기(京畿)와 충청도(忠淸道)에서는 그다지 지나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의 산군(山郡)의 백성들은 유망(流亡) 하여 직업을 잃게 되므로, 1호(戶)로써 전일의 몇 호(戶)의 부역(賦役)을 제공하게 하니 날로 피폐(疲弊)해졌습니다.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의 연해(沿海)의 고을에는, 세력 있고 교활한 집에서는 밖에는 한 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몇 집을 두고서는, 만약 혹시 찾아내려고 하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고, 종이 본주인을 구타하는 자까지 있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부자(富者)는 부역을 면하고 빈자(貧者)는 항상 그 노고(勞苦)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본디부터 호적(戶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드시 모두 도망하여 숨어 버릴 것이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금후에는 경도(京都)인 한성부(漢城府)와 외방(外方)인 팔도(八道)에 호구(戶口)의 법을 거듭 밝혀서, 존비(尊卑)와 노소(老少)와 남녀(男女)를 논할 것 없이 모두 호구(戶口)를 두어, 없는 사람을 과죄(科罪)하게 하고, 그 사족(士族)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奴婢)와 평민(平民)이 그 부모(父母)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외에는 매 3정(丁)을 1호(戶)로 삼고, 3년 만에 한 번 이를 조사하여 1정(丁)을 누락(漏落)시킨 자는 오가(五家) 및 감고(監考)·관령(管領)을 모두 북쪽 변방으로 귀양보내고, 1가(家)를 누락시킨 사람은 수령(守令) 및 병방(兵房)의 이속(吏屬)을 모두 죄주고, 이내 다른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하여, 범인(犯人)의 전지(田地)와 재산을 가지고 상(賞)에 충당하게 하소서. 또 입사(入仕)한 사람과 소원(訴冤)한 사람도 모두 호구(戶口)를 먼저 조사하도록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국민(國民)이면서 호적(戶籍)에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한 병졸이라도 단정(單丁)이면서 부역에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양인(良人)이 다 나옴으로

써 군액(軍額)이 넉넉하게 되고, 포도(逋逃)가 나옴으로써 도적이 그치게 되고, 공천(公薦)이 나옴으로써 관부(官府)가 넉넉하게 되고, 사천(私賤)이 나옴으로써 사대부(士大夫)가 넉넉하게 되고, 시정(市井)의 무리들까지도 모두 호적(戶籍)에 기록하여 석척군(石擲軍)으로 삼아서 전진(戰陣)의 일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병조(兵曹)에 내리겠다."

하였다.

"1. 의창(義倉)을 실(實)하게 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국가의 미곡(米穀) 수용(需用)은 공상(供上)과 녹봉(祿俸)과 군자(軍資)와 의창(義倉)입니다. 근년에 의창(義倉)에서 대부(貸付)한 것을 세 차례나 견감(蠲減)해 주었으므로 이로부터 백성들이 의창(義倉)의 곡식을 받고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慣例)를 희망하면서 환납(還納)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서 날로 더욱 모손(耗損)되어 가니, 진실로 한심(寒心)할만한 일입니다. 신(臣)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어리석은 백성이 곡식을 얻으면 존절히 하여 조석(朝夕)에 공급하고, 저축(儲畜)하여 흉황(凶荒)에 대비(對備)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선왕(先王)이 비로소 의창(義倉)을 마련했으니, 의창은 곧 백성들의 부고(府庫)입니다. 연사(年事)가 비록 기년(饑年)에 이르지 않더라고 여름철의 식량과 종자는 오직 의창(義倉)에만 의뢰(依賴)하게 되는데, 지금 듣건대, 경상도(慶尙道) 한 도(道)의 굶주림을 진휼(賑恤)하려고 하여도 곡식이 없다고 하니, 반드시 장차 군자(軍資)를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군자(軍資)는 군려(軍旅)에 사용하게 되고, 의창(義倉)은 흉황(凶荒)에 사용하게 되니, 모두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창(義倉)이 다 없어져서 또 군자(軍資)를 가지고 모두 사용한다면, 국가의 축적(蓄積)이 많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지난 여름에 의창(義倉)을 보첨(補添)할 계책을 우러러 진술하여 유윤(兪允)을 얻게 되어, 즉시 해당 관사[該曹]로 하여금 조치(措置)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해당 관사(官司)에서 설시(設施)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근일에 경상도(慶尙道)의 굶주림에 군자(軍資)를 가대(假貸)한다는 의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감히 이같이 다시 진술하게 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굽어살펴서 다시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특별히 포치(布置)를 더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해당 관사(官司)에 독촉하여 물어보겠다."

하였다.

"1. 쓸데없는 관원[冗官]을 도태(淘汰)시키는 조목입니다. 대개 쓸데없는 관원은 도태(淘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할 적에는 마땅히 이익되는 일과 폐해되는 일은

세밀히 연구하여 장차 백년이 되어도 폐해가 없도록 해야만 하니, 한때에 바쁘게 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속전(續典)》 이후의 조장(條章)을 먼저 취(取)하여 신전(新典)을 찬술(撰述)하고, 신전(新典)이 이미 이루어지면 《원전(元典)》·《속전(續典)》·《등록(謄錄)》·신전(新典) 등 4종(種)의 책을 합하여 이를 참고해서 육전(六典)을 만들어 대성(大成)시키고 이내 관제(官制)를 정하게 하는데, 관제(官制)를 정할 때에는 백관(百官)의 직사(職事) 중에서 어느 것은 도태(淘汰)시켜야 되고 어느 것은 도태시키지 않아야 됨을 참작하여 이를 증감(增減)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신전(新典)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년의 조장(條章)이 거취(去就)가 있을 것이고, 육전(六典)이 대성(大成)됨으로써 전후(前後)의 법도(法度)가 한 곳으로 귀착(歸着)됨이 있을 것이니, 관제(官制)가 정해짐으로써 백관(百官)의 준수(遵守)할 바가 있게 되고, 쓸데없는 관원들도 또한 도태(淘汰)될 것입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내가 이미 포치(布置)했는데, 꼭 내 마음에 부합한다."

하였다.

"1. 작은 현(縣)을 병합(倂合)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작은 현(縣)은 모두 합쳐야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원(中原)과 동국(東國)에서 모두 주·부·군·현(州府郡縣)을 뒤섞어 설치했는데, 큰 것은 작은 것을 통솔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받들고 있어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유지(維持)하는 뜻인 때문입니다. 체제(體制)와 형세(形勢)를 가지고 말한다면 군·현(郡縣)을 모두 작게 할 수는 없으며, 민사(民事)를 가지고, 말한다면 군·현을 모두 크게 할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간혹 큰 주(州)를 설치하여 그 형세를 웅장하게 하고, 또 작은 읍(邑)을 설치하여 민사(民事)를 편리하게 한 뒤에야 가(可)할 것입니다. 오늘날엔 길가의 쇠잔(衰殘)한 고을은 그 너무 심한 것만 병합(倂合)시킨다면 가하겠습니다. 만약 예(例)대로 작은 현(縣)을 가지고 큰 주(州)에 합치고, 혹은 작은 현(縣)을 가지고 작은 현(縣)에 병합(倂合)하여 큰 주(州)로 삼는다면, 신(臣)은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옛날 사람이 산천(山川)의 요해(要害)와 도로(道路)의 원근(遠近)에 인하여 군·현(郡縣)을 벌여 설치했으니, 삼한(三韓)의 땅이 합계 3백여 주(州)인데, 이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증감(增減)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물며 군(郡)이 크면 백성이 많고, 백성이 많으면 사무가 번다(煩多)하므로, 수령(守令)은 부서(簿書) 처리에 시달려서 한 고을의 민사(民事)를 이속(吏屬)에게 맡기게 되니, 이속의 손에 민사(民事)를 맡기게 되면 백성의 폐해를 받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군·현(郡縣)이 지나치게 큰 것은 나누어 별읍(別邑)을 설치하고, 그 매우 작은 현(縣)은 큰 현(縣)에 병합(倂合)시킨다면 어찌 큰 고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작은 고을을 예(例)에 따라 큰 고을에 합쳐야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경성(京城)과 팔도(八

道)의 지도(地圖)·지지(地誌)를 먼저 정하고,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상고할 때는 그 산천(山川)의 요해(要害)와 도로(道路)의 원근(遠近)과 인물(人物)의 번다(煩多)함과 간략(簡略)함을 살펴서, 혹은 작은 고을을 가지고 큰 고을에 병합(倂合)시키기도 하고, 큰 고을을 가지고 나누어 두 고을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 너무 심한 것만 제거(除去)할 것이니, 다만 오늘날에 결의(決意)하여 행할 것은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지경을 넘어온 땅은 빠짐없이 개정(改正)하고, 견아상입(犬牙相入)한 것도 또한 대략 살펴서 정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군·현(郡縣)의 제도도 문란하지 않고, 백성들도 또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신(臣)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백성이 이미 많고 이미 부유(富裕)하면 또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병졸(兵卒)을 넉넉하게 하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臣)이 지금 진술한 것은 호적(戶籍)이 밝아지면 백성이 이미 많아져서 병졸(兵卒)이 넉넉해지는 것이고, 의창(義倉)이 실(實)하면 백성이 부유(富裕)해져서 식량이 넉넉해지는 것이며, 백성을 가르쳐서 백성이 믿는다면 풍속이 저절로 순후(淳厚)한 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가르치는 근본은 또한 <임금께서>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날로 덕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여하(如何)에 있을 뿐입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위의 조목을 나의 정사에 천천히 살펴보겠다."

하였다.

【원전】 7 집 18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농업-권농(勸農) / *과학-지학(地學)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진상(進上) / *재정-창고(倉庫)

《 세조 008 03/06/16(무신) / 당직 도진무 윤자운 · 박강 등과 · 신숙주 · 권남 등을 불러 잔치를 베풀 때 양성지 등을 불렀다 》

당직(當直) 도진무(都鎭撫) 권공(權恭)·윤자운(尹子雲)·박강(朴薑)·양정(楊汀)·심안의(沈安義)·이흥상(李興商)·김개(金漑)에게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모이게 하여서 잔치와 음악(音樂)을 내려주었다. 그때 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이극감(李克堪)·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서강(徐岡)·이예(李芮)·**양**

성지(梁誠之)·이파(李坡)·강희맹(姜希孟)이 명(明)나라 사신에게 주어서 보낸 시(詩)를 지었기 때문에 대궐(大闕)에 있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잔치에 나오게 하고, 또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舸路)에게 명하여 배식(陪食)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20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예술-음악(音樂)

《 세조 008 03/06/28(경신) / 판서운관사 양성지가 용비어천도 서문을 바치다 》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양성지(梁誠之)**가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를 바쳤다. 그 서문(序文)에 이르기를,

"소신(小臣)이 항상 서연(書筵)을 모시는데, 동궁 저하(東宮邸下)께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내어 놓고 신 등으로 하여금 구결(口訣)을 정(定)하여 읽어 보는데 대비(對備)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제왕(帝王)의 기업(基業)은 쌓아 올리는 데에는 백년도 부족하나 허물어뜨리는 데에는 하루라도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너의 조상은 생각하지 말고 그 덕(德)만을 닦아라.' 하였고,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우리 고조(高祖)의 과명(寡命)을 허물치 말아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조종(祖宗)께서 왕업(王業)을 쌓아 올리는 데 어려움을 서술(敍述)하고, 자손들이 왕업을 유지하여 지키는 규범(規範)으로 삼으려는 것이니, 진실로 후성(後聖)들이 마땅히 귀감(龜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사(古事)를 끌어다가 지금의 일을 증거하고 반복(反復)하여 노래하고 읊었으므로, 편차(偏次)가 호한(浩瀚)하여 진실로 그 요점을 모아서 그 대강(大綱)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신이 이를 위하여 염려하고 잠심(潛心)하여 이를 고찰하니, 시(詩)가 모두 3백 25장(章)이었는데, 지금 일곱 가지로 그 대강(大綱)을 만들어서 나누어 붙입니다.

중상행(中上行)은 '선세(先世)께서 왕업을 쌓아 올린 지 오래인 것'을 말하는데 11장(章)을 붙이고, 중심(中心)은 '개국(開國)'을 말하는데 2장(章)을 붙이고, 중하행(中下行)은 '후성(後聖)께서 왕업을 유지하여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16장(章)을 붙이고, 좌 1행(左一行)은 '성덕(盛德)'을 말하는데 34장(章)을 붙이고, 3행(三行)은 '대공(大功)'을 말하는데 34장(章)을 붙이고, 우 1행(右一行)은 '천명(天命)'을 말하는데 26장(章)을 붙이고, 2행(二行)은 '민심(民心)'을 말하는데 2장(章)을 붙이고, 그대로 역대의 주(註)와 제사(題辭)와 사류(事類)를 표지(標識)하여 바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자(聖慈)께서 읽어 보시고, 인하여 동궁에 내려서 좌우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읽고 깨달아, 우리 조선(朝鮮)을 개국(開國)한 경사(慶事)가 실로 조종(祖宗)께서 왕업을 쌓아 올린

지 오래인 데에서 나오고, 성덕(盛德)이 있어서 대공(大功)을 세웠고, 천명을 받아서 민심을 얻게 된 사실을 알도록 하여서, 자손 만세에 이르도록 날로 더욱 삼가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하여 감히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게 된다면, 신의 이른바 후성(後聖)들이 왕업을 지키는 도리가 어찌 여기에서 더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그림은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하도다."

하고, 명하여 동궁에게 보내게 하였다.

【원전】 7 집 205 면

【분류】 *예술-미술(美術)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어문학-어학(語學)

《 세조 008 03/08/02(계사) / 세자의 병으로 양성지 등을 각지에 보내 향과 축물을 내리고 기도하게 하다 》

세자(世子)의 병(病) 때문에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수온(金守溫)을 소격전(昭格殿)에 보내고,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중(李重)을 송악(松岳)에 보내고,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연손(李延孫)을 감악산(紺岳山)에 보내고, 판서운관사(判書雲觀使) **양성지(梁誠之)**를 대정(大井)에 보내고,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성임(成任)을 덕진(德津)·양진(楊津)·덕적도(德積島)에 보내어,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서 기도(祈禱)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21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의식(儀式)

《 세조 009 03/09/18(기묘) / 양성지로 하여금 예문관의 책을 간행케 하려 하자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책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다 》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유생(儒生)을 교육하는데, 학관(學官)에게만 위임하고 권려(勸勵)한 바가 없었음을 깊이 혐의쩍게 여긴다. 제생(諸生)들이 서적을 얻기가 어려울까 생각하고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예문관에 소장한 서적을 기록케 하여 장차 간행(刊行)하려고 한다."

하니, 도승지 조석문이 아뢰기를,

"교서관(校書館)에 오경 판자(五經板子)가 있어서 관(官)에서 이를 인쇄하여 팔고 있으며, 성균관의 서적도 또한 많아서 교관(敎官)이 유생들이 책이 없으면 그때그때 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였다.

【원전】 7 집 222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09 03/10/22(임자) / 양성지가 윤대하여 성균관 · 사부 학당 유생의 행행시 시립을 폐지토록 건의하다 》

윤대(輪對)에서 훈련관 사(訓鍊觀使)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지금 성균관(成均館)·사부 학당(四部學堂)의 유생(儒生)들이 각각 행행(行幸)이 지나는 길 곁에서 시립(侍立)하나, 예로부터 사부 학당 및 성균관의 교관(敎官)은 매 삭망 대조회(朔望大朝會)를 제외하고는 수반(隨班)하지 말도록 하고, 오로지 교훈(敎訓)만 하였는데, 이제 동몽(童蒙)으로 하여금 시립하게 하여 학업을 폐하게 하니, 청컨대 이를 폐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지난날 동부(東部)를 지나다가 유생(儒生)이 횡행 무례(橫行無禮)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세운 것인데, 대개 징계하려는 뜻이었다."

하고는, 마침내 명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주부(注簿) 박종문(朴宗文)이 임금의 덕을 극구 찬양하고, 이어서 당대의 불사(佛事)의 그릇됨을 진달하니, 임금이 면대하여 아첨한다는 이유로 명하여 빨리 나가게 하고,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우문 사급(宇文士及)과의 일을 들어 크게 웃었다.

【원전】 7 집 23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세조 009 03/10/22(임자) / 양성지가 둔전 · 용관 · 사졸 등에 관해 올린 편의 사항 4조 》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관사(觀射)하니, 종친 및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

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우찬성 황수신(黃守身)·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좌참찬 박중손(朴仲孫) 우참찬 성봉조(成奉祖),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경기 관찰사 신석조(辛碩祖)와 승지 및 훈련관 사 **양성지(梁誠之)**가 시식(侍食)하였다. 양성지가 편의 사항 4조(條)를 올리니, 그 조문(條文)은 이러하였다.

"1. 신은 듣건대, 예로부터 인주(人主)가 관(官)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어서 천도(天道)를 대행함에 있어, 예악(禮樂)을 일으켜서 백성이 착하게 되도록 이끌고, 형벌(刑罰)을 제정하여 백성이 악하게 되는 것을 금(禁)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힘쓸 바는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두 가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백성의 삶을 잘 기르고, 군비가 완벽하면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 벼농사가 흉년이 들고 게다가 누차 포흠(逋欠)을 견감(蠲減)하여, 의창(義倉)이 부실하고 군자(軍資)도 또한 모손(耗損)되었으니, 보충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諸司)에서 징속(徵贖)한 물건과, 외방의 어염(魚鹽)과 바꾼 것으로써 수량을 충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고, 둔전법(屯田法)을 크게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주·군(州郡)이 한광(閑曠)한 황해도·함길도와 유이(流移)하여 간 강원도·평안도에는 경작할 만한 땅이 매우 많으며, 또 경기와 하삼도에는 호협(豪俠)한 집들이 좋은 전지를 널리 점유하고, 혹은 서로 바꾸어 가며 묵히기도 하고 혹은 남이 대신하여 경작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전지를 적당히 빌려 얻어서, 관가에서는 양곡과 종자를 지급하고 백성들은 소와 농구를 내어, 천호(千戶)의 주(州)에서는 50석(石)을 경작하게 하고, 백호(百戶)의 현(縣)에서는 5석(石)을 경작하게 하면, 하루는 이를 갈고, 하루는 씨를 뿌리며, 하루는 김을 매고, 하루는 거두어들이고, 하루는 타작합니다. 이와 같이 5년을 하고 그친다면, 백성의 힘을 빌리는 것은 1년 동안 7일에 불과하지만, 민생의 무궁한 이익이 되는데, 어찌 즐겨 그 일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편안하게 해 주는 길로 백성을 부린다면 비록 힘든다 하더라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그 수령(守令) 및 감고(監考)·권농(勸農)에게 특별히 권징(勸懲)을 가하게 하고, 또 민전(民田)을 내놓은 호(戶)는 혹은 잡침(雜侵)을 면제해 주고, 혹은 산관(散官)을 제수하소서. 또 송(宋)나라의 청묘법(靑苗法)은 곧 우리나라의 장리(長利)의 법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이를 온 천하에 항시 행하려고 한 것은 불가(不可)하였지만, 처음에 잠시 섬서(陝西)에서 시험한 것은 즉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빌건대, 내년부터 의창(義倉)의 진대(賑貸)를 사가(私家)에서 장리(長利)하는 예에 의하여 그 이식(利息)을 거두게 하되 역시 5년을 한하여 그치게 하소서.

1. 용관(冗官)을 도태(陶汰)하는 것은, 일없이 먹는 자를 도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교(檢校)·봉조청(奉朝請)의 신하로 혹은 기력이 쇠진(衰盡)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오직 옛사람을 구한다.'고 하였으니, 빌건대 금후에는 몹시 쇠모(衰耗)하지 않아서 오히려 족

히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경관(京官)으로 우대하고, 내려서 외임(外任)에 제수하여도 만약 직사(職事)에 부지런하고 삼가면 다시 경관으로 제수하고, 혹 연령이 이미 늙고 이치(吏治)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관직이 높은 것만을 믿고서 민정(民政)을 친히 하지 않는 자는, 영구히 버리고 쓰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국가에서 늙은 신하를 대우함에, 시종 도(道)가 있을 것입니다. 송나라에서는 정승(政丞)을 파직하면 의례히 사록(祠祿)을 먹게 한 것도, 또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법을 행하면 조정 안의 사부(士夫)로 나이가 점차 저물게 되면 모두 실직할 근심을 갖게 될 것인데, 아마 태평성사(太平盛事)에 어긋나는 일인 듯합니다. 차라리 군신(群臣)의 녹과(祿科)를 감하고 그 사람에게 행직(行職)을 제수할지언정, 갑자기 늙고 덕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고 우선 외직(外職)에 시험하여 녹을 얻어 먹도록 하소서.

1. 신은 듣건대, 사졸(士卒)은 정련(精鍊)을 귀히 여기고, 시위(侍衛)는 고단하고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조(本朝)의 총통위(銃筒衛)는 보병(步兵) 중에서 가장 정강(精强)하다고 일컬어 왔는데, 이제 갑자기 파하여 보내시니, 신은 그윽이 의혹하고 있습니다. 빌건대, 구제(舊制)를 그대로 하되, 위(衛)를 군(軍)으로 개칭하고, 7품(品)으로 거관(去官)하게 하고, 월봉(月俸) 6두(斗)를 주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교만하고 태만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며, 보병으로서 정강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르기를, '이미 혁파한 것이므로 다시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관청[該曹]으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취하여, 경외(京外)의 기병(騎兵)·보병(步兵)으로 나누어 붙이게 할 것이며, 다만 수천 명 정병(精兵)의 부적(付籍) 여부를 그 소위에 맡긴다면, 어찌 수령들의 누정(漏丁)을 책하겠습니까? 또 신이 전일에 대장 막하(大將幕下)에 있으면서, 입직(入直)하는 갑사(甲士)가 7, 80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궐내의 파문(把門)에도 오히려 또한 부족하니, 허소(虛疎)한 것이 심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갑사는 매 번상(番上)마다 모름지기 1천 인으로 정하고, 매 입번(入番)마다 2백 인을 내려가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녹과(祿科)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삭(三朔)마다 번을 갈아들이고, 간략한 월봉을 주도록 하소서.

1. 병사[兵]란 1천 일을 쓰지 않아도 가(可)하지만, 하루라도 훈련하지 않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전자에 섭육십(攝六十)은 날마다 훈련관(訓鍊觀)에 나아가서, 습장(習杖)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건장한데도 습장(習杖)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왜악(矮弱)하였지만, 습장(習杖)하여 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니 익히지 않은 자가 패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습장(習杖)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 방패(防牌)는 진(陣)의 외면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역시 훈련관에서 이를 연습하였는데, 지금은 전혀 익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 궁시(弓矢)로 격자(擊刺)하는 법도 시험하지 않고 군액(軍額)에 보충되고, 후에는 또 승평 무사(昇平無事)함으로써 익히지 않다가, 만일 졸지에 변을 당한 연후에, 창황(蒼黃)한 속에서 연습하고 검열한다면, 어찌 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상항(上項)의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연습하게 하소서. 대저 신자(臣子)는 말을 다하기가 어렵고, 군상(君上)은 그 말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말을 듣기란 본시 어려운 것이나, 그 말을 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신의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함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예람(睿覽)을 드리우소서. 또 신이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을 당하여 먼저 군도(君道)의 요령을 상소(上疏)하였고, 그해 겨울에 차사(差使)로 평안도에 가서, 지도(地圖)를 심찰(審察) 제정하고 돌아와서 비어(備禦) 사의(事宜)를 올렸으며, 전년 봄에는 또 편의(便宜)한 24개 항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모두 우납(優納)하심을 입어, 이를 모두 대신으로 하여금 의의(擬議)하도록 하셨으나, 다만 지금까지 구처(區處)한 바를 몰라서 주야로 크게 기망(期望)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다시 성려(聖慮)를 머물러 주시면 지극한 원(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이르기를,

"말이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으나, 네가 백성들의 일에 마음을 두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몹시 가상(嘉賞)하게 여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양성지(梁誠之)는 비상한 사람이다."

하였다. 재추(宰樞)에게 명하여, 좌우로 나누어서 투호(投壺)를 하여 승부를 겨루게 하고, 내탕(內帑)의 물건으로 내기하도록 하였다. 정인지·강맹경·신숙주·신석조·홍윤성·조석문(曹錫文)·권지(權摯)·정식(鄭軾)에게 녹비(鹿皮) 각각 1장씩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이르기를,

"한나라 고조(高祖)가 그 공신(功臣)을 보전하지 못하고, 전년에 한신(韓信)을 죽이고, 금년에는 팽월(彭越)을 죽였으니, 이는 그의 실패한 부분이다."

하니, 정창손(鄭昌孫)이 일어나 아뢰기를,

"이는 참으로 큰 과실입니다."

하고, 정인지(鄭麟趾)는 말하기를,

"한나라 고조가 능히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잘 썼으니, 이것이 한나라의 왕업이 흥성(興盛)한 소이(所以)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옛날에 이르지 않았는가?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해지고, 자기의 뜻만을 쓰면 작아진다. 스스로 스승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 노릇을 할 것이요, 남은 자기만 같지 못하다고 이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군도(君道)의 대체(大體)는 이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임금이 친히 후원(後苑)에서 습진(習陣)을 하였는데,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로 좌

대(左隊)·우대(右隊)를 삼고, 재추(宰樞)와 승지(承旨)는 사복마(司僕馬)를 타고서 시위(侍衛)하였다. 임금이 말을 멈추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원전】 7 집 23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군사-병참(兵站)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금융-식리(殖利)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재정-창고(倉庫) / *풍속-풍속(風俗) / *호구-이동(移動)

《 세조 009 03/10/27(정사) / 홍익생 · 양성지 · 윤길생을 첨지중추원사로 삼다 》

홍익생(洪益生)·**양성지(梁誠之)**·윤길생(尹吉生)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원전】 7 집 23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조 4년 《 양성지 - 세조 4년 .... 2 건 》

세조 012 04/03/04(신묘) / 양성지 등이 후원에 나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다
세조 014 04/09/26(경술) / 행 상호군 양성지가 오위의 깃발의 색깔에 대해 상언하다

《 세조 012 04/03/04(신묘) / 양성지 등이 임금과 함께 후원에 나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다 》

후원에 나아가 관사(觀射)하니, 임영대군 이구(李瑆)·계양군 이증(李增)·의창군 이공(李玒)·익현군 이관(李瓘)·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윤사로(尹師路)·박중손(朴仲孫)·성봉조(成奉祖)·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조석문(曹錫文)·김질(金礩), 행 상호군 **양성지(梁誠之)**·어득해(魚得海), 겸사복 등이 시사(侍射)하였다.

【원전】 7 집 26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세조 014 04/09/26(경술) / 행 상호군 양성지가 오위의 깃발의 색깔에 대해 상언하다 》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그윽이 보건대, 5위(五衛)에 각각 5부(五部)가 있고 5부에 모두 4통(四統)이 있는데, 5위의 중부(中部)의 기(旗)가 모두 황색(黃色)이고 5부의 보전(步戰)의 기(旗)가 모두 청색(靑色)이어서 달리 분별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열(列)을 지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으면 고찰(考察)하여 알 수 있지만, 혹 이합(離合)하여 진(陣)을 변할 때면 어느 위[某衛]의 중부(中部), 어느 부[某部]의 전통(戰統)인지 알 수 없으니,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청컨대 금후로 중위(中衛)의 중부(中部)는 황근 황기(黃矜黃旗)로 하고, 중부(中部)의 보전통(步戰統)은 황근 청기(黃矜靑旗)로 하며, 이와 같은 예(例)에 따라 전위(前衛)는 적색(赤色), 후위(後衛)는 흑색(黑色), 좌위(左衛)는 청색(靑色), 우위(右衛)는 백색(白色)으로 하여, 부(部)는 본위(本衛)를 따르고 통(統)은 본부(本部)의 빛깔에 따르게 하고, 인하여 진설(陣說)을 그리게 하여 처음부터 다섯 가지 빛깔[五采]을 시행하여 평일(平日)에 미리 익히게 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오(部伍)의 지휘(指揮)에 헛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휘(旗麾)는 적어서도 안 되고 또 많아서도 안 됩니다. 적으면 항오(行伍)가 분잡(紛雜)하여 통령(統令)이 없게 되고, 많으면 응보(應報)하는 데 구애되어 단예(端倪)를 알 수 없습니다. 여수(旅

帥)·대정(隊正)의 기(旗)는 의논하여도 가하나, 오장(伍長)의 기(旗)는 이목(耳目)이 미치고 형성(形聲)이 상접(相接)하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없애소서."

하였다.

【원전】 7 집 296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세조 5년 《 양성지 - 세조 5년 .... 4 건 》

세조 017 05/08/20(기사) / 승정원에 잠서를 교정하는 일을 말하고 그 교정을 양성지에게 맡기다
세조 018 05/10/01(기유) / 행 상호군 양성지가 잠서를 새로 찬술하여 바치다
세조 018 05/11/22(경자) / 윤사로·양성지 등에게 습진하게 하고, 경서·의서·한훈 등을 강하게 하다
세조 018 05/11/30(무신) / 양성지에게 《의방유취》를 교정하게 하다

《 세조 017 05/08/20(기사) / 승정원에 잠서를 교정하는 일을 말하고 그 교정을 양성지에게 맡기다 》

어찰(御札)로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내가 잠서(蠶書)를 줄여서 만들어 보는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쉽사리 거행(擧行)시키려고 하여, 친히 수일(數日) 동안을 펼쳐 보았는데, 비록 줄일 만한 말이 있지마는 또한 너무 줄일 수는 없었다. 또 이 한 권의 책이 너무 양이 많아서 연구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속에 글귀가 틀리고 주석(註釋)이 잘못된 것만 모름지기 교정(校正)하여 간행(刊行)해야만 한다. 이같이 한다면 전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를 보고, 줄여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줄여서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재(人才)로써 옛 글을 경솔히 고친다면 반드시 많은 착오(錯誤)를 초래(招來)할 것이니, 도리어 옛 것을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

하고, 마침내 행 대호군(行大護軍)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책의 오자(誤字)를 교정(校正)하도록 하였다.

【원전】 7 집 342 면
【분류】 *농업-양잠(養蠶)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18 05/10/01(기유) / 행 상호군 양성지가 잠서를 새로 찬술하여 바치다 》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가 새로 잠서(蠶書)를 찬술(撰述)하여 바쳤다.

【원전】 7 집 350 면
【분류】 *농업-양잠(養蠶)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18 05/11/22(경자) / 윤사로 · 양성지 등에게 습진하게 하고, 경서 · 의서 · 한훈 등을 강하게 하다 》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행 호군(行護軍) **양성지(梁誠之)**로써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후원(後苑)에서 습진(習陣)하게 하였다.

《치평요람(治平要覽)》의 수찬관(修撰官)인 좌필선(左弼善) 이문형(李文炯)·우필선(右弼善) 홍응(洪應)·우문학(右文學) 노사신(盧思愼)·직강(直講) 윤자영(尹子濚)·봉례(奉禮) 허종(許琮)·부교리(副校理) 정효상(鄭孝常)·우사경(右司經) 이숙감(李淑瑊)·대교(待敎) 이수남(李壽男), 검열(檢閱) 김지(金澄)·이개보(李介甫) 등을 불러서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내의(內醫) 조경지(曹敬智) 등 3인과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 김의강(金義剛) 등 8인을 불러서 의서(醫書)를 강(講)하게 하고, 강이 생도(講肄生徒) 설주(薛柱) 등 8인을 불러서 한훈(漢訓)을 강(講)하게 하였다.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수남(李壽男)과 주서(注書) 김순명(金順命)·봉교(奉敎) 최한량(崔漢良)·좌랑(佐郎) 성윤문(成允文)·사직(司直) 안혜(安惠) 등은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를 쓰게 하고, 상호군(上護軍) 구문신(具文信)·민발(閔發)·이비(李埤)와 행 호군(行護軍) 최적(崔適) 등은 사후(射侯)하게 하였다.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에게 내구마(內廐馬) 각 1필씩을 내려 주고, 선전관(宣傳官)·위장(衛將)·부장(部將)과 군사들에게는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35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세조 018 05/11/30(무신) / 양성지에게 《의방유취》를 교정하게 하다》

행 대호군(行大護軍)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의방유취(醫方類聚)》를 교정(校正)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357 면

【분류】 *의약-의학(醫學) / *출판-서책(書冊)

세조 6년 《 양성지 - 세조 6년 .... 6 건 》

세조 019 06/02/12(기미) / 송처관·양성지 등에게 《손자주해》를 교정하게 하다
세조 019 06/02/25(임신) / 양성지 등이 입시한 자리에서 니마거 올적합 비사 등을 인견하고 낭발아한의 죄등에 대해 유시하였다
세조 019 06/03/10(정해) / 호조 참판 김순경창부윤 양성지를 명에 보내 칙서에 대해 회주하고 표리를 내려 준 것에 사례하다
세조 019 06/03/13(경인) / 신숙주 등과 주본을 조사 대조하고 주문사 김순부사 양성지 등과 의논하다
세조 019 06/03/14(신묘) / 승정원에 어찰로 양성지에게 명하여 전국의 서책을 정비하고 보존에 주의할 것을 명하다
세조 020 06/06/09(갑인) / 사은사 김순부사 양성지가 칙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 세조 019 06/02/12(기미) / 송처관 · 양성지 등에게 《손자주해》를 교정하게 하다 》

문신(文臣)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송처관(宋處寬) · 행 대호군(行大護軍) **양성지(梁誠之)** · 필선(弼善) 홍응(洪應) · 정랑(正郎) 이문환(李文煥) · 직강(直講) 윤자영(尹子濚) 등에게 명하여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모여서 《손자주해(孫子註解)》를 교정(校正)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370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19 06/02/25(임신) / 양성지 등이 입시한 자리에서 니마거 올적합 비사 등을 인견하고 낭발아한의 죄등에 대해 유시하였다 》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음복연(飮福宴)을 베푸니,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익녕군(益寧君) 이치(李穉)·순성군(順城君) 이애(李애)·보성경(寶城卿) 이합(李合)·원천경(原川卿) 이의(李宜)·신종윤(新宗尹) 이효백(李孝伯)·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우의정(右議政) 권남(權擥)·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판중추원사

(判中樞院事) 김하(金何)·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이조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순지(李純之)·호조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곽연성(郭連城)·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배(李克培)·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순(金淳)·행 대호군(行大護軍) **양성지(梁誠之)**,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니마거 올적합(尼麻車兀狄哈) 비사(非舍) 등 5인을 인견(引見)하고 낭발아한(浪孛兒罕)의 죄(罪)를 유시(諭示)하였다. 또 유시(諭示)하기를,

"올량합(兀良哈) 등이 여러 번 변진(邊鎭)을 침범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위협당하여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였다. 만약 아직도 미욱함을 고집한다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쳐서 멸망시킬 터인데, 너도 모름지기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합치도록 하라."

하니, 비사(非舍)가 대답하기를,

"후에 <침범해> 오는 자가 있거든, 청컨대 저희들이 분주(奔走)하게 공효(功效)를 다한 것이 어떠하였는지를 묻도록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명경(明鏡) 같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조(來朝)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경(明鏡)은 마음이 없고, 흑백(黑白)이 저절로 비치는 것이니, 공(功)이 있으면 상 주고 죄(罪)가 있으면 벌 주는 것은 모두 자취(自取)할 뿐이다."

하자, 비사(非舍) 등이 머리를 조아렸다. 뒤에 비사(非舍) 등이 과연 올량합(兀良哈) 가운데 변경을 침범한 자를 쳤으니, 임금의 은혜와 위엄에 깊이 감복(感服)한 탓이었다.

【원전】 7 집 37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세조 019 06/03/10(정해) / 호조 참판 김순 경창부윤 양성지를 명에 보내 칙서에 대해 회주하고 표리를 내려 준 것에 사례하다 》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순(金淳)·경창부 윤(慶昌府尹) 양성지(梁誠之)를 보내어 명(明)나라에 가서 장녕(張寧) 등이 가지고 온 칙서(勅書)에 대하여 회주(回奏)하고, 겸하여 표리(表裏)를 내려 준 것에 대하여 사례(謝禮)하고, 이어서 백치(白雉)를 바치었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천순(天順) 4년 3월 초2일에 흠차 사신(欽差使臣)인 예과 장과사(禮科掌科事) 급사중(給事中) 장녕(張寧)과 금의위 도지휘(錦衣衛都指揮) 무충(武忠) 등의 관원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의 해

당 절목에, '지금 건주 우위 도지휘(建州右衛都指揮) 동화니치(佟火你赤)와 모련위 도지휘(毛憐衛都指揮) 산동합(散冬合) 등의 주문(奏聞)에 의거하면, 모련위 도독 첨사(毛憐衛都督僉事) 낭발아한(浪孛兒罕) 등 16인이 왕에게 유혹당하여 갔는데,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상(賞)을 주다가 모두 살륙(殺戮)을 행하였으므로, 본위(本衛)의 인민(人民)들이 참지 못하여 인마(人馬)를 뽑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짐(朕)은 이 일이 중간에 반드시 별다른 연고가 있으리라고 하여, 이미 각 위(衛)에 칙유(勅諭)하여 인마(人馬)를 가볍게 움직여 원수를 맺거나 복수하여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왕(王)에게 물어서 회주(回奏)가 이르는 날에 일을 처치(處置)하겠다고 타일렀다. 지금 특별히 왕에게 묻건대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낭발아한을 유혹하여 가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저 16인을 죽이었는가? 왕은 마땅히 사실대로 일일이 주문(奏聞)하여 시비(是非)를 명백히 보이고 혹시라도 정상을 숨기거나 꾸며대어 엄폐(掩蔽)하지 말고, 거의 각 위(衛)에 일일이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잇달아 화(禍)가 맺힐 것이니, 스스로 불안(不安)을 취(取)하는 것이요, 변경(邊境)을 보호하고 이웃과 화목(和睦)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왕은 마땅히 짐(朕)의 이러한 뜻을 몸받으라.' 하였습니다. 신이 가만히 참조해 보건대 천순(天順) 3년 7월 일에 의정부(議政府)의 장계(狀啓)에 의거하면,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이 정문(呈文)을 갖추어 이르기를, 「본도(本道)의 후문(後門)에 사는 야인(野人)들이 매양 왕성(王城)에 가서 물건들을 구하여 얻으려고 하니, 역로(驛路)가 소란스런 폐단이 있고 그 찾는 물건이 한이 없으므로 옛날부터 숫자를 줄이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연전 겨울철 동안에 낭발아한이 종자(從者)를 전보다 배나 많이 데리고 왕성(王城)에 가기를 청하므로, 비직(卑職)이 예(例)에 의거하여 숫자를 줄이도록 하였더니, 낭발아한이 이로 인하여 분(憤)을 내어 동류(同類)를 선동(煽動)하고 헛소문을 만들어, 조선(朝鮮)에서 장차 거병(擧兵)하여 다 쓸어 죽이려 한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라 소동하여 산으로 오르도록 하였으며, 또 각목(刻木)하여 부험(符驗)을 만들어 부락(部落) 사람을 유혹하여 모았습니다, 통사(通事)에게 위임하여 보내어서 그 사정(事情)을 탐문(探問)하게 하였더니, 낭발아한이 그 도당(徒黨)과 더불어 활을 당겨 쏘므로 숨어서 몸을 피하여 면(免)할 수 있었습니다. 비직(卑職)이 사람을 보내어 낭발아한과 그의 처(妻) 기사가(己沙哥), 그의 아들 고난(古難)·가령합(哥另哈)·아아가독(阿兒哥禿)·목자(木者), 딸 독라고(禿羅古)와 고난(古難)의 아들 목답가(木荅哥)·저비가(這比哥), 가령가(哥另哥)의 아들 목동가(木童哥), 계집종 아아합지(阿兒哈知), 사내종 화라속(火羅速)·복라손(卜羅遜) 등을 잡아 와서 그 정상을 캐물었더니, 모두 각각 공초(供招)에 자복하였습니다. 역승가(亦升哥)가 처음에 병(病)을 고치러 온천(溫泉)에서 목욕한다고 하고 말미[暇]를 받아 갔는데, 채찍으로 곳곳에서 역리(驛吏)를 때렸으며, 말을 달려서 목욕할 온천을 지나쳐 길을 배나 빨리 하여 길주(吉州)로 갔습니다. 그와 그 아비가 통모(通謀)하러 서로 나아갔던 정적(情迹)이 드러났으므로, 아울러 모두 감금

(監禁)하여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갖추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조하건대 낭발아한의 범(犯)한 죄는 변경(邊境)의 중대한 일에 관계되니, 이치상 마땅히 구명(究明)하여 다스려야 하겠으므로, 배신(陪臣) 김국광(金國光)을 차견(差遣)하여 낭발아한 등을 다시 심문하였으며, 또 사람을 보내어 역승가(亦升哥)도 잡아서 심문하였는데, 공사(供辭)가 양정의 아뢴 바와 서로 같았습니다. 위의 항목의 낭발아한은 본래 회령(會寧) 지방에 거주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人民)과 대대로 서로 혼인하여 편맹(編氓)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승가는 신의 선부(先父) 장헌왕(莊憲王) 【휘(諱).】 때부터 와서 도성(都城)에 살면서 아내를 얻고 벼슬살이를 하였습니다. 부자(父子)가 통모(通謀)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난(亂)을 선동한 죄는 용서할 수가 없었으므로, 낭발아한·역승가·고난·가령합·아아가독·목자·목답가·저비가·목동가 등 9인은 법에 의거하여 죄를 처치하였고, 낭발아한의 아내 기사가는 본래 본국(本國) 경성(鏡城)의 민가(民家)의 딸이고, 아울러 그 소생인 딸 독라고·계집종 아아합지는 본가(本家)에 같이 모여 살게 하였고, 복라손·화라속은 회령(會寧)에 그대로 거주(居住)하여 살게 하였고, 그 나머지 당류(黨類)는 하나같이 모두 불문(不問)에 붙여서 반측(反側)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낭발아한의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도망하여 멀리 숨었는데, 그 아비의 죄악(罪惡)을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을 품고서 보복하려고 꾀하여, 그 동류(同類)들을 유인(誘引)하여 금년 정월 20일간에 회령(會寧)에서 도둑질하였습니다. 신이 사유(事由)를 갖추어 주달(奏達)한 뒤에도 금년 2월 초9일에 또 종성(鍾城)을 침범(侵犯)하다가 패배하여 물러갔으며, 14일에 부령(富寧) 지방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던 백성 남녀 아울러 6명의 사람과 소 4두(頭), 말 3필(匹)을 약탈(掠奪)하여 갔으며, 15일에 경성(鏡城)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던 백성 남녀 아울러 9명의 사람과 소 36두(頭), 말 3필(匹)을 약탈하여 갔으며 , 24일에 또 경성(鏡城) 지방에 들어와서 남녀 2명의 사람을 약탈하여 가는 등 연달아 와서 도둑질하였습니다. 지금 흠봉(欽奉)한 칙유(勅諭)를 잠깐 보니 동화니치(佟火你赤) 등이 주문(奏聞)하기를, 신을 가리켜 낭발아한을 유인(誘引)하여 자급을 올려 주고 상을 주다가 16인을 살륙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저 아비거(阿比車)의 거짓으로 유혹하는 데 넘어가서 헛말을 꾸며내어 핑계하는 것입니다. 본국(本國)에서 매양 이 무리들이 왕래하는 데 번거롭고 소란하여 접대하기가 어려운 것을 걱정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유인하여 와서 스스로 소요스러운 폐단을 일으키겠습니까? 만약 유인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무슨 까닭으로 아무 연고 없이 죽여서 스스로 변흔(邊釁)을 일으키겠습니까? 신이 비록 우매(愚昧)하나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받은 칙유(勅諭)가 정녕(丁寧)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자명(自明)하도록 하시니, 감격하여 황송하며 천일(天日)이 조림(照臨)하고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만리(萬里)의 땅에 밝게 보시니, 신은 성조(聖朝)의 은혜를 받아 적심(赤心)으로 보답하려고 도모하는데, 어찌 감히 털끝만치라도 꾸며대고 숨겨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성은(聖恩)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성자(聖慈)를 바랍니다."

하였다. 또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의 정문(呈文)의 해당 절목에 의거하건데, 「야인(野人) 낭발아한(浪孛兒罕)의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을 유인하여, 천순(天順) 4년 정월 20일에 본도(本道) 회령부(會寧府) 지방에 와서 도둑질하였습니다. 비직(卑職)이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 가니, 본적(本賊)들이 물러가서 주둔하고 본국인과 말하기를, 나의 아비가 피살(被殺)되었는데, 지금 비록 보복(報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 나라 조공(朝貢)하는 인마(人馬)가 모두 동팔참(東八站)의 산길[山路]을 거치니, 마땅히 이 땅의 산골짜기에 가서 거처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요격(邀擊)하여 창탈(搶奪)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의정부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장계(狀啓)합니다.' 하였다.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조하건대, 소방(小邦)에서 조공(朝貢)하러 왕래하는 데 항상 동팔참(東八站) 하나의 길을 경유하는데, 지금 아비거가 그의 아비의 죄악(罪惡)을 생각지 않고 보복하려는 뜻을 보건대, 전에 회령(會寧) 지방에서 분을 풀을 못하여 흔단(釁端)을 일으키기를 그치지 않으니, 중국 소유의 동팔참(東八站) 구로(舊路)는 풀과 수목(樹木)이 무성하고 빽빽하여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데, 만약 본적(本賊)이 몰래 본 땅에 와서 엿보다가 출몰(出沒)하는 일을 만난다면 길이 막히어서 불편(不便)할 것입니다. 신이 체험(體驗)하여 알기로는 요동(遼東)의 관할인 자유채(刺楡寨)의 한 길이 적경(賊境)과 멀리 떨어지고 거주하는 백성들이 흩어져 사니, 저들이 뛰쳐나와서 도둑질하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삼가 성자(聖慈)를 바라니 허락하는 명령을 밝게 내려서 자유채(刺楡寨)의 도로를 개통(開通)하여 왕래(往來)를 편하게 하여 주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사례(謝禮)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천심(天心)이 어질고 자애(慈愛)로와 회유(懷柔)하시기를 돈독히 하시고 황제께서 내리시는 물건이 거듭 이르니, 더욱 감격(感激)함이 더합니다. 분수를 헤아리건대 바라던 바를 넘으니, 뼈에 새긴들 잊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천박한 재질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삼가 제후(諸侯)의 법도를 부지런히 닦았으나, 공효(功效)를 어찌 털끝만치라도 나타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성자(聖慈)를 입으니 은혜는 실로 광비(筐篚)에 깊어서 이와 같은 은총(恩寵)과 영광은 예전에는 드물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께서 강건(剛健)하시고 정수(精粹)하시며 총명(聰明)하고 예지(睿智)하신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이 노둔(駑鈍)한 자질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번방(藩邦)의 땅을 각별히 지키면서 소절(素節)을 더욱 다하기를 맹세하며, 부로(父老)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항상 황령(皇齡)을 거듭 축수(祝壽)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황제의 권애(眷愛)가 실로 깊어서 특별히 은총스런 하사(下賜)를 받았으니, 토의(土宜)가 비록 박(薄)하지만 애오라지 사례하는 정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2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張)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製造)가 정(精)하지 못하고 명반(名般)이 심히 적으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헤아리시어 우러러 향상(享上)의 의례(儀禮)로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황태후(皇太后)의 예물(禮物)은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이었고, 중궁(中宮)의 예물(禮物)도 같았다. 그 황태자(皇太子)에게 사례(謝禮)하는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우러러 이극(貳極)에 높이 계시면서 황제의 모유(謀猷)를 가까이에서 도우시어 구중(九重)의 은혜를 인도하여 바닷가 변방(邊方)에 널리 펴시니, 감격하여 마음에 새긴들 어찌 그치겠으며, 몸이 가루가 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은 외람되게 용렬(庸劣)한 재주를 가지고 다행히 성대(盛大)한 시대를 만나 멀리 폐복(敝服)에 거치하면서, 하찮은 집양(執壤)의 의례(儀禮)만을 하였을 뿐인데, 남다른 영광(榮光)을 얻어서 재사(在笥)의 은총(恩寵)을 외람되게 입으니, 큰 은혜가 이와 같은 데 이른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태자께서 우대한 도량(度量)이 못[淵]처럼 깊고 영특한 자태(姿態)가 옥(玉)처럼 훌륭하시어 양궁(兩宮)의 권애(眷愛)를 받고 사해(四海)의 환심(歡心)을 얻으시는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이 잔열(孱劣)한 자질(資質)로 하여금 거듭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규곽의 정성[葵藿之誠]을 갑절이나 다하겠으며, 항상 강릉(岡陵)처럼 수(壽)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예물(禮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었다. 그 백치(白雉)를 바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하늘이 천운(天運)의 있는 데 임어(臨御)하여 빛나게 태평 시대(太平時代)를 여시니, 바닷가 변방(邊方) 땅에 상서(祥瑞)가 생겼으며, 크게 하사(下賜)하는 은전(恩典)을 밝게 보이시니, 삼가 황제의 뜰에 공헌(貢獻)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리를 드러냅니다. 그윽히 듣건대 창희(蒼姬)가 융성할 때 백치(白雉)의 상서(祥瑞)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먼 변방(邊方)에서 났으니, 더욱 성화(聖化)가 널리 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제께서 강건(剛建)하고 정수(精粹)하고 총명(聰明)하고 예지(睿智)하시며, 어지심이 깊어 그물을 풀어 주시니[弛罟] 나는 새·물고기·동물·식물이 모두 편안하고, 덕(德)이 흡족(洽足)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니, 화하(華夏)와 만맥(蠻貊)이 모두 따르고 순종합니다. 폐복(敝服)에서 다시 아름다운 상서(祥瑞)를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경사(慶事)스러움이 비록 온 천하에 같겠지만, 해가 뜨는 동방(東方)에서는 갑절이나 간절합니다. 애오라지 중

역(重譯)하여 진헌(進獻)하는 정성을 보이니, 영유(靈囿)에 기르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조그만치라도 돕기를 맹세하며, 번국(藩國)의 땅을 각별히 지켜서 아침저녁으로 항상 황령(皇齡)을 축수(祝壽)하며, 자자손손(子子孫孫) 길이 제후(諸侯)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였다. 그 황태자(皇太子)에게 바치는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원량(元良)께서 자리를 바로 하시어 감무(監撫)의 대권(大權)을 감당하시니, 신물(神物)이 상서(祥瑞)를 보이어 아주 좋은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역(重譯)하여 진헌(進獻)하는 충정을 보이어 하례(賀禮)하는 정성을 나타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태자(皇太子)께서는 덕(德)이 드러나서 온화하고 빛나매 마음이 어질고 효성스러운 데 돈독(敦篤)하여 황제의 교화(敎化)를 인도하여 펴시어 하늘과 땅의 조화(調和)를 이루시매, 가까이에서 황제의 모유(謀猷)를 도우시니 모든 짐승들이 다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특이한 상서(祥瑞)가 나온 것은 스스로 협화(協和)한 기운이 뭉친 결과이니, 비록 해외(海外)의 누벽(陋僻)한 땅에서 났지만 천하 문명(文明)의 응험(應驗)을 나타낸 것입니다. 감히 월상(越裳)처럼 진헌(進獻)하기를 바라니, 폐복(敝服)의 줄거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창성(昌盛)한 시대를 만나서 신령(神靈)스런 하사(下賜)를 받았으나 부추(鳧趨)의 반열(班列)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어서 연하(燕賀)의 정성을 갑절이나 바칩니다."

하였다.

【원전】 7 집 379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語文學) / *무역(貿易)

《 세조 019 06/03/13(경인) / 신숙주 등과 주본을 조사 대조하고 주문사 김순부사 양성지 등과 의논하다 》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항(崔恒)·이조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 등을 불러서 주본(奏本)을 조사 대조(對照)하고 이어서 주문사(奏聞使) 김순(金淳)·부사(副使) **양성지(梁誠之)** 등을 불러서 내전(內殿)에 들어가 일을 의논하였는데, 김순 등이 하직하였다.

【원전】 7 집 381 면

【분류】 *외교-명(明)

《 세조 019 06/03/14(신묘) / 승정원에 어찰로 양성지에게 전국의 서책을 정비하고 보존에 주의할 것을 명하다 》

어찰(御札)로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나라에서 가장 귀(貴)한 것은 서책(書冊)이기 때문에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1건(件)의 서책(書冊)을 기록하게 하고서, 장차 2건(件)을 만들어서 유실(遺失)에 대비(對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일이 많아서 조치(措置)할 수 없었고, 지금 양성지가 북경(北京)에 간다. 예문관(藝文館)의 서책(書冊)은 반드시 문신(文臣)들이 열람(閱覽)하기 때문에 혹은 파손되기도 하고 혹은 유실되기도 하니, 정원(政院)에서 속히 일을 맡길 만한 자를 골라서 국(局)을 설치하고, 온 나라의 여러 책을 거두어 모아서 먼저 총목(摠目)을 기록하여, 1건(件)은 견고히 간수하되, 탈간(脫簡)과 낙자(落字)를 상고하여 수보(修補)하고, 또 판본(板本)이 있는 곳도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381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세조 020 06/06/09(갑인) / 사은사 김순· 부사 양성지가 칙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

사은사(謝恩使) 김순(金淳)·부사(副使) **양성지(梁誠之)**가 칙서(勅書)를 가지고 돌아왔다. 황제가 흰 꿩[白雉]를 바쳤다고 하여 채단(綵段) 4표리(表裏)를 회사(回賜)하였다. 그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지금 왕(王)의 회주(回奏)를 보건대, 낭발아한(浪孛兒罕)을 죽인 실정(實情)은 대개 그가 통모(通謀)하여 반란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법(法)에 의하여 죄를 주었고, 조금도 유인(誘引)한 적이 없었던 연유(緣由)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왕의 법에 의하여 죄를 주는 것은 다만 왕국(王國)에서만 행할 수 있지, 인경(鄰境)에서는 행(行)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왕국(王國)의 법(法)으로써 인경(鄰境)의 사람을 죄주었으니, 그들이 변흔(邊釁)을 일으키지 아니하려고 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낭발아한(浪孛兒罕) 부자(父子)가 통모(通謀)하여 반란을 선동해서 이미 그 징후(徵候)가 나타났다면 마땅히 중국 조정(朝廷)에 주문(奏聞)하여 그 죄를 드러내어 사뢰어서 삼위 두목(三衛頭目)으로 하여금 훤하게 알게 한 뒤에 저들에게 붙여 보내어 데리고 가도록 하고, 마침내 그들과 서로 관계를 끊어 버리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그 잘못을 알 것이니, 비록 변경(邊境)을 소요(騷擾)스럽게 하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을 선동할 말이 없어서 거의 안정(安靜)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국왕이 갑자

기 저들 부자(父子) 9인을 죽였으니, 그 족류(族類)들이 이 소문을 듣고 분연(忿然)히 다시 복수(復讐)을 일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아들 아비거(阿比車)가 복종하지 않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왕이 법에 의하여 죄를 준 계책이 잘못된 것이다. 다만 장래(將來)의 환(患)은 왕이 스스로 도모하겠지만, 짐(朕)은 왕(王)을 위하여 염려하여 혹시라도 원망을 풀어 줄 수가 있을까 하니, 그들 가운데 아직도 5인이 <왕국에> 남아 있다는데, 그 하나는 아비거(阿比車)의 어미이다. 칙서(勅書)가 이르거든 왕은 마땅히 이 5인을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잘 안동해 보내어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이르러 중국 조정에 교부[交割]하여 아비거(阿比車)로 하여금 수령(收領)하기를 끝내어 모자(母子)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하면, 거의 원수를 풀고 군사를 풀어 보내도록 타이르겠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란(兵亂)이 잇달아서 화(禍)가 맺힐 것이니, 왕(王)이 비록 스스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한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의 때아닌 소요(騷擾)와 침해(侵害)를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또 왕국(王國)은 본래 예의의 나라[禮義之邦]로서 중국 조정을 존경하기 때문에 왕(王)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염려한다. 그 경토(境土)의 안정(安靜)을 바라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태평(太平)을 평안히 누리는 복(福)이니, 왕은 짐(朕)의 명(命)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7 집 402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세조 7년 《 양성지 - 세조 7년 .... 4 건 》

세조 024 07/05/16(을묘) / 양성지 등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화위당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
세조 025 07/07/02(경자) / 윤사분·한계희·어효첨·윤사흔·윤자환 양성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조 025 07/07/18(병진) / 계양군 이증이 주자를 잘 간수할 것을 건의하여 양성지 등의 구사를 거두었다
세조 025 07/08/27(갑오) / 양성지· 서거정과 임원준 등에게 언문으로 《명황계감》을 번역케 하다

《 세조 024 07/05/16(을묘) / 양성지 등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화위당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 》

임금이 화위당(華韓堂)의 동림정(東林亭)에 나아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익현군(翼峴君) 이관(李瑄)·의성군(誼城君) 이심(李宷)·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보성경(寶城卿) 이합(李洽)·원천경(原川卿) 이의(李宜)·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從生)·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은천군(銀川君) 이찬(李欑)·율원 부령(栗原副令) 이종(李淙)·은산 부령(銀山副令) 이철(李徹)·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권남(權擥)·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심루(沈淚)·좌참찬(左參贊) 이승손(李承孫)·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항(崔恒)·윤사분(尹士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순지(李純之)·공조 판서(工曹判書) 윤사윤(尹士昀)·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윤손(李允孫)·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김사우(金師禹)·행 상호군(行上護軍) 김개(金漑)·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질(金礩)·공조 참판(工曹參判) 어효첨(魚孝瞻)·한성부 윤(漢城府尹) 황효원(黃孝源)·호조 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송처관(宋處寬)·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석형(李石亨)·이조 참판(吏曹參判) 성임(成任)·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연손(李延孫)·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대사헌(大司憲) 이교연(李皎然)·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행 대호군(行大護軍) 정종(鄭種)·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계손(金繼孫) 및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갑자기 비가 오므로, 임금이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화위당으로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었다.

【원전】 7 집 46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세조 025 07/07/02(경자) / 윤사분 · 한계희 · 어효첨 · 윤사흔 · 윤자환 · 양성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윤사분(尹士昐)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한계희(韓繼禧)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어효첨(魚孝瞻)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윤사흔(尹士昕)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유자환(柳子煥)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홍응(洪應)을 우승지(右承旨)로, 이문형(李文炯)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겸광(金謙光)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윤흠(尹欽)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양성지(梁誠之)**를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김예몽(金禮蒙)을 겸 성균 사성(兼成均司成)으로, 권환(權瑍)을 전라도 수군 처치사(全羅道水軍處置使)로 삼았다.

【원전】 7 집 47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세조 025 07/07/18(병진) / 계양군 이증이 주자를 잘 간수할 것을 건의하니 양성지 등의 구사를 거두었다 》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이 아뢰기를,
"교서관(校書館)의 관리가 주자(鑄字)를 간수하는 것을 삼가지 아니하여, 혹은 티끌과 흙에 묻히고 혹은 유실(遺失)되기도 하며, 주자를 만들 때에 이르러 도둑맞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하니, 곧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교서관 제조(校書館提調) **양성지(梁誠之)** ·정현조(鄭顯祖)는 구사(驅使)를 거두고, 교서랑(校書郎) 김보륜(金補輪), 저작랑(著作郎) 서효우(徐効虞)·송수은(宋守殷), 교감(校勘) 강치서(姜致恕)·정유산(鄭惟産), 장자(正字) 김질(金晊) 등은 본관(本館)의 서원(書員)으로 정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474 면
【분류】 *출판-인쇄(印刷)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

《 세조 025 07/08/27(갑오) / 양성지· 서거정과 임원준 등에게 인문으로 《명황계감》을 번역케 하다 》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내종친(內宗親) 및 좌의정 신숙주(申叔舟)·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이조 판서(吏曹判書) 최항(崔恒)·호조 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행 호군(行護軍) 권총(權聰)·이효온(李孝溫) 등을 불러 시식(侍食)하게 하였다.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성균 사예(成均司藝) 이계손(李繼孫)이 하직하니, 또한 인견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승소(李承召),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송처관(宋處寬)·김예몽(金禮蒙), 예조 참의(禮曹參議) 서거정(徐居正)·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임원준(任元濬) 등을 불러 언문(諺文)으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번역하게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와 더불어 의논을 정하고 사은사(謝恩使)로 진하정난사(進賀靖難使)를 겸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48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어문학-어학(語學) / *출판-서책(書冊)

세조 8년 《 양성지 - 세조 8년 .... 4 건 》

세조 027 08/01/01(병신) / 왕비와 함께 인정전에서 왕세자·종친·재추들로부터 풍정을 받는 자리에서 양성지를 칭찬하다

세조 027 08/01/28(계해) / 양성지를 예문관 제조로 삼아 간행한 서적을 고열하게 하다

세조 029 08/08/06(무진) / 교태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최항·양성지 등에게 병서를 강론케 하다

세조 029 08/12/08(무진) / 양성지 등이 입시하고 사정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숙배하는 정창손과 더불어 춤을 추다

《 세조 027 08/01/01(병신) / 왕비와 함께 인정전에서 왕세자 · 종친 · 재추들로부터 풍정을 받는 자리에서 양성지를 칭찬하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종친(宗親)·재추(宰樞)들이 풍정(豊呈)을 바치었다. 임금이 **양성지(梁誠之)**에게 이르기를,

"경(卿)이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아는가?"

하고, 《태평광기》 중의 말을 이야기하였다. **양성지**가 아뢰기를,

"옛날 당(唐)나라 재상(宰相) 소회(蘇晦)와 이교(李嶠)의 두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였는데, 중종(中宗)이 불러서 앞에 두고 물건을 심히 후하게 내려 주고, 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읽은 글에서 어떤 일이 가장 좋던가?' 하니, 소회의 아들 소막(蘇邈)이 말하기를, '< 《서경(書經)》 에> 재목(材木)은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諫)함을 따르면 성군(聖君)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교의 아들은 말하기를, '< 《서경(書經)》 에> 아침에 물 건너는 사람의 정강이를 자르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쪼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중종이 말하기를, '소회는 아들이 있으나 이교는 아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경은 일로 인하여 임금을 권계(勸戒)하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원전】 7 집 50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27 08/01/28(계해) / 양성지를 예문관 제조로 삼아 간행한 서적을 고열하게 하다 》

처음에 예문관(藝文館)에서 문신(文臣)과 성중관(成衆官) 등을 모아서,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를 제조(提調)로 삼아 서적(書籍)을 간행(刊行)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명하여 예문관에 가서 그 서적(書籍)을 다 실어 와서 문학(文學)을 아는 종친(宗親) 등으로 하여금 고열(考閱)하게 하니, 잘못된 것이 많았다. 명하여 창준인(唱准人) 등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갓[笠]을 쓰고 그대로 출근하여서 속죄(贖罪)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509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29 08/08/06(무진) / 교태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최항· 양성지 등에게 병서를 강론케 하다 》

임금이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니 내종친(內宗親) 및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우찬성 구치관(具致寬)·중추원 부사 송처관(宋處寬)·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술자리를 베풀고 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병조 참판 김국광(金國光)·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 · 형조 참판 서거정(徐居正) · 중추원 부사 한계희(韓繼禧) · 형조 참의 이예(李芮)를 불러 병서(兵書)를 강론(講論)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54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세조 029 08/12/08(무진) / 양성지 등이 입시하고 사정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숙배하는 정창손과 더불어 춤을 추다 》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璔)·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덕성군(德成君) 이민(李敏)·은산령 이철(李徹)·하성위 정현조(鄭顯祖)·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좌참찬 이승손(李承孫)·행 첨지중추원사 이변(李邊)·계림군(鷄林君) 이흥상(李興商)·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어효첨(魚孝瞻)·이조 판서 박원형(朴元亨)·호조 판서 조석문(曹錫文)·중추원 부사 송처관(宋處寬)·행 첨지중추원사 **양성지(梁誠之)**·대사헌 함우치(咸

禹治)와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강원도 관찰사 김예몽(金禮蒙)·충청도 관찰사 최한경(崔漢卿) 등이 와서 숙배(肅拜)하니, 모두 인견(引見)하고 정창손에게 위로해 유시(諭示)하기를,

"경이 내가 세자를 자랑하는 말에 대답에 실수를 하였고, 본래 정실(情實)이 없었으니, 곧 소환(召還)하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논의가 있을까 염려한 까닭에 감히 못하였다."

하고, 김예몽·최한경 등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대략을 물었다. 이보다 먼저 김한(金澣)이 근수노(根隨奴)가 주는 것을 받은 까닭으로써 사헌부에서 추핵하였는데, 유사(宥赦)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였다. 함우치가 술을 올렸다. 임금이 김한을 불러 전지하기를,

"대사헌이 경을 내치고자 하였는데 내가 유사(宥赦) 전이라 하여 특별히 논하지 말게 하였으니, 경은 이를 알라."

하고, 정창손에게 술을 올리기를 명하고 정창손의 소매를 잡고 일어나서 춤을 추니, 여러 종친과 재상들이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원전】 7 집 55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세조 9년 《 양성지 - 세조 9년 .... 13 건 》

세조 030 09/03/29(무오) / 권남·최항·양성지에게 실록을 춘추관에서 상고케 하고 주악과 절화를 내리다. 어제시의 내용

세조 030 09/05/30(무오) / 총통을 훔친 자를 잡아 국문토록 하다. 양성지가 서책을 상고하여 교정하고 올린 글에서 연호 표시, 규장각의 설치를 건의하다. 그리고 양성지의 학구열을 극찬하다

세조 031 09/09/05(신유) / 최항·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의 편찬을 명하다·명황계감을 수교하게 하다

세조 031 09/09/09(을축) / 서현정에서 소형명을 써서 습진하다· 양성지 등이 어제시를 짓다

세조 031 09/09/13(기사) / 신숙주와 역대의 인물과 명도·이천·염계·사마광의 문장과 사업을 논하다

세조 031 09/09/20(병자) / 양성지·윤찬·이파·이계전·신면·윤필상·한치영·안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조 031 09/09/27(계미) / 동국통감의 편찬을 양성지가 맡고, 신숙주·권남이 감수하게 하다

세조 031 09/11/12(병인) / 동국지도가 완성되다

세조 031 09/11/15(기사) / 비련합에서 경서의 강과, 의학의 시강을 하게 하다·사정전에 헌가를 베풀다

세조 031 09/11/17(신미) /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하고 겸관을 정하다

세조 031 09/11/23(정축) / 박원형을 홍문관 대제학으로, 양성지를 제학으로, 노사신을 직제학으로 삼다

세조 031 09/11/25(기묘) / 이순지가 지리서를 바치다·곽연성에게 활·칼·마장을 내려 주다

세조 031 09/12/11(을미) / 납향제의 음복연을 베풀다. 야인 장기대 등을 인견하고 술을 바치게 하다

《 세조 030 09/03/29(무오) / 권남 · 최항 · 양성지에게 실록을 춘추관에서 상고케 하고 주악과 절화를 내리다. 어제시의 내용 》

좌의정(左議政) 권남(權擥)·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에게 실록(實錄)을 춘추관(春秋館)에서 상고[攷]하게 하였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에게 명하여, 가서 주악(酒樂)과 절화(節花)를 내려 주게 하고, 어찰(御札)로 말하기를,

"원훈(元勳)에게 주악(酒樂)과 절화(節花)를 내려 줌은 경(卿)들에게 서적을 종일토록 상고하게 하려 함이요, 나는 한자[一字]라도 상고하지 못하게 함이다."

하고, 이어서 어제시(御製詩)를 내려 주니, 시(詩)에 말하기를,

"확강(確强)함을 어찌 대축(大畜) 밖에서 구하며

속문(俗文)이 호적(浩積)한 것을 어찌 헤아려 족하랴?

원훈(元勳)이 마침내 군신(群臣)과 더불어 모였으니,
본시 샘 근원이 있고 또 비에 젖었도다.
기연(祈然)히 술잔을 놓고 성한 봄을 당하니,
병의 꽃을 좇으며 상 주는 것보다 나음이 있지 않으랴?"
【대축(大畜)은 내록(內錄)의 이름이다.】
하니, 권남(權擥)과 최항(崔恒)·**양성지(梁誠之)** 등이 모두 화답(和答)하여 올리었다.

【원전】 7 집 571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30 09/05/30(무오) / 총통을 훔친 자를 잡아 국문토록 하다. 양성지가 서책을 상고하여 교정하고 올린 글에서 연호 표시, 규장각의 설치를 건의하다. 그리고 양성지의 학구열을 극찬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니, 내종친(內宗親)과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결(沈決)·공조 판서 김질(金礩)·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김개(金漑)·이조판서 어효첨(魚孝瞻)·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홍익생(洪益生)·예조 참판(禮曹參判) 김길통(金吉通)·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서(李墅)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부장(部將) 문석한(文碩漢)이 총통(銃筒)을 훔친 자를 잡아서 아뢰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계손(李繼孫)에게 명하여 형조(刑曹)에 가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일찍이 흰 기러기[白雁]를 바쳤으니, 이제는 흰 꿩[白雉]을 바쳐야 마땅한데, 누가 갖다가 바칠 만한 자인가?"

하니, 신숙주(申叔舟)가 강예관(講隸官) 노삼(魯參)을 천거하므로, 명하여 보내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학(諸學)은 정(精)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의학(醫學)·산학(算學)·잡학(雜學)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의 잡학자(雜學者)는 모두 그 업(業)을 정(精)하게 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단지 수직(受職)하는 데만 힘써서 겨우 시재(試才)를 갖출 뿐이니, 심히 불가합니다. 제학(諸學)의 무리가 비록 모두

그 업(業)을 통할 수는 없더라도 그 가운데 2, 3인이 능통(能通)하면 또한 족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양성지(梁誠之)**에게 말하기를,

"서책(書冊)을 상고하고 교정(校正)하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서적(書籍)이 산란(散亂)하여 이제 비록 정제(整齊)하였더라도 이를 간직하여서 고열(考閱)에 갖추게 하라."

하였다. 양성지가 드디어 글[書]을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그윽이 역대(歷代)의 서적을 보건대, 혹 명산(名山)에 간직하고 혹 비각(秘閣)에 간직한 것은 유실(遺失)을 대비하여 영구히 전하는 소이(所以)입니다. 전조(前朝)의 숙종(肅宗)이 비로소 경적(經籍)을 간직하고, 그 도서(圖書)의 글[文]을 하나는, '고려국(高麗國) 14엽(葉) 신사세(辛巳歲)의 어장서(御藏書) 대송 건중 정국(大宋建中靖國) 원년(元年)·대요 건통(大遼乾統) 9년이라.' 하고, 하나는 '고려국 어장서(高麗國御藏書)라.' 하였습니다. 숙종조(肅宗朝)로부터 이제까지 6백 63년인데도 인문(印文)이 어제 한 것과 같이 문헌(文獻)을 상고할 만하고, 이제 내장(內藏)된 만권(萬卷)의 서책은 그 때에 소장(所藏)하여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빌건대, 지금의 장서(藏書) 뒷면의 도서(圖書)는 '조선국 제6대 계미세 어장서(朝鮮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 본조(本朝) 9년·대명 천순(大明天順) 7년이라.' 일컫고, 진자(眞字)를 가지고 이를 쓰며, 앞면의 도서(圖書)는 '조선국 어장서(朝鮮國御藏書)'라 일컫게 하고, 전자(篆字)를 가지고 이를 써서 제책(諸冊)에 두루 나타내어, 만세(萬世)에 밝게 보이며, 혹 신라(新羅)와 전조(前朝) 성시(盛時)의 예(例)에 의하여 따로 연호(年號)를 세워서 표지(標識)를 삼게 하소서.

신(臣)은 또 그윽이 보건대, 군상(君上)의 어필(御筆)은 운한(雲漢)으로 더불어 그 소회(昭回)함이 같으며, 규벽(奎璧)으로 더불어 그 찬란(粲爛)함이 같으니, 만세(萬世)의 신자(臣子)들이 마땅히 준각(尊閣)할 바이고 보장(寶藏)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조 성제(宋朝聖製)의 예(例)는 모두 건각(建閣)하고 간직하게 하되, 관(官)을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였으니, 태종(太宗)은 '용도각(龍圖閣)이라.' 하고, 진종(眞宗)은 '천장각(天章閣)이라' 하고, 인종(仁宗)은 '보문각(寶文閣)이라' 하고, 신종(神宗)은 '현모각(顯謨閣)이라' 하고, 철종(哲宗)은 '휘유각(徽猷閣)이라' 하고, 고종(高宗)은 '환장각(煥章閣)이라' 하고, 효종(孝宗)은 '화문각(華文閣)이라' 하여, 모두 학사(學士)·대제(待制)·직각(直閣) 등

의 관직[官]을 두었으니, 바라건대, 이제 신 등이 어제 시문(御製詩文)을 마감하여 올리니, 인지당(麟趾堂)의 동쪽 별실(別室)에 봉안(奉安)하여 규장각(奎章閣)이라 이름하고, 또 제서 소장(諸書所藏)의 내각(內閣)을 비서각(秘書閣)이라 이름하여, 모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직각(直閣)·응교(應敎) 등의 관직[官]을 두어, 당상(堂上)은 다른 관직을 겸대(兼帶)하게 하고, 낭청(郎廳)은 예문녹관(藝文祿官)을 겸차(兼差)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본국 지도(本國地圖)를 내다 신숙주(申叔舟)와 **양성지(梁誠之)**에게 보이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수찬(修撰)하게 하며, 이어서 양성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양성지는 젊어서부터 지리(地理)를 강기(强記)하였고, 그가 집현전(集賢殿)에 있으면서 임무를 마칠 때를 당하면, 그 옛적에 생각하였던 한자[一字]를 손바닥 위에 쓰고, 집에 이르면 제서(諸書)를 다 상고하여 보았으니, 옛적에도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갖춘 것을 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군신(群臣)으로 하여금 각기 장점을 바치게 한다면 국가의 서사(庶事)를 어찌 구제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재추(宰樞)는 모두 내 말을 들으라. 양성지의 일은 진실로 옳다. 무릇 사람이 학문(學文)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내 또한 일찍이 한자[一字]를 써서 유추(類推)하여 행한 것이 자못 많았으니, 양성지가 손바닥에 써 가지고 깊이 생각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를 불러 어탑(御榻)에 오르게 하고, 세자(世子)에게 이르기를,

"마음의 처음 발(發)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곳이 된다. 동방으로 터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방으로 터 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니, 그 공부를 삼가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로 네 몸에 있다."

하였다.

【원전】 7 집 57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재정-진상(進上)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역사(歷史) / *과학(科學)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31 09/09/05(신유) / 최항 · 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의 편찬을 명하다 · 명황계감을 수교하게 하다 》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서 소형명(小形名)을 써서 습진(習陣)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이파(李坡)와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명하여 이준(李浚)과 이부(李溥)를 장수(將帥)로 삼아 좌상(左廂)·우상(右廂)으로 나누어 습진(習陣)하게 하였다. 또 최항(崔恒) · **양성지(梁誠之)** · 송처관(宋處寬) · 이파(李坡)와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수령(金壽寧)에게 명하기를,

"우리 나라의 역사가 착란(錯亂)하여 통일이 없으니, 내가 《동국사략(東國史略)》 · 《삼국사(三國史)》 · 《고려사(高麗史)》 등의 책을 참작(參酌)하여 거기에서 빼거나 보태어서 억지로라도 한 책을 만들어 이름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이라 하고, 장래에 밝게 보여 주어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니, 경들이 그것에 힘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최항 · **양성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에게 명하여 최항 등이 편찬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수교(讎校)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58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편사(編史)

《 세조 031 09/09/09(을축) / 서현정에서 소형명을 써서 습진하다 · 양성지 등에게 어제시를 보이다 》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좌참찬(左參贊) 성봉조(成奉祖)·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술자리를 베풀고,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와 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을 좌상(左廂)·우상(右廂)으로 나누어 소형명(小形名)을 써서 습진(習陣)하였다. 또 판한성(判漢城) 이석형(李石亨)·대사헌(大司憲) 서

거정(徐居正)·공조 참판(工曹參判) 성임(成任)·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강희안(姜希顔)·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김처례(金處禮)·이파(李坡), 호조 참판(戶曹參判) 임원준(任元濬)·형조 참의(刑曹參議) 이예(李芮)·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최사로(崔士老)와 문신(文臣)들도 불러서 또한 입시(入侍)하게 하고, 명하여 태조(太祖) 시(詩)에 화답(和答)하게 하였다. 또 어제시(御製詩)를 보였는데, 이르기를,

"푸른 봉우리가 저절로 오산(吳山) 봉우리와 다른데,
시부(侍符)를 움켜잡고 대도(大度) 가운데 우유(優游)하네.
세상에 드문 신무(神武)가 온 천하에 들리니
우주(宇宙)를 빠짐없이 차지하더라도 수용하지 못할 리 없었네."
하였다.

한참 있다가 또 어제시(御製詩)를 지어 보였는데, 이르기를,

"세계(世界)는 안개에 싸여 천봉(千峯)이 어두컴컴한데,
맑은 바람이 불어서 대허(大虛)의 중심을 깨뜨리네.
메마르고 축축한 풍진(風塵)의 흙을 몇 번이나 겪었던고?
온갖 종류의 물건이 빛을 탄다면 그 누가 숨겨줄 수 있으리오?"
하였다.

【원전】 7 집 58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31 09/09/13(기사) / 신숙주와 역대의 인물과 명도 · 이천 · 염계 · 사마광의 문장과 사업을 논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니,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봉성정(鳳城正) 이이(李倎)·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계림군(鷄林君) 이홍상(李興商)·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호조 참판(戶曹參判) 임원준(任元濬)·예조 참의(禮曹參義) 조변안(曹變安)·공조 참의(工曹參義) 심선(沈璿)·지병조사(知兵曹事) 윤자(尹慈)·

지형조사(知刑曹事) 김진지(金震知)와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고, 대간(臺諫)·육조 낭관(六曹郎官)이 각각 1원(員)씩 계단 위에 앉았다. 술자리를 베푸니, 황국화(黃菊花)·백국(白菊花) 각각 1떨기씩을 담은 화분[瓦盆]을 전(殿) 가운데에 놓았다. 전지(傳旨)하기를,

"오늘 경들과 더불어 국화를 감상하고자 하니, 마땅히 각각 취하도록 마시라."

하고, 어서(御書)를 내려 이르기를,

"천지(天地)에 꽃이 있어서 사철을 구분하는데, 지금 9월을 당하여 어찌 9일에 구애할 것인가? 나는 천시(天時)를 당하여 명일(名日)에 구애하지 않으니, 시속(時俗)을 다스리고 도(道)를 따를 뿐이다."

하고, 또 시제(詩題)를 내기를,

"술과 국화와 임금과 신하가 모두 조화되다."

라고 하였다.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어탑(御榻)에 오르게 하여서 손을 잡고 술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역대의 인물과 명도(明道)·이천(伊川)·염계(濂溪)·사마광(司馬光)의 문장(文章)과 사업(事業)을 논하였다. 신숙주· 구치관· 이홍상(李興商)· 김담· 이석형· 곽연성(郭連城)· 임원준(任元濬)· 노사신· 심선 등에게 매[鷹子] 각각 1련(連)씩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58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과학-생물(生物)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31 09/09/20(병자) / 양성지 · 윤찬 · 이파 · 이계전 · 신면 · 윤필상 · 한치형 · 안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윤찬(尹贊)을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이파(李坡)를 우승지(右承旨) 지예조사(知禮曹事)로, 이계전(李季甸)을 좌부승지(左副承旨) 지호조사(知戶曹事)로, 신면(申沔)을 우부승지(右副承旨) 지공조사(知工曹事)로, 윤필상(尹弼商)을 동부승지(同副承旨) 지형조사(知刑曹事)로, 한치형(韓致亨)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안지(安止)를 검교 영중추원사(檢校領中樞院事)로 삼았다. 이날 명하여 박수장(朴壽長)·손소(孫昭)·허종(許琮)·최호원(崔灝元)·김치리(金致利)·박자곤(朴自昆)·이덕량(李德良)·남이(南怡)·양진손(梁震孫)·박숙선(朴叔善) 등에게 1자급(資級)을 더 올려 주었다.

【원전】 7 집 5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31 09/09/27(계미) / 동국통감의 편찬을 양성지가 맡고, 신숙주 · 권남이 감수하게 하다 》

장의사(壯義寺)에 거둥하였다가 환궁(還宮)하니, 풍정(豊呈)을 바쳤다.

길창 부원군(吉昌府院君) 권남(權擥)을 불러서 말하기를,

"중궁(中宮)이 나의 탄일(誕日)에 이 찬치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마침 이승손(李承孫)이 졸(卒)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금일에 베푸는 것을 내가 정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진실로 지극한 정(情)에서 나오는 것이면 비록 미천(微賤)한 자일지라도 거절할 수 없는데, 하물며 중궁(中宮)이겠는가? 금일 장의사(壯義寺)에 왕래(往來)하느라고 몸이 몹시 피로하지만, 그런데도 이 잔치를 받는 것은 중궁(中宮)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렸을 때 방장(方壯)한 혈기(血氣)로써 병을 이겼는데, 여러 해 전부터 질병이 끊어지지 않으니, 일찍이 온천(溫泉)에 목욕(沐浴)하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에 뜻을 두는 것은 내 한 몸을 위해서 백성들을 수고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이런 행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기필(期必)할 수 없지만 만약 또 심해지면 어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와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 《동국통감(東國通鑑)》 을 수찬하는 데 반드시 많은 문신(文臣)들을 모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최항(崔恒)에게 의논하라."

하니, 권남이 말하기를,

"사람이 적으면 늦어질 것이고, 사람이 많으면 빨라질 것이니, 매한가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다만 궐내(闕內)의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편찬하게 하라."

하고, 이파로 하여금 그 적당한 인물을 써오게 하니, 이파가 세자 정자(世子正字) 최명손(崔命孫)·예문 봉교(藝文奉敎) 신숙정(申叔楨)·대교(待敎) 원숙강(元叔康)의 이름을 써서 바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여러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편찬하고, 신숙주·권남이 이를 감수(監修)하라."

하였다. 이파가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니, 효령 대군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파를 아들처럼 대접하고 내 소생(所生)과 다름이 없이 합니다."
하고, 또 이파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아비와 심상(尋常)한 사이에 비할 수가 없다. 매양 너를 볼 적마다 항상 생각한다."
하였다.

【원전】 7 집 58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세조 031 09/11/12(병인) / 동국지도가 완성되다 》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척(鄭陟)·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등이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바쳤다. 이보다 앞서 정척과 양성지 등에게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상고하여 확정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던 것이다.

【원전】 7 집 593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 세조 031 09/11/15(기사) / 비현합에서 경서의 강과, 의학의 시강을 하게 하다 · 사정전에 헌가를 베풀다 》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서, 성균 유학(成均儒學) 박정손(朴精孫) 등 5인과 겸예문(兼藝文) 정난종(鄭蘭宗) 등 3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왕세자(王世子)와 내종친(內宗親)과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전순의(全循義)·호조 참판(戶曹參判) 임원준(任元濬)도 또한 의학(醫學)을 시강(侍講)하고, 이어서 의서(醫書)의 창준(唱準) 인원(人員)을 불러서 마련(磨勘)하게 하였다. 또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등을 불러서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사정전(思政殿)에 헌가(軒架)소를 베풀고,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악생(樂生)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였다.

또 양성지와 더불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일을 의논하였다.

【원전】 7 집 594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예술-음악(音樂) / *역사-편사(編史)

《 세조 031 09/11/17(신미) / 양성지의 제안을 이때에 받아들여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하고 겸관을 정하다 》

처음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숭문전(崇文殿)·홍문관(弘文館)을 세우고 모두 겸관(兼官)을 설치하여 출납을 맡기자고 의논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숭문전(崇文殿)을 세운다면 후세(後世)의 인주(人主)들 가운데 혹시 시문(詩文)을 짓기를 좋아하여 오로지 술작(述作)만을 일삼을 자가 있을까봐 따를 수가 없다.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弘文館)으로 한다면 그것은 좋다. 거기에 설치하는 겸관(兼官)은 대제학(大提學) 1명, 제학(提學) 1명, 직제학(直提學) 1명, 직관(直館)1명, 박사(博士) 1명, 저작랑(著作郞) 1명, 정자(正字) 2명으로 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594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세조 031 09/11/23(정축) / 박원형을 홍문관 대제학으로, 양성지를 제학으로, 노사신을 직제학으로 삼다 》

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을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를 제학(提學)으로,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삼았다.

【원전】 7 집 59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세조 031 09/11/25(기묘) / 이순지가 지리서를 바치다 · 곽연성에게 활 · 칼 · 마장을 내려 주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갔다.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과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등도 또한 시측(侍側)하고 악장(樂章)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순지(李純之)가 지리서(地理書)를 가져 와서 바치고, 어전(御前)에서 논하여 대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이순지같이 정교(精巧)하게 할 사람이 없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농사짓는 일은 종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고, 길쌈하는 일은 계집종에게 물어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음양(陰陽)·지리(地理) 따위의 일은 나는 반드시 이 사람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청평군(淸平君) 곽연성(郭連城)이 하직하고 평안도(平安道)로 가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여 활·칼·마장(馬粧)을 내려 주고, 임금이 입고 있던 산달피(山獺皮) 갖옷을 벗어서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이 옷이 비록 나쁘지만, 그러나 모피(毛皮)의 성질은 매우 따뜻하니, 추위를 막는 데는 알맞을 것이다. 지금 이 때문에 경에게 내려 주는 것이다."

하고, 최항에게 이르기를,

"내가 곽연성에게 옷을 벗어서 입히었다."

하였다. 곽연성은 성질이 위험하고 가혹(苛酷)하여 아랫사람들을 대하는데 조금도 은혜가 없었고 가인(家人)에게는 더욱 심하였다. 항상 커다란 곤장과 몽둥이를 쓰며 자기 자리의 오른쪽에 두고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록 처첩(妻妾)이라도 매를 때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인(家人)이 모두 원망하여, 그가 죽자 처첩(妻妾) 이하 한 사람도 우는 자가 없었다.

【원전】 7 집 59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세조 031 09/12/11(을미) / 납향제의 음복연을 베풀다. 야인 장기대 등을 인견하고 술을 바치게 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납향제(臘享祭)의 음복연(飮福宴)을 베풀었다. 헌관(獻官) 홍윤성(洪允成)·이변(李邊),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應大君)

이염(李琰)·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중추원 사(中樞院使) 어효첨(魚孝瞻)·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壽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인순부 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니, 야인(野人) 장기대(將其大)·군유(軍有)·옥시(玉時) 등 3인을 인견(引見)하고 술을 바치도록 하였다. 홍윤성(洪允成)에게 명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물으니, 군유(軍有)는 자기에게 관직(官職)을 더해 주기를 청(請)하고, 또 장기대(將其大)와 같은 안마(鞍馬)·궁검(弓劍)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라에 아무런 공(功)이 없으니, 관직을 주는 것만도 족한데, 또 외람되게 청하니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한다. 다만 먼 곳 사람이 정성을 바쳐서 내부(來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한다. 그러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끌어내게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에게 이르기를,

"야인의 끝없는 욕심을 비록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또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다. 다시 우대하고자 하는데 만약 관직을 주고 상사(賞賜)할 따위의 물건들이라면 네가 신숙주(申叔舟)·홍윤성(洪允成) 등에게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고, 봉석주(奉石柱)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의 옛 친구인데, 다만 네가 여러 차례 국법(國法)을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러 훈신(勳臣)같이 대접하지 않는데, 이것은 네가 자취(自取)한 것이니 혐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7 집 59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야(野)

세조 10년 《 양성지 - 세조 10년 .... 21 건 》

세조 032 10/01/15(무진) / 원구단에 제사하다
세조 032 10/01/22(을해) / 우의정 구치관에게 《동국통감》의 착오를 살피게 하다
세조 032 10/02/17(경자) / 임금이 온양으로 행행하고자 하여 정창손·박원형 등을 수상과 주장으로 삼다
세조 033 10/04/11(계사) / 정인지와 노비의 일로 다툰 사직 허혼을 하옥시키다
세조 033 10/04/14(병신) / 한명회가 야인 조삼파의 동향에 대해 아뢰다
세조 033 10/04/22(갑진) / 노사신·박원형 등과 아산군의 설치·과거에 관한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세조 033 10/04/26(무신) / 양성지가 홍문관의 서적에 관한 일에 대해 사목을 만들게 하다
세조 033 10/05/01(계축) / 상정소의 관리를 불러 행간을 만들게 하다. 이맹헌이 논어를 강하다
세조 033 10/05/28(경진) / 양성지가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상언하다
세조 033 10/06/29(신해) / 양성지가 고금의 서적을 강하게 하는 규정에 대해서 아뢰다
세조 033 10/07/23(갑술) / 정인지 등이 대책의 고과를 정하다
세조 033 10/07/25(병자) / 대책에 합격한 자들에게 와서 사은하게 하다
세조 033 10/07/27(무인) / 예승석 등이 변방의 군사를 부리는 일 등의 폐단에 대해서 아뢰다
세조 034 10/08/01(임오) / 비현합에서 성균 유생과 무재록에게 경서와 《무경》을 강하게 하다
세조 034 10/08/01(임오) / 양성지가 군법·군정·군액·군제·사역에 관한 일로 상서하다
세조 034 10/08/08(기축) / 김질·홍윤성·정식 등으로 삼갑전을 행하게 하다
세조 034 10/09/08(무오) / 《무경》을 주석하고 《의서유취》를 편찬한 사람들에게 자급을 올려 주다
세조 034 10/09/19(기사) / 승정원에 첩종령을 행할 것을 통지하다
세조 034 10/10/02(임오) / 중궁과 더불어 풍양의 강무에 거동하다. 송골매를 진헌하게 하다
세조 034 10/10/24(갑진) / 하삼도 관찰사가 년분의 등급을 아뢰니 의정부·육조에 논의하게 하다
세조 034 10/10/26(병오) / 종친·재추가 문안하다

《 세조 032 10/01/15(무진) / 원구단에 제사하다 》

원구(圓丘)에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음악을 사용하였다. 그 의례는 이러하였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 5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그 의복을 입고 들어와서 찬

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여러 신위(神位)의 대축(大祝)들이 신위판(神位版)을 자리에 설치한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계[卯階]로부터 올라와서 단(壇)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刻) 전에 여러 사관(祀官)과 배사(陪祀)할 여러 관원이 각각 그의 제복(祭服)을 입고, 【사관(祀官)은 제복(祭服)으로 하고, 배사관(陪祀官)은 조복(朝服)으로 한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유(壝)의 동문(東門)으로 들어와 먼저 단(壇)의 남쪽 현(縣)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로 해서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배사(陪祀)할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각각 바깥 유(壝)의 동문(東門)·서문(西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왕세자(王世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아래도 같다.】 알자(謁者)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한다. 또 알자(謁者)·찬인(贊引)이 각각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모두 유(壝)의 동문(東門)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監察)·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協律郞)·봉조관(捧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羃者)를 인도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贊者)가 전갈을 한다. 【무릇 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아래도 같다.】 감찰(監察)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주소(廚所)로 나아가며, 찬인이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알자. 찬인이 각각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을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알자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재랑(齋郞)을 인도하여 각각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을 씻고 작을 닦고 나서 비(篚)에 넣어 준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여러 사관(祀官)이 장차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판통례(判通禮)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조금 후에 또 외판(外辦)하기를 계청한다. 전하(殿下)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선(繖扇)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유(中壝)의 남문(南門) 밖에 이르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리고 예의사가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산선과 보(寶)는 문 밖에 정지한다.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도 또한 문밖에서 머무른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정문(正門)에 서고 자리에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선다. 【매양 서게 되면 예의사는 물러나서 왼쪽에 선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헌가(軒架)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나무를 태우고 털과 피[毛血]를 묻으면 여러 대축(大祝)들이

생수반(牲首盤)과 모혈두(毛血豆)를 들어서 각각 그 계단을 경유하여 축사(祝史)에게 주고, 축사는 각각 생반(牲盤)을 받들어 요단(燎壇) 위에 나아가 나무를 더하여 이를 굽는다. 또 대축은 각각 모혈두를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고 네 번 절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알자가 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알자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올라가 호천 상제(昊天上帝)의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선다. 【알자는 단 아래에서 머무른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폐백을 드리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호천 상제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한다. 예의사가 궤(跪)·진규(搢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는다. 【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피운다. 근시가 향로를 드리고 진폐 진주관이 옥폐(玉幣)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헌옥폐(獻玉幣)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옥폐를 받들어서 전폐진주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진향(進香)·진폐(進幣)할 때는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西向)하고, 전로(奠爐)·전폐(奠幣)할 때는 서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며, 진작(進爵)도 이와 같다.】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황지기(皇地祇)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香)을 올리고 옥폐를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음에 배위(配位)의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옥폐를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진폐 진주관 이하(以下)가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계[午陛]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배위(配位)에 폐백을 드리려고 할 때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여 남동계[巳陛]를 경유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알자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여 남서계[未陛]를 경유하여 일시(一時)에 야명위(夜明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풍운뢰우위(風雲雷雨位)에 나아가며, 다음에 해독산천위(海瀆山川位)에 나아간다. 진찬(進饌)·헌작(獻爵)도 이와 같다.】 축사(祝史)가 향합(香合)을 받들고, 재랑(齋郎)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운다. 재랑이 향로를 올리고, 대축이 폐백을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 대명신위(大明神位) 앞에 올린다. 좌분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여 다음에 성신위(星辰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동해위(東海位)·남해위(南海位)·서해위(西海位)·북해위(北海位)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 전하가 이미 올라가 폐백을 올리면 알자가 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봉조관(奉俎官)을 인도하여 찬소(饌所)에 나가서 전하가 폐백 올리기를 기다린다. 이를 마치면 축사가 솥에 가득히 생갑(牲匣)을 담고, 진조관·전조관이 봉조관을 거느리어 각각 생갑을 받들어 정문(正門) 밖에 나가서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찬(饌)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헌가(軒架)에서는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하고 찬(饌)이 각각 그 뜰에 이르면, 【전하가 장차 오르려고 하면 진조관·봉조관이 먼저 오르고, 전조관은 뒤에 오른다.】 전사관이 본디 자리로 나아간다. 【정위(正位)의 3찬은 남계 아래에 서고, 동쪽 3위의 찬(饌)은 남동계에, 서쪽 3위의 찬은 남서계 아래에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찬(饌)을 올리도록 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위(上帝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예의사가 궤(跪)·진규(搢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동쪽에서 꿇어앉아 규를 꽂는다. 【분헌관과 백관도 꿇어앉는다.】 진조관 등이 생갑을 받들어 동쪽에서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진찬(進饌)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생갑을 받아 전조관에게 주고, 전조관은 서쪽에서 신위 앞에 올리고는 모두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집규·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분헌관과 백관도 같이 한다.】 다음에 황지기(皇地祇)에 나아가며, 다음에 배위 앞에 나아가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진조관 이하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음악을 그치며,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의 준소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이르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집준자(執尊者)가 멱을 들고, 근시(近侍)가 범제(泛齊)를 떠내면, 진폐 진주관이 작으로써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궤(跪)·진규(搢圭)하기를 계청한다. 【백관도 꿇어앉는다.】 진폐 진주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전폐전주관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예의사가 집규·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다음에 황지기위(皇地祇位) 앞에 나아가 헌작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신위(上帝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고, 대축(大祝)이 동향하고 꿇어앉아 축문(祝文) 읽기를 마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고, 예의사가 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헌작하

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풍악을 그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는 물러나고,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행하라.' 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는데, 【초헌례와 같은데 다만 예제(醴齊)를 떠낸다.】 헌가(軒架)에서 정대업지악을 연주하고 정대업지무를 춘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는데, 【아헌례와 같은데 다만 앙제(盎齊)를 떠낸다.】 대축(大祝)이 정배위(正配位) 3위의 준소에 나아가 각각 제일준(第一尊)의 복주(福酒)를 떠내어 한 잔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상제위(上帝位)의 조육(俎肉) 다리 하나를 덜어내어 올린다. 집례가 말하기를, '복조(福胙)를 하사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진폐 진주관과 진조관이 동계[卯陛]를 지나서 오른다. 대축이 작을 진폐 진주관에게 주면, 진폐 진주관이 작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궤·진규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고, 【분헌관과 백관도 다같이 꿇어앉는다.】 작을 받아 졸작(卒爵)하면, 진폐 진주관이 빈 작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또 대축이 조(俎)를 진조관(進俎官)에게 주면, 진조관이 조를 받들고 서향(西向)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수조(受俎)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조를 받들어 남계로부터 내려와 문을 나가서 사옹(司饔)에게 준다. 진폐 진주관과 진조관이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籩)·두(豆)를 걷어 치우고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성안지악(成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대축은 각각 변·두를 걷어 치운다. 【걷는다는 것은 변·두를 각각 하나씩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송신례(送神禮)를 행하라.' 하면, 헌가에서 영안지악(寧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예의사가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로 돌아간다. 전하가 중유문(中壝門) 밖에 이르러서 예의사가 석규(釋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놓고 근시가 규를 받으며, 시위(侍衛)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부지통례가 좌분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료(望燎)하고 묻어라.' 하면, 알자가 우분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집례가 찬자(贊者)를 거느리어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간다. 여러 대축이 각각 상제(上帝)·배위(配位)·대명(大明)·야명(夜明)·성신(星辰)·동남서북해(東

南西北海)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비(匪)비에다 폐백과 축판(祝版)을 담고, 축사(祝史)는 조(俎)에다 생체(牲體)와 상제(上帝)에게 바친 희생(犧牲)의 앞다리 하나, 서직반(黍稷飯)·제반(除飯) 및 작주(爵酒)를 담아서 각각 그 계단을 경유하여 내려와 요단(燎壇)에 나아가서 폐백과 축판과 찬물(饌物)을 요시(燎柴)에 얹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태워도 가하다.' 하면, 동쪽·서쪽 각 6인이 횃불로써 나무를 반쯤 불태우는데,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감시(監視)한다. 다음에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여러 대축이 황지기(皇地祇)·악독(岳瀆)·산천(山川)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비에 폐백을 담고, 축사가 조(俎)에 생체, 【지기(地祇)에 바친 희생(犧牲)의 앞다리 하나.】 서직반(黍稷飯) 및 작주(爵酒)를 담아서 각각 그 계단을 지나서 내려와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어도 가하다.'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우는데, 전사관·단사가 감시한다. 알자·찬인이 각각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가 알자·찬인을 거느리어 본디 자리로 돌아가며, 봉례랑(奉禮郞)이 배제(陪祭)한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가 네 번 절하고 나서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아악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알자·찬자·찬인이 배위(拜位)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가며, 전사관이 신위판(神位版)을 갈무리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에 물러간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등을 불러 이르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문왕(文王)을 명당(明堂)에 종사(宗祀)하여 상제께 제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로 제왕(帝王)의 성사(盛事)이다. 또 내가 처음으로 신악(新樂)을 제정하여 교묘(郊廟)에 사용하여서 드디어 대례(大禮)를 치루어 선왕(先王)의 뜻이 이제 와서 이루어졌으니, 기쁨을 헤아리겠느냐?"

하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예의사(禮儀使) 박원형(朴元亨)에게는 안마(鞍馬)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낭청(郎廳) 정심(鄭沈)에게는 말 1필씩을 하사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금일 인사(禋祀)에 식례(式禮)가 어긋남이 없었으니, 원구(園丘) 및 종묘(宗廟)의 향관(享官)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더해 주고, 자궁자(資窮者)는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 한 사람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하라."

하였다.

해가 밝아올 무렵에 환궁(還宮)하여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러 왕세자(王世子)를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조금 뒤에 내전(內殿)으로 들어갔다가 근정전으로 환어(還御)하여 하례(賀禮)를 받았다. 왕세자

가 치사(致詞)하여 이르기를,

"신악(新樂)이 이미 이루어지고 융성한 예식이 끝났음을 고(告)하여 선왕(先王)의 대업(大業)이 이에 계승되고 밝게 퍼졌으며, 교묘(郊廟)에 천신(薦新)하여 신인(神人)이 모두 기뻐하니, 천만년(千萬年)에 길이 다복(多福)하소서."

하였다. 백관(百官)이 전(箋)을 올려 이르기를,

"하늘이 창성한 시기를 열어주시어 진귀한 부(符)를 장악하시고, 등극(登極)하여 때에 비사(毖祀)를 엄수(嚴修)하고 몸소 곤복(袞服)을 입고 융성한 예를 치르었으니, 기쁨이 신공(臣工)에 넘치고 경사가 종사(宗社)에 연면(連綿)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지극한 공경이 나날이 쌓이고 총명(聰明)이 때때로 밝아서,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무강(無疆)한 큰 규모를 더욱 넓히어 <태평의> 다스림은 이미 정해지고 공은 이미 이루어져 미처 하지 못했던 남은 전례(典禮)를 다 닦았습니다. 문·무(文武) 두 가지 춤에 있어서, 백왕(百王)의 것을 손익(損益)하고 아속(雅俗)을 잘 조화시켜 교묘(郊廟)에 통용(通用)하니, 행하고 그침에 변화(變化)가 있고 빠르고 느림이 적당하여, 옛것이 아니요 유신(惟新)한 것이며, 구소(九韶)의 질주(迭奏)를 능가하고 아름다움과 좋은 방법을 다하여 만세(萬世)의 영원한 기림을 더하였으니, 어찌 오직 뭇 신령의 흠향(歆饗)뿐이겠습니까? 또한 열성(列聖)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외람되게 성한 예에 참여하여 즐겁게 욕의(縟儀)를 보았고, 다시 씩씩한 <전하의> 얼굴을 우러러보아, 우수(虞獸)와 더불어 같이 춤추었습니다. 원컨대 풍족한 복을 크게 받으시고 한(漢)나라의 갑절로 다투어 부르짖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교지(敎旨)를 반포하여 이르기를,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드는 것은 대개 백년(百年)이 되어야 가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다행히 하루 아침에 완성하고, 이에 교묘의 제사에 써서 <연주하여> 신(神)과 사람이 다같이 기뻐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홍업(鴻業)의 터전을 열으셨으나, 바야흐르 초매(草昧)의 경륜(經綸)을 당하여 예악(禮樂)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었으며, 우리 세종[世廟] 때에 이르러 큰 운수를 타고 나시어 대업(大業)을 안정(安定)하는 상징(象徵)과 태평(太平)을 보존(保存)하는 생각에서 악·무(樂舞)를 제정하여 장차 교묘에 천용(薦用)하려 하였으나, 뜻만 가지고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비기(丕基)를 이어 지키게 되어, 선왕의 뜻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후사(後嗣)에 영원히 보일 것을 기약하여 다시 두 가지 춤을 제정해서 인사(禋祀)에 사용하니, 지극한 음(音)이 신명(神明)에 통하고 화기(和氣)가 상하(上下)에 융화(融和)하여 마침내 대례(大禮)가 이루어졌으니,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선포(宣布)한다.

이달 15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한 자의 자손,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를 모살(謀殺)했거나 구매(毆罵)한 것,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主人)을 모살한 것, 고의(故意)로 살인(殺人)을 꾀한 것, 고독(蠱毒)과 염매(魘魅)및 강도나 절도를 범한 자를 제하고, 그 이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아! 크게 선왕의 뜻을 이어 신악(新樂)을 써서 인사(禋祀)를 밝게 하고, 널리 너그러운 은전을 펴니 폭원(幅員)을 다하여 <전국적으로> 두루 경사스럽게 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60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사법-행형(行刑)

《 세조 032 10/01/22(을해) / 우의정 구치관에게 《동국통감》의 착오를 살피게 하다 》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에게 이르기를,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때에 반드시 착오(錯誤)가 많았을 것이므로 이제 내종친(內宗親)과 승지(承旨) 등으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틀린 것을 찾도록 하였으니, 경(卿)이 이를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에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인순부 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참판(參判) 홍응(洪應)·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지(權枝)·제학(提學) 이승소(李承召) 및 통감청(通鑑廳)의 낭관(郎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어서(御書)로 된 사목(事目)을 내어 주었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승정원(承政院)에서는 필묵(筆墨)을 준비할 것.

1. 이조(吏曹)에서는 합좌(合坐)하여 명령을 기다릴 것.

1. 등촉방(燈燭房)에서는 불을 준비할 것.

1. 상벌(賞罰)은 형편에 따를 것."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가?"

하니, 좌우(左右)에서 답하기를,

"이맹현(李孟賢)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능히 강(講)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중용(中庸)》을 강하게 하였다. 좌우(左右)의 선비들이 교대하여 서로 어려운 것을 물었는데, '천자(天子)가 아니면 예(禮)를 제정하지 못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천자가 아닐지라도 능히 예를 제정할 자가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인(聖人)의 덕(德)이 있는 자이면 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러면 천자가 아니고서 예를 제정한 자는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주공(周公)과 같은 이로, 《주례(周禮)》를 지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러면 《주례》는 과연 주공이 쓴 것인가?"

하니, 좌우에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는가?"

하니, 여러 선비들이 모두 대답하는 것이 각각 같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각각 동서(東西)로 앉게 하고, 술을 마시어 매우 취하였다. 또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조용히 담론(談論)하였는데, 권지(權枝)가 술을 올릴 때에 이르러서는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더욱 지극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지가 술을 올리는 데 한결같이 황송하고 두려워하니, 군신(君臣)의 사이에 이와 같을 수가 없다."

하고, 한계희를 불러 개유하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명하여 좌우(左右)의 틀린 것을 찾는 자들을 오게 하였다. 이어서 이부(李溥)와 정현조(鄭顯祖)로 하여금 서로 승부(勝負)를 다투게 하였는데, 말이 다하는대로 깊이 변론하여 좌우(左右)에서 어렵게 여겨, 부득이 최항과 김담에게 명하여 그 승부를 결정하게 하였으나 논의(論議)가 정해지지 못하고, 거의 어두워서 파하였다.

【원전】 7 집 60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 세조 032 10/02/17(경자) / 임금이 온양으로 행행하고자 하여 정창손·박원형 등을 수상과 주장

으로 삼다 》

임금이 온양(溫陽)에 행행(行幸)하고자 하여,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정수충(鄭守忠)·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원성군(原城君) 원효연(元孝然)·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인순부 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인수부 윤(仁壽府尹) 강희안(姜希顔)·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서(李墅)·공조 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을 수상(守相)으로 삼고,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중추원 사(中樞院使) 윤사흔(尹士昕)·중추원 부사(中樞院副事) 김개(金漑)·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을 수장(守將)으로 삼았다.

【원전】 7 집 610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세조 033 10/04/11(계사) / 정인지와 노비의 일로 다툰 사직 허혼을 하옥시키다 》

강녕전(康寧殿)에 거둥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등이 입시(入侍)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사직(司直) 허혼(許混)이 노비(奴婢)를 서로 다투는 일로 인하여 신(臣)의 집에 와서 밤새도록 당돌(唐突)하게 굴었는데, 신이 몹시 통분(痛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허혼을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시키게 하였다.

【원전】 7 집 61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세조 033 10/04/14(병신) / 한명회가 야인 조삼파의 동향에 대해 아뢰다 》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종사관(從事官) 허종(許琮)을 보내어 아뢰기를,

"올량합(兀良哈) 이두리(李豆里)가 만포(滿浦)에 와서 절제사(節制使) 홍귀해(洪貴海)에게 고(告)하기를, '아버지 이만주(李滿住)가 조삼파(趙三波)에게 사람과 가축을 돌려주고 마음을 고쳐 먹고 귀화(歸化)하도록 말하였더니, 조삼파가 소 4두(頭)·말 2필(匹)을 가지고 우리 형(兄) 이고납합(李古納哈)에게 와서 부탁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홍귀해가 대답하기를, '조삼파가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이 매우 많은데, 지금 되돌려 온 것은 이와 같이 적고, 또 조삼파가 어찌하여 스스로 오지 않고 너를 시킨 것인가? 귀순(歸順)하는 여부(與否)는 그의 자의(自意)에 맡긴다.'고 하니, 이두리가 말하기를, '조삼파의 마음을 비록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와서 귀순(歸順)하고자 아니한다면 어찌 두축(頭畜)을 돌려보냈겠습니까?'고 하였습니다. 종사관(從事官) 박휘(朴輝) 등이 또 이두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형(兄)이 조삼파에게 귀순(歸順)하라는 말을 먼저 하였고, 너도 또한 그렇게 말하였는데도, 조삼파가 오지 않았으니, 귀순(歸順)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체찰사(體察使)가 반드시 이런 일을 가지고 계달(啓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하니, 이두리가 말하기를, '조삼파가 말하기를, 「인구(人口)는 수토(水土)의 성질이 달라서 모두 이미 죽었다.」고 하였는데, 그가 스스로 오지 못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여 감히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하토(甫下土)는 내가 같이 이야기를 못해 보았으나, 그러나 조삼파가 만약 온다면 그도 역시 기꺼이 따라 올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서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와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평안도(平安道)의 일을 의논하였다. 허종을 불러들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명하여 가자(加資)하고 옷과 신발을 내려주었다. 어서(御書)로 회유(回諭)하기를,

"가장 좋은 방책은 싸움이 없는 것이요, 그 다음은 싸워 이기는 것이요, 그 다음은 지키는 것은데, 모두 먼저 적이 침범(侵犯)하지 못할 형세를 만들고 뒤에 우열(優劣)을 겨루는 계책(計策)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쓰는 방도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적(敵)을 헤아리는 데 일정한 계책이 없으며, 형세에 따라서 변화(變化)하여 승리를 미루어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경(卿)이 변방(邊方)을 방어(防禦)한 뒤로부터 나는 침식(寢食)이 항상 편안하며, 다시 의논할 만한 일이 없으니, 경이 곧 내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시하는 방략(方略)이 없지 아니한 것은 경의 조심(操心)을 격려하고 애타는 나의 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분(忿)을 참고 노여움을 억누르며 때를 관망하고 기회를 엿보아 왔는데, 그 시기가 마침 왔으니, 교묘한 형세를 만들고 농간(弄奸)하는 변화(變化)를 이루는 것이 좋다. 지금 이미 오랑캐들로 하여금 곤경에 처하게 하여서 적구(敵仇)들이 투항(投降)할 수도 없고 몰래 도둑질할 수도 없고 도망하여 숨을 수도 없는데, 용납(容納)

할 만한 곳도 없고 하소연할 만한 데도 없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실업(失業)하여 집을 떠나면 날로 파멸(破滅)의 지경으로 치닫고 산곡(山谷)을 넘고 건너면 기운과 의지가 쇠잔하여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적을 더욱 곤경에 몰아붙이는 가장 좋은 계책인 것이다. 가장 좋은 형세에서는 칼날 하나 쓰는 노력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오랑캐[戎虜]를 궤멸(潰滅)시킬 수가 있는 때이다. 경(卿)은 마땅히 이러한 뜻을 몸받으라. 만약 조삼파(趙三波)가 비록 인물(人物)을 다 쇄환(刷還)하고 와서 귀순(歸順)한다고 하더라도 경은 그의 새로와지겠다는 맹세를 허락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꾸짖고 칙유(勅諭)하기를, '너의 죄는 너무 크다. 비록 네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가 진실로 귀순(歸順)한다면 전일에 어찌 하여 단지 우마(牛馬) 몇 마리만을 돌려보내고 친히 오지 않았는가? 네가 국가(國家)에서 너를 죽일까봐 스스로 의심하는데, 이것은 국가(國家)를 불신(不信)하는 너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까닭이다. 네가 국가(國家)를 불신(不信)하는데 국가(國家)에서 기꺼이 너를 신임하겠는가? 네가 일찍이 사로잡아 간 사람과 가축(家畜)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그 수목(數目)이 분명(分明)한데, 네가 어찌 계략을 이리저리 쓰면서 국가(國家)를 희롱하고자 하는가? 네가 즉시 다 돌려보내지 않고 국가(國家)의 의도를 떠보려고 하니, 간사(姦詐)함이 심하며 죄악(罪惡)이 더욱 심한데, 어찌 너를 가벼이 용서하여 너의 술책(術策) 중에 빠지겠는가? 너의 스스로 좋은 계책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라. 위의 항목의 사의(事意)를 가지고 저들의 귀순(歸順)하는 때를 틈타서 질책(叱責)을 더욱 엄하게 하여서, 오랑캐들로 하여금 국가(國家)에서 군사를 쓰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알도록 한다면 가장 좋은 계책으로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을 질책하기를 특별히 엄하게 하되, 예(例)와 같이 그들을 대접하여서 국가(國家)에서 죽이지 않겠다는 뜻을 알게 한다면 또한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거두는 술책이 될 것이다. 그 대강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번거롭게 언급(言及)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과 양정(楊汀)은 모두 국운(國運)을 연 원훈(元勳)이고 정의가 서로 밀지 아니하고 의리가 실제로 서로 투합하는 사이인데, 오랫동안 변방(邊方)에서 고생하면서 서리[霜]에 젖고 눈[雪]을 무릅쓰며, 겨울철에 초야(草野)에서 묵고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 아래 분주하므로 마음이 피로하고 지쳤을 것이나 오로지 충의(忠義)를 분발(奮發)하니, 백일(白日)에 그 충절(忠節)이 빛나고 귀신(鬼神)이 그 충성(忠誠)을 알 것이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감개(感慨)가 매우 간절하다. 지금 허종이 돌아가는 인편에 특별히 경들과 김겸광(金謙光)에게 채단(綵段)·나단(羅段) 각각 1단(段)씩을 내려 주어 절의(節衣)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하며, 아울러 잔치[宴]도 내려 주니, 한번 즐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원전】 7 집 619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33 10/04/22(갑진) / 노사신 · 박원형 등과 아산군의 설치 · 과거에 관한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니,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윤손(李允孫)·임원준(任元濬),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길통(金吉通)·공조 참판(工曹參判) 강희맹(姜希孟)과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교대로 일어나서 상수(上壽)를 드리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이 아산군(牙山郡)을 다시 설치할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의 의논은 무어라고 하던가?"

하였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혹자는 말하기를, '이미 혁파(革罷)하였으니, 다시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본군(本郡)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만약 다시 설치하고자 한다면 다시 설치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로 정부(政府)에 내려 주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아산(牙山)을 혁파(革罷)하여 온양(溫陽)·평택(平澤)·신창(新昌)에 나누어 붙였는데, 황수신(黃守身)이 충청도 진휼사(忠淸道賑恤使)로서 돌아와서,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 황효원(黃孝源)의 현명하고 유능[賢能]함을 지극히 칭찬하고, 이어서 아산(牙山)의 공해(公廨)의 기지(基地) 북쪽에다 자기 처(妻)의 무덤을 이장(移葬)하겠다고 청(請)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항소(抗疏)하여 정쟁(庭諍)하고, 고을 사람들이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였었다. 그때 내섬 판사(內贍判事) 김숙(金潚)이 사민 경차관(徙民敬差官)으로서 먼저 충청도에 갔는데, 임금이 명하여 그 일을 김숙에게 맡겨서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김숙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본 고을은 왜선(倭船)이 왕래하는 관문(關門)이고 조세(租稅)를 수납(輸納)하는 요지(要地)이니, 수령(守令)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해(公廨)의 기지(基地)가 큰 냇물에 부딪혀 무너지고 관우(館宇)가 황폐하여 허물어졌다는 것은 모두 뜬 소문이다.'고 하니, 다시 설

치하는 것이 편(便)하겠습니다."

하였었으나, 박원형(朴元亨)·함우치(咸禹治)는 모두 말하기를,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고을 사람들의 호소로 인하여 이것을 의논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또 정창손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이미 불혹(不惑)의 나이가 지났지만 심기(心氣)가 더욱 강장(强壯)하고 조금도 쇠퇴하여지지 않으니,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는 것은 힘이 부족(不足)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연(經筵)은 옛날 성현(聖賢)들이 행한 일이 아니니, 요(堯)임금·순(舜)임금도 경연을 베풀지 않았으며, 주공(周公)도 진실로 사부(師傅)가 없었는데, 송조(宋朝)의 인주(人主)들이 구구(區區)하게 처음으로 만들어낸 일을 어찌 즉히 법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를 불러서 말하기를,

"근래 과거(科擧)의 법(法)은 일정한 법식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자들이 정문(程文)에 얽매여서 박학(博學)하고 폭넓은 식견을 가진 선비를 보기가 어렵다. 혹시 경서(經書)를 강(講)하거나 혹시 사서(史書)를 강할 때 무경(武經)을 겸(兼)하게 하고, 혹시 제술(製述)을 쓸 때 임시하여 사람을 작정(酌定)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서(書)에만 전심(專心)하지 못할 것이고, 한 가지 기예(伎藝)에만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요행(僥倖)을 바라는 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명년 봄부터 이와 같이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근래 병사(兵士)를 정(精)하게 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무재(武才)의 성함이 근대(近代)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이나, 그러나 진유(眞儒)는 보기가 드물다. 대저 지금 유자(儒者)가 된 사람으로서 오로지 학문(學問)에 뜻을 두지 아니하여서 《효경(孝經)》에 통(通)한 자는 이미 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학식이 매우 높고 식견이 두루 넓은 선비를 구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문(文)에 뜻을 기울이지 않는 바는 아니었으나, 인재(人才)가 이처럼 저질스러운 하류이다. 요컨대 문풍(文風)을 진작(振作)시킬 방도를 너희들이 명심(銘心)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이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세자(世子)로 하여금 《집주(集註)》를 읽지 말게 하라. 《집주(集註)》란 문의(文義)를 밝게 보이는 것 뿐이다. 《논어(論語)》에 '정사를 공경히 하고 신의를 지키며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때에 맞추어 부려야 한다. [敬事而信 節用而愛民 使民以時]'고 하였는데, 이항(李沆)의 《촬설(撮說)》에는 '정사를 공경히 하고 신의를 지킨다. [敬事而信]'는 것을 마음에 따른 실상이

라고 하였다. 잠저(潛邸) 때의 공부(工夫)는 책을 끝마치는 것이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글제로 삼아서 입시(入侍)한 문신(文臣)들로 하여금 글을 지어서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시제(詩題)에 등급을 매겼는데, 임원준의 시(詩)를 보니 이러하였다.

"병부(兵符) 잡고 도록(圖록)에 응하여 정치가 융성해지니
원량(元良)에게 성학(聖學)의 공부를 훈계하여 보이시네.
의리(義理)는 즐겨 문자(文字) 위에서 찾고
공부(功夫)는 다만 존심(存心)을 기르는 데 있도다.
믿음은 하늘에도 통하고 아울러 땅에도 통하며
공경(恭敬)은 모름지기 처음도 이루고 마지막도 이루리라.
이 두 글자야말로 천하(天下)의 치도(治道)에 이르리니,
하물며 지금 베푸신 말씀 다시 밝디 밝음에랴!"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크게 칭찬과 감탄을 더하면서 말하기를,

"임원준의 재주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시를 많이 얻기란 쉽지 않다."

하고, 여러 재상(宰相)에게 두루 보이게 하였다.

【원전】 7 집 62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행정(行政)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풍속-예속(禮俗) / *교통-육운(陸運) /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33 10/04/26(무신) / 양성지가 홍문관의 서적에 관한 일에 대해 의논하여 사목을 만들게 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강성군(江城君) 봉석주(奉石柱)·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중추원 부사(中樞院府使) 이문형(李文炯)·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정사(政事)를 의논하였다. 양성지가 홍문관(弘文館)의 서적(書籍)에 대한 일을 아뢰자, 임금이 명하여 이문형과 같이 의논하여 사목(事目)을 만들어 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힘을 다하여 공사(公事)를 받드니, 그 뜻을 취(取)할 만하다."

하고, 이어서 양성지에게 묻기를,

"경(卿)이 음양(陰陽)의 설(說)에 밝은가?"

하니, 답하기를,

"능(能)합니다."

하였다. 인하여 양성지와 더불어 역대(歷代) 인군(人君)의 일을 의논하였다. 구치관이 아뢰기를,

"양성지가 항상 말하기를, '아들 하나가 있는데 활 쏘고 말 타는 데 능하다.'고 하니, 원컨대 선전관(宣傳官)에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양성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선전관(宣傳官)이 어찌 활과 말에만 능해서 되겠는가? 반드시 영오(穎悟)한 사람이라야만 가당한 것이다. 경(卿)의 아들이 영오(穎悟)한 자인가?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가당치 않으니, 그 어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쓰는 것이다.'고 하였다. 경이 후일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장차 그를 보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술수(術數)의 학문을 논하고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에게 이르기를,

"무릇 유자(儒者)라 하더라도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를 모두 알아야만이 비로소 통유(通儒)라고 이를 수 있는데, 너는 그런 방면에 능한가?"

하였다.

【원전】 7 집 62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세조 033 10/05/01(계축) / 상정소의 관리를 불러 행간을 만들게 하다. 이맹헌이 논어를 강하다 》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서 상정소(詳定所)의 관리를 불러 횡간(橫看)을 만들게 하고, 또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兼任)한 유신(儒臣)과 성균관(成均館) 생원(生員) 등을 불러서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이조 정랑(吏曹正郎) 이맹현(李孟賢)이 《논어(論語)》의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성(孝誠)스러우며 우애(友愛)스럽다.」 라고 하였다.'는 대목을 강(講)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부자(父子) 사이에도 간쟁(諫諍)하는 도리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경계함이 있으면 그 몸도 불의(不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세자(世子)도 또한 나의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버릇을 간(諫)하지 않고 있다."

하고, 세자에 명(命)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또 무재(武才) 90여 인을 불러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문맹손(文孟孫) 등이 가장 활을 잘 쏘니, 명하여 각각 1자급(資級)씩을 올려 주었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그 아들 양찬(梁瓚)을 알현(謁見)시키니, 임금이 명하여 솔[侯]을 쏘게 하였는데, 능하게 맞히니 즉시 겸사복(兼司僕)에 임명하였다.

【원전】 7 집 62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33 10/05/28(경진) / 양성지가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상언하다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그윽이 역대(歷代)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던 제도를 보건대, 전국(戰國) 시대에는 포루(布縷)·속미(粟米)·역역(力役)의 세금이 있었고, 당(唐)나라에는 조(租)·용(庸)·조(調)의 제도가 있었고, 지금 명(明)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양세(兩稅)의 세법(稅法)이 있습니다. 본조(本朝)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1가(家)의 전세(田稅)와 같은 경우에는 소출(所出)의 10분의 4인데, 잡세(雜稅)가 그 중 10분의 6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잡세(雜稅)라는 것은 바로 여러가지 종류의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조(戶曹)에서 일국의 재부(財賦)를 맡아보는데, 어느 주(州)의 어떤 물건의 대납(代納)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 대납(代納)하면서 이익으로 거두는 것이 모두 몇 석(石)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모두 부상(富商)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하게 하고,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재화(財貨)를 쓰더라도 전혀 절제(節制)하지 않습니다. 신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건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가볍게 볼 수가 없으며, 나라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방술(方術)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재부(財賦)의 반(半)을 들어서 상고(商賈)의 손에 맡기고도, 이미 징수하여 거두는 것을 고찰(考察)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用度)를 고찰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빌건대 한(漢)나라에서 균수(均輸)하던 법(法)과 고려의 삼사(三司)의 관직(官職)에 의거하여 의논해서 삼사(三司)를 설치(設置)하고 전운사(轉運使)를 겸(兼)하게 하되, 영삼사(領三司) 1인은 정 1품으로 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맡게 하고, 판삼

사(判三司) 1인은 종 1품으로하여 다른 관원이 겸직(兼職)하게 하고, 좌사(左使)·우사(右使) 각각 1인은 정 2품으로 하여 좌사(左使)는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겸직하게 하고 우사(右使)는 다른 관원이 겸직하게 하며, 좌윤(左尹)·우윤(右尹) 각각 1인은 종 3품으로 하고, 좌승(左丞)·우승(右丞) 각각 1인은 정 7품으로 하여 모두 서반(西班)이 겸직하게 하소서.

이리하여 좌사(左司)·우사(右司)로 나누어 좌사(左司)는 경중(京中)의 부상(富商)을, 우사(右司)는 개성부(開城府)의 부상(富商)을 모두 그 장적(帳籍)에 등록시키고 대납(代納)하는 물건도 또한 장부(帳簿)에 기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납(代納)하게 하며, 경상도(慶尙道)·황해도(黃海道)는 좌사(左司)에 속(屬)하게 하고, 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는 우사(右司)에 속(屬)하게 하소서. 가령 면포(綿布) 3필(四)을 가지고 황금(黃金) 1전(錢)을 대납(代納)할 수 있는 경우에 값을 9필(四)을 주어서 6필(四)을 자기가 쓰고 3필(四)을 관(官)에 바치게 하고, 드디어 주(州)·군(郡)으로 하여금 스스로 거두어서 그 황금(黃金) 1전(錢)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취련(吹鍊)하게 한다면 그 비용이 무려 수백필(四)이 될 것입니다. 좌사(左司)에서 거두는 것은 10년으로 기한하여 여러 도(道)의 의창(義倉)에서 보충하여 더 보태고, 10년 이후에는 경창(京倉)의 군수(軍需)로서 보충하여 더 보태며, 우사(右司)에서 거두는 것은 7푼(分)을 간경(刊經)의 비용에 붙이고, 1푼(分)을 서적(書籍)의 인출(印出) 비용에 붙이고, 1푼(分)을 평안도(平安首) 강변(江邊)의 군사로서 옷이 없는 자들에게 주고, 1푼(分)을 귀후소(歸厚所)에 주소서. 그 일체 물건의 납부(納付)나 1석(石)의 수조(收租)도 모두 삼사(三司)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만약 삼사(三司)를 거치지 않으면 경외(京外)의 관리와 대납(代納)하는 사람을 모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論)하고, 대납하는 사람의 재산(財産)을 그대로 적몰(籍沒)하되, 그 한 반은 고발한 자에게 상(賞)으로 주어서 함부로 거두는 것을 막고 그 이권(利權)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였으나, 그 불편(不便)한 것을 말하는 자가 있어서 그 의논이 드디어 정침(停寢)되었다.

【원전】 7 집 62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세조 033 10/06/29(신해) / 양성지가 고금의 서적을 강하게 하는 규정에 대해서 아뢰다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경서(經書)로써 도(道)를 기록하고 사기(史記)로써 사건을 기록하는데,

경서(經書)가 아니면 치도(治道)가 나오는 근원을 맑게 할 수가 없으며, 사기(史記)가 아니면 어지러운 것을 다스린 흔적을 상고할 수가 없으니, 경서(經書) 한 가지나 사기(史記) 한 가지에 치우쳐 폐(廢)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무공(武功)으로써 내란(內難)을 평정(平定)하시고, 문교(文敎)로써 태평(太平) 시대를 이루시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특별히 성균관(成均館)의 학도(學徒)와 예문관(藝文館)의 사신(詞臣)을 불러서 친히 강론을 하시니, 어찌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경서(經書)를 손에 잡고 어려운 것을 묻던 것이나,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문적(文籍)을 토론(討論)하던 것과 한가지의 성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도(生徒)는 성균관의 학관(學官)이 날마다 강(講)을 하고, 예조(禮曹)에서 달마다 강(講)을 하고, 봄·가을로 도회(都會)를 하고, 3년에 크게 실력을 견주는데, 만약 그 사유(師儒)로서 적당한 사람을 얻게 되면 진실로 인재(人材)를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름지기 예문관(藝文館)의 겸관(兼官) 20인을 정하게 골라서 그 장기(長技)에 따라서 이학(理學)·사학(史學)의 두 학업(學業)으로 나누어서 《주역(周易)》·《역학계몽(易學啓蒙)》·《성리대전(性理大全)》을 전공할 자 5인과, 《호전춘추(胡傳春秋)》·《좌전춘추(左傳春秋)》·《사기(史記)》·《전한서(前漢書)》를 전공할 자 5인과, 《통감강목(通鑑綱目)》·《통감속편(通鑑續編)》·《송원절요(宋元節要)》를 전공할 자 5인과, 《삼국사기(三國史記)》·《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전사(高麗全史)》를 전공할 자 5인을 정하여 두되, 이 5인 중에는 3품에서 1인을, 5품에서 2인을, 참외(參外)에서 2인을 얻어서 모두 사서(四書)와 《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를 겸하여 전공하게 하소서. 전강일(殿講日)이 되면 매 학(學)에서 으레 2, 3인을 강(講)하게 하는데, 이로써 초1일에는 10인을 강(講)하게 하고, 15일에는 10인을 강(講)하게 하며, 3개월 안에 3번이나 불통(不通)하는 자는 본직(本職)에서 좌천(左遷)시키고, 3차례 통(通)하는 자는 특별히 1자급(資級)을 더하여서 성리(性理)의 근원을 논하게 하고, 고금(古今)의 사적(事跡)을 강(講)하게 하소서. 경학(經學)·사학(史學) 두 학(學)에 각각 도제조(都提調) 2인, 제조(提調) 3인을 두어서 항상 고찰(考察)을 더하게 하고, 그대로 시강(侍講)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 유생(儒生)이 이를 강(講)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원전】 7 집 63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33 10/07/23(갑술) / 정인지 등이 대책의 고과를 정하다 》

정인지(鄭麟趾) 등이 대책을 고과(考課)하여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참판(參判) 임원준(任元濬)·판서(判書) 김수온(金守溫)을 1등으로 삼고, 부윤(府尹) 강희맹(姜希孟)·제학(提學) 이승소(李承召)·감찰(監察) 김종직(金宗直)·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정랑(正郎) 정난종(鄭蘭宗)·저작(著作) 홍귀달(洪貴達)을 2등으로 삼고, 좌찬성(左贊成) 박원형(朴元亨)·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좌랑(佐郎) 성준(成俊)·전 좌랑(佐郎) 고태익(高台翼)·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어효첨(魚孝瞻)·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使) 김신민(金新民), 행 상호군(行上護軍) 전동생(田桐生)·송처관(宋處寬), 정랑(正郎) 이맹현(李孟賢)·신의경(辛義卿), 판관(判官) 유지(柳軹)·생원(生員) 권열(權열)·정랑(正郎) 유자빈(柳自濱)·주부(注簿) 조간(曹幹)·봉례(奉禮) 손비장(孫比長)·정랑(正郎) 박숙진(朴叔蓁)·저작(著作) 배맹후(裵孟厚)·사예(四藝) 정자영(鄭自英)·검열(檢閱) 성현(成俔)·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진사(進士) 조석보(曹碩輔)를 3등으로 삼아서 바치니, 임금이 1등의 대책(對策)을 취(取)하여 읽어보고, 다시 김수온(金守溫)을 장원(壯元)으로 하였다. 「어제구현재시장(御製求賢才試張)」이란 방(榜)을 예조(禮曹)에 내려 주고, 이어서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책(對策)으로 입격(入格)한 사람들 모두 가자(加資)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아들·사위·형제·숙질(叔姪) 중에서 대신 가자(加資)하라. 유생(儒生)도 아울러 가자(加資)하고 바로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게 하라."

하였다. 대독관(對讀官) 정인지(鄭麟趾) 이하도 또한 대신 가자(加資)하게 명하였으며, 최항·김수온·임원준은 전의 예악(禮樂)의 대책(對策)으로 품계(品階)가 승진한 지 열흘도 못되어 또 품계가 승진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전일에 합격한 자는 모두 품계가 승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책문(策問)을 내자 문사(文士)들이 모두 스스로 직질(職秩)이 승진하기를 희망하여, 남의 손을 빌려서 대책을 작성한 자가 반 수가 되었다. 또 위세(位勢)가 있는 자는 시권(試卷)의 끝에다 성명(姓名)을 노출(露出)시키니, 시관(試官)들도 또한 그 성명을 먼저 보고 위세가 있는 자로서 쓴 글이 조금 괜찮으면 문득 드러내고 칭찬하고서 이를 거두었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쳤다. 마지막에 가서 입격(入格)하여 가자(加資)한 자는 과연 권문 세가(權門勢家)의 친척·친구의 무리들뿐이었다. 어떤 한 관인(官人)이 본래 문신(文臣)도 아닌데 지은 대책도 또 기한 내에 미치지 못하여 홀로 호명(糊名)하기를 매우 단단히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청하여 이를 바쳤는데, 시관이 읽어보지도 못한 채 끝마쳤다. 입격한 다음에 보니, 바로 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이었다. 봉하든 봉하지 않든 모두 그런 술책(術策)을 쓰니, 당시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였다.

【원전】 7 집 63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33 10/07/25(병자) / 대책에 합격한 자들에게 와서 사은하게 하다 》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책(對策)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미 자급(資級)을 승진시키라고 명하였는데, 아직 와서 사은(謝恩)하지 않으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다. 한참 있다가 시독관(試讀官)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와서 사은(謝恩)하였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인순부 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공조 참판(工曹參判) 임원준(任元濬)·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과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승지(承旨)와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불러서 이(理)·기(氣)의 선후(先後) 관계를 글제[題]로 내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이를 강론(講論)하게 하였다. 사예(司藝) 정자영(鄭自英)이 고사(古事)를 끌어다가 묻는 데 따라 즉시 대답하고, 여러 유신(儒臣)들이 다시 서로 이를 힐난(詰難)하니, 능히 굴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소박(素朴)하고 야비(野卑)하므로 좌우 근신(近臣)들이 가만히 비웃었고, 임금도 즐겨 이것을 들었다. 뒤에 몇 차례 구종직(丘從直)과 이수(理數)를 논(論)하였는데, 양인(兩人)이 각각 그 소견(所見)을 고집(固執)하고 서로 다투고 힐난(詰難)하였으나 종일(終日)토록 해결되지 않았다. 임금이 이를 즐겨 듣고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양인(兩人)이 참으로 학문(學問)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옛사람들이 황금으로 죽은 말을 샀더니, 죽은 말도 오히려 또 사[買]는데 하물며 산[生] 놈이겠는가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천리마(千里馬)가 이르렀다고 하므로, 저 두 사람은 모두 유가(儒家)의 늙은이들이나, 내가 그들을 이와 같이 대접하는 까닭은 천리마(千里馬)가 오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구종직(丘從直)과 정자영(鄭自英)이 학문(學問)에 있어서 다만 성현(聖賢)의 글을 얼치기로 기송(記誦)하기에만 힘써서 종일토록 논란(論難)하였으나 장귀(章句) 밖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정자영이 구종직에 비하여 조금 나았다.

【원전】 7 집 63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세조 033 10/07/27(무인) / 예승석 등이 변방의 군사를 부리는 일 등의 폐단에 대해서 아뢰다 》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갔다.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형조 참판(刑曹參判) 임원준(任元濬)과 승지(承旨)·입직(入直)한 제장(諸將)·겸사복(兼司僕) 등이 입시(入侍)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예승석(芮承錫) 등 18인이 윤대(輪對)하니, 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에게 명하여 말할 것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 예승석이 아뢰기를,

"변방(邊方)의 병사(兵使)·수사(水使)·만호(萬戶) 등이 사사로이 군졸(軍卒)을 부리므로, 오로지 적(敵)을 방어하는 데 종사(從事)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예승석을 불러서 물었다. 예승석이 대답하여 아뢰는 것이 상실(詳悉)하니, 임금이 가상(嘉尙)히 여겨 말하기를,

"내가 깊이 궁중(宮中)에 있어서 변진(邊鎭)의 폐단되는 일을 아직 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네 말을 들으니, 바야흐로 윤대(輪對)의 유익(有益)함이 증명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파에게 명하여 여러 사람의 말한 바를 조목(條目)별로 해당 관사(官司)에 내려서 시행하게 하였다. 또 저폐(楮幣)의 이익(利益) 여부를 가지고 윤대(輪對)에 물으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익됩니다."

하였으나, 교리(校理) 김승경(金升卿)이 홀로 말하기를,

"이익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승경과 이롭다고 말한 사람 1인에게 명하여 각각 자기 소견(所見)을 논(論)하게 하였는데, 날이 다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성균 사예(成均司藝) 정자영(鄭自英)·김영벽(金暎璧) 등에게 명하여 성리(性理)의 설(說)을 강론(講論)하게 하고, 정자영에서 이르기를,

"너는 학문에 매우 익숙하니, 반드시 남이 알지 못하는 공부(功夫)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공부한 데 지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한 학문이란 스스로 다복(多福)을 구(求)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나에게 칭찬과 포장(褒奬)을 받는 것도 또한 다복(多福)을 구하는 것이다."

하고, 명하여 현질(顯秩)을 제수(除授)하였다.

임금이 또 **양성지(梁誠之)**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경(卿)이 우활(迂闊)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4가지 있으니, 혹은 재주를 사랑하거나, 혹은 색(色)을 사랑하거나, 혹은 마음을 사랑하거나, 혹은 재물(財物)을 사랑하는 것인데, 경(卿)과 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뿐이다."

하니, 양성지가 고두(叩頭)하면서 사례하였다. 이어서 양성지와 임원준 등에게 명하여 여러 학문(學門)을 나누어, 학문에 6인을 두고 나이 어린 문신(文臣)을 여기에 배정하였는데, 천문문(天文門)에 이형원(李亨元)·정효상(鄭孝常)·하숙산(河叔山)·김초(金軺)·김경례(金敬禮)·김승경(金升卿)이고, 풍수문(風水門)에 최팔준(崔八俊)·배맹후(裵孟厚)·김염(金염)·김제신(金悌臣)·김준(金峻)·신숙정(申叔楨)이고, 율려문(律呂門)에 성준(成俊)·안집(安緝)·원보륜(元甫崙)·박양(朴良)·어세공(魚世恭)·최한량(崔漢良)이고, 의학문(醫學門)에 이수남(李壽男)·손소(孫昭)·이길보(李吉甫)·김의강(金義綱)·이익배(李益培)·유문통(柳文通)이고, 음양문(陰陽門)에 유지(柳輊)·홍귀달(洪貴達)·이경동(李瓊仝)·박희손(朴喜孫)·손비장(孫比長)·유윤겸(柳允謙)이고, 사학문(史學問)에 김계창(金季昌)·김종련(金宗璉)·최숙정(崔叔精)·유휴복(柳休復)·김양전(金良全)·김종직(金宗直)이고, 시학문(詩學門)에 최경지(崔敬止)·민수(閔粹)·유순(柳洵)·김극검(金克儉)·성현(成俔)·이칙(李則)이었다.

【원전】 7 집 63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금융-화폐(貨幣)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34 10/08/01(임오) / 비현합에서 성균 유생과 무재록에게 경서와 《무경》을 강하게 하다 》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갔는데,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예조 참판(禮曹參判) 임원준(任元濬)·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성균관(成均館) 생원(生員) 박정손(朴精孫) 등 5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무재록(武才錄) 신정보(辛鼎保) 등 7인에게 《무경(武經)》을 강(講)하게 하였다. 판 군자감사(判軍資監事) 기질(奇質) 등 20인이 윤대(輪對)하였다. 한참 있다가 도승지(都承旨)에게 명하여 나가서 빈청(賓廳)에서 입시(入侍)한 재추(宰樞)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640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 세조 034 10/08/01(임오) / 양성지가 군법 · 군정 · 군액 · 군제 · 사역에 관한 일로 상서하다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였다.

"신(臣)이 그윽이 우리 나라의 역대(歷代)의 일을 보건대, 수(隋)나라와 당(唐)나라는 고구려(高句麗)에 크게 패(敗)하였고, 사구(沙寇)도 또한 고려(高麗)에 패(敗)하였습니다. 강감찬(姜邯贊)이 거란(契丹)의 30만 병(兵)을 막을 때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고,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몰아낼 때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구성(九城)을 쌓았으니, 그러한 사실이 역사에 실려 있어서 훤하게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성주(聖主)께서 즉위(卽位)하시고 상신(相臣)들이 국책(國策)을 수립하니,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활쏘기를 관람하고 강무(講武)하고 장수(將帥)에게 유시(諭示)하는 등 하루라도 무비(武備)를 닦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병요(兵要)》·《병서(兵書)》·《진법(陣法)》·《병정(兵政)》으로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리의 큰 나라에서 조그마한 좀도둑도 어거하는데, 변장(邊將)이 군사를 쓰는 것이 매우 여의(如意)하지 못하므로, 신(臣)이 항상 분격(憤激)하여 고금(古今)에 용병(用兵)하던 방도를 두루 참고하여, 감히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고,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고, 군정(軍情)을 보살피고,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고, 군령(軍令)을 간략하게 하는 5가지 일을 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삼아, 이로써 군제(軍制)를 정(定)하고, 군기(軍器)를 정비하고, 군문(軍門)을 갖추고, 군정(軍丁)을 보호하고, 군사를 사열(査閱)하는 등 그 차례를 만들어 우러러 예람(睿覽)을 바라니, 성상께서 보아 주시리라고 삼가 생각합니다."

"1.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는 일. 대개 살아 있는 것은 다같이 바라는 것이나 죽는 것은 다같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면 누가 즐겨 물러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만 물러가면 반드시 죽고 욕되며, 나아가면 혹시 살 수도 있고 비록 죽을지라도 또한 영광인 다음이라야 사람들의 죽을 힘을 얻어내어 사람을 죽지 않을 땅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소(楊素)가 먼저 수백 명을 목베어서 위엄을 세웠고, 곽자의(郭子儀)도 또한 조카[甥]로써 그 위엄을 세우려고 하였으니, 양소가 수백 명을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만약 죽이지 않았다면 10만의 대중이 죽었을 것이요, 곽자의가 조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나, 만약 조카 한사람을 사랑하였더라면 가국(家國)의 일이 패(敗)하였을 것입니다. 유유(劉裕)가 위(魏)나라 군사를 막을 때 긴 창[矟]을 두어 자 끊어서 쇠망치로써 후려쳐 문득 3,4인을 통관(洞貫)시켰고, 한세충(韓世忠)이 금(金)나라 사람을 막을 때 갑사(甲士)로 하여금 긴 도끼[長斧]로써 위로 사람의 가슴을 치고 아래로 말의 발을 찢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한걸음을 나가게 하면 한 걸음을 나가고 한 걸음 물러가게 하면 한 걸음을 물러가는 등 한결같이 장수의 명을 듣고 죽음에 이르기로 마음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근일에 부령(富寧)의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은 것과 의주(義州)의 원병(援兵)이 나아가지 않은 것과 임득정(林得楨)의 군사가 밤에 놀란 것과 영호송군(迎護送軍)이 스스로 궤멸(潰滅)한 것이 어찌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가면 혹은 살지만, 물러가면 죽은 경우가 도리어 많았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모름지기 이와 같은 풍습을 크게 고친 다음이라야 우리 사졸(士卒)의 기운을 길러서 적인(敵人)의 기운을 점점 빼앗을 수가 있으므로 싸움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후로는 싸우다가 물러가는 자와, 주장(主將)을 구(救)하지 않는 자는 모두 군법(軍法)에 의하여 시행하면 위엄이 이웃의 적(敵)들에까지 미쳐 변방(邊防)이 다사(多事)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는 일. 대개 내지(內地)에 사는 백성들은 변방(邊方)의 경호(警護)를 알지 못하니 문반(文班)의 자제(子弟)를 어찌 군무(軍務)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변민(邊民)과 무사(武士)는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고 병기(兵器)를 잡고서 부지런히 숙위(宿衛)를 하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봉인(鋒刃)을 친히 무릅쓰고 몸을 나라에 바치는데, 만일 위태한 것을 보고 생명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애긍(哀矜)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수(隋)나라 때에 푸른 옷을 입고 전상(殿上)에 섰던 자들은 전쟁에서 죽은 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신라(新羅)의 풍속에 전쟁(戰爭)이 한창이면 한 사람이 적진(敵陣)으로 돌연히 뛰어 들어가서 참살(斬殺)당하여 사기(士氣)를 북돋우고, 이로써 승리(勝利)를 얻었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싸우다 죽은 집을 우대하는데, 높은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그 부모와 처자를 종신토록 국가에서 늠양(廩養)하였던 것입니다. 근일에 국사(國事)에 죽은 사람은 오직 진선(盡善)한 사람이 아니면 별로 특별한 은전(恩典)이 없으며, 그 으레 주는 부의(賻儀)의 쌀도 또한 사람에 청촉(請囑)하여 근근히 어렵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아서야 어찌 사졸(士卒)들의 백인(白刃)을 무릅쓰는 마음을 기르겠습니까? 빌건대 특히 성려(聖慮)를 두시어 후(厚)하게 그 집을 구휼(救恤)하시어, 벼슬을 내려 주고 자손을 음서(蔭敍)하여 그 애영(哀榮)을 극진하게 하소서.

1. 군정(軍情)을 보살피는 일. 신(臣)이 평일에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漢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일곱 번 이기고, 왜인(倭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세 번 이기고, 야인과 더불어 싸우면, 열 번 싸울때 다섯 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야인(野人)들이 호시(弧矢)의 이기(利器)가 있지만 또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인 것입니다. 근일에 양계(兩界)의 변장(邊將)들이 싸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들이 강하여서 그러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저들의 힘이 커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삼군(三軍)의 일은 용기(勇氣)를 주로 하는데, 처음에 회령(會寧)에서 싸우던 때에 전사(戰士)들이 힘을 쓰지 아니하여 능히 큰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기(士氣)가 날마다 떨어지고 저들의 기운은 날마다 장대하여져 갑산(甲山)과 의주(義州)의 싸움서 순치(馴致)하였으니, 이것이 한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구(救)하려 한다면 군법(軍法)을 엄중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싸울 때에 군법을 엄중하게 하여 사졸들의

사력(死力)을 얻고, 이미 싸운 뒤에 국사(國事)에 죽은 신하(臣下)들을 구휼(救恤)하여, 후일의 사졸들의 마음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는 일. 대개 군사(軍士)는 정(精)한 것을 귀하게 여기므로, 그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추쇄(推刷)한 군호(軍戶)는, 충청도(忠淸道)에서는 본래 2만 호(戶)인데 지금 11만 호(戶)가 되었고, 경상도(慶尙道)에서는 본래 4만 호(戶)인데 지금 30만 호(戶)가 되었으니, 두 도(道)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다른 도(道)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액(軍額)을 나누어 정(定)할 때에 간리(姦吏)가 장실(壯實)한 자로써 봉족(奉足)을 삼고, 약(弱)한 자로써 호수(戶首)를 삼으며, 장실한 자를 병자(病者)로 삼고 병자를 장실한 자로 삼으며, 말[馬]이 없는 자를 기병(騎兵)으로 삼고, 말[馬]이 있는 자를 보병(步兵)으로 삼으니, 가령 1호(戶)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가지고 봉족(奉足)으로 삼거나, 자기 자손들을 다른 사람의 봉족으로 삼으며, 혹은 서촌(西村) 사람을 가지고 동촌(東村) 사람의 봉족(奉足)으로 삼거나, 동촌(東村) 사람을 가지고 서촌(西村) 사람의 봉족(奉足)을 삼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희롱하는 것이 모든 도(道)가 다 그러합니다. 호구(戶口)의 수(數)는 비록 옛날에 비하여 배(培)가 되나, 정(精)하고 강(强)함은 옛날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며, 평안도(平安道)의 병(兵)은 더욱 미약합니다. 대저 인정(人情)이 부실(富實)하면 기운도 따라 성(盛)하여져서, 용감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생사(生死)를 바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빈약한 사졸(士卒)은 위협(威脅)당하게 되면 더욱 약하여지고, 상(賞)을 주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을 구(救)하여 약한 것을 고쳐서 강하게 하고자 하려면, 그 계책은 윤탁(尹鐸)이 그의 호수(戶數)를 덜고 주(周)나라의 세종(世宗)이 모든 군사를 크게 간략하게 한 것과 같은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약(弱)한 자 10만 명을 합하여 5만 명으로 만들면 쓸 수 있을 것이나, 옛날과 같이 10만 명으로 하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금후로는 노비(奴婢)가 있는 인사(人士)를 제외하고는, 15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 3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으며, 기병(騎兵)에서는 군사(軍士)·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같은 것은 3호(戶)를 1병(兵)으로 삼고, 평로위(平虜衛)·정병(正兵)·진군(鎭軍) 같은 것은 2호(戶)를 1병(兵)으로 삼고, 보병(步兵)에서는 선군(船軍) 같은 것도 또한 2호(戶)를 1병(兵)으로 삼으며, 기타 나머지의 연호(煙戶)·잡색(雜色)은 1호(戶)를 1병(兵)으로 삼되, 약(弱)한 사람으로써 정(丁)을 삼지 말며, 그 자손들은 분속(分屬)시키지 말며, 인보(隣保)는 나누지 말며, 질병(疾病)은 계산하지 말면, 비록 군사의 숫자는 감하여진 것 같으나 모두 정병(精兵)이 될 것입니다.

호적(戶籍)에는 이미 누락한 정(丁)이 없으니, 유사시(有事時)에는 모두 뽑아서 병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번갈아 휴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사고가 나면 그 곳을 보충할 것이며, 또 그의 치중(輜重)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산성(山城)을 지키며, 이로써 곡식을 전수(轉輸)를 한다면

불가(不可)할 것이 없을 것이니, 그 군사를 후(厚)하게 하는 이익이 어떠하겠습니까?

신(臣)이 일찍이 1정(丁)도 국민으로써 누적(漏籍)됨이 없게 하고, 1정(丁)도 단정(單丁)으로써 입역(立役)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군사를 쓸 때는 기병(騎兵)을 중하게 여기나, 지금의 기병은 노둔(駑鈍)한 말[馬]이 많아 만일에 강역(疆域)의 사변이 있으면 비록 2, 3일 사이라 할지라도 말들이 잇달아 넘어져서 능히 전군(全軍)이 적진(敵陣)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곤한 기마(騎馬)를 거느리다가 적인(敵人)들에게 사로잡혀 타는 것보다는 어찌 장사를 뽑아 보졸(步卒)을 만들어 원습(原隰)한 곳에 출입하면서 결핏하면 문득 공(功)을 세우는 것이 더욱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중외(中外)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모두 그 재주를 시험하고 인하여 그 군액(軍額)을 정한 다음, 반복하여 고열(考閱)하되, 그 재주와 힘이 있는 자는 호수(戶首)로 삼고, 자산(資産)이 있는 자는 봉족(奉足)을 삼아서, 덜도 또 덜어서 그의 장실(壯實)한 자와 허약(虛弱)한 자가 서로 구제하게 하며, 빈자(貧者)와 부자(富者)가 서로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정병으로써 건장한 말[馬]을 타고 한 사람이 1백 명을 당하고, 그 향하는 곳에 앞에 설 사람이 없게 되면, 평상시에는 정병(精兵) 10만으로써 적(敵)을 위협(威脅)할 것이요, 나라에 사변이 있으면, 백 만의 대중(大衆)이 모두 때에 따라 준비될 것입니다.

1. 군령(軍令)을 간략(簡略)하게 하는 일. 대개 5위(五衛)에서 결진(結陣)하면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휘(麾)를 설치하여서 지휘하는 것이고, 1만 명이 줄[列]을 이루면 귀로 능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錚]과 북[鼓]을 설치하여서 진퇴(進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풍속(風俗)에 보고 듣는 것이 온전치 못하고 명령을 듣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습진(習陣)하는 날에 대장(大將)이 위장(衛將)을 구(求)하고, 위장이 부장(部將)을 구하고 부장이 두루 통장(統將)과 여대(旅隊)의 사이에 이르러 직접 명(命)하여 왼쪽에 두었다가 다시 오른 쪽으로 옮기고, 앞에 두었다가 다시 뒤로 나오는 등, 두세 차례 설명하여도 오히려 능히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금후로는 대장(大將)이 기고(旗鼓)를 어소(御所)에 간각하였다가 습진(習陣)하는 날이 되거든 장패(將牌)와 아울러 주시면, 이때에 대장(大將)이 받아서 순청(巡廳)의 남쪽에 이르러 곧 기고(旗鼓)를 세우고, 위장(衛將)이 기(旗)를 진무소(鎭撫所)에서 받아 대장(大將)을 구하고, 부장(部將)이 기(旗)를 병조(兵曹)에서 받아 위장(衛將)을 구하면 이때에 대장(大將)이 기고(旗姑)를 눕히고 먼저 가고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또한 차례차례로 가는데 문(門) 밖에 이르러 기고(旗鼓)를 다시 세우고, 결진(結陣)하면 이때에 5위(五衛)의 군사들의 귀와 눈이 모두 기고(旗鼓)에 주목하여 비록 초계(哨戒)하는 집 비둘기를 매달더라도 보지 않을 것이요, 비록 바람 소리와 학(鶴)의 울음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엷은 얼음을 밟고서 호타하(滹沱河)를 건너가게 하여도 또한 건너갈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눈 오는 밤에 채주(蔡州)에 들어가게 하여도 또한 들어갈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10년 동안

생취(生聚)하고 10년 동안 교열(敎閱)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교열(敎閱)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군령(軍令)을 범(犯)하는 경우에는 대장(大將)이 위장(衛將)을 죄(罪)주고, 위장이 부장(部將)을 죄주고, 부장(部將)이 통장(統長)을 죄주되, 한결같이 병정(兵政)에 의하여 시행하고, 혹시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일이 없게 한 다음에라야 옛 습관을 변화시켜 군병(軍兵)을 행(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군(行軍)하여 적진(敵陣)에 나아갈 때, 모름지기 장수(將帥)와 사졸(士卒)로 하여금 서로 마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니, 사졸(士卒)의 용맹(勇猛)과 겁약(怯弱)을 장수가 알지 못함이 없고, 장수의 호령(號令)을 사졸이 알지 못함이 없은 다음이라야, 이에 정예(精銳)를 가려 이에 심복(心腹)을 펼 수 있고, 이에 은혜와 위엄(威嚴)을 보여 이에 상벌(賞罰)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물·불의 사지(死地)에 다니면서 생사(生死)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장수(將帥)가 된 자는 혹 임시(臨時)하여 가고, 경계 상(上)에 이르러 아무 고을 군사를 아무 장군에게 붙이고, 아무 장군으로써 아무 군사를 통솔(統率)하게 하니, 참으로 이른바 '본래 사대부(士大夫)를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바야흐로 당금(當今)의 마땅히 강구(講究)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1. 군제(軍制)를 정(定)하는 일. 병위(兵衛)의 일을 임명할 때 모름지기 피차(彼此)가 서로 이바지하여 혹은 서로 견제한 다음이라야 옳은 것인데, 지금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兼司僕)이 대개 서로 같아서 서로 유지(維持)할 수가 있으니, 엎드려 빌건대 겸사복(兼司僕)은 50명으로 정하고, 또 내금위(內禁衛) 3백 명 가운데 50명을 가려서 군기(軍器)를 겸(兼)하게 하여 그대로 군기(軍器)의 책임을 행하게 하여, 그들로써 본감(本監)의 구사(丘史)를 적당히 거느리게 하소서. 내금위(內禁衛)는 전소(前所)에 입직(入直)하고 겸사복(兼司僕)은 경회루(慶會樓)의 근처에 입직(入直)하여, 이와 같이 내금위(內禁衛)는 대내(大內)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숙직하고, 겸사복(兼司僕)은 대내(大內)의 서북쪽 모서리에서 숙직(宿直)하니, 동쪽과 서쪽이 서로 연관(聯關)되어 안팎에 겸하여 정비되고 완급(緩急)할 때 의지(依支)할 수 있는 것이니, 실로 만세(萬世)를 위한 염려인 것입니다. 또 본조(本朝)의 군사 가운데 친병(親兵)은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이라 하고, 위병(衛兵)은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라 하고 훈위(勳位)는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라고 하고, 숙위(宿衛)는 봉충위(奉忠衛)·공신위(拱辰衛)라고 하고 번상군(番上軍)은 정병(正兵)·평로위(平虜衛)라 하고, 보병(步兵)은 파적위(破敵衛)라 하고, 역군(役軍)은 방패(防牌)라 하고, 사령군(使令軍)은 섭육십(攝六十)이라 하고, 공학군(控鶴軍)은 근장(近仗)이라고 하고, 노군(奴軍)은 장용대(壯勇隊)라 하고, 군기감(軍器監)은 별군(別軍)이라 하고, 의금부(義禁府)는 도부외(都府外)라 하고, 진수군(鎭守軍)은 진군(鎭軍)·선군(船軍)·수성군(守城軍)이라 하는데, 이것이 안팎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액수(額數)입니다. 대저 입법(立法)은 비록 능히 만세(萬世)에까지 전(傳)할 수 없으나, 모름지기 10년 동안 유지하고 지키기를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사(軍士)의 정액(定額)과 분번(分番)·번상(番上)의 달 수가 1년에 여러차례 바꾸어져,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또 변진(邊鎭)의 방수(防戍)에는 토병(土兵)이 중대한데 지금 양계(兩界)의 갑사(甲士)가 4천 2백 46명이 11번(番)을 나누었으나, 엎드려 빌건대 7백 54명을 더 정(定)하여 5천 명을 만들어 10번으로 나누고, 그의 녹과(祿科)는 보병의 월봉(月俸)을 옮겨 미루어 주며, 또 정병(正兵)은 오로지 기사(騎士)를 쓰고, 보졸(步卒)은 선군(船軍)에 옮겨 붙이되, 그 서울[京]의 정병(正兵)은 기타 나머지 군사로서 서울 밖[京外]이라는 명칭이 별로 없으니, 이른바 서울의 정병(正兵)이란 것도 또한 혁파(革罷)하여 갑사(甲士)·방패(防牌)에 나누어 붙이며, 또 봉충위(奉忠衛) 29통(統)도 또한 공신위(拱辰衛)의 수(數)에 의하여 1통(統)을 더하여 30통(統)으로 만들며, 또 별군(別軍)은 7번으로 나누면 1번이 1백 명의 수에 차지 못하니, 엎드려 빌건대 매번(每番)을 1백 명으로 정하여 8번으로 나누며 기선군(騎船軍)과 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에 이르러서도 또한 모두 액수를 정하여 군려(軍旅)를 정비하소서.

신이 듣건대, 천보(天寶) 말년에 시정배(市井輩)의 자제(子弟)가 이름을 병사(兵士)의 대오(隊伍)에 올려 두고 남을 고용하여 대신 세웠는데, 위태할 때 임하여 병사(兵士)를 주니, 병사가 모두 백도(白徒)였으므로 송(宋)나라 때 얼굴에 묵자(墨刺)를 한 것이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패(防牌) 60명이 대개 대신 세운 사람이 많으니, 봉록(俸祿)을 주는 것이 심히 마땅치 않습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같이 사는 아들·사위의 봉족(奉足)이외에 그 역(役)을 대신하는 자와, 남의 역(役)을 대신하는 자는 실정을 아는 관리와 함께 모두 군법(軍法)으로써 시행(施行)하소서.

1. 군기(軍器)를 정비(整備)하는 일. 신(臣)이 연경(燕京)에 이르니, 한 사람이 이르기를, '귀국(貴國)에서 야인(野人)들을 많이 죽인 것은 진실로 통쾌한 일인데, 귀국(貴國)에서는 편전(片箭)의 예리(銳利)함이 있으니, 야인(野人)들이 어찌 감히 귀국(貴國)과 대적(對敵)하겠는가?'고 하였고, 한 사람은 이르기를 '소전(小箭)은 중국에서도 또한 비로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편전(片箭)은 진실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이니, 뜻을 두어 강습(講習)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빌건대 남도(南道)의 삼포(三浦)와 북방 연변(沿邊)의 주진(州鎭) 이외에는 편전(片箭)을 쏘는 것을 더욱더 연습하여 군진(軍鎭)을 이롭게 하소서. 화포(火砲)의 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에 이르러 갖추어졌고 본조(本朝)에 이르러 그 진가(眞價)를 다하게 되었으니, 가위(可謂) 군국(軍國)의 이기(利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인년에 진포(鎭浦)의 싸움과 계축년에 북벌(北伐)을 할 때에 크게 그 활용(活用)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근년에는 화포(火砲)를 가지고 적병(敵兵)을 제압한 일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특히 감련관(監鍊官)을 보내어 항상 교습(敎習)을 더하여서 적인(敵人)들을 위협하게 하소서. 또 공격(攻擊)하고 수비(守備)하는 도구는 임시에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성(守城)을 잘한다고 이름났는데 수(隋)나라와 당(唐)나라가 천하의 힘을 모아서 공격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고

려 현종(顯宗)이 24반(般)의 병기(兵器)를 변성(邊城)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몽고(蒙古)의 군사가 내침(來侵)할 때에 이르러서 방어(防禦)하여 조금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수성(守城)의 도구는 세상에 전(傳)하는 바가 없고 공성(攻城)의 일은 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臣)이 전일에 춘추관(春秋館)에서 '성제 공수도(聖制攻守圖)'를 보고 얻어서 바치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군국의 중한 보배입니다. 빌건대 한두 신료(臣僚)에게 명하여 오로지 강구(講究)하도록 맡기시고 그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에 들어가서 찾아 묻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마소서. 신(臣)이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 또 다시 노시(弩矢)의 제도를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노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연대(煙臺) 위에 두었다가 혹 호랑이를 잡는 데 쓴다.' 하고 이어서 장설(張說)하는 법을 대략 말하였습니다. 금후에 공격·수비하는 기계(機械)는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의(留意)하여 듣고 보게 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對備)하게 하소서. 또 야인(野人)은 매양 기병(騎兵)을 매복(埋伏)하였다가 바야흐로 싸울 때 크게 부르짖으면서 충돌(衝突)하는데, 이때에 진(陣)이 이 때문에 요동(搖動)합니다. 신(臣)이 오인(吳璘)의 첩진법(疊陣法)을 보니, 매양 싸울 때 장창(長槍)을 앞에 두었으며 우리 태조(太祖)께서 왜구(倭寇)를 칠 때에도 또한 장창(長槍)으로 결진(結陣)하였으니, 빌건대 지금 진(陣)을 설치할 때 팽배(彭湃)를 앞에 두게 하고 다음에 장창(長槍)을 두고 다음에 총통(銃筒)을 두어서 적(賊)으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충돌(衝突)할 수 없게 하소서.

1. 군문(軍門)을 방비(防備)하는 일. 적유령(狄踰嶺) 이북 3백 리 사이에는 높은 산과 큰 내가 있고 토지가 비옥(肥沃)한데,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말하기를, '가볍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키고자 한다면 그 형세가 심히 고단(孤單)하니 적병(賊兵)이 한편으로는 바로 만포(滿浦)에 충돌하여 이 곳에 미칩(糜糜)하고, 한편으로는 죽전현(竹田峴)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허공교(虛空橋)로부터 들어와서 빨리 강계(江界)를 포위하면, 큰 고개[大嶺] 이북은 봉화(烽火)가 연속(連續)되지 않고 성원(聲援)이 또 끊어져 매우 위태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입석(立石) 등지에 하나의 진(鎭)을 특별히 설치하고 성자(城子)를 견고하게 쌓아서 토병(土兵)으로써 숙위(宿衛)를 시킨 다음이라야 큰 고개[大嶺]의 길을 통(通)할 수 있어서 강계(江界)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臣)이 보건대, 의주(義州)는 우리 나라의 서문(西門)이고, 중국 사람을 접대(接待)할 때 처음 대하는 곳입니다. 성이 산의 등성마루에 걸쳐 있고, 띠집[茅屋]이 많지 않아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하여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빌건대 압록강(鴨綠江)의 동쪽 언덕에다가 긴 제방(堤防)을 높이 쌓고 버드나무를 두루 심어서 성터를 가려 그 형세(形勢)를 장엄하게 하소서.

1. 군정(軍丁)을 보호하는 일. 신(臣)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평안도(平安道)가 지경(地境)이 요동(遼東)과 심양(瀋陽)에 맞닿았으니, 무수(撫綏)하는 방법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 때에 해마다 한 차례씩 순수(巡狩)하고, 인하여 조세(租稅)를 내려 주고 작(爵)을 내려 주고 시설을 내려

주어 은혜와 위엄을 베풀었고, 매양 회시(會試)를 과(科)할 때마다 으레 본도(本道)의 향시(鄕試)의 한 사람을 취(取)하였으니, 진실로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가에서 방수(防戍)하는 노고는 다시 논(論)할 필요가 없으나,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使臣)들이 앞뒤에 서로 잇달으므로 으레 마른 양식[乾糧]을 내려 주는 외에도 노상(路上)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이 혹은 수십 석(石)에 이르고, 음식물(飮食物)도 갑절이나 되는데, 이것은 귀신이 운수(運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두 영호송군(迎護送軍)과 기재지(騎載持)의 말[馬]이 이와 같이 받으니, 한 사람이 한 해에 혹은 두서너 차례를 가는데,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에 두축(頭畜)이 죽고 재상(宰相)의 말 뼈가 길에 잇달아 버려지고, 혹은 중[僧]이 아버지와 형을 대신하여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破産)하며, 이 때문에 요동(遼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데 대개 그 숫자가 몇 천만 명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臣)이 《요동지(遼東志)》를 보건대, 동녕위(東寧衛)에 소속된 고려(高麗) 사람이 홍무(洪武)의 연간(年間)에 3만여 명이 되었으며, 영락(永樂)의 세대에 이르러서 만산군(漫散軍)이 또한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동(遼東)의 호구(戶口)에서 고려 사람이 10분의 3이 살고 있어 서쪽 지방 요양(遼陽)으로부터 동쪽 지방 개주(開州)에 이르기까지 남쪽 지방 해주(海州)·개주(蓋州)의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취락(聚落)이 서로 연속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국가에서 급급(汲汲)히 진려(軫慮)할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정조사(正朝使)와 성절사(聖節使) 등의 사신(使臣) 이외에 사은사(謝恩使)와 주문사(奏聞使) 등 여러 사신(使臣)은 정지(停止)할 만한 것은 정지하고, 부득이한 것은 관대(官帶)에 따라서 가서 진응(進鷹)하는 따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지 말고 또한 정조사(正朝使)와 사은사(謝恩使) 등의 사신에게 부치며, 그 건량(乾糧)은 예(例)대로 하사(下賜)하는 이외에 노상(路上)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소서. 또 삼포(蔘布)·입모(笠帽)·선자(扇子)·건육(乾肉)·건어(乾魚) 이외에 다른 물건은 일체 금지시켜서 한 지방의 민력(民力)을 소생하게 하소서. 또 해마다 영호송(迎護送)과 기재지(騎載持)는 천추절(千秋節)·성절(聖節)일 때는 전라도(全羅道)와 충청도(忠淸道)의 평로위(平虜衛)·정병(正兵)이 스스로 응모(應募)한 사람을 취하여 하고, 정조사(正朝使)가 갈 때는 경상도(慶尙道)에서 하고 정한 때가 없는 사은사(謝恩使)·하례사(賀禮使)·주문사(奏聞使) 등의 사신(使臣)일 때는 영호송(迎護送)에는 본도(本道)에서 하고 기재지(騎載持)는 황해도(黃海道)에서 하고, 이때에 하삼도(下三道)의 사람은 한 번 가면 산관직(散官職) 1자급(資級)을 주고,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의 사람은 두 번 가면 또한 1자급(資級)을 주며, 또 평안도(平安道)의 군사 가운데 재력(才力)은 있으나, 기마(騎馬)가 없는 자는 본도(本道)의 목장(牧場) 말을 뽑아서 주며, 또 수수(戍守)에 부지런하고 삼가면서 추운 때 옷이 없는 자는 고려 때 정포 도감(征袍都監)의 예(例)에 의하여 하삼도(下三道)의 감사(監司) 행영(行營)에 쌓아 둔 포백(布帛)으로써 적당히 지급하고 또 본도(本道)에서 없앨 만한 공물(貢物)을 온전히 없애어서 오로지 정벌(征伐)과 수자리 일만을 책임 지우며, 세 차례 수어(戍禦)에

과실이 없는 자는 예(例)대로 산관(散官)의 직(職)을 주어서 한 지방의 민심(民心)을 위로하게 하고, 한 지방의 힘을 쉬게 하소서. 또 신(臣)이 을해년에 평안도(平安道)에 출사(出使)하여 강계부(江界府)에 저장된 군량(軍糧)이 매우 적은 것을 보고 주관(州官)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고을 사람이 매양 미곡(米穀)을 싣고 재[嶺]를 넘어 안주(安州) 삼현(三縣) 등지에 이르러 소금[鹽]을 바꾸어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안주(安州) 등 고을의 국고(國庫)에 있는 소금을 배로 실어 수상(水上) 영변(寧邊) 지방에 두고, 강계(江界)의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고, 미곡을 고을에 바치게 하면 자연히 농우(農牛)와 전마(戰馬)가 피폐(疲弊)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장되는 양식도 풍족할 것입니다. 신(臣)이 그때에 계책(計策)을 올렸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이 또 경진년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이 입조(入朝)할 때에 안주(安州)로 지나는 길에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니 대답하기를, '관염(官鹽)이 수백 석(石)이 곳곳에 묵어 쌓였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다른 군(郡)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신(臣)이 또 생각건대, 방금 서쪽의 사변(事變)이 그치지 않으니, 비단 강계의 축적(蓄積)을 마땅히 저축(貯蓄) 대비(對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변(江邊)의 군사들이 양식을 운반하는 폐단도 더욱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로(東路)에서는 진(陣)을 친 영변(寧邊) 수상(水上)에 염창(鹽倉)을 설치하고, 강계(江界)·위원(渭原)·이산(理山) 사람으로 하여금 본 고을에 다 곡식을 바치게 하고서,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며, 서로(西路)에서는 청산 산성(靑山山城)에 창고(倉庫)를 설치하고 창성(昌城)·벽동(碧潼)·삭주(朔州) 사람으로 하여금 본 고을에 곡식을 바치게 하고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여, 얻은 미곡(米穀)을 고을의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남도(南道) 수졸(戍卒)에게 예(例)대로 양식을 지급하여 유망(流亡)하는 폐단을 막고 방어(防禦)하는 일을 튼튼히 하소서.

1. 군사(軍士)를 사열(査閱)하는 일. 대개 서울에서 습진(習陣)하는데, 한 달에 두 차례씩 행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라 하겠으나, 다만 외방(外方)의 작은 현(縣)의 군사는 혹 십수 명에 차지 아니하여 능히 군대를 이루지 못하나 습진(習陣)한다고 이름하면서 매 달에 두 차례씩 부르니, 한갓 서리(胥吏)들의 침어(侵漁)할 구실만이 될 뿐이다. 빌건대 금후로는 매년 봄·가을의 두 중월(仲月)이 되거든 각각 거진(巨鎭)에 모아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습진(習陣)하고, 10월이 되거든 유신(儒臣)들을 나누어 보내서 주진(主鎭)에 나아가 사열(査閱)하고 상벌(賞罰)을 행하며, 또 먼 도(道)의 군사를 매년 크게 사열(査閱)하는 것이 왕래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며, 또 여러 도(道)의 군사를 일시에 도성(都城) 아래에 함께 모우는 것도 또한 경외(京外)의 만세(萬世)를 위한 장구한 염려가 못됩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양계(兩界)는 전위(前衛)라고 칭(稱)하고,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는 중위(中衛)라고 칭하고, 경상도(慶尙道)는 좌위(左衛)라고 칭하고, 충청도(忠淸道)는 우위(右衛)라고 칭하고 전라도(全羅道)는 후위(後衛)라고 칭하되, 양계(兩界)와 경상 하도(慶尙下道) 이외에 가까운 도

(道)인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는 번상(番上)을 제(除)하며, 매년 봄철에 와서 사열(査閱)하게 하고, 먼 도(道)인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 상도(慶尙上道)는 각각 1년 가을철에 와서 사열하게 하며, 순행(巡幸)할 때에는 그 곳에서 친열(親閱)하게 하며, 또 외방(外方)의 습진(習陣)할 때 수만의 군사들이 옷과 갑옷을 갖추고서 가는 것은 실로 원대한 도모(圖謀)가 못되는 것이니, 갑주(甲冑)는 감사(監司)의 행부(行部)할 때에 친히 점열(點閱)하여 감봉(監封)하고, 다음 차례 순행(巡幸)할 때에 창고를 열어서 주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점열(點閱)을 빌리는 폐단이 없고, 다만 궁검(弓劒)과 마필(馬匹)을 매양 습진(習陣)할 때를 당하여 법식(法式)에 의하여 점고(點考)할 뿐이며, 수령(守令)과 장수(將帥)도 또한 모두 논벌(論罰)하기가 편(便)할 것입니다. 신(臣)이 요동(遼東)에 이르러 교열(敎閱)하는 것을 보니,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 소리가 원야(原野)를 진동(振動)시켰습니다. 근래 습진(習陣)할 때에 북소리가 둥둥 울려서 매우 시끄러운데, 빌건대 이를 고쳐서 군성(軍聲)을 엄하게 하소서. 또 육전(陸戰)은 그만이지만 수전(水戰)의 일을 강구(講究)하지 않은 듯하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빌건대 지금 수전(水戰)의 진법(陣法)을 만들어 제때에 반포(頒布)하고 매월에 두 차례씩 만호(萬戶)가 싸움을 연습시키되, 봄·가을철 두 중월(仲月)에 처치사(處置使)가 싸움을 연습시키고 10개월이 되거든 또한 사자(使者)를 보내어 싸움을 연습하게 하고 와서 사열(査閱)하는 법이 없으니, 순행(巡幸)을 할 때에 바다에 임하여 둘러보고 사열을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원전】 7 집 64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세조 034 10/08/08(기축) / 김질 · 홍윤성 · 정식 등으로 삼갑전을 행하게 하다 》

봉석주(奉石柱)와 권지(權摯)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거평정(居平正) 이복(李復)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와 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을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나, 양성지·송처관이 모두 유약(儒弱)하고 느려서 무재(武才)가 없으니, 그 장수(將帥)가 된 자가 그들을 조롱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도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였다. 좌상(左廂)·우상(右廂)이 먼저 남산(南山)을 몰이하고 어가가 사장(射場)에 이르러 월산군(月山君) 이정(李정)과 자을산군(者乙山君)

【금상(今上)의 휘(諱)이다.】 으로 하여금 여우를 쏘게 하고, 권지·봉석주를 불러서 능히 몰이하지 못한 것을 힐책하고, 드디어 칠덕정(七德亭)에 이르러 또 한종손(韓終孫)을 중상 대장(中廂大將)으로 삼아서 삼갑전(三甲戰)을 하였다. 중상(中廂)에서 좌상(左廂)을 쫓았고, 좌상(左廂)에서 우상(右廂)을 쫓아서 우전(羽箭)·목창(木槍)으로써 서로 쏘거나 찌르자, 삼상(三廂)이 모두 능히 군율(軍律)을 세우지 못하였고, 임금이 친히 지휘를 내렸으나, 또 능히 하지 못하니, 모두 갓[笠]을 벗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너희들이 모두 공신(功臣)이니, 내가 등용(登用)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싸우는 것을 보니, 모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김질(金礩)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정식(鄭軾)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홍윤성(洪允成)을 중상 대장(中廂大將)으로 삼아 서로 쫓게 하였다. 홍윤성이 김질을 찌르고자 하여 몰래 예장(銳將) 어유소(魚有沼) 등을 보내어 좌상(左廂)의 진중(陣中)을 뒤지니, 김질이 이를 알고 대장기(大將旗)를 버리고 변복(變服)하여 졸병(卒兵)의 대오(隊伍) 가운데 숨었는데, 어유소 등이 깨닫고 뒤쫓았다. 홍윤성 등이 즉시 말을 달려서 쫓으니, 김질이 진중(陣中)을 떠나서 도망하였다. 홍윤성이 뒤쫓아 언덕 아래에 이르러 주창(朱槍)으로 그 등[背]을 맞히었다. 임금이 바라보고 크게 웃으면서 홍윤성과 김질을 불러 홍윤성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안마(鞍馬)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여러 장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저 봉석주(奉石柱) 등은 어린아이 장난 같았다."

하였다.

【원전】 7 집 64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 세조 034 10/09/08(무오) / 《무경》을 주석하고 《의서유취》를 편찬한 사람들에게 자급을 올려 주다 》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吏曹)·병조(兵曹)를 불러서 주의(注擬)를 하도록 하여, **양성지(梁誠之)**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한계미(韓繼美)를 서원군(西原君)으로, 최영린(崔永潾)을 행 사헌 장령(行司憲掌令)으로 삼고, 《무경(武經)》을 주석(註釋)하고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자급(資級)을 올렸는데, 당상관(堂上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였다.

【원전】 7 집 65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34 10/09/19(기사) / 승정원에 첩종령을 행할 것을 통지하다 》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일 첩종령(疊鍾令)을 행하였으니, 그것을 속히 통지(通知)하라."

하고, 정오에 근정전(勤政殿) 앞 처마 아래에 나아가니, 내종친(內宗親)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과 승지(承旨) 등이 융복(戎服) 차림으로 계단에 모시었다. 임금이 명하여 나각(螺角)을 부니, 궐내(闕內)의 입직(入直)한 군사가 전정(殿庭)에 모여서 각각 그 방위(方位)에 자리하였다. 또 명하여 대종(大鐘)을 잇달아 치니, 백관(百官)과 시신(侍臣)과 여러 위(衛)의 군사들이 하나같이 《병정(兵政)》에 의하여 모였다. 명하여 1상(廂) 5위(衛)를 만들고, 보성경(寶城卿) 이합(李合)을 대장(大將)으로 삼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를 잡류장(雜類將)으로 삼았다. 명령하기를,

"당상(堂上) 이상은 갑옷을 풀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갑주(甲冑)를 입고 동대문(東大門) 밖 안암동(安巖洞)에서 몰이하라."

하였다. 한참 있다가 동가(動駕)하니, 왕세자(王世子)가 따르고, 임금이 내종친(內宗親)과 신숙주·구치관·홍윤성 등이 어가(御駕)를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진(陣)을 따랐다. 어가(御駕)가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별장[別墅]의 북쪽 냇가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니,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주육(酒肉)과 과채(菓菜)를 바쳤다. 일모(日暮)에 상군(廂軍)과 잡류(雜類)가 합해서 몰이하여 내려오니, 여우가 위내(圍內)에 있었으므로, 세자(世子)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였다.

【원전】 7 집 65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세조 034 10/10/02(임오) / 중궁과 더불어 풍양의 강무에 거동하다. 송골매를 진헌하게 하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풍양(豊壤)의 강무(講武)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아종(兒宗)·진종(陣宗)·사종(射宗)·원종(願宗) 【원종(願宗)은 자원하여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는 자이다.】·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

議政)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중추원 사(中樞院使) 윤사흔(尹士昕)·연산군(延山君) 김처의(金處義)·행 상호군(行上護軍) 김한(金瀚)·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행 상호군(行上護軍) 구문신(具文信)·한성부 윤(漢城府尹) 선형(宣炯)·행 호군(行護軍) 김처례(金處禮)·복성군(福城君) 권언(權諺)·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설정신(薛丁新)·행 호군(行護軍) 조방림(趙邦霖)·병조 참판(兵曹參判) 송문림(宋文琳)·예조 참판(禮曹參判) 임원제(任元濟)·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 행 호군(行護軍) 이갑충(李甲忠)·이백상(李伯常)·전동생(田桐生)·유균(柳均)·최사로(崔士老),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수령(金壽寧)·호조 참의(戶曹參議) 김필(金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신후갑(愼後甲)·김진지(金震智)와 승지(承旨) 등이 어가(御駕)를 따르니,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병조 참의(兵曹參議) 박중선(朴仲善)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진례정(進禮正) 이형(李衡)·금산정(金山正) 이연(李衍)·춘양정(春陽正) 이내(李倷), 행 호군(行護軍) 정승중(鄭承重)·어유소(魚有沼)·이의견(李義堅)·이중영(李仲英), 사복 주부(司僕主簿) 조간(曹幹)·승문 부교리(承文副校理) 양진손(梁震孫)·사직(司直) 박자곤(朴自崐) 등을 위장(衛將)으로 삼아 2상(廂)에 나누어 붙이고, 평성정(枰城正) 위(偉)를 사자 위장(獅子衛將)으로 삼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를 사대장(射隊將)으로 삼고, 거평정(居平正) 복(復)은 공현 위장(控弦衛將)으로 삼고, 수성정(壽城正) 창(昌)을 만강 대장(彎强隊將)으로 삼고, 선전관(宣傳官) 이평(李枰)을 장용대장(壯勇隊將)으로 삼고, 사복 소윤(司僕少尹) 이덕량(李德良)을 파적위장(破敵衛將)으로 삼고, 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을 잡류장(雜類將) 겸(兼) 대장(大將)으로 삼고, 겸사복(兼司僕) 최적(崔適)을 착호 위장(捉虎衛將)으로 삼고, 겸사복(兼司僕) 이철정(李鐵丁)을 재백정장(才白丁將)으로 삼고,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민발(閔發)을 사복 장(司僕將)으로 삼았다. 어가(御駕)가 청량동(淸凉洞) 냇가에 이르니,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강효문(康孝文)이 치서(馳書)하여 이르기를,

"송골매[松鶻]를 잡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내시부사(內侍府事) 정존(鄭存)을 보내어 송골매를 가지고 바로 평안도(平安道)로 가서 정조사(正朝使)에게 부쳐서 진헌(進獻)하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풍양궁(豊壤宮)에 이르러, 좌상(左廂)·우상(右廂)이 성산(城山)과 백수현(白水峴)을 몰이하였다. 궁전 북쪽의 사장(射場)에 이르러, 임금이 궁전 북쪽의 높은 언덕에 나아가니, 위내(圍內)에 호랑이가 있어서 사람 2명을 상(傷)하였으므로,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藥)을 쓰게 하고 관(官)에서 쌀과 술을 주게 하였다. 일모(日暮)에 진(陣)을 파(罷)하고 재추(宰樞)에게 주육(酒肉)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65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재정-진상(進上)

《 세조 034 10/10/24(갑진) / 하삼도 관찰사가 년분의 등급을 아뢰니 의정부 · 육조에 논의하게 하다 》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관찰사(觀察使)가 금년 연분(年分)의 등급을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이조 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형조 참판(刑曹參判) 김길통(金吉通)·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 등은 의논하기를,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

하였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충청도(忠淸道)의 수전(水田)과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한전(旱田)의 연분(年分)은 계본(啓本)에 의하고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수전(水田)의 연분(年分)은 지나치게 가벼우니, 1등급을 더하기를 청(請)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국광(金國光)의 의논을 따랐다.

【원전】 7 집 65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세조 034 10/10/26(병오) / 종친 · 재추가 문안하다 》

종친(宗親)·재추(宰樞)가 문안하니 임금이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좌찬성 윤사분(尹士昐)·영중추원사 심회(沈澮), 판중추원

사 심결(沈決)·성봉조(成奉祖), 좌참찬 최항(崔恒)·중추원 사 윤사흔(尹士昕)·형조 판서 김질(金礩)·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이조 판서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 원효연(元孝然)·호조 판서 김국광(金國光)·대사헌 김종순(金從舜)·경상도 관찰사 윤흠(尹欽)과 승지(承旨) 등을 특별히 불러서 술을 궤향(饋餉)하였다. 그때 윤흠이 어미의 병 때문에 서울에 왔었다.

【원전】 7 집 65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세조 11년 《 양성지 - 세조 11년 .... 20 건 》

세조 035 11/02/09(병술) / 문무과 시험에서 급제자의 등급에 대하여 논의하다
세조 035 11/03/09(병진) / 효령 대군 이보가 원각경 수교를 마쳐 잔치를 베풀다
세조 035 11/03/25(임신) / 서현정에서 대소 신료들이 입시한 가운데 글과 무재를 강하게 하다
세조 036 11/05/15(신유) / 병법 대의를 제관에게 강론케 하다
세조 036 11/05/21(정묘) / 재추·낭관들에게 명하여 《육전》을 수교하게 하고 불러서 궁온을 먹이다
세조 036 11/06/01(정축) / 충순당에서 여러 대신들이 경서를 강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다
세조 036 11/06/01(정축) / 지중추원사 양성지가 농업에 대해 상소하다
세조 036 11/06/02(무인) / 근정전에서 문소전 삭제의 음복연을 베풀다
세조 036 11/07/01(병오) / 비현합에서 대신들과 회포을 풀다
세조 036 11/07/05(경술) / 경회루에 여러 대신들을 모아 책제를 어제하다
세조 036 11/07/11(병진) /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 급제자 4명을 시험하다
세조 036 11/07/15(경신) / 사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
세조 036 11/07/25(경오) / 양성지에게 오륜과 관계되는 것을 찬술케 하고 《오륜록》으로 간행하다
세조 036 11/07/27(임신) / 정식·정효성·양성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조 036 11/07/30(을해) / 희우정에서 조선하는 것을 구경하다
세조 036 11/08/02(정축) / 중궁과 더불어 희우정에서 수전을 구경하다
세조 037 11/10/01(을해) / 비현합에서 경서를 강하게 하다
세조 037 11/11/15(기미) / 대사헌 양성지가 군국 편의 10조를 올리다
세조 037 11/11/25(기사) / 대소 신료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유생에게 《주역구결》을 강하게 하다
세조 037 11/11/28(임신) / 대사헌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범 사냥을 그만두다

《 세조 035 11/02/09(병술) / 문무과 시험에서 급제자의 등급에 대하여 논의하다 》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예조 판서(禮曹判書) 원효연(元孝然)·참판(參判) 임원준(任元濬)·참의(參議) 김수령(金壽寧)·좌승지(左承旨) 이파(李坡)·동부승지(同副承旨) 허종(許琮) 등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고, 문과 급제(文科及第)를 시험하였는데, 임금이 친책(親策)하기를,

"어진 이를 구(求)하는 시책(試策)은 오로지 경륜(經綸)을 하기 위함이니 만약 필묵(筆墨)의 날카롭고 둔(鈍)한 것만을 논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대개 요(堯)임금과 걸(桀)임금은 성품은 한가지였으나 성패(成敗)는 달랐고, 한(漢)나라와 당(唐)나라는 시대는 달랐으나 치란(治亂)한 것은 같았으며, 배구(裵矩)는 한 사람인데도 충성과 망령됨이 달랐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임금으로 누가 나라를 잘 다스려 편안히 하려고 하지 않겠으며, 세상에 어찌 어진 인재가 있지 않겠는가? 다스리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등용(登庸)의 길은 항상 좁아서, 위로는 진질(疢疾)하려는 생각이 없고 아래로는 뛰어나게 분발할 뜻이 없으며, 임금은 교화를 베풀 수가 없고 신하는 교지를 받들 수가 없으며, 선비는 있으되 심상(尋常)한 데에 습관 되어, 몸을 먼저 하고 집을 먼저 하며 벗을 먼저 하여 나라를 뒤로 하고, 망하게 되면 나라를 먼저 하고 벗을 먼저 하며 집을 먼저 하여 몸을 뒤로 하니, 그렇다면 어진 이를 구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조정에 있는 선비는 모두 일찍이 과거(科擧)에 급제한 자인데도, 이러한 병폐를 면하게 할 자가 있지 않으니, 어찌하여 나의 암매(暗昧)함을 밝혀 주지 않으며, 어찌 하여 대신(大臣)들은 고식적(姑息的)으로 세월을 보내는가? 어찌하여 사풍(士風)은 날로 게으르고 조행이 없으며, 어찌하여 어진 인재는 실로 한 사람도 없는가? 어찌하여 천운(天運)의 대서(代序)가 그러하며, 어찌하여 막혔으며, 어찌하여 급[紋]하며, 어찌하여 간악한가? 그 술책이 있으면 조목마다 대답하라."

하였다.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정창손·신숙주·구치관·박원형·이조 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인순부 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좌부승지(左副承旨) 윤필상(尹弼商)·우부승지(右副承旨) 오백창(吳伯昌)이 수가(隨駕)하였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참판(參判) 송문림(宋文琳)·청성군(淸城君) 한종손(韓終孫)·행 호군(行護軍) 남질(南秩)·우승지(右承旨) 신면(申沔) 등을 무거 참시관(武擧參試官)으로 삼고, 명하여 무거인(武擧人) 등에게 먼저 사후(射侯)하게 하고, 다음에 기사(騎射)하게 하여 김계정(金繼貞) 등 28인을 뽑았다. 임금이 종친과 재추와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고, 야인(野人) 김사롱합(金沙弄哈) 등 6인을 불러 술을 먹이고, 명하여 신숙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오늘 마침 무거(武擧)를 시험보므로 여기에 이르러 너희들을 보려고 불렀다."

하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하였다. 정인지 등이 진사(進士) 정휘(鄭徽)의 대책(對策)을 가지고 제1등(第一等)으로, 성진(成晉)을 제3등(第三等)으로 헤아렸는데, 성진의 책문(策文)은 자못 기이한 기상이 있었다. 임금이 성진을 제1등으로 뽑고 묻기를,

"정휘(鄭徽)는 어느 것이 성진(成晉)보다 나으냐?"

하니,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정휘는 해성(解省)에서 모두 장원(壯元)을 하였으니, 또한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과연 재주있는 자로구나, 응분의 관계(官階)를 받는 것이 옳다."

하고, 이어서 2자급(資級)을 뛰어 올렸다.

【원전】 7 집 672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세조 035 11/03/09(병진) / 효령 대군 이보가 원각경 수교를 마쳐 잔치를 베풀다 》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가 일찍이 원각경(圓覺經)을 수교(讎校)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을 마치었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원천경(原川卿) 이의(李宜)·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결(沈決)·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공조 판서 김수온(金守溫)·이조 판서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 원효연(元孝然)·이조 참판 홍응(洪應)·예조 참판 임원준(任元濬)·병조 참판 송문림(宋文琳) 등이 입시(入侍)하였고, 대마주(對馬州)의 종언칠랑(宗彦七郎)·쇄문다난(洒文多難) 등도 또한 입시하였다. 임금이 종언칠랑(宗彦七郎)에게 대홍라(大紅羅)·남라(藍羅) 각각 1필,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호피(虎皮) 1장(張), 표피(豹皮) 1장(張), 유지석(油紙席) 1장(張)을 내려 주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니, 종언칠랑 등이 뜰 아래에서 배사(拜謝)하였다. 또 주육(酒肉)을 내려 주어 그 관(館)에까지 보냈다. 입시(入侍)한 재추와 종친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이어서 신숙주·박원형에게 명하여,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 등의 자제(子弟) 중에, 한 자급을 더하여 주게 하고, 한계희(韓繼禧)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양성지(梁誠之)**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강희맹(姜希孟)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한치인(韓致仁)을 첨지

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오응(吳凝)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았으니, 한계희·강희맹은 원각경(圓覺經)을 번역한 공(功) 때문이었다.

【원전】 7 집 676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35 11/03/25(임신) / 서현정에서 대소 신료들이 입시한 가운데 글과 무재를 강하게 하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玖)·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 김국광(金國光)·공조 판서 김수온(金守溫)·인순부 윤(仁順府尹) 강희맹(姜希孟)·행 호군(行護軍) 이하성(李夏成)과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칠학과 겸예문(兼藝文) 문신(文臣)·성균 유생(成均儒生)·무사(武士) 등을 불러 글[書]과 무재(武才)를 강(講)하게 하니, 녹문(錄問)한 봉석주(奉石柱)도 또한 들어왔다. 임금이 봉석주를 불러 앞에 나오게 하고 이르기를, "너의 작위(爵位)는 모두 내가 내려 준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탐오(貪汚)한 것이 오히려 그러한가? 한 번 심하다고 말하였는데도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옳겠느냐? 낮에 쇠가죽을 싼 것이 대저 몇 겹이냐?"

하였으니, 대개 희롱으로 경계한 것이었으나 봉석주는 달리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원전】 7 집 67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 세조 036 11/05/15(신유) / 병법 대의를 제관에게 강론케 하다 》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병조 판

서 김질(金礩)·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병조 참판 송문림(宋文琳)이 입시(入侍)하여, 어제(御製)한 병법 대지(兵法大旨)로써 글을 강(講)하고, 겸예문(兼藝文) 및 유생(儒生) 등과 또 입시(入侍)한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어제(御製)에 따라 각자가 글을 짓게 하였다. 재추(宰樞) 등에게 명하여 그 고하(高下)를 차례로 아뢰게 하니, 임금이 보고 나서 전교하기를,

"너희들 무신(武臣)이 이와 같이 글을 이룰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이제 지은 것을 보니, 마음으로 심히 가상히 여긴다."

하고, 각각 활[弓] 1장(張)씩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685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 세조 036 11/05/21(정묘) / 재추 · 낭관들에게 명하여 《육전》을 수교하게 하고 불러서 궁온을 먹이다 》

임금이 재추(宰樞)·낭관(郎官) 각각 1인씩을 나누어 명하여 《육전(六典)》을 수교(讎校)하게 하니, 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호조 좌랑(戶曹佐郎) 김유(金紐)는 이전(吏典)을,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영은(李永垠)·사헌 장령(司憲掌令) 이극기(李克基)는 호전(戶典)을, 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사온 주부(四醞注簿) 이평(李枰)은 예전(禮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성균 직강(成均直講) 박숙진(朴叔秦)은 병전(兵典)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공조 좌랑(工曹佐郎) 어세공(魚世恭)은 형전(刑典)을, 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병조 정랑(兵曹正郎) 정흔(鄭昕)은 공전(工典)을 교정하였다. 또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성균 주부(成均注簿) 유순(柳洵)을 도청(都廳)으로 삼고,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불러서 오게 하여 궁온(宮醞)을 내다 먹이도록 명하였다.

【원전】 7 집 686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

《 세조 036 11/06/01(정축) / 충순당에서 여러 대신들이 경서를 강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다 》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니,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남주(南輳) 등 10인이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또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사후(射侯)하게 하여 우등(優等)한 자에게는 말 1필을 내려 주고, 그 나머지는 도롱이[蓑衣]를 내려 주며, 이기지 못한 자는 명하여 벌연(罰宴)을 행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688 면
【분류】 *왕실(王室)

《 세조 036 11/06/01(정축) / 지중추원사 양성지가 농업에 대해 상소하다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의 직분(職分)은 백성을 양육(養育)하는 것보다 큼이 없고, 백성을 양육하는 정치는 농업(農業)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함이 없으나, 그러나 농업을 힘쓰는 근본은 지력(地力)을 다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빌건대 제도(諸道)의 수령(守令)에게 명하여, 군중(郡中)의 품관(品官)과 권농관(勸農官) 등을 거느리고 친히 경내(境內)의 제언(堤堰)·해택(海澤)·방천(防川)·색포(塞浦)를 살펴서 옛터[舊基]를 수축할 만한 곳과 새터[新基]를 쌓을 만한 곳을 관찰사(觀察使)에게 갖추 보고하게 하고,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일일이 다시 살펴서 3년을 한정하여 농한기마다 작은 것은 수령(守令)이 권농관(勸農官)을 거느리고 경내(境內)의 백성을 역사시키고, 큰 것은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이웃 고을의 백성을 역사시켜 수축하게 하되, 그 수축할 수 있는 자는 권농관(勸農官)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며, 수령은 헤아려서 자급(資級)을 더하여 주되, 그 중에 권농(勸農)에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수군(水軍)에 충당하며, 수령(守令)은 즉시 파출(罷黜)을 행하고, 관찰사(觀察使)에 이르러서도 또한 상벌(賞罰)을 행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지력(地力)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천재(天災)도 또한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제언(堤堰)이 있더라도 경작하

는 자가 적다면 공지(空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경중(京中)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먹는 무리가 많으니, 빌건대 대소 조관(大小朝官)이 공사(公私)에 때로 역사하는 천례(賤隷)와 제색(諸色)의 공장인(工匠人) 외에 구실[役] 없이 한가한 사람을 모두 다 추쇄(推刷)하여 아울러 억지로 본고장으로 돌려보냈다가 농사철이면 남무(南畝)를 인연하여 부리고, 한가한 날이면 전쟁에 관한 일을 익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인력(人力)이 다하지 않음이 없고 지리(地利)도 또한 잃음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농부(農夫)는 있더라도 만일 그 소[牛]가 없으면 진실로 대신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근년에 외방(外方)에는 우축(牛丑)을 도살(屠殺)한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고, 경중(京中)의 시장 안에는 1일에 소를 사는 것이 수십 마리를 내리지 않으니, 모두 도살(屠殺)해서 닭을 죽이는 것과 같이 하여 많은 이득을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풍속(風俗)을 귀정(歸正)하기를 한(限)하여 우선 군법(軍法)대로 시행(施行)하되, 무릇 소를 잡는 사람은 도살(盜殺)이거나 매살(買殺)이거나 논하지 말고,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나눌 것 없이 모두 즉시 교형(絞刑)에 처하며, 고발한 자는 재산(財産)으로 상(賞)을 주되, 벼슬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3자급(資級)을 뛰어 주소서. 그 와주(窩主)를 용납하여 머물게 한 집은 관(官)에서 몰수하되, 양반(兩班)이면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고, 상인(常人)이면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며, 삼절린(三切隣)과 정상을 알고도 소를 팔았거나 정상을 알고도 고기를 먹은 자는 각각 장(杖) 1백 대씩 때리고, 경중(京中)의 관령(管領)과 외방(外方)의 권농(勸農)으로서 검거(檢擧)하여 관(官)에 고발하지 않은 자도 또한 장(杖) 1백 대를 때려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밖으로는 소를 잡아 죽이는 풍습이 거의 일변(一變)할 것이며, 농우(農牛)도 크게 감소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농우는 있더라도 만일 곡식의 종자(種子)가 없다면, 무엇으로써 백곡(百穀)을 뿌리며 경작하고 또 김매겠습니까? 근년에 의창(義倉)이 포흠(逋欠)되어 저장한 것이 날로 감소하여지고, 수령(守令)은 즉시 신문(申聞)하여 창고를 열지 않음이 더하여, 씨 뿌리고 심는 것이 시기를 잃고, 경작하고 김매는 데 힘쓰지 않으니, 농민(農民)이 생업을 잃음이 이런 데에 인함이 많습니다. 빌건대 중외(中外)의 의창(義倉)의 수(數)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백호(百戶)의 현(縣)은 1천 석(石)을 저장하고, 천호(千戶)의 군(郡)은 1만 석(石)을 저장하게 하며, 그 부족(不足)한 주현(州縣)은 다방면으로 포치(布置)하되, 혹 연호(煙戶)로 하여금 구수(口數)를 계교하여 조세(租稅)를 납부하게 하면 이것은 국가(國家)가 백성에게 거두어서 공용(公用)으로 씀이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외부(外府)에 두었다가 존절(존節)하게 주는 데에 불과(不過)합니다. 그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신문(申聞)하지 아니하고, 혹 막고 주지 않는 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관찰사(觀察使)에게 고하게 하여 그 즉시 파출(罷黜)하소서. 신(臣)이 들으니,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마침내 성취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을 대신하는 지위에 계시고 아래를 어거하는 권세를 잡으시어, 매양 백성을 양육하는 일로써 특히 염려를 두셨습니다. 비록 산(山)을 안고 바

다를 뛰어 넘는 공(功)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함이 되는데, 하물며 적당히 헤아려 일을 성취하고 도와주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방도로써 사민(使民)하는 일이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그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임용하고, 그 일을 위임 받은 자도 또한 전하의 성의(盛意)를 몸받아 마음과 힘을 다하여야 할 따름이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밝게 보시고 살피소서."

【원전】 7 집 688 면

【분류】 *정론(政論)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사법(司法)

《 세조 036 11/06/02(무인) / 근정전에서 문소전 삭제의 음복연을 베풀다 》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문소전 삭제(文昭殿朔祭)의 음복연(飮福宴)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결(深決)·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판중추원사 성봉조(成奉祖)·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예조 판서(禮曹判書) 원효연(元孝然)·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중추원 사(中樞院使) 어효첨(魚孝瞻)·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형조 판서(刑曹判書) 홍응(洪應)·형조 참판(刑曹參判) 함우치(咸禹治)·호조 참판(戶曹參判) 김겸광(金謙光)·야인(野人)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차리(箚里)와 여러 집사(執事) 등이 반열대로 궐정(闕庭)에 배열하였다. 왕세자가 치사(致詞)하기를,

"길이 효도할 것을 생각하고, 몸소 조고(祖考)에게 전(奠)을 드렸습니다. 향사(享祀)를 어기지 않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줌이 무강(無疆)하니, 저 큰 잔[康酌]을 들어서, 큰 복[景福]을 크게 하여 삼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 천만세(千萬歲)의 수(壽)를 드립니다."

하였다. 얼마 있다가 왕세자(王世子) 이하가 각각 자리[立]에 나아가고, 종친(宗親)·재추(宰樞)가 차례로 술을 돌리었다.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와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의 악(樂)을 연주하니, 차리(箚里) 등이 일어나 춤을 추고 술을 올리었다. 이 앞서 숭의전 부사(崇義殿副使) 왕순례(王循禮)를 불렀는데, 이에 이르러 왔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는 비록 직위는 낮더라도 왕실(王室)의 손[賓]이 되었으니, 마땅히 2품의 아래에 앉도록 하라."

하고, 어탁(御卓)을 내려 주며 말하기를,

"인리(隣里)의 족속(族屬)과 같이 여긴다."

하니, 왕순례(王循禮)가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원전】 7 집 689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세조 036 11/07/01(병오) / 비현합에서 대신들과 회포을 풀다 》

임금이 연복(燕服) 차림으로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세자(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유생(儒生)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또 유생(儒生)과 겸예문(兼藝文)으로 하여금 합전송(合戰頌)을 논(論)하게 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유시하기를,

"군신(君臣)의 사이는 엄정함으로써 주(主)를 삼을 것이나, 이제 내가 연복(燕服)차림으로 대신(大臣)을 보는 것은 일찍이 잠저(潛邸)에서 같이 놀며 함께 일한 때문이다. 엄정하면 소홀해질까 두려운데, 네가 만약 이것을 본받으면 반드시 신하를 만홀히 한다는 이름을 얻을 것이니, 대신(大臣)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일국(一國)을 받드는 몸으로서 무엇을 구한들 이루지 못할까마는 내가 이 추한 옷을 입는 것은 검약(儉約)으로써 아랫사람을 거느림이다."

하였다. 임금은 천성이 절검(節儉)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항상 빨은 옷을 입고 즐겁게 노는 것을 일삼지 아니하며, 이익없는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대신(大臣)을 보면 회포를 열어 정성을 보이고 진심으로 추장(推奬)하니, 군신(群臣)들이 모두 임금의 밝은 위엄에 복종하였다.

【원전】 7 집 69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세조 036 11/07/05(경술) / 경회루에 여러 대신들을 모아 책제를 어제하다 》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

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고, 중추원 사(中樞院使) 어효첨(魚孝瞻)·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공조 참의(工曹參議) 이파(李坡)·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수령(金壽寧)·도승지(都承旨) 신면(申沔)·좌부승지(左副承旨) 이영은(李永垠)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아, 유생(儒生)과 조사(朝士) 등을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모으고, 책제(策題)를 어제(御製)하기를,

"만약 이르기를, 《주역》은 무엇으로부터 도(道)가 갖추어지고 무엇으로부터 법(法)이 이루어졌으며, 사성(四聖)은 천명(天明)으로 인한 사람인데 무슨 까닭으로 같지 아니하며, 광대(廣大)하게 다 구비됨이 그 시서(詩書)와 더불어 같고 같지 아니한가? 문왕(文王)은 유리(유里)에 구속되었고, 주공(周公)은 유언(流言)에 곤욕당하였다. 공자(孔子)가 진(陳)·채(蔡)에서 액(厄)을 당한 것은 빨리 피(避)하는 데 어두워서 그랬겠는가? 연찬(演讚)의 지류(支流)와 복서(卜筮)의 만단(萬端)이 그렇다면 또한 술작(述作)할 바가 있겠으며, 옛사람은 다하였는가? 거북을 불태워서 이루고, 치마를 누렇게 하여 패(敗)한 것은 어떤 자를 부렸기에 어그러졌으며 또한 이치가 있는 것인가? 이치라는 것은 무슨 이치인지 그것을 다 진술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69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세조 036 11/07/11(병진) /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 급제자 4명을 시험하다 》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의정 구치관(具致寬)·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우참찬 윤자운(尹子雲)·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병조 판서 김질(金礩)·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송처관(宋處寬)·예조 참판(禮曹參判) 이함장(李誠長)·행 상호군(行上護軍) 윤자(尹慈) 등이 모시었다. 무거(武擧) 신석강(辛錫康) 등 4인을 시험하고, 또 사종(射宗)과 위장(衛將) 등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693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세조 036 11/07/15(경신) / 사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송처관(宋處寬), 형조 판서(刑曹判書) 홍응(洪應)·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 등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제도 경차관(諸道敬差官)을 불러서 사목(事目)을 강론(講論)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거든 삼가하여 술을 마시지 말고, 오직 그 일만을 신중하게 하라. 옛 사람의 말에, '한 번 보면 옛친구와 같다.'고 하였는데, 나도 너희들을 본디 신임(信任)하는 바이나 오히려 다시 경계하고 유시함은 진실로 잘하도록 함이다. 그러나 또한 크게 이치가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명(命)함을 폐(廢)하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인하여 술을 먹이어 보냈다. 또 정인지(鄭麟趾)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마땅히 세자(世子)에게 나라를 위하는 말을 가르쳐야 하는데, 세자는 자리를 피하여 들던가?"

하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도리[修齊治平之道]는 방책(方策)에 펼쳐 있으나, 그러나 그 요체는 오직 임금의 어려움이 되는 줄로 알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이름이냐?"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인군(人君)이 정심(正心)하여 조정(朝廷)과 백관(百官)을 바르게 함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7 집 69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세조 036 11/07/25(경오) / 양성지에게 오륜과 관계되는 것을 찬술케 하고 《오륜록》으로 간행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불러 말하기를,

"사람의 사람됨은 충효(忠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충효(忠孝)의 도리는 《논어(論語)》·《소학(小學)》에 갖추어져 있으나, 경전(經傳)이 한만(汗漫)하여 그 종요로운 것을 모아서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효행록(孝行錄)》 같은 것은 보기에 조금 편리하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이미 지난 사적(事跡)을 기술하고 또 시찬(詩讚)을 저술하였으되 구차한 예(例)를 면하지 못하였다. 또 번거로움에 근심이 되니, 경(卿)은 《삼강행실도》와 제사(諸史)를 상고하여, 오륜(五倫)에 관계되는 것 수십 조(數十條)를 찬술하여 올려라. 내가 장차 관람하고 재정(裁定)하여 만세(萬世)토록 사람을 가르치는 법(法)으로 삼겠다."

하므로, **양성지(梁誠之)**가 찬진(撰進)하였더니, 명하여 노사신(盧思愼)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교정하게 하고, 드디어 명하여 《오륜록(五倫錄)》이라 이름하였다.

【원전】 7 집 695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세조 036 11/07/27(임신) / 정식·정효성·양성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정식(鄭軾)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종순(金從舜)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양성지(梁誠之)**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효성(鄭孝誠)을 장령(掌令)으로, 김계창(金季昌)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삼았다.

【원전】 7 집 6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세조 036 11/07/30(을해) / 희우정에서 조선하는 것을 구경하다 》

희우정(喜雨亭)에 거둥하여 조선(漕船)하는 것을 구경하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공조 판서 김수온

(金守溫)·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제장(諸將)이 수가(隨駕)하였다. 보(補)가 찬물(饌物) 올린 것이 심히 후(厚)하므로, 명하여 조선(漕船)에 실은 쌀 50석(石)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69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교통-수운(水運)

《 세조 036 11/08/02(정축) / 중궁과 더불어 희우정에서 수전을 구경하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희우정(喜雨亭)에 거둥하여 수전(水戰)을 구경하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염(李琰)·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과 승지(承旨)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명하여 병조 판서 김질(金礩)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를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경기 병선(京畿兵船)을 나누어 가지고 상하로 서로 갈마들어 수전(水戰)을 연습하게 하니, 배[船]의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고 북을 치는 소리가 서로 합하여져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긴 자가 개가(凱歌)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군용(軍容)이 정제(整齊)하였음을 기뻐하여 특별히 신숙주(申叔舟)에게 어의(御衣) 1령(領)을 내려 주었다. 어서(御書)로 병조(兵曹)에 보이기를,

"오늘 수전(水戰)을 구경하니, 모든 대신(大臣)이 병법을 아는 소이(所以)이다. 내 일호(一毫)도 힘쓴 곳이 없는데 정비(整備)하였다 이를 만하고, 당당(堂堂)하고 정정(正正)하며,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을 이를 만하니, 다시 열병(閱兵)할 필요가 없다. 각각 집으로 돌아감이 옳으나, 만족하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니, 더욱 요긴한 기미[要機]를 생각하여 나의 급한 것으로 함이 마땅하여, 그렇지 못하면 잘못이다."

하고, **양성지(梁誠之)**를 불러 말하기를,

"근일에 헌부(憲府)를 정품(正品)으로써 올린 것을 경(卿)은 아는가? 헌부(憲府)는 나라의 이목(耳目)이니, 하루라도 게으르고 소홀하면 백관(百官)이 능이(陵夷)하여지니, 내가 경(卿)을 임용한 것은 그것을 진작시키려 함이다. 예로부터 풍문(風聞)으로써 공사(公事)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자와 그르다는 자가 있는데, 옳다고 하는 자는 풍문(風聞)에 구애하여 핵실(覈實)하지 않으면 악한 짓을 한 자를 징계할 것이 없고, 그르다고 하는 자는 풍문의 일로써 고핵(考覈)하면 참소하고 간사한 것이 혹 간교함에 팔리는 것을 기뻐하니, 내 짐짓 이 두가지의 설(說)이 모두 그럴 듯하다.

경(卿)에게 팔사(八事)로써 말하노니, 풍문(風聞)이라 하고 명문(明聞)이라 하니, 명문이란 것은 명백하게 들은 것이다. 허문(虛聞)이라 하고, 실문(實聞)이라 하고, 실견(實見)이라 하고, 허견(虛見)이라 하고, 실지(實知)라 하고 허지(虛知)라 하니, 경은 팔사(八事)로써 허(虛)를 버리고 실(實)을 취하여 마음을 다하여 봉공(奉公)하라."

하니, 양성지를 대답하기를,

"관리(官吏)가 풍문(風聞)을 겸용(兼用)하지 않으면 악(惡)을 징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은 신 등이 먼저 추문(推問)하고 뒤에 아뢰며, 중한 일은 취지(取旨)를 계문(啓聞)한 뒤에 거핵(擧劾)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원전】 7 집 697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사법-탄핵(彈劾)

《 세조 037 11/10/01(을해) / 비현합에서 경서를 강하게 하다 》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동지주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 등이 입시하였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양수사(楊守泗) 등 10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는데, 세자에게 명하여 책을 잡고 강하게 하며 너그러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깨우치는 것도 배움의 반이다.' 하였다. 남에게서 강문(講問)하는 것이 유익하니, 네가 물으라."

하였다. 또 겸예문 유신(兼藝文儒臣)을 불러 《주역(周易)》을 강하게 하였다.

【원전】 7 집 70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세조 037 11/11/15(기미) / 대사헌 양성지가 군국 편의 10조를 올리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군국 편의(軍國便宜) 10조(條)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1. 군국(軍國)의 일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도모하여 만전의 계책을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순(行巡)하는 군사를 한 무장(武將)에게 주어 어둡기를 틈타서 점열(點閱)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빌건대 금후로 순장(巡將)은 문관(文官)·무관(武官)의 두 사람을 아울러 차정(差定)하고, 의금부(義禁府)의 상직(上直)하는 낭관(郎官)이 친히 병조(兵曹)의 문안(文案)을 주고, 순장을 대하여 점고(點考)하여 보내고 그 군목(軍目)을 순장에게 주면 순장이 군목을 받아서 검찰(檢察)하게 하소서.

1. 신이 듣건대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에는 종실(宗室)이 합(閤)에 나오지 않았고, 송(宋)나라에는 대종정시(大宗正寺)가 있었고, 남송(南宋)에는 서·남(西南) 두 외종정(外宗正)이 있어 종실을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혹 이 뜻을 모방하여 경주(慶州)·전주(全州)·평양(平壤)·영흥(永興)·개성부(開城府)의 영전(影殿)과 함흥(咸興) 본궁(本宮)에 각각 직질(職秩)이 낮고 친속의 먼 종실(宗室) 두 사람을 보내어 3년에 한 번 교대하여 향화(香火)를 받들게 하고, 아울러 관(官)에서 10호(戶)를 주어 넉넉하게 하면, 이것도 또한 유성(維城)의 뜻이요 반석(盤石)의 종(宗)이 될 것입니다.

1. 신이 명(明)나라의 관제(官制)를 보건대, 남직례(南直隸) 진강(鎭江) 등 14부(府) 15주(州)와 북직례(北直隸) 순천(順天) 등 8부(府) 18주(州)는 모두 포정사(布政司)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高皇帝)의 깊은 생각입니다. 본조(本朝) 8도(道)에서 경상도(慶尙道)의 안동(安東)·진주(晉州), 전라도(全羅道)의 남원(南原)·광주(光州), 충청도(忠淸道)의 공주(公州)·홍주(洪州), 경기(京畿)의 파주(坡州)·수원(水原), 강원도(江原道)의 춘천(春川)·양양(襄陽), 황해도(黃海道)의 연안(延安)·평산(平山), 함길도(咸吉道)의 영흥(永興)·북청(北靑)·경원(慶源), 평안도(平安道)의 의주(義州)·정주(定州)·성천(成川) 등 군은 직접 한성부(漢城府)에 예속시키어 그 문이(文移) 등의 일은 모두 예전대로 하고, 다만 전최(殿最)하여서 포폄(褒貶)하는 것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는 경계가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방어하기에 고생하니 무수(撫綏)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의 자제(子弟) 한 사람은 동반(東班)에 쓰고, 강변(江邊) 육군(六郡)의 자제는 사복(司僕)에 쓰고, 영변(寧邊)·안주(安州)·의주(義州)·인산(麟山)·귀성(龜城)·정주(定州)·성천(成川)의 자제는 서반(西班)에 쓰고, 함길도(咸吉道) 함흥(咸興)의 자제는 동반에 쓰고, 육진(六鎭)·삼수(三水)·갑산(甲山)의 자제는 사복에 쓰고, 경성(鏡城)·길주(吉州)·단천(端川)·북청(北靑)·영흥(永興)의 자제는 서반에 쓰고, 제주(濟州)의 자제 4인과 정의(旌義)·대정(大靜)의 자제 각 2인은 또한 서반에 쓰되, 동반(東班)은 3년마다 교대하여 만세의 계책으로 삼으

소서.

1. 신이 역대의 제도를 보건대, 민구(民口)가 30만이면 호수(戶數)는 10만이 되고 호수가 10만이면 군사는 3, 4만 명이 되어 으레 3정(三丁)을 1호(戶)로 삼고 3호(戶)로 한 군사를 길렀는데, 지금은 2정(丁)을 1보(保)로 삼으니 보(保)는 곧 호(戶)입니다. 그리하여 부역(賦役)에 이바지하고 그리하여 군정(軍丁)을 내고 하니 모름지기 매 보(保)가 부실(富實)한 연후에야 혹 나누기도 하고 혹 합하기도 하여 이롭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정을 1보로 삼으면 보(保)가 장차 고단하고 약해져서 비록 3보를 거느리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3정(丁)을 1보(保)로 삼으면 보가 모두 부실(富實)해져서 다만 2보를 거느려도 또한 좋을 것입니다. 빌건대 3정을 1보로 삼아 보병(步兵) 가운데 경(輕)한 자와 아전(衙前)·공장(工匠)·연호(煙戶)·잡색(雜色)이 스스로 1보(保)가 되면 이것은 3인(人)이 한 군사가 되는 것이고, 보병(步兵) 가운데 중(重)한 자와 기병(騎兵) 가운데 경한 자가 1보(保)를 거느리게 되면 이것은 6인이 한 군사가 되는 것이요, 기병(騎兵) 가운데 중한 자라야 바야흐로 2보(保)를 거느리게 되니 이것은 9인이 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주가 있고 부유한 자는 가난하고 재주가 없는 사람을 조정(助丁)으로 삼고, 재주는 있는데 가난한 자는 부유하고 재주가 없는 자를 조정으로 삼으니, 이와 같이 하면 군사가 모두 정기(精騎)가 되어서 재주 있는 자가 정군(正軍)이 될 것이고 빈부(貧富)가 모두 제 곳을 얻어서 백성도 또한 따라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1. 승지(承旨) 6인이 왕명을 출납하는 것을 나누어 맡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한데, 지금 혹은 상참(常參)으로 인하여, 혹은 관사(觀射)로 인하여 6인이 모두 어전(御前)에 들어갑니다. 입계(入啓)하는 일은 친히 상지(上旨)를 품(稟)하므로 지극히 정밀하지마는 다만 1일 만기(一日萬幾)여서 육조(六曹)·제사(諸司)의 공사(公事)를 정원(政院)으로 인하여 입계하고자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빌건대 매양 상참·관사하는 날에는 승지(承旨) 5인은 들어와 예지(睿旨)를 받고 한 사람은 본원(本院)에 머물러서 제사(諸司)의 공사를 받아 그때 곧 입계하게 하소서.

1. 군자(軍資)는 저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한 곳에 축적하여도 안되며, 모름지기 안팎이 모두 족하고 동서가 모두 갖추어진 연후에야 가합니다. 빌건대 두모포동(豆毛浦洞) 안에 큰 창고를 창설하고 인하여 한강 상류(上流)에서 조운(漕運)하는 것으로 들여서 쌓고, 하류(下流)에서 조운하는 것도 또한 서강(西江)에 이르러 작은 배에 옮겨 싣고 한강(漢江)에 도달한다면, 이렇게 하여 군국(軍國)의 수요(需要)되는 것이 한 곳에 있지 않고 급한 때에 서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일대(一代)가 일어남에 반드시 일대의 제도가 있으니, 예악(禮樂)은 때에 인하여 손익(損益)하고 하나를 고집하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이 예조(禮曹)에서 왜인(倭人)·야인(野人)에게 잔치할 때를 보건대, 남악(男樂)을 쓰는데 가무(歌舞)와 의관(衣冠)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번방(蕃邦)의 사신에게 잔치할 때에 잡기(雜伎)를 쓰고, 본

조(本朝)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할 때에는 또한 여악(女樂)을 씁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동북(東北)의 사신에게 잔치하는 데는 무동(舞童)을 제하고 고쳐서 여악(女樂)을 쓰고, 서조(西朝)의 사신에게 잔치하는 데는 또 본국(本國)의 잡기(雜伎) 중에 볼 만한 것을 택하여 쓰소서.

1. 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이 세워져 영(令)하면 행하고 금하면 그쳐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일에 특별히 사행(私行)을 금하고, 범하는 자는 중전(重典)으로 의논하는데, 신이 듣건대 이 법이 서자 행장을 꾸렸다가 가는 것을 정지한 자도 있고, 좌석에서 망명(亡命)한 자도 있고, 촌락에서 손과 나그네가 자취를 거둔 것도 있고, 수령(守令)이 그 권솔[家累]들을 흩어 보낸 자도 있다 합니다. 금일 이후로는 생민의 폐해가 10분의 3은 덜리고 수령의 폐해가 10분의 5는 덜렸으니, 어찌 국가에 크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은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법이 중하면 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민의 폐해와 수령의 폐단이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년에 대납(代納)한 물건값을 받는 자가 혹은 수령을 짓밟고 혹은 뇌물을 자행하여 백성을 침어(侵漁)하는 것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물건을 공납(貢納)할 백성이 스스로 납입하지 못하는 자는 그 소원에 따라 호조(戶曹)에 전보(轉報)하면 호조에서 부상(富商)으로 하여금 납세(納稅)하여 대신 바치게 하고, 그 대납(代納)한 문안(文案)은 한 건(件)은 감사(監司)에게 보내고 한 건은 대납한 자에게 주면, 이에 수령은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하여 백성에게서 거두고 대납한 자는 문빙(文憑)을 가지고 들어가 주창(州倉)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민을 침요(侵擾)하지도 못하고 수령에게 당돌하게도 하지 못하여 수령의 폐해는 10분의 7은 덜릴 것이고 생민의 해는 10분의 5는 덜릴 것입니다.

1. 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이 선 뒤에 간사한 것을 발각하고 은복(隱伏)한 것을 적발하여 이익이 국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일에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으로 만드는 자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변방에 입거(入居)시키고 범인(犯人)의 노비(奴婢) 3구(口)를 진고(陳告)한 자에게 상으로 주는데, 이 법이 세워지자 중외(中外)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니 모두 좋은 법이라 칭하여, 한 자는 반드시 자퇴(自退)하고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니 법이 이렇게 쾌(快)합니다. 빌건대 다시 더 법을 세워 이제부터 양인(良人)이 한 군정(軍丁)을 누락시키면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입거(入居)하고, 공사 노비(公私奴婢) 한 명을 숨기다가 발각된 자는 사유를 만나는 것을 물론하고 모두 장(杖) 1백 대에 전 가족을 입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여 양민이 다 나오면 군액(軍額)이 족할 것이고, 공천(公賤)이 나오면 관부(官府)가 족할 것이고, 사천(私賤)이 나오면 사대부(士大夫)가 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반드시 평민을 쇄출(刷出)하여 변방에 채우지 않더라도 변군(邊郡)이 족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이었다.

【원전】 7 집 712 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예술(藝術) / *신분(身分) / *사법(司法)

《 세조 037 11/11/25(기사) / 대소 신료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유생에게 《주역구결》을 강하게 하다 》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풍정(豊呈)을 올리고 왕세자(王世子) 이하가 뜰에 들어와 사배(四拜)하였다. 왕세자는 뜰 위 동쪽에 앉고, 효령 대군 이보(李補)는 뜰 위 서쪽에 앉고, 임영 대군 이구(李璆)·영응 대군 이염(李琰)·의성군(誼城君) 이심(李寀)·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함양경(咸陽卿) 이포(李布)·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보성경(寶城卿) 이합(李洽)·낙안군(樂安君) 이영(李瀛)·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은천군(銀川君) 이찬(李瓚)·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거평정(居平正) 이복(李復)·진례정(進禮正) 이형(李衡)·금산정(金山正) 이연(李衍)·평성정(枰城正) 이위(李瑋) 등은 뜰 서쪽에 앉고, 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남양 부원군 홍달손(洪達孫)·영중추원사 심회(沈澮)·판중추원사 심결(沈決)·좌찬성 윤사분(尹士昐)·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우찬성 박원형(朴元亨)·좌참찬 최항(崔恒)·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중추원 사 강순(康純)·병조 판서 김질(金礩)·우참찬 윤자운(尹子雲)·동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溫)·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지중추원사 김개(金漑)·중추원 사 어효첨(魚孝瞻)·대사헌 **양성지(梁誠之)**·문산군(文山君) 유하(柳河)·행 상호군 송처관(宋處寬)·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 김예몽(金禮蒙)·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한성부 윤 이서(李墅)·병조 참판 임원준(任元濬)·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청성군(淸城君) 한종손(韓終孫)·예문 제학 서거정(徐居正)·행 호군 설정신(薛丁新)·복성군(福城君) 권언(權偃)·행 상호군 임자번(林自蕃)·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공산군(公山君) 안경손(安慶孫)·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행 첨지중추원사 안철손(安哲孫)·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여산군(礪山君) 송익손(宋益孫)·옥천군(玉川君) 설계조(薛繼祖)·한성부 윤 이파(李坡)·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 등은 뜰 동쪽에 앉고, 기생·공인 및 내녀(內女) 3인은 동랑(東廊)에서 풍악을 연주하였다. 종친과 재추가 차례로 술을 돌리어 술이 반쯤 취하자 겸예문 유신 등을 불러 《주역구결(周易口訣)》을 강하게 하고 특히 보덕(輔德) 정자영(鄭自英)

에게 갖옷 1령(領)을 주었다. 또 육조 판서 이상과 공신 등에게 초피(貂皮) 각 50령(領)을 주고, 또 명하여 입직(入直)한 군사에게 술을 먹이었다.

【원전】 7 집 71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세조 037 11/11/28(임신) / 대사헌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범 사냥을 그만두다 》

사람이 봉현(蜂峴)에 범이 들어왔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장차 나가서 사냥하려 하니,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나와 아뢰기를,

"범은 약한 짐승인데, 전하께서 친히 사냥하여 잡으려 하시니 신은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빌건대 모름지기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어서 드디어 정지하였다.

【원전】 7 집 715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세조 12년 《 양성지 - 세조 12년 .... 31 건 》

세조 038 12/01/03(병오) / 세자의 생신 잔치를 베풀다

세조 038 12/01/03(병오) / 동업 상인 김득부와 장유경의 송사를 잘못 처리한 관리를 국문하다

세조 038 12/02/01(계유) / 대소 신료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다

세조 038 12/02/14(병술) / 백관이 왕손의 탄생을 치하하다

세조 038 12/02/23(을미) / 중신들과 술자리를 하고 활쏘기를 구경하다

세조 038 12/03/01(임인) / 중신들이 입시하고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각궁을 내리다

세조 038 12/03/05(병오) / 성균관에 거둥하여 《주역구결》을 반포하다

세조 038 12/03#29(경자) / 양성지에게 세자를 가르칠 책을 초록하게 하다

세조 038 12/03#29(경자) / 최항·김국광·한계희 등에게 《동국통감》을 편찬케 하다

세조 038 12/04/15(을묘) / 서현정에 나아가 유생을 인견하고 경서를 강하게 하다

세조 038 12/04/15(을묘) / 《시경》에 대해 대신들이 쟁론하다

세조 038 12/04/19(기미) / 충순당에서 태극·무극의 이치를 논란하다

세조 039 12/05/01(신미) /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한 후 능통 자에게 군직을 제수하고 주연을 베풀다

세조 039 12/05/14(갑신) / 김수온 등 발영시에서 선발된 자들을 승진 임용하다

세조 039 12/07/01(경오) / 강녕전에서 경서와 《동국통감》을 강하게 하다

세조 039 12/07/01(경오) / 《대명강해율》·《율학해이》·《율학변의》 등을 중외에 간인 반포케 하다

세조 039 12/07/24(계사) / 강녕전에서 전날 지은 글을 살펴 12인을 뽑아 등준시라 이름하다

세조 039 12/07/26(을미) / 등준시의 은영연을 의정부에서 하사하다

세조 039 12/08/06(을사) / 대사헌과 대사간이 양정과 연좌된 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세조 039 12/08/13(임자) / 대사헌 양성지 등이 옛 제도와 같이 서경할 것을 건의하다

세조 039 12/09/10(무인) /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세조 039 12/09/30(무술) / 종친과 대신들이 문안하니 술을 내리고 활쏘기를 하게 하다

세조 040 12/10/02(경자) / 신숙주·최항·강희맹 등에게 유서(類書)를 만들도록 명하다

세조 040 12/10/06(갑진) / 도둑잡은 공으로 상직을 받은 이병정 등 1백여 인의 자급을 회수하도록 명하다

세조 040 12/10/24(임술) / 안빈세·최한경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후원에서 군사 훈련을 구경하다

세조 040 12/10/25(계해) / 사헌부에서 양천 현감 양호를 논핵하다
세조 040 12/11/02(경오) / 정인지 등을 불러서 생원 6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세조 040 12/11/02(경오) / 시무8조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세조 040 12/11/04(임신) / 병법과 사기(史記)와 지도의 집록과 진강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세조 040 12/11/16(갑신) / 낭천 현감 양호와 함양 군수 노신경에게 환임하게 하다
세조 040 12/11/17(을유) / 문적의 관리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세조 038 12/01/03(병오) / 세자의 생신 잔치를 베풀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세자의 생신 잔치를 베풀었다.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물거윤(勿巨尹) 이철(李澈)·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결(沈決)·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성봉조(成奉祖)·공조 판서(工曹判書) 윤사흔(尹士昕)·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국광(金國光)·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지중추원사 정식(鄭軾)·복천군(福川君) 권개(權愷)·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과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고, 숭의전 부사(崇義殿副使) 왕순례(王循禮)도 부름을 받아 잔치에 입시하였다. 왕순례에게 어탁(御卓)을 내려 주고, 신숙주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사사로이 네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선대(先代)의 후손이라 하여 세종(世宗)께서 왕씨(王氏)의 뒤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문종(文宗)께서 비로소 숭의전(崇義殿)을 세워 그 제사를 잇게 하였으니, 지금 내가 선왕(先王)의 뜻을 이어받든 것이다."

하였다.

【원전】 8 집 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세조 038 12/01/03(병오) / 동업 상인 김득부와 장유경의 송사를 잘못 처리한 관리를 국문하다 》

이 먼저 상인(賈人) 김득부(金得富)가 장유경(張有敬)과 더불어 재물을 같이하여 돈을 벌어서 두 사람이 각각 그 반을 차지하였는데, 하윤(河允)이 증서를 쓰고 문계생(文繼生)이 증인이 되어 문계(文契)가 모두 있었다. 그 뒤에 김득부가 또 한 사람과 더불어 돈을 벌어서 그 액수가 자못 많으니, 장유경이 나누고자 하여 속여서 말하기를,

"김득부가 나와 함께 번 돈을 이용하여 이 돈을 벌었으니, 내가 마땅히 같이 나누어야 한다."

하고, 드디어 사헌부(司憲府)에 송사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살피지 못하여 장유경을 옳다고 하였었다. 일이 임금에게 들리므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다시 신문하니, 김득부가 대답하기를,

"처음에 장유경과 더불어 힘을 합해 돈을 벌어서 둘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차지한 명백한 계권(契券)이 있으니, 뒤에 번 것은 바로 나의 돈인데 장유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사헌부의 관리를 불러 묻기를,

"김득부가 계권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문안(文案)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옥사(獄事)를 망령되게 의논하느냐?"

하고는, 명하여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외에 집의(執義) 이숭원(李崇元), 장령(掌令) 유지(柳輊)·정괄(鄭佸), 지평(持平) 유자한(柳自漢)·노호신(盧好愼)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상업-상인(商人)

《 세조 038 12/02/01(계유) / 대소 신료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다 》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조하(朝賀)를 받고, 드디어 충순당(忠順堂)에 들어가서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우윤(右尹) 이파(李坡)·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송처관(宋處寬)·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刑曹判書) 홍응(洪應)·호조 참판(戶曹參判) 성임(成任)·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공조 참판(工曹參判) 구종직(丘從直) 및 여러 장수들과 승지들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의 기사(騎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에게 말 1필을 내려 주었다.

【원전】 8 집 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군사-관방(關防)

《 세조 038 12/02/14(병술) / 백관이 왕손의 탄생을 치하하다 》

백관(百官)이 왕손이 탄생한 것을 진하(陳賀)하니, 교지를 내려서 강도·절도 및 형벌을 함부로 한 관리 외에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모두 사유(赦宥)하였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예조 판서 원효연(元孝然)·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공조 참판(工曹參判) 구종직(丘從直)을 내전(內殿)에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술이 취하자 재추(宰樞)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라고 하였다. 정인지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한담(閑談)하다가 갑자기 임금을 '태상(太上)'이라고 부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찌하여 시군(時君)을 태상이라 이르는가?"

하고, 여러 재신(宰臣)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오늘 군신(君臣)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때에 하동군(河東君)의 이 말이 불가하지 아니한가?"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정인지가 죄가 있습니다."

하자, 정인지가 고두(叩頭)하며 사죄(謝罪)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자기 망발한 것이지, 무슨 마음이 있었겠는가? 사죄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술을 올리기를 명하여 저녁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원전】 8 집 7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세조 038 12/02/23(을미) / 중신들과 술자리를 하고 활쏘기를 구경하다 》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從生)·의빈(儀賓) 심안의(沈安義)·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

叔舟)·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판사(判事) 심결(沈潔)·성봉조(成奉祖), 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김수온(金守溫)·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정식(鄭軾)·어효첨(魚孝瞻), 동지사(同知事) 김국광(金國光)·서거정(徐居正)·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여천군(驪川君) 이몽가(李蒙哥)·호조 참판 성임(成任)·행 상호군 김예몽(金禮蒙)·병조 참판 임원준(任元濬)·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한성 우윤(漢城右尹) 이파(李坡)·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과 승지(承旨)들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제장(諸將)·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에게 명하여 사후(射侯)하게 하였는데, 많이 맞힌 자 10여 인에게 각각 아마(兒馬)한 필씩을 내려 주고, 또 정창손(鄭昌孫)·신숙주·김수온·노사신·정자영(鄭自英)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 주었다. 정자영에게 명하여 그 말을 몰고 무사(武士)에게 자랑하게 하기를,

"우리는 사후(射侯)의 노고가 없는데, 앉아서 내구마(內廐馬)를 받았다."

하였다.

【원전】 8 집 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세조 038 12/03/01(임인) / 중신들이 입시하고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각궁을 내리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우의정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김국광(金國光)·송처관(宋處寬)·서거정(徐居正),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호조 참판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 및 승지들을 불러 유생(儒生) 김중연(金仲演) 등 7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또 종친(宗親)으로서 자원하는 자에게 강하기를 명하니 이때 시안정(始安正) 이탁(李擢)·우산수(牛山守) 이종(李踵)·모양 부수(牟陽副守) 이직(李稙) 등이 명에 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활도 능히 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쏩니다."

하니, 각궁(角弓)을 한 사람에 1장(張)씩 내려 주었다.

【원전】 8 집 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세조 038 12/03/05(병오) / 성균관에 거둥하여 《주역구결》을 반포하다 》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였다.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성군(誼城君) 이심(李宖)·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심결(沈決)·성봉조(成奉祖), 좌찬성(左贊成) 윤사분(尹士昐),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이변(李邊)·김국광(金國光), 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공조 판서 윤사흔(尹士昕)·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김수온(金守溫)·어효첨(魚孝瞻)·서거정(徐居正), 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예조 판서 원효연(元孝然)·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하원군(河原君) 정수충(鄭守忠)·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김예몽(金禮蒙),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홍응(洪應)·호조 참판 성임(成任)·병조 참판 임원준(任元濬)·이조 참판 강희맹(姜希孟)·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과 승지(承旨)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임금이 문선왕(文宣王)에게 알묘(謁廟)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친히 정한 《주역구결(周易口訣)》을 반포(頒布)하였다. 세자(世子)로 하여금 여러 생도들 가운데 끼이게 하고 드디어 크게 향연(饗宴)을 베풀었다. 학관(學官)과 여러 생도들에게 경서(經書)를 펴 들고 어려운 것을 묻게 하였는데, 먼 지방의 유생(儒生)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무릇 응시자가 3천여 인에 이르렀다. 명하여 문과 중시(文科重試)를 이날에 함께 행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비가 내렸으므로 예(禮)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원전】 8 집 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세조 038 12/03#29(경자) / 양성지에게 세자를 가르칠 책을 초록하게 하다 》

임금이 **양성지(梁誠之)**에게 이르기를,

"세자를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니, 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들 하나만 있는데, 보면 자애스러운 마음이 더하여 교훈을 마음과 같이 하지 못함이 있으니, 네가 경사(經史) 및 조선조의 실록(實錄)을 두루 상고하여 법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자세하게 모두 초록(抄錄)하여 아뢰라."

하였다. 글을 만들어 바치니, 이름을 《유선서(諭善書)》라 내려 주고 서연(書筵)에 진강(進講)하기를 명하였다.

【원전】 8 집 1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세조 038 12/03#29(경자) / 최항 · 김국광 · 한계희 · 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을 편찬케 하다 》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양성지(梁誠之)**·임원준(任元濬)·서거정(徐居正)·이파(李坡)·이영은(李永垠)·이봉(李封)·성윤문(成允文)·윤자영(尹子榮)·이수남(李壽男)·정난종(鄭蘭宗)·정효상(鄭孝常)·김계창(金季昌)·권계희(權季禧)·배맹후(裵孟厚)·이경동(李瓊仝) 등에게 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케 하였다.

【원전】 8 집 16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세조 038 12/04/15(을묘) / 서현정에 나아가 유생을 인견하고 경서를 강하게 하다 》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서 유생(儒生)을 인견(引見)하고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어효첨(魚孝瞻)·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형조 판서 홍응(洪應)·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공조 참판 구종직(丘從直),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민발(閔發)·오자경(吳子慶) 등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종친(宗親)·재신(宰臣)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였다.

【원전】 8 집 1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세조 038 12/04/15(을묘) / 《시경》에 대해 대신들이 쟁론하다 》

임금이 새로 정한 《시경(詩經)》의 구결(口訣)을 보고, '관관저구(關關雎鳩)'의 구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못한 것이 있다."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말하기를,

" 《시경》은 음영(吟詠)을 근본으로 하였으니,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병조 참판 구종직(丘從直)은 말하기를,

"진실로 성상의 뜻과 같습니다."

하였다. 유생(儒生)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함에 미쳐서 공자와 맹자에 말이 미치자, 임금이 구종직에게 묻기를,

"맹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맹자는 현자(賢者)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희롱하는 말로 맹자는 미진(未盡)한 곳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다. 임금이 또 어제(御製) '비빙가(飛氷歌)'를 내어서 말하기를,

"어떠하냐?"

하니, 구종직이 찬사를 드리기를,

"비빙가'는 《시경(詩經)》 3백 편(篇)이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나와 말하기를,

"구종직은 소견대로 아니하고 매사에 성상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처음 《시경》에서 성상의 뜻에 아부하고, 또 맹자를 어질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또 '비빙가'를 《시경》 3백 편보다 낫다고 했으니, 그 말이 모두 아첨에서 나와서 구차히 합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정 신하가 이를 본받으면 나라 일이 날마다 그릇될 것이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두 사람에게 명하여 앞에 나와서 다시 옳고 그름을 힐난하게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맹자는 백대의 스승인데 구종직이 갑자기 어질지 못하다고 하니, 이로써 아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구종직이 성내어 말하기를,

"아첨은 신하의 큰 죄인데 신이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신이 맹자를 어질지 못하다고 이른 까닭은, 맹자가 말하기를, '저는 부(富)로써 하는데 나는 인(仁)으로 하며, 저는 작(爵)으로써 하는데 나는 의(義)로써 하니, 내가 어찌 저를 두려워하랴!'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바라보아도 인군(人君) 같지 아니하고 나아가도 두려운 바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말할 바이겠습니까? 이제 양성지가 신을 아첨한다고 하니, 신이 양성지와 더불어 어찌 감히 같은 조정에 있겠습니까? 청컨대 성상께서는 과죄(科罪)하소서."

하고, 인하여 고두(叩頭)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은 대사헌과 더불어 굳이 다투는가?"

하였으나, 구종직이 말을 다해 다투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어찌 능히 문자(文字)로써 이길 것인가?"

하였다. 구종직이 지리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끌어 스스로 변명하기 때문에 임금이 문자로써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대사헌은 일국의 기강(紀綱)인데, 경이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또 양성지에게 이르기를,

"구종직은 대신인데, 면척(面斥)함이 옳은가?"

하니, 양성지가 대답하기를,

"신은 직무가 사헌부에 있기 때문에 감히 탄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강개(慷慨)히 다투어 변론하니, 구종직이 말이 막혔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은 화해하라."

하고, 인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임금이 양성지를 옳게 여기고 구종직의 아첨함을 그르게 여겼다. 이 먼저 구종직이 정자영(鄭自英)과 더불어 임금 앞에서 쟁론(爭論)하였는데, 구종직이 공자와 맹자를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므로 정자영과 다투어 두 사람이 떠들기를 오래 하다가 이미 자리에 나아가서도 다투기를 오히려 그치지 아니하였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김수령(金壽寧)이 자리에 있다가 구종직에게 말하기를,

"참판은 소시적에 무슨 글을 읽었으며, 무엇을 스승으로 삼았는가? 공자·맹자를 옳지 않다고 하면 따로 스승으로 삼는 바가 있는가?"

하니, 구종직이 말하기를,

"가령 내가 공자의 문하(門下)에서 나왔더라도 오히려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 논할 것인데, 어찌하여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가?"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가령 참판이 공자의 문하에서 나왔더라도 오히려 그 옳고 그름을 능히 논하겠으면, 나는 참판 밑에 있으면서 홀로 한 마디 말을 못하겠는가?"

하고, 정자영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보덕(輔德)이 주상 앞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처럼 떠드는가? 비록 말은 하지 않더라도 가슴속의 경위(涇渭)는 사람이면 누가 없겠는가?"

하니, 두 사람이 잠잠하였다.

【원전】 8 집 18 면

【분류】 *정론(政論)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 세조 038 12/04/19(기미) / 충순당에서 태극 · 무극의 이치를 논란하다 》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 구치관(具致寬)·좌의정 황수신(黃守身)·우의정 박원형(朴元亨)·우찬성(右贊成) 조석문(曹錫文)·좌참찬(左參贊)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정자영(鄭自英) 등과 더불어 태극(太極)·무극(無極)의 이치를 때가 지나도록 논란(論難)하였다.

【원전】 8 집 1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유학(儒學)

《 세조 039 12/05/01(신미) /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한 후 능통 자에게 군직을 제수하고 주연을 베풀다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조하(朝賀)를 받은 후 들어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유생(儒生) 10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했는데, 왕세자(王世子)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 구치관(具致寬)·좌의정 황수신(黃守身)·우의정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좌참찬(左參贊) 윤자운(尹子雲)·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대사헌 **양성지(梁誠之)**·행 대호군(行大

護軍) 송처관(宋處寬)·형조 판서 홍응(洪應)·호조 참판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서거정(徐居正)·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 등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였다. 생원(生員) 이의형(李義亨)이 《오자(吳子)》를 강(講)하면서 글의 뜻에 능히 통하니, 임금이 칭찬하고는 특별히 군직(軍職)을 제수(除授)하고 선전관(宣傳官)을 겸무(兼務)하게 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어 여러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원전】 8 집 2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세조 039 12/05/14(갑신) / 김수온 등 발영시에서 선발된 자들을 승진 임용하다 》

김수온(金守溫)을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노사신(盧思愼)을 호조 판서로, 이예(李芮)를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양성지(梁誠之)**를 대사헌으로, 성임(成任)을 행 호조 참판(行戶曹參判)으로, 강희맹(姜希孟)을 예조 참판으로, 최사로(崔士老)를 행 호군(行護軍)으로, 최경지(崔敬止)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겸광(金謙光)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삼았다. 김수온(金守溫)은 발영시(拔英試)의 장원(壯元)이므로 1품에 승진되어 서대(犀帶)를 특사(特賜)하고, 그 나머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모두 품계(品階)를 올려 주었는데, 자궁(資窮)이 되어 직질(職秩)을 승진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아들과 조카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허가하였다.

【원전】 8 집 2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세조 039 12/07/01(경오) / 강녕전에서 경서와 《동국통감》을 강하게 하다 》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니,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領議政) 구치관(具致寬)·좌의정(左議政) 황수신(黃守身)·우의정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대사헌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어효첨(魚孝瞻)·임원준(任元濬)·서거정(徐居正)·정자영(鄭自英), 형조 판서 홍응(洪應)·행 호조 참판(行戶曹參判) 성임(成任)·공조 판서 구종직(丘從直)·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심수온(金守溫)·예조 참판 강희맹(姜希孟)·행 대사성(行大司成) 김예몽(金禮蒙)·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공조 참판 이예(李芮)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유생(儒生) 김온(金溫) 등 8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또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수찬 낭관(修撰郎官)인 이봉(李封)·이경동(李瓊仝)·이맹현(李孟賢)·김극검(金克儉)·최숙정(崔淑精)·조익정(趙益貞) 등에게 강(講)하게 하고는, 이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이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고, 해가 저물어서야 파하였다.

【원전】 8 집 2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세조 039 12/07/01(경오) / 《대명강해율》·《율학해이》·《율학변의》 등을 중외에 간인 반포케 하다 》

임금이 궐내(闕內)에 간수한 《대명강해율(大明講解律)》과 《율학해이(律學解頤)》·《율학변의(律學辨疑)》 등의 책을 내어서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이를 교정(校正)하게 하여, 《강해율(講解律)》은 경상도(慶尙道)에, 《해이(解頤)》는 전라도(全羅道)에, 《변의(辨疑)》는 충청도(忠淸道)에 나누어 보내어서 이를 각 5백 건(件)씩 간인(刊印)하게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頒布)하였다.

【원전】 8 집 28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세조 039 12/07/24(계사) / 강녕전에서 전날 지은 글을 살펴 12인을 뽑아 등준시라 이름하다 》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서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박원형(朴元亨)·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 황수신(黃守身)·우찬성 조석문(曹錫文)·좌참찬 윤자운(尹子雲)·우참찬 김질(金礩)·병조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형조 판서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대사성(大司成) 김예몽(金禮蒙) 등을 불러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아 어제 지은 글을 고열(考閱)하도록 하고, 임금이 친히 임(臨)하여 과거(科擧)의 차례를 매기는데,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 등 12인을 뽑아서 명칭을 등준시(登俊試)라 하였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도 또한 2등에 합

격하니, 임금이 매우 칭찬하고 장려하여 어의(御衣) 1령(領)을 하사(下賜)하였다. 이어서 명령하여 좋은 날을 골라 풍정(豊呈)을 올리도록 하고, 또 은문연(恩門宴)·종친연(宗親宴)·선생연(先生宴)·동년연(同年宴) 등의 잔치를 베풀었다.

【원전】 8 집 3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세조 039 12/07/26(을미) / 등준시의 은영연을 의정부에서 하사하다 》

등준시(登俊試)의 은영연(恩榮宴)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하사(下賜)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신면(申沔)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홍패(紅牌)와 안마(鞍馬) 등의 물건을 하사(下賜)하고, 그대로 남아 잔치를 주관(主管)하게 하였다. 또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 구치관(具致寬)·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좌참찬 윤자운(尹子雲)·우참찬 김질(金礩)·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정식(鄭軾)·동지사(同知事) 어효첨(魚孝瞻)·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상호군(上護軍) 송처관(宋處寬)·형조 판서 홍응(洪應)·호조 참판 성임(成任)·행 대사성(行大司成) 김예몽(金禮蒙) 등에게 명하여 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원전】 8 집 3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세조 039 12/08/06(을사) / 대사헌과 대사간이 양정과 연좌된 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죄가 있거든 반드시 처벌한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이고, 죄가 무거운데도 형벌이 가볍게 되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근일에 양정(楊汀)의 처자(妻子)를 모두 법에 처하자는 일을 청하여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하였는데 모두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개 천하의 죄악은 반역(反逆)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양정(楊汀)은 자신(自身)이 막대한 죄를 범했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으며, 형률(刑律)에도 연좌(緣坐)된 사람이 있는데, 진실로 참형(斬刑)이 그 자신(自身)에게만 그치게 된다면 대악(大惡)을 징벌(懲罰)시켜 후세(後世) 사람을 감계(鑑戒)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양정이 평소에 작은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하여 차마 법에 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양정은 본시 초야(草野)의 미천한 군졸(軍卒)로서 반룡부봉(攀龍附鳳)하는 시기를 만나서 특별히 권우(眷遇)를 받아 훈신(勳臣)의 반열(班列)에 두어져 관위(官位)가 가장 높은 품계(品階)에 이르게 되었으니, 성상(聖上)께서 공로(功勞)에 보답하신 것은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정은 마땅히 더욱 충절(忠節)을 힘써서 처음과 끝이 변함 없이 똑같게 하여 성상(聖上)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도, 일찍이 이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서 도리어 도리에 어긋난 마음을 품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도 그 정상(情狀)이 더욱 심하니, 어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라의 대법(大法)을 굽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라 신민(臣民)의 분개를 쾌(快)하게 하시고, 천하의 대법(大法)을 신장(伸張)시켜 만세(萬世)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원전】 8 집 3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세조 039 12/08/13(임자) / 대사헌 양성지 등이 옛 제도와 같이 서경할 것을 건의하다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삼가 전지(傳旨)를 보건대, '무릇 제수(除授)된 사람은 5일 안에 직첩(職牒)을 주고 봉록(俸祿)을 주며, 간원(諫院)에서는 뒤따라 상고하여 인준(認准)하라.'고 했으니, 그 녹(祿)을 무겁게 여기고 선비를 권장하는 뜻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신(臣)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는 법은 선비의 기풍(氣風)을 권려(勸勵)하여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보이고 간사와 거짓을 방지하는 소이입니다. 국가에서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두 관사(官司)에서 제수(除授)한 후에 3품 이하의 관원은 모두 대성(臺省)으로 이송(移送)되고, 5품 이하의 관원은 반드시 그 가세(家世)에 하자(瑕疵)와 죄과(罪過)가 있는가 없는가와 자신(自身)의 한 행동이 선한가 악한가를 상고하고 전일에 자격(資格)을 주고 관직에 제수된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못한가를 상고하여, 그것이 적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봉박(封駁)하여 아뢰게 되고, 뒤따라 즉시 개정(改正)하게 되니, 서경(署

經)의 법의 중요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만약 예전의 제도를 폐지한다면 이것은 전조(銓曹)에서 제수(除授)하고 전조(銓曹)에서 직첩(職牒)을 주게 되는 것이니, 비록 틀리고 그릇됨이 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며, 혹시 이를 알더라도 또 자신(自身)을 폄론(貶論)할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간원(諫院)을 시켜 사실을 조사하게 하더라도 직첩(職牒)은 이미 주었고 봉록(俸祿)도 이미 나누어 주었으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스스로 중대한 일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므로 전비(前非)를 뉘우쳐 탓할 수도 없게 되어 사실을 조사함이 힘차지 못할 듯한데, 무엇으로써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는 뜻을 보여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권려(勸勵)하겠습니까? 이조(吏曹)에서 선발(選拔)한 것은 오히려 혹시 말할 수 있지마는, 서반(西班)의 관직은 그 수효가 아주 많으므로 제수(除授)하는 즈음에 상고하여 핵실(覈實)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비록 서경(署經)할 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간사와 거짓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지금 겨우 제수되자마자 즉시 이미 봉록(俸祿)을 받게 되어 외방에 거처하는 군사가 흩어져 사방으로 가게 되니, 비록 상고하여 핵실(覈實)하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점차 몇 해의 후에 이르게 되면 간사와 거짓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서경(署經)을 지체(遲滯)하여 봉록(俸祿)을 받는 데 때를 놓치게 한다면 마땅히 신(臣) 등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며, 그 서경(署經)하는 법은 한결같이 예전의 제도대로 계승하여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보이고 간사와 거짓을 방지하소서."

하니, 어필(御筆)로 비답(批答)하기를,

"어찌 대의(大義)를 알지 못함이 심한가?"

하였다.

【원전】 8 집 3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세조 039 12/09/10(무인) /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 영의정 구치관(具致寬)·좌의정 황수신(黃守身),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심결(沈決)·김수온(金守溫), 지사(知事) 윤사분(尹士昐), 동지사(同知事) 이변(李邊)·황치신(黃致身), 좌찬성(左贊成) 최항(崔恒)·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여천군(驪川君) 이몽가(李蒙哥)·공조 판서 구종직(丘從直)·검판서(檢判書) 조관(趙貫)·중추부 동지사(中樞府

同知事) 정자영(鄭自英)·김 한성부 윤(檢漢城府尹) 양수(楊脩) 등과 계상(階上) 3품 이하의 노인(老人)과 더불어 동정(東庭)과 서정(西庭)으로 나누어 앉아서 잔치에 나갔는데, 조관(趙貫)이 나이가 가장 높았다. 임금이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음악은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쓰도록 하였다. 임금이 정인지(鄭麟趾)를 불러서 이르기를, '기로(耆老)의 잔치에는 경(卿)이 술을 권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잔치에 나온 노인들에게 각기 한 자급(資級)씩 승진시키도록 명하고, 이어 어탁(御卓)을 하사(下賜)했으며, 시위(侍衛)하는 군사에게도 또한 술을 하사(下賜)하였다.

【원전】 8 집 3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39 12/09/30(무술) / 종친과 대신들이 문안하니 술을 내리고 활쏘기를 하게 하다 》

종친(宗親)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의 당상관(堂上官)이 임금께 문안(問安)하니, 임금이 명하여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의빈(儀賓) 심안의(沈安義)·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逢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 구치관(具致寬)·좌의정 황수신(黃守身)·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 판사(判事) 심결(沈決)·김수온(金守溫), 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분(尹士昐)·강순(康純), 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임원준(任元濬)·송처관(宋處寬), 공조 판서 구종직(丘從直)·대사성(大司成) 김예몽(金禮蒙)·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서(李墅)·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병조 참판 박중선(朴仲善)과 여러 장수들을 불러 궐내(闕內)에 들어와서 술을 접대하게 하였다. 이어서 좌우(左右)로 나누어 작은 과녁을 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비(鹿皮) 각 1장(張)씩을 하사(下賜)하였다. 이내 어장(御帳)을 가까운 곁에 설치하고, 신숙주·한명회·구치관·황수신·김수온·한계희·강희맹·구종직·임원준·송처관(宋處寬)·김예몽(金禮蒙)·김상진(金尙珍) 등에게 명하여 장중(帳中)에 유숙(留宿)하도록 했으니, 대개 불시(不時)에 밤에 이야기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원전】 8 집 41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세조 040 12/10/02(경자) / 신숙주 · 최항 · 강희맹 등에게 유서(類書)를 만들도록 명하다 》

이날에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구종직(丘從直)·임원준(任元濬)·성임(成任)·서거정(徐居正)·이파(李坡)·이예(李芮)·김석제(金石梯)·정침(鄭沈) 등에게 명하여 각기 낭청(郎廳) 1인을 거느리고 제서(諸書)의 유취(類聚)를 간선(揀選)하도록 하였으니, 역(易)·천문(天文)·지리(地理)·의(醫)·복서(卜筮)·시문(詩文)·서법(書法)·율려(律呂)·농상(農桑)·축목(畜牧)·역어(譯語)·산법(算法)이다.

【원전】 8 집 42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세조 040 12/10/06(갑진) / 도둑잡은 공으로 상직을 받은 이병정 등 1백여 인의 자급을 회수하도록 명하다 》

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이병정(李秉正)·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 이영희(李永禧)·시강원 사경(侍講院司經) 권계희(權季禧)·해미 현감(海美縣監) 이계희(李季禧)·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김극널(金克訥)·풍저창 봉사(豊儲倉奉事) 정겸(鄭謙)·선공 직장(繕工直長) 김극련(金克鍊)·진위 현령(振威縣令) 양원(梁瑗) 등 1백여 인의 자급(資級)을 회수(回收)하도록 명했으니, 모두 외람되게 도둑을 잡은 공(功)으로 상직(賞職)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나라의 법으로써 조율(照律)한다면 마땅히 종신(終身)토록 서용(敍用)하지 않고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면려(勉勵)시켜야 할 것인데, 다만 그 자급만 회수한 것은, 이영희(李永禧)는 한계희(韓繼禧)의 사위이고, 권계희(權季禧)는 권개(權愷)의 아들이고, 김극널(金克訥)은 김국광(金國光)의 아들이고, 양원(梁瑗)은 **양성지(梁誠之)**의 아들이므로 모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세력가(勢力家)의 자제(子弟)이기 때문이었다. 권계희(權季禧)는 유가(儒家)의 자제(子弟)로서 시서(詩書)를 조금 알고 있는데도 염치가 없는 것이 이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나머지 무식(無識)한 무리들은 어찌 족히 헤아리겠는가?

【원전】 8 집 4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세조 040 12/10/24(임술) / 안빈세 · 최한경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후원에서 군사 훈련을 구경하다 》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참판(參判) 신승선(愼承善)·참의(參議) 예승석(芮承錫)·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참판(參判) 박중선(朴仲善)·참의(參議) 박서창(朴徐昌) 등을 내전(內殿)에 불러서 제수(除授)를 의논하게 하여, 안빈세(安貧世)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최한경(崔漢卿)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안빈세는 정의 공주(貞懿公主)의 아들로서 여러 아들 중에서 글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공주(公主)의 병이 위급하니, 7계급을 뛰어 올려 제수한 것이다. 또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서거정(徐居正)·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성임(成任)·**양성지(梁誠之)**·이예(李芮)·이파(李坡)·김석제(金石梯)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서(諸書)의 유취(類聚)를 써서 바치도록 하고, 이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또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군사를 후원(後苑)에 불러서 한계미(韓繼美)와 이호성(李好誠)을 대장(大將)으로 삼고, 권경(權擎)·어득해(魚得海)·춘양정(春陽正) 이내(李徠)·제천정(堤川正) 이온(李薀)에게 명하여 형명(形名)을 익히도록 하고 그 진퇴 좌작(進退坐作)의 형세를 구경하였다. 권경(權擎)과 어득해(魚得海)가 군율(軍律)을 어겼는데, 신숙주에게 명하여 힐문(詰問)하게 하기를, '진법(陣法)이 마땅히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하니, 어득해가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 억지로 떠들썩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술로써 벌하고 또한 군사들에게도 술을 하사(下賜)하였다.

【원전】 8 집 4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40 12/10/25(계해) / 사헌부에서 양천 현감 양호를 논핵하다 》

사헌부(司憲府)에서 강원도 문폐사(江原道問弊使) 금산정(金山正) 이연(李衍)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낭천 현감(狼川縣監) 양호(梁琥)의 공초(供招)에, '일찍이 전지(傳旨)를 내려서 여러 고을의 거두어 들이지 못한 공물(貢物)을 감면하도록 했는데도 전 현감(縣監) 조효빈(曹効彬)이 미수(未收)된 신세포(神稅布) 2백 2필을 뽑아서 장부에 기록했으므로 나도 또한 이를 그대로 민간에 독촉하여 바치게 했습니다.'고 하였는데, 양호(梁琥)는 곧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의 아들이니, 청컨대 다른 관사(官司)로 옮기소서."

하니, 명하여 형조(刑曹)로 보내게 하였다.

【원전】 8 집 45 면

【분류】 *재정-공물(貢物)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40 12/11/02(경오) / 정인지 등을 불러서 생원 6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 지사(知事) 윤사흔(尹士昕)·강순(康純), 동지사(同知事) 어효첨(魚孝瞻)·구종직(丘從直)·서거정(徐居正)·정자영(鄭自英), 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호조 참판(戶曹參判) 성임(成任)·기성군(箕城君) 유자환(柳子煥)·행 대사성(行大司成) 김예몽(金禮蒙)·공조 참판(工曹參判) 이예(李芮)·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형조 참판 정난종(鄭蘭宗)을 불러서 생원(生員) 유척(兪陟) 등 6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도록 하고, 또 겸사복(兼司僕), 여러 장수를 불러서 좌우(左右)로 나누어 사후(射侯)하게 하였는데, 등준위(登俊衛)의 반희(潘熙)가 많이 맞혔으므로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下賜)하였다.

【원전】 8 집 4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세조 040 12/11/02(경오) / 시무 10조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하늘이 만민을 내고, 임금[司牧]을 정하여, 이 백성들을 옷 입히고 밥먹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병·형(兵刑)을 설치하여 그 그릇된 것을 금하게 하고 예의(禮義)를 밝혀서 그 착한 것을 권장하게 되니, 제왕(帝王)의 직책은 이와 같은 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정치는> 식량을 충족시키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했으며, 또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번성하고 백성들이 부유해지면, 또한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니, 이미 부유해지면 식량이 충족하고, 이미 번성해지면 군비가 충분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믿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고 명분(名分)을 정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신(臣)은 세 가지로써 되풀이하면서 진술하겠습니다.

1.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고, 식량은 백성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신(臣)이 살펴보건대, 농민은 화경 수운(火耕水耘)하여 근고(勤苦)가 막심한데도,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이 같지 않으며

천후(天候)와 수재(水災)·한재(旱災)가 고르지 않으니, 일년 동안에 부지런히 움직여도 얻는 바는 얼마되지 않아서 국가의 조세(租稅)도 오히려 충당하지 못하는데, 부상(富商)·대고(大賈)가 방납(防納)한다고 칭탁하고서 여러 가지로 수취(收取)하게 되니, 장차 무엇으로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보살피겠습니까? 근일에 문폐사(問弊使)로서 법을 범하는 관리가 그 절반이나 차지하게 되니, 그 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납(代納)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백성의 해가 되는 것은 지둔(紙芚)·유밀(油蜜)·백저(白楮)·정철(正鐵)·죽목(竹木)·공포(貢布)·공탄(貢炭)·소목(燒木)·토목(吐木)·부등방목(不等方木)·표피(豹皮)·선척(船隻)이고, 청초(靑草)에 이르러서는 곳곳에서 나는데도 백성들이 스스로 바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전세(田稅)는 국가의 큰 공물(貢物)인데도 간혹 대납(代納)하는 사람이 있게 되니, 대납(代納)의 해독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지금 성주(聖主)께서 위에 계시면서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만약 구습(舊習)을 따라 행하여 대책(對策)을 강구(講求)하지 않다가 후일에 이르러 만일에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있게 된다면 백성이 아래에서 곤궁하여도 위에서는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해됨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기르는 중요한 일과 백성에게서 수취(收取)하는 중대한 일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큰 계책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특별히 유념(留念)하시고 대신(大臣)들과 모의(謀議)하여 결단하여서 경장(更張)하고, 먼저 공안(貢案)을 취하여 일일이 강구(講求)하여 수륙(水陸)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각기 있는 고을에 나아가서 이를 정하게 하고, 그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감하고 줄여서 어떤 물건은 관청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바치고 어떤 물건은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바치게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부득이 준비하여 바치지 못하는 것은 상정(詳定)하여 여러 고을로 하여금 헤아려서 포화(布貨)로 내게 하면 해당 관사(官司)에 운반하여 그 관사(官司)로 하여금 무역(貿易)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둔(紙芚)·유밀(油蜜)·백저(白楮) 같은 것은 백성이 스스로 바치게 하고, 표피(豹皮)는 관가에서 모름지기 준비해 바치게 하고, 죽목(竹木)은 바다의 배로 운반하도록 하며, 공포(貢布)는 강의 배로 운반하도록 하고, 정철(正鐵)은 황해도(黃海道)의 여러 고을에서 바치도록 하며, 선척(船隻)·탄(炭)·소목(燒木)·토목(吐木)·부등방목(不等方木)은 수상(水上) 산군(山郡)에서 만들게 하고, 풀은 곳곳에 있는 것을 바치게 하고, 쌀은 민간에 있는 것으로서 모래와 돌이 섞이지 않은 것을 바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여 경중(京中)의 제사(諸司)에서 막히어 제때에 봉납(捧納)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와 고자(庫子)에게 모두 중한 형벌을 가(加)하고, 수령(守令)으로서 강제로 대납(代納)하게 한 자와 조관(朝官)으로서 사사로이 스스로 대납(代納)한 자는 각기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당자는 수군(水軍)에 충원(充員)시켜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도록 하며, 흥리인(興利人)과 색리(色吏)는 강도(强盜)의 형률(刑律)에 비하여 사형(死刑)에 처하고 재산은 적몰(籍沒)하여서 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도록 하소서.

1. 과전(科田)은 사대부(士大夫)를 기르는 것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장차 직전(職田)을 두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조사(朝士)는 이미 그 봉록(俸祿)을 먹고서 또 직전(職田)을 먹게 되는데, 치사(致仕)한 신하와 무릇 공경 대부(公卿大夫)의 자손(子孫)들은 장차 1결(結)의 전지(田地)도 먹을 수 없게 되니, 이른바 대대로 국록(國祿)을 주는 뜻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우리 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사(士)와 농(農)이 각기 다르니, 만약 봉록을 먹지 않고 조세(租稅)를 먹는다면 서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서민과 다름이 없게 된다면 나라에 세신(世臣)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군주(君主)는 공경 대부(公卿大夫)를 다스리고, 공경 대부는 사(士)·서인(庶人)을 다스리고, 웃사람은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웃사람을 받들게 되니, 명분(名分)이 본디 정해지고 풍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 지혜를 막아내고 그 힘을 제어(制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외(中外)의 유사(攸司)가 각기 사송(詞訟)을 청단(聽斷)하고 또 격고(擊鼓)의 법을 설치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도록 하고, 문폐사(問弊使)를 보내어 탐학(貪虐)한 것을 규찰(糾察)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의 덕화(德化)를 베풀고 백성의 사정(事情)을 상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비를 뽑는 것은 자기의 번쇄(煩碎)한 일을 많게 하는 것이며, 상자에 투서(投書)하는 것은 후일(後日)의 무구(誣構)하는 조짐을 열게 될 것이요, 대궐의 북쪽에서 깃발을 휘두르고 궁궐의 옆에서 곡읍(哭泣)하는 것도 또한 태평의 기상에 어긋나는 것이니, 이른바 풍속이란 것은 백년 동안을 쌓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루 동안에도 무너지고 남음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후일의 폐단을 특별히 염려하시어, 그 깃발을 휘두르고 곡읍(哭泣)하는 사람은 중한 형벌에 처하게 하여 웃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風習)을 고치고, 들춰내어 고발하는 풍속을 막도록 하소서. 신(臣)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국가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시조(始祖)께서 한 나라에 큰 공이 있고 열성(列聖)께서 이 백성들에게 큰 덕을 베풀어서, 법도를 제정하고 기강(紀綱)을 세우며 교화(敎化)를 밝히고 풍속을 하나로 하는 것이니, 이에 신료(臣僚)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곁에서 이를 보좌하고 군상(君上)은 신하의 계획을 받아들여 나라를 유지(維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국가의 대업(大業)을 만세(萬世)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 특별히 유념(留念)하시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중국 조정에서 장차 개주(開州) 등지에 위소(衛所)를 세우려고 하니, 이것은 국가 문정(門庭)의 걱정입니다. 평안도(平安道)의 백성들은 다만 방수(防戍)에만 시달릴 뿐 아니라 또한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사신의 영접과 전송을 하는 데에도 매우 시달리게 되어, 태반이 동팔참(東八站)과 해주(海州)·개주(蓋州) 등 여러 주(州)에 유입(流入)하게 되므로, 한편으로는 토병(土兵)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저들이 우리의 허실(虛實)을 알게 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비록 후일 우리의 이익

이 된다 하더라도 또한 후일 우리에게 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 이외의 사하사(謝賀使)·주문사(奏問使)·진응사(進鷹使) 등은 전일에 비하여 3분의 1을 줄이고 이를 합쳐서 보내게 하고, 혹은 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 등에게 붙여서 다시 건량(乾糧)의 수량을 줄이고 무역(貿易)의 금령(禁令)을 더욱 엄중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영접하고 전송하는 폐해도 종식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안주(安州) 이북의 공물(貢物)은 다른 도(道)에 없는 초서피(貂鼠皮)·인삼(人蔘) 이외의 것은 일체 영구히 없애고 오랑캐에게 들어갔다가 본국(本國)에 돌아온 사람은 3자급을 뛰어올려서 관직을 제수하고 5년을 한하여 복호(復戶)하게 하소서. 이에 강변(江邊)과 위원(渭原)의 백성은 만포(滿浦)에 합치고, 이산(理山)을 입석(立石)에 옮기고, 벽동(碧潼)을 성간(城干)에 옮겨서, 각기 1고을을 설치하여 강계(江界)의 길을 통하게 하고, 창성(昌城)을 삭주(朔州)와 정녕(定寧)에 합쳐서 또한 첨사(僉使)를 두고, 다만 토병(土兵)만 남겨 두고는 남방의 백성은 들어와서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강계(江界)·삭주(朔州)·의주(義州) 3진(鎭)의 형세가 장건하게 될 것이며, 이산(理山)과 벽동(碧潼)은 본시 산(山) 뒤에 있어서 여연(閭延)·무창(茂昌)과 같이 일체(一體)가 될 것이며, 강역(疆域) 가운데에 있어서 예전과 같을 것이니, 적인(狄人)이 진실로 엿볼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들어와 침범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방수하는 폐단이 어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1. 옛날에 조위(曹魏)에서 종회(鍾會)를 시켜 촉한(蜀漢)을 치게 했는데, 연속(掾屬) 소제(邵悌)가 사마소(司馬昭)에게 말하기를, '종회(鍾會)는 맡은 일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 가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종회(鍾會)가 배반하여 복죄(伏罪)된 것이 과연 소제(邵悌)의 말과 같았습니다. 평안도(平安道)는 땅이 다른 나라에 연접해 있고, 함길도(咸吉道)는 도로가 아득히 멀어서 일이 염려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이를 전조(前朝)의 역사에서 상고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염려가 조금도 없겠지마는, 훗날의 계획을 위해서는 오늘날로부터 이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후로 양계(兩界)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처자(妻子)를 거느리고서 부임(赴任)하지 말도록 하고, 함흥(咸興)과 안주(安州) 이북(以北)의 수령(守令)들도 또한 가족(家族)을 거느리고서 가지 말도록 하여 이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1. 국가의 동남쪽에 적국(敵國)으로서는 대마도(對馬島)가 가까운데, 만약 훗날에 편안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멀리 가서 정벌할 필요도 없으며 험지(險地)에 들어가서 이익을 다툴 필요도 없고, 다만 경주(輕舟) 수백 척으로 바람을 타고 바로 그 곳으로 나아가서 화포(火砲)로써 그 주즙(舟楫)을 다 불살라 버리면, 배는 산속에 간수할 수가 없으므로 모두 바다에 뜨게 될 것이니, 몇 차례 지나지 않아서 섬 안의 왜적(倭賊)을 굶어서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인(野人)에 이르

러서는 평안하여 일이 없으면 우리의 백성과 가축(家畜)을 사로잡아 가고,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서 정벌하면 산을 타고서 멀리 도망하게 되니, 이를 막아서 평정하는 데 계책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에서 이 무리들을 대우할 적에는 혼인(婚姻)을 많이 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먼저 야인(野人)으로서 투화(投化)한 사람은 의례(依例) 천구(賤口)로서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주게 되어 있으니, 먼 지방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이웃 나라를 동일(同一)하게 대우하는 의리(義理)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비록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은 중국과 흡사하지마는 또한 동해(東海)의 밖에 있으니, 어찌 이것으로써 북방(北方) 사람을 천대(賤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후에 야인(野人)으로서 투화하는 사람은 족속(族屬)의 강약(强弱)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서, 1등은 문음(門蔭) 사대부(士大夫) 집에, 2등은 잡직(雜職) 사대부(士大夫) 집에, 3등은 평민(平民) 집에 통혼(通婚)하도록 하고, 그 행성(行城)의 성밑과 상동량(上東良) 등지의 야인(野人)들은 부근의 토착(土着) 군호(軍戶)에게, 이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통혼(通婚)하도록 하소서.

1. 대저 병졸(兵卒)은 정예(精銳)함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민(人民)은 무려 1백만 호(戶)나 되는데 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병졸이 30만 명이고, 정예(精銳)한 병졸이 10만 명이며, 용감한 군사가 3만 명입니다.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兼司僕)은 사후(射侯)하여 2백 보(步)로 시험하고,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는 1백 50보(步)로 시험하며, 파적군(破敵軍)·대졸(隊卒)·정병(正兵)·기선군(騎船軍)은 1백 보(步)로 시험하고, 잡색(雜色)의 기병(騎兵)·보병(步兵)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1백 보(步)로 시험하여, 이에 시재(試才)한 사람을 주호(主戶)로 삼고 무재(無才)한 사람을 협호(挾戶)로 삼아,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아름다운 칭호로 바꾸고 몇 번(番)으로 나누어 머무를 달을 정하되, 대신 입역(立役)하는 것을 금하고 결원(缺員)에 따라 충보(充補)하여서 백세(百世)토록 바꾸지 않는다면 한 명의 병졸(兵卒)이라도 시재(試才)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 군정(軍政)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신(臣)은 항상 1정(丁)이라도 국민(國民)으로서 누적(漏籍)되는 일이 없게 하고, 1인(人)이라도 단정(單丁)으로서 입호(立戶)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군적(軍籍)은 2정(丁)을 1보(保)로 삼고, 4보(保)를 1기병(騎兵)으로 삼게 되었는데, 3정(丁)을 1보(保)로 삼는다면 1인은 호주(戶主)가 되어 군대를 훈련하고 1인은 솔정(率丁)이 되어 농사일을 하며, 1인은 여정(餘丁)이 되어 옮겨가면서 사무를 보게 한다면 1호(戶)가 충실(充實)하여질 것이며, 2정(丁)을 1보(保)로 삼는다면 1인은 호주(戶主)가 되어 군대를 훈련하고 1인은 솔정(率丁)이 되어 농사일을 하게 되므로 여정(餘丁)이 없게 될 것이니 호(戶)가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4약호(弱戶)로써 1기병(騎兵)을 기르게 하는 것은 3부호(富戶)로써 1병졸(兵卒)을 기르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변(事變)이 있으면 이미 모두 장부에 등록되어 있으니 모두 뽑아서 병졸을 삼을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그 호수(戶數)를 감손(減損)하여 백성의 힘을 기를 수가 있으니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또 보(保)를 만드는 것은 호구(戶口)를 편성(編成)하는 것이니 전지(田地)의 수량을 계산하지 않고서 다만 인정(人丁)의 수효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차역(差役)할 때에 그것을 균평(均平)하게 하려고 한다면 전지(田地)의 수량만 오로지 계산하고서 인정(人丁)의 수효는 아울러 계산하지 않아도 또한 될 것입니다. 연호군(煙戶軍)·잡색군(雜色軍)·팽배(彭排)·대졸(隊卒)과 같은 것은 1보(保)가 스스로 1병(兵)이 될 수가 있고 선군(船軍) 정병(正兵)은 2보(保)가 1병(兵)이 될 수가 있고,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는 3보(保)가 1병(兵)이 될 수가 있으니, 이것은 다만 병졸의 집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생(民生)의 일용(日用)에 쌍정(雙丁)을 1호(戶)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함길도(咸吉道)는 본시 성조(聖祖)께서 흥운(興運)한 땅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비로소 5진(鎭)을 세워 5대군(大君)에게 사향(賜鄕)하셨으니, 5진(鎭)의 사람이 지금까지 미담(美談)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후로 또한 이 뜻을 모방하여 함흥(咸興) 이북(以北)의 여러 고을은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종친(宗親)에게 나누어 하사(下賜)하여서 향읍(鄕邑)으로 삼도록 하고, 각기 노자(奴子) 1호(戶)를 두어 근본의 땅을 견고하게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는 서쪽으로 명(明)나라에 인접(隣接)하여 사람들이 모두 진(鎭)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시부터 토성(土姓)은 없었는데, 또 근일에는 강제로 전지(田地)를 개간하게 하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빌건대 지금 친공신(親功臣)과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2품 이상에게 식읍(食邑)을 나누어주기를 삼공(三公)의 식읍(食邑)과 같이 하여 평양부(平壤府)의 1천 호(戶)를 주고, 정 1품은 안주목(安州牧)의 7백 호(戶)를 주고, 종 1품은 성천부(成川府)의 5백 호(戶)를 주고, 정 2품은 가산군(嘉山郡)의 3백 호(戶)를 주고, 종 2품은 영유현(永柔縣)의 1백 호(戶)를 주되 실제로 조세(租稅)는 받아먹지 않고 다만 세시(歲時)로 통자(通刺)만 하게 하고, 이어서 각기 노자(奴子) 1호(戶)를 두고서 고을 안의 일을 합심(合心)하여 포치(布置)하여서 내외(內外)가 서로 유지(維持)되고 체통(體統)이 서로 제어(制御)되어 자손(子孫)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 칭호를 물려받도록 하고, 상납(上納)한 후에는 양계(兩界)의 감사(監司)는 모두 가족(家族)을 거느리고 부임(赴任)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원전】 8 집 4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외교-명(明)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세조 040 12/11/04(임신) / 병법과 사기(史記)와 지도의 집록과 진강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엎드려 보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하는 여가에 문교(文敎)에 정신을 두어 역학(易學)·시문(詩文)·운서(韻書)·자체(字體)·악보(樂譜)와 무릇 천문(天文)·풍수(風水)·의약(醫藥)·복서(卜筮)·농상(農桑)·축목(畜牧)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차례로 책을 편찬하여 올리도록 하시니, 신(臣)은 용렬한 자질로서 또한 엄중한 명령을 받았으므로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적(典籍)을 널리 참고하여 편찬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사기(史記)는 전대(前代)의 선악(善惡)을 상고하여 만세(萬世)의 권계(勸戒)를 삼는 것이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가장 간절하게 되어, 성리(性理)의 책과 더불어 서로 체(體)와 용(用)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地理)는 주군(州郡)의 연혁(沿革)과 산하(山河)의 액색(阨塞)을 기재한 것이므로, 소하(蕭何)는 이로써 먼저 도적(圖籍)을 수집(收集)하였고 동파(東坡)는 지장도(指掌圖)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대국(大國)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법(兵法)에 이르러서는 정전(征戰)의 승패(勝敗)를 논한 것이니, 더욱 마땅히 요점(要點)을 추려서 장수와 군사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빌건대, 제가(諸家)의 병법(兵法)과 사기(史記)와 지도(地圖)를 모두 집록(輯錄)하도록 하여 일대(一代)의 전고(典故)를 이루게 하고, 이어서 전강(殿講)하는 날 혹은 주연(酒宴)의 여가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속편강목(續編綱目)》과 《동국사략(東國史略)》과 《고려사(高麗史)》 등의 책을 진강(進講)하도록 하여, 전대(前代)의 성패(成敗)를 상고하여 당금(當今)의 치도(治道)를 논하게 된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법(兵法)과 사기(史記)는 <소용되는 것만> 뽑아서 기록하기가 어렵겠다."

하고, 이어서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

"양성지가 찬술(撰述)한 《동국도경(東國圖經)》은 내가 장차 목판(木板)에 새겨서 보겠다."

하였다.

【원전】 8 집 48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정론-정론(政論)

《 세조 040 12/11/16(갑신) / 낭천 현감 양호와 함양 군수 노신경에게 환임하게 하다 》

임금이 낭천 현감(狼川縣監) 양호(梁琥)와 함양 군수(咸陽郡守) 노신경(盧藎卿)에게 명하여 모두 환임(還任)하도록 하였는데, 양호는 **양성지(梁誠之)**의 아들이며, 노신경은 성봉조(成奉祖)의 손서(孫壻)이다. 노신경의 이름을 고쳐 노선경(盧善卿)이라는 이름을 하사(下賜)하였다.

【원전】 8 집 4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세조 040 12/11/17(을유) / 문적의 관리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1. 조종(祖宗)의 실록(實錄)은 한 나라 만세(萬世)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조(太祖)·태종(太宗)·공정왕(恭靖王)의 실록(實錄)은 모두 4건(件)을 써서 춘추관(春秋館)과 외방의 3사고(史庫)에 각기 1건(件)씩을 수장(收藏)하게 하고, 세종(世宗)·문종(文宗) 양조(兩朝)의 실록(實錄)은 다만 1건(件)만을 써서 춘추관(春秋館)에 수장하였으니, 매우 미비(未備)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쓰려고 하면 일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다행히 지금 새로 소자(小字)를 주조(鑄造)하였으니, 빌건대 전교서(典校署)에 명하여 3건(件)을 인출(印出)하여 외방의 3사고(史庫)에 수장하게 하소서.

1. 본국(本國)의 서책(書冊)으로서 공경하고 중하기가 실록(實錄)과 같고 긴급하고 중요하기가 군안(軍案)과 같은 것은 의례(依例) 쇠와 주석으로 그 등을 누르게 하고 혹은 능단(綾段)으로 그 표지[衣]를 장식하게 하였으니, 다만 도둑을 가르칠 뿐 아니라 졸지에 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손을 쓸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곡진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1건(件)은 중대(重大)하게 만들어 작은 도둑의 훔치는 것을 방비하고, 1건(件)은 경편(輕便)하게 만들어 창졸에 대비(對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양조(兩朝)의 실록(實錄) 1건(件)은 이미 중대(重大)하게 만들어 수장하였고, 지금 소자(小字)로 3건(件)을 인출(印出)하되 쇠와 주석의 장식과 능단(綾段)의 표지는 없애고서 수장하면 대소(大小)의 변(變)에도 불가(不可)함이 없고 일도 또한 쉽게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태조(太祖)·태종(太宗)·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실록(實錄)도 또한 1건(件)은 소자(小字)로 인출(印出)하여 수장하도록 하소서.

1. 시정기(時政記)는 시급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세월이 조금 오래되면 문적(文籍)이 산실(散失)이 되어 국가의 대전(大典)이나 제신(諸臣)들의 의의(擬議)도 민몰(泯沒)되어 전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빌건대 임신년5월부터 지금 병술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승정원(承政院)의 문서(文書)를 춘추관(春秋館)에 모아서 예문관

(藝文館)의 녹관(祿官) 5인과 겸관(兼官) 5인으로써, 2인이 1청(廳)이 되어 각기 3년으로 나누어 편찬하게 하고, 이어서 춘추관(春秋館)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고찰(考察)하도록 하고 이를 일과(日課)로 삼게 하여 중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소서.

1. 외방의 3사고(史庫)는 서적(書籍)을 수장하는 곳인데 모두 관사(官舍)에 붙어 있어서 매우 엄밀(嚴密)하지 못하니, 다만 화재(火災)가 염려될 뿐 아니라 또 후일(後日) 외구(外寇)의 염려도 있습니다. 빌건대 관원을 보내어 자세히 살피게 하고 인구(人口)가 서로 떨어진 곳을 가려서 이를 옮기도록 하소서. 혹은 전주(全州)의 사고(史庫)를 남원(南原)의 지리산(智異山)에 옮기고 성주(星州)의 사고(史庫)를 선산(善山)의 금오산(金鰲山)에 옮기며 충주(忠州)의 사고(史庫)를 청풍(淸風)의 월악산(月岳山)에 옮기게 하되, 모두 사찰(寺刹)에 의하게 하며 이에 위전(位田)을 주고 또 가까운 마을의 민호(民戶)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다면, 이는 진실로 명산(名山)에 수장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1. 서적(書籍)이 중국에서 온 것은 비록 혹시 흩어져 없어지더라도 오히려 다시 구할 수가 있지마는 다만 본국(本國)의 서적(書籍)은 진실로 한 번 잃기만 하면 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빌건대 우리 나라에서 찬술(撰述)한 서적은 일체 모두 마감(磨勘)하되 그 건수(件數)의 부족한 것은 인출(印出)하거나 전사(傳寫)하거나 구구(購求)하여 10건(件)을 만들어서 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 및 외방의 3사고(史庫)에 각기 2건(件)을 수장하게 하고, 위의 춘추관(春秋館) 및 외방의 3사고(史庫)와 문무루(文武樓) 안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서책(書冊)들은 모두 찾아내어서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전교서(典校署)에 나누어 두고 혼잡하여 상고하기 어려운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 홍문관(弘文館)과 춘추관(春秋館)에 수장한 《원사(元史)》·《송사(宋史)》 등과 같은 1건(件)의 서책(書冊)은 일체 이름을 초(抄)하여 입직(入直)한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 및 서방색(書房色) 등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이 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의 양관(兩館)에 나아가서 이를 베끼게 하되 혹은 본문(本文)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내어서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옮겨 쓰게 하고, 혹은 중외(中外)에서 구구(購求)하여 3건(件)을 갖추어 수장하게 하소서.

1. 서책(書冊)의 판본(板本)은 경중(京中)에서는 전교서(典校署)에서 이를 관장(管掌)하지마는, 외방(外方)에서는 별도로 관장하는 것도 없고 어떤 서책(書冊)이 인출(印出)할 만한 것인지도 모르며 또 능히 검거(檢擧)하고 수보(修補)하지도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빌건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8도(道)에 글을 내려 보내되, 모군(某郡) 아무 서판(書板)이 몇 장(張)인 것과 또 서판(書板)이 닳거나 썩었는지의 여부(與否)를 일일이 개사(開寫)하도록 하고, 이어서 상저(常楮)로써 각기 1건(件)씩을 인출(印出)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고, 그 서판(書板)이 닳거나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해유(解由)에 이를 기재하여 전수(傳授) 하게 하고, 전교서(典校署)로 하여금 이를 고찰(考察)하도록 하소서.

1. 《총통등록(銃筒謄錄)》은 국가의 비밀 문서(秘密文書)인데, 춘추관(春秋館)에 1건(件)이 있고, 문무루(文武樓)에 21건(件)이 있으며, 홍문관(弘文館)으로부터 내전(內殿)으로 들어간 1건(件)이 있고, 군기감(軍器監)에 몇 건(件)이 있으니, 만일 간첩(間諜)이 이를 훔쳐서 이로 인해 이익을 삼는다면 동남(東南)의 해(害)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언자(諺字)로 써서 베껴 내외(內外)의 사고(史庫)에 각기 3건(件)씩 수장하고, 홍문관(弘文館)의 3건(件)은 신(臣)이 굳게 봉(封)한다고 일컫게 하고, 그 한자(漢字)로 써서 베낀 것은 모두 불살라 없애게 하여서 만세(萬世)를 위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1. 우리 나라의 문적(文籍)은 단군(檀君) 시대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역력히 상고할 수가 있으니, 다른 번국(蕃國) 요(遼)·금(金)·서하(西夏)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환지(還紙)의 이익으로 인하여 지장(紙匠)의 남녀(男女)들이 혹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훔치기도 하고, 혹은 사사(寺社)의 경문(經文)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제(法制)를 엄하게 제정하여 변방으로 귀양 보내기를 의정(擬定)하기도 하고 혹은 사형(死刑)을 시행하기도 했지마는, 그러나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여 본국(本國)의 문사(文史)와 공사(公私)의 문권(文券)은 장차 남아나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중한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능히 금제(禁制)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풍속이 바른 데로 돌아오기를 한하여, 그 환지(還紙)를 만든 사람은 기훼 제서율(棄毁制書律)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우두머리[窩主]는 일찍이 유사(宥赦)를 논할 것 없이, 귀천(貴賤)을 물을 것 없이 장 1백 대를 때리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할 것이며, 재산은 고발한 사람에게 주고, 시중(市中)에서 매매(買賣)한 사람과 민가에서 행용(行用)한 사람과 관부(官府)에서 행용(行用)한 이전들은 모두 장 1백 대를 때리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지금 전교서(典校署)에서 인출(印出)한 서책(書冊) 안에 한 시대의 일에서 나와 오래도록 전할 필요가 없는 것 이외에는 의례(依例) 10건(件)을 만들어 홍문관(弘文館)에 2건(件)을 수장하고, 춘추관(春秋館)·외방의 3사고(史庫)·전교서(典校署)·문무루(文武樓)·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에 각기 1건(件)씩을 수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이를 알았다."

하였다.

【원전】 8 집 50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정론-정론(政論)

세조 13년 《 양성지 - 세조 13년 .... 32 건 》

세조 041 13/01/04(신미) / 농우 도살 금지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세조 041 13/01/25(임진) / 대사헌 양성지가 《해동성씨록》을 찬술하여 올리다

세조 041 13/02/15(신해) / 효령 대군 이보·신숙주 등과 담화하고 규형(窺衡)의 제도를 구명하게 하다

세조 041 13/03/15(경진) / 유신·잡학인에게 업을 강하게 하고,예문관 유신에게 인지의 송을 강하게 하다

세조 042 13/05/01(을축) / 제신을 불러 시식하고 유신 등에게 업으로 하는 바를 강하게 하다

세조 042 13/05/28(임진) / 대사헌 양성지가 북방을 비어하는 사의를 올리다

세조 042 13/06/03(병신) / 모화관에 거둥하여 열병하다

세조 042 13/06/04(정유) / 대사헌 양성지 등이 신숙주·한명회를 삼성과 더불어 국문할 것을 아뢰다

세조 042 13/06/09(임인) / 제신과 유구국사의 선위를 의논하다.대간에서 신숙주 등의 치죄를 상소하다

세조 042 13/06/10(계묘) / 대사헌 양성지에게 채단을 하사하다.대간에서 신숙주 등의 치죄를 상소하다

세조 042 13/06/11(갑진) / 대간에서 신숙주·한명회의 치죄를 상소하다

세조 042 13/06/12(을사) / 신숙주·구치관 등을 불러 일을 의논하고 주연을 베풀다

세조 043 13/07/05(무진) / 헌부의 소송 과정에 곡직이 있으므로 피혐하지 말게 하다

세조 043 13/07/08(신미) / 친정과 변방 방어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

세조 043 13/07/25(무자) / 사정전에 나아가 정창손·구치관·심회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다

세조 043 13/07/26(기축) / 양성지·이창에게 「성제 공수도」를 고열하고 병기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세조 043 13/07/30(계사) / 어미의 실절을 이유로 김개의 직책을 거둘 것을 사헌부 관리들이 아뢰다

세조 043 13/08/05(무술) / 어미의 실절을 이유로 김개의 직책을 거두어 달라는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

세조 043 13/08/06(기해) / 노비 종군 병사 유구국에 대한 지나친 예물 등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서

세조 043 13/09/04(병인) / 최유의 치죄를 청한 대간의 상소

세조 043 13/09/06(무진) / 이시애 난 평정을 기리는 대사헌 양성지의 평삭방송(平朔方頌)

세조 043 13/09/21(계미) / 중궁과 함께 선정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북정한 군사들을 위로하다
세조 043 13/09/24(병술) /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임금의 탄신을 하례하니 제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조 043 13/09/26(무자) / 은천군 이찬 등에게 새로 지은 형전을 수교하게 하다
세조 043 13/09/28(경인) / 유자광의 병조 정랑 임명이 불가함을 아뢴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
세조 044 13/10/13(을사) / 도성의 지도를 만들게 하고, 《북정록》에 기록할 만한 일을 아뢰게 하다
세조 044 13/10/15(정미) / 구종직·윤자운·조석문 등에게 공물의 차오를 밝힐 것을 명하다
세조 044 13/11/08(경오) / 임영 대군 이구가 아들 이준이 부인을 취한다고 풍정을 올림. 재추에게 시연케 하다
세조 044 13/11/17(기묘) / 효령 대군 이보 등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문신 등에게 《동파집》을 강하게 하다
세조 044 13/12/01(계사) / 정인지 등에게 《시경》을, 정창손 등에게 《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다
세조 044 13/12/12(갑진) / 중궁과 선정전에서 효령 대군 이보와 부인에게 위로 잔치를 베풀다
세조 044 13/12/18(경술) / 양성지 등이 한계순와 권감의 상피와 병조 정랑 홍칭에 대해 상소하다

《 세조 041 13/01/04(신미) / 농우 도살 금지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하늘이 만백성을 낳아서 먹을 것으로 목숨을 삼게 하고, 땅이 오곡(五穀)을 기르되 소[牛]로써 대신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무고(無故)하게 <소를> 살륙(殺戮)하지 말라.' 하였고, 율문(律文)에도 육축(六畜)을 잡아 죽이면 죄가 된다고 논(論)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래로 외방(外方)의 농우(農牛)가 도살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고, 경중(京中)의 저자 안에서 하룻동안에 소를 사는 것이 수십 마리를 내리지 않는데, 이것은 모두 도살한 것을 쓰니, 이익을 취하는 데 가장 후(厚)하여 풍속(風俗)을 이루었습니다. 신이 남산(南山) 밑에 살고 있어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일을 직접 목격하여 이를 반복해서 언급하여 청하는 바입니다. 남산의 소나무는 도읍으로 정한 이후로 70여년 동안이나 가꾸고 길러서 무려 백만(百萬)여 주(株)나 되었는데, 처음에는 거리의 아들들과 골목의 부녀자들이 삭정이[枯枝]나 솔가리[枯葉]를 몰래 져다가 불을 때었고, 중간에는 큰 창고(倉庫)를 짓기 위하여 말라 죽은 나무라고 칭탁하여 베어냈으며, 나중에는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대낮에 떼를 지어 생나무를 바리로 실어

다가 간혹 집을 짓는 자가 있었고, 한갓 집만 지을 뿐만 아니라, 수레로 실어다가 기와를 굽는다는 소리가 온 나라 안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벌채하였으므로 소나무는 거의 다 없어졌고, 겨우 남은 것이라곤 인가(人家)의 동산 안에 있는 수천 주(株)뿐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남산의 소나무는 진실로 없어서는 안 되지만, 설혹 없다손 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외(中外)의 소[牛畜]는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데 자산(資産)이 되니,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저 큰 창고는 곡식을 들여다가 저장하는 그릇이고, 소는 곡식을 생산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곡식을 생산하는 소가 없다면, 곡식을 들여다 저장하는 창고가 있더라도 이를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옛날에는 백정(白丁)과 화척(禾尺)이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경외(京外)의 양민(良民)들도 모두 이를 잡으며, 옛날에는 흔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 안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잡고, 옛날에는 남의 소를 훔쳐서 이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에서 사서 이를 잡습니다. 백정은 일정한 수(數)가 있으나 양민은 그 수가 무한(無限)하며, 잔치는 일정한 수가 있으나 판매하는 것은 끝이 없으며, 남의 것을 훔쳐서 잡는 것은 일정한 숫자가 있으나 소를 사서 잡는 것은 무궁(無窮)하니, 일정한 수효가 있는 소를 무궁한 날에 끝없이 잡는다면, 반드시 남산의 소나무와 같이 다 벤 다음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소를 잡는 도적[宰牛賊]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거골장(去骨匠)'이라 칭하고, 여염(閭閻)의 곳곳에 잡거(雜居)하면서 소를 잡아도 대소(大小) 인리(隣里)에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쓸 일이 있어서 저자에서 구하려고 하면, 값을 가지고 가서 구하면 얻지 못함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安定)되어 이를 풍속이라고 이르니, 이러한 풍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크게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치지를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풍습이 바르게 될 때까지 한(限)하여 우선 군법(軍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무릇 소를 잡은 사람은 도둑질하여 잡았거나 사서 잡았거나를 불문하고 수종(首從)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즉시 사형에 처하되, 그 처자(妻子)와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소를 잡는 것을 고(告)한 자는 재산(財産)으로써 상(賞)을 주되, 벼슬로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세 자급(資級)을 뛰어서 서용(敍用)하고, 그 와주(窩主)를 용납하여 머무르게 한 자는 가사(家舍)를 관가에 속하게 하며, 사대부(士大夫)는 장(杖) 1백 대에 영원히 벼슬에 서용(敍用)하지 말고, 서인(庶人)은 장 1백 대를 때려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삼절린(三切隣)과 정실(情實)을 알고도 소를 판 사람이나 정실을 알고 고기를 먹은 자도 역시 상항(上項)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고, 경중(京中)의 관령(管領)과 외방(外方)의 권농(勸農)으로 그 정실을 알고도 검거(檢擧)하지 않았거나 관가에 고하지 아니한 자도 역시 장 1백 대를 때려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소서.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면, 거의 소를 잡는 풍속이 아주 달라져 농우(農牛)가 절종(絶種)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주(聖主)께서 위에 계시고, 어진 신하들이 아래에 있어 언로(言路)가 가히 통(通)한다고 이를 만한데, 천일지하(天日之下)에 도성(都

城)의 소나무가 모두 베어져 남은 것이 없고, 또 농우(農牛)가 도살(屠殺)되어 장차 절종(絶種)에 이르게 되었으니, 신은 매양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감히 망령된 언사(言辭)를 무릅쓰고 우러러 천총(天聰)을 더럽히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로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됨을 용서하여 주시면 민생(民生)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상정소(詳定所)에 내리게 하였다.

【원전】 8 집 56 면

【분류】 *농업-축산(畜産) / *농업-임업(林業) / *정론(政論)

《 세조 041 13/01/25(임진) / 대사헌 양성지가 《해동성씨록》을 찬술하여 올리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찬술(撰述)하여 올렸다.

【원전】 8 집 58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세조 041 13/02/15(신해) / 효령 대군 이보·신숙주 등과 담화하고 규형(窺衡)의 제도를 구명하게 하다 》

임금이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와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형조 판서 서거정(徐居正)·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성임(成任)·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 호조 참판 이파(李坡)·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공조 참판 이례(李芮)·예조 참판 이계손(李繼孫)을 불러 조용히 담화(談話)하다가, 임금이 만든 규형(窺衡) 【땅의 원근(遠近)을 재는 물건이다.】을 내어다 시신(侍臣)들로 하여금 그 제도(制度)를 구명(究明)하게 하였으나, 모두 그 묘리(妙理)를 알지 못하였다.

【원전】 8 집 6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과학-물리(物理)

《 세조 041 13/03/15(경진) / 유신 · 잡학인에게 업을 강하게 하고,예문관 유신에게 인지의 송을 강하게 하다 》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陵城君) 구치관(具致寬)·좌의정 심회(沈澮)·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좌참찬 윤자운(尹子雲)·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공조 판서 임원준(任元濬)·형조 판서 서거정(徐居正)·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성임(成任), 동지사(同知事) 구종직(丘從直)·홍응(洪應)·이예(李芮)·정자영(鄭自英),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호조 참판 이파(李坡)·예조 참판 이계손(李繼孫)과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종친(宗親)과 예문관(藝文館) 유신(儒臣)·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학인(醫學人) 등을 불러 그들이 하는 업(業)을 강(講)하게 하고, 곧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자에게 명하여 여러 종친(宗親)·재추(宰樞)들에게 술을 돌리게 하고, 비록 품질(品秩)이 낮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 친히 술을 따라 주게 하였다. 날이 정오(正午)가 되어서야 파하도록 명하고, 예문관 유신들만 머무르게 하여 임금이 지은 인지의 송(印地儀頌)을 강(講)하게 하였는데, 그 송에 이르기를,

"수(數)는 하나에서 시작하여 열·백(百)·천(千)·만(萬)·억(億)으로 끝이 무궁(無窮)하니, 음양(陰陽)이 이로 말미암아 서로 교구(交構)하여, 만화(萬化)가 분분(紛紛)하고, 세도(世道)가 성립하며, 하늘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치와 복서(卜筮)의 학(學)이 길흉(吉凶)의 소장(消長)을 미리 살피는 바이다. 이러한 연고로 인지의(印地儀)를 마침 만들어서 산(山)을 찾고 물[水]을 구(求)하여 표준(標準)을 삼을 수 있으니, 가운데 중극(中極)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24위(位)를 맞추어 취하고, 사방(四方)이 바르게 분포(分布)되어 사극(四極)에 있게 하며, 척촌(尺寸)에 따라 바로잡아 교도(交度)를 알아내고, 절변(節變)과 원근(遠近)을 그림판을 헤아려서 재되 좌우로 회전하여 서로 맞추고 상하로 서로 이으니, 크고 작은 것이 유실(遺失)이 없이 능히 일이 필(畢)하여질 수 있느니라."

하였는데, 유신들이 한결같이 그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였으나, 오직 성균 사예(成均司藝) 유희익(兪希益)과 직강(直講) 김유(金紐)·종학 도선(宗學導善) 이맹현(李孟賢)·사회(司誨) 이육(李陸)·예조 좌랑 이익배(李益培) 등이 조금 그 대략(大略)을 알았다. 이때 마침 함길도 도사(咸吉道都事) 조극치(曹克治)가 와서 숙배(肅拜)를 드리니, 불러 보고 변방의 일을 물어 보았다. 이때 강론(講論)이 아직 파하지 않았는데, 성균 학록(成均學錄) 김여석(金礪石)이 나이가 매우 젊으므로 임금이 묻기를,

"너는 성명이 무엇이며, 과거(科擧)의 등제(登第)는 어느 해에 하였느냐? 무릇 사람이 나이가 젊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기호(嗜好)와 욕심을 막기가 어렵다."

하고, 최항에게 명하여 '무기음주 무교긍 인기욕(毋嗜飮酒毋驕矜忍嗜欲)'의 열 자(字)를 쓰게 하여

친히 수결(手決)을 두어서 내려 주었다. 관상감 정(觀象監正) 안효례(安孝禮)와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최호원(崔灝元)이 인지의 송(印地儀頌)을 가지고 각기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힘써 이기려고 들어 기(氣)를 쓰고 언성(言聲)을 높이니, 그 말이 매우 비루하고 상스러웠다.

【원전】 8 집 6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과학-수학(數學) / *과학-천기(天氣)

《 세조 042 13/05/01(을축) / 제신을 불러 시식하고 유신 등에게 업으로 하는 바를 강하게 하다 》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의정 최항(崔恒)·좌찬성 조석문(曹錫文)·우찬성 윤자운(尹子雲)·우참찬 김국광(金國光)·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공조 판서 임원준(任元濬),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어효첨(魚孝瞻)·성임(成任)·구종직(丘從直)·홍응(洪應)·정자영(鄭自英),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송처관(宋處寬)·호조 참판 이파(李坡)·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첨지사(僉知事) 이예(李芮)·예조 참판 이계손(李繼孫)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시식(侍食)하고, 또 종친(宗親)과 겸 예문(兼藝文) 유신(儒臣),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 등을 불러 업(業)으로 하는 바를 강(講)하였다. 영인 부수(寧仁副守) 이정(李整)이 통감(通鑑)을 강하기를 원하므로, 임금이 명하여 온공(溫公)의 명분론(名分論)을 읽게 하였더니, 정(整)이 자리만 긁으면서 한 문귀도 알지 못하므로, 이두리(李豆里)의 처를 접대하는 사목(事目)을 읽게 명하였으나, 정(整)은 또한 잘 읽지 못하였다. 이때 이두리의 처가 만포(滿浦)에 와서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의 아들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어리석으니, 내쫓는 것이 옳다."

하고, 권계희(權季禧)를 불러서 성탕(成湯)이 걸(桀)을 공벌(攻伐)한 일을 묻기를,

"탕(湯)은 능히 천명(天命)을 좇고 인민(人民)에 응(應)하여, 한 독부(獨夫)를 공벌(攻伐)하였는데, 박(亳)의 민중(民衆)이 정역(征役)하는 데 꺼린 원인은 어찌함이냐?"

하니, 권계희의 대답한 바가 자못 마땅하지 못하였다. 또 이두리의 처를 대접하는 사목(事目)을 읽도록 하였으나, 말단(末段)에 이르러서 잘 해독(解讀)하지 못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계희도 오히려 깨닫기 어려우니, 그 사목(事目)을 고치라."

하였다. 장차 후원(後苑)에서 열무(閱武)를 하려고 하여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 등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일을 갖추게 하고, 또 업(業)을 강(講)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후원(後苑)으로 가게 하였다. 잠시 후에 임금이 중궁(中宮)과 세자(世子)와 더불어 신정(新亭)에 나아가 군사를 나누어 9위(衛)로 만들고, 정문형(鄭文炯)·어세공(魚世恭)·이의형(李義亨)·이극균(李克均)·어유소(魚有沼)·호산 도정(湖山都正) 이현(李鉉) 등을 장수로 삼아 각각 군사(軍士) 2백여 인씩을 거느리고 무리를 정돈하여 진(陣)을 벌이게 하고, 제장(諸將)을 불러 단속하기를,

"원중(苑中)에서 기르는 돼지를 몰 때 화살과 칼을 사용하지 말고, 기묘한 계책으로써 포획하되, 감히 상에게 한 자는 군법(軍法)으로 논(論)하겠다."

하였다. 이미 북이 울리니, 제장(諸將)이 다투어 추격하여 돼지를 사로잡아 바친 자가 3인이나 되었는데, 이극균이 군사를 부리는 것이 가장 정묘하였다. 임금이 가상히 여기고 술을 올리도록 명하였으며, 또 명하여 이극균에게 상을 주고, 아울러 영솔한 군사에게 별사(別仕)를 주게 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여 조회에 시립하였던 야인(野人)들에게 과녁을 쏘게 하고, 홍윤성(洪允成)으로 하여금 전지하기를,

"너희들은 항상 술주정[酗酒]을 하며 살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나, 투화(投化)한 사람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놓아두고 묻지 않는 것이니, 이제부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고, 이내 주육(酒肉)을 하사하였다.

【원전】 8 집 7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 세조 042 13/05/28(임진) / 대사헌 양성지가 북방을 비어하는 사의를 올리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북방을 비어(備禦)하는 사의(事宜)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1. 북방의 사람들이 처음에 순역(順逆)을 알지 못하고 미연(靡然)히 반적을 따랐으니, 모름지기 그 지방 사람으로 경성(京城)에 있는 자를 사서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말고 수십 인을 얻어, 북방과의 연경(連境)인 평안도의 3, 4처와 황해도의 1, 2처와 강원도의 2, 3처에 각각 유서(諭書) 두서너

통씩을 은밀히 주어 보내서, 산곡(山谷)을 몰래 다니거나, 혹은 곳곳에 방(榜)을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유(曉諭)하여 적을 멸망케 하소서. 만약 10인의 행차에 5인은 궤몰(潰沒)하고, 3인은 반적을 따른다 하더라도, 2인만이 조정의 뜻을 반적 가운데 전달한다고 하면, 어찌 크게 다행함이 아니겠습니까?

1. 금후로는 유서(諭書)에다 모름지기 반적을 잡으면 논상(論賞)한다는 조목과 협종(脅從)한 죄를 용서한다는 은전(恩典)을 기재하되, 만약 적의 괴수를 잡는 자는 비록 직상(職賞)은 없더라도 당상관(堂上官)의 직(職)으로써 곧 정원 무신(定遠武臣)의 호를 내려 주어 이로써 논상(論賞)하여 후하게 작명(爵命)을 가하고, 반적 중에서 스스로 서로 잡고 죽여서 이를 바치는 자는 모두 전죄(前罪)를 면제하고 다른 예(例)에 따라 상을 주며, 그 나머지 협종(脅從)한 사람도 아울러 모두 용서하여 주고, 원래부터 북방에서 사는 자라 하더라도 향화인(向化人)을 물론하고 또한 특별히 봉족(奉足) 1백 호(戶)를 내려 주시어, 이로써 통유(通諭)하소서.

1. 공명 공신(空名空身)을, 동반(東班)은 참판(參判)으로부터 좌랑(佐郞)까지, 서반(西班)은 동지중추(同知中樞)로부터 부사과(副司果)까지 수백 통을 써서 반적에게 함락된 주군(州郡)마다 수십 통을 보내어서, 토관(土官)·향리(鄕吏)·여수(旅帥)·대정(隊正) 등에게 주어 큰 공을 세우게 하여, 즉시 <논상의> 진실을 보이게 하소서.

1. 만약 반적 가운데 탈신(脫身)하여 성식(聲息)을 빨리 고(告)한 자와 조정의 지휘(指揮)를 받고 적중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차례를 어겨 행상(行賞)하여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권장하소서.

1. 지금 군사를 조발(調發)하는 것은, 초운(初運) 3천 인 같으면 아무 날 회양부(淮陽府)에서, 2운(運) 5천 인은 아무 날 금화현(金化縣)에서, 3운(運) 7천 인은 아무 날 양주부(楊州府)에서 한꺼번에 모아 연속하여 징발하여서 만전을 기하게 하소서.

1. 금후로 군사를 조발할 때에, 만약 군사를 5분(分)할 것 같으면, 1분(分)은 유방(留防)하게 하고, 1분은 농사를 짓게 하고, 1분은 초운(初運)으로 하고, 1분은 2운(運)으로 하고, 1분은 3운(運)으로 하여, 이 같이 준례를 삼으소서.

1. 근일에 군사와 마필(馬匹)이 정제(整齊)되지 못하여, 혹은 도보(徒步)로 가고, 혹은 노자(奴子)에게 쌀을 짊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니, 금후로는 제도(諸道)에서 징병(徵兵)할 때에 잘 헤아려서 봉족(奉足)을 넉넉히 주어 군장(軍裝)과 마필(馬匹)과 양료(糧料)를 넉넉히 갖추게 하소서.

1. 병사(兵士)가 무력(武力)이 있는데도 군장(軍裝)이 없는 자는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관(官)에서 지급하여 수용(收用)하소서.

1. 병사(兵事)는 기이(奇異)한 것을 숭상하는 것이니, 지금 제도(諸道)에서 징병하는 것을, 만약 1천 명을 징병하게 되면 1만 명이라고 성언(聲言)하고, 만약 1만 명을 징병하게 되면 10만 명이라고

성언하되, 실지로 징병하는 수는 사신(使臣)이 직접 밀지(密旨)를 받게 하고, 또 절도사처(節度使處)에 이문(移文)하는 것도 또한 실수(實數)에 따라 하게 하여 사기(士氣)를 더하고, 간세(姦細)를 그르치게 하며, 적심(賊心)을 두렵게 하소서.

1. 북방에 연경(連境)한 평안도·황해도·강원도를 5, 6길[道]로 나누어서 일시에 공격하여 들어가게 하고, 또 강원도의 영동(嶺東) 군사로써 흡곡현(歙谷縣)의 땅에 진수(進戍)하게 하소서.

1. 장수(將帥)는 모름지기 명망이 있고 노성(老成)한 사람을 가려서 미리 먼저 치부(置簿)하여 두었다가 때에 따라 즉시 <임무를> 제수하여 맡기고, 지금 <먼저 간> 선운(先運)의 제장(諸將)도 또한 더 정하여 들여보내소서.

1. 강원도에 비축된 군량이 혹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경기·충청도의 곡식을 급히 이송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소서.

1. 이제 참역(站驛)과 진도(津渡)를 곡진하게 포치(布置)를 가하여서 사려(師旅)를 건너게 하고, 사절(使節)를 통하게 하며, 간세(姦細)를 살피게 하소서.

1. 용병(用兵)은 모름지기 지도(地圖)를 안험(按驗)하고, 모름지기 토인(土人)의 향도(鄕導)를 쓰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향화(向化)한 장가로(將家老) 같은 것은 연하(輦下)에 둘 수가 없고, 또 전장(戰場)에 놓을 수도 없으니, 우선 기현(畿縣)에 두어서 야심(野心)을 방지하소서.

1. 의주(義州)와 강계(江界) 등지의 방수(防戍)를 배나 더 근신(謹愼)하게 하여,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이 있는 곳까지도 또한 북방에 이 성식(聲息)이 있는 것이 새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양성지를 불러 조목을 따라 그 계책을 묻고, 이르기를,

"너의 말한 것은 모두 우활(迂闊)하여 쓸 수가 없다."

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원전】 8 집 80 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세조 042 13/06/03(병신) / 모화관에 거둥하여 열병하다 》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열병(閱兵)하니, 종친(宗親)·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승지(承旨)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를 앞에 불러 이르기를,

"경(卿)이 먼저 상서(上書)한 것이 어찌 모두 소용이 없으랴마는 병모(兵謀)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영순군(永順君)으로 하여금 그 글을 불살라서 비밀되게 하고 그릇됨이 없게 하니, 양성지가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명하여 9위(九衛) 【사복(司僕)·내금위(內禁衛)·사자위(獅子衛)·공현위(控弦衛)·좌사대(左射隊)·우사대(右射隊)·장용대(壯勇隊)·만강대(彎强隊)·파적위(破敵衛)이다.】·5부(五部) 【동부(東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에 살면서 모병에 응한자를 소속시켰다.】·백관(百官)과 군사(軍士)의 종정(從征)하기를 자원한 자를 나누어, 모두 융복(戎服)을 입고 혹은 갑을사(甲乙射)를, 혹은 격구(擊毬)를, 혹은 삼갑창(三甲槍)을, 혹은 각저(角抵)를, 혹은 사모구(射毛毬)를 하게 하고, 또 자모 천례(自募賤隷)로 하여금 과녁을 쏘아 맞히는 자는 베[布]를 상주게 하였더니, 참봉(參奉) 홍효손(洪孝孫)이 과녁 쏘기를 자원하여 문득 맞히었으므로, 즉시 명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임명하였다. 어전(御前)에 5색지(五色紙)의 소기(小旗)를 두어, 선전관(宣傳官)·제장(諸將) 등에게 지휘를 받들게 하되, 어전에 홍기(紅旗)를 세우면 또한 홍기를 세우고, 청기(靑旗)를 세우면 역시 청기를 세우게 하니, 사졸(士卒)도 또한 그 장기(將旗)를 알고, 열고 닫음과 모이고 흩어짐을 향응(嚮應)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양성지(梁誠之)**·형조 판서(刑曹判書) 서거정(徐居正)·호조 참판(戶曹參判) 이파(李坡)로 하여금 갑(甲)·을(乙)로 서로 쏘게 하니, 3인은 모두 본디 유학(儒學)을 업으로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말[馬]을 당기게 하였어도 능히 제어하지 못하므로, 임금이 대소(大笑)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명하여 세자에게 술을 올리게 하니, 제신(諸臣) 역시 대신 일어나 수주(壽酒)를 올리었다. 명하여 예조 판서(禮曹判書) 강희맹(姜希孟)·우승지(右承旨) 이봉(李封)에게 향화인(向化人)을 거느리고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원전】 8 집 83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세조 042 13/06/04(정유) / 대사헌 양성지 등이 신숙주·한명회를 삼성과 더불어 국문할 것을 아뢰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장령(掌令) 손순효(孫舜孝)·지평(持平) 최경지(崔敬止) 등이 아뢰기를,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와 그 자제가 아울러 구금(拘禁)하여 갇힘을 당한 것은 범한 바가 반드시 중함이니, 청컨대 삼성(三省)과 더불어 국문하고, 또 죄인을 금중(禁中)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네가 알 것이 못된다."
하였다.

【원전】 8 집 8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세조 042 13/06/09(임인) / 제신과 유구국사의 선위를 의논하다. 대간에서 신숙주 등의 치죄를 상소하다 》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고령군(高靈君)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 등을 불러 유구국(琉球國) 빙사(聘使)의 선위(宣慰)할 일을 의논하고, 이어서 시식(侍食)하게 하니, 잠깐 있다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소하기를,

"신 등은 두 번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의 일을 가지고 우러러 연청(淵聽)을 흐리게 하였으나, 바로 하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신 등은 물러가 생각하건대, 만세(萬世)를 위하고 대법(大法)을 정대히 하기 위하여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두 신하의 죄를 관용하시나, 어찌 그 공을 보전할 것을 생각하여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로부터 난(亂)이 되는 것은 반드시 모두 소원(疏遠)으로부터 일어남이 없으니, 비록 훈용(勳庸)과 난육(卵育)이 극진하였더라도 진실로 권세가 중하고 지위가 핍박하면 형세에 순종하여 이르는 것이 있으니, 공을 보존할 수 없는 자가 많은 소이입니다. 성인이 법을 사용할 때에 만일 그 죄가 크면 훈구(勳舊)로써 빌지 않는 까닭에, 사람은 스스로 근실할 줄을 알아서 끝남과 시작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신하라는 자는 성명(聖明)의 아래에 있으며, 바랄 것이 없다고 이르나, 그 평일에 작은 공을 끼고서 스스로 방사하고 천위(天威)를 빌어서 스스로 썼으니, 정히 전천(專擅)한 신하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저 삭방(朔方)의 백성이 한 번 자구(藉口)의 간사한 모략을 듣고, 미연(靡然)히 따라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 권세가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한 그 몸의 고혈(膏血)을 긁는 것을 미워할 만하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이 한 쪽 구석을 들어 그 다른 것을 점칠 만하니, 대저 공을 보호하는 일시(一時)의 은혜로 뒤를 경계하는 만세의 의(義)를 어찌 은혜로써 대의(大義)를 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모사(謀事)를 상고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모의에 무리가 따르면 천심(天心)에 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백료(百僚)가 모두 치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천의(天意)를 알 만하며, 치죄하고 폐(廢)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치서 멀리하는 것도 또한 옳은데 부귀(富貴)를 이렇듯이 하게 하면, 군신의 바람을 이지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문득 또한 사방(四方)이 민연(悶然)할 것입니

다. 하나를 벌하는 것은 무리를 경계하는 것이고, 이제를 징계하는 것은 뒤를 경계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만세를 위하여 대법(大法)을 정명(正明)하게 하여 신민(臣民)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를 불러 술을 주며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면전에서 그 죄를 수죄(數罪)하라."

하고, 양성지가 신숙주의 과실을 하나하나 세니, 신숙주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謝罪)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음의 생기가 이미 고르기에 방금 대신과 즐기려 하는데, 어찌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때에 네가 감히 극간(極諫)하여 말하니,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마땅히 논상(論賞)을 행하여서 충직(忠直)을 장려하겠다."

하고, 이어서 소장 끝에 쓰기를,

"명일에 글을 고치어 오라."

하였다. 신숙주 등이 나가니, 양성지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를,

"공사로 하여금 임금께서 친히 물으시는 까닭으로, 감히 은휘함을 두지 못하고 과정(過情)한 말을 발설하게 되었으니, 황공(惶恐)합니다."

하였다.

【원전】 8 집 85 면

【분류】 *외교-유구(琉球) / *정론(政論)

《 세조 042 13/06/10(계묘) / 대사헌 양성지에게 채단을 하사하다. 대간에서 신숙주 등의 치죄를 상소하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를 불러 채단(綵緞) 1필(匹)을 하사하고 말하기를,

"경(卿)이 착하게 직언(直言)을 하는 까닭으로 상을 준다."

하니, 양성지가 절하여 받고서 나가니, 자못 자랑하는 기색이 있었다. 대간(臺諫)에서 또 교장(交章)하여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인주(人主)는 능히 신자(臣子)가 법을 받아서 용납한 뒤에야 조정의 형세가 중하게 되고, 인신(人臣)은 능히 인주가 법을 굽히는 것을 따르지 않은 뒤에야 인주의 형세가 존상된다고 합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천하에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정대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

로써 지키고 믿음으로써 행할 것이니, 비록 훈구(勳舊)라도 범한 바가 중대하다면 반드시 법으로 단죄한 연후에야 어질고 불초한 이가 그 사려(思慮)를 가지런히 하여 영세토록 근심이 없게 됩니다. 진실로 죄악을 알면서 징계하는 데 나가지 않으면 사람이 장차 무엇을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신 등은 여러 번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의 전천(專擅)한 죄를 가지고 우러러 천청(天聽)을 흐렸으나,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 공이 있는 이는 상을, 죄가 있는 이는 벌을 주되, 대저 죄가 있고 없는 데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하시더니, 홀로 이 한 일에만은 오히려 사은(私恩)을 좇으십니까? 신 등은 그윽이 두렵거니와 이 법을 한 번 굽히시면 뒤에 장차 구원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이제 당도(當途)한 봉직하는 신하도 무리가 모두 훈구(勳舊)이니, 비록 큰 죄가 있더라도 모두 면할 수 있는 것을 알면 청고(淸苦)를 즐겨 맛보며 그 정욕(情欲)을 억제하겠습니까? 형세가 장차 뜻을 방일(放逸)하고 방자한 데 놓아서 이르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니, 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하기는 것은 정히 오늘에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 등의 전번 상소를 부종(俯從)하시어, 정히 두 신하의 죄를 결단하여 만세로 하여금 인신(人臣)의 전천(專擅)한 자는 죄가 도망할 곳이 없음을 알게 하시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8 집 8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세조 042 13/06/11(갑진) / 대간에서 신숙주·한명회의 치죄를 상소하다 》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근일에 신숙주·한명회 등이 전천(專擅)한 죄를 청하기를 3, 4번이나 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정성이 위에 이르지 못하여 소망이 이지러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공신이 끝까지 보존하는 자가 드물었으니, 그러한 자의 소이는 임금이 죄가 있는 것을 보전하려고 징계하지 않아, 신하가 두려워하고 삼가지 않으며 죄가 밑으로부터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것이 고금을 통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징계하지 않음이니, 사랑하는 소이가 아닙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모든 공로가 있는 이에게는 다 보답하는 은전(恩典)을 높이어, 깊은 은덕과 두터운 은택은 하늘을 덮고 땅을 실을 만하고, 이 두 신하도 더욱 총애와 우악한 은혜를 지고 드디어 전천(專擅)하여 한 지아비가 구실로 삼아 온 도내가 일제히 호응하는 데 이르러 화환이 이에 이르렀으니, 죄를 어찌 빌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크게 천위(天威)를 동하시어 즉시 유수(幽囚)하게 하고, 거의 대법(大法)을 행하여 중지(衆志)를 한결같이 하시었다가 얼마 안되어 특사(特赦)하여서 부귀가 처음과 같이 하시니, 다만 두 신하를 징계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 경계할 것이 없습니다. 대저 오늘의 권세를 천단한 자는 두 신하와 같은 이가 없고, 오늘의 근심을 초치한 자도 또한 두 신하만한 이가 없으니, 이것을 징계하지 않고 무엇으로써 뒤에 보이시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보전하려고 하시면 모름지기 죄책(罪責)을 더하고, 작은 책망을 경계하는 것은 대환(大患)을 소멸하는 소이입니다. 대환이 영구히 소멸하면 대업이 영구히 공고하니, 어찌 만세토록 무강한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大義)로써 단죄하시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세종조(世宗朝)의 주소(奏疏)를 보건대, 모두 그 사실을 지나치게 말하고 오로지 부화(浮華)만을 숭상하였는데, 근일에 상소하는 글은 실지와 상당(相當)하고, 뜻은 말과 상적(相的)하니, 내가 비록 한 글자를 증감하려 하여도 오히려 얻을 수가 있느냐?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기나, 그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니,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다시 치죄(治罪)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8 집 8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세조 042 13/06/12(을사) / 신숙주 · 구치관 등을 불러 일을 의논하고 주연을 베풀다 》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영의정(領議政) 심회(沈澮)·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우찬성(右贊成) 윤자운(尹子雲)·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도승지(都承旨) 윤필상(尹弼商) 등을 불러 일을 의논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대간의 장소(章疏)에 경(卿)의 일을 대론(大論)하여 내가 양성지를 상주었지만, 간소(諫疏)가 또 반드시 이를 것이다."

하고, 이내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원전】 8 집 8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세조 043 13/07/05(무진) / 헌부의 소송 과정에 곡직이 있으므로 피혐하지 말게 하다 》

내녀(內女) 녹지(祿只)의 가인(家人)과 더불어 헌부(憲府)에 소송하는 자가 있어서 헌부에서 체자(帖字)를 내려서 녹지에게 취초(取招)하니, 임금이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을 불러서 승지(承旨) 권맹희(權孟禧)로 하여금 그 사실을 물어보게 하였다. 양성지 등이 혹은 이르기를,

"처음에 녹지가 내녀(內女)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초하였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부리(府吏)가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취초(取招)하였다."

고 하므로, 부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관원(官員)에게 고(告)하여 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체자(帖字)를 발행하였습니다.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말이 서로 모순되므로 권맹희가 자세히 아뢰니, 임금이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를 시켜 유시하기를,

"법관(法官)이 진실로 이와 같이 부당(不當)하니, 내가 만약 국문(鞫問)한다면 반드시 곡직(曲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우대하므로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다. 경들이 일을 논할 때 마땅히 법을 고집하고 사사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대사헌(大司憲)이 시비(是非)에 어두우니 매우 대신(大臣)의 체통이 아니다. 경들은 피혐(避嫌)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술을 먹여서 보내었다.

【원전】 8 집 9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세조 043 13/07/08(신미) / 친정과 변방 방어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엎드려 듣건대, 전하(殿下)께서 친(親)히 육비(六飛)를 어거하시고 가서 삭방(朔方)을 정벌(征伐)하신다니, 사기(士氣)가 열 배나 오르고 적(賊)의 간담이 먼저 떨어져 남의 군사를 싸우지 아니하고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월의 더위가 바야흐로 심하니, 옥체(玉體)가 남먼저 노고(勞苦)할 수는 없습니다. 빌건대 먼저 대장(大將)에게 명하여 큰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만전을 도모하시고, 가을 장마가 비로소 개이거든 대가(大駕)가 순행(巡行)해

서 전지에 임(臨)하여서 부로(父老)들을 위로(慰勞)하소서. 또 이제 적(賊)들이 머리를 바치지 아니하고 강(江) 밖의 제종 야인(諸種野人)들과 더불어 연결(連結)하고 있으니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이제 다행(多幸)히 북청(北靑)의 땅을 점거하였는데, 갑산(甲山)의 길로 통(通)하여 모름지기 토인(土人)들을 모집(募集)하여 상작(賞爵)을 크게 더하고, 갑산(甲山)의 길로 경유하여 단천(端川)의 북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3동량(東良)의 땅으로 들어가서 높은 작(爵)과 속백(束帛)으로써 그 추장(酋長)을 대접하고, 6진(鎭)의 인민(人民)들을 아울러 타이르면, 비록 그들의 힘[力]을 다 얻을 수가 없지만, 또한 수미(首尾)의 형세(形勢)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동북(東北) 지방의 변(變)은 다행히 평안도(平安道)의 힘을 얻어서 제압하는데, 양계(兩界)가 서로 제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양계(兩界)가 함께 병환(兵患)이 있다면 동쪽·서쪽으로 명(命)에 분주할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제 들으니, 중국 사람을 압송(押送)하여 풀어준다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을 압송하여 풀어주면 건주(建州)의 원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압해관(押解官) 박지(朴枝)가 아직도 국경(國境)의 위에 있으니, 강(江)을 건너가지 아니한 때에 미쳐, 사람을 보내어 빨리 달려가 중지시켜 다시 머물게 하소서. 성상의 염려로 곡진(曲盡)하게 조치하신다면 군국(軍國)에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미 그대의 뜻을 알았다."

하였다.

【원전】 8 집 95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정론(政論)

《 세조 043 13/07/25(무자) / 사정전에 나아가 정창손 · 구치관 · 심회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심회(沈澮)·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공조 판서(工曹判書) 임원준(任元濬)·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또 홍윤성(洪允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이르기를,

"경(卿)의 실수는 과장(誇張)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자기가 옳고 남이 그르면 기세(氣勢)를 부려서 남을 모욕(侮辱)한다. 이 두 가지 일을 경이 조심하여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또 임원준(任元濬)에게 명하여 술을 바치게 하고 돌아보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임원준은 영민(英敏)하고 총명(聰明)하여 사리(事理)에 밝고 통달(通達)한데, 심지어 의약(醫藥)의

일까지도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하였다. 홍윤성의 사람됨이 강포(强暴)하고 포악(暴惡)하여 세력을 믿고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원전】 8 집 10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세조 043 13/07/26(기축) / 양성지 · 이창에게 「성제 공수도」 를 고열하고 병기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수성 도정(壽城都正) 이창(李昌) 등에게 명하여 「성제 공수도(聖制攻守圖)」 를 고열(考閱)하고 병기(兵器) 제도를 상고(詳考)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102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세조 043 13/07/30(계사) / 어미의 실절을 이유로 김개의 직책을 거둘 것을 사헌부 관리들이 아뢰다 》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정효항(鄭孝恒)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좌참찬(左參贊) 김개(金漑)의 어미 왕씨(王氏)가 세번 시집간 실절(失節)이 있는데, 김개가 묘당(廟堂)의 직책(職責)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김개의 관직이 1품(品)에 이르렀는데, 또한 어찌 천(賤)한 직질(職秩)이겠는가?"

하자, 정효항이 곧 물러갔다.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은 김개가 가루(家累)가 있으므로 정부(政府)의 참찬(參贊)에 마땅치 않다는 사의(事意)를 가지고 천총(天聰)에 앙달(仰達)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여 실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삼공(三公)은 도(道)를 의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며, 삼고(三孤)는 삼공(三公)에 버금하여 교화(敎化)를 넓히고 천지(天地)를 삼가 공경하니, 공(公)과 고(孤)의 책임은 온갖 책임의 모이는 바이요, 만민(萬民)이 바라보는 바입니다. 안위(安危)와 휴척(休戚)

의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무거우므로, 숙덕(宿德)과 중망(重望)이 있어서 교화(敎化)를 돈독히 하고 풍속(風俗)을 바로잡는 자가 아니면, 감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솥이 다리가 부러지면 솥에 담은 물건을 엎질러 놓는다.'라고 하였으며,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혁혁(赫赫)한 사윤(師尹)이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우러러보네.'라고 하였으니, 공(公)과 고(孤)의 책임이 중하다고 아니하겠습니까? 옛날의 훌륭한 재상(宰相)이란 다만 자기 한 몸의 재주와 지혜만 볼 만한 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 몸을 닦고 집을 바로잡는 공효로 말미암아 국가에 교화(敎化)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능히 그 인심(人心)을 복종시킬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자기 집을 교화하지 못하고 능히 남을 교화하는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개가 성상의 은덕을 입어서 관위(官位)가 1품에 이르렀으니, 그를 대우한 것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개의 어미가 세번 시집간 실절(失節)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이요, 문안(文案)에 밝게 실린 바입니다. 자기 집이 바르지 못하면 능히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백집사(百執事)의 자리에 있더라도 오히려 혹은 의논(議論)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교화를 넓히는 참찬(參贊)의 책임에 외람되게 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면, 풍교(風敎)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103 면

【분류】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세조 043 13/08/05(무술) / 어미의 실절을 이유로 김개의 직책을 거두어 달라는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김개(金漑)가 정부(政府)의 참찬(參贊)에 마땅치 않다는 사의(事宜)를 가지고 혹은 말로써, 혹은 상소(上疏)로써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였으나, 하교(下敎)하시기를, '너희들은 물러가 깊이 생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삼공(三公)과 삼고(三孤)는 인주(人主)의 천위(天位)를 함께 하여 천직(天職)을 다스리는 것이요,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은 인주의 세상 교화(敎化)를 돕고 인극(人極)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公)과 고(孤)가 알맞은 사람이 아니면 천직(天職)이 폐(廢)해질 것이요, 강(綱)과 상(常)이 서지 않으면 인기(人紀)가 멸(滅)해질 것입니다. 옛 사람이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상(輔相)을 둘 때는 반드시 재덕(才德)이 겸비(兼備)하고 가법(家法)이 본래 바르고 남의 간언(間言)이 없어서 인심(人心)을 진복(鎭服)시킬 수 있는 사람인 다음

에야 천거하며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사람들이 법받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법받아, 마침내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天下)가 태평(太平)함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보상(輔相)으로 적당한 사람을 얻을 때 수신(修身)하고 가정을 바로잡은 공효입니다. 진실로 상제(牀第)에 삼가하지 않고 규문(閨門)에 법도가 없으면 비록 백집사(百執事)의 책임에 있더라도 오히려 또 불가(不可)할 것인데, 하물며 공(公)·고(孤)의 직책은 백성의 물망(物望)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경륜(經倫)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데, 무릇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세 지아비에게 번갈아 시집가는 자는 문안(文案)에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에 간직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대전(大典)을 새로 반강(頒降)할 때에도 또한 그 법(法)을 실었으니, 이는 조종(祖宗)의 영전(令典)이요, 전하(殿下)께서 크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특(淑慝)을 분별(分別)하고 풍교(風敎)를 진작(振作)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만 자기 한 몸의 계책으로 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子孫)의 계책으로 삼게 할 것이요, 다만 한때의 법으로 삼게 할 뿐만 아니라, 만세(萬世)의 법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자녀안(恣女案)을 상고하여 보니, 김개(金漑)의 어미 왕씨(王氏)가 처음에는 조기생(趙杞生)에게 시집갔다가, 장철(張哲)에게 재가(再嫁)한 다음에 또 김정경(金定卿)에게 시집갔습니다. 김개는 김정경의 아들이니, 김개의 문호(門戶)의 추악함을 나라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특별한 재덕(才德)도 없는데, 성상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서, 지위가 1품(品)에 올랐으니, 김개의 분수에도 지나친 것이요, 인망(人望)에도 지나친 것입니다. 어찌 참찬(參贊)의 명(命)이 또 이와 같은 사람에게 떨어질 줄을 헤아렸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정부(政府)는 원기(元氣)를 고루며, 교화(敎化)를 돕고 백관(百官)들을 거느리는 곳이니, 반드시 모두 제 1등 사람인 다음이라야 자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김개가 이 자리에 자리하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이르기를, '어미의 더러운 행실이 저와 같고 아들의 재덕(才德)이 저와 같은데, 오히려 참찬(參贊)을 이와 같이 얻으니, 절의(節義)는 족히 숭상할 것 없고, 염치를 족히 장려할 것도 없다.'고 한다면, 어찌 정부(政府)를 경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부(政府)를 가볍게 여기면, 조정(朝廷)을 가볍게 여길 것이요, 조정을 가볍게 여기면, 나라의 복(福)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재상(宰相)을 중히 여기시어 김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나, 어찌 김개 한 사람을 용납하려고 절의(節義)로 하여금 퇴폐(頹廢)하게 하고 군하(群下)로 하여금 해체(解體)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앞서는 자녀(恣女)의 자손(子孫)은 대성(臺省)과 정조(政曹)와 정부(政府)의 관직을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어미가 자녀(恣女)의 문안(文案)에 있는데, 아들이 참찬(參贊)의 자리에 있으니, 이러한 문호(門戶)가 한 번 열리면, 뒤에는 장차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께서 구언(求言)하시기를 목마르듯이 하시고, 간(諫)함을 쫓으시기를 물흐르듯이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에는 오래도록 결단을 늦추시니, 신 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김개의 직(職)을 거두시도록 명하시어 다른 벼슬자리에 옮겨서

신민(臣民)들의 소망을 위로하시면 풍교(風敎)에 심히 다행(多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읽어 보지 아니하고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주었다.

【원전】 8 집 10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정론(政論)

《 세조 043 13/08/06(기해) / 노비 종군 병사 유구국에 대한 지나친 예물 등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서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삼가 관견(管見)을 가지고 천총(天聰)을 우러러 더럽히니, 엎드려 예람(睿覽)하기를 바랍니다.

1. 병정(兵丁)은 정예(精銳)한 것을 귀히 여기고 많은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근래 천례(賤隷) 가운데 군사에 응모(應募)하는 자들을 재주와 힘을 시험하지 않고 아울러 종군(從軍)하게 하니, 이것은 이른바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싸우게 하는 것이요, 한갓 군량(軍糧)을 허비하고 행진(行陣)을 어지럽힐 뿐이니, 만일 차질(蹉跌)이 생기면 후회하여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中國)은 당요(唐堯) 시대부터 명(明)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릇 23대(代)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단군(檀君)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겨우 7대(代)뿐입니다. 이는 다만 화이(華夷)의 풍속(風俗)이 순후(淳厚)하고 야박(野薄)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가(大家) 세족(世族)들이 중외(中外)에 포열(布列)하였으므로, 비록 간사한 영웅(英雄)이 그 사이에서 넘겨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저 대가(大家) 세족(世族)이 다시 대가 세족이 되는 것은 그 노비(奴婢)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내외(內外) 상하(上下)의 분수(分數)가 있고, 예의(禮義)·염치(廉恥)가 길러지고 기력(氣力)이 이루어지고 명망(名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려(高麗)에서 원(元)나라를 섬기던 처음에, 나라가 거의 지켜지지 못하였는데, 권부(權溥)·이제현(李齊賢) 등의 제가(諸家)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유지(維持)하여 마침내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근일에 함길도(咸吉道)의 여러 고을에 세신(世臣) 수십 가(數十家)가 다른 도(道)와 같이 있었다면, 길주(吉州)의 적(賊)이 어찌 경내(境內)의 조신(朝臣)을 모두 죽였는데도 한 사람도 이를 위하여 근왕(勤王)하는 자가 능히 없었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노비(奴婢)가 없어서 세신(世臣)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천례(賤隷)가 오랫동안 남에게 역사(役使)당하여 항상 불령(不逞)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하루아침에 뜻을 얻으면 도리어 그 주인(主人)을 짓씹으려는 사람이 많으며, 또 평시(平時)에도 면천(免賤)하여 양인(良人)되기가

쉬워서, 분수가 본래 정해지지 못하였으니, 위급(危急)한 때에 임하여 누가 즐겨 죽을 힘을 내어 그 주인(主人)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공사 천구(公私賤口)로서 재예(才藝)를 이루어 시험에 입격(入格)하여 장용대(壯勇隊)에 속하는 자 이외에는 양인(良人)이 되는 길을 자주 열어 주지 말고, 노주(奴主)의 분수(分數)를 백세(百世)토록 바꾸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고려(高麗) 때 김준(金俊)처럼 국명(國命)을 잡는 자가 없고, 고려(高麗) 때 노복(奴僕)처럼 본주(本主)를 도모(圖謀)하는 자가 없어서 이로써 세가(世家)를 기르고 이로써 왕실(王室)을 호위한다면 군국(軍國)의 다행일 것입니다.

1. 병사(兵事)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평상시에 미리 행하는 제도를 불과합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호적(戶籍)에 속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고, 이리하여 다시 보(保)를 만들게 하되, 토전(土田)의 수를 아울러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3인(人)으로써 1보(保)를 만들어 부실(富實)하게 하고, 3보(保)로써 1기병(騎兵)을 만들고, 2보(保)로서 1보병(步兵)을 만들고, 1보(步)로써 잡색(雜色)을 만들어, 군적(軍籍)을 정하소서. 혹은 2백 보(步)를 시험하고, 혹은 1백 50보(步)를 시험하고, 혹은 1백 보(步)를 시험하여 재주가 있는 자를 호수(戶首)로 삼고 재주가 없는 자를 조정(助丁)으로 삼으면 궁수(弓手) 30만 명과 정병(精兵) 3만 명을 얻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군위(軍衛)를 반드시 많이 설치할 것도 없으며, 장수(將帥)를 반드시 많이 호칭(號稱)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팽배(彭排)·대졸(隊卒)·선군(船軍)·정병(正兵)과 같은 것은 아름다운 칭호로 바꾸어 몇 번(番)으로 나누어서 매 1번(番)에 몇 사람씩으로 정하고, 매 번(番)이 몇 달[月]씩 서울에 올라가 머물면서, 군장(軍裝)을 정돈·점검하고 마필(馬匹)을 고열(考閱)하여, 더욱 대신 입역(入役)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여 만세에 불변(不變)할 법전(法典)으로 삼으소서. 아무 도(道) 아무 주(州) 아무 군사[兵]는 번상(番上)이 몇 사람이고, 하번(下番)이 몇 사람인지를 책(冊)에 써서, 한 책은 그 고을에 간직하고, 한 책은 감사(監司)의 영(營)에 간직하고, 한 책은 병조(兵曹)에 간직하고, 한 책은 어소(御所)에 바쳐서, 만약 군사를 징발하여 모으는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의 군사(軍士)를 보내고 한 장의 종이의 글로써 호부(虎符)를 가지고 이를 징발해서 기한을 정하여 뽑아 모으되, 첫날에는 병조(兵曹)에 명하여 점고(點考)하고, 다음 날에는 장수(將帥)에 맡겨서 교습(敎習)을 시키고, 또 다음 날에는 아뢰고, 행군(行軍)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천하(天下)에 마음대로 행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찌 천례(賤隷)를 불러 모으는 것을 일삼겠으며, 어찌 이러한 소추(小醜)를 진멸하는 데 어렵겠습니까?

1. 신이 듣건대, 이제 목면(木綿) 1만 필(匹)과 면주(綿紬) 5천 필을 유구국(琉球國)에 보낸다고 하는데, 신이 그윽이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구국(琉球國)은 본래 작은 나라이고 먼 나라입니다. 바다가 만리(萬里)에 막혀서 풍마우(風馬牛)처럼 서로 미치지 못하니, 비록 완급(緩急)이 있을지라도 서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불가(不可)한 점의 첫째이요, 저들이 비록 감사하게 여길지

라도 능히 우리의 은사(恩私)를 갚지 못할 것이며, 저들이 비록 원망하고 노할지라도 능히 우리의 변방 땅을 엿보지 못할 것이니, 불가한 점의 둘째이요, 우리가 비록 절교(絶交)를 할지라도 방해될 것이 없고, 우리가 보빙(報聘)하고자 하더라도 길이 없으므로 또한 유익(有益)함이 없을 것이니, 불가한 점의 세째이요, 후일에 비록 우리에게 무례(無禮)할지라도 능히 바다를 건너가서 꾸짖을 수가 없으니, 불가한 점의 네째이요, 이제 그 예물(禮物)이 별로 군국(軍國)에 필요한 것도 없으니, 불가한 점의 다섯째이요, 이제 바야흐로 군사를 일으켜, 군사를 조달(調達)하고 군량(軍糧)을 운반하므로 남도(南道)에 일이 많은데, 수백 필의 말에 짐바리를 싣고서 천 리의 땅을 발섭(跋涉)하니, 불가한 점의 여섯째이요, 유구(琉球)는 본래 장사를 하는 나라인데, 이제 그 하사(下賜)를 많이 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서 후년(後年)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므로, 이와 같으면 그 무궁(無窮)한 욕망을 응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불가한 점의 일곱째이요, 일본(日本)은 이웃 나라이고 큰 나라인데, 만약 <유구(琉球)의 예를> 인용하여 청(請)하면 사양(辭讓)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혹은 뜻과 같지 않으면 반드시 분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니, 불가한 점의 여덟째요, 금후에 비록 수백 필을 줄지라도 덕(德)으로 여기지 않을 터이니, 불가한 점의 아홉째요, 중국(中國)에서 이를 들으면 또한 말할 것이니, 불가한 점의 열째요, 모련위(毛憐衛)·건주위(建州衛)의 사람을 모름지기 급히 초유(招誘)할 때 만약 1만 필을 준다면 야인(野人)의 기각(掎角)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옛날 송(宋)나라의 태조(太祖)가 20필의 비단[絹]으로써 하나의 오랑캐 머리[胡首]와 바꾼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니, 그 불가한 점의 열 한째이요, 함길도(咸吉道)에서 적(賊)에 쫓지 않은 8군(郡)은 우리 군려(軍旅)를 지지하다가 피폐(疲弊)하여 가긍(可矜)하니, 모름지기 금년의 전조(田租)를 감(減)하고 혹은 진휼(賑恤)을 더하여야 하는데, 그 불가한 점의 열 둘째이요, 지금 군사들의 겨울 의복[冬衣]을 모름지기 넉넉히 준비하여 주어야 하니, 그 불가한 점의 열 세째이요, 군사의 양식과 마초(馬草)도 또한 모름지기 경영(經營)하여 주어야 하니, 그 불가한 점의 열 네째이요, 군사들의 마필(馬匹)을 혹은 마땅히 준비하여 주어야 하니, 그 불가한 점의 열 다섯째요, 전망(戰亡)한 사람의 집을 먼저 부휼(賻恤)하여야 하니, 그 불가한 점의 열 여섯째요, 이제 북방(北方)을 평정(平定)하는 때를 당하여 공(功)이 있는 장수(將帥)와 투화(投化)한 사람을 마땅히 우대하여 상(賞)을 주어야 하고, 난리를 겪은 백성과 변새(邊塞)를 채운 사람을 마땅히 평안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용도(用度)가 적지 않을 것이니, 그 불가한 점의 열 일곱째요, 이제 저 유구(琉球)의 사신(使臣)은 본래 구주(九州)의 사람인데, 진짜 가짜를 또한 알 수가 없으니, 그 불가한 점의 열 여덟째요, 이제 사섬시(司贍寺)와 제용감(濟用監)의 양사(兩司)에 저장한 면포(綿布)는 20여 만 필이나 면주(綿紬)는 다만 2천여 필이니, 그 불가한 점의 열 아홉째요, 예로부터 1천 필, 1만 필을 유구(琉球)에 준 적이 없었으니, 그 불가한 점의 스무째입니다. 빌건대 그 10분(分)의 1에 해당하는 면포(綿布) 1천 필과 면주(綿紬) 5백 필을 그 사신(使臣)에 부쳐 보내소

서. 만약 저 사신(使臣)이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조정의 신하들이 불가하다고 하여서 중지한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1. 예로부터 난신(亂臣)으로서 절거(竊據)하던 자들은 반드시 중국(中國)에 반부(叛付)하여 성원(聲援)으로 삼았으니, 고려(高麗)의 조위총(趙位寵)이 금(金)나라에 붙었으나 금나라의 세종(世宗)이 받지 않았고, 최탄(崔坦) 등이 원(元)나라에 붙으니 원나라의 세조(世祖)가 받아들였고, 심지어 조휘(趙暉)와 탁청(卓靑)에 이르러서는 동북면(東北面)의 땅을 가지고 원나라에 붙으니, 원나라에서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두었습니다. 이제 길주(吉州)의 적(賊)이 만약 몇 개월 사이에 거짓으로 숨을 죽이면 그 뜻이 반드시 중국(中國)에 잠통(潛通)하여 그 대중을 명령하려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으면 그 세력(勢力)이 이미 이루어지고, 또 심히 난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그 사유(事由)를 갖추어 황제께 주달(奏達)할 수도 없는 것이니, 또한 사전(事前)에 도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절(聖節)을 하례할 때 중국 조정에 들어간 환관(宦官)의 가족을 골라서 보내되, 토물(土物)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복심(腹心)을 펴게 하고, 또 요동(遼東)과 예부관(禮部官)의 있는 곳에 나라의 노자[國贐]를 적당히 기증하여 신의(信義)를 통하게 하고, 이로써 적(賊)의 음모(陰謀)를 막고, 이로써 적세(賊勢)를 고립시킨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8 집 107 면

【분류】 *정론(政論) / *외교-유구(琉球)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무역(貿易)

《 세조 043 13/09/04(병인) / 최유의 치죄를 청한 대간의 상소 》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소(上疏)하기를,

"옛부터 난신 적자(亂臣賊子)들이 그 간악(奸惡)함을 멋대로 부려서 음모(陰謀)를 꾸미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며 우익(羽翼)도 한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법(王法)에서 난적(亂賊)을 다스릴 때 또한 반드시 당여(黨與)를 엄중히 다스려서 그 근본을 끊어버린 다음이라야 악한 짓을 하는 자가 고립되고 왕법(王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일에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의 하늘에 사무치는 악(惡)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던 것인데, 다행히 전하의 신무(神武)에 힘입어서 이시애가 복주(伏誅)되었으나,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것은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시애가 한번 그 난리를 선동하자 온 도(道)가 메아리치듯이 이에 응(應)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여러 사람과 체결(締結)하여 음모한 것이 여러 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유(崔濡)의 아들과 사위가 모두 역당(逆黨)이 되었는데, 어찌 자제(子弟)가 반란을 도모하는데도 부형(父兄)이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최유는 길주(吉州)의 호족(豪族)이고, 이시애의 친당(親黨)이니, 그가 음모에 참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겉으로는 충신(忠信)인 체 꾸미고 속으로는 간흉(姦兇)을 품고서, 전폐(殿陛)의 사이에 출입하니, 그 실정이 최윤손(崔閏孫)보다 더 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최윤손은 이미 형벌을 받았으니, 최유를 어찌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율(律)을 살피건대, '부자지간(父子之間)에도 연좌(緣坐)한다.'는 문귀(文句)가 있으니, 하물며 그 몸도 아울러 연좌(緣坐)해야 마땅한 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그 죄를 결단코 바로잡아서 신민(臣民)들의 울분을 쾌(快)하게 하시고 만세(萬世)의 법을 바로잡으시면 종사(宗社)에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에게 명하여 내전(內殿)에 들어오게 하여 각각 마음 속에 품은 바를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유 같은 사람이 죄에 저촉된다면, 공신을 어디에 쓰겠는가? 내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

하고, 인하여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재상(宰相)들이 많이 산택(山澤)을 점거하여 초소(樵蘇)의 땅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는데, 경이 낱낱이 추핵(推劾)할 수 있겠는가?"

하니, 양성지가 대답하기를,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8 집 11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정론(政論)

《 세조 043 13/09/06(무진) / 이시애 난 평정을 기리는 대사헌 양성지의 평삭방송(平朔方頌)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평삭방송(平朔方頌)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 13년 여름 5월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가 길주(吉州)에서 반역(叛逆)하니, 성상께서 진노(震怒)하여 도총사(都摠使) 신(臣) 이준(李浚)과 부사(副使) 신(臣) 조석문(曹錫文)에게 명하여 서울의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정벌(征伐)하게 하였습니다. 또 진북 장군(鎭北將軍) 신(臣) 강순(康純)에게 명하여, 평안도(平安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양덕(陽德)을 넘고, 평로 장군(平虜將軍) 신(臣) 박중선(朴仲善)에게 황해도(黃海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곡산(谷山)을 넘어서 진격(進擊)하게 하였습니다. 또 신(臣) 정준(鄭俊)·신(臣) 최유림(崔有臨)·신(臣) 장진충(張進

忠)·신(臣) 이의견(李義堅)·신(臣) 김교(金嶠)·신(臣) 오자경(吳子慶) 등에게 명하여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강원도(江原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대병(大兵)이 함께 함흥부(咸興府)에 들어가자 모두 3만 명이었는데, 북청(北靑)으로 나아가 주둔하니, 6월 24일[丁巳]에 적이 밤을 틈타서 들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여러 장수(將帥)들이 출전(出戰)하여 크게 패배시켰으나, 지세(地勢)가 불편(不便)하기 때문에 홍원(洪原)으로 물러나서 주둔하였습니다. 7월 24일[丁亥]에 저쪽편의 북청(北靑) 수령(守令)에 임명된 자가 오니, 상관(上官)이 바야흐로 풍악을 베풀고 연음(宴飮)하였는데, 우리 군사들이 염탐하여 알아보고, 정예(精銳)한 군사를 보내어 들어가 공격하여 죽이고 사로잡기를 거의 다하였으며, 드디어 돌아가서 북청(北靑)의 창고(倉庫)에 웅거하였습니다. 그 때에 적이 이성(利城)에 웅거하여 해안(海岸)을 의지(依支)하여 진(陣)을 쳤습니다. 8월 4일[丁酉]에 대군(大軍)이 나아가 공격을 하니, 적이 팽배(彭排)로써 앞을 가리고, 화살이 비오듯이 내려왔으나, 우리 군사들이 칼날을 무릅쓰고 올라갔습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대장(大將) 어유소(魚有沼)가 해변(海邊)을 경유하여 험조(險阻)를 넘어서 들어오니, 적은 관군(官軍)이 그의 배후(背後)에서 내려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기운을 잃었으나, 적이 그래도 죽을 힘을 내어서 싸웠습니다. 우리 장수들은 용기가 백배(百倍)하여 오시(午時)에서 유시(酉時)에 이르기까지 크게 싸우니, 적의 괴수(魁首)가 먼저 도망하고 적이 드디어 패주(敗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비장(裨將) 남이(南怡) 등이 돌격하여 싸워서 적의 기치(旗幟)를 빼앗고, 적 수백 명을 목베었습니다. 대군(大軍)이 승세(勝勢)를 틈타서 쫓아내달아 적의 머리 1천여 급(級)을 베고, 마천령(磨天嶺)과 마운령(磨雲嶺)을 넘어서 길주(吉州)의 영동역(嶺東驛)에 이르렀습니다. 적의 괴수(魁首)가 처자(妻子)를 데리고 수백 기(騎)와 더불어 도망하여 명원참(溟源站)에 이르자, 위장(僞將) 이주(李珠) 등이 적의 괴수(魁首)를 포박하여 와서 항복하므로, 진(陣) 앞에서 목베고 머리를 함(函)에 담아서 서울에 보내니, 성상께서 크게 기뻐하여 경내(境內)를 유사(宥赦)하고, 그 머리를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습니다. 다만 편사(偏師)만을 남겨서 북방(北方)에 머물러 진압하게 하고, 정벌(征伐)에 종군한 군사에게 주식(酒食)을 내려 주어 해산하여 보내고, 인하여 3년 동안 복호(復戶)하여 주어, 크게 장사(將士)들을 위로하고, 논상(論賞)하기를 차등있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함길도(咸吉道)는 본래 조종(祖宗)께서 비로소 왕업(王業)을 여신 곳이니, 다른 도(道)와 비교할 바가 아닌데, 역적으로 하여금 수개월 동안 가식(假息)하게 하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사를 출동시킨 지 수 개월 만에 세 번이나 이겨서 대적(大賊)을 평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천지(天地) 조종(祖宗)의 도와 주시는 힘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임금의 예모(睿謀)와 신산(神算)을 남김없이 발휘하신 데 힘입은 것입니다. 지금 남만(南蠻)이 친히 보고 길이 미담(美談)으로 삼으며, 북적(北狄)이 풍문(風聞)을 듣고서 기세를 다시 떨치지 못하며, 또 포로를 중국(中國)에 바치고 첩보(捷報)를 동쪽의 왜국(倭國)에 고(告)하는

때를 당하여, 이에 악무(樂舞)를 정하여 교사(郊祀)와 종묘(宗廟)에 아뢰고, 종정(鍾鼎)에 새겨서 영구히 보이는데, 이것이 어찌 특히 한 시대의 위대한 공적(功績)일 뿐이겠습니까? 신(臣)의 직(職)이 사국(史局)에 있으니, 마땅히 대서 특서(大書特書)하여 성대한 공렬(功烈)을 기록해야 하겠으므로, 몸이 비졸(鄙拙)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삼가 평삭방송(平朔方頌) 8편(篇)을 찬술(撰述)하여 바치니, 읽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그 송(頌)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성조(聖祖)를 도우사
때로 육룡(六龍)을 타시고,
삭방(朔方)에 터전을 닦아
문득 대동(大東)을 열었네.
태종(太宗)이 계술(繼述)하니
거듭된 덕화(德化)가 여러 번 흡족하였고,
세종(世宗)이 즉위하시니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지으셨고,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임금께서
영성(盈盛)한 운(運)을 만나서,
탕(湯)임금보다 지용(智勇)이 뛰어나고
순(舜)임금과 총명(聰明)이 같네.
문치(文治)가 이미 흡족하고
무위(武威)도 또한 병행(並行)하네.
사방 만리 땅에
우리와 함께 태평(太平)하네.'

이것은 천우(天佑)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이 소추(小醜)가 준동(蠢動)하여
우리 바닷가 땅을 소란하게 하고
감히 멋대로 날뛰어서
그 악(惡)이 하늘에 사무쳤네.
이에 혁연(赫然)히 진노(震怒)하여
요망한 진애(塵埃)를 소탕하라 명하셨네.
원수(元帥)가 아뢰고 행군(行軍)하니

3천 명의 군사가 그 사람들이로다.
두 장수가 서쪽에서 넘은 것이
양덕(陽德)·곡산(谷山)이었고,
군사를 여러 도(道)에서 징발하여
모두 함관(咸關)에 모이었네.
말에게 먹이고 군사를 쉬게 하다가
군사의 성음(聲音)이 크게 떨쳤네.
맞닿는 자마다 부수어지니
누가 우리 칼날에서 벗어나리?'
이것은 혁노(赫怒)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함관(咸關)은 구불구불하고
산령(山嶺)은 기구(崎嶇)한데,
우리 군사가 넘는 모양이
마치 웅비(熊羆)와 같았네.
석문(石門)이 험(險)함을 잃고
홍헌(洪獻)을 울타리로 삼았네.
이에 북청(北靑)에 이르니
만병(萬兵)이 여기에 둔(屯)쳤네.
밤이 얼마쯤 되었을까?
적도(賊徒)들이 와서 침범하였으나,
군사와 말이 놀라지 아니하였고
성채(城砦)와 목책(木柵)이 엄하였도다.
저들이 비록 멧돼지처럼 돌격하나
우리는 매처럼 높이 날았도다.
적이 이에 크게 도망하고
우리를 감히 당하지 못하였네.'
이것은 전 북청(前北靑)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삼산(三散)이 폐허(廢墟)가
적의 요충(要衝)이 되었네.
저들 가운데 어느 사람이

그 속에 몰래 웅거하였던고?
원숭이를 목욕시켜 관(冠)을 씌우고
외람되게 공당(公堂)에 거(居)함일세.
크게 성악(聲樂)을 베풀어
더러운 무리들이 창궐(猖獗)하였네.
우리가 우리의 장수를 보낼지
일찍이 생각지도 못하였네.
단병(短兵)으로 서로 접전(接戰)할새
누가 감히 더 치열(熾烈)했던가?
역당(逆黨)이 크게 패(敗)하니,
적의 시체가 이리저리 나뒹굴었고,
대나무가 쪼개어지는 기세로
사기(士氣)가 더욱 높았네.'
이것은 후 북청(後北靑)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동쪽으로 창해(滄海)에 임(臨)하고
서쪽으로 열수(列岫)를 당기니,
더러운 무리가 와서 아뢰었고
벌이 둔(屯)치고 개미가 모이는 듯하였네.
누가 그 적개심(敵愾心)을 당할 것이며
누가 그 인후(咽喉)에 도끼질하겠는가?
백일(白日)에 군사를 행진하여
만 명의 군사가 나란히 향하였네.
그때 오직 비장(飛將)만이
하늘에서 내려왔네.
적들이 실로 넋을 잃었으나
싸움은 그래도 그치지 않았네.
모기가 산(山)을 지는 것 같고
버마재비가 수레를 막는 것 같았네.
사면에서 연합하여 공격하니
여러 흉류(兇類)가 패적(敗績)하였네.'

이것은 이성전(利城戰)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적당(賊黨)이 먼저 도망하니
적기(賊旗)만 오히려 섰네.
우리는 맹장(猛將)이 있어서
마치 시호(豺虎)와 같이 싸웠네.
대군(大軍)이 쫓아서 내달아
바람 소리인듯 학(鶴)의 울음 소리인듯,
스스로 그 소혈(巢穴)로 도망하여
쥐가 거친 땅에 숨듯하였네.
위장(僞將)이 화(禍)를 뉘우치고
이에 적괴(賊魁)의 손을 묶어서,
이에 군전(軍前)에 투항(投降)하니
이에 그 괴수(魁首)의 머리를 베어서,
서울에서 바치고
이를 저자 거리에 매달았네.
한번 거병(擧兵)하여 세번 이기니
북쪽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네.'
이것은 길주항(吉州降)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동쪽 변방 땅에 일이 없고
남도(南道) 백성들도 또한 쉬네.
첩음(捷音)이 널리 들끓으니
임금님의 마음도 이에 기뻐하시네.
높은 벼슬 후(厚)한 녹(祿)을
그대에게 어찌 아끼리?
태산(泰山)과 황하(黃河)가 숫돌과 띠가 되도록
금궤(金匱)를 석실(石室)에 간직하리.
잔치하여 먹이는 것이 갖추 지극하고
삼년 동안 복호(復戶)해 주시니,
우리의 공훈(功勳)이요
우리의 직분(職分)일세.

황은(皇恩)이 망극(罔極)하여
성수(聖壽)가 무강(無疆)하시고,
견마(犬馬)의 정성을
몸이 가루가 된들 어찌 잊으리오?'
이것은 책훈(策勳)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금구(金甌)는 옛과 같은데
방악(方岳)은 더욱 빛나네.
웅풍(雄風)이 멀리 전파(傳播)되고
무열(武烈)이 날로 빛나도다.
남만(南蠻)이 소식을 전(傳)하고
북융(北戎)이 간담(肝膽)이 떨어지네.
서쪽 나라에 입조(入朝)함이 아름답고
동쪽 이웃 나라도 또한 복종(服從)하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회동(會同)하는 것이 잇달았네.
장사(將士)들이 한가롭게 습진(習陣)하고
조야(朝野)가 평안하네.
모두 성덕(聖德)을 우러러보니
더욱 큰 기업(基業)이 굳어지고
천년 만년토록
길이 보존(保存)하리로다.'
이것은 무열(武烈)의 1장(章)인데, 장(章)은 8귀(句)입니다."
하였다.

【원전】 8 집 118 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 *변란(變亂) /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43 13/09/21(계미) / 중궁과 함께 선정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북정한 군사들을 위로하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북정(北征)한 군사들을 위

로하였다. 세자(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심결(沈決)·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동지사(同知事) 어효첨(魚孝瞻), 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승지(承旨)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최항에게 명하여 가사(歌詞) 3장(章)을 짓게 하여 관현(管絃)에 탔는데, 그 1장(章)은 이러하였다.

"미친개 문득 요(堯)임금을 짖으니
컹컹 짖으며 흉모(凶謀)를 부렸네.
날리는 껍질이 높은 산에 대항하니
누가 위호(威弧)를 쫓아갈고?
뇌정(雷霆)이 구천(九天)에 진동하자
잠깐 동안에 요사스런 기운이 없어졌네."

2장(章)은 이러하였다.

"위청(衛靑)·곽광(霍光)이
화문(和門)에 이르고
전제(剸諸)·조조(曹操)가 곤오검(昆吾劍)을 휘두르네.
임금님의 계책이 하물며 만전(萬全)한데
움직임이 신명(神明)과 함께하네.
며칠 못되어 큰 공(功)을 아뢰니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네."

3장(章)은 이러하였다.

"영대(靈臺)에서 이미 병부(兵符)를 중지하니
화락하여 당우(唐虞)의 세상이 돌아왔네.
구전(衢奠)을 열어 술을 마시고
어수(魚水)의 즐거움으로 바뀌도다.
문무(文武)가 직무의 게으름을 삼가고
포상(苞桑)과 같이 길이 주무(綢繆)하리라."

세자(世子)가 술을 올리고,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과 잔치를 모시는 종친(宗親)·재추(宰樞)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축수(祝壽)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자, 이준(李浚)·정인지·신숙주·한명회·홍윤성·홍달손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추게 하였다. 여러 장수와 위사(衛士)에게 술을 내려 주어 취할 때까지 마시게 하였다.

【원전】 8 집 123 면
【분류】 *군사-훌병(恤兵) / *예술-음악(音樂)

《 세조 043 13/09/24(병술) /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임금의 탄신을 하례하니 제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

세자(世子)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임금의 탄신(誕辰)을 하례하니, 보경당(寶慶堂)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좌의정(左議政) 조석문(曹錫文)·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 지사(知事) 윤사흔(尹士昕)·성봉조(成奉祖), 좌참찬(左參贊) 김개(金漑)·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안철손(安哲孫), 병조 참판(兵曹參判) 윤흠(尹欽), 적개 공신(敵愾功臣) 오자경(吳子慶)·선형(宣炯)·민발(閔發)·박식(朴埴)·구겸(具謙)·김관(金瓘)·김순명(金順命)·손소(孫昭)·장말손(張末孫)·이양생(李陽生)과 숭의전 사(崇義殿使) 왕순례(王循禮)·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왕세자(王世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여러 종친(宗親)·재추(宰樞)에게 명하여 번갈아 일어나서 축수(祝壽)하게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파하였다.

【원전】 8 집 12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세조 043 13/09/26(무자) / 은천군 이찬 등에게 새로 지은 형전을 수교하게 하다 》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모양 도정(牟陽都正) 이직(李稙)·복성 부수(福

城副守) 이영(李穎)·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홍응(洪應), 문신(文臣) 이극기(李克基)·손소(孫昭)·김순명(金順命)·유진(兪鎭)·최호원(崔灝元)·유희맹(兪希孟)·유윤겸(柳允謙)·이맹현(李孟賢)·이육(李陸)·유권(柳睠)·이경동(李瓊仝)·김유(金紐)·김관(金瓘)과 안효례(安孝禮)·배경흥(裵敬興)에게 명하여 새로 지은 형전(刑典)을 수교(讎校)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12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세조 043 13/09/28(경인) / 유자광의 병조 정랑 임명이 불가함을 아뢴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대사간(大司諫) 김지경(金之慶) 등이 교장(交章)하여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유자광(柳子光)이 병조 정랑(兵曹正郎)에 마땅치 않다는 사유(事由)를 가지고 천총(天聰)에 앙달(仰達)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건대, 적첩(嫡妾)의 분수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세운 것과 같아서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존비(尊卑)와 귀천(貴賤)이 각각 그 차서(次序)를 얻어서 서로 분수에 넘지 않은 다음이라야, 상하(上下)가 분변(分辨)되고 백성들의 뜻이 안정(安定)되어, 국가(國家)가 다스려져 편안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쓸 즈음에 오로지 재주만으로 아니하고 반드시 그 가세(家世)의 출신(出身)을 먼저 참고하였습니다. 이제 중외(中外)에서 인재(人才)를 천거(薦擧)할 때에 반드시 이르기를, '안팎으로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서얼(庶孼) 출신 사람이 다 쓸 만한 재주가 없다는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상하(上下)를 분변(分辨)하고 백성의 뜻을 정하고 존비(尊卑)를 밝히고 귀천(貴賤)을 구별하려는 까닭인데, 바로 왕정(王政)의 선무(先務)인 것입니다.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유자광(柳子光)은 유규(柳規)의 첩(妾)의 아들입니다. 전하께서 천지(天地)와 같은 도량(度量)으로서 재능(才能)이 있다고 이르시고 특별히 허통(許通)하도록 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무릇 사대부(士大夫)의 얼자(孼子)는 비록 시위(侍衛)의 반열(班列)일지라도 오히려 치열(齒列)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자광과 같은 자는 겨우 동반(東班)에 들어오자마자 문득 허통(許通)시키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하다고 하겠으나, 어찌 정조(政曹)·낭관(郎官)의 배명(拜命)이 문득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려질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병조(兵曹)는

군정(軍政)을 모두 총괄하고 인물(人物)을 전주(銓注)하는 곳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문무과(文武科) 출신이 아니면 낭관(郎官)이 될 수가 없으며, 비록 과목(科目)을 거쳤더라도 만약 가문 출신에 의논이 있으면 또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자광은 다만 과목(科目)으로 진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첩(妾)의 아들입니다. 제수(除授)하는 글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의 이목(耳目)이 모두 놀라와하였습니다. 만약 이미 허통(許通)하였으니 무엇이 불가(不可)하겠는가고 한다면 신 등도 또 의혹(疑惑)이 있습니다. 세종 대왕조(世宗大王朝)에 조득인(趙得仁)의 장리(贓吏)의 손자로서 허통(許通)하여 과거에 올라, 성균관(成均館)의 직학(直學)이 되었다가 학록(學錄)으로 천전(遷轉)할 때를 당하였으나, 학록(學錄)과 학정(學正)은 직의 맡은 바가 같다고 이르고 제수(除授)하기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사유(事由)를 갖추어 취지(取旨)하니, 명(命)하여 제수(除授)하지 말게 하고, 진덕박사(進德博士)가 차례로 천전(遷轉)할 때를 당하기까지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벼슬길에 허통(許通)하였으나 대성(臺省)과 정조(政曹)에는 허락하지 않는 예(例)입니다. 근일에 한승경(韓承慶)이 화순 현감(和順縣監)에 제수(除授)되었을 때, 사헌부에서 하윤(河崙)의 첩(妾)의 손녀 사위이므로 수령(守令)에 마땅치 않다고 아뢰어, 곧 고쳐 임명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건대, 학록(學錄)과 수령(守令)은 정조(政曹)보다 가벼워도, 허통한 조득인이 학록(學錄)이 되지 못하였고, 첩의 손녀 사위인 한승경이 수령이 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유자광은 당자가 첩의 아들이 되니, 비록 이미 허통하였더라도 어찌 그로 하여금 병조(兵曹)의 낭관(郎官)으로 삼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조정(朝廷)을 높이시고 나라의 법(法)을 공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양성지·김지경 등을 불러서 묻기를,

"경들이 온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양성지가 대답하기를,

"유자광이 서자[孼子]로서 정조(政曹)의 낭관(郎官)에 임명되었으므로, 신 등이 감히 고쳐서 임명하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김지경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조득인(趙得仁)이 장리(贓吏)의 후손(後孫)으로서 성균 학정(成均學正)에 임명되니, 그때 대간(臺諫)에서 고치자고 청하여 세종께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지난해 봄에 한승경(韓承慶)이 하윤(河崙)의 서손녀[孼孫女] 사위로서 화순 현감(和順縣監)에 임명되니, 신 등이 고치자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병조(兵曹)의 정관(政官)에 어찌 서자[孼子]를 앉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특별한 한 대의 일이니, 어찌 상전(常典)이겠는가? 경들이 세종(世宗)의 고사(故事)를 들어

서 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종 때의 일을 가지고 나를 곤혹하게 하려는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는 세우는 데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다만 사람을 얻는 것만을 귀(貴)하게 여길 뿐인데, 어찌 귀천(貴賤)을 논하겠는가? 경들이 유자광같이 어질 수가 있겠는가? 나는 유자광을 어질다고 하여 사로(仕路)에 허통(許通)시켰는데, 이 때에 경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다고 지금 정조(政曹)에 임명하니, 불가(不可)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들의 마음에는 다른 관직에는 허통(許通)할 수 있어도 오로지 정조(政曹)만은 허통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미 '허통(許通)한다.'고 하였으면 무슨 관직인들 허통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유자광을 허통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데, 나의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능히 저지하겠는가? 임금을 섬기되 너무 자주 간하면 욕이 되는 것이고, 친구와 사귀되 너무 자주 간하면 멀어지는 것이다. 혹시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죄줄 것이니, 너희는 다시 말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고 물러가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어서 양성지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집의(執義) 조안효(趙安孝)·사간(司諫) 박안성(朴安性)·장령(掌令) 정칭(鄭偁)·지평(持平) 정효항(鄭孝恒)·최경지(崔敬止)를 불러서 술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를 시켜 전지(傳旨)하기를,

"모름지기 고집 불통(固執不通)이 필요하니, 만약 고집하지 않으면 일이 모두 해이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고집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글에 이르기를, '대간(臺諫)의 말을 어기기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어진이를 쓰는 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다.

【원전】 8 집 12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세조 044 13/10/13(을사) / 도성의 지도를 만들게 하고, 《북정록》에 기록할 만한 일을 아뢰게 하다 》

안효례(安孝禮)·유희익(兪希益)·이육(李陸)·김유(金紐)·이익배(李益培)에게 명하여 도성(都城)을 자[尺]로 재어서 지도(地圖)를 만들게 하고, 또 **양성지(梁誠之)**·박안성(朴安性)·이극기(李克基)·김순명(金順命)·이경동(李瓊仝)·안호(安瑚)·박양(朴良)·유종준(柳宗濬) 등에게 명하여 실록(實錄)과 여러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그 중에 《북정록(北征錄)》에 기록할 만한 일을 표(標)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원전】 8 집 131 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외교-야(野)

《 세조 044 13/10/15(정미) / 구종직 · 윤자운 · 조석문 등에게 공물의 차오를 밝힐 것을 명하다 》

보경당(寶慶堂)에 나아가서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조석문(曹錫文)·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홍응(洪應)·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刑曹判書) 서거정(徐居正)·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조석문·윤자운·구종직 등에게 이르기를,

"공물(貢物)은 국가의 큰 일이고, 백성들의 휴척(休戚)에 관계되는데, 지금 횡간(橫看)에서 정한 공물이 혹은 지나치게 적어서 사용하기에 부족하고,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안철손(安哲孫)에게 명하여 이를 개정하게 하였는데, 안철손이 능히 차오(差誤)를 적발하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에게 뜻이 있지 않는 자이다. 경(卿) 등은 모두 유자(儒者)이므로 일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정(精)할 것이니 모름지기 뜻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구종직이 비록 늙었다고 하나 정신이 오히려 혼모(昏耗)하지 않으니, 일을 맡길 만하다."

하고, 또 조석문에게 농담으로 이르기를,

"이 일에 비록 정력(精力)을 다하더라도 수염이 더 희어지지 않을 것이니, 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조석문이 북정(北征)에서 돌아오니, 수염이 다 희었다."

하고, 또 하교(下敎)하기를,

"일이 끝나는 날 나의 앞에 나오라. 내가 그대들 앞에 나갈 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그대들이 의관(衣冠)을 벗지 못하고 편하게 기거(起居)할 수도 없으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름지기 자주자주 고문(顧問)하여 감독한 다음이라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경들은 꺼려하지 말라."

하였다.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을 겸 세자 이사(兼世子貳師)로 임명하니, 와서 사은(謝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에 세자(世子)가 학문에 부지런하지 못하니, 경이 마땅히 훈계하여 가르치라."

하였다.

【원전】 8 집 13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재정-공물(貢物)

《 세조 044 13/11/08(경오) / 임영 대군 이구가 아들 이준이 부인을 취한다고 풍정을 올림. 재추에게 시연케 하다 》

임금이 보경당(寶慶堂)에 나아가서 여러 재추(宰樞)를 불러서 새 《대전(大典)》을 의논하였다. 그때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玖)가, 그 아들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이 새로 부인(婦人)을 취(娶)한다고 풍정(豊呈)을 올리니, 임금이 후전(後殿)에 이어(移御)하여 이를 받고, 여러 재추(宰樞)를 불러서 시연(侍宴)하게 하였다. 임금이 술에 취하여 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에게 명하여 이학(理學)을 주장하게 하고,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판서(判書) 서거정(徐居正)·동지사(同知事) 홍응(洪應)에게 사학(史學)을 주장하게 하여, 서로 논란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학(理學) 중에도 사학(史學)의 이론이 있고, 사학 중에도 이학의 뜻을 갖추었으니, 경(卿)들은 그것을 알라."

하고, 구종직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인성(人性)의 안에 사단(四端)을 없애면 다른 물건이 따로 있겠는가?"

하니, 구종직이 임금의 뜻을 맞히지 못하였다. 다시 이르기를,

"선(善)이 진실로 있다면 악(惡)도 또한 있는 것인가?"

하니, 구종직이 또한 대답하지 못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좌의정(左議政) 조석문(曹錫文)·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이 술에 취하여 이준(李浚)이 찬 물건을 다투어 빼앗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못 품위를 잃었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이를 아뢰자, 임금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원전】 8 집 14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유학(儒學) / *역사(歷史)

《 세조 044 13/11/17(기묘) / 효령 대군 이보 등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문신 등에게 《동파집》을 강하게 하다 》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좌의정(左議政)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윤사분(尹士昐)·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성봉조(成奉祖)·윤사흔(尹士

昕)·임원준(任元濬),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송처관(宋處寬)·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홍응(洪應)·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구종직(丘從直)·형조 판서(刑曹判書) 서거정(徐居正)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문신(文臣)과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에게 《동파집(東坡集)》을 강(講)하게 하니, 시강관(侍講官)이 혹은 제대로 논란(論難)하지 못하자, 임금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군신(君臣)이 서로 강론(講論)할 때 어찌 서로 규제(規制)하는 뜻이 없겠는가? 지금 시강관(侍講官)은 의(義)에 있어 그러하지 못하니, 어찌 된 것인가?"

하고, 즉시 명하여 물러가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불러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 등이 논란(論難)한 것이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물러가도록 하였으니, 혐의(嫌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각기 즐거움을 다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14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세조 044 13/12/01(계사) / 정인지 등에게 《시경》을, 정창손 등에게 《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다 》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전 예조 판서(禮曹判書) 강희맹(姜希孟)·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김예몽(金禮蒙)·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정자영(鄭自英)·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유신(儒臣) 이극기(李克基)·최지(崔池)·유윤겸(柳允謙)·이맹현(李孟賢)·최자빈(崔自濱)·이종산(李鍾山)·김귀(金龜)·성현(成俔)·이숙감(李淑瑊)에게 명하여 《시경(詩經)》의 구결(口訣)을 교정(校正)하게 하고,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호조 참판(戶曹參判) 이파(李坡)·우승지(右承旨) 이극증(李克增)과 유신(儒臣) 유진(兪鎭)·유희익(兪希益)·이형원(李亨元)·민정(閔貞)·손차면(孫次綿)·권호(權瑚)·이경동(李璟仝)·고태정(高台鼎)·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구결(口訣)을 교정(校正)하게 하고, 또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 10인과 잡학인(雜學人)의 닦은 학업(學業)을 강(講)하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성균관 유생이 낮에 강(講)하는 것은 이미 과거(科擧)를 통하게 하는데, 다만 잡학(雜學)이 낮에

강(講)하는 것은 오로지 소용(所用)이 없으니, 이제부터 수직(受職)할 때 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14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44 13/12/12(갑진) / 중궁과 선정전에서 효령 대군 이보와 부인에게 위로 잔치를 베풀다 》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와 부인(夫人)을 불러서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고, 세자(世子)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분(尹士昐)·성봉조(成奉祖)·윤사흔(尹士昕)·임원준(任元濬), 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홍응(洪應)·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형조 판서(刑曹判書) 서거정(徐居正)·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김예몽(金禮蒙)·행 호군(行護軍) 이파(李坡)·병조 참판(兵曹參判)·윤흠(尹欽)·행 중추부 첨지사(行中樞府僉知事) 이효상(李孝常)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시연(侍宴)하게 하였다. 세자(世子)가 술을 바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하 여러 신하(臣下)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축수(祝壽)하였다.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이 겸판병조(兼判兵曹)를 사직(辭職)하겠다고 애걸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순명(金順命)·이길보(李吉甫)·김견수(金堅壽)·양진손(梁震孫)·이평(李枰)·이극돈(李克墩)·김유(金紐)·이의형(李義亨)·조간(曹幹)·최연명(崔延命) 등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여, 좌편·우편으로 나누어 활[弓]을 만드는 방법을 강(講)하게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술을 먹이었다. 그때 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를 함길남도 절도사(咸吉南道節度使)로 삼고, 좌승지(左承旨) 한치형(韓致亨)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으나, 임금이 그 교대(交代)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장차 새로 고르고자 하였다. 성균 사성(成均司成) 성윤문(成允文)·사재 첨정(司宰僉正) 한계순(韓繼純)·훈련 첨정(訓鍊僉正) 이숭원(李崇元)을 부르니, 성윤문·한계순은 모두 이르렀으나, 이숭원(李崇元)은 날이 저물어도 오히려 이르지 아니하니, 이에 성윤문·한계순으로써 대신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15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세조 044 13/12/18(경술) / 양성지 등이 한계순과 권감의 상피와 병조 정랑 홍칭에 대해 상소하다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어제 제수(除授)가 잘못된 사건(事件)을 가지고 천총(天聰)에 앙달(仰達)하였으나 윤윤(俞允)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황구(惶懼)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법(法)이란 국가의 중(重)한 기구(器具)인데, 그 시작을 보면 반드시 그 끝을 염려해야 하며, 그 조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폐단(弊端)을 생각해야 하므로, 마땅히 전대(前代)에서 법(法)을 취하여 후래(後來)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상피(相避)하는 법(法)을 세워서, 처(妻)의 동성 숙질(同姓叔姪)이 대성(臺省)과 정조(政曹)의 직(職)에 함께 서지 못하는 것은, 대개 지위가 긴요한데 관계되므로, 특별히 혐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감(權瑊)이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는데, 그 조카 사위인 한계순(韓繼純)이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습니다. 승정원(承政院)의 직은 후설(喉舌)에 해당하여 조석으로 출납(出納)하니, 그 긴요함이 어찌 다만 대성(臺省)과 정조(政曹)에 비교될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상피(相避)해야 하고 같이 임명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방 승지(吏房承旨)·병방 승지(兵房承旨)는 근래 지조사(知曹事)의 직함(職銜)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제수(除授)할 때를 당하여도 인혐(引嫌)하여 피(避)하지 아니하고, 대개 말하기를, '출납(出納)할 뿐이요, 정사(政事)에는 어찌 참여하겠는가?'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집정(執政)하는 자에게 청탁(請託)할 것이 있으면 새벽이나 밤으로 분주하면서 노욕(勞辱)을 꺼리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승지가 함께 집정(執政)의 자리에 앉아 출납(出納)을 전장(專掌)하는데, 지조(知曹)의 직함(職銜)은 비록 띠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조(知曹)의 직임은 옛날과 같으니, 그 연석(宴席)에서 사사로이 조용하게 말한 나머지 어찌 청촉(請囑)하여 모람(冒濫)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피혐(避嫌)하는 법을 쓰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병조(兵曹)의 직(職)은 군무(軍務)를 맡고 인물을 전주(銓注)하니, 관계가 지극히 중합니다. 이보다 앞서 그 낭관(郎官)은 모두 문과(文科) 출신으로, 또 허물이 없는 자를 등용하였고, 과목(科目)으로 진출(進出)하지 않은 자는 모두 등용하지 않았는데, 허물이 있는 자를 문득 재주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대개 그 자리를 중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지난번에 유규(柳規)의 첩의 아들 유자광(柳子光)이 병조 정랑(兵曹正郎)이 되었을 때, 신 등이 이 뜻을 가지고 여러 번 성총(聖聰)을 번독(煩瀆)하였으나, 윤가(允可)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홍칭(洪偁)이 또한 정랑(正郎)이 되었는데, 홍칭은 유자광의 첩자(妾子)에 비(比)할 바는 아니지만, 또한 과목(科目)을 거쳐서 진출(進出)하지 않았으니, 진

실로 그 직(職)을 모람되게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천운(天運)에 응하여 다스리기를 도모하시고, 경륜(經綸)을 세워서 기강(紀綱)을 베풀면서, 그 전대(前代)에서 법을 취하며 후래(後來)에 보이는 바가 지극합니다. 이제 성명(聖明)의 시대에 있어서 정사(政事)를 세우고 사람을 쓰는데 문득 성상의 판단을 거치니, 몇 가지 일에는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으나, 다만 천만세 뒤에 잠시라도 혹 경계하지 아니하면, 친척(親戚)이 뿌리를 박아 함께 조정의 권세를 천단(擅斷)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요, 세력을 타서 청촉(請囑)할 자도 있을 것이요, 적자(嫡子)·서자(庶子)의 차서(次序)를 잃는 자도 있을 것이요, 분수 없이 모진(冒進)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그 조짐을 가히 키울 수가 없는데, 어찌 작은 연고라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한결같이 모두 옛날에 의하여 개정(改正)하시어, 권세를 천단하는 조짐을 막고, 모진(冒進)하는 문(門)을 막으소서."

하니, 임금이 읽어 보고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대개 특지(特旨)의 일은 인주(人主)가 홀로 가부(可否)를 보아 강단(剛斷)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전대(前代) 이래로 권세에 따른 정사(政事)는 하나같지 아니하였다. 전번에 신숙주(申叔舟)와 윤자운(尹子雲)이 같이 정부에 들어갔으나, 무슨 해로운 일이 있었는가? 또 승지(承旨)는 출납(出納)하는 후설(喉舌)일 따름이요, 포폄(褒貶)도 없고 공사(公事)도 없으니, 어찌 상피(相避)할 게 있는가? 또 내가 정사(政事)를 친히 보고 권력이 아래로 옮기지 않은데, 이것이 군주(君主)의 도(道)이다. 만약 권력이 옮겨져 신하가 천단하는 때에 누가 상피(相避)하는 법(法)을 지키겠는가? 오로지 정원(政院)뿐만 아니라, 정조(政曹)의 상피(相避)하는 법(法)도 실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친족(親族)을 사랑하기를 자기 친구보다 후(厚)하게 할 자를 보겠는가? '어진이를 쓰는데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어찌 과거(科擧)로 진출한 것에 구애하겠는가? 경의 뜻을 가상히 여기고 경의 절개(節介)를 높이 보지만 경의 우활(迂闊)함을 웃노니, 물러가라."

하였다.

【원전】 8 집 15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세조 14년 《 양성지 - 세조 14년 .... 11 건 》

세조 045 14/01/27(무자) / 밀성군 이침·한명회·심회 등으로 하여금 유도상, 유도장의 공사를 맡게 하다
세조 045 14/03/15(을해) / 일본국과 야인의 사신 등을 접견하다
세조 046 14/04/16(을사) / 일본국 사신 융원을 인견하고 일본으로 사신을 보낼 수 없음을 알리다
세조 046 14/05/27(병술) / 친동이 쳐서 환관 백충신이 금중에서 벼락을 맞다. 사유하다
세조 046 14/06/18(병오) / 대납·의창·형·노비법·교화·병융에 관한 사헌부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세조 047 14/07/28(을유) / 정자영과 구종직이 공자와 고종에 대해 논의하다
세조 047 14/07/29(병술) / 임금이 병이 나 세자와 종친, 재추들이 문안하다
세조 047 14/08/10(정유) / 양성지가 예조로 하여금 중외에 심방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르다
세조 047 14/08/14(신축) / 구종직, 안효례, 최호원이 선에 대해 격렬히 논란하다
세조 047 14/08/14(신축) / 양성지에게 어제시를 주어 초록하게 하다
세조 047 부록 / 《세조실록》 편수관 명단

《 세조 045 14/01/27(무자) / 밀성군 이침 · 한명회 · 심회 등으로 하여금 유도상, 유도장의 공사를 맡게 하다 》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명하여 유도장(留都將)·유도상(留都相)의 공사(公事)를 겸하여 맡아보게 하였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성봉조(成奉祖)·행 첨지사(行僉知事) 김수온(金守溫)·동지사(同知事) 홍응(洪應)·무송군(茂松君)·윤자운(尹子雲)·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행 대사성(行大司成) 김예몽(金禮蒙)을 유도상(留都相)으로 삼고, 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황치신(黃致身)·문산군(文山君) 유하(柳河)·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길창군(吉昌君) 권맹희(權孟禧)를 유도장(留都將)으로 삼았다.

【원전】 8 집 15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세조 045 14/03/15(을해) / 일본국과 야인의 사신 등을 접견하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좌의정(左議政) 홍달손(洪達孫)·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성봉조(成奉祖)·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예조 판서(禮曹判書) 임원준(任元濬)·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홍응(洪應)·첨지사(僉知事) 구종직(丘從直)·행 상호군(行上護軍) 고태필(高台弼)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일본국 사신(日本國使臣) 융원(融圓)·종례(宗禮) 등과 알타리(斡朶里) 마금파로(馬金波老)·이가로(李家老)와 올량합(兀良哈) 김사로(金舍老) 등도 또한 시연(侍宴)하게 하니, 융원(融圓)이 토물(土物)과 채화(綵花)를 바치었다. 임금이 융원(融圓)·종례(宗禮)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서울에 도착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내가 탕천(湯泉)에 거둥하여 접견(接見)할 수 없었다. 너희 국왕(國王)이 보낸 꽃과 병풍(屛風)은 매우 좋고 올린 술도 또한 아름다우니, 너희들은 그 술을 올려라."

하고, 또 말하기를,

"북방(北方)에 있는 야인(野人)이 이제 모두 와서 조회하는데 내가 더불어 한가지로 마시는 것은, 저들이 먼 곳으로부터 왔으니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너희 국왕(國王)이 연달아 사람을 보내어 통신(通信)하는데도 내가 한 번도 회례(回禮)를 하지 못한 것은, 바다로 국로(國路)가 요원(遙遠)하여 왕래하기에 어려워서이다.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어 너희 나라에 가다가, 마침 풍파(風波)를 만나 끝내 돌아올 수 없게 되어, 이로부터 감히 보내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들에게 붙여서 보내려 하니, 호위하여 내왕할 수 있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 등이 마땅히 함께 갔다 오겠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고자 하는 말이 없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나머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지금 약사사(藥師寺)를 지으려고 하니, 성상의 조연(助緣)을 원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너희 국왕의 서계(書契)에 이미 청하였고, 또 비록 서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나라에서 장차 큰 사찰(寺刹)을 지으려는 것을 들었으니, 또한 마땅히 도움을 주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강북(江北)에는 탱자[枳]가 있고 강남(江南)에는 귤(橘)이 있는데, 춘풍(春風)이 화창(和暢)하니, 영화를 베풀고 특수하게 기르는 것은 한가지이다."

하고, 임금이 마금파로(馬金波老)·이가로(李家老) 등에게 이르기를,

"이 앞서 너의 무리가 많이 왔다가 내가 마침 탕정(湯井)에 거둥하여 접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가 와서는 내가 환궁(還宮)함을 만난 까닭에 접견하는구나."

하니, 마금파로가 대답하기를,

"신(臣)은 일찍이 올적합(兀狄哈)과 더불어 틈[隙]이 있어 서로 화해(和解)하려고 저곳에 갔었는데, 이로 인하여 늦게 와서 천안(天顔)을 배알하게 되니, 어찌 다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보낸 화초(花草)를 너희들은 보아라. 이와 같은 화초를 너희들도 또한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연탁(宴卓)을 원융 등에게 내려 주며, 이르기를,

"너희들은 물러가 관(館)에 가서 스스로 즐겨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을 불러 그 손을 잡고 더불어 말하고, 이어서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이르기를,

"너는 노사신의 사람됨을 아느냐? 국사(國士)로는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융원 등이 관(館)에 이르러, 통사(通事) 전양민(田養民)에게 묻기를,

"탱자나무와 귤나무의 말은 무엇을 이름인가?"

하니, 전양민의 말하기를,

"북방의 탱자나무는 야인(野人)이며, 남방의 귤나무는 너희들이다. 모두 먼 곳으로부터 와서 성상(聖上)으로 더불어 같은 날에 연락(宴樂)하니, 이는 따뜻한 봄이 화창하게 퍼지니, 만물(萬物)이 모두 봄[春]이라는 뜻이다."

하니, 융원 등이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원전】 8 집 16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세조 046 14/04/16(을사) / 일본국 사신 융원을 인견하고 일본으로 사신을 보낼 수 없음을 알리다 》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일본국 사자(日本國使者) 중[僧] 융원(融圓) 등을 인견(引見)하고 잔치를 베푸니, 세자(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禮曹判書) 임원준(任元濬)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신숙주로 하여금 융원(融圓) 등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사신을 너희 나라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마침 중국 사신이 있어 국가(國家)에 일이 많다. 또 우리 나라 사람은 본래 물길에 익숙하지 못하여 너희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가지고 너희 군주(君主)에게 전달하라."

하고, 이어서 수타미(須陁味)를 내다 주니, 융원 등이 맛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원전】 8 집 179 면

【분류】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

《 세조 046 14/05/27(병술) / 천둥이 쳐서 환관 백충신이 금중에서 벼락을 맞다. 사유하다 》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환관(宦官) 백충신(白忠信)이 금중(禁中)에서 벼락을 맞으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대사성(大司成) 김예몽(金禮蒙)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이르기를,

"이제 하늘의 꾸짖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피거(避居)하여 스스로 경계하여야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한여름에 거처할 만한 곳이 없으니, 다만 마땅히 용서할 구언(求言)을 내어서 스스로 책망할 뿐이다."

하고, 드디어 어찰(御札)로 이르기를,

"인심(人心)이 화(和)하면 천지(天地)의 기운도 또한 화하니, 재앙과 복이 이르는 것은 사람의 부름

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제 천둥이 치고 환자(宦者) 백충신(白忠信)이 궁성(宮城) 안에서 벼락을 맞은 것은, 생각하건대 내가 정사에 반드시 궐실(闕失)한 것이 있어 민심(民心)에 어긋난 것이 많고, 형옥(刑獄)에 반드시 원통하게 막힌 것이 많아서이다. 이제 하늘의 꾸짖음을 만나 공구(恐懼)함이 진실로 깊으니, 거의 군신(群臣)과 백성이 도움에 힘입으면,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맞아서 길이 근심 없음을 보존할 것이다.

이달 27일 새벽[昧爽]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한 것, 자손이 조부모(祖父母)·부모(父母)를 모살(謀殺)한 것이라든가 구매(歐罵)한 것, 처첩(妻妾)이 지아비를 모살(謀殺)한 것,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蠱毒)·염매(魘魅)한 것, 고의로 도모하여 살인(殺人)한 것이나,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것, 남형(濫刑)한 관리(官吏)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發覺)되었거나 발각되지 못하였거나, 이미 결정(結正)하였거나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으며, 또 대소 관리(大小官吏)·한산인(閑散人)으로 하여금 각각 시정(時政)의 폐단을 진술 하여, 실봉(實封)하여 계문하게 하라."

하고, 또 병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사변(徙邊)에 응하고서 아직 떠나 보내지 않은 자는 아울러 들여보내지 말라."

하고, 또 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익명(匿名)으로 밀고(密告)하는 자는 모두 청리(聽理)하지 말고, 또 연좌인(緣坐人)·도류(徒流)·부처(付處)·정속자(定屬者)의 죄명(罪名)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라."

하고, 또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작첩(爵牒)을 거둔 사람, 자급(資級)을 강등한 사람, 영구히 서용하지 말게 한 사람들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서 경차관(敬差官)을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죄수를 방면(放免)하게 하고, 또 어선(御膳)을 감하도록 명하고, 후원(後苑)의 축금(畜禽)을 놓아 주었다.

【원전】 8 집 188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세조 046 14/06/18(병오) / 대납 · 의창 · 형 · 노비법 · 교화 · 병융에 관한 사헌부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요즈음 하늘의 경계(警戒)로 인하여 교지를 내려 구언(救言)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면하게 하는 도(道)를 다한 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등은 대죄(待罪)하고 있는 언관(言官)으로서 삼가 조목별로 시폐(時弊)를 올리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예감(睿鑑)하시어 채택하소서.

1. 대납(代納)의 설치는 본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도와서, 공사(公私)에 적절하고 편리하게 하며 민정(民情)을 따르고 국용(國用)을 건지는 소이(所以)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전(大典)》에는, '백성이 대납(代納)을 구하여서 값을 갚는 자가 있으면, 관(官)에서 들어주어 수급(收給)하도록 하되, 어긴 자는 장(杖) 1백 대에, 값과 물건을 몰관(沒官)하고, 수령은 3년동안 서용(敍用)하지 않는다.' 하고, 또 그 해의 풍흉(豊凶)을 보아 물건에 정한 값이 있게 하였으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며 명령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를 들어서 행하면 진실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란 자는 부상(富商)에게 구부리고, 권세(權勢)에 제어되는 무리이라서 다만 민정(民情)이 원하는 바의 쌀·콩과 초목(草木) 등류와 같이 백성이 쉽게 판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납을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강제로 불러다가 문권(文券)을 만들어 다 대납하게 하되, 값을 징수할 즈음에는 관(官)에서 거두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촌락(村落)을 횡행(橫行)하여 뜻대로 수렴(收斂)하게 하니, 발가벗기고 종아리를 때리는 등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 집에 있는 것을 다하여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면 책임을 친린(親隣)에게까지 미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대소 인민이 오오(嗷嗷 : 뭇사람이 슬퍼하는 모양)하며 알몸으로 배를 주리고 조석(朝夕)을 보전하지 못하는데도, 홀로 상고(商賈)의 무리만은 풍족하게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립니다.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일수록 더욱 가난하니, 그 전하의 박시 자민(博施字民)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정사에 부지런하게 다스림을 도모한 것이 한 가지 일이라도 백성에게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은명(恩命)이 여러 번 내렸는데도 백성이 입지 못하고 실지로 혜택을 입은 자는 대납의 연고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이미 민정(民情)을 물었고, 징수하는 값에 법이 있어 어긴 자는 죄를 당하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느냐?' 하면, 신 등은 생각하건대 아름다운 먹이[芳餌] 아래에서는 물고기가 피할 수 없고, 이익이 중한 아래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중리(重利)를 좋아하는 자는 권호(權豪)이고 상고(商賈)이며 수령(守令)이고, 민생(民生)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전하 한 몸 뿐이니, 누가 경(輕)한 죄를 두려워하여 중(重)한 이익을 버리겠으며, 전하의 어진 마음을 능히 몸받아서 법을 좋게 쓰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그림자를 싫어하여 달리는 것은 그늘에 처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대납하는 것은 불평하는 데 그 폐단을 없애려 함은 어려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영구히 대납하는 법을 없애어 민

폐(民弊)를 근절하소서.

1. 의창(義倉)·사창(社倉)을 설치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창은 지금도 행하는데 사창은 혹은 행하고 혹은 행하지 않으니, 어찌 폐단이 없는 것은 오래 존재하나 폐단이 있는 것은 오래 가기 어려운 연고가 아니겠습니까? 대개 사창(社倉)은 촌락 사이에 흩어 두고 여러 사장(社長)에게 위임하니, 그것을 흩을 적에는 자기와 친하고 친하지 못한 것과 은혜와 원망으로써 다소(多少)를 정하고,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혹 주지 않으며, 그것을 거둘 적에는 자가(自家)에서 수확(收獲)한 나머지로 힘이 혹 미치지 못하면, 마을을 같이 하고 우물을 같이 하는 무리로 하되 또 따르지 못하게 하니, 금년에 다 거두지 못하면 명년에도 또 다 거두지 못하여, 계권(契卷)만 헛되이 돌아오고 끝내 실지로 쌓인 것은 없으며, 그것을 지킬 적에는 공가(公家)의 곡식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보고, 임의(任意)로 출납(出納)하여 혹은 바꾸고 혹은 사사로이 도둑질합니다. 또 인력(人力)을 펴지 않고 창고의 문단속을 게을리하여 도적을 불러들이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쌓인 것이 모손(耗損)을 초래하여, 마침내 힘으로 변상(辦償)할 수 없을 것을 알면 흔적을 없애려고 꾀하여, 반드시 장차 그 창고를 불사르고 이르기를, '도둑이 불을 질렀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휴(提携)하여 도산(逃散)한 뒤에야 마니, 연변(沿邊)의 백성은 혹 완급(緩急)이 있으면 모두 성(城)에 들어와 지키는데, 어찌 유독 백성의 생명이 매인 바를 촌락(村落)에다 두고서 도적의 자산으로 삼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사창(社倉)은 나라에 유익(有益)하고, 백성에게 폐(弊)가 없다.'고 한다면, 근일에 전라도(全羅道)에서 번고(反庫)할 때에, 사창의 곡식을 허모(虛耗)한 것이 적지 않아 지키는 자가 변상할 수 없는 것이 많았으니, 이것은 이미 그렇다는 명확한 증험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수령(守令)은 관부(官府)의 위엄이 있고 사령(使令)이 넉넉하게 있어, 때를 맞추어 그것을 염산(斂散)하고 굳게 그것을 수호(守護)할 만하며, 의창(義倉)은 실로 만세토록 바꾸지 못할 좋은 법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의창을 다시 세워서 백성의 여망을 위로하소서.

1. 형(刑)이란 성인(聖人)이 부득이 한 것이고, 가장 용심(用心)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공경하고, 공경하라, 오직 형벌은 신중히 할 것이다.' 하고, 전(傳)에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끊어진 자는 다시 이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형벌을 혹 남용하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전하께서는 지극한 덕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가엽게 여기시어, 남형(濫刑)을 금(禁)한 것이 영전(令典)에 나타나 있는데도, 중외(中外)의 관리(官吏)가 성상(聖上)의 흠휼(欽恤)하는 어지심을 몸받지 아니하고, 혹은 사사로운 분노로 인하여, 혹은 공사(公事)로 인하여, 법을 빙자하고 그릇되게 남용하여 무고(無故)하게 죽고 상한 자가 간혹 있으니, 전하께서 남형(濫刑)의 금지를 중하게 한 것이 비록 죄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였더라도 어찌 시폐(時弊)를 구(救)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대저 사람이 백길[百仞]의 연못에

임하여 곁을 걸어다녀도 진실로 근심이 없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시험하지 않은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떨어질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유사(有司)가 죄인(罪人)에게도 또한 그러하니, 법에 의방하여 용형(用刑)하는 자가 실정을 얻을 만한데, 오히려 감히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혹 남용하여 실수할까 두려워함에서입니다. 공사(公事)를 하는데 누구와 사사로운 짓을 하며, 법을 사랑하는데 누구와 몸을 사랑하겠습니까마는, 사람마다 서로 경계하여 용형(用刑)을 꺼리고 그 1태(笞)의 실수와 더불어 남형의 금지에 저촉된다면, 차라리 석방하여 다스리지 않고 고의로 내보낸 죄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연하여 도적(盜賊)도 또한 그 까닭을 알고, 비록 장적(贓迹)이 드러났더라도 끝내 책임을 스스로 이끌어지지 않아서, 악(惡)을 징계하는 그물이 허소하여 간사한 도적이 날로 성하여 백주(白晝)에 대도(大都)에서도 혹 절도가 발생하니, 고촌(孤村)이나 벽항(僻巷)에서라면 누가 꺼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양민(良民)이 해(害)를 입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저가 분개로 인하여 법을 빙자하여 혹은 목석(木石)이나 금인(金刃)을 쓰더라도 잔혹하게 상해한 것을 다스리지 않은 자는, 대전(大典)에 따라 다스리어 용서하고 원면(原免)하지 않으며, 그 다른 도적을 신문(訊問)할 때에 장물이 나타나고 실정이 드러났는데도 유사(有司)가 혹 태장(笞杖)하는 데 실수한 자는 한결같이 본율(本律)에 따라 시행(施行)하면, 유사(有司)가 마땅히 형벌을 의논함에 몸을 해치지 않는 것을 알아서 그 심력(心力)을 펼 것이고, 도적을 없애는 것도 혹 이에 말미암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1. 교화(敎化)는 국가의 급무(急務)이며, 풍속(風俗)은 천하의 대사(大事)인데, 이루기는 어렵고 패(敗)하기는 쉬우니,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장인(匠人)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주초[礎]에다 기둥[柱]을 받고 기둥에다 대들보[樑]를 이어, 상하가 서로 의지하여야 집은 오래갈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 존비(尊卑)가 서로 이어 받아야 나라가 이에 편안할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는 이를 긍휼(矜恤)하여 언로(言路)를 환히 열었고, 혹은 탐주(探籌)·격고(擊鼓)하며, 혹은 직접 나아와 진소(陳訴)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함을 얻게 하였으니, 어찌 원망을 머금고 굴욕을 안고서 신원(伸冤)하지 못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사하고 아첨하는 소인배(小人輩)가 대체(大體)에 어두워서 항상혜혜연(盱盱然)하게 그 위를 엿보아, 흠을 찾고 흉터를 구하여 한가지 실수를 얻으면 팔을 저어 가면서 서로 미워하니, 비록 자기의 원망이 아니더라도 가지고서 고소(告訴)하여 상(賞)을 받는 자료로 삼으니, 밖에서는 수령(守令)을 안에서는 백집사(百執事)까지도 보기를 그 아래의 구적(仇敵)과 같이 여길 뿐 아니라, 마시고 먹고 말하는 데까지도 오히려 또 의심하고 저해하니,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따라서 사공(事功)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고(告)하는 것이 실상이더라도 이미 대체(大體)를 상(賞)하였는데, 더구나 무망(誣罔)하고 교사(矯詐)하여서 동요하는 자이겠습니까?

옛 사람이 고알(告訐)을 중하게 한 소이가 어찌 그 하정(下情)을 막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대체(大體)를 유지(維持)하여 능멸하는 데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을 고소하고 아내가 그 지아비를 고소하며, 아비가 아들을 믿지 못하고 형이 아우를 믿지 못하면, 풍속이 한 번 패(敗)하여 다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관리가 탐오(貪汚)하고 백성을 가혹하게 하는 등의 일을 스스로 원통함이 있는 자가 호소하고 유사(有司)가 규찰하면, 어찌 타인의 고소를 기다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자기의 원억(怨抑)을 제외하고는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인심을 편안히 하고 풍속을 돈독하게 하소서.

1. 우리 국가의 노비(奴婢)의 법(法)은 그것을 숭상하면서부터 사대부(士大夫)가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전(相傳)할 즈음에 계권(契券)이 명백하지 못하면 쟁송(爭訟)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관(官)을 설치하여 나누어 다스리니, 무릇 전계(傳係)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에 고하여 서경(署經)한 연후에야 간위(姦僞)가 의탁할 바가 없었습니다. 대저 전지(田地)는 사람의 명맥(命脈)이며, 노비(奴婢)는 선비의 수족(手足)이라 경중(經重)이 서로 같으니, 편벽되게 폐(廢)할 수 없습니다. 율(律)에 세계과할(稅契過割)의 글이 있는데도 율(律)을 쓰는 것은 바로 금일의 법전이니, 전지(田地)는 이미 세계(稅契)가 있는데 어찌 노비에만 그렇지 못하여 쟁송의 단서를 열게 합니까? 사람은 다투어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만(萬)에 하나라도 요행을 바라니, 강약(强弱)이 서로 송사하면 강한 자가 얻게 되고, 귀천(貴賤)이 서로 쟁송하면 귀한 자가 이기게 되니, 누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붙들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겠습니까? 형세가 장차 소첩(訴牒)이 구름처럼 쌓이어 시비(是非)가 뒤섞이면, 관리는 문서를 잡고서 심취(心醉)하고, 간호(姦豪)는 세도를 의탁하여 모사(謀士)를 초빙할 것이니, 어찌 적은 폐단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노비(奴婢)의 문권도 또한 전지(田地)에 의하여 예전대로 관부를 경유하게 하여, 간위(姦僞)를 막고 송사의 단서를 근절하게 하소서.

1. 병융(兵戎)은 나라의 대사(大事)이니, 그 병기(兵器)는 날카롭고 또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편안하게 살면서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병기(兵器)를 날카롭게 하여 불우(不虞)를 경계할 것을 생각하시고, 공궁(貢弓)을 가설(加設)하여 대관(大官)에게 수백을, 소관(小官)에게 수십을 그 해의 상수(常數)로 삼으시니, 염려하는 것이 매우 원대합니다. 그러나 수효로써 상고하건대 5, 6의 집의 1궁(弓)을 바치는 것에 해당하니, 1궁(弓)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몇 마리 짐승의 힘줄[筋]을 써야 하며, 뿔[角]은 더욱 집집마다 얻기 어려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수령은 문안(文案)을 들어 징수하기를 독촉함이 성화(星火)보다 급하고, 백성은 판비할 수가 없으면 포화(布貨)를 집에서 거두고 호구에서 수렴하는데도 오히려 변상할 수 없으면 편달(鞭撻)이 따르게 되니, 만약에 백성에게 다른 부역이 없고, 오로지 활로만 공부(貢賦)를 한다면 오히려 옳겠습니다. 저 조세(租稅)와 공부(貢賦)에다 공

사(公私)의 부채(負債)를 추수(秋收)한 소득으로는 십 분의 일을 상환하지 못하는데, 또 어느 겨를에 관비하기 어려운 활을 갖추어서 매 해의 상공(常貢)으로 삼겠습니까? 만약에 이르기를, '공물(貢物)은 곧 수령의 편의한 바에 따라 비축하는 것이니, 백성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 등은 생각하건대 수령에게 소용되는 것은 공름(公廩)인데 남은 저축이 없고, 부리는 자는 이졸(吏卒)인데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이 밖에 소용되는 것은 모두 민력(民力)에서 나오는데, 하물며 활이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런 것을 수령에게 붙여 한결같이 모두 백성에게서 긁어내어, 그 폐단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우리 전하께서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히 이 폐단을 제거하여서 백성의 폐해를 없애소서.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구언(求言)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어려움이 되며, 청언(聽言)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이 됩니다. 전하께서 구언(求言)하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하여, 중요하지 않은 데 이르러서도 또한 다 말할 수 있게 하니, 누가 즐겨 마음에 품은 것이 있는데도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말한 것이 한 가지 일이 아니고, 폐단을 논한 것이 한 가지 단서가 아니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입은 다르더라도 한결같이 담론할 한 가지의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에 있기를, '많은 무리의 의논에서 족히 인정(人情)을 볼 것이며, 반드시 행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군정(群情)을 굽어 살피시어, 나라 사람이 다 폐단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폐단이 되는 소이를 구하고,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고 하면 반드시 그 옳게 여기는 소이를 구한 연후라야,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못한 것은 버릴 것입니다. 장차 폐단을 물리쳐야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여야 마음이 화락하고, 마음이 화락하여야 기운이 화합하고, 기운이 화합하여야 형상이 화하고, 형상이 화하여야 천지(天地)의 기(氣)도 또한 화하여, 모든 복(福)된 사물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집의(執義) 이극돈(李克墩)이 이러한 상소(上疏)를 받들어 올리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이극돈으로 하여금 그 상소를 읽게 하여 들으시더니, 고알(告訐)의 조목(條目)에 이르러서 임금이 여러 재추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고알(告訐)이 그른 것이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생각하건대 나라에는 상경(常經)이 있고 권도(權道)가 있다. 근자에 권도를 써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신원한 자가 자못 많았으나, 그러나 경구(經久)한 계교는 아니니, 경 등은 다만 보도록 하라. 금후로는 맹세코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나계문(羅季文)의 처(妻) 윤씨(尹氏)가 읍소(泣訴)하여 신원(伸寃)을 얻은 뒤로부터 소민(小民)이 조금이라도 결망(缺望)함이 있으면 즉시 소매를 걷어올리고 스스로 호소하여 분운(紛紜)을 이기지 못하니, 임금도 또한 미워한 까닭으로, 특별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19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기(軍器)

《 세조 047 14/07/28(을유) / 정자영과 구종직이 공자와 고종에 대해 논의하다 》

세자(世子)가 와서 문안(問安)하고, 이어서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등과 더불어 서사(庶事)를 의논하여 정(定)하였다. 여러 재추(宰樞)들도 와서 문안하였는데, 인하여 안으로 불러들이어 이들을 먹이었다. 임금이 아직도 편찮으신데 **양성지(梁誠之)**·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을 불러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한 장의 종이에 글을 써서 이를 보이면서 이르기를,

"사람들은 모두 허령(虛靈)하고 지각(知覺)하는 성품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있으면 곧 발(發)하는데, 이것은 성(性)이 발(發)하는 것이냐? 정(情)이 발하는 것이냐? 만약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발한다고 하면 보고 듣는 것이 본(本)이며 성(性)이 말(末)이냐?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지 아니하여 발(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말(末)이 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본(本)은 스스로 없어질 것인데 어떤 까닭으로 '많은 이치를 갖추면 만사(萬事)가 응(應)한다.'고 말했으며, 또 어찌하여 이치가 많으면 일은 만가지나 된다고 하였느냐? 꿈에는 보고 듣는 바가 없는데, 응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니, 정자영은 말이 고종(高宗)이 꿈꾼 전설(傳說)과 공자(孔子)가 주공(周公)을 꿈꾼 데에까지 미쳤으며, 구종직은 임금이 석씨(釋氏)를 헐뜯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곧 그 설(說)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꿈속의 일은 도무지 허망한 것이니, 고종과 공자가 모두 잘못입니다. 고종이 어찌 반드시 전설의 어진이를 쓰고자 하였을 것이며, 공자가 어찌 반드시 주공의 도(道)를 행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이는 모두 속세의 번루(繁累)함을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대개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꿈에 발(發)하는 것이니, 만약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어찌 그러한 꿈이 있었겠습니까? 무릇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곧 이는 망령된 것이니, 그러므로 꿈 속의 일도 모두 망령된 것입니다."

하니, 정자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꿈에는 바른 것이 있고, 잡(雜)된 것이 있으니, 고종이 천하(天下)를 평정하게 다스리고자 하여, 어진이가 도와 줄 것을 생각한 것이며, 공자는 주공(周公)의 도(道)를 행(行)하고자 하여 주공을 생각하였으므로 이러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성인(聖人)은 지기(志氣)가 청명(淸明)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바가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꿈꾸는 바도 또한 바른 것입니

다. 이제 구종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게 하려는 것으로서, 비록 성지(聖智)한 사람이라도 만일 천하(天下)와 국가(國家)를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 망령된 것이라고 여기었으니, 만약 구종직이 말한 바대로라면 고종과 공자는 모두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찌 옛날의 성인(聖人)이라고 일컬었겠습니까? 구종직은 한갓 수유(豎儒)로서 옛 성인을 망령된 자로 하였으니, 이를 어찌 지언자(知言者)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양성지에게 시비(是非)를 결정(決定)하도록 명(命)하니, 양성지가 대답하기를,

"구종직이 말한 바는 심오한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臣)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종(高宗)은 실로 뛰어난 영주(令主)이요, 공자(孔子)는 만세(萬世)의 존경하는 스승인데, 구종직은 모두 이를 그르다고 하였으니, 신은 구종직이 논한 바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였다. 구종직은 사견(私見)을 고집(固執)하며 정자영은 그르다고 하니, 명하여 모두 술로써 벌(罰)을 주도록 하였다. 이어서 사서오경 구결(四書五經口訣)을 올리도록 명(命)하여, 임금이 친히 정자영과 구종직에게 물으니, 또 자못 이를 논란하였으므로 시각이 바뀌어서야 겨우 파(罷)하였다. 구종직은 임금이 자주 석씨(釋氏)의 말을 가지고 유자(儒者)의 의론(議論)을 꺾는 것을 보았으므로 유가(儒家)에서 도망하여 석씨(釋氏)에 돌아가 입술로 아첨하고 혀[舌]로 속이어 임금의 뜻에 합하기를 힘썼으므로 탄망(誕妄)하고 불경(不經)한 말을 한 것이 이와 같았으나, 홀로 정자영은 당직(當直)하게 굴(屈)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론(持論)이 자못 발랐다. 사신(史臣)이 이르기를,

"구종직은 초모(草茅)의 선비로써 늦게 과거(科擧)에 급제하였는데, 수십 년을 지회(遲回)하다가 하루 아침에 조금 경학(經學)을 안다 하여 성상의 지우(知遇)를 입어 몇 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지위가 숭반(崇班)에 이르렀으니, 어찌 다행한 것이라 하리요? 마땅히 경전(經典)의 뜻을 강구(講究)하여 밝히고, 우리의 도(道)를 부익(扶翊)해야 할 것인데, 박잡(駁雜)하고 불경(不經)한 말로써 선성(先聖)을 배척하여 스스로 계략(計略)을 얻었다고 여기고 괴오(愧悟)함이 없으니, 평생(平生)에 배운 바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원전】 8 집 20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세조 047 14/07/29(병술) / 임금이 병이 나 세자와 종친, 재추들이 문안하다 》

임금이 불예(不豫)하여 세자(世子)가 와서 문안(問安)하고,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이 문안

하였는데, 인하여 안으로 불러들이어 술을 내려 주도록 명(命)하고는 신숙주(申叔舟)로 하여금 어병(御屛)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양성지(梁誠之)**·이석형(李石亨) 등을 불러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강(講)하게 하였고 또 마음의 성정(性情)을 논(論)하였는데, 대답하는 것이 모두 뜻에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모(冠帽)를 벗고 부(浮)를 하도록 명(命)하였다. 또 정자영(鄭自英)·구종직(丘從直)·김수령(金壽寧)·이영은(李永垠)·박건(朴楗)을 불러 상정소(詳定所)에 나아가 《주역구결(周易口訣)》을 참정(參定)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20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어문학(語文學)

《 세조 047 14/08/10(정유) / 양성지가 예조로 하여금 중외에 심방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르다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에게 명(命)하여 조종(祖宗)의 어제(御製)를 실록(實錄)이나 여러 곳의 일기(日記)에서 찾아내어 아뢰도록 하니, 양성지가 예조(禮曹)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심방(尋訪)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206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47 14/08/14(신축) / 구종직, 안효례, 최호원이 선에 대해 격렬히 논란하다 》

임금이 불예(不豫)하여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가 문안(問安)하니, 인견(引見)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최지(崔池)·임수겸(林守謙)·유포익(兪布益) 및 안효례(安孝禮)·최호원(崔灝元) 등을 불러 성리설(性理說)을 논란(論難)하게 하였는데, 구종직이 나와서 이르기를,

"역(易)은 복희(伏羲)가 괘(卦)를 그음으로부터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이 이를 계승하였는데 우리 세종(世宗)과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에 이르러 역도(易道)를 궁탐(窮探)하시어 뜻을 정밀히 하여 신비로운 데 들어갔으니, 능히 사성(四聖)의 역(易)을 계승한 것입니다."

하였다. 구종직이 인(因)하여 안효례와 더불어 선(禪)을 담론(談論)하였는데, 안효례가 격렬히 논란하니, 구종직이 말이 막히어 두 번 절하고 조아리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항복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구종직은 이미 피곤해졌으니, 최효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안효례가 최호원과 더불어 각각 시비(是非)를 고집(固執)하여 서로 논란하였는데, 최호원이 안효례에게 말하기를,

"너는 백정(白丁)의 손자이다."

하니, 안효례가 이르기를,

"과연 내가 백정의 손자라고 한다면 너는 곧 나의 아들이다."

하였다. 말하는 바가 모두 이런 종류였으며 성난 목소리로 서로 욕하면서도 외기(畏忌)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임금의 앞에 나아가 안효례의 불공(不恭)한 죄를 탄핵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무리가 온 것은 본래 파적(破寂)을 하고자 한 것으로 책할 것이 못되니 그대로 두라."

하였는데, 안효례가 극렬히 변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양성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꾸짖기를,

"네가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마땅히 중히 탄핵하겠다."

하니, 안효례가 조금 누그러졌으나, 여러 신하들은 오히려 양성지의 탄핵이 엄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였다. 신숙주(申叔舟)가 물러나 최호원에게 이르기를,

"안효례는 족히 이를 것이 못되나 너도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안효례는 맹례(氓隷) 출신으로 성리학(性理學)에 있어서도 또한 아는 바가 없었는데, 특히 구변(口辯)으로 그 설(說)을 성취시켜 임금의 웃음을 바랐던 것이며, 최호원은 문신(文臣)으로 평소에 추솔(麤率)하여 직함이 없었다. 두 사람은 모두 조금 풍수(風水)의 이치를 아는 것 때문에 지우(知遇)를 입었는데, 임금도 또한 배우(俳優)로 이들을 용납하였던 것이다.

【원전】 8 집 20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세조 047 14/08/14(신축) / 양성지에게 어제시를 주어 조록하게 하다 》

임금이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명(命)하여 어제시(御製詩)를 내어 **양성지(梁誠之)**에게 주게 하며 이르기를,

"네가 다시 수멱(搜覓)을 더하여 빠짐이 없이 초록(抄錄)하라."

하고, 이어 신숙주(申叔舟)에게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시(詩)를 내가 장차 간판(刊板)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은 바는 희어(戱語)가 많이 있으니, 경(卿)이 그를 산삭(刪削)하고, 또한 간판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라."

하였다.

【원전】 8 집 207 면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세조 047 부록 / 《세조실록》 편수관 명단 》

성화 5년 기축 4월에 춘추관(春秋館)에서 명(命)을 받아 찬술(撰述)하기 시작하여, 성화 7년 신묘 12월에 끝났습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영관사(領館事)

수충 협책 정란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輸忠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예문관홍문관관상감사 예조 판서(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 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臣) 신숙주(申叔舟)

수충 위사 협책 정란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輸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겸 영경연사 병조 판서(兼領經筵事兵曹判書) 신(臣) 한명회(韓明澮)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란 좌익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신(臣) 최항(崔恒)

지관사(知館事)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량 좌리 공신(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 숭정 대부(崇政大夫) 판돈녕부사 겸 지경연사(判敦寧府事兼知經筵事) 진산군(晉山君) 신(臣) 강희맹(姜希孟)

순성 명량 좌리 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 겸 홍문관 제학(知中樞府

事兼弘文館提學) 남원군(南原君) 신(臣) **양성지(梁誠之)**

동지관사(同知館事)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예조 판서 겸 동지경연사 예문관 제학(禮曹判書兼同知經筵事藝文館提學) 양성군(陽城君) 신(臣) 이승소(李承召)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동래군(東萊君) 신(臣) 정난종(鄭蘭宗)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 가정 대부(嘉靖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 복창군(福昌君) 신(臣) 김수령(金壽寧)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형조 참판(刑曹參判) 광원군(廣原君) 신(臣) 이극돈(李克墩)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의흥위 호군 겸 동지성균관사(行義興衛護軍兼同知成均館事) 신(臣) 예승석(芮承錫)

수찬관(修撰官)

통정 대부(通政大夫) 예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 신(臣) 김지경(金之慶)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절충 장군(折衝將軍) 행 충무위 사직 겸 오위 장(行忠武衛司直兼五衛將) 신(臣) 조익정(趙益貞)

통정 대부(通政大夫) 예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 신(臣) 유권(柳睠)

편수관(編修官)

통훈 대부(通訓大夫) 예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참교(藝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 신(臣) 김유(金紐)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례원 좌통례 겸 승문원 참교(通禮院左通禮兼承文院參校) 신(臣) 윤효손(尹孝孫)

통훈 대부(通訓大夫) 장악원 정(掌樂院正) 신(臣) 고태정(高台鼎)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집의 겸 승문원 참교(行司憲府執義兼承文院參校) 신(臣) 손순효(孫舜孝)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전한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홍문관 전한 승문원 참교(行藝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弘文館典翰承文院參校) 신(臣) 임사홍(任士洪)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간원 사간(行司諫院司諫) 신(臣) 김영견(金永堅)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감(行藝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 신(臣) 김계창(金季昌)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승문원 참교(行承文院參校) 신(臣) 성숙(成俶)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섬시 부정(行司贍寺副正) 신(臣) 박미(朴瀰)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의정부 사인(行議政府舍人) 신(臣) 현석규(玄碩圭)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성균관 사예(行成均館司藝) 신(臣) 김성원(金性源)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 신(臣) 홍귀달(洪貴達)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봉상시 첨정(行奉常寺僉正) 신(臣) 정영통(鄭永通)

어모 장군(禦侮將軍) 행 용양위 중부 사직(行龍驤衛中部司直) 신(臣) 김신(金新)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최경지(崔敬止)

기주관(記注官)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리(行藝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理) 신(臣) 노공필(盧公弼)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리(行藝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理) 신(臣) 정휘(鄭徽)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行禮曹正郎兼承文院校理) 신(臣) 이경동(李瓊仝)

봉정 대부(奉正大夫) 행 세자 시강 문학(行世子侍講文學) 신(臣) 박숭질(朴崇質)

중직 대부(中直大夫) 행 성균관 전적(行成均館典籍) 신(臣) 유자분(柳自汾)

중훈 대부(中訓大夫)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리(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理) 신(臣) 김극검(金克儉)

중훈 대부(中訓大夫)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리(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理) 신(臣) 최숙정(崔淑精)

봉렬 대부(奉列大夫) 행 형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行刑曹正郎兼承文院校理) 신(臣) 허선(許詵)

봉정 대부(奉正大夫)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리(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理) 신(臣) 박시형(朴時衡)

봉렬 대부(奉列大夫) 행 예조 정랑(行禮曹正郎) 신(臣) 김자정(金自貞)

조산 대부(朝散大夫) 행 의정부 검상 겸 승문원 교리(行議政府檢詳兼承文院校理) 신(臣) 이칙(李則)

기사관(記事官)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

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김윤종(金潤宗)

봉정 대부(奉正大夫)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손비장(孫比長)

조봉 대부(朝奉大夫)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박효원(朴孝元)

조산 대부(朝散大夫) 행 병조 좌랑(行兵曹佐郎) 신(臣) 윤현손(尹顯孫)

조산 대부(朝散大夫) 행 공조 좌랑(行工曹佐郎) 신(臣) 조평(趙枰)

조산 대부(朝散大夫)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김종직(金宗直)

통덕랑(通德郎)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남윤종(南潤宗)

통덕랑(通德郎) 행 형조 좌랑(行刑曹佐郎) 신(臣) 양수사(楊守泗)

통선랑(通善郎) 행 사헌부 감찰 겸 승문원 교검(行司憲府監察兼承文院校檢) 신(臣) 김중연(金仲演)

봉훈랑(奉訓郎) 행 사헌부 감찰(行司憲府監察) 신(臣) 최철관(崔哲寬)

승의랑(承議郎) 행 예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안침(安琛)

승의랑(承議郎) 행 예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채수(蔡壽)

승훈랑(承訓郎) 행 예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김윤(金崙)

통덕랑(通德郎) 행 예문관 봉교(行藝文館奉敎) 신(臣) 안처량(安處良)

선교랑(宣敎郎) 행 예문관 봉교(行藝文館奉敎) 신(臣) 유조(兪造)

승의랑(承議郎) 행 승문원 주서(行承文院注書) 신(臣) 김예원(金禮源)

봉훈랑(奉訓郎) 행 예문관 봉교 겸 경연 사경(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 신(臣) 손창(孫昌)

봉훈랑(奉訓郎) 행 예문관 봉교 겸 경연 사경 홍문관 박사(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弘文館博士) 신(臣) 양자유(楊子由)

선교랑(宣敎郎) 행 예문관 대교 겸 경연 설경 홍문관 저작(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弘文館著作) 신(臣) 김종(金悰)

선교랑(宣敎郎) 행 예문관 대교 겸 경연 설경(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 신(臣) 김미(金楣)

선교랑(宣敎郎)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

(臣) 강거효(姜居孝)

선무랑(宣務郎)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신(臣) 안진생(安晉生)

승사랑(承仕郎)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臣) 정이교(鄭以僑)

통사랑(通仕郎)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臣) 박처륜(朴處綸)

【원전】 8 집 21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예종 즉위년 《 양성지 - 예종 즉위년 .... 4 건 》

예종 001 00/09/28(갑신) / 조석전에 배례하는가의 여부를 상고하게 하다
예종 001 00/10/01(정해) / 종친과 재추에게 정흠지의 묘자리가 능침에 적당한가를 아뢰게 하다
예종 001 00/10/29(을묘) / 재추들과 대간에서 이합 부자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예종 001 00/10/30(병진) / 대간에서 이합 부자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예종 001 00/09/28(갑신) / 조석전에 배례하는가의 여부를 상고하게 하다 》

중추부 지사 한계희(韓繼禧)에게 명하여 조석전(朝夕典)에 배례(拜禮)하는가의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니, 한계희가 아뢰기를,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는 처음 조석전의 배례가 있는데, '의주(儀注)'에 배례를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조석전이 생시를 형상한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배례를 행하고자 하여 절하는 수(數)를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에게 의논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배례를 하면 마땅히 네 번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 때에 옛 제도를 참작하여 의주를 정하였는데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예문관 유신(藝文館儒臣)을 데리고 다시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278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예종 001 00/10/01(정해) / 종친과 재추에게 정흠지의 묘자리가 능침에 적당한가를 아뢰게 하다 》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강양군(江陽君) 이융(李融)·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팔계군(八溪君) 이정(李瀞)·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좌의정 박원형(朴元亨)·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산양군

(山陽君) 강순(康純)·우의정 김질(金礩)·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좌찬성 김국광(金國光)·좌참찬 유수(柳洙), 중추부 지사 김개(金漑)·한계희(韓繼禧)·어효첨(魚孝瞻)·윤사흔(尹士昕)·홍응(洪應)·구종직(丘從直)·서거정(徐居正), 공조 판서 김예몽(金禮蒙)·예조 판서 임원준(任元濬)·이조 판서 성임(成任)·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참판(參判) 정자영(鄭自英)·보덕(輔德) 최사로(崔士老)·문학(文學) 김계창(金季昌)·사경(司經) 성현(成俔)·설서(說書) 최숙정(崔淑精)과 승지(承旨)들을 불러 여차(廬次)에 들어 오게 하였다. 도승지 권감(權瑊)으로 하여금 상지관(相地官)을 하나하나 불러서 묻기를,

"너희들이 어제 본 정흠지(鄭欽之)의 묘자리에서 그 산세(山勢)의 길흉(吉凶)을 숨김없이 다 아뢰라."

하니, 안효례(安孝禮)·최호원(崔灝元)은 대답하기를,

"산세가 능침(陵寢)에 적당하나 다만 주혈(主穴)이 기울어져서 보토(補土)하여야 쓸 수 있습니다."

하고, 홀로 조수종(曹守宗)은 말하기를,

"백호(白虎) 안에 작은 언덕을 없애면 더욱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자, 모두 말하기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안효례 등은 아뢰기를,

"있어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유견(兪堅)의 무덤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서거정·임원준에게 묻기를,

"상지관의 말한 바가 경들의 뜻에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산세가 매우 기이하여서 바로 원릉(園陵)에 적합합니다. 그 국내(局內)의 작은 언덕의 길흉은, 청컨대 여러 책을 상고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또 종친과 재추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경들을 인견(引見)한 것은 품은 뜻을 진술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각각 모두 말하라."

하니, 어효첨·김예몽이 대답하기를,

"신 등도 이 산이 매우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언덕을 없애지 아니하는 것이 도리어 좋은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정인지에게 묻기를,

"경이 좋지 못하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광평 대군(廣平大君)·평원 대군(平原大君) 두 대군(大君)과 문종(文宗)의 묘자리를 살펴 볼 때에 신이 산을 보니, 청룡(靑龍) 밖에 산수(山水)가 등을 져서 흐르고 주혈(主穴)이 기울었으며 또 돌이 많기 때문에 쓸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릉은 내가 이미 정하였으니, 27일 후에 친히 가서 보겠다."

하였다.

【원전】 8 집 27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예종 001 00/10/29(을묘) / 재추들과 대간에서 이합 부자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하동군 정인지(鄭麟趾)·봉원군 정창손(鄭昌孫)·고령군 신숙주(申叔舟)·좌의정 박원형(朴元亨)·창녕군 조석문(曹錫文)·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상당군 한명회(韓明澮)·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등이 이합(李荅)과 이내(李倕)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대간(臺諫)에서 또 상소하기를,

"신 등이 합(合)의 부자를 법대로 처치하자는 일을 가지고 천총(天聰)을 두 번이나 번독하였는데, 어찰(御札)을 내리기를, '요사이의 일은 모두 간신이 한 것이고 보성군(寶城君) 등이 관여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인신(人臣)은 사사로이 사귀는 의(義)가 없으니, 사사로이 하면 반드시 죽이는 것인데, 합은 강순(康純)과 같이 총관(摠管)이 되었으므로, 만일 공적(公的)인 말이 있으면 마땅히 공청(公廳)에서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사가(私家)에 서로 왕래할 것이 아닙니다. 합(合)은 종실(宗室)의 지친(至親)이고 강순은 군사를 맡은 대장(大將)이면서 사사로이 왕복하였으니, 이것이 이미 벨 만한 것인데, 하물며 강순이 사사로운 말에 먼저 불궤(不軌)한 말을 발하여 합(合)의 뜻을 시험하였고 합도 말을 듣고 마음으로 깨우쳐서 곧 그 아들 내(倕)를 보내어 강순의 집에 왕래하였으니, 그 사귀고 통한 자취를 강순도 숨길 수 없고 합의 부자도 덮을 수 없습니다. 역적 강순이 합을 끼고 난(亂)을 선동한 정상을 남이가 밝게 말하였으니 합이 역모에 참여한

것은 심히 명백하므로, 의당 대법(大法)으로 처치하여 신민(臣民)의 분함을 쾌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다만 종친과 재추를 생각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고서 종사(宗社)의 만세(萬世)의 계책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난적(亂賊)의 머리를 천주(天誅) 밖에 두니, 신 등의 통분(痛憤)만이 아니라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옛날을 상고하건대, 대의(大義)에 관한 것은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는 대의로써 결단하고 법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하겠으며, 만세(萬世)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용서하였는데 다시 죄를 더하면 무엇으로 신의(信義)를 삼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8 집 28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예종 001 00/10/30(병진) / 대간에서 이합 부자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대간(臺諫)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이 이합(李合) 부자(父子)의 일을 가지고 혹은 상소로 혹은 말로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고, 물러가서 생각하건대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신 등은 감히 그만둘 수 없는 정성을 가지고 청(請)이 이루어지기를 기약하니, 굽어 보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은 옛 성현(聖賢)입니다. 관숙(管叔)·채숙(蔡叔)은 성왕에게는 숙부이고 주공과는 형제로서 친하고 사랑하는 정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런데도 관숙·채숙이 한 번 유언(流言)을 퍼뜨려 왕실(王室)을 동요(動搖)시키자 성왕과 주공이 사정(私情)을 두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대의(大義)는 친함이 없는 것이니, 종사(宗社) 만년의 계책을 위하여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합의 부자는 종척(宗戚)으로서 군사를 맡는 장수와 더불어 사사로이 서로 왕복하였으므로 이로써 안율(按律)하면 죄가 마땅히 베어야 하니, 법대로 처치함이 마땅한 것의 하나입니다. 적신(賊臣) 남이(南怡)가 강순(康純)의 말을 진술하기를, '합의 부자가 내 말을 듣고 우리 집에 내왕하였으니 그 마음이 있는 듯하고, 또 아들이 많으므로 끼고서 우두머리로 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 하였으므로 이는 역모에 참여함이 심히 명백하니, 법대로 처치함이 마땅한 것의 하나입니다. 이미 역당(逆黨)의 추대한 바가 되어 그 고신(告身)을 거두고 죄명(罪名)이 이미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만둘 수가 없으니, 법대로 처치함이 마땅한 것의 하나입니다. 대저 악함을 없애는

데에는 반드시 그 근본에 힘쓸 것인데 이제 당류는 죄를 받고 우두머리는 그대로 있으니, 길에 다니는 사람이 지목하기를, '저이는 역적 아무의 머리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 신민(臣民)과 더불어 한 하늘을 같이하겠습니까? 법대로 처치함이 마땅한 것의 하나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꾀하기를 하늘로부터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꾀[謀]는 여러 사람을 따르면 천심(天心)에 합한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온 나라 신민이 모두 말하기를, '베어야 마땅하다.'고 하니, 하늘의 뜻을 가히 알 것입니다. 신 등이 여러 번 번독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은 성인(聖人)에게 질문하여도 의혹이 없으며 백세(百世)를 기다려도 의심이 없는데, 전하는 어찌하여 대의(大義)로 단정하여서 왕법(王法)을 바르게 아니하십니까? 신 등은 알지는 못하나 전하께서 종척(宗戚)이라고 하여 차마 결단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로부터 난(亂)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소원(疏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하고 가까운 종척 사이에서 많이 나는데,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써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의 일을 우러러 생각하시고 신민의 통분한 정을 굽어 살피셔서 대의로써 결단하고 법으로 처치하면, 종사에 매우 다행하고 만세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명하여 대간(臺諫)들을 불러 음식을 먹이고, 임금이 말하기를,

"먼 지방에 안치함은 가하나 죄는 더할 수 없다. 내가 이미 용서하였는데 이제 만약 죄를 더하면 이는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다."

하니,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합이 비록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진실로 또한 죄가 있는데, 하물며 더불어 사귀고 통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먼젓날 어찌하여 분경(奔競)을 엄하게 금하지 아니하여 서로 사귀고 통하게 하였는가?"

하니, 양성지가 대답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전교하기를, '분경을 금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본부(本府)에 서도(胥徒)가 많지 아니하여 두루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권감(權瑊)에게 이르기를,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서도를 더 주게 하라."

하고, 또 양성지 등에게 이르기를,

"물러가서 생각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29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예종 1년 《 양성지 - 예종 1년 .... 20 건 》

예종 003 01/02/06(신묘) / 실직의 남수에 따른 폐단을 아뢴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예종 004 01/02#09(갑자) / 대사헌 양성지 등에게 도성 안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자를 엄금하게 하다
예종 004 01/02#10(을축) / 홍윤성·윤자운·김질·윤사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예종 004 01/02#24(기묘) / 선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
예종 004 01/02#24(기묘) / 구치관이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민폐를 조목별로 올린 것을 의논하게 하다
예종 005 01/04/01(갑인) / 궁온을 춘추관 실록청에 내려 주다
예종 005 01/04/24(정축) / 춘추관에서 《세조대왕실록》을 편수하면서 사초를 거두어 들이다
예종 005 01/04/25(무인) / 한명회·최항·권감·이숭원 등이 원숙강을 국문하다
예종 005 01/04/25(무인) / 공조 판서 양성지가 사국에서 피혐할 것을 청하다
예종 005 01/04/27(경진) / 한명회·최항·권감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을 국문하게 하다
예종 006 01/06/05(정사) / 《강목》과 《한기》를 내어 보이며, 책제를 내게 하다
예종 006 01/06/29(신사) /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 판서 양성지의 상소①
예종 006 01/06/29(신사) /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 판서 양성지의 상소②
예종 006 01/07/07(무자) / 동지사 양성지의 의견대로 을해년을 세조 원년으로 삼게 하다
예종 006 01/07/08(기축) / 이보다 앞서 고령군 신숙주가 군사의 고신을 속히 주도록 청하다
예종 007 01/08/21(임신) / 양성지·송처관 등에게 월랑에 모여서 종친·문신 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예종 007 01/09/18(무술) / 양성지·오응·이극돈·김영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예종 008 01/10/01(신해) / 최항·윤자운 등에게 명하여, 운수군 이효성 등 18인에게 제서를 강하게 하다
예종 008 01/10/10(경신) / 공조 판서 양성지가 상소하여 여러 가지 일을 진술하니,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다
예종 008 부록 / 《예종실록》 편수관 명단

《 예종 003 01/02/06(신묘) / 실직의 남수에 따른 폐단을 아뢴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지난번에 실직(實職)의 3계자(三階資)를 뛰어올리는 것은 미편(未便)하다는 일로써 우러러 성총(聖聰)을 번독하게 하니, 곧 교지를 내리시기를, '대신(大臣)을 믿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수한 것이다.' 하셨고, 근자에 또 공로(功勞)가 없이 모람되게 가자(加資)를 받은 일로써 우러러 천총을 번독하게 하니, 또한 교지를 내리시기를, '모두 내가 아는 바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건대, 인주(人主)가 부여받은 바의 천직(天職)을 함께 다스리는 자는 어진 인재이니, 이에 응대하여 보답하는 바로서 일세(一世) 동안 주는 것이 작록(爵祿)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마땅함을 잃게 되면, 이는 하늘의 일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옛 당우(唐虞)와 하(夏)나라·상(商)나라·주(周)나라의 시대를 상고하면, 고요(皐陶)가 우(禹)에게 고(告)하기를, '날마다 세 가지 덕(德)을 베풀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스리고 밝히어 집안을 거느리게 될 것이며, 날마다 여섯 가지 덕(德)을 엄히 공경하면, 이를 밝히어 나라를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널리 편다면, 아홉 가지 덕(德)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섬기게 되어,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이 관청에 있게 되고, 백료(百僚)가 서로 배우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관리들은 때를 맞추어 일하고 사철[五辰]을 따라 일하여, 여러 가지 일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편안함과 탐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루 이틀 사이에 만 가지 기틀[萬機]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관리들이 이를 저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늘의 일을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였고, 중훼(仲虺)가 성탕(成湯)에게 고하기를, '하늘이 백성을 내실 때 욕망을 갖게 하셨으니,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질 것이라, 하늘은 총명한 이를 내셔서 이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노래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재물과 이익을 불리지 않으셨습니다. 덕(德)이 많은 사람에게는 힘써 벼슬을 주시고, 공(功)이 많은 사람에게는 힘써 상(賞)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을 쓸 때에는 자신과 같이 대우하시고, 허물을 고치심에는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관대하고 어지셔서 만백성들이 밝게 믿도록 되었습니다.' 하였으며,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정사를 되말기며 말하기를, '지금 임금께서는 그 명(命)을 새로이 행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덕(德)을 새로이 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순일(純一)하게 하시면 날로 새로와질 것입니다. 관리를 임용하실 때에는 오직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을 쓰시며, 대신은 적당한 사람만을 쓰십시오. 그것은 어려워 신중히 하여야만 될 일이니, 덕(德)이 화합(和合)하고 순일(純一)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선왕(先王)의 일을 편히 받들 수 있게 되신다면, 영원히 백성들의 안락한 삶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부열(傅說)이 고종(高宗)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천자[后王]과 제후[君公]의 법도를 세우고, 대부(大夫)와 사장(師長)들을 임명하여, 편안히 놀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은 여러 관리들에게 달려 있으니, 벼슬을 사사로이 친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능

력에 따라 주십시오. 작위(爵位)는 악덕(惡德)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현능(賢能)에 따라 주십시오.' 하였으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한 입정(立政)에 이르기를, '예전 상(商)나라 사람들과 우리 주(周)나라 문왕(文王)께서는 정사를 세우심에 일을 맡을 사람을 곧 적당한 사람으로 임명하셨으며, 그들을 간택(揀擇)하시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사를 세우심에는 간사한 사람을 쓰지 마시고, 오직 착한 사람만을 쓰시어 힘써 우리 나라를 돕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대저 우(禹) 임금과 고요(皐陶)·중훼(仲虺)·이윤(伊尹)·부열(傅說)·주공(周公) 등은 옛 선상(善相)으로서 천하에 제일 가는 분들이고, 우(禹) 임금·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태갑(太甲)·고종(高宗)·성왕(成王) 등은 옛 선치(善治)로서 천하에 제일 가는 분들인데, 서로 권려(勸勵)하고 경계(警戒)한 것이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아! 사람을 쓰는 것을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작록(爵祿)을 어찌 헛되이 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성학(聖學)이 밝으시고 경사(經史)를 널리 보시어서, 처음에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문득 거상(居喪) 중에 있으신데도 오히려 우민(憂民)·우국(憂國)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맨 먼저 방납(防納)을 금하시는 교지(敎旨)를 내리시고, 다음에 도적(盜賊)을 다스리는 법을 세우셨으며, 정사(政事)가 혹시 간청(干請)에서 잘못될까 염려하시어, 대관(臺官)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게 하시고, 환미(換米)하는 것이 북도(北道)에서 해가 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행대(行臺)를 보내시어 이를 조사하게 하시니,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목을 빼고 눈을 씻으며 덕화(德化)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우 삼대(唐虞三代)의 지치(至治)가 오늘날의 시대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하의 초복(初服)에 달려 있으니, 힘써 행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이 당면한 오늘날의 폐단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진술하니, 원하건대 전하께서 마음에 두시고 결단(決斷)하시어 그 폐단을 고쳐 바루소서.

근자에 산릉(山陵)의 일이 끝나고, 상전(賞典)이 거행되어, 선왕(先王)을 위하여 분주히 일한 노고(勞苦)를 보답하셨는데, 해당(該當) 관사(官司)에서 주의(注擬)할 적에 인연(貧緣)으로 부회(附會)하여, 전하께서 한 사람에게 상주고자 하시면 열 사람에 연(延)하여 미치고, 동(東)에 상주고자 하시면 서(西)에까지 연하여 미치었습니다. 사목(事目)을 상고하면, 국장(國葬)의 제사(諸事)를 감역(監役)한 관원이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터인데, 빈전(殯殿)에서 잠시 진퇴(進退)한 관원이 앞서 있고, 구전(口傳)하여 일을 판비(辦備)한 낭관(郎官)은 뒤로 처져 있습니다. 당상(堂上)으로 이미 제수한 자에게는 의례(依例)히 가자(加資)할 수 없는데도, 삼도감(三都監) 제조(提調)에게 아직 상직(賞職)을 주지 않았을 때에 광주 목사(廣州牧使) 홍석(洪錫)에게 먼저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더하여 주었고, 영창전(永昌殿)의 수리(修理)는 선공감(繕工監)에서 전장(專掌)하였는데도, 호조 좌랑(戶曹佐郎) 이덕숭(李德崇)에게 먼저 가자(加資)하였고 산릉(山陵)의 여러 가지 일은 각각 맡은 바의 직장(職掌)이 있었는데도,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원효(李元孝)가 맡은 일이 없이 먼저 당상관(堂上官)에 더하여졌습니다. 그밖에 공로가 없이 가자된 자는 그 수가 또한 많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논공 행상(論功行賞)하시는 본의(本意)이겠습니까? 신 등은 통분(痛憤)하여 마지않습니다. 신 등이 그 폐단을 일으킨 까닭을 듣건대, 처음에 성명(姓名)을 맡아 기록(記錄)한 자가 제 뜻대로 이름을 기록해서, 공로가 없는 자가 상반(相半)이나 되었는데, 정원(政院)에서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여러 해당 관청에 주었으며, 해당 관청에서도 또한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수(除授)한 것이니, 대체(大體)를 잃었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친척(親戚)과 고구(故舊)로 인연해서 사사로움을 끼고 정실(情實)을 쓴 자가 간혹 있는데,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내가 아는 바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시니, 신 등의 의혹(疑惑)이 이에 심(甚)합니다. 공로가 있어 상을 받아야만 전하께서 아실 것인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외람되게 마구 미쳤으니, 어찌 전하께서 아시는 바이겠습니까? 이들 공로가 없이 외람되게 받은 상작(賞爵)을 그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직(實職)의 3계자(階資)를 뛰어올리는 것은 대현(大賢)이나 대공(大功)이면 가합니다. 이영희(李永禧)는 일개 무사(武士)인데, 훈련원(訓鍊院) 5품 판관(判官)으로서 훈련원 3품 부정(副正)을 초수(超受)하였고, 최한정(崔漢禎) 또한 문신(文臣)인데, 봉상시(奉常寺) 5품 판관(判官)으로서 예조(禮曹) 5품 정랑(正郎)을 환수(還受)하였으니, 5품으로서 5품에 천전(遷轉)된 것이고, 6년 동안의 녹(祿)이 모두 5품의 것입니다. 그러나 5품으로서 3품에 천전되면 그 녹이 어찌 배수(倍數)뿐만이겠습니까? 이들 두 사람은 그 자급(資級)을 상고하면 모두 같고, 개월(箇月)을 물으면 임기가 찼으며, 그 어질고 불초(不肖)함도 또한 그리 심하게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천관(遷官)된 고하(高下)가 이와 같은 것은, 권세가 있고 없고, 정실이 있고 없고의 여하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3계자를 뛰어올린 예(例)는 고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작(爵)이란 것은 국가에서 어진 이를 높이고 덕(德)이 있는 이를 칭양(稱揚)하는 것이므로 포백(布帛)이나 숙속(菽粟) 따위와 같지 아니하니, 비록 부자(父子)·형제(兄弟)의 지친(至親)이라 하더라도 미루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父子)·형제(兄弟)·숙질(叔姪)·생구(甥舅)와 모든 친척들이 가자(加資)를 대신 받는 예(例)가 있어서,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작명(爵命)을 받으니, 심히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이 있는 이를 칭양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 부자지간(父子之間)은 그만두더라도, 가령 형(兄)인 갑(甲)이 아우 을(乙)과 병(丙)이 있는데, 병은 저를 받들기를 후하게 하고, 저에게 물건을 주기를 많이 하는데, 을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갑은 반드시 을을 버리고 병에게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숙질(叔姪)이나 친척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며, 심한 자는 진계(陳啓)까지 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고, 더욱 심한 자는 5촌을 4촌이라 하여 몰래 대신 받게 하니, 어찌 정(情)이 없고서야 그러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공기(公器)를 사문(私門)의 판매(販賣)의 재물(財物)로 삼는 것이니, 어찌

력에 따라 주십시오. 작위(爵位)는 악덕(惡德)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현능(賢能)에 따라 주십시오.' 하였으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한 입정(立政)에 이르기를, '예전 상(商)나라 사람들과 우리 주(周)나라 문왕(文王)께서는 정사를 세우심에 일을 맡을 사람을 곧 적당한 사람으로 임명하셨으며, 그들을 간택(揀擇)하시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사를 세우심에는 간사한 사람을 쓰지 마시고, 오직 착한 사람만을 쓰시어 힘써 우리 나라를 돕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대저 우(禹) 임금과 고요(皐陶)·중훼(仲虺)·이윤(伊尹)·부열(傅說)·주공(周公) 등은 옛 선상(善相)으로서 천하에 제일 가는 분들이고, 우(禹) 임금·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태갑(太甲)·고종(高宗)·성왕(成王) 등은 옛 선치(善治)로서 천하에 제일 가는 분들인데, 서로 권려(勸勵)하고 경계(警戒)한 것이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아! 사람을 쓰는 것을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작록(爵祿)을 어찌 헛되이 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성학(聖學)이 밝으시고 경사(經史)를 널리 보시어서, 처음에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문득 거상(居喪) 중에 있으신데도 오히려 우민(憂民)·우국(憂國)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맨 먼저 방납(防納)을 금하시는 교지(敎旨)를 내리시고, 다음에 도적(盜賊)을 다스리는 법을 세우셨으며, 정사(政事)가 혹시 간청(干請)에서 잘못될까 염려하시어, 대관(臺官)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게 하시고, 환미(換米)하는 것이 북도(北道)에서 해가 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행대(行臺)를 보내시어 이를 조사하게 하시니,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목을 빼고 눈을 씻으며 덕화(德化)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우 삼대(唐虞三代)의 지치(至治)가 오늘날의 시대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하의 초복(初服)에 달려 있으니, 힘써 행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이 당면한 오늘날의 폐단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진술하니, 원하건대 전하께서 마음에 두시고 결단(決斷)하시어 그 폐단을 고쳐 바루소서.

근자에 산릉(山陵)의 일이 끝나고, 상전(賞典)이 거행되어, 선왕(先王)을 위하여 분주히 일한 노고(勞苦)를 보답하셨는데, 해당(該當) 관사(官司)에서 주의(注擬)할 적에 인연(姻緣)으로 부회(附會)하여, 전하께서 한 사람에게 상주고자 하시면 열 사람에 연(延)하여 미치고, 동(東)에 상주고자 하시면 서(西)에까지 연하여 미치었습니다. 사목(事目)을 상고하면, 국장(國葬)의 제사(諸事)를 감역(監役)한 관원이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터인데, 빈전(殯殿)에서 잠시 진퇴(進退)한 관원이 앞서 있고, 구전(口傳)하여 일을 판비(辦備)한 낭관(郎官)은 뒤로 처져 있습니다. 당상(堂上)으로 이미 제수한 자에게는 의례(依例)히 가자(加資)할 수 없는데도, 삼도감(三都監) 제조(提調)에게 아직 상직(賞職)을 주지 않았을 때에 광주 목사(廣州牧使) 홍석(洪錫)에게 먼저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더하여 주었고, 영창전(永昌殿)의 수리(修理)는 선공감(繕工監)에서 전장(專掌)하였는데도, 호조 좌랑(戶曹佐郎) 이덕숭(李德崇)에게 먼저 가자(加資)하였고 산릉(山陵)의 여러 가지 일은 각각 맡은 바의 직장(職掌)이 있었는데도,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원효(李元孝)가 맡은 일이 없이 먼저 당상관(堂上官)에 더하여졌습니다. 그밖에 공로가 없이 가자된 자는 그 수가 또한 많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논공 행상(論功行賞)하시는 본의(本意)이겠습니까? 신 등은 통분(痛憤)하여 마지않습니다. 신 등이 그 폐단을 일으킨 까닭을 듣건대, 처음에 성명(姓名)을 맡아 기록(記錄)한 자가 제 뜻대로 이름을 기록해서, 공로가 없는 자가 상반(相半)이나 되었는데, 정원(政院)에서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여러 해당 관청에 주었으며, 해당 관청에서도 또한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수(除授)한 것이니, 대체(大體)를 잃었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친척(親戚)과 고구(故舊)로 인연해서 사사로움을 끼고 정실(情實)을 쓴 자가 간혹 있는데,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내가 아는 바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시니, 신 등의 의혹(疑惑)이 이에 심(甚)합니다. 공로가 있어 상을 받아야만 전하께서 아실 것인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외람되게 마구 미쳤으니, 어찌 전하께서 아시는 바이겠습니까? 이들 공로가 없이 외람되게 받은 상작(賞爵)을 그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직(實職)의 3계자(階資)를 뛰어올리는 것은 대현(大賢)이나 대공(大功)이면 가합니다. 이영희(李永禧)는 일개 무사(武士)인데, 훈련원(訓鍊院) 5품 판관(判官)으로서 훈련원 3품 부정(副正)을 초수(超受)하였고, 최한정(崔漢禎) 또한 문신(文臣)인데, 봉상시(奉常寺) 5품 판관(判官)으로서 예조(禮曹) 5품 정랑(正郎)을 환수(還受)하였으니, 5품으로서 5품에 천전(遷轉)된 것이고, 6년 동안의 녹(祿)이 모두 5품의 것입니다. 그러나 5품으로서 3품에 천전되면 그 녹이 어찌 배수(倍數)뿐만이겠습니까? 이들 두 사람은 그 자급(資級)을 상고하면 모두 같고, 개월(箇月)을 물으면 임기가 찼으며, 그 어질고 불초(不肖)함도 또한 그리 심하게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천관(遷官)된 고하(高下)가 이와 같은 것은, 권세가 있고 없고, 정실이 있고 없고의 여하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3계자를 뛰어올린 예(例)는 고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작(爵)이란 것은 국가에서 어진 이를 높이고 덕(德)이 있는 이를 칭양(稱揚)하는 것이므로 포백(布帛)이나 숙속(菽粟) 따위와 같지 아니하니, 비록 부자(父子)·형제(兄弟)의 지친(至親)이라 하더라도 미루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父子)·형제(兄弟)·숙질(叔姪)·생구(甥舅)와 모든 친척들이 가자(加資)를 대신 받는 예(例)가 있어서,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작명(爵命)을 받으니, 심히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이 있는 이를 칭양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 부자지간(父子之間)은 그만두더라도, 가령 형(兄)인 갑(甲)이 아우 을(乙)과 병(丙)이 있는데, 병은 저를 받들기를 후하게 하고, 저에게 물건을 주기를 많이 하는데, 을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갑은 반드시 을을 버리고 병에게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숙질(叔姪)이나 친척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며, 심한 자는 진계(陳啓)까지 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고, 더욱 심한 자는 5촌을 4촌이라 하여 몰래 대신 받게 하니, 어찌 정(情)이 없고서야 그러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공기(公器)를 사문(私門)의 판매(販賣)의 재물(財物)로 삼는 것이니, 어찌

심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른바 자궁자(資窮者)라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급(資級)의 순서를 따르거나 역일 적공(歷日積功)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빌고 저기서 구하여, 수년(數年)이 못되어 갑자기 얻은 자들로서, 시세(時勢)의 조류에 따라 모두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장사랑(將仕郞)으로부터 통훈 대부(通訓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경영(經營)해서 얻고, 이미 얻은 연후에는 갖은 방법으로 규구(規求)하고 도모(圖謀)하여 당상관(堂上官)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백계 천방(百計千方)으로 반드시 얻고 난 뒤에야 그만둡니다. 그러므로 이 대신 가하는 법은 불가불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금(金)과 옥(玉)이 귀(貴)하고 기와와 자갈이 천한 것은, 금과 옥이 곳곳에 항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금과 옥이> 곳곳에 있다면 기와와 자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관작(官爵)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당상관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당상(堂上)으로 가볍게 제수하지 아니하여 당하(堂下)에서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마다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당상관은 예(例)에 의하여 제수하지 않았었는데, 서쪽 변경과 동북(東北) 변경을 정토(征討)하고 나서 그 제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시석 지하(矢石之下)에서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이나 불초(不肖)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오직 공(功)에 의거하여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國葬) 삼도감(三都監)의 낭관(郞官)들로서 자궁자(資窮者)에게 당상관을 승수(陞授)한 것이 비록 덕(德)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반드시 준직자(准職者)인 연후에 제수하였으니, 이는 대개 가볍게 제수하지 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경(寫經)한 무리들의 그 공(功)이 어찌 국장(國葬) 낭관(郞官)의 위에 나가겠습니까? 안혜(安惠)와 이숙생(李淑生)은 준직자(准職者)도 아니요, 조지(趙祉)는 서자(書字)한 자도 아니며, 문수덕(文修德)은 준직(准職)도 아니고 서자(書字)한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안훈(安訓)인즉 또한 별다른 어떤 노고(勞苦)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들이 모두 당상관을 얻었으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옹원(司饔院)과 간경 도감(刊經都監) 관리들이 혹은 가자(加資)되거나, 혹은 승직(陞職)되었고, 사옹정(司饔正) 이영(李聆)도 또한 당상관을 얻었으니, 이와 같은 무리들이 어찌 반드시 여러 당상(堂上)을 가한 뒤에 된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명기(名器)가 점점 가벼워지고, 조정(朝廷)이 따라서 낮아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 시임(時任) 당상(堂上)이 3백 89명으로 조정(朝廷)의 위에 대략 당상관이 그 반을 차지하니, 후세에 승헌(乘軒)을 함부로 마구 주었다는 기롱(譏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이 없는 당상관은 태거(汰去)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릉 도감(遷陵都監) 낭관(郞官)의 수가 20명에 자궁자(資窮者)가 17명이고, 명나라 사신관(使臣館)의 낭관이 11명에 자궁자가 8명인데, 그 사이에 재상(宰相)의 자질(子姪)로서 나이가 연소(年少)하여 일에 경험이 없는 자가 서로 참여하였으니, 그러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대개 이 앞서 두 곳의 낭관(郎官)의 자궁자가 모두 당상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대저 명나라 사신관의 낭관 중에 자궁자에게 상직(賞職)을 준 것은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일시의 특은(特恩)이고, 삼도감(三都監)의 낭관 중의 자궁자에게 상직을 준 것도 또한 근자의 일시의 일이니, 어찌 후일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있을 것의 여부(與否)를 알겠습니까? 사대부(士大夫)의 마음이 이와 같이 서로 다급하고, 염치(廉恥)의 풍속이 퇴패(頹敗)되었으므로 장차 구제할 수 없는 데에 이르를 것이니, 이것이 가히 통탄할 일입니다. 또 명나라 사신관의 낭관에게 상직을 주는 것은 잠시 행하는 것이 가하고, 상시로 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한 번은 가하나 두 번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순(因循)하여 예(例)를 이루게 된다면, 후세에 통하지 않음이 없고, 중국(中國)의 사신(使臣)이 <중국> 조정을 받드는 은명(恩命)을 요구하여, 우리 조정의 사풍(士風)의 경중(輕重)을 중국인(中國人)에게 팔게 될 것이니, 그 조짐을 어찌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유의 폐해(弊害)는 막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백관(百官)이 다스리는 바는 하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서관(庶官)이 그 일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자에 배지눌(裵止訥)이 이천 부사(利川府使)에 제수되었으나, 그 나이가 70에 차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진천 현감(鎭川縣監)으로 있을 때에 죄를 범하여, 이를 파출(罷黜)시켜 고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한(崔漢)은 부안 현감(扶安縣監)에 제수되었으나, 예빈 직장(禮賓直長)으로 있을 때에 선상 노자(選上奴子)의 가포(價布)를 받아서 사사로이 제첩(妾)에게 주었으니, 그 당자가 장오(贓汚)의 죄를 범하여 수령(守令)으로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이를 고쳐 임명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다시 기용하여 배지눌을 한성 판관(漢城判官)에 제수하고, 최한을 사재 주부(司宰注簿)로 제수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전하께서 부득이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은 예로부터 있는 것이나, 일을 맡기게 되면 반드시 폐해가 있습니다. 한성부(漢城府)는 곧 송사(訟事)를 판결하는 곳이므로, 나이가 연로(年老)한 자는 감당할 수 없으며, 사재감(司宰監)은 어염(魚鹽)을 맡는 관청이니, 탐오(貪汚)한 자는 있을 곳이 못됩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군직(軍職)으로 고쳐 제수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한다면 족할 것이니, 이것이 벼슬을 임명하는 데에 그 재질에 맞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정사(政事)는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관(官)을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어 각기 주관(主管)하는 바가 있었으니, 비록 관문을 지키고 야경을 도는 비천한 구실[拘關擊柝]이라 하더라도 <그 인사(人事)에>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경외(京外)의 차임(差任)이 한결같이 구전(口傳)이거나 혹은 정원(政院)에서 마감(磨勘)하여 직접 아뢰고, 혹은 제조(提調)가 천망(薦望)하여 구전(口傳)하며, 해당(該當) 관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니, 이는 설관 분직(設官分職)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조관(朝官)의 진퇴(進退)는 해당 관청에 책임을 지워 맡겨서, 사람들

로 하여금 스스로 천망(薦望)할 수 없게 하여 설관 분직의 본 뜻을 바로잡으소서. 이것은 정병(政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면, 제조(提調)가 그 요좌(僚佐)의 공(功)과 재능을 칭찬하며 친거해서 논상(論賞)하는 것은 사당(私黨)을 이루려는 조짐이며, 자제(子弟)나 친척(親戚)을 추거(推擧)하여 전례(前例)에 의해 논상하는 곳에 두는 것은 인신(人臣)으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조짐이며, 무명(無名)의 사람을 써서 현질(顯秩)을 초수(超授)하는 것은 분경(奔競)을 이르게 하는 것이니, 능히 사람을 쓰는 것의 잘못과 정사(政事)를 행하는 것의 그릇됨을 바룰 수 있다면, 분경(奔競)을 금하고, 대관(臺官)이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날마다 분경을 금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정사의 잘못도 바루지 못하면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역경(易經)》의 태괘 구이(泰卦九二)를 상고하니, 임금은 <백성을> 태평하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공(周公)은 계사(繫辭)에 치태(治泰)의 도(道)를 논하여 말하기를, '오랑캐를 포용하여 맨몸으로 황하를 걸어서 건너간다. 먼데 남아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며, 친구를 잃으면 중용(中庸)의 덕행을 숭상함으로 그를 얻는다.' 하였는데, 정자(程子)는 이를 풀이하기를, '태평하고 편안한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이 안일(安逸)하고 방사(放肆)해서, 법도(法度)가 폐하여지고 해이해져서 만약에 크게 포용하는 도량(度量)이 없고 분질지심(忿疾之心)이 있을 것 같으면, 큰 폐단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근심이 생기게 되므로, 「포황(包荒)」이라 하였고, 사람의 마음이 오랫동안 편안한데 습관이 되어서 변경(變更)하기를 꺼려하여, 맨몸으로 황하를 걸어서 건너는 용기가 없으면, 정특(挺特)하게 분발(奮發)하여 그 폐단을 고칠 수 없으므로, 「용빙하(用馮河)」라 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이 태평한 데 습관이 되면 다만 안일하여질 따름이니, 어찌 심사 원려(深思遠慮)하여 멀고 먼 일에 미치겠는가? 일이 은미(隱微)하고 어진 인재가 먼 곳에 있는 것을 시대가 태평하면 잊어버리게 되므로, 「불하유(不遐遺)」라 하였으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일을 제한하여 인정(人情)에 끌리게 되어 마침내 행할 수 없는 것이 많으니, 만약에 사치(奢侈)를 금하면 가까운 친척에게 해가 되고, 전산(田産)을 제한하면 귀가(貴家)에게 막히게 되어, 대의(大義)로써 결단(決斷)하여 반드시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붕비(朋比)에게 끌리게 되므로, 「붕망(朋亡)」이라 하였으며, 무릇 태평하게 다스리고 <위의> 네 가지 일을 행할 수 있은 연후에야 능히 중도(中道)에 합하는 것이므로, 「득상우중행(得尙于中行)」이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고 다시 환수[回換]하는 것'은 모두 귀근(貴近)들이 하고자 하는 바인데, 전하께서 능히 결단하시고 이 일을 진계(陳啓)하는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교지(敎旨)까지 내리시기에 이르셨으니, 가위(可謂) '붕망(朋亡)하여 중행(中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작상(爵賞)의 남수(濫授)에 대하여는 이를 고쳐 바로잡기를 중(重)하게 여기시

니, 신 등이 떠들썩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천명(天命)을 새로 받으시고 정사(政事)를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옛일을 인순(因循)하여 구차(苟且)하게 하셔서 큰 폐단을 이루어서는 아니됩니다. 신 등의 말한 바가 만약 옳지 못하면 즉시 죄를 가하시고, 만약에 옳을 것 같으면 이를 시행하셔서, 어진 이를 올리시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며, 신상 필벌(信賞必罰)하시어 조정(朝廷)을 바로잡으셔서 백관(百官)을 바르게 하시고, 백관(百官)을 바르게 하시어 만민(萬民)을 바루시면, 만세(萬世)에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천재 휴기(千載休期)의 때가 다시 만나기 어려우므로, 감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만분의 일이나마 돕고자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소(疏) 가운데의 말이 시폐(時弊)에 심히 간절하니, 내가 마땅히 짐작(斟酌)하여 시행하겠다."

하고, 이어서 명하여 후히 음식을 대접하여 먹이게 하였으니, 임금은 언관(言官)이 계사(啓事)하는 것에 대하여 매양 존례(尊禮)를 가하였다. 소(疏) 가운데의 말이 자못 정원(政院)을 침범(侵犯)하였기 때문에, 도승지 권감(權瑊)이 그렇지 아니한 것을 밝히고, 인하여 피혐(避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32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예종 004 01/02#09(갑자) / 대사헌 양성지 등에게 도성 안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자를 엄금하게 하다 》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등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이제 국휼(國恤) 중에 있는데, 도성 안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자가 더러 있으니, 어찌하여 금지하지 아니하는가? 하물며 명나라 사신이 온 때를 당하여 더욱 엄하게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였다.

【원전】 8 집 338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예종 004 01/02#10(을축) / 홍윤성 · 윤자운 · 김질 · 윤사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홍윤성(洪允成)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우의정으로, 김질(金礩)을 상락군(上洛君)으로, 윤사분(尹士昐)을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홍응(洪應)을 이조 판서로, 김예몽(金禮蒙)·성임(成任)을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양성지(梁誠之)**를 공조 판서로, 민발(閔發)을 여산군(驪山君)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수 대사헌(守大司憲)으로, 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을 이조 참판으로, 김양경(金良璥)을 수 충청도 관찰사(守忠淸道觀察使)로, 전동생(田同生)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다.

【원전】 8 집 33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예종 004 01/02#24(기묘) / 선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 》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이변(李邊)·우찬성 한계미(韓繼美)·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호조 참판 정난종(鄭蘭宗)·예조 참판 이승소(李承召)·형조 참판 윤잠(尹岑)·대사헌 송문림(宋文琳)·이조 참의 이영은(李永垠)·대사간 강자평(姜子平)과 승지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승지들의 계사(啓辭)를 임금이 좌우의 종친과 재추들을 돌아보며 물으니, 모두 한 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양성지(梁誠之)**가 겨우 한 가지 일을 대답하고는 조회를 파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를 보는 데에서 승지가 계달한 일을 여러 종친과 재추에게 물었는데,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도리어 부끄럽다. 이제부터는 원상(院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입시하여 고문(顧問)에 응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343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종 004 01/02#24(기묘) / 구치관이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민폐를 조목별로 올린 것을 의논하게 하다 》

이 먼저 능성군 구치관(具致寬)이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민폐(民弊)를 조목(條目)별로 올렸는데,

임금이 원상(院相)·의정부·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으로 하여금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었다.

제1조는, '이 먼저는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겨울철 방수(防戍)를 한 달씩 바꾸었는데 지금은 넉 달씩 서로 바꾸게 하니, 예전대로 겨울에는 한두 달씩 서로 바꾸고 여름에는 방수에 나가지 말고 농사를 짓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영성군 최항(崔恒)·인산군 홍윤성(洪允成)·창녕군 조석문(曹錫文)·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예조 판서 임원준(任元濬)·병조 판서 박중선(朴仲善)·이조 판서 홍응(洪應)·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병조 참판 신승선(愼承善)·호조 참판 정난종(鄭蘭宗)·공조 참판 성윤문(成允文)·예조 참판 이승소(李承召)·형조 참판 윤잠(尹岑) 등이 의논하기를,

"두 달씩 서로 바꾸게 하여 얼음이 얼 때에 방수(防戍)에 나가게 하소서."

하였다.

제2조는, '군사의 조정(助丁)은 솔거 노비(率居奴婢)·고인(雇人) 및 전토(田土)를 아울러 계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제3조는, '요동(遼東)의 영송군(迎送軍)과 호송군(護送軍)이 통사(通事)의 사사로이 가진 무역 잡물(貿易雜物)을 아울러 운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근래에 검찰(檢察)이 해이하니, 청컨대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히게 하소서."

하였다.

제4조는, '이제 상정(詳定)한 세공 군기(歲貢軍器)를 모두 민간에서 거두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조석문·노사신·박중선·정난종 등이 의논하기를,

"병기(兵器)는 본래부터 방물 진상(方物進上)이 있고, 또 군기시(軍器寺)에서 연례(年例)로 만드는 것이 있어서 쌓인 것이 오래고 많으며, 또 흉년이 들고 요역(徭役)도 많은데 본읍(本邑)의 월과(月課) 및 상납(上納)할 군기 만드는 물건을 일체 백성에게서 거두므로 날마다 더욱 조폐(凋弊)하니, 본도(本道)는 2년을 기한하여 우선 정지하고 다른 도에도 5분의 1을 감하소서."

하였다.

제5조는, '말이 없는 군사에게 도마(島馬)를 나누어 주는데, 만약 말이 늙어서 죽는 것은 준징(准徵)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일이었다.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이 먼저 자원하여 관마(官馬)를 받은 자가 그 말이 늙거나 죽으면 모두 그 값에 따라 바꾸어 충용(充用)하게 하였는데, 공사(公私)에서 모두 편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제6조는, '삼도 절도사(三道節度使)를 다시 한 도(道)로 합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조석문·노사신 등이 의논하기를,

"서도 절도사(西道節度使)는 의주 목사(義州牧使)를 겸하고, 동도 절도사(東道節度使)는 영변 부사(寧邊府使)를 겸하게 하소서."

하였다.

제7조는, '부방 군사(赴防軍士)는 두 차례 정벌(征伐)에 종사하였는데, 가자(加資)와 당번(當番)으로 서용(敍用)할 때에 고신(告身)을 모두 받지 못하였으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속히 주게 하소서."

하였다.

제8조는, '갑사(甲士)들은 비록 당번일지라도 모름지기 체아직(遞兒職)을 받아야 녹(祿)을 주도록 허락하였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당번이 되면 모두 다 녹을 주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녹수(祿數)를 상고하게 하고, 양계(兩界)는 예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제9조는, '예차 갑사(預差甲士) 등은 비록 군공(軍功)이 있거나 혹은 사만(仕滿)이 되었을지라도 실제 갑사(甲士)의 벼슬을 받지 못하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속히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제10조는, '도내(道內)의 인민이 양식을 싸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종사(從仕)하기가 어려우니, 곡식을 소재지의 고을 창고에 바치게 하여 서울에서 바꾸어 받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회환(回換)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길 것이니, 허락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제11조는, '이제 평양(平壤)·영변(寧邊)·의주(義州)·강계(江界) 등의 고을에서는 지인(知印)·주사(主事)·육방(六房)·대부(隊副)·대장(隊長) 등의 거관 체아직(去官遞兒職)을 혁파(革罷)하여 전공(前功)을 헛되게 버리게 되었으므로 진실로 가여우니, 청컨대 예전대로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관(散官) 벼슬을 제수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예전의 수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제12조는, '관군(館軍) 등이 대소 사객(大小使客)을 맞이하고 보낼 때에 사람과 말의 음식물과 사료를 여러 고을에서 이바지하지 아니하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구례(舊例)에 따라 사람과 말의 음식물과 사료를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제13조는, '참마(站馬)의 분전(分田)은, 전에는 상등(上等)은 전지(田地) 9결(結)을 주고, 중등(中等)은 7결, 하등(下等)은 5결을 주었었는데, 지금은 상등은 7결, 중등은 5결 50부(負), 하등은 4결로 하였으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이미 법을 세웠으니, 고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제14조는, '이 먼저 합배(合排)에 왕래하는 사객(使客)의 초료(草料)와 죽반(粥飯)은 군자(軍資)를 써서 지공(支供)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공수전(公須田)을 두었으나 아직 절급(折給)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 군호(軍戶)에서 거두어 지공하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합배는 다른 역(驛)의 예(例)와 같지 아니하니, 예전대로 군자(軍資)를 써서 지공하소서."

하였다.

제15조는,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을 고르지 못하게 나누어 정하였으니, 각각 생산하는 바를 옮겨서 정할 것.'이라는 일이었고, 제16조는, '강변의 여러 고을은 노루와 사슴이 드물고 적은데, 내지(內地)의 예(例)로써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부득이 강을 건너서 사냥해 잡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번성할 때까지 노루와 사슴의 공물을 정하지 말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상정소로 하여금 다시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제17조는, '여러 고을에서 농삿달을 논하지 말고 진법(陣法)을 연습하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백성의 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한하여 다른 도(道)와 같이 농삿달에는 진법을 익히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어서(御書)로 모두 이르기를,

"좋다."

하고, 즉시 해사(該司)에 내려서 시행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344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예종 005 01/04/01(갑인) / 궁온을 춘추관 실록청에 내려 주다 》

궁온(宮醞)을 춘추관(春秋館) 실록청(實錄廳)에 내려 주었다. 이 앞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 등이 왕명을 받들어 **양성지(梁誠之)**·이승소(李承召)·김수령(金壽寧)·정난종(鄭蘭宗)·이영근(李永根)·이극돈(李克墩)·예승석(芮承錫)·조안정(趙安貞)·조익정(趙益貞) 등과 더불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찬술(撰述)하였는데, 뒤에 또 강희맹(姜希孟)을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8 집 35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예종 005 01/04/24(정축) / 춘추관에서 《세조대왕실록》을 편수하면서 사초를 거두어들이다 》

이때에 춘추관(春秋館)에서 《세조대왕실록(世祖大王實錄)》을 편수하면서 사초(史草)를 거두어 들였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만약 사초(史草)에 이름을 쓴다면, 반드시 직필(直筆)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혹자가 말하기를,

"사초에는 예로부터 이름을 썼으니, 지금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이름을 쓰게 하였다.

봉상 첨정(奉常僉正) 민수(閔粹)는 사초에 대신(大臣)의 득실(得失)을 많이 썼는데, 민수가 이름을 쓴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스스로 두렵고 꺼려하여, 기사관(記事官) 강치성(康致誠)을 시켜 그 사초를 몰래 내다가 지우고 고치었다. 기사관 최철관(崔哲寬)이 민수가 지사(知事) **양성지(梁誠之)**의 일을 고쳐 쓰는 것을 보고, 기사관 양수사(梁守泗)에게 말하기를,

"일이 만약 누설되면 우리들은 죄를 피할 수가 없다."

하니, 양수사가 드디어 수찬관(修撰官) 이영은(李永垠)에게 밀고(密告)하자, 이영은이 크게 놀라 마침내 여러 동료들과 상고해 보니 지우고 고친 것이 무릇 여섯 가지 일이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동지사(同知事) 정난종(鄭蘭宗)·김수령(金壽寧), 수찬관(修撰官) 예승석(芮承錫)·조안

정(趙安貞) 및 이영은 등이 최절관의 공사(供辭)를 수취(收取)하고, 민수가 고친 곳을 모두 적어서 아뢰기를,

"국사(國史)는 만세(萬世)의 공론(公論)입니다. 민수가 사초를 몰래 내다가 고쳤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곧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민수를 잡아 오게 하였다. 한명회가 또 아뢰기를,

"민수(閔粹)가 처음에, '신(臣)이 강효문(康孝門)과 더불어 불궤(不軌)를 도모했다.'고 썼다가 지웠는데, 지금 사초에 미납(未納)된 것이 많아 신은 뒤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춘추관(春秋館)에 근무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당시 세조(世祖)의 전지(傳旨)는 매우 자상하여 내가 일기(日記)에 써 두었으니, 경(卿)은 의심치 말라."

하였다.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한명회 등과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숭원(李崇元) 등을 불러,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존명(李存命) 및 주서(注書)로 하여금 민수의 집에 가서 수색하게 하였는데, 종이를 태운 재가 있어 이존명이 아뢰므로, 민수를 궁정(宮庭)으로 잡아 오게 하여 임금이 묻기를,

"너의 사초를 고치고 삭제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너는 어떤 사람을 시켜 빼냈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臣)이 강치성(康致誠)에게 청하여 빼냈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강치성(康致誠)은 부모의 병(病) 때문에 죽산현(竹山縣)에 가 있었는데, 곧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 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민수에게 묻기를,

"네가 고치고 삭제한 것은 어떠한 일이냐?"

하니, 민수가 하나하나 진술하고 또 말하기를,

"이들 사항(事項)은 그 때에 마침 신이 출사(出使)했다가 듣고서 썼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사(史)라는 것은 만세(萬世)에 전해지는 글인데, 전해 들은 일을 망령되이 기록함은 옳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치고 지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전해 들은 일을 썼느냐? 인군(人君)의 일도 또한 마땅히 전해 듣고 쓸 것이냐?"

하니, 민수가 고두(叩頭)하며 사죄하기를,

"신(臣)은 본래 다른 마음이 없어 범인(凡人)에 관하여서도 일찍이 간언(間言)한 일이 없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에 관한 일이겠습니까? 다만 사초를 바칠 기한이 핍박(逼迫)하여 미처 수정(修正)하고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네가 고치고 지운 데는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모두 다 말하여라."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지금 춘추관(春秋館)에 근무하고 있어, 신이 두려워서 고치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민수(閔粹)를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임금이 내전(內殿)으로 들어가 한명회 등으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였더니, 민수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옥사(獄事)를 다스리다가 모두 좌천되었다. 처음에 부상(富商) 수인(數人)이 있어 재화(財貨)를 다투다가 송사가 일어나자 헌부(憲府)로 하여금 안치(按治)하게 하고, 임금이 친히 송상(訟狀)을 물으니, 집의(執義) 이숭원(李崇元) 등이 대답을 잘못하였으므로, 즉시 하옥(下獄)시켰다가 잠시 후 용서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는 홀로 구용(苟容)하여 그 일에 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재직(在職)하였다. [司憲府員 以治獄 皆左遷 初有當商數人 爭貨發訟 下憲府按治 上親問訟狀 執義李崇元等 失對卽下獄 尋放之 大司憲梁誠之 獨以苟容不與其事 仍在職]'라고 썼는데, 뒤에 '구용(苟容)' 2자를 삭제하였고, 또 처음에는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이 부상(父喪) 중 기복(起復)되어 함길도 절제사가 되었다. 그 때 일찍이 한 집에 이르러 잠을 자니, 그 가인(家人)이 우리 처녀를 간통했다고 고소(告訴)하므로, 홍윤성을 하옥하여 추핵하였는데, 그 가인은 무소(誣訴)로 좌죄(坐罪)되었으며, 마침내는 홍윤성이 데리고 사는 바 되었다. [仁山君洪允成 居父喪起復 爲咸吉道節制使 其時嘗至一家宿 其家人奸我處女 發訴下允成獄推之 其家人坐誣訴 竟爲允成所畜]'라고 썼는데, 뒤에 '거(居)' 자로부터 '시(時)' 자까지를 삭거(削去)하고, 여기에다가 '승취(乘醉)' 2자(字)를 첨서(添書)하였으며, '좌(坐)' 자부터 '축(畜)' 자까지를 삭거하였고, 또 처음에는 '윤사흔(尹士昕)이 술 기운을 부려 취하면 문득 용렬한 언사로 남을 욕되게 하였다. [尹士昕 使酒 醉則輒以庸言辱人]'라고 썼는데, 뒤에 '사(使)' 자를 제거하고, '기(嗜)' 자를 고쳐 써넣었으며, 또 처음에는, '전첨(典籤) 신정(申瀞)이 초천(超遷)되어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이 되었는데, 이때에 신정의 형 신면(申沔)은 도승지(都承旨)로서 전형(銓衡)에 관한 일을 상주(上奏)하였으며, 안상계(安桑鷄)를 전첨으로 삼았다. [典籤申瀞 超遷爲藝文直提學 時瀞兄沔爲都承旨 掌奏銓衡 以安桑鷄爲典籤]'라고 썼는데, 뒤에 '시(時)' 자부터 '첨(籤)' 자까지를 삭거(削去)하였습니다. 또 처음에는, '김국광(金國光)은 성품이

절개가 없어 소절(小節)에 구애받지 아니하였고, 탐명(貪名)이 많았다. [金國光性無介不拘小節貪名多]'라고 썼는데, 뒤에 '무(無)' 자부터 '다(多)'자 까지를 삭거하고, '통편(通徧)하여 설설(屑屑)한 것을 가지고 어짐을 삼지 않았고, 오래도록 권좌에 있어 비방이 많았다. [通徧 不以屑屑爲賢 久權多謗]'라고 고쳐 썼으며, 또 처음에는, '이때에 이시애(李施愛)가 거짓으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가 강효문(康孝文)과 더불어 불궤(不軌)를 함께 도모하였다고 하였다. [時李施愛詐 以申叔舟韓明澮 與康孝文 同謀不軌]'라고 썼는데, 뒤에 '불궤(不軌)' 2자를 지우고 '위난(爲難)' 2자로 고쳐 썼습니다."

하였다. 한명회 등이 이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민수(閔粹)의 사초(史草)는 단지 지우고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태운 흔적도 있으니, 그것을 모두 물어 보아라."

하였는데, 민수가 말하기를,

"사초는 경준(慶俊)·박앙(朴良)·이인석(李仁錫)·최연(崔堧)·이경동(李瓊仝)에게 빌려서 필삭(筆削)하여 책을 만들어서 춘추관(春秋館)에 납부하고, 그 초고는 즉시 불태웠습니다."

하므로, 한명회 등이 이로써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언(正言) 원숙강(元叔康)이 전날에, '사초에 사신(史臣)의 이름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반드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니, 청컨대 묻게 하소서."

하여, 원숙강을 불러 물으니, 원숙강이 굳이 숨기므로, 민수는 서소(西所)에 가두게 하고 원숙강은 북소(北所)에 가두게 하였으며, 편수관(編修官) 성숙(成俶) 및 최철관(崔哲寬)·양수사(梁守泗) 등은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민수가 처음 이일을 듣고 춘추관에 도착하니, 혹자가 민수에게 일러 말하기를,

"무릇 사초 가운데 고치고 지운 곳이 있으면 모두 도장[印]을 찍었으니, 너의 사초에도 인적(印迹)이 명백하지만, 어찌 이것을 가지고 추개(追改)함을 알겠느냐?"

하니, 민수가 그 뜻을 알고 서서 응답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가 납부한 사초는 누구도 고치고 지운 것이 없는데, 홀로 나의 사초만 추개하였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는 이런 일이 없으니, 누가 이처럼 무망(誣罔)한 일을 꾸몄는가?"

하였다. 민수의 말은 비록 쾌(快)하였으나, 두려운 기색이었다. 사관(史官)들이 모두 이르기를,

"민수의 말이 이와 같은즉 최철관과 양수사가 변명하기에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반드시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잡아들이게 됨에 미쳐 민수는 매우 급해졌고, 임금이 또 친히 국문(鞫問)하자 민수는 경황(警惶)하여 감히 사정(事情)을 회피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매우 곧기 때문에, 민수가 옥

(獄)에 나아갈 때 장차 면치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자결(自決)하려 하였는데, 가인(家人)이 억지(抑止)하여 그만두었다.

【원전】 8 집 36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예종 005 01/04/25(무인) / 한명회 · 최항 · 권감 · 이숭원 등이 원숙강을 국문하다 》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숭원(李崇元) 등이 원숙강(元叔康)을 국문(鞫問)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전일 춘추관에 근무할 때 사초(史草)를 보니 모두 그 이름이 써 있어, 신(臣)은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사관(史官) 중 직필(直筆)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신은 곧바로 아뢰지를 아니하고 마침내 본원(本院)의 여러 동료들과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원숙강이 이 말을 반드시 듣고 본 바가 있고, 뜻이 있어 나온 말이다."

하고, 곧 결박하여 장(杖)을 때리려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신(臣)은 듣고 본 바가 없고, 다만 언관(言官)으로서 불편한 일을 보고 감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뢴 것입니다."

하므로, 곧 장(杖) 30대를 때렸으나 끝내 실정을 다 말하기 않고, 다만 말하기를,

"사초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사간(司諫) 조간(曹幹)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고, 또 성숙(成俶)에게 말했을 따름이며, 나머지는 듣고 본 바가 없고, 또 사사로이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니, 곧 조간 및 헌납(獻納) 장계이(張繼弛)를 잡아오게 하였다. 또 민수(閔粹)에게 물으니, 민수가 말하기를,

"사초에는 처음에는 직필(直筆)이었으나, 고치고 지운 것은 진실로 재상(宰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어찌 유독 이들 재상뿐이겠느냐? 그 외에도 두려워한 재상을 모두 물어서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무릇 재상이면 어느 누군들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두려운 자가 없겠느냐? 민수가 오히려 숨기는 것 같으니, 그에게 장(杖)을 때려서 심문하게 하라."

하여, 마침내 장(杖) 10여 대를 때리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두려워한 재상은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노사신(盧思愼)·한계미(韓繼美)·임원준(任元濬)·홍응(洪應)·이극증(李克增)·서거정(徐居正)·강희맹(姜希孟)·한계희(韓繼禧)·구치관(具致寬)·성봉조(成奉祖)·성임(成任)·이석형(李石亨)·유자광(柳子光)·어유소(魚有沼)·권맹희(權孟禧)·정효상(鄭孝常)·한계순(韓繼純)·윤계겸(尹繼謙)·김겸광(金謙光)·이세겸(魚世謙)·어세공(魚世恭)·정난종(鄭蘭宗)·오백창(吳伯昌)입니다."

하였다. 최연(崔演)·이인석(李仁錫)·박양(朴良)·이경동(李瓊仝)·경준(慶俊) 등이 민수(閔粹)에게 사초를 빌려 주었다고 해서 잡아 와서 아울러 국문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민수가 사초를 빌려 달라기에 생각하기를, 다 같은 사관(史官)이었으므로 주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조간(曹幹)·장계이(張繼弛)·최연(崔演) 등 5인에게 항쇄(項鎖)을 풀고 묻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민수에게 묻기를,

"네가 대신(大臣)의 일을 썼다가 도리어 삭제하였으니, 반드시 네가 대신에게 아부(阿附)하려는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臣)은 대신에게 원망을 살까 두려웠을 뿐이며, 실제로 아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므로, 곧 명하여 결박하고 장(杖)을 때리게 하였으나, 민수의 대답이 여전하였다. 명하여 장(杖)을 때리지 말고 결박을 풀게 한 뒤, 또 묻기를,

"처음 사초를 납부할 때에 어떻게 납부하였느냐?"

하니, 민수가 대답하기를,

"이인석(李仁錫)에게 부탁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하므로, 즉시 이인석을 국문하니, 말하기를,

"민수가 지난번에 춘추관에 와서 '사초에 이름을 쓰는가, 안쓰는가?'라고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름을 쓴다.' 하니, 민수가 사초를 봉(封)하여 관(館)에 납부한 뒤에 민수가 신(臣)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사초에 **양성지(梁誠之)**가 구용(苟容)해서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원준(任元濬)의 의술(醫術)이 정교(精巧)하다는 것을 써 넣어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하물며 양성지는 춘추관의 당상(堂上)이라 마음이 매우 편안치 않으니, 도로 내어다가 고쳐 쓰고 싶다.'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사초는 나의 소관이 아니고, 또 국사(國史)를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하자. 민수가 묻기

를, '그 사초를 맡은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은 누구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조안정(趙安貞) 및 성숙(成俶)·강치성(康致誠)·최철관(崔哲寬)이다.'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조안정·강칙성은 내가 친히 사귀는 바이니, 내일 마땅히 강치성에게 청하여 고쳐 쓰겠다.' 하고, 또 묻기를, '그대는 내일 사진(仕進)하는가?' 하기에, 신은 사진(仕進)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 몸이 아파 사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수가 사초를 차출(借出)한 것을 신이 사실상 알지 못하였는데, 뒤에 민수를 궐내(闕內)에서 만나 그것을 고쳐 썼는가를 물으니, 대답하지 않고 말하기를, '구용(苟容)' 2자(字)를 고쳐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수가 사초를 고쳐 쓴 시말(始末)을 이인석이 모두 알고 있으니, 반드시 이도 함께 모의하고 지우고 고쳤을 것이다."

하고, 곧 명(命)하여 장(杖)을 때리고 민수와 대변(對辨)케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이인석은 단지 그 일만 알 뿐이고, 더불어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므로, 단지 장(杖) 4도(度)만을 때리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인석의 대답이 모두 다 바르지 않았고, 단지 일컫기를,

"미혹(迷惑)한 소신(小臣)이 군부(君父)의 앞에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미혹한 사람이라면 군부(君父)가 있음을 알 따름인데, 너는 민수가 사초를 고쳐 쓴 것을 알고서도 바로 고(告)하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미혹한 자가 아니라 계교(計較)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민수(閔粹)·원숙강(元叔康)·이인석(李仁錫)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조간(曹幹)·장계이(張繼弛)·최연(崔堧)·경준(慶俊)·이경동(李瓊仝)·박양(朴良) 등은 방면하여 직(職)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원전】 8 집 363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예종 005 01/04/25(무인) / 공조 판서 양성지가 사국에서 피혐할 것을 청하다 》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민수(閔粹)가 사초(史草)에 신(臣)이 구용(苟容)하여 관여되지 않았다고 썼으니, 신은 사국(史局)에 사진(仕進)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8 집 36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예종 005 01/04/27(경진) / 한명회 · 최항 · 권감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을 국문하게 하다 》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康致誠)을 국문(鞫問)하게 하니, 강치성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춘추관(春秋館)에 있을 때, 동료(同僚) 최명손(崔命孫)이 신에게 이르기를, '민수(閔粹)가 사초(史草)를 보고자 하여 그대 보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내가 민수의 사초를 찾아 밖으로 나와서 민수에게 이르기를, '무엇하려고 보려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양성지(梁誠之)**의 대사헌(大司憲) 때 일을 고쳐 쓰려 한다.'고 하므로, 신(臣)은 곧 사초를 민수에게 주었는데, 한참 만에 민수가 사초를 가지고 와서 신이 받아 가지고 서리(書吏) 이귀림(李貴林)에게 주면서 고쳐 쓴 곳에 안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최명손(崔命孫)에게 물으니, 최명손이 대답하기를,

"다만 민수가 찾아보려고 한 뜻을 강치성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였고, 또 이귀림에게 물으니, 이귀림이 말하기를,

"다만 강치성의 말을 듣고 그가 고친 곳에 인장을 찍었을 따름이며, 그 사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민수에게 물으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臣)이 춘추관(春秋館)에 이르러 최명손을 보고 말하기를, '강치성을 만나 나의 사초를 열람하고자 한다.' 하니, 최명손이 말하기를, '사초를 다시 열람함은 어렵다.'고 하면서 즉시 강치성에게 말을 전하니, 강치성이 신에게 사초를 주었을 따름이고, 고치고 지운 사유는 최명손이 더불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민수의 일이 발각되면서 춘추관에 명하여 모든 사초(史草)의 고치고 지운 곳을 수고(搜考)케 하니, 편수관(編修官) 김계창(金季昌)이 고(告)하기를,

"처음에 원숙강(元叔康)의 사초를 보니, '권남(權擥)이 졸(卒)하였다.[權擥卒]'고 쓴 아래에, '임금이 부처[佛]를 좋아하였다.[上好佛]'는 것과 '권남이 큰 저택을 지었다. [擥治第]'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삭제하고 단지 그 '졸(卒)' 자만 쓰여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편수관(編修官) 성숙(成俶)도 또한 이 일을 보았습니다."

하니, 곧 성숙을 불러 물었는데, 김계창의 말과 같았다. 원숙강에게 물으니, 원숙강은 다만 말하기를,

"'졸(卒)' 자 아래에 다른 일을 썼습니다."

라고만 하므로, 김계창으로 하여금 면질(面質)케 하였더니, 김계창이 원숙강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아무아무[某某] 일을 쓰지 않았는가?"

하니, 원숙강이 비로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권남이 졸하였다.[擧卒]'라고 쓴 다음에 이르기를, '계유 정란(癸酉靖亂) 때의 일등 공신으로 역천(歷遷)하여 승지가 되고,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으며, 백의(白衣)에서 재상이 되기까지 10여 년도 채 못되었다. 이때에 임금이 자못 부처[佛]를 좋아하였으나, 권남은 섬기지 않았지만 항상 들어가 곁에서 모시었는데, 임금이 조석문(曹錫文)에게 이르기를, 「경(卿)의 치재술(治財術)은 소하(蕭何)와 더불어 누가 나은가?」 하니, 조석문이 말하기를, 「만약 소하와 같은 시대였다면 누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는데, 권남이 말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조석문은 취렴지신(聚斂之臣)이요, 윤사로(尹師路)는 도신(盜臣)입니다.」 라고 하였다. 권남은 복건(幅巾)과 여장(黎杖)으로 송백(松柏) 사이에서 소요하였으나, 일찍이 남산(南山) 아래에 저택을 짓고 「호야(呼耶)」 하는 소리가 수년 동안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로써 기롱(譏弄)하였다. 을유년에 병으로 졸하니, 나이가 53세이었다. [歲癸酉靖亂 功居第一 歷遷爲承旨 轉爲吏曹判書 自白衣爲相 不數十載 時 上頗好佛 擧不事焉 常人侍側 上謂曹錫文曰 卿之治財 孰與蕭何 錫文曰 若使何同時 未知誰居其右 上笑之 擧曰 傳曰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錫文聚斂之臣 尹師路盜臣也 擧幅巾黎杖 逍遙松柏間 然嘗治第南山下 呼耶之聲 數年不絶 人以此譏之 歲之酉 以病卒 年五十三]'라고 써서 춘추관(春秋館)에 바쳤는데, 그 뒤에 이름을 썼으므로,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까 꺼려하여 가만히 수취(收取)하여 '졸(卒)' 자 하나만 썼습니다."

하였다. 한명회(韓明澮) 등이 이로써 아뢰고, 또 말하기를,

"원숙강이 '권남이 졸하였다.'라는 기사 밑에 임금에 관한 말을 함께 써 넣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모두 이미 문초에 승복했다면 진실로 마땅히 결죄(決罪)하여야 할 것이나, 추국(推鞫)을 할 때에야 협박으로 공사(供辭)를 취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내가 친문(親問)한 후에 단죄(斷

罪)코자 한다."

하니, 한명회 등이 말하기를,

"이들은 장(杖)을 때리지 않아도 자복(自服)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권감(權瑊)을 내전(內殿)으로 불러 들여, 임금이 한명회 등에게 묻기를,

"옛날에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므로,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권도(權蹈)·안지(安止) 등이 또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율(律)로 조치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부처(付處)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元叔康)을 불러 묻기를,

"너는 먼저 스스로 사초(史草)를 삭제했으면서, 마침내 사초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직필(直筆)함이 없을까 저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국사(國史)를 증감(增減)했다가 피주(被誅)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고 있었지만, 단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무엇하러 고치고 지웠느냐? 네가 권남의 일을 기록하였다가 삭제하였는데, 그 늙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냐?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조석문(曹錫文)의 일 때문에 고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재상(宰相)의 허물을 지우고 쓰지 않으면서 임금의 허물은 썼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인군(人君)의 정사(政事)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등록(謄錄)에 실려 있으므로 신이 비록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문적에 등재(登載)되어 있고, 다만 재상의 일은 모름지기 사초를 기다린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신이 썼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이 말마다 반드시 성주(聖主)·우신(愚臣)이라 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나를 성(聖)으로 삼는데, 내가 지금 곧 성주(聖主)가 된 것이냐? 너는 스스로 우치(愚痴)라 하니, 너는 대신(大臣)은 두려워 지웠는데, 어찌 우치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 원숙강이 오히려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장(杖) 15대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숨기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의 허물은 또한 쓰고 재상(宰相)의 허물은 삭제하였으니, 그 정유(情由)가 무엇이냐?"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을 거스리면 그 화(禍)가 빠르기 때문에, 신이 삭제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대신에게도 아부하고, 인군(人君)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권감에게 이르기를,

"원숙강의 공사(供辭)는 마땅히 '재상을 추성(推誠)하고, 인군(人君)을 경멸(輕蔑)하였다.[推誠宰相輕蔑人君]'고 써라."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경멸함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세조조(世祖朝)의 임금의 허물은 쓰고, 지금은 나를 유충(幼冲)이라고 하고 대신(大臣)의 허물을 지웠으니, 네가 재상에게 추성(推誠)하고 임금을 경멸(輕蔑)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원숙강이 마침내 복죄(服罪)하였다. 또 민수(閔粹)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초(前草)에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 말[辭]을 약간 완곡하게 고쳐 썼으나, 그 실상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옛날 서연관(書筵官)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대신(大臣)의 허물을 헤아려서 쓰지를 않았느냐? 너는 유사(儒士)로서 어찌 국사(國史)를 증감한 죄를 알지 못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니로되, 단지 신이 용렬(庸劣)하여 생각이 이에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재상의 원망을 두려워하여 고쳐 썼으나, 그 말[辭]은 약간 완곡해졌고 그 실상은 없애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민수는 처음부터 항상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자못 민수의 말이 곧다고 하였다. 또 강치성(康致誠)에게 묻기를,

"민수가 사초(史草)를 내오길 청하였을 때, 너는 누구와 의논하여 내어 주었느냐? 네가 민수와 사귄 지가 오래이니, 반드시 공모(共謀)하였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신진(新進)의 사류(士類)이기 때문에, 조장(朝章)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사초를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말하는 것이 매우 정직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하여 장(杖) 5도(度)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명하여 원장(圓杖)을 가지고 장(杖)을 때리게 하여 3도(度)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남과는 의논함이 없었고, 또 공모함도 없으며, 다만 민수가 신과 동방 생원(同牓生員)으로 장원(壯元)했기 때문에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사초를 꺼내어 주었는데, 공모자가 없다면 어찌 굳이 숨기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민수가 개서(改書)한 뒤 단지 성숙(成俶)과 더불어 말했는데, 성숙이 탄식하기를, '민수가 왜 이렇게 할까?' 하였습니다."

하니, 곧 성숙에게 묻자, 성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들어 알았다면 성상 앞에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므로, 명하여 강치성과 면질(面質)시키도록 하였는데, 성숙의 말이 자못 곧으니, 명하여 성숙을 방면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치성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인 것이라 그 죄는 원숙강(元叔康)과 같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민수(閔粹)는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제주 관노(濟州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최명손(崔命孫)·이인석(李仁錫)은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본향(本鄕)에 충군(充軍)시키며, 원숙강(元叔康)·강치성(康致誠)은 참형(斬刑)에 처하되, 원숙강과 강치성의 아들을 안치(安置)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민수(閔粹)가 서연관(書筵官)이었다. 민수는 물을 때마다 눈물로써 대답하기를,

"신이 무상(無狀)하여 범한 죄가 매우 무거우니 법으로 주살됨이 마땅하오나, 다만 신은 독자(獨子)로서 부모가 구존(俱存)하니, 원컨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를 안 지가 비록 오래이나, 국가 대사(大事)를 당해서는 사사로움을 취할 수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민수의 눈물이 흥건함을 측연(惻然)하게 여긴 나머지 마침내 사형을 감한 것이다.

강치성(康致誠)은 광망(狂妄)하여, 처음에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 전교서 박사(典校署博士)를 제배(除拜)하였으나, 동료(同僚)들이 강치성은 신진(新進)으로 행수(行首)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 박사(博士) 김질(金晊)을 추대하여 상관장(上官長)으로 삼았더니, 강치성이 매우 한스럽게 여겼고, 자못 동렬(同列)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렬(同列) 역시 물리치고 한데 어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앙심(怏心)을 품고 기사관(記事官)이 되기를 구(求)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사진(仕進)하였다. 민수(閔粹)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여 촌간 척독(寸簡尺牘)에도 반드시 기이한 말과 아름다운 글씨로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보였으며, 소소한 장난에도 남의 밑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나 성품은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없었다. 원숙강(元叔康)도 경박(輕薄)하여 마침내 이러한 실패를 저질렀다. 이인석(李仁錫)은 온유(溫柔)하고 수미(粹美)하여 붕우(朋友)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 비록 불쾌함이 있어도 질언 거색(疾言遽色)함이 없고, 성품이 또한 청렴 결백하여 이명간(利名間)에 구차한 뜻이 없어, 그 피찬(被竄) 됨에 미쳐서도 담소 자약(談笑自若)하였다.

【원전】 8 집 363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예종 006 01/06/05(정사) / 《강목》과 《한기》를 내어 보이며, 책제를 내게 하다 》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정효상(鄭孝常)·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숭원(李崇元)을 머물도록 명하여, 《강목(綱目)》과 《한기(漢紀)》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옛날에 허소(許邵)가 조조(曹操)에게 이르기를, 치세(治世)의 능신(能臣)이 난세(亂世)의 간웅(姦雄)이니, 무릇 인주(人主)가 치세의 있을 때 능신을 「난세에 장차 간웅이 될 것이라.」 하여 이를 버리면 옳지 못하고, 또 능신이라고 하여 마침내 등용하면 난세에 화(禍)를 끼치게 되니, 이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러한 뜻으로써 논변(論辨)하여 책제(策題)를 내어서, 문사(文士)·유생(儒生)·제장(諸將) 등으로 하여금 시구(詩句)로써 대답하게 하라."

하니, 정효상·이숭원이 책제를 초(草)하여 이르기를,

"조조가 일찍이 허소에게 나아가 묻기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허소가 말하기를, '당신은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라.'고 하였다. 무릇 사람은 하나인데, 능신도 되고 간웅도 되기를 세상의 치란(治亂)에 따르니, 어찌하겠느냐? 과연 사람은 모두 세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냐? 이를 버리게 되면 치세에 인재를 버리게 되고, 이를 등용하게 되면 난세에 화를 끼치게 되니, 장차 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용사(用舍)에 밝게 하여 인재를 버리고 화를 입지 않은 데에 이름이 어찌 그 도(道)가 없겠느냐? 사람을 앎이 곧 밝음이니, 제왕(帝王)들이 그것을 어렵게 여기고, 나 또한 그것을 어렵게 여겨서, 용사(用舍)에 대하여 마음을 둔 지가 오래였다. 각기 마음에 품은 바를 펴서 대답하라."

하였다. 명하여 시강 재추(侍講宰樞)와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김수온(金守溫)·이석형(李石亨),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어효첨(魚孝瞻)·지사(知事) 구종직(丘從直)·우참찬 이극배(李克培)·중추부 동지사 김예몽(金禮蒙)·이조 판서 홍응(洪應)·한성부 윤(漢城府尹) 서거정(徐居正)·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행 첨지사(行僉知事) 송처관(宋處寬)·행 호군(行護軍) 정자영(鄭自英)·행 상호군(行上護軍) 이파(李坡)·한성부 윤 이극돈(李克墩) 등을 사정전(思政殿) 월랑(月廊)에 모이게 하고, 궐내(闕內)의 문사(文士)와 제장(諸將)·선전관(宣傳官)·유생(儒生)들로서 전강(殿講)에 나온 자들을 전문(殿門) 안의 남랑(南廊)에 모아서 모두 제술하게 하고, 이어서 김수온·김예몽·홍응·서거정·양성지·송처관·이극돈·이파·이승소(李承召)·김수령(金壽寧)·이영은(李永垠)·정난종(鄭蘭宗)에게 명하여 제술하게 하고, 한명회 등에게 궁온(宮醞)을 내려 주었다. 또 최항에게 명하여 제술하게 하니, 최항이 아뢰기를,

"신은 취(醉)하여 제술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졸자(拙者)의 능한 것이 능자(能者)의 졸한 것만 같지 못하니, 경은 부시(賦詩)를 사양하지 말라. 내 장차 보도록 하겠다."

하니, 최항이 곧 부시하여 바쳤다. <임금이> 제장(諸將)들이 앞서 책제(策題)로는 부시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여, 또 정효상과 이숭원으로 하여금 다른 제목으로 고쳐 내게 하기를,

"병가(兵家)의 일에서 만약에 '많은 군사로써 적은 군사를 대적한다.'고 한다면, 당종(唐宗)은 무뢰(武牢)에서 군사 몇 명쯤을 써서 능히 강한 적을 사로잡을 수 있었느냐? 만약에 '적은 군사로써 많은 군사를 대적한다.'고 한다면, 손씨(孫氏)가 강남(江南)에서 또한 군사 몇 명쯤을 만나 한 모퉁이에서 죽었느냐? 한(漢)나라 고조(高祖)에 이르러서도, 한신(韓信)이 군사가 많은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고서 한신이 마침내 사로잡힌 바가 되었으니, 또한 어찌 된 것이냐? 만약에 백만의 군사를 연(連)하고

천리(千里)의 군량을 운반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식량이 모자라지 않게 하고, <군사들을> 능히 합하고 능히 나누며, 능히 많게 하고 능히 적게 하려면, 또한 그 적임자와 그 술책이 있는 것이냐? 만약에 거행한다면 많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합할 것이냐? 그것을 각기 마음에 품은 바대로 대답하라."

하였다. 한명회·최항 등이 상고하여 당상관(堂上官) 이극돈(李克墩) 등 13인과 당하관(堂下官) 김계창(金季昌) 등 15인을 시취(試取)하였다.

【원전】 8 집 384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예종 006 01/06/29(신사) /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 판서 양성지의 상소① 》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은 엎드려 보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영명(英明)하고 관고(冠古)하신 자질로 선성(先聖)의 부탁(付托)의 중함을 받아서 대보(大寶)를 이어 등극하시어,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셨으니, 먼저 방납(防納)을 혁파하여 우리 일국(一國)의 복(福)이 되게 하셨고, 다음으로 도둑을 엄하게 다스리시어 우리 양민(良民)에게 은혜(恩惠)를 베푸셨으며, 역적(逆賊)을 평정하여 종사(宗社)가 견고해졌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 조야(朝野)가 경사스러우니, 이는 신자(臣子)의 정백(精白)한 한 가지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휴덕(休德)을 이어받은 시기입니다. 신은 용렬한데도 특별히 선왕(先王)의 천지(天地)같은 사사로운 은혜를 입었으나, 조그마한 보답도 하지 못하여 전하에게 보답을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품은 바를 늦추겠습니까? 삼가 관견(管見) 28가지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올리니, 엎드려 생각건대 예감(睿鑑)을 드리워 살피소서.

1. 장장(長墻)에 대한 의논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본국은 안팎이 산과 강으로 되어 있어 넓이가 몇만 리(里)이고, 호수(戶數)가 수백 만이고, 군사가 1백 만으로, 요(堯)임금과 아울러 섰고, 주(周)나라에는 신하가 되지 않았고, 원위(元魏)와는 통호(通好)하였으며, 풍연(馮燕)에는 정성을 바쳤고, 수(隋)나라는 육사(六師)가 대패(大敗)하였고, 당(唐)나라는 손님으로 대우하였고, 요(遼)나라는 패군(敗軍)하여 처참하였으며, 송(宋)나라는 섬겼고, 금(金)나라는 부모(父母)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원(元)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도 또한 삼한(三韓)이라 이르고 하하(下下)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동(遼東)의 동쪽 1백 80리는 연산(連山)을 경계로 하여 파절(把截)을 삼았으니, 성인(聖人)께서 만리를 헤아려 밝게 보시는데 어찌 토지가 비옥하여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수백 리의 땅을 버려 그 곳을 비게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동교(東郊)의 땅은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지키어 양국(兩國)의 강역(疆域)을 서로 섞일 수 없게 하였으니, 만약 혹 서로 섞인다면 혼단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건대, 중국에서 장차 동팔참(東八站)의 길에 담장[墻]을 쌓아서 벽동(碧潼)의 경계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이는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본국 평안도(平安道)의 백성 가운데 부역(賦役)에서 도망한 자가 저곳에 흘러 들어갔으니, 동쪽으로는 개주(開州)로부터 서쪽으로는 요하(遼河)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러, 대개 고을의 취락(聚落)이 서로 바라보이는데, 몇천만 명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락(永樂) 연간에 만산군(漫散軍)은 모두 4만여 인이었는데, 근년(近年)에 요동(遼東)의 호구(戶口) 가운데 동녕위(東寧衛)에 십분의 삼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장장(長墻)이 없다면 야인(野人)이 출몰(出沒)할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고, 만약 혹 담장을 쌓는다면 도로 내지(內地)가 되어서 진실로 좋은 땅이 될 것이니, 그 유망(流亡)하는 자가 어찌 옛날보다 만만배(萬萬倍)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해(害)의 첫번째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연대(煙臺)를 벌여서 설치하고 둔전(屯田)을 널리 행한다면, 이와 같다면 양국의 사이에는 다만 강 하나만이 한계가 될 뿐이니, 이름은 해외(海外)라고 하여도 실로 같은 안입니다. 저들이 어찌 천백 년 동안 우리 변방을 엿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이익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해가 되기도 하여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해의 두 번째입니다.

장장(長墻)이 비록 요하(遼河)에서 압록강(鴨綠江)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염려할 만한 것이 있는데, 만약 벽동(碧潼)의 경계(境界)인 산양호(山羊湖) 사이에 이른다면, 이는 동한(東韓)의 땅이어서 저들의 봉역 가운데에 있으니, 사람에 있어서는 팔꿈치와 겨드랑이의 사이와 같고 인가(人家)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같아, 한쪽은 여기에 있고 한쪽은 저기에 있어서 저들의 주장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다만 장사(長沙)의 무수(無袖)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해의 세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利害)는 삼척 동자(三尺童子)라도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건주(建州)의 사람들은 형세상 반드시 와서 싸울 것이나, 가까이 들리는 일은 항상 그 실지를 잃음이 많을 터인데, 만약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태평하게 주청(奏請)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무능(無能)하다고 여기고 더욱 능욕(凌辱)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모름지기 급히 달려서 상주(上奏)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산 파절(連山把截)은 고황제(高皇帝)가 정한 바이므로 양국의 봉강(封疆)은 서로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벽동(碧潼) 이서와 의주(義州) 이북은 큰 강이 한계로 막혀 있어서 족히 염려할 것이 못되나, 이어 김보(金輔) 등 내사(內史) 족친(族親)을 보내어 들어가서 나라 사람들의 뜻을 아뢰어 제총(帝聰)

에 이르도록 하여 요하(遼河)로부터 압록강(鴨綠江)에 이르기까지 쌓도록 할 수 있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청(請)에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자치(自治)하는 일이 더욱 엄중하게 하여 만세(萬世)토록 견고하게 할 뿐입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평안도의 폐해로서 큰 것이 셋 있으니, 부방(赴防)이고 관부(館夫)이고 기재(騎載)하여 영송(迎送)·호송(護送)하는 데 지대하는 일입니다. 만약 벽동의 강 밖에다 또 장장(長墻)을 쌓는다면 북방(北方)의 수어(守禦)는 옛날에 비해서 가벼워질 것입니다. 만약 전과 같이 남쪽 경계의 군사로써 강변(江邊)의 땅을 지키게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요해(遼海)로 흘러 들어갈 것이니, 그 해로움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강 연안의 주(州)·군(郡)을 흩어서 적유령(狄踰嶺)을 관방(關防)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강계(江界)·위원(渭原)은 희천(熙川)에, 이산(理山)·벽동(碧潼)은 운산(雲山)에, 창성(昌城)·삭주(朔州)는 귀성(龜城)에 옮기소서. 이렇게 하면, 강변을 부방(赴防)하는 폐단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나라의 대소 사명(使命)은 모두 평양(平壤)에 이르러 감사(監司)에게 전부(傳付)되는데, 백성의 일은 도사(都事)로 하여금, 군사의 일은 우후(虞侯)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작은 일은 지인(知印)이 적간(摘奸)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한번에 관부(館夫)의 폐단은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정조사(正朝使) 외에 사하사(謝賀使)·주문사(奏聞使) 등은 모두 따르는 자를 데리고 가므로 동팔참(東八站)의 길에 과연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즉 한번 길에 3절(三節)의 사람이 부사(副使)를 대동하고 간다고 해도 불과 15인이고, 단사(單使)로 가면 12인이니, 이로 인하여 군사는 50명, 건량(乾糧)은 50두(斗)로 정하고, 말에 실리는 짐[馬駄]은, 상절(上節)이라면 5, 중절이라면 3, 하절이라면 2로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기재(騎載)하여 영송·호송하는 데 지대하는 폐단도 또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평양부(平壤府)를 승격시켜서 서경(西京)으로 하고, 한성부(漢城府)·함흥(咸興)·경주(慶州)·전주(全州)·개성부(開城府)와 더불어 육경(六京)으로 삼는다면, 우리 나라의 형세를 굳게 하고, 서인(西人)의 마음을 수습하고, 지도(地圖)를 나누어 형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정(兵政)을 고쳐서 위(衛)로 나누어,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를 중위(中衛)로 삼고,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를 후위(後衛)로 삼고,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를 전위(前衛)로 삼고, 강원도(江原道)를 우위(右衛)로 삼고, 황해도(黃海道)를 좌위(左衛)로 삼으소서. 신의 전의 상소와 같이 함길도의 각 고을은 종친(宗親)에게 분사(分賜)하여 관향(貫鄕)으로 삼게 하고, 평안도의 각 고을은 공신(功臣)에게 분사하여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면, 안팎이 서로 이어지고 양계(兩界)가 충실하게 됩니다. 또 옛날 강동(江東)과 같이 평양의 상류(上流)를 요해처(要害處)로 삼고 다시 큰 고을을 설치하면, 중병(重兵)이 유숙할 수 있고, 만약에 건주 사람이 이른다면 올 때는 접대하고 갈 때는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련위(毛憐衛)·대마도(對馬島)의 사람은 더욱 후대(厚待)를 더하여 원교(遠交)를 하여서 완급(緩急)할 때 좌우(左右)에서 돕도록 하소서.

1. 성학(聖學)에 힘쓰는 일입니다.

대개 인주(人主)는 그 한 몸이 하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어 조종(祖宗)의 부탁이 중하지 않을 수 없고, 신민(臣民)의 의지하여 바라는 것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의 차이로 혹은 무궁한 근심을 끼치기도 한고, 한 가지 일의 실수로 혹은 막대한 폐단을 이루기도 하니, 진실로 마땅히 성학(聖學)을 궁구(窮究)하여 다스리는 근원을 밝게 추출하고, 사전(史傳)을 확실히 헤아려 치란(治亂)의 자취를 살핀 연후에야 가히 적으면서도 군중을 제어할 수 있으며, 옛날로써 오늘을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세자[靑宮] 때부터 덕(德)을 기르시고 춘방(春坊)에서 학문을 강(講)하시어 성현들이 지은 온갖 책을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실로 신민이 함께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하여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통감(通鑑)》을 강(講)하는 것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자경편(自警編)》·《정관정요(貞觀政要)》·《송원절요(宋元節要)》·《대명군감(大明君鑑)》·《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국조보감(國朝寶鑑)》, 또 사서(四書) 가운데 《논어(論語)》, 오경(五經) 가운데 《상서(尙書)》를 강하여 항상 관람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1. 《고려사(高麗史)》를 반포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고려사》는 전조(前朝)의 치란(治亂)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의 권징(勸懲)이 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역란(逆亂)의 일이 있다면 소위 역란하는 자는 역대(歷代)의 역사가 모두 있는 것이니, 어찌 홀로 전조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참칭(僭稱)한 일이 있다면 전조의 태조(太祖)가 삼한(三韓)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원(改元)하여서 종실(宗室)을 칭하였고, 금(金)나라 사람이 추대하여 황제(皇帝)로 삼았고, 고황제(高皇帝)는 스스로 성교(聲敎)가 있다고 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참칭하는 데에 혐의가 되겠습니까? 소위 번국(蕃國)이라고 하는 것은 기내(畿內)의 제후(諸侯)와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만약 근대(近代)의 일이 있어서 유전(流傳)할 수 없다면, 지금 명(明)나라도 《원사(元史)》를 행하니, 어찌 그 이목(耳目)이 미칠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만약 숨겨야 할 일이 있다면, 삭제하고서 행하면 가할 것입니다. 비단 지경 안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략(史略)》과 같이 중국에 전하거나 일본에 전해도 또한 좋겠습니다.

이는 비단 일시의 계책이 아니고 만세의 무궁한 계책이 되는 것이니, 빌건대 우리 나라에서 찬술한 여러 서적 가운데 부득이한 비밀 문서(秘密文書) 외에 《고려전사(高麗全史)》와 같은 것은 옛날대로 전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의창(義倉)을 넉넉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은 하늘을 대신한 직책이니, 백성을 기르는 것[養民]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백성을 기르는 방법은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먹이게 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세종 대왕은 의창의 일을 중히 여겨 세월(歲月)을 기하여서 크게 차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세조 대왕조(世祖大王朝)에 미쳐서는 소신(小臣)이 성상[耿光]을 면대(面對)하여 두 가지로 이해(利害)를 진술하였고, 실봉(實封)하여 상달(上達)한 자도 또한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소위 의창이라는 것은 경오년에 견감(蠲減)한 이후로는 백성으로서 받는 자는 견감하여 면하기만을 바라고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는 성상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기르는 대절(大節)로서, 급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 백호(百戶)의 현(縣)에서는 의창에 5백 석(石), 군자(軍資)로 5백 석을 쌓고, 천호(千戶)의 군(郡)에서는 의창·군자 또한 각기 5천 석씩을 쌓아 인근 고을에 옮겨서 균등하게 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나라에서 다방면으로 포치(布置)하여 10년을 기하여 족한 연후에라야 그만두게 하면, 곧 민생(民生)에도 매우 다행이고, 군국(軍國)에도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1. 군자(軍資) 모미(耗米)를 거두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듣건대, 외방 수령(守令)의 공수(公須)와 아록(衙祿)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상정(詳定)하니, 둔전(屯田)에는 액수(額數)가 있고 징속(徵贖)하는 것의 금함이 있으며, 일체의 이익은 모두 관(官)에 들이는데, 감사(監司)가 공궤(供饋)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여 도내(道內)의 별상(別常)이나 경중(京中) 사객(使客)의 지대(支待)에 칭대(稱貸)하여서 한 것이 많다고 하며, 심한 자는 향리(鄕吏)로 하여금 날마다 교대로 이바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고을에서 받는 군자 미곡이 적은 것은 수백 석이고 많은 것은 천 석, 만 석인데, 1백 석의 곡식이라도 1년을 지나면 쥐가 먹거나 썩어서 줄어드는 것이 거의 10석에 이릅니다. 이로써 1만 석의 곡식이라면 1천 석이 되니, 1천 석의 곡식을 한 수령이 어찌 능히 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수령들이 해유(解由)를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이것이 어찌 공사(公私)의 큰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금후로 군자미(軍資米)도 또한 백성들에게 빌려 주어 그 환납(還納)할 때에 1석에 대해서 쥐가 없앤 2두(斗)를 취하소서. 이렇게 하면 거의 관민(官民)이 둘 다 편하고 창름(倉廩)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1. 직전(職田)에서 납초(納草)하는 것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경기(京畿)는 근본의 땅인데도 요역(徭役)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무겁습니다. 납초(納草)하는 한 가지 일로써 말하더라도, 여름에는 청초(靑草)를 바치고 겨울에는 곡초(穀草)를 관(官)에 바치니, 즉 《우공(禹貢)》의 3백 리(里)에서 볏짚[秸]을 바치는 뜻입니다. 이미 관에

바치고 또 직전을 받은 자에게 바치니, 한 묶음의 풀에 대해서 쌀 1두(斗)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풀값의 쌀과 원래 세(稅)의 쌀이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 기현(畿縣)의 백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법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수년이 가지 않아서 민전(民田)은 진황지(陳荒地)가 많아지고 기전(畿甸)의 백성은 유망(流亡)하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풍습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 갑자기 법을 중지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조금씩 거두더라도 후에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전(職田)에서 납초(納草)하는 법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직전에 원래 정해진 수를 더하여, 종실(宗室)·대군(大君)의 2백 25결(結)은 지금 4백 50결로 정하고, 유내(流內) 9품 10결은 지금 20결로 정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사대부(士大夫)가 실망(失望)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관내(關內)의 백성은 영구히 생성(生成)의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1. 공부(貢賦)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공물(貢物)의 상정(詳定)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왔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산출되는 바가 각기 달라서 균일하게 나누어 정할 수 없으나, 범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수륙(水陸)으로 인하여 상정(詳定)해야 할 것이니, 하삼도(下三道) 같은 데에서는 면포(綿布)를 바치고,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는 면주(綿紬)를 바치고, 함길도(咸吉道)·강원도(江原道)는 상포(常布)를 바치며, 또 양계(兩界)는 초피(貂皮)·서피(鼠皮)를 바치고, 강원도는 재목(材木)을 바치고, 황해도는 철물(鐵物)을 바치고, 전주(全州)·남원(南原)은 후지(厚紙)를 바치고, 임천(林川)·한산(韓山)은 생저(生苧)를 바치고, 안동(安東) 등지는 돗자리[席子]를 바치고, 강계(江界) 등지는 인삼(人蔘)을 바치고, 제주(濟州)는 양마(良馬)를 바쳐서 곳곳에 있는 물건이 이르고 또 곳곳에 나누어 정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여 산군(山郡)에서는 피물(皮物)을 바치고, 해군(海郡)에서는 어물(魚物)을 바쳐 그 많고 적은 것을 균등하게 하고, 그 자질구레한 것을 제한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1. 활을 바치는 것[貢弓]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공부(貢賦)를 정하는 것은 민력(民力)을 헤아려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도에서 바치는 활은 관(官)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니, 각 고을 가운데 순천(順天)·나주(羅州)와 같이 산출되는 바가 있는 곳 외에서도 비록 산출되는 바가 적어도 이익을 모두 관에 들이게 되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거두라는 정한 제도가 있고 징속(徵贖)하는 것은 그 금하는 바가 있으니, 어찌 능히 바치는 활을 그 수와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모두 백성에게서 징수하게 되므로, 대저 농민(農民)은 삼시(三時)의 힘을 다하게 되어 풍흉(豊凶)이 이미 또한 고르지 않게 됩니다. 해가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상세(常稅) 외에 세를 거두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한 가구(家

口)가 먹기에도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고, 다음해의 양식은 전부 의창(義倉)을 바라보게 되니, 또한 어찌 능히 바치는 활을 그 숫자와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이라도 심하다고 이르는데, 하물며 매년이겠습니까? 만약 국가의 군사와 백성이 부실(富實)하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나, 또한 오랫동안 갈무리하여 두면 마땅히 부패(腐敗)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속히 이루고자 하니, 즉 전일에 피갑(皮甲)을 제조하였던 것 같은 것은 집집마다 농우(農牛)를 모두 죽여서 거의 멸종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그릇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지금부터 이후로 궁시(弓矢)는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군사로서 내금위·겸사복(兼司僕)·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는 3장(張)을 갖추고, 정병(正兵)은 2장을 갖추고, 선군(船軍)은 1장을 갖추게 하며, 조관(朝官) 가운데 1·2품은 3장, 3·4·5·6품은 2장, 7품 이하는 1장을 갖추게 하고, 연호군(煙戶軍) 가운데 대호(大戶)는 3장, 중호(中戶)는 2장, 소호(小戶)는 1장을 갖추게 하소서. 각 진의 진상(進上)과 군기시(軍器寺)의 월과(月課)는 모두 녹각궁(鹿角弓)을 만들어 3년을 한하여서 스스로 근각(筋角)을 갖추어 활로 삼고, 또 금(金)을 바치거나 실[絲]을 바치며, 또한 그 폐단을 의논하여 헤아려서 감한다면, 생민에게도 매우 다행하겠고, 국가에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먹을 바치는 것[貢墨]을 감하는 일입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교서(典校署)에서 1년에 바치는 책지(冊紙)가 1만 첩(帖)이고 먹[墨]이 또한 1만 정(丁)인데, 신이 근년에 먹을 쓴 수를 살펴보니, 1년에 쓴 바가 불과 수천 정이었습니다.

빌건대, 금후로 반을 감하여 5천 정을 공물(貢物)로 삼으면, 민력(民力)을 회복할 것입니다.

1. 소목(燒木)을 없애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모든 일이 그 명목은 있으나 실제는 없으니, 그 폐단을 혁파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 방납(防納)할 때에 방납하게 하였더니 백성에게서 많이 취한 것이 소목(燒木)만큼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축서(司畜署)에서 돼지 수백 구(口)를 기른다면, 돼지 한 마리당 사료를 불때는 데 드는 소목(燒木)이 1일에 11냥(兩)이고, 1두(斗)의 사료에는 나무 1근(斤)을 불때게 되니, 10두(斗)의 사료라면 10근의 나무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석(石)을 합하여 불때게 되면 1,2근을 더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1년에 돼지를 기르는 데에 사료를 불때는 나무가 2백 50근이니, 그 값을 쌀로 계산하면 23두(斗)이고, 그 사료인 콩도 72두이며, 밀기울[麥麩]은 반이 됩니다. 그러나 돼지 한 마리에 1년에 드는 비용이 가히 10여 필(匹)인데, 하물며 돼지의 본래 가격도 또한 각기 10여 필이겠습니까? 양(羊)도 진실로 이러한 유(類)이고 닭은 또한 더욱 심합니다.

빌건대, 금후로 1년에 쓰이는 바는 그 수를 헤아려서 감하여, 필요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경기(京畿)와 외방(外方)에서 취하여 쓰도록 들어주고, 외방의 소읍(小邑)은 30구(口), 차군(次郡)은 50구, 대목

(大牧)은 1백 구로 하여, 이로써 검거(檢擧)하게 하소서. 그 가축의 사료도 진실로 낙판(落板)한 자에게 주고, 사료를 불때는 나무는 물가로 나아가게 하되 산(山)은 금하도록 정하며, 선상 노자를 더 정하여 풀을 베어오게 하고, 참(站)의 배로써 실어 나르도록 하며, 그 전에 정한 소목의 처소는 아울러 모두 추이(推移)하여 감하도록 하소서. 전생서(典牲署)·사복시(司僕寺)에도 이러한 유가 많으니, 빌건대 상정소(詳定所)에 내려서 다시 상정하게 하소서. 또 경중(京中)의 각호(各戶)에서도 거두어 내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사축서(司畜署)에서 돼지를 기르는 조강(糟糠)과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를 만드는 석회인데, 과반수를 쌀로 받아들이므로 일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금후로 조강은 양사(兩司)에서 각기 그 부근 성저(城底) 10리에서, 석회는 삼각산(三角山) 근처에서 소용되는 바를 쓰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공물(貢物)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듣건대, 경중 각사(各司)의 노자(奴子)가 외방의 대소 공물의 납입(納入)을 맡는데, 반드시 사리에 어두운 관리들이 여러 방면으로 침어(侵漁)하여 막히게 하여서 즉시 채납(採納)하지 않으니, 만약 바치는 풀[草]이 막히게 되면 푸른 풀이 누렇게 되고, 바치는 돼지가 막히게 되면 비대한 것이 파리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외방의 관리를 책하여서 쌀을 거두면 명목을 대납(代納)이라고 하여 달리 풀을 바치는데, 이는 실로 남문(南門)에서 나와서 서문(西門)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풀만 거듭 바치고 그 쌀을 아울러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외방 관리를 책하여 면포(綿布)를 거두면 그 집에서 돼지를 대납하는데, 외방 관리의 돼지도 또한 아울러 거두어서 길렀다가 후일에 쓰는 것입니다. 만일 실[絲]을 바치게 하면, 외방 관리의 실은 품질이 좋아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종[奴子]의 실은 품질이 좋지 않아도 좋다고 하여, 부득이 많은 값을 주어서 종으로 하여금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布]를 바치게 하면, 스스로 가지고 와서 바쳐야 하는데, 거칠다고 말하여 그 베를 종에게 주고 그 값을 주어서 바치도록 하면 바치게 되니, 이와 같은 유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금하지 않는다면, 방납(防納)이 비록 혁파된다고 하더라도 외방에서는 백성에게서 많이 거두지 않을 수 없고, 각사(各司)의 종으로 하여금 각사의 종에게 주어서 대납하게 하여 속히 바치게 됩니다.

금후로 품질이 좋은 공물(貢物)을 바치는데 막히게 하거나 침어(侵漁)하거나 뇌물을 주도록 하는 자는 외방의 관리가 진고(進告)하는 것을 들어주어, 풍속이 바른 데로 돌아가기를 한하여 극형(極刑)에 처치하고, 관리로서 정상을 아는 자는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으며, 알지 못하는 자도 즉시 파출(罷黜)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대관(臺官)을 보내어 세를 거두는 것을 감독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방납(防納)의 일은 예전에는 부등방목(不等方木)·유밀(油蜜)·청밀(淸蜜)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전해 내려온 폐단이, 작은 것은 하나의 풀과 같이 미세한 것으로부터 큰 것은 삼세(三稅)와 같이 크게 바치는 것에 이르러 대납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생민(生民)의 식량을 빼앗아 부상(富商)의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재물이 되게 하니, 실로 사직(社稷)의 대계(大計)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소신도 또한 그 폐단을 세 가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먼저 이 법을 혁파하고 아뢰는 자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아! 전하께서 이를 받드시어 팔도(八道)의 백만 백성으로 하여금 생취(生聚)하게 하여 모두 전하께서 생육(生育)하시는 은혜와 그 널리 구제하시는 은택을 입게 하셨으니, 반드시 위로 천심(天心)에 통하고 본지(本支)가 백세(百世)에 이어질 것이며, 영구히 음덕(陰德)의 보답을 무궁토록 누리실 것입니다. 방납을 한 번 혁파하면 생민(生民)의 해가 열이면 일곱은 없어질 것이나 또한 횡렴(橫斂)이 있습니다. 신은 듣건대, 남원(南原)의 관리가 지난해 세를 거둘 때에 장두(醬豆) 1두(斗)를 바친 자는, 장두를 바치고도 또 조미(糙米) 1두를 바치고, 또 면포(綿布) 1필을 바치고, 또 주지(注紙) 1권(卷)을 바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일을 들으면 그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각도의 세를 거두는 곳에 울타리를 넓게 쌓고, 강명(剛明)한 대관(臺官)과 차사원(差使員)을 택하여 보내어서 전부 봉납(捧納)하게 하여, 대낮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친히 문안(文案)을 잡고 차례로 그 이름을 불러 처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루에 받아들인 석(石)을 헤아리게 하여 그 관리에게 주고 관리로 하여금 침범하지 못하게 하되, 만일 10석(石)에서 1석(石)이라도 더하여 횡렴한 자가 있으면 처결하고 진고하도록 하여, 풍속이 바른 데로 돌아가기를 한하여 극형에 처치한다면, 생민(生民)에게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원전】 8 집 39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호구-호구(戶口) / *군사(軍事) / *역사-전사(前史) / *과학-지학(地學) / *재정-공물(貢物) / *역사-고사(故事)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 *농업-축산(畜産) / *농업-임업(林業) / *상업-상인(商人)

《 예종 006 01/06/29(신사) /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 판서 양성지의 상소② 》

1. 승부(勝負)를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듣건대, 양보하는 것은 덕(德)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구관(九官)은 서로 양보하였으니, 사(士)는 대부(大夫)에게 양보하고, 대부는 경(卿)에게 양보하였으며, 길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고 밭가는 자는 밭두둑[畔]을 양보하였습니다. 전일에 각사(各司)에는 승부하는 법이 있었는데, 소위 승부라는 것은 비단 좋은 이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속(禮俗)이 아니며, 또한 다투는 단서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저 좋은 풍속이라는 것은 이루기는 매우 어려우나 혁파하기는 매우 쉽고, 나쁜 풍속은 이루기는 매우 쉬우나 허물어뜨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 각사에서 항상 행하는 사무(事務)는 전최(殿最)하여 출척(黜陟)하고, 한때의 작은 일은 상벌(賞罰)하여서 권징(勸懲)한다면, 자연히 사람들이 공(功)을 세우는 것을 즐겨하게 되어, 일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1. 고알(告訐)을 엄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풍속은 국가의 큰 일이며,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더욱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평시에 이와 같다면 환난(患難)을 알 수 있으니, 우선 우리 나라의 풍속으로 말하더라도 양수척(楊水尺)이라는 것은 전조(前朝)의 초기에 있었는데, 강도(江都) 때에도 또한 있었으며,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은 충렬왕(忠烈王) 때에 있었는데 공민왕(恭愍王) 때에도 있었으므로, 먼 것은 5, 6백 년, 가까운 것은 수백 년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현가(絃歌)의 풍습과 재살(宰殺)의 일은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나라 사람들 가운데 도망하여 요동(遼東)의 심양(瀋陽)으로 들어가서 동녕위(東寧衛)에 속한 자들은 관(官)에서는 중국말을 하고 집에서는 우리 나라 말을 하는데, 그 풍속이 바뀌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대개 수령(守令)이란 백성의 부모(父母)이고 또한 한 고을의 주인입니다. 본국의 풍속이 관민(官民)의 사이에 심히 예의가 있어서 수령이 범한 바가 있으면 죽게 되어도 숨기는 자가 있었고, 근심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하여 죽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근자에 이러한 풍속이 크게 변하여 헌사(憲司)에 고장(告狀)하는 것은 태반이 관리가 그 관을 고(告)하는 것이고, 혹은 종이 그 주인을 고하니, 이러한 풍속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일에 하교(下敎)하여 특별히 고알(告訐)을 금한 것은 진실로 종사(宗社)의 다행이며 만세(萬世)의 복(福)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자기(自己)의 원억(寃抑)과 탐포(貪暴)하고 불법(不法)한 일 이외에는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무고(誣告)하는 자는 모두 반좌(反坐)하게 하여, 비록 사유(赦宥)를 만났더라도 변방 고을에 옮겨 거처하도록 하여서 풍속을 돈후하게 하소서.

1. 아악(雅樂)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듣건대, 악(樂)에는 아악(雅樂)·속악(俗樂)·당악(唐樂)·향악(鄕樂)이 있고, 남악(男樂)이 있고, 여악(女樂)이 있으며, 또 번부(蕃部)·잡기(雜伎)도 있고, 또 헌가(軒架)·고취(鼓吹)의 제도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향악(鄕樂)은 신라(新羅)로부터 비롯되었고, 아악(雅樂)은 송(宋)나라에

서 대성악(大晟樂)을 내려 준 것인데, 그 종(鍾)·경(磬)·태상(太常)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중국 사신 예겸(倪謙)이 와서 헌가악(軒架樂)을 보고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으니, 이는 가히 기쁜 일입니다. 근년에 문무(文舞)·무무(武舞)의 2무(二舞)를 폐하고 또 헌가의 수를 감하였는데, 신은 성악(聲樂)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악(雅樂)을 폐하고서 쓰지 않으면 태상(太常)의 악공(樂工)이 늙어 죽어서 다할 것이니, 후일에 비록 다시 아정(雅正)한 음(音)을 듣고자 하더라도 얻어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상세히 의논을 더하여 정하여서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을 병행하여 폐하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1. 과거(科擧)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과거는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사람을 취(取)하는 상법(常法)으로서, 그 절목(節目)은 지극히 커서 세종조(世宗朝)에 크게 갖추었으니, 서적을 상고하면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금후로 진사(進士)는 시부(詩賦)를 시험보아서 취(取)하고, 생원(生員)은 의의(疑義)를 시험보아서 취하며, 급제(及第) 초장(初場)에서는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강(講)하고 겸하여 《좌전(左傳)》·《강목(綱目)》·《송감(宋鑑)》·《대전(大典)》을 강하며, 중장(中場)에서는 부표(賦表)를 시험하고, 종장(終場)에서는 대책(對策)을 시험하고, 역대(歷代)의 시무(時務)를 물으며, 마(馬)·의(醫)·악과(樂科)에 이르러서는 또한 영(令)을 파(罷)하게 하여, 구제(舊制)를 회복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의사(醫師)를 보내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 백성을 위하여 성인(聖人)을 내신 것은 하늘이고, 천심(天心)을 받들어 만민(萬民)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성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8도(八道)의 주·군(州郡)에 모두 수령(守令)을 두어서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고 백성을 옷입고 밥먹게 하며, 또 각기 교수(敎授)·훈도(訓導)를 두어서 경학(經學)·예의(禮義)를 가르치고 있으니, 성인(聖人) 군사(軍師)의 책임은 매우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질병의 우환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바이므로, 관(官)을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어서 그 재앙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신민(臣民)이 임금[堯舜]의 밑에 있으면서, 의사(醫師)가 있어 그 약(藥)을 맡고 의원(醫員)이 있어 그 병(病)을 진단하니, 진실로 사람마다의 큰 행복입니다. 외방의 각 관에 이르러서는 비록 의생(醫生)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그 수를 채울 뿐이고, 비록 심약(審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빈궁한 마을의 백성들이 뜻밖에 질병에 걸리면 심하게 괴로워하는 상황을 귀와 눈으로는 차마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율학(律學)의 생도(生徒)는 매 주(州)마다 1인씩 맡아서 취(取)하니, 빌건대 이 예에

의하여 매 현(縣)에서 1인, 군(郡)에서 2인, 도호부(都護府) 이상에서 3인씩을 취하여 전의감(典醫監)에 소속시켜서, 1년이나 3년간 의서(醫書)를 강독(講讀)하고 의사(醫事)를 학습하게 하여, 각기 산관(散官)을 제수하여서 임시로 그 맡은 일을 알게 하고,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등을 주어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전조(前朝) 의사(醫師)의 예에 의거하여 아무 관[某官] 심약(審藥)이라고 칭하고, 특별히 그 집의 요역(徭役)을 감면하며, 향약(鄕藥)을 사용하여 한 고을의 백성을 구하여 그 성과가 있는 자는 그 자급을 더하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포폄(褒貶)하게 하며, 3년 만에 체대(遞代)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왕정(王政)은 이에 막대해져서 인수(仁壽)의 강역(疆域)에 사는 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승사(僧司)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중국의 관제(官制)에 천하의 주·군(州郡)에는 모두 승강도 기사(僧綱道紀司)가 있거나 혹은 승도회사(僧徒會司)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양종(兩宗) 판사(判事)가 바로 거기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는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금후로 양종에서는 그대로 판사(判事) 1원(員)을 두고, 4품 이하의 6품계(品階)에 또한 각각 2원(員)을 두되 중과 조관(朝官)으로써 참여하여 제수하게 하고, 각기 도제조(都提調) 1인·제조(提調) 2인을 두어 경외(京外) 승인(僧人)의 일을 고찰하게 하며, 외방은 매 고을마다 승사(僧司)를 두되 중과 품관 향리(品官鄕吏) 각 1인이 하게 하소서. 수령과 감사는 검거(檢擧)하여, 소사(小事)는 태죄(笞罪)로 수령이 처단하고, 중사(中事)는 장죄(杖罪)로 감사가 처단하며, 도형(徒刑)·유형(流刑)의 죄는 양종(兩宗)으로 옮겨 시행하고, 사죄(死罪) 이상은 계문(啓聞)하여 취지(取旨)하게 하소서.

1. 사장(社長)을 금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국에는 중이 있으면서 도사(道士)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중은 있는데 도사가 없으니, 이는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근일에 경외(京外)의 남녀 노소가 사장(社長)이라고 칭하고 혹은 거사(居士)라고 칭하니, 이것은 또한 도사에 비교되는 것으로서 중도 아니고 속인(俗人)도 아닌데, 그 생업(生業)을 폐하고서 차역(差役)을 피할 것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외방에서는 천만 명이 무리를 이루고서 절에 올라가 향(香)을 불사르고, 경중에서는 마을에서 밤낮으로 남녀가 섞여 거처하고 징과 북을 시끄럽게 두들기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늙은이는 괜찮지만 젊은이는 불가하며, 어린이는 더욱 불가합니다. 군액(軍額)이 감하고, 전지(田地)는 황폐하며, 차역(差役)이 고르지 않고, 남녀가 섞이고, 양민(良民)이 죄를 짓게 되니, 사람으로서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금후로 70세 이상된 노옹(老翁) 가운데 90세 이하로 갓[笠]을 쓰고 경쇠[磬]를 두드리면서 염불하며 외우는 자 이외에, 사장(社長)의 무리를 일체 혁파한다면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1. 숙위(宿衛)를 엄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군사의 일은 모름지기 마땅히 서로 제어해야 하는 것이니, 금후로 무과(武科)는 군기(軍器)를 겸하게 하여 50인으로 정하고, 3번(番)으로 나누며, 이어서 장수(將帥) 3인을 두어 매 번마다 15인으로 하여 자문(紫門)을 숙직하게 하소서. 군기감(軍器監)에서는 혹은 사금청(司禁廳) 근처를 직숙하는데,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와 더불어 세 곳으로 나누어서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족히 상산지세(常山之勢)를 이룰 수 있으며, 만세(萬世)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신이 명(明)나라에 입조(入朝)하여 궁성(宮城)의 문(門)을 보니, 모두 내관(內官)을 써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빌건대, 이 예에 의하여 궁성의 4문(四門)과 긴요한 여러 문은 아울러 내관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는 종루(鐘樓)의 종을 쳐서 궁성의 출입을 절제하고, 인하여 도성 내의 승사(僧寺)에서 아침 저녁으로 종 치는 것을 없앰으로써 일인(一人)이 듣고 하나에서 나온 영(令)의 뜻임을 보이소서. 궁성의 네 모퉁이에는 다시 망각(望閣)을 세우고 각각 군사(軍士)를 두어 비상(非常)을 살피며, 도성의 9문(九門)은 낮에 지키는 것이 소홀하니, 다시 신명(申明)하여 출입을 엄하게 하고, 압록강(鴨綠江) 등지에 이르러서는 전조(前朝)에서 맡아 보는 관리를 두었으니, 지금도 또한 별도로 관리를 두어 관방(關防)을 엄하게 하소서.

1. 순작(巡綽)을 나누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본처(本處)를 순작하는 데 한결같이 점열(點閱)을 받으므로, 소신(小臣)이 세 곳으로 나누도록 건의(建議)하였는데, 지금 또 두 곳을 더 설치하여, 창덕궁(昌德宮)의 순청(巡廳)을 동소(東所)로 하고, 운종가(雲從街)의 순청을 서소(西所)로 하고, 의금부(義禁府)를 북소(北所)로 하고, 용양위(龍驤衛)를 남소(南所)로 하고, 중추부(中樞府)를 중소(中所)로 하여, 동소·서소·남소·북소의 4소는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을 하고 중소는 5백 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대궐은 움직이지 않고서 궁성을 호위하므로, 그 모이는 것을 모두 포시(晡時)로 정하며, 순장(巡將)도 또한 문관(文官)·무관(武官) 2원(員)을 보내어 군사의 수대로 나누어서 장수(將帥)의 권한을 나누게 한다면, 또한 만세(萬世)의 모책(謀策)이 될 것입니다.

1. 군보(軍保)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군사는 정예(精銳)한 것이 귀(貴)하지, 많은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역대(歷代)의 제도를 고찰하건대, 백성의 인구가 30만이면 호수(戶數)가 10만이고, 호수가 10만이면 군사는 3, 4만으로 으레 3정(丁)을 1호(戶)로 하여 3호에서 한 군사를 양병(養兵)하였습니다. 전일(前日)에는 사람 2정(丁)을 1보(保)로 하거나 전지 5결(結)을 또한 1보로 하여 이로써 보(保)를 만들어 군적(軍籍)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보(保)는 곧 호(戶)인데, 3정(丁)을 1보(保)로 하면, 1인(人)은 호수(戶首)가 되어 군사를 다스리고, 1인은 솔정(率丁)이 되어 농사를 다스리고, 1인은 여정

(餘丁)이 되어 평상시에는 부역(賦役)에 이바지하고 행군(行軍)할 때에는 치중(輜重)을 가지게 되니, 1보가 충실하게 됩니다. 지금은 2정을 1보로 하여 1인이 군사를 다스리고 1인은 농사를 다스리면서 또 부역에 이바지하게 되니, 이렇게 하면 보가 충실하지 못합니다. 4약호(弱戶)로써 1기병(騎兵)을 기르는 것은 3부호(富戶)로써 한 군사를 기르는 것만 같지 못한데, 하물며 평상시 차역(差役)할 때에는 전지의 많고 적은 것으로 역(役)의 가볍고 중한 것을 삼아서 부역을 고르게 하니, 어찌 우리 나라 백만의 무리를 가지고 전지 5결(結)로써 사람 1정에 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호적(戶籍)에는 이미 빠진 장정이 없으니, 만약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뽑아서 군사로 삼을 수 있고 차례로 휴식할 수도 있으며, 연고가 있으면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산성을 지키고 처자를 보호함으로써 둔전(屯田)으로 삼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습니다. 신은 비단 병가(兵家)로 하여금 족하게 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민생(民生)의 일용(日用)을 또한 두 장정을 1호(戶)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저 부실(富實)한 군대는 기력(氣力)을 바로 이루게 하여, 용감하게 할 수도 있고, 살고 죽게 할 수도 있으나, 빈약(貧弱)한 병졸은 위세가 더욱 약해져서 상을 주는 것도 무익하게 됩니다. 약한 병사 10만을 합하여 5만으로 하면 쓸 수 있지만, 그대로 10만으로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윤탁(尹鐸)은 그 호수(戶數)를 감하였고, 주(周)나라 세종(世宗)은 제군(諸軍)을 크게 줄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에서였습니다.

빌건대, 전지에 의거하는 법을 파하고 사람 3정(丁)을 1보(保)로 삼되,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는 3보로써 한 군사를 기르고, 정병(正兵)과 선군(船軍)은 2보로써 한 군사를 기르고, 팽배(彭排)와 대졸(隊卒)은 1보로써 한 군사를 기르고, 연호(煙戶)·잡색(雜色)·수성(守城) 등의 호(戶)는 또한 각기 스스로 1보(保)로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혹은 더하고 혹은 감하여 군액(軍額)이 옛날과 같이 되고, 군사가 모두 부실(富實)하게 되며, 백성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은 사후(射侯)하여 2백 보(步)를 시험하고,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는 1백 50보를 시험하고, 정병(正兵)·선군(船軍)은 1백 보를 시험하고, 팽배·대졸도 또한 1백 보를 시험하면 공현(控弦) 30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정(丁)이라도 단정(單丁)으로서 호(戶)를 세우는 것이 없을 것이고, 한 군사라도 재주가 없이 군사라고 칭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군장(軍裝)을 정비하고 점검하며, 마필(馬匹)을 고열(考閱)하고, 그 솔정(率丁) 외에는 대신 세우는 것을 엄히 세워서 이를 범하는 자는 군법으로 일을 다스리게 하소서. 갑사·별시위·팽배·대졸은 옛날 그대로 4번(番)으로 나누어 4달 동안 머무르게 하고, 선군은 2번으로 나누어 1개월 만에 서로 체대하도록 하며, 정병은 8번으로 고쳐 나누어서 단지 2달 동안 머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휴식하는 것도 마땅함을 얻고 농사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중(京中)에서는 습진(習陣)을 옛날대로 1개월 동안 두 번 검열하고, 외방에서는 매달 두번 행하면 서리(胥吏)가 침어(侵漁)하여 취하는 것도 무익한 일입니다. 그 작은 고을의 군사는 군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많으니, 금후로 매년 봄·가을 두 중월(仲月)에 각기

거진(巨鎭)에 모여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습진하고, 10월에 이르러 유신(儒臣)을 나누어 보내어 주진(主鎭)에 나아가 검열하고서 상벌(賞罰)을 행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정병(正兵) 10만이 흉노(凶奴) 가운데서 횡행(橫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옹성(擁城)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중문을 세우고 목탁(木拆)을 쳐서 도둑을 방어하였습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요동(遼東)·광녕(廣寧)으로부터 연경(燕京)의 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옹성(擁城)을 설치하여 중문(重門)을 두고 문 밖에는 담장을 쌓아서 도둑이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주(義州)·안주(安州)는 진실로 길[道]이 부족하고, 평양(平壤)·한도(漢都)는 모두 단문(單門)을 설치하였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경성(京城)은 중문(重門)이 필요없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빌건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무릇 성자(城子)의 여러 가지 일을 곡진하게 포치(布置)하여서 만세(萬世)에 방비하도록 하소서.

1. 방리(坊里)를 점고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동반(東班)·서반(西班) 각품(各品)의 당번 군사(當番軍士)는 진실로 하루라도 관문(關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방리(坊里)의 사람 가운데 혹 전함(前銜)이거나 혹은 하번(下番)이거나 혹은 공사 천구(公私賤口)이거나 혹은 제색 장인(諸色匠人)으로서 출번(出番)한 자, 혹 혼인(婚姻)·상장(喪葬)하거나 혹은 귀근(歸覲)·소송(訴訟)하거나 혹은 농장(農莊)에서 힘써 농사를 짓거나 혹은 다른 고을에서 장사를 하는 자는 모두 그 하는 바를 맡아서 살아나가는 즐거움을 이루게 됩니다. 근자에 이장(里將)이 방리(坊里)의 사람을 기록하여 점고에 빠진 자는 장차 죄를 다스리는데, 녹(祿)을 먹는 조관(朝官)도 그렇게 하고, 번상(番上)하는 병사도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어찌 산업(産業)을 다스려서 어버이를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위 방리군(坊里軍)이라는 것은 연호(煙戶)·잡색(雜色)으로서, 위급할 때 성(城)을 오르는 일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빌건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위로는 종친·재추로부터 아래로는 천례(賤隷)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호적(戶籍)에 기록하여 혹 빠지는 것이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방리의 사람은 단지 다리와 길을 수치(修治)하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선군(船軍)에 대한 의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강원도(江原道)의 병선(兵船)은 고성(高城)·삼척(三陟)의 포구 이외에는 강릉(江陵)·간성(杆城)과 같이 모두 못[池] 가운데에 두었으니, 문안의 도둑이 있으면 비록 역수(役數)가 천 인(人)이거나 비록 수십 일(日)에 이르더라도 어찌 능히 큰 제방을 넘어서 바다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친히 편부(便否)를 살펴서 폐지하거나 그대로 둔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소도둑[牛賊]을 금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소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을 갈아서 곡식을 생산하여 주므로 기르는 것이니, 그 소용됨이 지극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가 많이 있었으나, 근일과 같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가죽 갑옷을 감독하여 만들어서 거듭 상용(常用)으로 삼게 되니, 비단 도둑질하여 죽일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잡아 죽이되, 단지 백정(白丁)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민(良民)도 또한 하고, 단지 연음(宴飮)에 쓸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씁니다. 이러한 풍습이 날로 성하여 다시 그칠 수가 없으니, 잡은 소의 뼈가 길에 널려서 심지어는 소의 머리뼈를 가지고 다리[橋]를 만들어서 작은 시내를 건너는데, 이것이 어찌 도성(都城) 아래에서 차마 볼 일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소를 죽이는 것이 비록 나쁜 행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거가(巨家)를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사서 죽이는 것을 나누지 말고 모두 극형(極刑)에 처치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그 절린(切隣)·관령(管領)으로 능히 알려서 잡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와주(窩主)의 집을 즉시 주고, 이어서 변방으로 옮긴다면 자연히 소를 죽이는 자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은 의식(衣食)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진고(陳告)하는 것을 한정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는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잠저(潛邸)에 계실 때부터 전하여 얻은 자들로서, 지금까지 80년 동안에 무뢰한 무리들이 혹은 양민(良民)을 유혹하고 혹은 공사 천구(公私賤口)를 유혹하여 감로사의 노비로 삼았는데, 그들을 뇌물로 박거나 진고(陳告)하거나, 상을 받는 것을 생업(生業)으로 삼거나 멸망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빌건대, 사천(私賤)은 정유년에 한정(限定)하였던 예와 같이 소위 감로사의 노비라고 하는 자는 금년 9월 그믐날로 한정하여 그 불실(不實)함을 진고하는 자는 압량위천(壓良爲賤)으로 논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도둑을 잡는 것을 정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정병(正兵)·여수(旅帥)는 재간이 있는 자를 가려 그 무예(武藝)를 시험하고서 이를 제수하니, 으레 모두 관품(官品)에 따라 서반(西班)의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며, 아무 고을[某州] 몇 째[第幾]의 여수(旅帥) 겸 포도관(捕盜官)이라 하여서 인하여 경내의 도둑을 잡는 임무를 맡게 하였으니,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견책하여 포폄(褒貶)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도적이 그치고 거리에서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니, 어찌 성조(盛朝) 백성의 다행이 되지 않

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중화(中和)의 지극함을 세워 태평(太平)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어, 보좌하는 신하를 날로 이끌어 치도(治道)를 헤아려 굳건히 하시고, 임금께서 어거하시는 권세를 잡고 형벌이나 상을 주는 권한을 지키시어 사람을 믿고 간(諫)함을 받아들여 진실로 시종(始終)을 같게 하신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에게 전교하기를,

"상서(上書)한 일 가운데 행할 만한 것에 부표(付標)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39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예술-음악(音樂) / *인사-선발(選拔)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 / *농업-축산(畜産) / *신분-천인(賤人)

《 예종 006 01/07/07(무자) / 동지사 양성지의 의견대로 을해년을 세조 원년으로 삼게 하다 》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지금 계감청에서는 병자년을 세조 원년으로 칭하였고, 춘추관에서는 을해년을 원년으로 칭하였으니, 어찌 된 것인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양성지(梁誠之)** 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을해년에 즉위하셨으니, 만약 이 해로 칭하지 않는다면 원래 노산(魯山)에 관계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세기대전(世記大全)》을 상고하여 보아도 또한 을해년을 원년으로 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원전】 8 집 40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예종 006 01/07/08(기축) / 이보다 앞서 고령군 신숙주가 군사의 고신을 속히 주도록 청하다 》

이보다 앞서 고령군 신숙주가 아뢰기를,

"군사(軍士)의 고신(告身)은 마땅히 속히 주어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신숙주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한명회(韓明澮)·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우의정 윤자운(尹子雲)·좌찬성 김국광(金國光)·우찬성 한계미(韓繼美)·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예조 판서 임원준(任元濬)·좌참찬 유수(柳洙)·우참찬 이극배(李克培)·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예조 참판 이승소(李承召)·공고 참판 정숭조(鄭崇祖) 등을 불러서 의논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관직을 제수한 지 10일 내에 고신을 성첩(成牒)하고 위부(衛部)를 나누어 내병조(內兵曹)에 두며, 부장(部將)으로 하여금 그 군사가 입번(入番)하는 날에 전의 고신을 거두어 장부를 만들어서 병조에 올리고 대조하여서 새 고신을 주게 하되, 일일이 면대하여 주게 하소서. 만약 병조의 낭관과 부장이 고의로 오래 머물러 지체하여 막고서 어렵게 만든 자는 즉시 죄를 다스리소서."

하고, 이조 참판 이형(李蘅)·호조 참판 한치인(韓致仁)·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영은(李永垠) 등이 말하기를,

"군사의 고신을 부장(部將)이 대조한다면 정치가 여러 부문에서 나가게 되므로 실로 옳지 못합니다. 병조에서 제수한 뒤 한달 내에 즉시 내어 주고, 또 헌부로 하여금 병조에서 고신을 준 기한에 의거하여 고검(考檢)하여서, 만약 기한이 지나서도 주지 않았으면 해당 낭관을 파직하소서."

하니, 정인지 등의 의견에 따랐다.

【원전】 8 집 40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예종 007 01/08/21(임신) / 양성지 · 송처관 등에게 월랑에 모여서 종친 · 문신 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 행 중추부 첨지사(行中樞府僉知事) 송처관(宋處寬)·정자영(鄭自英) 등에게 명하여, 사정전(思政殿)의 월랑(月廊)에 모여서 종친(宗親)·문신(文臣)·제장(諸將)·제학 유생(諸學儒生) 등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41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예종 007 01/09/18(무술) / 양성지 · 오응 · 이극돈 · 김영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겸 춘추관 지사(兼春秋館知事)로, 오응(吳凝)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이극돈(李克墩)을 우윤(右尹)으로, 김영유(金永濡)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박숭질(朴崇質)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장계이(張繼弛)를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윤자(尹慈)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양순석(梁順石)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이계손(李繼孫)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이계손은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기강(紀綱)이 엄명(嚴明)하고 자혜(慈惠)가 백성에게 미쳤으므로, 이르는 곳마다 수령(守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나 상대하게 되어서는 그의 온화한 말에 사람들이 스스로 다행으로 여겼다.

【원전】 8 집 4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예종 008 01/10/01(신해) / 최항 · 윤자운 등에게 명하여, 운수군 이효성 등 18인에게 제서를 강하게 하다 》

임금이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우의정(右議政) 김국광(金國光)·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구종직(丘從直)·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행 중추부 첨지사(行中樞府僉知事) 송처관(宋處寬)·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子英)·행 호군(行護軍) 이파(李坡)·우부승지(右副承旨) 정효상(鄭孝常) 등에게 명하여,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 등 18인에게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와 《무경(武經)》 등 제서(諸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원전】 8 집 42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예종 008 01/10/10(경신) / 공조 판서 양성지가 상소하여 여러 가지 일을 진술하니,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다 》

처음에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하여 여러 가지 일을 진술하니, 임금이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의논한 바가 모두 근사(近似)하나 다만 사장(社長)을 정역(定役)하는 일은 불가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니,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대답하기를,

"사장의 역을 면제하여야 할지 아니할지의 여부는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면제해 주라는> 전지(傳旨)가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없으면 어찌 역을 지우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착한 마음으로 성심껏 일하는 자는 그 역을 꺼리지 않고 사장이 될 것이나, 성심이 없는 자는 스스로 사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8 집 423 면

【분류】 *정론(政論) / *재정-역(役)

《 예종 008 부록 / 《예종실록》 편수관 명단 》

성화(成化) 6년 경인(庚寅) 2월에 왕의 명을 받아 사고(史庫)에서 사초(史草)를 내었다. 성화 7년 신묘(辛卯) 12월에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찬술하여 끝을 맺고, 비로소 《예종실록(睿宗實錄)》을 찬술하기 시작하여 성화 8년 임진(壬辰) 5월에 끝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영관사(領館事)

수충 협책 정난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예문관홍문관관상감사 예조 판서 고령 부원군(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高靈府院君) 신(臣) 신숙주(申叔舟)

수충 위사 협책 정난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상당 부원군 겸 영경연사 병조 판서(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上黨府院君兼領經筵事兵曹判書) 신(臣) 한명회(韓明澮)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난 좌익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영성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寧城府院君) 신(臣) 최항(崔恒)

지관사(知館事)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량 좌리 공신 숭정 대부 판돈녕부사 겸 지경연사 진산군(推忠靖難翼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判敦寧府事兼知經筵事晉山君) 신(臣) 강희맹(姜希孟)

순성 명량 좌리 공신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 겸 홍문관 제학 남원군(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南原君) 신(臣) **양성지(梁誠之)**

동지관사(同知館事)

순성 좌리 공신 가정 대부 동지중추부사 동래군(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同知中樞府事東萊君) 신(臣) 정난종(鄭蘭宗)

순성 좌리 공신 가정 대부 공조 참판 복창군(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工曹參判福昌君) 신(臣) 김수령(金壽寧)

가선 대부 행 의흥위 호군(嘉善大夫行義興衛護軍) 신(臣) 예승석(芮承錫)

수찬관(修撰官)

통정 대부 예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通政大夫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 신(臣) 김지경(金之慶)

통정 대부 예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通政大夫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 신(臣) 유권(柳卷) 권

편수관(編修官)

중직 대부 수 예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참교(中直大夫守藝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 신(臣) 김유(金紐)

통훈 대부 상의원 정(通訓大夫尙衣院正) 신(臣) 고태정(高台鼎)

통훈 대부 행 예문관 전한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홍문관 전한 승문원 참교(通訓大夫行藝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弘文館典翰承文院參校) 신(臣) 임사홍(任士洪)

통훈 대부 행 승문원 참교(通訓大夫行承文院參校) 신(臣) 성숙(成俶)

통훈 대부 행 예문관 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감(通訓大夫行藝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 신(臣) 박시형(朴始亨)

어모 장군 행 용양위 부중랑 사직(禦侮將軍行龍驤衛副中郎司直) 신(臣) 김신(金新)

통훈 대부 행 예문관 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通訓大夫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최경지(崔敬止)

통훈 대부 행 예문관 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승문원 교감(通訓大夫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 신(臣) 노공필(盧公弼)

기주관(記注官)

통훈 대부 행 예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通訓大夫行藝文館敎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정휘(鄭徽)

통훈 대부 행 성균관 전적(通訓大夫行成均館典籍) 신(臣) 유자분(柳自汾)

중훈 대부 행 예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中訓大夫行藝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노분(盧盼)

중훈 대부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中訓大夫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김극검(金克儉)

중훈 대부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中訓大夫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최숙정(崔淑精)

봉정 대부 행 예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奉正大夫行藝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박시형(朴時衡)

통훈 대부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通訓大夫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김윤종(金潤宗)

봉정 대부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奉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손비장(孫比長)

통선랑 행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승문원 교리(通善郎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남계당(南季堂)

기사관(記事官)

조봉 대부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朝奉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남윤종(南潤宗)

조봉 대부 행 사헌부 감찰 겸 승문원 교검(朝奉大夫行司憲府監察兼承文院校檢) 신(臣) 김중연(金仲演)

봉훈랑 행 사헌부 감찰(奉訓郎行司憲府監察) 신(臣) 최철관(崔哲寬)

봉직랑 행 예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奉直郎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안침(安琛)

봉직랑 행 예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奉直郎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채수(蔡壽)

봉훈랑 행 예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奉訓郎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김윤(金崙)

승의랑 행 승정원 주서(承議郎行承政院注書) 신(臣) 김예원(金禮源)

봉직랑 행 예문관 봉교 겸 경연 사경(奉直郎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 신(臣) 손창(孫昌)

봉직랑 행 예문관 봉교 겸 경연 사경 홍문관 박사(奉直郎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弘文館博士) 신(臣) 양자유(楊子由)

승훈랑 행 예문관 대교 겸 경연 설경 홍문관 저작(承訓郎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弘文館著作) 신(臣) 김종(金悰)

승훈랑 행 예문관 대교 겸 경연 설경(承訓郎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 신(臣) 김미(金楣)

선교랑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宣敎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臣) 강거효(姜居孝)

선교랑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宣敎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신(臣) 안진생(安晉生)

통사랑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通仕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臣) 정이교(鄭以僑)

통사랑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通仕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臣) 박처륜(朴處綸)

계공랑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 홍문관 정자(啓功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신(臣) 김직손(金直孫)

통사랑 행 예문관 검열 겸 경연 전경(通仕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신(臣) 이박(李博)

【원전】 8 집 43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성종 즉위년

《 성종 001 00/12/04(계축) / 대왕 대비가 원상들에게 호패법에 대해 묻자 원상들이 이를 논의하다 》

대왕 대비가 원상(院相)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쌀값이 솟고 비싸서 면포(綿布) 1필의 값이 쌀 4, 5두(斗)라고 하고, 또 듣건대, 호패(號牌)와 군적(軍籍)의 법이 제정된 후로부터 백성이 점차 빈곤하다고 한다. 옛날에 내가 세조(世祖)의 거둥을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울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가 호패(號牌)와 군적(軍籍)의 불편(不便)함을 말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싫어하고 괴롭게 여김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무엇이 나라에 이익이 있겠는가? 일찍이 듣건대, 호패(號牌)의 법은 태종(太宗)께서 이를 시행하다가 얼마 안가서 폐지했다고 하며, 대행왕(大行王)도 일찍이 그 폐단을 알고서 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부왕(父王)의 법을 고치는 것을 어렵게 여겨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세조(世祖)께서 일찍이 대행왕(大行王)에게 이르기를, '내가 한 일은 창업(創業)과 다름이 없는 까닭으로 경장(更張)한 것이 많지마는, 너는 그 편부(便否)만 시험하여 혹은 따라 하고 혹은 개혁하여 세종(世宗)의 수성(守成)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호패(號牌)와 군적(軍籍)의 두 가지 법을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경(卿) 등의 생각에는 어떻겠는가?"

하니 당직(當直)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이 아뢰기를,

"육조 판서(六曹判書) 이상의 관원을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곧 명하여 육조 판서(六曹判書) 이상 및 도총관(都摠管) 등을 불러 빈청(殯廳)에 모여서 이를 의논하게 하니,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영의정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좌의정 윤자운(尹子雲)·청천군(淸川君) 한백륜(韓伯倫)·지사(知事) 윤사흔(尹士昕)·좌찬성(左贊成) 한계미(韓繼美)·형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호조 판서 서거정(徐居正)·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동지사(同知事) 한치형(韓致亨) 등은 의논하기를,

"처음에 호패(號牌)의 법을 제정할 때는 양민(良民)·천인(賤人)의 인구(人口)의 수효를 알려고 한 것인데, 지금은 이미 대개 수효를 알았으니 비록 호패(號牌)가 없더라도 무엇이 손해이겠습니까? 또 자신(自身)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호패를 되돌리는 이가 없으니, 반드시 호패가 없는 사람이 대신 이를 차고 있으면서 그 협잡을 시행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법을 범하는 사람이 많아

졌으니 이를 혁파(革罷)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우의정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노사신(盧思愼)·병조 판서 이극배(李克培)·우참찬(右參贊) 홍응(洪應)·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 김겸광(金謙光) 등은 의논하기를,

"호패(號牌)는 잠정적으로 그전대로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정인지·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최항·홍윤성·조석문·홍달손·김질·윤자운·한백륜·윤사흔·한계미·노사신·강희맹·임원준·홍응·서거정·김겸광·강곤·신승선·한치형은 의논하기를,

"군적(軍籍)에 작보(作保)한 후로부터 무릇 민호(民戶)가 품팔이 해서 밥먹는 사람이 모두 도망해 가버렸으며, 호주(戶主)의 봉족(奉足)도 또한 능멸(陵蔑) 침학(侵虐)하게 되니, 군대의 정원(定員)은 전일보다 증가한 듯하지마는,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열악(劣弱)은 예전보다 심한 편입니다. 또 번상(番上)의 수효가 곱절이나 많게 되니 서울의 시장값[市價]이 뛰어 오르는 것은 실상 이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조(世祖)께서 처음에 이 법을 설치한 것은 온 나라 장정(壯丁)의 수효를 알고 난 후에 군대의 정원(定員)을 헤아려 정하려고 한 것이니, 지금 병조(兵曹)로 하여금 예전의 군대 수효를 자세히 상고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그 번상(番上)의 법도 또한 헤아려 정하여 괴롭고 편안함을 균일(均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김국광과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법을 제정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갑자기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사에게 보정(保丁)을 주는 것은 전지(田地)와 고공(雇工)을 모두 계산하지 말아야 하며, 충순위(忠順衛)의 정병(正兵)을 나누어 6번(番)으로 만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양성지는 의견을 아뢰기를,

"군적(軍籍)은 정파(停罷)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정(丁)으로 1보(保)를 만들고 전지(田地)로써 장정(壯丁)을 준(準)하는 법을 폐지시키소서. 또 부자(父子)와 인리(隣里)를 완취(完聚)시켜 보(保)를 만들어 멀리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재주가 우수한 사람을 시험하여 호주(戶主)로 삼고, 정원수(定員數)를 헤아려 정하여 나누어 8번(番)으로 만들어서 2개월 만에 서로 교체(交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다시 상량(商量)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원전】 8 집 443 면

【분류】 *상업(商業) /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역(軍役) / *물가-물가(物價)

성종 1년 《 양성지 - 성종 1년 .... 6 건 》

성종 002 01/01/18(정유) / 여러 신하들이 장순빈·의경 세자·수빈의 칭호를 추숭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성종 002 01/01/22(신축) / 장순빈의 시호·능호와 의경 세자의 시호·묘호·능호와 수빈의 휘호를 정하다

성종 003 01/02/09(무오) / 정창손·신숙주·한명회 등의 원상과 대신들에게 《대전》의 호전과 공전을 교정하게 하다

성종 006 01/06/24(신미) / 예조의 건의에 따라 대신들로 하여금 문소전의 방의 숫자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다

성종 007 01/08/12(정사) / 예종의 상제와 역리(驛吏)의 이역(移驛)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성종 008 01/12/26(기사) / 3전에 잔치를 올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술과 풍악을 하사하다

《 성종 002 01/01/18(정유) / 여러 신하들이 장순빈 · 의경 세자 · 수빈의 칭호를 추숭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

이보다 앞서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가 장순빈(章順嬪)을 추숭(追崇)하여 의경 세자(懿敬世子)에게 승부(陞祔)시키고, 수빈(粹嬪)의 칭호(稱號)를 추숭(追崇)하는 등의 일을 청하니,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도록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춘추관에서 상고하여 아뢰니,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관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의 관원을 불러 와서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대비(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이 일은 우리 조정에서는 전례(前例)가 없으니, 여러 재상(宰相)들은 절대로 뇌동(雷同)하지 말고서 각기 소견을 진술하라."

하였다. 장순빈(章順嬪)을 추숭(追崇)하여 부묘(祔廟)하는 일을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옛날의 성인(聖人)이 법을 제정할 적에 제후(諸侯)는 두 적실(嫡室)을 못두게 했으니, 이는 난(亂)의 근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뒷세상에서는 옛날의 것을 본받지 않고서 인정이 내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에 예관(禮官)이 인용(引用)한 부현(傅玄)의 의논과 인종(仁宗) 때에 예관(禮官)이 의논한, '일제(一帝)는 일후(一后)라야 된다.'고 한 말이 정론(正論)에 합당합니다. 본조(本朝)에서도 병부(並祔)하는 예(禮)는 없는데, 지금에 와서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드는 것은 신(臣)의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므로, 별묘(別廟)에 천향(薦享)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홍윤성(洪允成)·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우찬성(右贊成)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刑曹判書) 함우치(咸禹治)·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이조 참판(吏曹參判)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두 적실(嫡室)이 없었으므로, 비록 계실(繼室)일지라도 정적(正嫡)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뒷세상의 제왕(帝王)은 혹시 미천(微賤)한 지위에서 일어난 이가 있어서 잠저(潛邸)에서 맞이한 원비(元妃)가 미처 정위(正位)도 되기 전에 별세(別世)한 이가 있게 되고, 그 즉위(卽位)한 후에 잇달아 세워서 황후(皇后)가 된 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비(元妃)가 이미 정적(正嫡)이 되었으니 예로써는 마땅히 소급 책봉(冊封)해야 될 것이고, 잇달아 세워진 이도 또한 이미 정위(正位)가 되었으며 이도 또한 정적이 될 수가 있으니, 이래서 병부(並祔)하는 예가 마지못하여 생긴 것입니다. 송(宋)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혹은 비(妃)가 둘도 되고 혹은 셋도 되므로 모두 선후(先後)의 차례로 병부(並祔)했으니, 지금에 와서도 이미 두 적실(嫡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찌 병부(並祔)를 다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비(元妃)가 비록 지극히 미천(微賤)하더라도 신자(臣子)로서는 의논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장순빈(章順嬪)은 세조조(世祖朝) 때에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이미 동궁(東宮)에 정위(正位)가 되어 정빈(正嬪)으로 맞이하면서 육례(六禮)를 빠짐없이 행하여 세자(世子)에게 배필되었으며, 양전(兩殿)에 사랑을 받고 동궁(東宮)을 도와 명망과 덕행이 이미 높았으니, 다른 미천한 사람과 비교가 안됩니다. 그를 소급 책봉(冊封)하고 승부(陞祔)하는 일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혼전(魂殿)의 경우는 옛날에 의거(依據)할 수는 없고, 전조(前朝)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합향(合享)하는 예도 또한 인정(人情)에 따른 것뿐이니 혼전에 합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존시(尊謚)를 의논하여 명호(名號)를 정하고, 책봉(冊封)하는 일을 천천히 준비하였다가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신위(神位)가 부묘(祔廟)되는 날을 기다려서 책봉하여 같이 부묘한다면 실로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은 삼가 송(宋)나라 원풍 연간(元豊年間)의 상정 예문소(詳定禮文所)의 말을 상고해 보건대, 거기에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부부(夫婦)는 일체(一體)이므로, 혼인(婚姻)하면 음식을 같이 먹고, 제사지내면 궤연(几筵)을 같이한다.」 하였으니, 일찍 묘(廟)를 달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은 미천했으나 뒤에 현달(顯達)했다든가 앞에 장가간 부인과 뒤에 장가간 계실(繼室)도 모두 적실(嫡室)입니다. 뒷세상에서는 혹은 그 미천(微賤)한 이유로, 혹은 그 계실(繼室)인 이유로 이를 별묘(別廟)

에 안치(安置)하여 궤연(几筵)을 같이하는 의리(義理)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예의 본뜻이 아닙니다. 태조(太祖)의 효혜 황후(孝惠皇后)와 태종(太宗)의 숙덕 황후(淑德皇后)와 진종(眞宗)의 장회 황후(章懷皇后)가 실상은 모두가 원비(元妃)이고, 효장 황후(孝章皇后)는 태조(太祖)의 계후(繼后)인데도 모두 별묘(別廟)에 제사하게 되니, 예에 있어서는 미안한 것입니다. 청컨대 태묘(太廟)에 승부(陞祔)하여 사시(四時)로 배향(配享)하게 하소서.' 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병부(並祔)하는 예는 다만 송나라 조정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歷代)에서도 대개 많이 이를 행하였습니다 장순빈은 세조의 초년(初年)에 이미 육례(六禮)를 갖추어 세자빈(世子嬪)으로 삼아 동궁(東宮)에 정위(正位)가 되었으니,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왕비(王妃)로 소급 책봉(冊封)하고, 대행왕(大行王)의 부묘(祔廟)할 때를 기다려 승부(陞祔)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소급 책봉하는 예는 졸곡(卒哭) 후에 이를 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국광(金國光)과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영은(李永垠)은 의논하기를,

"지금 옛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사왕(嗣王)이 전모(前母)를 추숭(追崇)한 예(例)가 없으니, 장순빈(章順嬪)을 추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종(睿宗)이 세자(世子)가 되었을 때에 세조(世祖)께서 장순(章順)으로 빈(嬪)을 삼아서 이미 왕비와 적체(敵體)가 되었으니 추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 마땅히 추숭하여 왕비(王妃)로 삼을 것이나 한결같이 송(宋)나라 태종(太宗)이 효혜 황후(孝惠皇后)를 별사(別祀)한 예에 의거하여, 따로 묘(廟)를 세워서 종묘(宗廟)의 의식(儀式)과 같이 이를 제사하되 같이 부묘(祔廟)는 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장순빈(章順嬪)은 세조(世祖)께서 대행왕(大行王)을 위하여 육례(六禮)를 갖추어 맞이하여 정빈(正嬪)으로 삼았으나, 불행히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행왕이 즉위(卽位)해서는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미처 소급하여 책봉(冊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상(主上)께서 왕통(王統)을 계승했으니 예로써는 추숭(追崇)하여 승부(陞祔)하는 데에 합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행왕(大行王)이 일찍이 비(妃)로 책봉하지 아니했으니 소급해 의논할 수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옛날의 제왕(帝王)들은 혹은 특별히 기신(起身)하여 제왕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지(旁支)로써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기도 했는데, 그 정적(正嫡)이 일찍이 별세(別世)하여 미처 정위(正位)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모두 그 낳은 어머니를 소급 책봉(冊封)했으니, 비록 미천(微賤)할지라도 모두 추숭(追崇)하여 합향(合享)했던 것입니다. 지금 장순빈은 비록 미처 책봉하지는 못했더라도 그가 대행왕의 정적(正嫡)이 된 것은 꼭 같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선대(先代)를 계승하여 후사(後嗣)가 되었으니, 어찌 생존(生存)하고 별세(別世)한 이유로 그 승봉(承奉)의 예를 달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책봉하여 비(妃)로 삼더라도 승부(陞祔)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별도로 묘(廟)를 세워야 할 것이

다.' 하니, 이는 예(禮)의 두 적실(嫡室)을 못 두게 한 설(說)에 의거하여 말한 것입니다. 만약 예문(禮文)에 구애된다면 당·송(唐宋) 이래로 황후(皇后)가 비록 3인, 4인이 되더라도 모두 승부한 것은 또 무슨 소견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금(古今)이 적의(適宜)한 것이 다르니, 마땅히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책봉하여 비(妃)로 삼았다면 또한 어찌 다른 묘(廟)에 향사(享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臣)의 뜻으로는 마땅히 졸곡(卒哭) 후에 소급하여 책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내의 제향(祭享)은 길흉(吉凶)의 적의(適宜)가 다르니 잠정적으로 다른 묘에 향사했다가 3년상(喪)이 끝나기를 기다려 부묘(祔廟)할 때에 합부(合祔)한다면 정리(情理)와 예절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경 세자(懿敬世子)를 추숭(追崇)하는 일과 수빈(粹嬪)의 칭호(稱號)에 대한 일에 있어서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이 의논하기를,

"제왕(帝王)이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면 의리로서는 사친(私親)을 돌볼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의 논변(論辨)에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의경 세자(懿敬世子)를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이름은 부르지 않으며, 전하(殿下)는 효질(孝姪)이라고 일컫는 것이 의리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천성(天性)의 친(親)은 그 의리가 또한 크므로 추숭(追崇)의 전례(典禮)는 선유가 이를 논하기를 또한 상세히 했던 것입니다. 의경(懿敬)이 이미 세자(世子)가 되었고 다른 작호(爵號)는 없으니, 존숭(尊崇)할 만합니다. 마땅히 왕(王)으로 추숭하여 시호(諡號)를 올리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시조(始祖)의 불천위(不遷位)로 삼아, 묘(廟)와 능(陵)은 시호(諡號)에 따라 칭호(稱號)를 삼고, 종(宗)이라고 일컫지 말며, 관(官)에서 제전(祭奠)을 갖추게 하고, 제사를 주관할 만한 사람을 별도로 의논하여 그로 하여금 세습(世襲)하도록 하소서. 수빈(粹嬪)은 의경 세자에게는 이미 동궁(東宮)에 배필이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별다른 칭호를 올려서 책봉하여 비(妃)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大)라고 일컬을 수는 없으며, 3년상(三年喪)이 끝나기를 기다려 예물(禮物)을 갖추어 책봉을 올리는 것이 실상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최항(崔恒)·심회(沈澮)·조석문(曹錫文)·홍달손(洪達孫)은 의논하기를,

"제도를 정하는 것은 모름지기 옛날의 전례(典禮)에 의거해야 되겠지마는 예절을 의논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情理)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臣)은 삼가 신안 호씨(新安胡氏)의 설(說)을 상고해 보건대,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後嗣)된 자는 후사로 한 분을 일컬어 부모(父母)라 하고, 그 낳은 부모를 일컬어 백숙부모(伯叔父母)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대의(大義)이고,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전적으로 마음을 써야만 할지라도 어찌 사은(私

恩)을 다 끊을 수야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체(事體)를 헤아려 따로 특수한 칭호를 제정하여, 만약 황백고(皇伯考) 모국 대왕(某國大王)이라고 일컬어 그 자손(子孫)으로 하여금 작호(爵號)를 물려받고 제사를 받들도록 한다면 대통(大統)에도 혐의(嫌疑)의 실수가 없을 것이고,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도 또한 존숭(尊崇)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옛 제도에 의거하여 의경 세자(懿敬世子)를 소급하여 책봉해서 의경왕(懿敬王)으로 삼아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축문(祝文)에는 효질(孝姪)이라 일컫고는,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도록 하고, 수빈(粹嬪)을 책봉하여 왕비(王妃)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의 정리(情理)에도 편안하고 옛날의 예절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함우치(咸禹治)·이극배(李克培)·서거정(徐居正)·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예(禮)에, '후사(後嗣)가 되는 사람은 그 아들이 되므로, 비록 사친(私親)이라도 돌볼 수가 없다.' 고 하였지만, 그러나 역대(歷代)의 제왕(帝王)들이 방지(旁支)로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여 자기를 낳은 부모(父母)를 존숭(尊崇)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의경 세자(懿敬世子)는 마땅히 소급해 왕(王)으로 삼아 시호(諡號)를 올리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는 휘호(徽號)를 가(加)하게 하소서."

하였다.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은 삼가 살펴보건대, 한(漢)나라 애제(哀帝)와 송(宋)나라 영종(英宗)을 낳은 부모(父母)는 모두가 번왕(藩王)이며 번왕비(藩王妃)였는데도 모두 황제(皇帝)라 일컫고 황후(皇后)라 일컬었는데, 하물며 의경 세자(懿敬世子)는 동궁(東宮)에 정위(正位)였었고, 수빈(粹嬪)은 세자(世子)의 정빈(正嬪)이니, 의경 세자는 마땅히 종(宗)으로 일컬어 왕(王)으로 봉하고, 묘(墓)를 승격시켜 능(陵)으로 삼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야 할 것이며, 축문(祝文)에는 황백고(皇伯考) 질자(姪子) 신(臣)이라 일컫고, 수빈(粹嬪)은 왕대비(王大妃)로 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의묘(懿廟)는 마땅히 한(漢)나라 정도공황(定陶恭皇)과 송(宋)나라 복안의황(濮安懿皇)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소급해 봉하여 왕(王)으로 삼고, 별도로 묘(廟)를 세우고 그 의제(儀制)와 향사(享祀)는 한결같이 종묘(宗廟)와 같게 하고, 축문(祝文)에는 고(考)라 일컫고 효자 국왕(孝子國王)이라 일컫게 하며, 또 월산군(月山君)에게 특별히 큰 작호(爵號)를 가(加)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예이니, 수빈(粹嬪)은 마땅히 봉하여 왕대비(王大妃)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영은(李永垠)은 의논하기를,

"신(臣)은 고문(古文)을 상고해 보건대, '후사(後嗣)가 되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전하(殿下)께서 예종(睿宗)을 이어 대통(大統)을 계승했으니 효자 사왕신(孝子嗣王臣)이라 일컫고, 마땅히 의경 세자(懿敬世子)에게도 추숭(追崇)하여 왕(王)을 삼고 종(宗)이라 일컫지 말며, 예종(睿宗)과 구별하여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이를 향사(享祀)하고, 축문(祝文)에는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또 국왕신(國王臣)으로 일컬으며, 수빈(粹嬪)은 다만 왕비(王妃)라고만 일컬어 왕대비(王大妃)와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모두 신숙주(申叔舟)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8 집 456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성종 002 01/01/22(신축) / 장순빈의 시호·능호와 의경 세자의 시호·묘호·능호와 수빈의 휘호를 정하다 》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춘추관(春秋館)의 2품(品) 이상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 모여서 장순빈(章順嬪)의 시호(諡號)·능호(陵號)와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시호(諡號)·묘호(廟號)·능호(陵號)와 수빈(粹嬪)의 휘호(徽號)를 의논하도록 하니,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陵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領議政) 홍윤성(洪允成)·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우의정(右議政) 김국광(金國光)·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형조 판서(刑曹判書) 함우치(咸禹治)·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이조 참판(吏曹參判) 정난종(鄭蘭宗)·공조 참판(工曹參判) 정승조(鄭崇祖)·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병조 참판(兵曹參判) 이영은(李永垠)·대사간(大司諫) 김수녕(金壽寧)·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장순빈(章順嬪)의 시호(諡號)는 휘인 소덕 장순 왕후(徽仁昭德章順王后), 또는 제인 숙덕 장순 왕후(齊仁淑德章順王后)로 하고, 능호는 순릉(順陵), 또는 공릉(恭陵)으로 하고,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시호(諡號)는 온문 의경왕(溫文懿敬王), 또는 인순 의경왕(仁順懿敬王)으로 하고, 묘호(廟號)는 의경묘(懿敬廟), 또는 의묘(懿廟)로 하고, 능호는 의경릉(懿敬陵), 또는 경릉(敬陵)으로 하고, 수빈(粹嬪)의 휘호(徽號)는 자수 왕비(慈粹王妃), 또는 인수 왕비(仁粹王妃)로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전교(傳敎)하기를,

"장순빈의 시호는 휘인 소덕 장순 왕후(徽仁昭德章順王后)로 하고, 능호는 공릉(恭陵)으로 하고, 의경 세자의 시호는 온문 의경왕(溫文懿敬王)으로 하고, 묘호는 의경묘(懿敬廟)로 하고, 능호는 경릉(敬陵)으로 하고, 수빈의 휘호는 인수 왕비(仁粹王妃)로 일컬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외조고비(外祖考妣)의 분묘(墳墓)와 당대 외조고비(當代外祖考妣)의 분묘에 치제(致祭)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하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외조(外祖)인 정정공(貞靖公) 윤번(尹璠)은 마땅히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당대 외조(當代外祖)인 양절공(襄節公) 한확(韓確)의 부처(夫妻)는 주상(主上)께서 이미 대행 대왕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니 외조고비(外祖考妣)로 일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왕(先王) 외조의 분묘의 예에 의거하여 현지(現地)의 관원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45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성종 003 01/02/09(무오) / 정창손 · 신숙주 · 한명회 등의 원상과 대신들에게 《대전》의 호전과 공전을 교정하게 하다 》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호전(戶典)·공전(工典)을 교정(校定)하게 하였다.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 관원과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는 소임(所任)이 가볍지 않으니, 청컨대 대성(臺省)·육조 낭관(六曹郎官)의 예에 의하여 개만(箇滿)에 구애하지 말고 의차(擬差)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464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성종 006 01/06/24(신미) / 예조의 건의에 따라 대신들로 하여금 문소전의 방의 숫자를 의논하

여 정하게 하다 》

이보다 앞서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세조(世祖)를 장차 부묘(祔廟)하려고 하는데, 문소전(文昭殿)의 실(室)의 수(數)를, 청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임금이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었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홍윤성(洪允成)·조석문(曹錫文)·홍달손(洪達孫)·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한백륜(韓伯倫)·한계미(韓繼美)·임원준(任元濬)·황효원(黃孝源)·함우치(咸禹治)·이극배(李克培)·서거정(徐居正)·**양성지(梁誠之)**·이승소(李承召)·한의(韓嶬)가 의논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의 5실(室)은 세종(世宗)께서 정(定)하신 바이므로, 다시 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주(神主)로서 옮기지 아니한 숫자가 4실(室)에 이른다면, 시군(時君)의 미주(미主) 이외의 조부(祖父) 이상의 신주는 모두 옮겨야 할 것이니, 어버이를 친하게 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공덕(功德)이 있는 자는 종묘(宗廟)에 있어서는 마땅히 옮기지 않는 것이나, 만약 문소전(文昭殿)에 있어서는 태조(太祖) 이외에는 친소(親소)로써 체천(遞遷)하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의(禮儀)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전지(傳旨)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떤 신주를 옮겨야 마땅할까? 그것을 또한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정인지·정창손·신숙주·한명회·심회·홍윤성·조석문·홍달손·김질·윤자운·이승소가 의논하기를,

"세종(世宗) 초에 5실(室)로 정하였는데, 공정 대왕(恭靖大王)을 부묘(祔廟)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4친(四親)을 제사지내고자 한 것 뿐입니다. 지금 문종(文宗)의 신주를 옮기고, 세조(世祖)의 신주를 부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고, 한백륜·한계미·임원준·황효원·함우치·이극배·서거정·양성지·한의가 의논하기를,

"우선 전실(前室)에 나가게 하여 문종실(文宗室)의 중간에다가 격장(隔障)을 설치하였다가, 합하여 제사지낼 때에는 세조(世祖)의 위판(位版)을 이안(移安)하게 하고, 예종(睿宗)을 부묘할 때에는 문종(文宗)의 신주를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대비(大妃)가 보경당(寶敬堂)에 나아가서 신숙주·한명회·구치관·김질·윤자운을 불러서 묻기를,

"문소전(文昭殿)에 옮겨 부묘하는 일을 의논하는 것이 같지 아니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세종(世宗)께서 따로 문소전을 지은 것은 평상시에 세 끼[三時] 수라(水刺)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본받은 것이니, 곧 한(漢)나라 때 원묘(原廟)의 유제(遺制)입니다. 그 처음에 제도를 정한 것은 5실(室)을 넘지 말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를 상고하건대,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을 4실(室)로 하였는데, 만약 세조를 부묘한다면 5실(室)로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종(睿宗)은 부묘할 만한 실(室)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문소전(文昭殿)은 종묘(宗廟)의 예(例)가 아니고, 오로지 어버이를 친하게 하는 의리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도 공정왕(恭靖王)을 부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종(睿宗)을 올려서 부묘한다면 문종의 신주는 부득이 옮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문종을 옮기고 세조를 부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대비(大妃)가 말하기를,

"공덕(功德)이 있는 자는 신주(神主)를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소전(文昭殿)에도 또한 그러한가? 문종의 신주를 옮긴다면 그 신주는 마땅히 어디에 둘 것인가? 옛 제도가 있는가?"

하므로, 신숙주(申叔舟)가 대답하기를,

"공덕(功德)이 있는 자는 신주를 옮기지 아니하는 것은 오로지 종묘(宗廟)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문소전(文昭殿)은 다만 태조(太祖)와 시군(時君)의 고조(高祖) 이하 4대(代)를 제사지낼 뿐이니, 태조(太祖)는 백세(百世)에 이르도록 옮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옮기는 신주는 능소(陵所)에 묻었던 적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에 태상묘(太上廟)의 신주를 헐어 내어서 능원(陵園)에 묻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종묘는 몇 실(室)이며, 그 체천(遞遷)하는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종묘는 7실(室)인데, 환조(桓祖)·태조(太祖)·공정왕(恭靖王)·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이며, 지금 세조(世祖)가 올라가 부묘(祔廟)된다면 7실(室)로 차게 됩니다. 뒤에 옮길 신주가 있으면 영녕전(永寧殿)에 안치(安置)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대비가 말하기를,

"알았다."

하고, 드디어 정인지 등의 의견에 따랐다. 대비(大妃)가 묻기를,

"지금 갑사(甲士)에게 녹(祿)을 주는 것을 정지하고 요(料)를 주는데, 그 일이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는 비록 군사(軍士)에 속하기는 하나, 모두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이므로, 요(料)를 준다는 명분(名分)을 반드시 모두 부끄럽게 여길 것이니, 녹(祿)을 골고루 주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그 녹을 주는 숫자를 계산하여서 아뢰어라. 또 지금의 녹과(祿科)는 숫자가 매우 많은데, 어째서인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다만 세조조(世祖朝)에 공(功)이 있는 신하들이 매우 많았던 까닭입니다. 비록 일을 맡지 않는 자라도 갑자기 그 녹을 빼앗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녹과의 숫자가 옛날보다 갑절이나 더합니다."

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공(功)이 있는 자에게 녹봉(祿俸)을 주는 것은 가하나, 나의 조카[甥] 윤사분(尹士昐) 같은 자는 말은 일도 없고 또한 공로도 없는데, 항상 후(厚)한 녹을 받으니, 지금 우선 녹을 감(減)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친적을 친(親)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질게 한다.'고 하니, 친척을 친하게 하는 도리에 종친(宗親)이 으뜸이고, 외척(外戚)이 그 다음입니다. 외척이 비록 일을 맡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녹을 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대비가 말하기를,

"금년은 가뭄이 심하여 구황(救荒)하는 비용이 번다(繁多)하기 때문에 이를 말하였을 뿐이다. 그 군사에게 녹을 고르게 하고 요(料)를 지급하는 일은, 경(卿) 등이 다시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원전】 8 집 51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군사-중앙군(中央軍)

《 성종 007 01/08/12(정사) / 예종의 상제와 역리(驛吏)의 이역(移驛)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

이보다 먼저 일찍이 정승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義政府)·육조 참판(六曹參判)에게 명하여 세조(世祖)의 대상(大祥)을 지낸 뒤의 예종(睿宗)의 상제(喪制)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였다.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우찬성(右贊成)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刑曹判書) 함우치(咸禹治)·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이조 판서(吏曹判書) 권감(權瑊)·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

謙光)·이조 참판(吏曹參判) 정숭조(鄭崇祖)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호조 참판(戶曹參判) 송문림(宋文琳)·공조 참판(工曹參判) 한의(韓義)가 의논하기를,

"상사(喪事)에 관한 제도는 나라의 큰 일로서 정식의 상사 제도와 단축한 상사 제도 외에는 다른 편의적인 제도가 없으니, 세조 대왕의 상(喪)이 끝난 뒤에 대왕 대비와 시종하는 사람의 복색(服色)은 궁 안에서는 길복(吉服)으로 하고 조정에서는 소복(素服)으로 하여 예종의 상을 마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礩)·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우의정(右議政) 한백륜(韓伯倫)·형조 참판(刑曹參判) 이극돈(李克墩)이 의논하기를,

"대왕 대비는 이미 예종의 복(服)을 벗었으니, 세조의 상이 끝난 뒤에는 모든 시종하는 자는 예의상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합니다. 한궁 안에서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그 정례(情禮)에 온당(穩當)하지 못한 것 같으니, 세조의 담제(禫祭) 후에는 편의상 상을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옛 제도에는 3년이 되어서 벗거나, 혹은 이일역월(以日易月)하여 27일이 되어서 벗거나 하는데, 예종의 상은 행한 지가 이미 10개월이 되었으니 역월(易月)의 제도라면 이미 지났고, 3년의 제도라면 미치지 못하니, 아울러 의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길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편의상 하는 일은 고례(古例)에 구애(拘礙)를 받을 수 없으니, 세조의 담제 뒤와 예종의 소상과의 사이는 겨우 10일의 간격이니, 임시로 담복을 입었다가, 예종의 연일(練日)에 이르러서 연복(練服)을 입고 제사를 지낸 다음 상을 벗고 담복을 입으며, 중월(中月)이 되어서 담제를 지내고, 부묘(祔廟)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병조 참판 이영은(李永垠)이 의논하기를,

"3년을 공통으로 상복을 입는 것은 신자(臣子)로서 마땅히 의거할 큰 법이므로 경이(輕易)하게 편리한대로 의논함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예종의 상이 세조의 대상 뒤에 있으니, 대왕 대비는 최복(衰服)을 벗고 담제를 지내고, 그 시종도 또한 최복을 벗고 담제를 지내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제일 웃어른 앞에서 흉복(凶服)으로 대하는 것도 불가하고, 또 세조를 부묘(祔廟)한 뒤에 복색(服色)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대왕 대비는 이미 길복을 입었으니, 마땅히 풍정(豊呈)을 올려야 합니다. 예종의 상으로 이것을 폐할 수 없고 이때에 전하께서는 흉복으로 뵈올 수 없으며, 또 편의를 따라서 길복을 입었다가 도로 벗는 것도 불가하니, 이것은 모두 난처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조의 대상날에 편의상 아울러 예종의 상까지 벗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또 만일 예종의 상을 세

조의 대상날에 벗는다고 하면, 경안전(景安殿)의 제사는 영창전(永昌殿)의 제사를 의준(依準)하여 지내고, 부묘(祔廟)하는 것은 세조를 부묘할 때에 함께 부묘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명하여 다시 존속 종친(尊屬宗親)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낙안군(樂安君) 이영(李寧)·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 등의 의논이 정창손의 의논과 같았다. 이리하여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라서 전지하기를,

"이제 길복을 입으면 외부 사람들이 어찌 나의 부득이한 뜻을 알겠느냐? 그것을 중외(中外)에 효유하여 그 연유를 알게 하라."

하고, 드디어 의지(懿旨)를 예조에 내려 말하기를,

"3년을 공통으로 상을 입는 것은 하늘의 법에 근원한 것이므로 당연히 스스로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든 정무를 청단(聽斷)함에 있어서 세조 대왕의 3년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나를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나, 다만 예종의 상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길과 흉이 서로 혼합하게 되어 인정과 예의에 실로 온당치 못하다. 예전에 임금이 양음(諒陰)에서 거상(居喪)하는 3년 동안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편의에 따라 곧 정무(政務)에 임하고, 이일역월(以日易月)하여 27일에 탈상(脫喪)하였으니, 어찌 좋아서 하였겠는가? 다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 고례를 헤아리면 양음(諒陰)의 제도는 금일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종친과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편의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하므로 거상 기간을 깍아 내렸다. 그리하여 예종 소상이 지난 뒤부터 최복은 벗고 길복을 입고서 3년의 예제(禮制)를 마친 후에 태묘(太廟)에 모시기를 예절대로 할 것이니, 그 세부 요목을 잘 계획해서 시행하라."

하고, 또 명하여 경기 각역(各驛)에 하도(下道) 역리(驛吏)를 이역(移役)하는 법을 삭제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심회·홍윤성·김질·윤자운·이극돈이 의논하기를,

"피폐한 각역에 다른 역리를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역(移役)을 시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혹 도망하여 흩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 역 자체도 존립할 수 없게 되어 피차가 다 곤란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그 도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퇴락한 역의 인리(人吏)·조역(助役)·일수(日守)와 전운노비(轉運奴婢)의 인수(人數) 및 말과 위전(位田)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그 쇠잔함과 성함을 헤아려서 조역과 인호(人戶)를 적당히 지급하여 영구히 이역(移役)을 제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인지·홍달손·한백륜·노사신·이극배·서거정·권감·**양성지**·김겸광·정숭조·이승소·한의·이영은·송문림은 의논하기를,

"<역노를> 소복(蘇復)할 방책은 이역(移役)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조건이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함우치는 의논하기를,

"각역(各驛)의 종[奴]은 부근에 있는 모든 기관의 종 및 난신(亂臣)의 종으로 수(數)를 헤아려 채워 주고, 하도(下道)의 역리의 이역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또 소도공(昭悼公)에게 입후(立後)한 춘성군(春城君) 이당(李讜)의 관직을 올리는 데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정승조·이승소·송문림·한의·이영은이 의논하기를,

"소도공은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고, 그 입후한 춘성군의 세대(世代)도 소원(疏遠)하니, 관직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심회·홍윤성·홍달손·김질·윤자운·노사신·이극돈이 의논하기를,

"소도공은 종묘·사직에 죄를 지어 정식 시호(諡號)를 얻지 못하여서 왕자의 예(例)로 의논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세종(世宗)이 태종(太宗)의 뜻을 받들어서 후계자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만도 은혜가 또한 지극합니다. 비록 왕자로 대우한다 하여도 춘성군은 세대(世代)로 상고하여 보면 소도공에게는 증손(曾孫) 항렬에 있으므로 법례(法例)로 보아서 벼슬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 또 소도공은 불천의 신주[不遷之主]가 아니므로 그 제사를 받드는 것도 3대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춘성군도 마땅히 본직(本職)을 따라서 제사 받드는 것을 3대에 그쳐야 합니다."

하고 또 한백륜·함우치·이극배·서거정·권감·양성지·김겸광은 의논하기를,

"소도공의 후계자는 왕자와 여러 군(君)의 예(例)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8 집 52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교통-육운(陸運) / *가족-가족(家族)

《 성종 008 01/12/26(기사) / 3전에 잔치를 올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술과 풍악을 하사하다 》

임금이 3전(三殿)에 잔치를 올리고, 이어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좌의정(左議政) 김국광(金國光)·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의빈(儀賓) 홍상(洪常)·진산군(晋山君) 강희맹(姜希孟)·지중추부사(知中

樞府事) **양성지(梁誠之)**·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대사간(大司諫) 김수녕(金壽寧), 광릉(光陵)의 수릉관(守陵官)인 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 시릉관(侍陵官)인 안충언(安忠彦), 입직(入直)한 도총관(都摠管) 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병조 판서(兵曹判書) 허종(許琮)·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극증(李克增), 위장(衛將) 김치원(金致元)·한치례(韓致禮), 승지(承旨) 등과 광릉(光陵)의 참봉(參奉) 이감(李堪)·정염(鄭恬), 영창전(永昌殿)의 참봉(參奉) 박견(朴堅)·이종윤(李從允), 광릉(光陵)과 영창전(永昌殿)의 차비 내관(差備內官)과 아래로 각색장(各色掌) 등에 이르기까지를 명하여 불러서 술과 풍악을 하사하고 전지(傳旨)하기를,

"취하는 것으로써 한도(限度)를 삼아라."

하고, 윤필상과 안충언에게 옷을 각각 한 벌씩 내려 주었다.

【원전】 8 집 543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성종 2년 《 양성지 - 성종 2년 .... 5 건 》

성종 009 02/02/20(계해) / 신숙주·한명회·윤자운·김국광·한백륜 등에게 물건을 내려주다
성종 009 02/03/12(을유) /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성에 제사지내고 명륜당에 나아가서 시학하다
성종 009 02/03/27(경자) / 인정전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책문하다
성종 009 02/03/27(경자) / 이조에 전지하여 신숙주 등에게 좌리 공신호를 내려 주게 하다
성종 013 02/12/18(을유) / 《세조대왕실록》의 수찬관들에게 상을 내리다

《 성종 009 02/02/20(계해) / 신숙주 · 한명회 · 윤자운 · 김국광 · 한백륜 등에게 물건을 내려주다 》

명하여 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좌의정(左議政) 김국광(金國光)·우의정(右議政) 한백륜(韓伯倫)·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윤사흔(尹士昕)·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에게 각각 말 1필(四)씩을 내려 주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석형(李石亨)·좌참찬(左參贊) 이극배(李克培)·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원준(任元濬)·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우참찬(右參贊) 서거정(徐居正)·진산군(晋山君) 강희맹(姜希孟)·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성윤문(成允文)·호조 참의(戶曹參議) 정침(鄭忱)·대사성(大司成) 유권(柳睠)·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영유(金永濡)·행 사직(行司直) 남질(南秩)·전주 부윤(全州府尹) 조근(趙謹)·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좌승지(左承旨) 한계순(韓繼純)·우승지(右承旨) 이숭원(李崇元)·좌부승지(左副承旨) 신정(申瀞)·우부승지(右副承旨) 김순명(金順命)·동부승지(同副承旨) 유지(柳輊)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四)씩을 내려 주었으니, 봉숭(封崇)할 때 집사관(執事官)이었기 때문이었다.

【원전】 8 집 55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성종 009 02/03/12(을유) /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성에 제사지내고 명륜당에 나아가서 시학하다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선성(先聖)에 제사지냈는데, 대뢰(大牢)를 사용하였고, 드디어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서 시학(視學)하니, 시강관(侍講官) 이하의 관원들이 의식(儀式)대로 행례(行

禮)하였다. 시강관(侍講官)인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좌의정(左議政) 김국광(金國光),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석형(李石亨)·이변(李邊),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어효첨(魚孝瞻)·진산군(晋山君) 강희맹(姜希孟)·행 상호군(行上護軍) 구종직(丘從直)·우참찬(右參贊) 서거정(徐居正)·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극증(李克增)·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어세겸(魚世謙)·이예(李芮)와 강서관(講書官)인 부제학(副提學) 김지경(金之慶), 행 사과(行司果) 강노(姜老)·홍경손(洪敬孫), 행 사직(行司直) 남질(南秩)·대사성(大司成) 유권(柳睠)·직제학(直提學) 김유(金紐), 사성(司成) 고태정(高台鼎)·최지(崔池), 전한(典翰) 임사홍(任士洪)·응교(應敎) 김계창(金季昌)·부응교(副應敎) 최경지(崔敬止), 사예(司藝) 이형원(李亨元)·장계이(張繼弛), 정랑(正郎) 이경동(李瓊仝)·김자정(金自貞), 교리(校理) 노공필(盧公弼)·직강(直講) 유진(兪鎭)·부수찬(副修撰) 손비장(孫比長), 전적(典籍) 최자빈(崔自濱)·박시형(朴時衡), 검상(檢詳) 허적(許迪)이 각각 자리에 나아갔다. 임금이 술잔[爵]을 잡아서 시강관(侍講官)에게 술을 하사하였고, 유사(有司)에서 강서관(講書官)에게 나누어 주기를 끝마치고, 강서관(講書官)이 차례대로 들어가서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를 강(講)하였고, 시강관(侍講官)이 어려운 부문을 물었다. 바야흐로 《대학(大學)》의 경서 1장(章)을 강(講)하는데, 시강관(侍講官) 구종직이 나와서 말하기를,

"제왕(帝王)은 반드시 격물 치지(格物致知)의 공부를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니 시강관(侍講官) 정창손 등이 모두 아뢰기를,

"제왕(帝王)의 학문에 어찌 격물 치지(格物致知)의 공부가 없겠습니까? 구종직의 말은 잘못입니다."

하였다. 강(講)이 끝나자, 시강관(侍講官)에게 사라(紗羅)를 하사하였다. 【이변(李邊) 이상의 관원에게는 직금 흉배라(織錦胸背羅) 1필(匹)을, 노사신(盧思愼) 이하의 관원에게는 사(紗) 1필(匹) 하사하였다.】

【원전】 8 집 558 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

《 성종 009 02/03/27(경자) / 인정전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책문하다 》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선비들에게 책문(策問)하니, 독권관(讀卷官)인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석형(李石亨)·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입시(入侍)하였다. 그 책문(策問)에 이르기를,

"제왕(帝王)이 천하 국가(天下國家)를 다스리는 데 반드시 그 방도가 있는 법인데 무슨 방도로써 그 도리를 거듭 이루었는가? 비록 옛날 성치(盛治)를 이룩한 군주(君主)라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끝내 선정(善政)의 누(累)가 되었다. 나는 어린 몸으로써 대역복(大歷服)을 이었으므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모든 조치할 일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치하는 데 그 방도를 얻어서 선치(善治)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근래에 언사가 흉년이 들었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으므로 창고(倉庫)를 열어서 진휼(賑恤) 구제(救濟)하였으나 군저창(軍儲倉)이 텅 비었다고 고(告)하니, 어떻게 하면 창름(倉廩)이 다시 채워지고 군저창(軍儲倉)이 여유가 있겠는가? 왜인(倭人)들의 왕래(往來)가 전에 비하여 많은데, 공억(供億)하는 물자가 걸핏하면 1만 석(石)으로 계산되니, 장차 그들과 절교하고자 한다면 회유(懷柔)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요, 한결같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주면 그 비용이 끝이 없을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대접하는 데 그 방도를 얻고 폐단이 없겠는가? 나의 대부(大夫) 가운데 이를 능히 말할 자가 있다면 각기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561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성종 009 02/03/27(경자) / 이조에 전지하여 신숙주 등에게 좌리 공신호를 내려 주게 하다 》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호천(昊天)이 불쌍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심인가?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갑자기 군신(群臣)을 버리시었고, 얼마 아니되어 예종 대왕(睿宗大王)께서 빈천(賓天)하시니, 후사(後嗣)를 이을 자가 병들고 어리므로 온 나라가 황황(遑遑)하였는데, 우리 자성 대왕 대비(慈聖大王大妃)께서 세조 대왕을 추념(追念)하시고 여 소자(予小子)를 돌아보시고 이에 큰 책명(策命)을 정하시니, 내가 들어와 큰 왕업(王業)을 잇게 되었다. 나는 부탁(付托)한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오로지 몸을 삼갔는데, 이때에 고굉(股肱)의 신료(臣僚)들이 좌우에서 분주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금일(今日)에 이르러, 인심(人心)이 크게 안정되고 국가가 태평하여지니, 내가 그 공(功)을 가상히 여겨서 이에 상전(賞

典)을 거행한다.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조석문(曹錫文)·정현조(鄭顯祖)·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권감(權瑊)을 좌리 1등 공신(佐理一等功臣)으로 삼고, 이정(李婷)·이침(李琛)·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김질(金礩)·한백륜(韓伯倫)·윤사흔(尹士昕)·한계미(韓繼美)·한계희(韓繼禧)·송문림(宋文琳)을 좌리 2 등 공신(佐理二等功臣)으로 삼고, 성봉조(成奉祖)·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박중선(朴仲善)·이극배(李克培)·홍응(洪應)·서거정(徐居正)·**양성지(梁誠之)**·김겸광(金謙光)·강곤(康袞)·신승선(愼承善)·이극증(李克增)·한계순(韓繼純)·정효상(鄭孝常)·윤계겸(尹繼謙)·한치형(韓致亨)·이숭원(李崇元)을 좌리 3등 공신(佐理三等功臣)으로 삼고, 김수온(金守溫)·이석형(李石亨)·윤필상(尹弼商)·허종(許琮)·황효원(黃孝元)·유수(柳洙)·어유소(魚有沼)·함우치(咸禹治)·이훈(李塤)·김길통(金吉通)·선형(宣炯)·우공(禹貢)·김교(金嶠)·오백창(吳伯昌)·박거겸(朴居謙)·이철견(李鐵堅)·한치인(韓致仁)·구문신(具文信)·이숙기(李淑琦)·정난종(鄭蘭宗)·정숭조(鄭崇祖)·이승소(李承召)·한치의(韓致義)·한보(韓堡)·김수녕(金壽寧)·한치례(韓致禮)·한의(韓嶬)·이극돈(李克墩)·이수남(李壽男)·이현(李鉉)·신정(申瀞)·김순명(金順命)·유지(柳輊)·심한(沈澣)·신준(申浚)을 좌리 4등 공신(佐理四等功臣)으로 삼는다."

하였다.

【원전】 8 집 56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성종 013 02/12/18(을유) / 《세조대왕실록》의 수찬관들에게 상을 내리다 》

명하여 《세조대왕실록(世祖大王實錄)》의 수찬관(修撰官)인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 표리(表裏) 1습(襲), 향다합단자(鄕茶合段子) 1필(匹)씩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승소(李承召)·김수녕(金壽寧)·관찰사(觀察使) 정난종(鄭蘭宗),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 졸(卒)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영은(李永垠)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 표리(表裏) 1습(襲)씩을,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극돈(李克墩),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예승석(芮承錫), 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순명(金順命),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조익정(趙益貞)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고(故) 형조 참의(刑曹參議) 조안정(趙安貞), 수찬관(修撰官) 유권(柳雷), 형조 참의(刑曹參議) 손순효(孫舜孝), 편수관(編修官) 김유(金紐)·임사홍(任士洪)·고태

정(高台鼎)·김계창(金季昌)·성숙(成淑), 전 편수관(編修官) 최경지(崔敬止), 기주관(記注官) 노공필(盧公弼)·홍귀달(洪貴達)·정휘(鄭徽)·이경동(李瓊仝),기사관(記事官) 김윤종(金潤宗), 전 내섬시정(內贍寺正) 정영통(鄭永通),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 박미(朴楣), 익산 군사(益山郡事) 김신(金新)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匹), 향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편수관(編修官) 김영견(金永堅)·현석규(玄碩圭), 좌통례(左通禮) 윤효손(尹孝孫), 전 판관(判官) 김성원(金性源),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 형조 정랑(刑曹正郎) 허선(許譔), 전 첨정(僉正) 최명손(崔命孫), 검상(檢詳) 이칙(李則), 공조 좌랑(工曹佐郎) 유조(兪造),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안처량(安處良), 성균 전적(成均典籍) 이인석(李仁錫), 기사관(記事官) 남윤종(南潤宗)·박처륜(朴處綸), 전 좌랑(佐郎) 조평(趙枰)에게 각각 향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도사(都事) 김극검(金克儉), 기주관(記注官) 최숙정(崔淑精)·유자분(柳自汾)·박시형(朴時衡)·예조 정랑(禮曹正郎) 김자정(金自貞), 이조 정랑(吏曹正郎) 손비장(孫比長)·박효원(朴孝元)·병조 좌랑(兵曹佐郎) 윤현손(尹顯孫), 기사관(記事官) 채수(蔡壽)·양수사(楊守泗)·최철관(崔哲寬)·김중연(金仲淵)·김윤(金崙)·안침(安琛)·손창(孫昌)·양자유(楊子由)·김예원(金禮源)·김종(金悰)·김미(金楣)·안진생(安晉生)·정이교(鄭以僑), 군수(郡守) 김종직(金宗直), 전 기사관(記事官) 강거효(姜居孝)에게 각각 1자급[資]을 더하고, 화원(畫員) 배연(裵連) 등 3인에게 1자급을 더하였으며, 1등 수록 서원(一等受祿書員) 2인, 서리(書吏) 22인에게 매일 별사(別仕) 3을 주게 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아다개(阿多介) 1좌(坐)씩을, 강희맹(姜希孟) 등에게 호피(虎皮) 1장(張)씩을, 이극돈(李克墩) 이하에게 녹비(鹿皮) 1장씩을 더 내려 주고, 서리(書吏) 등도 또한 녹비(鹿皮) 1장씩을 더 내려 주며 전교하기를,

"내가 실록(實錄)을 보니, 당시의 명령(命令)과 정교(政敎)가 갖추 실리지 않음이 없어, 황연(恍然)히 세조(世祖)를 뵙는 것과 같다. 내 경(卿) 등이 마음을 다하여 수찬(修撰)한 것을 가상히 여기어, 이제 주상(主上)께 청하여 박물(薄物)을 내려 주니, 경 등은 이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619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성종 3년 《 양성지 - 성종 3년 .... 6 건 》

성종 014 03/01/16(계축) / 장순 왕후의 존호를 가상할 때의 진책관 등에게 상을 하사하다
성종 018 03/05/10(병오) / 《예종대왕실록》의 수찬관 신숙주·한명회·최항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성종 021 03/08/16(경진) / 실록 봉안사 강희맹·양성지가 하직하다
성종 021 03/08/16(경진) / 전라도의 봉안사 양성지 등에게 수손전은 조사하지 말라고 명하다
성종 024 03/11/30(임술) / 사헌부 장령 허적이 권호·이극돈·정자영 등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다
성종 025 03/12/01(계해) / 사헌부 장령 허적이 이극돈·강희맹·양성지 등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 성종 014 03/01/16(계축) / 장순 왕후의 존호를 가상할 때의 진책관 등에게 상을 하사하다 》

사복시에 전지하여,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할 때의 진책관(進冊官)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 진보관(進寶官)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사흔(尹士昕)에게 각각 말 1필(匹)을 하사하고, 독책관(讀冊官)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 독보관(讀寶官)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길통(金吉通), 예의사(禮儀使) 공조 참판(工曹參判) 김수녕(金壽寧), 압책관(押冊官) 행사과(行司果) 남질(南秩), 동부승지(同副承旨) 심한(沈瀚)과 경안전 내관(景安殿內官) 김수경(金壽敬)·서경생(徐敬生)·김덕공(金德恭)·이존명(李存命)·안자경(安自敬)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내려 주었다.

【원전】 8 집 625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성종 018 03/05/10(병오) / 《예종대왕실록》의 수찬관 신숙주 · 한명회 · 최항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

《예종대왕실록(睿宗大王實錄)》의 수찬관(修撰官)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에게 각각 안장 갖춘 말[鞍具馬] 1필씩을 내려 주고,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김수녕(金壽寧)·정난종(鄭蘭宗)·김지경(金之慶)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 주고, 예승석(芮承錫)·정효상(鄭孝常)·유지(柳輊)·유권(柳睠)·고태정(高台鼎)·임사홍(任士洪)·성숙(成俶)·노공필(盧公弼)·정휘(鄭徽)·유자분(柳自汾)·김윤종(金潤宗)·최숙정(崔淑精)·김극검(金克儉)·최경지(崔敬止)·김신(金新)에게 각각 아마(兒馬) 한 필씩

을 내려 주고, 박시형(朴始亨)·노분(盧盼)·남계당(南季堂)·남윤종(南潤宗)·김직손(金直孫)·이박(李博)에게 각각 향표리(鄕表裏)를 내려 주었다.

【원전】 8 집 657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21 03/08/16(경진) / 실록 봉안사 강희맹 · 양성지가 하직하다 》

실록 봉안사(實錄奉安使)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가 하직하니, 임금이 지나가는 여러 고을과 부근(附近) 여러 고을의 수손전(水損田)을 자세히 조사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원전】 8 집 6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21 03/08/16(경진) / 전라도의 봉안사 양성지 등에게 수손전은 조사하지 말라고 명하다 》

전라도(全羅道)의 봉안사(奉安使) **양성지(梁誠之)**와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의 봉안사 강희맹(姜希孟)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수손전(水損田)은 조사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8 집 681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24 03/11/30(임술) / 사헌부 장령 허적이 권호 · 이극돈 · 정자영 등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다 》

사헌부 장령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형조에서 청송(聽訟)하면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함께 의논하여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권호(權瑚)의 송사는 다만 낭청만 죄주고 당상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가합니까? 청컨대 아울러 죄 주소서.

이극돈(李克墩)은 권호의 인척(姻戚)으로서 실정을 알고 사사로이 비호한 것이니, 이 죄는 이극돈에게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은 전일 경연에서 아뢰기를, '음양(陰陽)이 차례를 잃었으니, 참으로 이는 큰 기강(紀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추국하여 물은즉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니, 간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는 실록(實錄)을 봉안(奉安)하고 돌아오는데, 도리를 어기고 횡행(橫行)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중한데도, 아울러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죄를 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극돈은 국문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자영에게 자세히 묻지도 않고 임금의 재가를 받겠다고 말하므로, 다만 하교(下敎)를 주었을 뿐인데, 이제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또 강희맹과 양성지는 모두 대신(大臣)이다. 실수한 일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8 집 696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성종 025 03/12/01(계해) / 사헌부 장령 허적이 이극돈·강희맹·양성지 등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중기(仲奇)의 일은 형조 당상(刑曹堂上)과 낭청(郎廳)이 모두 참여하였고, 더욱이 권호(權瑚)는 이극돈(李克墩)의 5촌(五寸)이 되는 까닭으로 한때에는 낭청(郎廳)이 모두 이극돈의 지휘를 받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극돈도 죄주시고, 또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는 정도(正道)를 그르침이 불가한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역말[驛騎]을 함부로 탔으니, 청컨대 과죄(科罪)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이 불효(不孝)하고 우애(友愛)하지 않으며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일을 말한 것은 다만 성상의 앞에서는 아뢰지 않았지만, 경연청(經筵廳)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상중(喪中)에 소를 잡아 고기를 먹은 자가 있고, 성(姓)이 홍(洪)이라는 자가 있어 정처(正妻)를 박대(薄待)하였다.' 하여, 본부(本府)에서 이를 물으니, 원한을 취할까 염려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69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성종 4년 《 양성지 - 성종 4년 .... 2 건 》

성종 031 04/06/08(정묘) / 세종·문종·세조·예종의 실록의 인출을 끝낸 공을 위로하다
성종 037 04/12/13(기사) / 양성지·한치형·이서장·한치례 안침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성종 031 04/06/08(정묘) / 세종 · 문종 · 세조 · 예종의 실록의 인출을 끝낸 공을 위로하다 》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匹)씩을 내려 주고,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내려 주었다. 이는 세종(世宗)·문종(文宗)·세조(世祖)·예종(睿宗)의 실록(實錄)의 인출(印出)을 끝낸 공을 논한 것이다. 감인관(監印官)으로서 10개월 이상을 채운 자는 호피(虎皮)·녹비(鹿皮) 각 1장씩을, 10개월 미만 되는 자는 혹은 호피, 혹은 녹비 1장씩을 내려 주었다.

【원전】 9 집 2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37 04/12/13(기사) / 양성지 · 한치형 · 이서장 · 한치례 안침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남원군(南原君)으로, 한치형(韓致亨)을 자헌 대부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서장(李恕長)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전성군(全城君)으로, 한치례(韓致禮)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안빈세(安貧世)를 가정 대부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한보(韓堡)를 가정 대부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정은(鄭垠)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안관후(安寬厚)를 통정 대부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안침(安琛)을 통덕랑(通德郞) 행 사간원 정언(行司諫院正言)으로, 윤효손(尹孝孫)을 통정 대부 수 전주 부윤(守全州府尹)으로, 허종(許琮)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홍귀해(洪貴海)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원전】 9 집 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성종 6년 《 양성지 - 성종 6년 .... 2 건 》

성종 052 06/02/18(정유) / 알성시 문제를 원상에게 전교하고 성균관에 출사하여 가르칠 재상을 추천하게 하다
성종 059 06/09/16(임술) / 회간왕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 성종 052 06/02/18(정유) / 알성시 문제를 원상에게 전교하고 성균관에 출사하여 가르칠 재상을 추천하게 하다 》

원상(院相)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알성(謁聖)하고 그날 취사(取士)하고자 하는데, 가하냐?"

하니, 신숙주(申叔舟)·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시학(視學)하는 날에 취사하는 것은 예전부터 고사(故事)가 있습니다. 전에 시학하고 사람을 뽑을 때에 유생(儒生)으로 적(籍)에 올려 있는 자로서 재학(在學)한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응시하기를 허락하였는데, 취사(取士)하는 길이 넓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경외(京外)의 유생과 조사(朝士)도 모두 응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전번에 문신 재상(文臣宰相) 최항(崔恒)·성임(成任)·이예(李芮)·어세겸(魚世謙)을 택하여 번갈아서 성균관에 출사(出仕)하여 가르치게 하였었는데, 이제 최항은 이미 죽었고, 이예는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되었고, 어세겸은 부모의 상(喪)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다른 재상을 택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택해서 아뢰도록 명하니, 신숙주가 연성 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좌찬성 노사신(盧思愼)·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를 추천하여 아뢰었다.

【원전】 9 집 19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사상(思想)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성종 059 06/09/16(임술) / 회간왕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

회간 대왕(懷簡大王)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可否)를 의논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무송 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우의정(右議政) 윤사흔(尹士昕)·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수온(金守溫)·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석형(李石亨)이 의논하기를,

"한(漢)·당(唐) 이후로 제왕(帝王)의 방손(旁孫)과 지손(支孫)으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는 사친(私親)을 돌보지 않고,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종성(宗姓)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회간 대왕은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제사를 받들어 백세(百世)를 옮기지 않을 것인즉,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은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효도가 망극(罔極)하시어, 종묘에 부제하려고 하심은 지성(至誠)에서 나오심이라, 신 등이 어찌 우러러 성의(聖意)를 본받아 대왕을 존숭(尊崇)하고 종묘에 부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종묘에 부제하고 전하께서 친부(親父)로 봉사(奉祀)하면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는다면 이는 부묘(祔廟)한 뜻이 없고, 황고(皇考)라 일컬으면 예종(睿宗)에게 이미 황고라고 일컬었으니, 거듭 일컬을 수 없습니다. 명의(名義)는 지중(至重)한 것이니, 만세(萬世)에 교훈을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 등은 반복(反覆)하여 생각하여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이 대원(大元)과 고려(高麗)의 고사(故事)를 역력히 상고하니, 모두 소생(所生)한 어버이를 추존(追尊)하여 태묘(太廟)에 부향(祔享)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종묘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합당합니다마는, 다만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서 계통(繼統)의 의(義)를 엄히 하시고, 예종(睿宗)의 위에 올리어 천속(天屬)의 서열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좌참찬(左參贊) 서거정(徐居正)·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 권감(權瑊)·호조 참판(戶曹參判) 정난종(鄭蘭宗)·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백고(伯考)라고 일컬었으면 마땅히 조카[姪]라고 일컬어야 하니,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종묘(宗廟)에 부제하는 것은 본시 소생(所生)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바로 백고(伯考)라고 일컫고 또 조카[姪]라고 일컬은즉 의리[義]에 편하겠습니까? 만약 이 이름[名]을 피하여, 높이어서 황고(皇考)라고 일컫고 또 효자(孝子)라고 일컬으면, 예종(睿宗)에게는 장차 어떻게 일컫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회간(懷簡)을 높이어 부묘(祔廟)하여 고(考)라고 일컫고 자(子)라고 일컫지 않으면서 예종(睿宗)에게 백고(伯考)라고 개칭(改稱)하여 조카[姪]라고 일컬으라.'고 하니, 이것은 예(禮)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情]에도 또한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예종(睿宗)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양고(兩考)의 이름을 피하려 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혹

세종(世宗)이 공정(恭靖)에게 백고(伯考)라 하고 조카라 한 예(例)를 이끌어서 회간에게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게 하자고 하나,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은 공정에게 본시 백숙(伯叔)의 친족[親]인데다 또 대통을 계승한 인군이 아니니, 백고와 조카라 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부왕(父王)을 높이어 종묘(宗廟)에 들이고서 공정(恭靖)의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백고와 조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이제 의묘(懿廟)에 이미 백고(伯考)라 일컫고 조카[姪]라고 일컬었으니, 종묘에도 또한 이 예(例)를 씀이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하나,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입묘(立廟)하는 것은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친부(親父)에게 사(私)를 둘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니, 백고(伯考)라 일컫고 조카라 일컬음은 바로 예(禮)의 정당함[正]인데, 이제 이미 높이어 고(考)로 삼아 부묘(祔廟)하고서 바로 이 예(例)를 들어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이는 만세(萬世)토록 바뀌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광무(光武)가 중흥(中興)하여 원제(元帝)의 뒤를 계승하고, 별도로 사친(四親)의 묘사(廟祠)를 세워 남돈군(南頓君) 이상을 제사하여 용릉후(舂陵侯)까지 이르렀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인종(仁宗)의 종형(從兄)이요 복왕(濮王)의 아들로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하여 조서(詔書)로 복왕을 받들 것을 의논하니, 전례(典禮) 사마광(司馬光) 등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고관 대작(高官大爵)으로 높이어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여씨(呂氏)는 정자(程子)의 논설을 인용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은 부모(父母)라 하고 낳아준 쪽은 백숙 부모(伯叔父母)라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대경(大經)이며 생민의 대륜(大倫)이기에 변역(變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낳아 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하였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요(要)는 마땅히 사체(事體)를 헤아려서 별도로 칭호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상(聖上)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대효(大孝)로 중국에 청하여,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추숭(追崇)하고 또 부묘(祔廟)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시니, 무릇 신서(臣庶)가 된 자로서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소종(小宗)은 대통(大統)에 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예종(睿宗)에게서 받았고, 예종은 세조(世祖)에게서 받았으니, 대통(大統)의 이어짐[傳]과 부향(祔享)의 위계[位]는 그 성격이 판이하여 문란할 수 없습니다. 회간왕(懷簡王)이 비록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아 왕이 되었더라도 군신(群臣)에게 임어(臨御)하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제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면 일찍이 공덕(功德)이 있는 인군도 또한 이로써 조묘(祧廟)의 체계가 무너질 것이니, 회간왕(懷簡王)의 신령[靈]이 즐겨 안심하겠습니까? 또 예종(睿宗)을 일컬어 황고(皇

考)라고 하면, 이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어 백숙(伯叔)이 됩니다. 백숙이라고 하면 의리에 있어 부묘(祔廟)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울러 황고(皇考)라 일컬으면, 그 잃음이 적지 않거늘, 하물며 예종이 먼저 임금이 되었은즉, 이제 비록 회간왕을 높이었더라도 서열은 예종의 위[上]에 할 수 없고, 회간왕도 또한 일찍이 북면(北面)하여 예종을 섬기지 않았은즉, 예종이 또 형의 위에 있는 것은 부당하니, 소목(昭穆)의 위차(位次)는 처리하기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을 이미 왕으로 봉(封)하였다면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함도 또한 옳지 못한 것이니, 그대로 별묘(別廟)를 세워 사관(祀官)을 설치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되, 때로는 혹 친행(親行)하시기를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함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대통에 혐의가 없고 망극(罔極)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이 거의 양전(兩全)할 것입니다."

하고,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임(成任)·현복군(玄福君) 권찬(權攢)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부모로써 부모를 삼고, 낳아 준 부모로써 백숙 부모(伯叔父母)를 삼는 까닭으로, 이미 예종(睿宗)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으니, 회간(懷簡)에게 백고(伯考)라고 일컬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간은 황제의 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의리는 부묘(祔廟)함이 마땅하고, 백고(伯考)의 칭호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어찌 별묘(別廟)를 하면 일컬을 수 있고,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면 일컬을 수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백고(伯考)를 부묘(祔廟)한 자가 하나뿐이 아니거늘, 하물며 공정왕(恭靖王)은 세종(世宗) 때에 백고로 일컫고 있었으니, 이제 백고라고 일컬어 부묘함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태묘(太廟) 칠실(七室)의 제도를 정하여,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은 자는 대저 3실(室)이고, 황형(皇兄)이라고 일컬은 자가 2실(室)이었습니다. 황형도 오히려 칠묘(七廟)의 수효 가운데에 있었거늘, 더구나 황백고이겠습니까? 혹자는 '공정왕은 본시 백고이니 일컬음이 마땅하거니와, 어찌 친부(親父)를 부묘(祔廟)하고서 백고라고 일컬음이 옳겠느냐?'고 합니다마는, 이는 부묘하는 것이 낳아 준 어버이를 존숭하는 것이고, 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계통(繼統)을 중하게 여김이니, 병칭(並稱)함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신 등은, 부묘(祔廟)의 칭호(稱號)는 정의(情義)가 겸지(兼至)하는 것이므로, 둘 다 꺼림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연원군(延原君) 이숭원(李崇元)·행 사직(行司直) 정침(鄭忱)은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제명(帝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종묘(宗廟)에 승부(陞祔)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므로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가 자세히 이를 논하였으니, 이제 종묘에 부제(祔祭)함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또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게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은즉,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제사를 받드는

것도 또한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사전(祀典)은 한결같이 종묘에 의한다면 존숭(尊崇)하는 의의가 이미 높고 정통(正統)에도 또한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부묘(祔廟)의 일은 모름지기 정례(情禮)를 참작(參酌)하여야 합니다. 대저 예(禮)는 비록 인정(人情)에 인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情)이 무궁(無窮)한 데에 이르면 예(禮)로써 절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이미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는데, 또 회간(懷簡)의 신주[主]에 부(祔)한다면 칭호하여 이를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로 인연하여 왕(王)으로 추존하고 또 예로써 부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합니다. 또 전세(前世)의 제왕(帝王)으로 번저(藩邸)에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는 그 낳아 준 부모를, 비록 혹 그 호(號)를 존숭하였어도 일찍이 종묘에 부하지 않았으니, 신의 뜻은 그전대로 별도로 묘사(廟祠)를 세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유자빈(柳自濱),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배맹후(裵孟厚)·이칙(李則), 형조 정랑(刑曹正郎) 이인문(李仁文)은 의논하기를,

"낳아 준 은혜는 비록 끊을 수 없더라도 정통(正統)의 계승을 문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양도왕(襄悼王)의 뒤가 되었으니, 회간왕(懷簡王)에게 사자(嗣子)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자라고 일컫지 못한다면 부묘(祔廟)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회간왕은 이미 중국 조정에서 명(命)을 받았은즉,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가묘(家廟)의 제사를 받들게 함도 예(禮)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신 등의 뜻으로는 황백고(皇伯考) 회간 대왕(懷簡大王)이라 칭호를 올리고, 전하는 효질(孝姪)이라 일컬어 봉사(奉祀)하면,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을 거의 편폐(偏廢)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개(金漑)·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익성군(益城君) 홍응(洪應)·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은 의논하기를,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황백고(皇伯考)'라 한다면, 중국에서 봉(封)하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정통에 혐의(嫌貳)하는 실책이 없으며, 낳아 준 이에게도 또한 존숭하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존호(尊號)를 추숭(追崇)하여 별도로 일묘(一廟)를 세워,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고도 오히려 미진(未盡)함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천자(天子)에게 명을 청하여 사시(賜諡)를 얻고 대왕의 칭호를 더하여 올렸으니, 은례(恩禮)가 이미 갖추어져서 그 효성에 유감이 없고, 또 고제(古制)에도 또한 어그러짐이 없게 되었으나, 부묘(祔廟)에 이르러서는 예(禮)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뒤를 이어 입계(入繼)하고, 의경왕(懿敬王)을 일컬어 황백고(皇伯考)라고 하였으니, 명의(名義)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만약 의경왕을 황백고

라 하였다면, 그를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만약 고(考)라고 일컬어 부묘(祔廟)하면, 이미 예종을 고(考)로 삼았으니, 또 개칭(改稱)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낳아 준 도고(悼考)를 황고(皇考)로 삼고, 애제(哀帝)는 공황묘(共皇廟)를 경사(京師)에 세우니, 당시에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묘(祔廟)에 이르러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우러러 계통(繼統)을 생각하시어 종묘(宗廟)의 대체(大體)를 이으시고, 호천 망극(昊天罔極)한 갚기 어려운 지정(至情)을 조금 억제하시어, 고제(古制)를 참작하시고 후세(後世)로 하여금 의논이 있지 말게 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刑曹參判) 정승조(鄭崇祖)·청원군(淸原君) 한서구(韓瑞龜)·문천군(文川君) 유서(柳漵)서·행 사직(行司直) 박서창(朴徐昌)·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견수(金堅壽)·형조 참의(刑曹參議) 한언(韓堰)은 의논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睿宗)을 아버지[考]로 삼고 대통(大統)이 정해졌으니,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같이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함은 《예경(禮經)》에 불합(不合)하며, 다만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게 부제(祔祭)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군(大君)이 봉사(奉祀)함도 예(禮)에 또한 합당하지 못합니다. 별묘(別廟)를 세워,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사간(司諫) 박숭질(朴崇質)·정언(正言) 최신한(崔信漢)은 의논하기를,

"인자(人子)가 어버이에 대한 정(情)은 비록 무궁하다 하더라도 예(禮)는 참으로 중한 것이 됩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의 부묘(祔廟)를 의논하는 것은 지정(至情)에서 말미암음이라, 신 등이 이를 알지 못함은 아니나, 다만 종묘(宗廟)의 예는 오로지 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은즉 사친(私親)을 부묘하는 것은 예에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려(高麗)의 대종(戴宗)을 승부(陞祔)한 것은 특히 일시의 정(情)에서 나온 것이고, 고제(古制)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닌데, 어찌 성조(盛朝)에서 본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대사헌(大司憲) 윤계겸(尹繼謙), 집의(執義) 이형원(李亨元),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 지평(持平) 서근(徐近)·윤혜(尹惠)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예로부터 방지(旁支)로 대통(大統)을 입승(入承)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애제(哀帝)는 낳아 준 정도왕(定陶王)을 추존(追尊)하여 공황(共皇)을 삼고, 경사(京師)에 사당을 세웠으며,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낳아 준 복안의왕(濮安懿王)을 높이어 별도로 사당을 세워 왕자(王子) 종의(宗懿)를 복국공(濮國公)으로 삼아,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행하여 이루어진 법입니다.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

王)은 이미 추숭(追崇)하는 예(禮)를 정하였으니, 별도로 사당을 세워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장하게 하면, 진실로 한·송(漢宋)의 고사(故事)에 부합하나,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의리에 미안(未安)합니다."

하고, 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광성군(光城君) 김겸광(金謙光)·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형조 참판(刑曹參判) 정문형(鄭文炯)·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안빈세(安貧世)·행 호군(行護軍) 고태필(高台弼)·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여천군(麗川君) 이몽가(李蒙哥)·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행 호군(行護軍) 윤잠(尹岑)·행 사직(行司直) 홍익성(洪益誠)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 이미 봉(封)하여 왕세자(王世子)를 삼았고, 비록 대위(大位)에 나아가지 못하였더라도 천자(天子)가 이미 왕으로 추존하기를 허락하였으니, 한(漢)나라 거록(鉅鹿)의 남돈군(南頓君)이 임금이 된 것과 송(宋)나라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소속(疏屬)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니, 종묘(宗廟)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종(睿宗)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 즉, 한 사당에서 아울러 양고(兩考)를 일컫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또 소목(昭穆)의 차서(次序)에도 또한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마땅히 태묘(太廟)를 별도로 세워, 황고(皇考)라고 일컬어 왕자(王子)로써 이를 주장(主掌)하지 말게 하고, 무릇 모든 묘제(廟制)와 사전(祀典)을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에 의한다면, 존숭하는 지극함이 태묘와 별다름이 없고, 거의 정례(情禮)에도 합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허형손(許亨孫)·행 사직(行司直) 김한(金瀚)·행 호군(行護軍) 김종순(金從舜)·행 부사직(行副司直) 안극사(安克思)·행 사과(行司果) 유계번(柳季藩)·행 부사직(行副司直) 이원효(李元孝)·행 부호군(行副護軍) 조지(趙祉)·행 부사용(行副司勇) 유효진(柳孝眞)·행 호군(行護軍) 정효항(鄭孝恒)·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박숙진(朴叔蓁)·행 호군(行護軍) 심인(沈湮)·이조 참의(吏曹參議) 심한(沈澣)·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 김극유(金克忸), 행 호군(行護軍) 한충인(韓忠仁)·권종손(權宗孫)·전자종(全自宗), 행 사용(行司勇) 송의(宋衣)는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세조조(世祖朝)에 주청(奏請)하여 왕세자(王世子)가 되었으니, 다른 왕자(王子)의 예(例)가 아닙니다. 이제 주상께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왕에 봉(封)하기를 주청(奏請)하여 고명(誥命)을 받았은즉, 회간왕은 비록 재위(在位)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미 왕이 되었으니, 진실로 부묘(祔廟)함이 마땅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선후(先後)를 가지고 의혹을 하나, 예종(睿宗)이 대군(大君)으로서 회간(懷簡)이 동궁(東宮)으로 계시던 때에는 정지(正至)와 생신(生辰)에 몸소 하례(賀禮)를 행하였은즉, 회간왕은 군도(君道)이고, 예종은 신도(臣道)이니, 이는 노(魯)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禮)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회간왕을 예종의 위에 부(祔)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황치신(黃致身)·밀산군(密山君) 박거겸(朴居謙)·곤산군(昆山君) 배맹달(裵孟達)·철성군(鐵城君) 박식(朴埴)·행 부사맹(行副司孟) 홍약치(洪若治)·병조 참의(兵曹參議) 성귀달(成貴達)·병조 참지(兵曹參知) 이병정(李秉正)·행 상호군(行上護軍) 안인후(安仁厚)·행 부호군(行副護軍) 정자원(鄭自源)·대사성(大司成) 권윤(權綸)·예조 참의(禮曹參議) 안관후(安寬厚), 행 사직(行司直) 임수겸(林守謙)·홍경손(洪敬孫)·이계전(李季專)은 의논하기를,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이미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즉,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마땅히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 부묘(祔廟)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일러 부모(父母)라 하고, 낳아 준 쪽은 일러 백숙 부모(伯叔父母)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대경(大經)이며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이니, 변역(變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는 상경(常經)이 있고 권변(權變)이 있어서, 일의 변(變)을 만나 이를 권도(權道)로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으면, 성인(聖人)의 소위(所爲)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민(臣民)에게 복[祿]이 없어 뜻밖에 양도 대왕(襄悼大王)이 갑자기 군서(群庶)를 버리시므로, 신민(臣民)은 황황(遑遑)하여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몸소 대책(大策)을 정하시고, 오직 성궁(聖躬)을 간택하시어 대업(大業)을 주셨으니, 비록 후사(後嗣)가 된 의리가 지극히 중하나, 어버이를 존숭하는 법[典]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호안국(胡安國)도 이르기를, '낳아 준 의(義)도 지극히 존대(尊大)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는가?' 하였거늘, 더구나 회간대왕은 세조(世祖)께서 이미 왕(王)의 예(禮)로써 명하여 장례하였고, 또 왕으로 추존함을 황제에게서 받았은즉, 회간(懷簡)을 양도(襄悼)의 위에 올리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합니다. 만약 선유(先儒)의 의논을 따라, 별도로 묘우(廟宇)를 세워서 제사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회간 대왕은 이미 명(命)을 받았으므로, 대군(大君)이 또 봉사(奉祀)할 수 없으니, 이것을 신이 이른바, 일의 변(變)을 만나 권도로써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성인(聖人)의 소위(所爲)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증(李克增)·공조 판서(工曹判書) 김교(金嶠)·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한성우윤(漢城右尹) 이전수(李全粹)는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그전대로 별묘(別廟)하여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하면, 5세(五世)뿐 아니라 스스로 대종(大宗)이 되니, 향사(享祀)도 영세(永世)에 이를 수 있으며, 만약 부묘(祔廟)한다면 비록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더라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옛적에 순(舜)이 요(堯)의 천하(天下)를 받으며, 그 수선(受禪)하고 고섭(告攝)할 즈음에, 우묘(虞廟)에 가지 아니하고, 문조(文祖)에서 명을 받았고, 우(禹)가 순(舜)의 천하를 받고는 하묘(夏廟)에 가지 아니하고 신종(神宗)에게서 명을 받았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스스로 창업하여 전수(傳授)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왕(太王)·왕계(王季)를 왕으로 추존하고, 위로 선공(先公)을 제사하되 천자(天子)의 예(禮)로써 하였습니다. 이성(異姓)의 전수(傳授)도 일찍이 감히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대통(大統)을 받아 소목(昭穆)을 이어, 왕손(王孫)으로서 왕위(王位)를 계승함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대통을 계승하여 예종(睿宗)을 황고(皇考)라 하고, 회간왕(懷簡王)을 황백고(皇伯考)라 하였으니, 이는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간왕도 아울러 부묘(祔廟)한다면 그 백고(伯考)라고 일컬음이 온당치 못한 것이 됩니다. 옛적에 광무제(光武帝)는 한(漢)에 있어서 친진(親盡)하고 대수(代數)가 멀므로, 마땅히 시조(始祖)가 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낳아 준 이를 추숭(追崇)하지 못하고, 별도로 남돈군(南頓君) 이상 사친(四親)을 세워, 태수(太守)·영장(令長)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하니, 사책(史策)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겨 기록하기를, '과은(寡恩)의 비평[譖]을 당년(當年)에 듣지 못하였고, 실례(失禮)의 의논[議]이 후대(後代)에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송(宋)나라 영종(英宗)이 인종(仁宗)의 뒤가 되어,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추숭(追崇)하려고 하니, 그 당시의 정신(廷臣)이 옳지 못함을 고집하여, 또한 별묘(別廟)를 세우고 자손(子孫)을 봉(封)하여 왕(王)으로 삼고, 대대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두 인군(仁君)이 그 소생(所生)을 극진히 추숭하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로되, 돌아보건대 대통(大統)을 전승함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 있어서도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몸은 태조(太祖)의 세자(世子)가 되고, 수년을 향국(享國)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성(列聖)과는 다른 까닭으로 비록 부묘(祔廟)를 하였으나, 묘호(廟號)가 없고, 세종(世宗)·문종(文宗)·세조(世祖)도 아직 묘호(廟號)를 추상(追上)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뜻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간왕이 비록 세조(世祖)의 원자(元子)로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 하였으되 일찍이 왕위(王位)에 오르지 못하였은즉 왕으로 추존하여 부묘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낳아 준 의(義)는 지존 지대(至尊至大)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의경(懿敬)을 추숭하여 대왕(大王)으로 하였고, 천자(天子)가 또 시고(諡誥)와 책명(策命)을 주었으며, 또 별묘(別廟)로 봉사(奉祀)하여 천만세(千萬歲)를 불천(不遷)하는 신주[主]로 하였으니, 이는 존숭함을 극진히 한 것으로서 성상(聖上)의 성효(誠孝)를 조금 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부묘(祔廟)를 해야만 그 존숭하기를 극진히 함은 아닙니다. 마땅히 별묘를 인연하여 제사하소서. 그러나 당초 제사 받드는 것을 의논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일에 의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봉사(奉祀)할 것을 청하였으되 신은 그 때에도 또한 옳지 못하

다고 하였습니다. 복안의왕은 천자(天子)의 아비로서 다시 높이어 임금[皇]을 삼았으며, 제사를 받드는 자도 또한 왕을 봉하여 복왕(濮王)으로 태조(太祖)를 삼고, 세대를 오묘(五廟)로 하였으니, 이것은 예법(禮法)에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은 제후(諸侯)이고, 월산 대군(月山大君)은 대부(大夫)이니, 대부가 그 봉사(奉祀)함에 마땅하지 못한 것이 셋이 있습니다. 대군의 자손이 회간왕을 불천(不遷)의 신주로 삼고, 대군(大君)을 소(昭)로 삼아 다음을 목(穆)으로 삼으면, 이는 왕으로써 태조(太祖)를 삼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대부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신하는 친척으로 임금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하나입니다. 제후는 오묘(五廟)이고, 대부는 삼묘(三廟)인데, 제후로써 3대(代)의 묘(廟)를 제향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둘입니다. 우리 나라의 가묘(家廟)는 풍악[樂]을 쓸 수가 없고, 제품(祭品)도 포(脯)·과(果) 약간 그릇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대군 이하로서 용악(用樂)·생뢰(牲牢)의 제사를 할 수 있게 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셋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대군 이하는 마땅히 종묘(宗廟)에 공신(功臣)의 예(例)와 같이 배식(配食)하여도 무방(無妨)하다.'고 하나, 이것은 이 예(禮)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대군 이하로 하여금 단지 묘사(廟事)만 감독하게 할 뿐이고, 봉사(奉祀)를 일컬을 수는 없으니, 대군 이하는 스스로 별도의 가묘(家廟)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세조(世祖)의 적윤(嫡胤)으로 이미 봉하여 세자가 되었으니, 비록 불행히 세상을 일찍 떠나 정위(正位)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통(正統)의 전(傳)함은 마땅히 대왕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천자(天子)의 고명(誥命)을 받아, 추봉(追封)하여 왕이 되었은즉 그 종묘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이치에 있어 진실로 당연합니다. 옛적에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효소제(孝昭帝)의 뒤를 입계(入繼)하였는데, 사황손(史皇孫)은 바로 그를 낳아 준 아버지이므로 황고(皇考)라고 칭하여 경사(京師)에 입묘(立廟)하였고, 소목(昭穆)을 진서(陳序)하여 구묘(九廟)에 서열하니, 이로부터는 제왕(帝王)의 방지(旁支)로써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많았습니다마는, 낳아 준 이를 추숭하여 그 어버이를 높이는 대의(大義)를 극진히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애제(哀帝)만은 성제(成帝)의 뒤를 입계(入繼)하여 정도왕(定陶王)을 추숭하여 공황(共皇)을 삼고, 스스로 자신을 사손[嗣]으로 삼으니, 통서(統緖)가 둘이 되는 혐의가 있었던 까닭으로 당시에 그르다고 여겼으며, 후세에는 기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간 대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 종묘(宗廟)에 승부(升祔)한다 하더라도 황백고(皇伯考)로써 칭하면, 정통(正統)에 혐의되는 고실[失]이 없고, 반열로써 부묘(祔廟)하면 세차(世次)에 등제(登除)한 혐의가 없습니다. 계승한 의리가 지대(至大)하고, 낳아 준 은혜가 지중(至重)한데 어찌 편벽되게 폐(廢)하여서 후(厚)하고 박(薄)한 것이 그 사이에 있게 하겠습니까? 예(禮)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할 수 없다' 하였고, 한유(漢儒)도 또

한 이르기를, '춘추(春秋)의 의(義)는 임금을 신서(臣庶)의 집에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바로 별소(別所)에 입묘(立廟)하여 신하로써 이를 주관하게 하면, 예(禮)에 참람하고 분수를 범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의논하는 자는 이를 애석히 하지 아니하고, 승묘(升廟)에만 인색하니, 무엇을 이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살아서 천위(踐位)의 행사를 못하였은즉, 이제 비록 왕에 추존(追尊)하였더라도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함은 의(義)에 편하지 못하니, 별묘(別廟)를 국중(國中)에 세워 모든 향천(享薦)을 종묘의 의식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행제(行祭)하고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주관하지 말게 하라.' 하니, 이것도 또한 통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태왕(太王)·왕계(王季)는 모두 추존(追尊)하여 왕이 되었으나, 왕자(王子)의 예(禮)로 향사하였으니, 어찌 살고 죽었다고 하여 그 예(禮)를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간 대왕은 성궁(聖躬)을 탄육(誕育)하여 공덕(功德)이 더할 수 없이 크며, 또 이미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고서 왕이 되었은즉, 종묘(宗廟)에 승부(升祔)함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묘우를 주인 없는 데에 위임하려 하니, 어찌 낳아 준 이를 존숭하는 아름다운 뜻이겠습니까? 때에 따라 법을 만들고 형편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하는 것이니, 종묘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그 정의(情義)에 있어, 거의 중도(中道)에 합당합니다."

하고,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신효(李愼孝)·행 사과(行司果) 이영(李聆)·행 부사정(行副司正) 최효심(崔孝深)·행 사맹(行司猛) 권인(權引)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정식으로 동궁(東宮)이 되었고, 이제 또 고명(誥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진실로 부묘(祔廟)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선후(先後)로써 말한다면, 회간왕이 동궁(東宮)에 계실 때 예종(睿宗)은 대군(大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간왕은 임금이 되고 형이 되며, 예종(睿宗)은 신하가 되고 아우가 되니, 노(魯)나라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가 아닙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을 예종(睿宗)의 위[上]에 붙이는 것은 의심이 없고, 황백고(皇伯考)라 칭호(稱號)하심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계손(李繼孫)·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방지(旁支)로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낳아준 부모에게 비록 존숭(尊崇)을 하였더라도 일찍이 부묘(祔廟)하지 못하였은즉, 이제 부묘하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漢)나라 애제(哀帝)가 아버지를 추존(追尊)하여 정도 공황(定陶共皇)을 삼았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아버지를 추존하여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삼았으되, 일찍이 추숭(追崇)하여 제(帝)로 하지 않았은즉, 진실로 부묘(祔廟)의 여부(與否)를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경왕(懿敬王)은 천자(天子)가 추봉(追封)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을 삼았으니, 정도(定陶)·복왕(濮王)과는 사체(事體)가 같지 아니하여, 마땅히 일국(一國)이 존숭하는 예(禮)로 향사하여야 하는데, 신자(臣子)가 그 사이에 재감(裁減)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또한 미안(未安)함이 있습니다. <그러

나> 칭호(稱號)에 이르러서는 만약 부묘(祔廟)하게 되면 마땅히 천서(天序)에 의하여 일컫게 하소서."

하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철견(李鐵堅)·이조 판서(吏曹判書) 정효상(鄭孝常)·유성군(楡城君) 선형(宣炯)은 의논하기를,

"양도 대왕(襄悼大王)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으니, 후사(後嗣)가 된 의(義)가 이미 드러났고, 회간 대왕(懷簡大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으면, 아버지를 둘로 하지 않는 의(義)에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정문(情文)에 의거하여 종(宗)이라 일컫고 부묘(祔廟)하는 것은 모두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260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

성종 7년 《 양성지 - 성종 7년 .... 2 건 》

성종 066 07/04/11(갑신) / 현석규의 건의로 춘추관 시정기를 사국의 직임을 띤 고위 관직자로 감독하게 하다

성종 074 07/12/17(병술) / 노사신·서거정·이파가 《삼국사절요》를 완성하고, 시문을 모아 《지리지》에 첨가하다

《 성종 066 07/04/11(갑신) / 현석규의 건의로 춘추관 시정기를 사국의 직임을 띤 고위 관직자로 감독하게 하다 》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무릇 시정(時政)은 춘추관(春秋館)에서 해마다 찬수(撰修)하므로, 이를 일러 시정기(時政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축년에 <성상께서> 즉위(卽位)하신 이후로 마침 많은 일과 또 감동(監董)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로지 《실록(實錄)》을 찬술(撰述)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사국(史局)의 직임(職任)을 띤 지위(地位)가 높은 자로써 늘 종사하여 이를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고 하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와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를 추천해 아뢰었다.

【원전】 9 집 33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성종 074 07/12/17(병술) / 노사신 · 서거정 · 이파가 《삼국사절요》를 완성하고, 시문을 모아 《지리지》에 첨가하다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우찬성(右贊成) 서거정(徐居正)·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가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짓고 전문(箋文)을 붙여서 바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에게 명하여 공궤(供饋)하게 하고, 이어서 노사신 등에게 우리 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모아 **양성지(梁誠之)**가 지은 《지리지(地理志)》에 첨가하여 실으라고 명하였다.

【원전】 9 집 401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과학-지학(地學)

성종 8년 〈 양성지 - 성종 8년 .... 26 건 〉

성종 083 08/08/03(정유) / 성균관에 나가 석전을 행하고 명륜당에서 유생을 시험하도록 명하다

성종 083 08/08/06(경자) / 남원군 양성지가 친사 문묘송을 바침과 아울러 서(序)하다

성종 084 08/09/16(경진) / 남원군 양성지가 의주·안주·황주 등지의 성 축조에 관하여 상소하다

성종 085 08/10/02(병신) / 양성지·이숭원·김자정·임사홍·경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성종 085 08/10/04(무술) / 장령 김제신이 대사헌 양성지의 위인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성종 085 08/10/04(무술) / 사간 경준이 대사헌 양성지의 위인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성종 085 08/10/05(기해) / 양성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성종 085 08/10/05(기해) / 손비장·신준·박숙진 등과 양성지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성종 085 08/10/05(기해) / 이조 판서 강희맹이 대사헌의 제수를 바꿀 것에 대해 건의하다

성종 085 08/10/05(기해) / 양성지·이계손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성종 085 08/10/05(기해) / 사간 경준이 양성지의 위인됨에 관해 상소하다

성종 085 08/10/07(신축) /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의 일을 변명하기 위해 차자를 올리다

성종 085 08/10/09(계묘) / 양성지의 사건에 대해 《실록》을 상고하도록 춘추관에 전지하다

성종 085 08/10/09(계묘) / 이인석·이숭원 등을 불러 양성지의 사건에 대해 묻다

성종 085 08/10/10(갑진) / 춘추관에서 예종조의 실록을 상고한 내용에 대해 아뢰다

성종 085 08/10/11(을사) / 한명회·서거정 등과 대간의 말이 틀렸음에 대해 논하다

성종 085 08/10/11(을사) / 장령 김제신·사간 경준 등을 불러 그들의 과실에 대해 주의를 주다

성종 085 08/10/12(병오) / 장령 김제신·헌납 김괴 등이 양성지의 일에 대해 아뢰다

성종 085 08/10/12(병오) /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을 무고한 것에 관하여 상소하다

성종 085 08/10/14(무신) / 인정전에 나가 의정부·육조에서 진연하며 양성지의 사건에 대해 의논토록 하다

성종 085 08/10/14(무신) /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을 무고한 것에 관하여 상소하다

성종 085 08/10/15(기유) / 양성지를 불러 그의 일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전지하다

성종 085 08/10/15(기유) / 장령 김제신이 양성지의 일로 인해 피혐할 것을 청하다

성종 085 08/10/19(계축) / 양성지·유지·이극균·선형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성종 086 08/11/19(임오) / 재범 절도에 대해 교형 처분의 합당 여부를 전직 정승·대간 등이 의논토록 하다

성종 087 08/12/09(임인) / 이창신·안침·박숙진 등과 주계 부정 심원의 헌책에 대해 논의하다

《 성종 083 08/08/03(정유) / 성균관에 나가 석전을 행하고 명륜당에서 유생을 시험하도록 명하다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친히 석전(釋奠)을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윤자운(尹子雲)과 **양성지(梁誠之)**·김유(金紐)를 독권관(讀卷官)으로 삼고, 정은(鄭垠)과 노공필(盧公弼)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아, 우리 나라에서, <중국 황제에게> 궁각(弓角)을 수매(收買)하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청하는 표(表)를 제목으로 하여, 유생(儒生)을 시험하도록 명하였는데, 응시한 자가 모두 1천 4백인이었다. 그리고 사단(射壇)에 나아가서 회례(會禮)를 베풀기를 정지(正至) 때의 회례의식(會禮儀式)과 같이 하고, 술이 세 순배 돌자,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였는데, 헌가(軒架)에서 풍악이 연주되니, 임금이 네 대의 화살[乘矢]을 쏘아 1시(矢)를 맞히었다. 그리고 나서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과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이하 68인이 차례로 짝을 지어 활을 쏘았는데, 맞힌 자는 상(賞)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는 벌(罰)을 주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해사(該司)에 명하여 방방(放榜)과 유가(遊街) 등의 제사(諸事)를 갖추게 하고, 신시(申時)에 윤자운(尹子雲) 등이 4인을 뽑아 아뢰니, 임금이 진사(進士) 권건(權建)을 제1등으로 삼고, 송질(宋軼)과 민사건(閔師騫)·송윤종(宋胤宗)을 차등으로 삼았다. 임금이 단상(壇上)에 나아가서 방방(放榜)하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권건 등이 나가자, 임금이 4관(四館)에 명하여 신래(新來)를 불러서 희학(戲謔)을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내구마(內廐馬)를 타게 하였는데, 유가(遊街) 때에는 다리[橋]와 문(門)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원전】 9 집 484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성종 083 08/08/06(경자) / 남원군 양성지가 친사 문묘송을 바침과 아울러 서(序)하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친사 문묘송(親祀文廟頌)을 바치고, 아울러 서(序)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께서 보위(寶位)에 오르신 지 3년이 지난 임진년 봄 정월에 공손히 조묘(祖廟)를 배알하시고, 4년(1473) 가을에 또다시 몸소 사직(社稷)에 제사하시고, 금년 가을 7월 17일 임오(壬午)에 이르러서는 예조(禮曹)에 전지하여 이르시기를, '인군이 만민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선성(先聖)의 가르침에 의뢰하는 것이다. 내가 몸소 석전(釋奠)을 행하려고 하니, 경 등은 각각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어, 이에 대소 신료(臣僚)가 모든 일을 분주하게 주선하여, 8월 초3일 상정(上

丁)에 이르러서, 마침내 몸소 선성(先聖)을 대성전에서 제사하니, 천일(天日)이 청명하고, 제사 일에 결점이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에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모든 생도의 사배례(四拜禮)를 받으시니, 제생(諸生)이 무려 1천 4백 인이나 되었고, 신(臣) 윤자운(尹子雲)과 신 **양성지(梁誠之)**·신 김유(金紐)에게 명하여 독권관(讀卷官)을 삼으시고, 신 정은(鄭垠)과 신 노공필(盧公弼)로 대독관(對讀官)을 삼아, 친히 예지(睿旨)를 주시어 모든 학생에게 내려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대사단(大射壇)에 나아가 백관(百官)에게 잔치를 내리시어 만수상(萬壽觴)을 올리고, 웅후(熊侯)를 90보(步) 밖에 베풀어서 몸소 활과 화살을 가지시고, 친히 사례(射禮)를 행하시니, 종재(宗宰)로부터 백관(百官)에 이르기까지 우러러보고 탄식하며 성사(盛事)를 얻어 보았으니, 크게 다행이었습니다. 또 시사(侍射)하는 모든 신하가 십백(十百)으로 짝이 되어 정백(精白)하지 않음이 없고, 한 마음으로 휴명(休命)을 받아, 그 이긴 자는 상을 받고, 이기지 못한 자는 벌을 내리시니, 시핑(兕觥)에 읍양(揖讓)하고 오르내리는 그 다툼은 참으로 군자(君子)였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특별히 신 윤필상(尹弼商)과 신 서거정(徐居正)·신 현석규(玄碩圭)·신 임사홍(任士洪)·신 손비장(孫比長)에게 명하시어 시험하는 일을 가서 독려하게 하시고, 윤자운 등이 거자(擧子) 4인이 시권(試卷)을 진계(進啓)하니, 성상께서 권건(權建)을 제1인으로 삼으시고, 아울러 3인에게 급제(及第)를 내리시어, 곧 이조(吏曹)에 명하셔서 권건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제수하시고, 헌(軒)에 임하시어 방(榜)을 붙이게 하시고, 각각 내구(內廐)의 안장 갖춘 말[鞍馬]을 하사하셨습니다. 순군(巡軍)에서는 영인(伶人)을 올리고, 도관(都官)에서는 천동(天童)을 갖추며, 예빈시(禮賓寺)에서는 꽃을 만들고, 승여사(乘輿司)에서는 일산(日傘)을 올리니, <장원·급제> 4인이 모두 은사(恩賜)를 받고 구가(九街)의 노닐던 것을 모방하여, 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사하신 일산은 바람에 나부끼고, <머리에 꽂은> 천화(天花)는 햇빛에 빛나며, 가갈(呵喝)하는 소리는 마을을 뒤흔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아, 그 집안 사람과 부자(父子)도 서로 알지를 못하니, 이 어찌 국자(國子)와 사문(四門)의 유생(儒生)만이 모두 지난날의 학업에 태만하였음을 한(恨)하여 더욱 장래의 송습(誦習)을 권장함이겠습니까? 무릇 배종(陪從)하는 신료(臣僚)와 시위(侍衛)하는 군사가 부러워하고 감탄하며 흠모해서, 자손을 훈계하며, 얼굴을 가리고 울게까지 한 자가 없지 않았을 것이니, 이것은 한 가지로 백 가지를 권장하여, 인재를 만들고 교화의 근원을 밝게 닦는 데에 극진한 것입니다. 날이 또 저물어 법가(法駕)가 환궁(還宮)하니, 서울 사람의 남녀가 도로를 꽉 메우고 팔방(八方)으로 소리를 전하여 가며 만세토록 이룩하자는 말이 있었고, 다음날인 무술(戊戌)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인솔하고 전문(箋文)을 올려서 하례를 하였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하늘이 사목(司牧)을 낳으시어 군사(君師)를 겸하여 맡기시니, 우리 전하께서는 이미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하시어 천심(天心)을 능히 향유하여서, 자주 풍년의 상서를 얻으시었고, 금년 봄에 또 친잠(親蠶)의 예(禮)를 비로소 거행하신 것은 백성의 의식(衣食)이 나오는 것을 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

성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중한 줄을 알고, 예의(禮義)와 충효(忠孝)가 배 부르고 따뜻한 것보다 더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서, 일찍이 교도(敎導)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몸소 선성(先聖)을 문묘(文廟)에서 제사하시니, 문묘(文廟)는 예악(禮樂)과 교화(敎化)가 나오는 곳입니다. 또 몸소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심은, 곧 반궁(泮宮)에서 괵이(馘耳)를 바치어 문무(文武)를 한 가지 도(道)로 삼는 것이며, 회례연(會禮宴)을 행하심은, 곧 반궁(泮宮)에서 술을 마시어 군신(君臣)은 일체(一體)로 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거행하심은 예악과 문무와 군신·상하의 도가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고려(高麗) 5백 년 사책(史策)에도 일찍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직책이 사국(史局)을 욕되게 하고, 또 학관(學官)을 겸하였으니, 성사(盛事)를 목도(目覩)하고 감히 묵묵히 있을 수가 없어, 감히 배수 계수(拜手稽首)하고 송사(頌辭)를 올립니다.

○황성(皇聖) 1장(章) 8구(句)

아아! 거룩하신 선상께서는
성품이 나면서부터 아시어,
천하를 경륜하시니
도(道)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사물의 시종을
집대성하시고,
사대(四代)를 손익하여
육경(六經)을 세상에 드러내셨네.
요·순보다 어지시어
일월(日月)이 함께 밝았네,
기린은 교외에서 나왔으나
봉황은 기산(岐山)에서 울지 않았네.
동 주(東周)를 만드려고
구이(九夷)에 거주하려 하니,
사해(四海)가 함께 우러러보고
백왕(百王)이 스승으로 삼았네.

○묘식(廟食) 1장 8구

황천(皇天)이 창생을 내리시고
성인(聖人)으로 군사(君師)를 삼으시니,
소왕(素王)이 있지 않았으면

누가 나의 지혜를 열으리오.
망망한 구토(九土)에
배우지 않은 이가 없으니,
만세토록 남면(南面)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혈식(血食)하시네.
한(漢)나라는 대뢰(大牢)로써 하여
풍속이 사방으로 번져 나갔고,
당(堂)나라는 곤룡포(袞龍布)를 입어
문명(文明)한 나라가 되었네.
우리 나라를 돌아보건대
인현(仁賢)에 교화를 입어.
춘추(春秋)로 게으르지 않아서
거의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하였네.
○수헌(垂憲) 1장 8구
아아! 거룩하신 태조(太祖)께서
천운에 응하여 나라를 여시고,
제일 먼저 문묘(文廟)를 창건하여
향사(享祀)가 어기지 않았네.
태종(太宗)께서 서업(緖業)을 계승하시니
오직 계술(繼述)하기에 부지런하셨고,
세종[世廟]께서 즉위하시니
빛나는 제작(制作)이 있었네.
우리 세조(世祖)께 미쳐서
당(堂)에 올라 술잔을 바치니,
온 나라가 다 기뻐하여
만세토록 법을 드리우셨네.
문화는 천도(天道)를 잃지 않았고
도독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성자(聖子)와 신손(神孫)이
더욱 문치(文治)를 천명하셨네.

○친사(親祀) 1장 8구
밝으신 우리 임금이
문득 우리 나라를 두시어,
삼가 묘사(廟社)를 보시고,
향사하고 제사하셨네.
몸소 적전(籍田)을 갈고 누에를 치시어
백성의 의식(衣食)을 중히 하셨네,
배부르고 따뜻한데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禽獸)와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예의(禮義)로써 인도하여
학교가 성(盛)하였으니,
이에 택궁(澤宮)에 나아가
몸소 선성(先聖)에게 제사하셨네.
주례(酒醴)를 다하셨고
자성(粢盛:祭需)도 정결하였으니,
나의 소사(昭事)를 믿으시고
이르러 오시기를 비나이다.
○작인(作人) 1장 8구
이에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곤룡포를 입으시니,
많은 유생이
엄숙하게 대궐에 모였네.
상신(相臣)에게 명하여
모든 유생을 시험하니,
신도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예모(睿謨)를 품수(稟受)하였네.
선택이 정밀하니
어찌 인재를 만들지 못하리오?
사람들이 다투어 머리를 모아
충신이 되기를 원하였네.

헌(軒)에 임하여 방(榜)을 붙이니
하늘의 해가 오색(五色)을 내리고,
어사화와 일산을 하사하니
하늘에서 가갈(呵喝)하였네.
○대사(大射) 1장 8구
이에 동문(東門)을 나와
바로 사단(射壇)에 나아가고,
웅후(熊侯)를 베푸니
용기(龍旗)가 안안(安安)하였네.
동궁(彤弓)을 가지시니
사시(四矢)가 깨어지는 것 같으며,
성인(聖人)이 맞히시니
시신(侍臣)이 하례하였네.
장상(將相)이 배사(陪射)하고
중우(衆우)가 다투니,
으뜸의 상도 받고
벌주도 마셨다네.
노(怒)함이 아니고 가르침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네.
한 사람에게 경사 있으니
사방에서 와 복종하였네.
○사연(賜宴) 1장 8구
일표(日表)가 목목(穆穆)하고
천어(天語)가 양양(洋洋)하며.
교문(轎門)이 만 가지로 헤아리니
모두 경광(耿光)을 우러러보았네.
자리를 베풀고
연회를 내리시니,
선악(仙樂)이 교주(交奏)되고
무공(武功)과 문덕(文德)이 빛났네.

맛있는 술도 많고
좋은 안주가 기름지니,
만수(萬壽)를 바치어 절하여
만수하심이 끝이 없도다.
건곤(乾坤)이 청녕(淸寧)하고
예의가 어긋남이 없으니,
태평한 데에 취하여
질서 있고 즐거워하네.
○영보(永保) 1장 8구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몸소 태평을 이루시고,
스승을 존숭하고 도(道)를 중히 여기시니
대례(大禮)로써 이루셨네.
선비를 뽑음에
덕(德)을 관찰하시며,
엄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시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네.
반궁에서 과녁을 쏘시니
문무(文武)가 하나가 되고,
성균관[辟雍]에 임하여 잔치를 베푸시니
군신(君臣)이 서로 기뻐하네.
끝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여
천 년을 하루같이 하시네.
만년이 되도록
영구히 우리 나라를 보존하시리로다.
하니, 임금이 표피(豹皮)로 만든 좌자(坐子) 1사(事)를 하사하였다.

【원전】 9 집 48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문학(文學)

《 성종 084 08/09/16(경진) / 남원군 양성지가 의주·안주·황주 등지의 성 축조에 관하여 상소하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하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고려 태조(高麗太祖)가 친히 훈요(訓要)를 지어 사왕(嗣王)에게 주기를,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조순(調順)하여 만대의 근본이니, 마땅히 사중월(四仲月)을 당하면 순행(巡行)하여 머물러서 1백 일을 지내라.' 하였다 합니다. 이 때문에 태조 이후로 의종(毅宗)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이 모두 서경에 순주(巡駐)하여 혹은 어의(御衣)를 머물러서, 물건을 하사하기도 하고 조세를 감면하기도 하고,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시험하여 으레 서경의 한 사람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패강(浿江)이 의주(義州)의 압록강(鴨綠江) 안주(安州)의 살수(薩水) 같은 것이 아니고, 서경은 산이 중첩되고 물이 막히어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으므로, 수덕(水德)이 순하다고 크게 드러내어 말하고 여러 번 그 곳에 거둥하며, 따라서 혜택을 베풀고, 또한 따라서 진압하고 복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위(防衛)하였어도 오히려 편안치 못한 것이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본조(本朝)의 태조(太祖)께서 개국하시고 여러 성왕(聖王)이 잇달아 일어나시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사랑하여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아서 왕씨(王氏)가 강역(疆域)을 구별하여 너무 형적을 드러낸 예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서쪽 사람들이 근년에 극성(棘城)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道)를 버리는 것이다.' 한답니다. 이것이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이 묘모(廟貌)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또한 어찌 한 도의 인심을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사람에게는 각각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실로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암학(巖壑)보다 험하고 누란(累卵)보다 위태로우며, 썩은 새끼로 말을 어거하는 것 같고 급한 물에 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참으로 집집마다 일르고 호구마다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예전 사람이 변방에 느릅나무를 심었는데 마침 적국의 의심을 열어 놓았고, 회수(淮水)를 그어 경계를 삼았는데 또한 중원(中原)이 바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방(關防)의 건치(建置)를 어찌 익히 생각하고 살펴 계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원만경(元萬頃)이 우리에게 압록(鴨綠)의 험함으로 격문(檄文)하였고, 우문술(宇文述)이 살수(薩水)에서 패군(敗軍)하였고, 귀주(龜州) 동교(東郊)의 싸움에서는 거란(契丹)의 30만 군사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나라의 형세가 바야흐로 강하고 강감찬(姜邯贊)이 그 재주와 지혜를 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절령(岊嶺)을 지킬 때에는 홍적(紅賊)이 1만여 명 군사로 쳐서 깨치어 적병이 깊숙이 들어오매 세 원수(元帥)가 그 용맹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고금에 나라를 지키는 규모가 실로 오직 국세의 강하고 약한 것과 장수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한갓 성책(城柵)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

닙니다. 신이 이달 초 9일에 조계(朝啓)에 참여하여 이 의논을 들었는데 다만 말한 자가 어느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일이 기밀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여러 사람 앞에서 상주(上奏)하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염려를 더하고 보신(輔臣)들에게 익히 의논하시어, 아직은 극성의 역사를 정지하고 먼저 의주성(義州城)을 쌓고 다음에 안주(安州)에 성을 쌓고 다음에 황주(黃州)에 성을 쌓아 만세의 계책을 삼으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원전】 9 집 50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성종 085 08/10/02(병신) / 양성지 · 이숭원 · 김자정 · 임사홍 · 경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숭원(李崇元)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연원군(延原君)으로, 김자정(金自貞)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대사간(大司諫)으로, 임사홍(任士洪)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칙(李則)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집의(行司憲府執義)로, 경준(慶俊)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간원 사간(行司諫院司諫)으로, 김제신(金悌臣)을 중훈 대부(中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이세광(李世匡)을 통선랑(通善郎)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괴(金塊)를 봉직랑(奉直郎) 수 사간원 헌납(守司諫院獻納)으로, 성담년(成聃年)을 승훈랑(承訓郎)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원전】 9 집 51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085 08/10/04(무술) / 장령 김제신이 대사헌 양성지의 위인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대저 풍헌(風憲)이란 것은 위로 한 사람의 임금을 받들어 보필(輔弼)하고 아래로는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사악(邪惡)하고 올바른 것과, 대저 탐학(貪虐)하고 청렴(淸廉)한 것을 규찰하여 거론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직(官職)에 있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 몸을 바로잡은 다음이라야 비로소 남을 꾸짖을 수가 있으니, 이른바 '자기의 허물이 없은 뒤에야

남을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성지(梁誠之)**를 본부(本府)의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으나, 가만히 보건대, 양성지는 본래 조행(藻行)이 없고 오로지 재화(財貨)만을 탐(貪)하였으므로 일찍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을 때 그 문전(門前)이 저자와 같아서 자못 보궤 불식((簠簋不飾)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마 판서(五馬判書)라고 그를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자리 안에 능단(綾段)이 있다.'라든지, '말 발굽에 편자를 더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마(五馬)라고 이르는 것은, 그가 받은 뇌물을 헤아린다면 다섯 마바리라는 것이며, '자리 안에 능단이 있다.[席裏有段]'라는 것은 자리로써 능단을 싸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말발굽에 편자를 더한다.[馬蹄加鐵]'라는 것은 그 쇠붙이를 말발굽에 덧붙여 뇌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성지의 더러운 소문이 이와 같았으니, 그에게 규찰(糾察)하는 지위(地位)를 더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양성지의 한 짓을 비록 목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 입에 퍼진 소문은 이와 같으니, 양성지가 능히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부끄러움이 없이 탐오(貪汚)하는 무리들을 탄핵하여 들춰낼 수가 있겠으며, 그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풍헌(風憲)의 탄핵을 듣고서 간담(肝膽)이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와 같으므로 청류(淸流)의 논의가 부끄럽게 여기니, 빨리 파면(罷免)시켜서 대간(臺諫)의 기강(紀綱)을 떨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51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성종 085 08/10/04(무술) / 사간 경준이 대사헌 양성지의 위인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

사간(司諫) 경준(慶俊)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니,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비등(沸騰)하고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아니한데, 신도 또한 능히 의혹(疑惑)되는 바가 없지 아니합니다. 대사헌(大司憲)은 일세(一世)의 기강을 잡고 백료(百僚)를 규찰하여 바로잡으므로 온갖 책임이 돌아오는데, 만약 명망(名望)이 일찍부터 나타나서 남들이 두려워하여 복종(服從)하는 자가 아니면 선임(選任)에 응(應)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양성지의 사람됨이 기운이 없고 조행(操行)이 경박(輕薄)하며 이익을 탐하여 의리를 잊으며, 또 번잡한 일을 다스리는 재능(才能)도 없어서 관직을 역임(歷任)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르는 곳마다 모두 아무런 뛰어난 업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병(老病)이 서로 잇달으고 뜻과 기운이 혼모(昏耗)하여 한직(閑職)에 거(居)하는 것이 편(便)하고 그의 분수에도 알맞

을 터이니, 그가 하루라도 풍헌(風憲)의 우두머리 자리에 거(居)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당(堂堂)한 성조(聖朝)에 훌륭한 선비가 많은데, 어찌 현재(賢才)가 부족하여 반드시 양성지를 등용하여 여러 사람들의 보고 듣는 바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서 여정(輿情)을 쾌(快)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승(政丞)에게 보이게 하였다.

【원전】 9 집 51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성종 085 08/10/05(기해) / 양성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

임금이 구종직(丘從直)이 졸(卒)하였다고 하여 명하여 타위(打圍)를 정지하게 하였다. **양성지(梁誠之)**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이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천지(天地)와 같은 은택(恩澤)을 지나치게 입어 갑신년에 특별히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가 6개월이 지나서 지중추(知中樞)에 임명되었고, 또 3개월이 지나서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시위 소찬(尸位素餐)한 지 5년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신을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하였습니다. 신묘년에 또 성상(聖上)의 은혜를 외람되게 입어서 공신(功臣)의 호(號)를 받았지만, 복(福)이 지나쳐 재앙(災殃)이 생길까봐 항상 간절히 살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근일에 다시 신에게 명하여 대사헌(大司憲)을 삼았으나, 지금 대간(臺諫)들이 신더러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하니, 신은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일에 대간(臺諫)과 재집(宰執)이 서로 다투고 변명(辨明)하였는데, 신은 이를 사사로이 부끄럽게 여겼으나, 금일(今日)에 신의 몸에까지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만약 변명(辨明)하지 아니한다면 뻔뻔스러운 얼굴로써 조정(朝廷)에 설 수가 없을 것이므로 감히 이렇듯 번독(煩瀆)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聖鑑)께서 처리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경준(慶俊)·김제신(金悌臣)을 불러서 묻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 자리 안에 능단(綾段)이 있었다는 따위의 일은 어떻게 해서 이를 알았는가?"

하니, 김제신이 말하기를,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시끄럽게 들끓고 있으니, 풍헌(風

憲)의 우두머리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승(政丞)에게 물으니, 정창손(鄭昌孫) 등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리 안에 능단(綾段)이 있었다는 따위의 말이 어느 때에 나왔는지를 신들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진실로 한때의 풍문(風聞)을 가지고 대신(大臣)을 탄핵(彈劾)한다면 말류(末流)의 폐단은 반드시 취모 멱자(吹毛覓疵)가 될 것이며, 또한 사사로운 원한(怨恨)으로써 서로 비방할 것이니, 이러한 풍습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그 들은 곳을 먼저 묻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만약 그 말의 소종래(所從來)를 묻는다면 누가 능히 다 말하겠는가? 내가 양성지에게 보다 좋은 관직을 제수(除授)하고서 대간(臺諫)을 교체(交遞)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말엽에 풍문(風聞)으로써 탄핵(彈劾)하기를 좋아하고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리지 아니하였는데, 태종(太宗)께서 이러한 폐단을 단호히 개혁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묻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에서 정치하는 체모가 서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경(卿) 등이 비록 불가(不可)하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도 또한 어찌 정치를 하는 체모가 아니겠는가? 양성지에게 보다 좋은 관직을 제수(除授)하고 대간(臺諫)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양성지는 탐오(貪汚)한 이름을 면(免)할 것이요, 언로(言路)도 또한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가령 **양성지(梁誠之)**가 탐오(貪汚)한데도 풍문(風聞)의 일이라고 하여 갑자기 그 직임을 교체한다면 옳지 아니한데, 하물며 양성지는 지금 변명(辨明)하지도 않았으니, 종신토록 그 더러운 이름을 면하지 못하고 누(累)가 자손에게 미칠 것이므로, 그는 반드시 변명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신이 힘써 대신(大臣)의 일을 청(請)하는 것이 혐의(嫌疑)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명예만 구(求)하여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전지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은 그 소종래(所從來)를 묻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미 허락하였는데, 지금 만약 이를 묻는다면 이것은 신의를 잃는 것이다."

하니, 정창손 등이 말하기를,

"묻지 아니하시는 것이 진실로 미덕(美德)이 되나,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자, 전지하기를,

"그렇다면 경(卿) 등이 승지(承旨)와 더불어 함께 이를 물어 보라."

하였다. 이리하여 김제신을 불러서 물으니, 김제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옛날에 전해들은 말인데, 신이 능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마 판서(五馬判書) 등의 말을 신이 어찌 스스로 지어냈겠습니까? 소문에 들으니, 민수(閔粹)가 죄를 입은 것도 또한 이 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경준이 말하기를,

"신은 다만 그 인품(人品)을 논할 따름입니다. 무릇 사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고, 더러우면 더러운 것인데, 만약 양성지 같은 자라면 누가 그더러 깨끗하고 곧아서 풍헌(風憲)의 우두머리 자리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더러우면 이익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면 의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은 이익을 좋아하고 의리를 잊어버린다고 그를 지목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민수(閔粹)의 말은 사초(史草)를 상고하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렸을 적에 또한 이 말을 들었다."

하고, 이어서 양성지에게 명하여 왕명을 기다리게 하였다.

【원전】 9 집 515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성종 085 08/10/05(기해) / 손비장 · 신준 · 박숙진 등과 양성지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말발굽에 편자를 더한다는 따위의 일은, 어제 정승(政丞)들이 모두 말하기를, '바로 옛 시대의 말이요, 금세(今世)의 일은 아닙니다.'고 하면서 지금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고 하였는데, 경 등도 또한 모두 알지 못하는가?"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손비장(孫比長)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수찬(修撰)할 때 민수(閔粹)가 **양성지(梁誠之)**의 일을 썼다가 원망을 살까봐 두려워하여 사초(史草)를 내다가 고쳤는데, 일이 발각되어 죄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신준(申浚)이 말하기를,

"말발굽에 편자를 더한다는 따위의 일은 사림(士林)에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박숙진(朴叔秦)은 말하기를,

"지금 형조 정랑(刑曹正郎) 이인석(李仁錫)이 민수(閔粹)와 더불어 연루(連累)되었으니, 만약 이인석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양성지가 다시 대간(臺諫)과 더불어 면질(面質)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경(卿)의 일은 나도 또한 들었으니, 가볍게 변명(辨明)할 수는 없다. 환궁(還宮)한 뒤에 서서히 사초(史草)를 상고해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원전】 9 집 51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05(기해) / 이조 판서 강희맹이 대사헌의 제수를 바꿀 것에 대해 건의하다 》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의 일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직임(職任)이 중대하니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제수(除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可)하도다."

하였다.

【원전】 9 집 51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085 08/10/05(기해) / 양성지 · 이계손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남원군(南原君)으로 삼고, 이계손(李繼孫)을 자헌 대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원전】 9 집 51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085 08/10/05(기해) / 사간 경준이 양성지의 위인됨에 관해 상소하다 》

사간(司諫) 경준(慶俊)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양성지(梁誠之)**를 논박(論駁)한 일로 논란을 당하다가 행궁(行宮)의 뜰에서 한참 동안 만에야 물러났는데,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도 신은 결코 그것이 망령되지 아니한 줄로 알며, 양성지가 청렴(淸廉)하지 못하고 절개(節介)가 없으며 관리의 재능(才能)도 없다는 것을, 어찌 신(臣)만이 홀로 알겠습니까?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대신(大臣)들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계청(啓請)하면서 대론(對論)하였겠습니까? 무릇 사람이 그 실상(實狀)이 있으면 그 이름이 있게 되며, 그 실상이 없으면 그 이름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아무개[某人]는 청렴하고, 아무개는 탐오(貪汚)하고, 아무개는 관리의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 실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일컫는 것이니, 홀로 양성지에게만은 그 실상이 없었는데도 그런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신은 남의 악(惡)한 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탐오(貪汚)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관리로서의 재능이 없다든지 이렇듯 일컬은 것은 오직 공론(公論)에 의거하여서 이를 일컬었을 뿐입니다. 공론(公論)이 이와 같은데도, 신이 홀로 입을 다물고서[鉗口結舌] 그 가부(可否)에 대한 말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신(臣)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르겠으며, 전하께서도 어떻게 해서 그 선(善)하고 악(惡)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양성지는 그 실상이 있는데도 그 이름을 피(避)하고자 하여, 혹은 말로 하고 혹은 글을 올려 머리를 들고서 발명(發明)하니, 이것은 누구를 속이려는 것이겠습니까? 전하를 속이자는 것입니다. 대저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이요, 나라의 기강(紀綱)이니 이목을 잠시라도 가리울 수가 없고 기강을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는 까닭에 상신(相臣)은 그 말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엎어져 넘어지듯이 관부(官府)를 나가며, 장신(將臣)은 그 말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낭패(狼狽)한 듯이 갑옷을 벗는 것은, 대간(臺諫)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법(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존재하면 나라가 존재하고 법이 폐지되면 나라가 위태로와지는데, 양성지는 홀로 어떠한 사람이기에 허물이 없는 자리에 스스로 처(處)하고자 하여 감히 대간(臺諫)과 더불어 맞버티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간(臺諫)의 입을 막아서 전하를 고립(孤立)시켜 듣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개를 기르는 것은 도적을 막자는 것인데도 짖지 아니하는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잡자는 것인데도 쥐를 잡지 아니하는 고양이를 기른다.'고 하였는데, 저 양성지의 마음은 전하더러 짖지 아니하는 개를 기르게 하고 쥐를 잡지 아니하는 고양이를 기르게 하고자 하니, 신은 그윽이 가슴 아파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헛되다고 여기지 마시

고, 양성지를 청렴하고 절개(節介)가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성상의 마음에서 판단(判斷)하시고 결단(決斷)하시어 의심스러운 점이 없도록 하소서. 만약 양성지가 문묵(文墨)의 재능(才能)이 조금 있다고 여기신다면 지금부터 이후로는 그를 한가한 자리에 두시고 일하는 권한을 주어 성상의 치적(治績)에 누(累)를 끼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원전】 9 집 51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성종 085 08/10/07(신축) /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의 일을 변명하기 위해 차자를 올리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대저 인신(人臣)이 군상(君上)에게 진언(進言)하는 것은, 반드시 친히 듣고서 정확히 알고난 다음이라야 하는 것인에, 하물며 대간(臺諫)으로서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일을 발설(發說)할 때 이를 살피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대간(臺諫)들이 신더러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指目)하는데, 하문(下問)하시는 때에 이르러서는,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남에게 전(傳)해 들었습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며, 이른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애매하게 전(傳)해 들은 일을 가지고 갑자기 신에게 씌우니, 신이 비록 그런 적이 없다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도리어 근거 없는 애매한 일을 신에게 뒤집어씌우므로 신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싶지만, 이것은 구천지하(九泉之下)에서도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함을 지니게 되는 짓이 될 것입니다. 또 경준(慶俊)은 신이 공조 판서(工曹判書)였을 때 낭관(郎官)이었으며, 김제신(金悌臣)은 지금 헌부(憲府)의 요속(僚屬)입니다. 만약 사건이 국가(國家)에 관계된다면 어느 겨를에 그 세세(細細)한 연고를 따지겠습니까마는 직접 보지도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극구 더러운 소리로 비방하니, 비단 아래로 노신(老臣)만을 무함(誣陷)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로 천총(天聰)을 모독하는 데에 이르렀으므로, 신은 비단 제 한 몸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실로 조정(朝廷)의 풍속(風俗)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으로 하여금 옥(獄)에 나아가서 김제신·경준과 더불어 대면(對面)하여 변명(辨明)하게 하여,

만약 신이 죄가 있을 것 같으면 길이 버리시고 용서하지 마시며 저들이 만약 무망(誣妄)하였다면 또한 나라의 법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심히 다행할까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경(卿)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대신(大臣)의 일을 내가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하였다.

【원전】 9 집 51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성종 085 08/10/09(계묘) / 양성지의 사건에 대해 《실록》을 상고하도록 춘추관에 전지하다 》

임금이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양성지(梁誠之)**의 '자리 안에 능단(綾段)이 있었다.' '말발굽에 편자를 더하였다.'는 사건은 《실록(實錄)》을 상고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원전】 9 집 51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09(계묘) / 이인석·이승원 등을 불러 양성지의 사건에 대해 묻다 》

명하여 형조 정랑(刑曹正郎) 이인석(李仁錫)을 불러서 **양성지(梁誠之)**의 사건을 물으니, 이인석이 대답하기를,

"신이 사관(史官)이 되어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하는 데 참여하였는데, 하루는 민수(閔粹)가 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의 사초(史草)에 모두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사초(史草)에 윤사흔(尹士昕)이 술에 취하고, 임원준(任元濬)이 의술(醫術)로써 관직(官職)을 임명받고, **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일 따위가 있어서, 대신(大臣)들에게 원망을 살까 두려우니, 이를 지워버리고 고쳐 쓰고 싶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도 또한 어찌 선(善)한 사람이 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민수가 강치성(康致誠)에게 청하여 이를 고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를 입었고, 신도 또한 공사(供辭)에 연루되어 외방(外方)에 유배(流配)되었다가 그해

겨울철에 신은 사유(赦宥)를 입어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말발굽에 편자를 더하였다는 따위의 말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전(傳)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여 이숭원(李崇元)을 불러서 이를 물으니, 이숭원이 대답하기를,

"신이 그때 승지(承旨)였는데, 들은 바가 이인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원전】 9 집 51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10(갑진) / 춘추관에서 예종조의 실록을 상고한 내용에 대해 아뢰다 》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지금 예종조(睿宗朝)의 실록(實錄)을 상고하니, 기축년 여름 4월에 《세조대왕실록(世祖大王實錄)》을 찬수(撰修)할 때 민수(閔粹)가 사초(史草)에 사신(史臣)의 이름을 쓴다는 말을 듣고서 슬그머니 스스로 두려워하고 꺼려하여, 기사관(記事官) 강치성(康致誠)에게 부탁하여 그 사초(史草)를 몰래 내어다가 글귀를 지우고 고쳐 썼는데, 수찬관(修撰官) 이영은(李永垠) 등이 여러 동료(同僚)들과 더불어 이를 상고하니 지우고 고쳐 쓴 것이 모두 여섯 가지 일이었습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 등이 민수의 공사(供辭)를 취(取)하여서 아뢰니, 임금이 한명회 등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가 말하기를, '처음에 쓰기를, 「사헌부(司憲府)의 관원(官員)들이 옥사(獄事)를 다스린 일 때문에 모두 좌천(左遷)되었다. 처음에 부상(富商) 몇 사람이 재화(財貨)를 다투어 송사(訟事)를 내니, 헌부(憲府)에 내려서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송장(訟狀)을 물을 적에 집의(執義) 이숭원(李崇元) 등이 대답을 잘못해서 즉시 하옥(下獄)되었다가 곧 사면(赦免)되었지만,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는 홀로 구차스레 변명하여[苟容]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관직에 있었다.」 고 하였다가 뒤에 구용(苟容)이란 두 글자를 삭제(削除)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의 사초(史草)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51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11(을사) / 한명회 · 서거정 등과 대간의 말이 틀렸음에 대해 논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끝마치고, 임금이 좌우(左右)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실록(實錄)을 상고하니 **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사건은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구차스레 변명하였다.[苟容]'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대간(臺諫)의 말은 진실로 헛된 것이다."

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말하기를,

"신이 친히 예종(睿宗)의 명(命)을 받들고서 국문(鞫問)하였는데, 과연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신하들이 말하면 들어주시고 계책을 올리면 따르시니 진실로 아름다운 미덕(美德)이십니다. 그러나 신진(新進)의 인사(人士)들이 마땅히 간(諫)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간(諫)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풍문(風聞)을 거론(擧論)하여 탄핵(彈劾)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대신(大臣)들이 반드시 서로 평안하지 못할 것이며 그 조짐이 또한 장차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취모 구자(吹毛求疵)하여 남의 숨겨진 허물을 논(論)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同知事) 서거정(徐居正)이 말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지난번에 전하께서 시(詩)와 어서(御書)를 지어 외신(外臣)에게 내려 주는 것을 논하면서 간(諫)하였다고 하는데, 신의 뜻으로는 말하기를, '인주(人主)가 덕(德)을 근본으로 삼고 문(文)을 말기(末技)로 삼는 것은 덕(德)을 뒤로 하고 문(文)을 앞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사(古事)를 상고해 보면, 당우(唐虞)의 시절에 순(舜)임금이 남훈가(南薰歌)를 지었고, 또 갱재(賡載)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대풍가(大風歌)를 지었고, 한(漢)나라 무제(武帝)는 추풍사(秋風辭)를 읊었는데, 비록 후세(後世)의 기롱(譏弄)을 면하지는 못하였지만 고조(高祖)·무제(武帝)의 덕(德)을 깎아내린 바는 없었습니다. 천장각(天章閣)·규장각(奎章閣)의 두 각(閣)은 모두 송(宋)나라 제왕(帝王)의 저술(著述)을 갈무리하였고, 고황제(高皇帝)는 천자(天子)의 존귀한 몸으로서 친히 시(詩) 3편을 지어서 우리 나라의 사신(使臣) 권근(權近)에게 내려 주었으나, 이를 비난하는 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오로지 사화(詞華)를 일삼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쓰지 아니하였고, 고려(高麗)의 의종(毅宗)이 한갓 시를 읊조리고 방탕(放蕩)에 빠져서 나라를 그르쳤으니, 진실로 불가(不可)한 것입니다. 지금 문치(文治)가 태평(太平)하고, 시(詩)와 문장(文章)은 주색(酒色)에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신은 전하로 하여금 날마다 문자(文字)만을 일삼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혹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한 방해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을 적에 모든 주달(奏達)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同僚)와 더불어 함께 의논한 뒤에야 이로써 주문(奏聞)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혹은 불가(不可)하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마

음의 욕심이란 홀로 아뢰게 되면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품은 생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간에 대간(臺諫)들이 반드시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시비(是非)를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성상께 상달(上達)하는데,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의 과실(過失)은 마땅히 듣는 대로 이를 말해야 하며, 같이 의논한 뒤에 간(諫)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대신(大臣)의 과실이라면 동료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그 진위(眞僞)를 살핀 다음에 논(論)하는 것이 가(可)할 것이다."

하자, 한명회 등이 말하기를,

"비록 인군(人君)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가볍게 마음대로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큰 허물이라면 비록 대간(臺諫)이 아니더라도 대신도 또한 마땅히 간(諫)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51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 성종 085 08/10/11(을사) / 장령 김제신 · 사간 경준 등을 불러 그들의 과실에 대해 주의를 주다 》

명하여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과 사간(司諫) 경준(慶俊)을 불러서 묻기를,

"전일에 **양성지(梁誠之)**의 일은 사초(史草)에 상고하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대들이 남에게 들은 것일 게다."

하니, 김제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들은 지 이미 지금 10년이 되었고, 금일에 들은 것도 아니며, 또한 사초(史草)에 기록되었다고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경준이 말하기를,

"신은 다만 양성지의 청렴(淸廉) 개결(介潔)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논(論)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그대들이 한갓 풍문(風聞)만을 가지고 가볍게 대신(大臣)을 논하여 죄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지의 일은 외인(外人)들이 모두 시끄럽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9 집 51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왕실-국왕(國王)

《 성종 085 08/10/12(병오) / 장령 김제신 · 헌납 김괴 등이 양성지의 일에 대해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과 헌납(獻納) 김괴(金塊)가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일은 사림(士林)에서 시끄럽게 떠든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니, 듣는 자들이 누군들 놀라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 등이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명하시어 실록(實錄)을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대간(臺諫)이 반드시 사책(史策)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무슨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풍문(風聞)을 거론하여 탄핵한 다음이라야 옹폐(壅蔽)의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궤불식(簠簋不飾)의 악명(惡名)이 큰 자일 것 같으면 그대들이 동료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아뢰는 것이 옳겠는가? 양성지는 대신(大臣)인데 변명(辨明)하고자 하니 실록(實錄)을 상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대답하기를,

"김제신이 양성지를 탄핵하면서 사건을 지적하여 말하니, 이치상 마땅히 변명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인품(人品)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논(論)한다면 누가 변명하고자 하겠는가?"

하니, 김제신이 말하기를,

"양성지의 사건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승(政丞)들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도리어 신들에게 죄주기를 청(請)하니, 그것이 옳습니까? 또 양성지의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신은 범(犯)한 바가 없는데, 대간(臺諫)이 무함(誣陷)하고 있습니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경준(慶俊)은 신의 옛 낭청(郎廳)이요, 김제신은 지금의 요속(僚屬)인데 극구 추잡하게 헐뜯으니, 아랫사람으로서 웃사람을 능멸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양성지의 이러한 말은 어찌 지나치게 심하지 아니합니까? 만약 동료 친속(親屬)이라 하여 숨기는 바가 있다면 장차 대간(大諫)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양성지의 이러한 말은 과연 잘못이었다."
하였다.

【원전】 9 집 51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12(병오) /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을 무고한 것에 관하여 상소하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전조(前朝)의 말엽에서 아조(我朝)의 초엽에 이르기까지 대간(臺諫)이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일을 공격하고 밝혀 내기를 좋아하여 서로 간교를 다하여 남을 모함하였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를 매우 싫어하여 대간의 집에 분경(奔競)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도리어 정조(政曹)보다 엄중히 하였고 풍문(風聞)을 거론하여 탄핵하는 것을 더욱 금지하기를 익명(匿名)으로 투서(投書)하는 것을 수리(受理)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세종(世宗) 30년 간에 의옥(疑獄)이 없었고 사람들이 보전(保全)할 수 있었던 것도 남의 비밀을 지나치게 들춰내는 일을 중지시키고 선비들이 많이 서로 양보하여서 조정(朝廷)의 풍속(風俗)이 후(厚)한 데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신의 성질이 본래 우졸(迂拙)하고 또 도와주는 친구도 없는데, 세조(世祖)의 지우(知遇)하시는 은혜를 외람되게 입어서 특별히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고, 또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때에 이와 같이 탄핵을 당하였다면 반드시 공의(公議)가 있었을 터인데, 하물며 지금 14년 만에 길거리에서 들은 애매(曖昧)한 일을 가지고 천총(天聰)에 상달(上達)하고 갑자기 노신(老臣)에게 뒤집어씌우니, 노신(老臣)은 원통하고 민망(憫惘)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이조 판서(吏曹判書)의 7개월 동안에 어찌 한 사람도 탄핵(彈劾)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헌부(憲府)의 5년 동안에 어찌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대간(臺諫)들이 서로 모함하는 것이 근일에 풍속(風俗)을 이룬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물었을 때 말한 자들이 전(傳)해서 들은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또 성명(姓名)을 물었을 때 이를 잊어버렸다고 대답하였는데, 신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전하께서 춘추관(春秋館)에 명하여 그 사실(事實)을 상고하게 하셨는데 춘추관에서도 두루 상고하여 보았으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숭원(李崇元)에게 하문(下問)하신다면, 이숭원이 반드시 사실대로 계달(啓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邪惡)과 정의(正義)는 양립(兩立)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은 서로 용납(容納)되지 못합니다. 신은 또 듣건대, 갑술년 이후의 일을 신에게 망령되게 뒤집어씌운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춘추관에 명하시어 갑술년 이후의

김한계(金漢啓) 등 여러 신하들의 사초(史草)와 같은 것들을 아울러 상고하여서 아뢰게 하소서. 또 신에게 명하시어 김제신(金悌臣)·경준(慶俊)과 더불어 옥(獄)에 나아가서 대질(對質) 변명(辨明)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하여서 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커다란 비방(誹謗)을 달게 받겠으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말한 자들을 반좌(反坐)시키소서. 위로는 조정(朝廷)에서부터 아래로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만세(萬世) 이후에도 노신(老臣)이 전하의 어질고 밝으신 은택(恩澤)을 입어서 무고(誣告)를 당하였으나 설욕(雪辱)할 수 있게 하여, 성치(盛治)의 시절에 생사 골육(生死骨肉)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51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14(무신) / 인정전에 나가 의정부·육조에서 진연하며 양성지의 사건에 대해 의논토록 하다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진연(進宴)하였다.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구난도로(仇難都老) 등도 또한 참여하였다. 임금이 시연(侍宴)한 재상(宰相)들에게 이르기를,

"**양성지(梁誠之)**가 다시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일을 발명(發明)하고자 하는데, 일이 허망(虛妄)한 데 관계되니, 김제신(金悌臣)도 또한 잘못이다.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고, 잔치를 파(罷)할 때 왜인(倭人)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자운(尹子雲)·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김수온(金守溫)·이극배(李克培)·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임원준(任元濬)이 의논하기를,

"대간(臺諫)이 대신(大臣)의 과실을 탄핵(彈劾)하는 것이 비록 그 직분(職分)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근거도 없이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천총(天聰)에 상달(上達)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 홍심(洪深)이 장령(掌令)이 되어 이조(吏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사람을 쓰는 데 적당함을 잃었다고 탄핵하고, 또 말하기를, '아무개[某人]의 서대(犀帶)를 받고 그 관직을 주었다.'고 하니, 유사(攸司)에 내려서 그 허실(虛實)을 핵문(劾問)해서, 홍심은 그 고신(告身)을 거두었고 대간(臺諫)은

모두 좌천(左遷)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김개(金漑)·유수(柳洙)·어유소(魚有沼)·선형(宣炯)·윤흠(尹欽)이 의논하기를,

"양성지 사건은 이미 변별(辨別)되었으니, 다시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김제신이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주워듣고서 상주(上奏)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줄 만합니다. 그러나 대관(臺官)의 말은 비록 적중(的中)하지 않더라도 죄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숭원(李崇元)·윤계겸(尹繼謙)이 의논하기를,

"민수(閔粹)가 사초(史草)를 추가하여 고쳐 쓴 사건 때문에 추핵(推覈)을 당할 때 신 등이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공초(供招)한 글에 한 마디도 양성지가 뇌물을 받았다는 일에는 언급(言及)이 없었으나, 외인(外人)들이 이를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김제신도 이미 그 들은 출처(出處)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였고, 실록(實錄)에도 또한 기재(記載)되어 있지 않으니, 양성지가 이런 일을 범(犯)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김제신이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이에 의거해서 아뢴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말을 만든 것은 아니니, 죄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계손(李繼孫)이 의논하기를,

"김제신이 본래 이 말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림(士林)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말을 전(傳)해서 듣고 계달(啓達)하였으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풍헌(風憲)은 이것이 대간(臺諫)의 직책입니다. 양성지는 사초(史草)를 상고하여도 이러한 말이 없었으니, 이미 발명(發明)한 셈이므로 모름지기 다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허종(許琮)·유자광(柳子光)·권감(權瑊)·홍도상(洪道常)·이극돈(李克墩)·김영유(金永濡)·김영견(金永堅)이 의논하기를,

"양성지는 애매한 말 때문에 비방(誹謗)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신의 말은 옛날에 들은 것에서 나왔으니, 대간(臺諫)이 대신(大臣)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죄책(罪責)을 당한다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 사초(史草)를 상고하여도 이미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양성지에게도 또한 혐의(嫌疑)스러움이 없어졌으니, 양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예(李芮)가 의논하기를,

"옳고 그른 것은 양립(兩立)하지 못하니, 말한 자가 옳다면 양성지의 누(累)는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요, 말한 자가 그르다면 법대로 마땅히 반좌(反坐)해야 할 것입니다. 언관(言官)이 비록 중(重)하지만, 대신(大臣)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써는, 두 사람을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대면(對面)시켜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정상을 캐내고 죄를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순명(金順命)·심응(沈膺)은 의논하기를,

"애매한 일은 변명(辨明)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말의 근원(根源)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종 등의 의논한 것에 따랐다.

【원전】 9 집 51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14(무신) /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을 무고한 것에 관하여 상소하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신의 성질이 본래 우직(迂直)하여 조정(朝廷)에 도와주는 벗이 없었는데, 전조(銓曹)의 7개월 동안과 헌부(憲府)의 5년 동안에 기꺼워한 자는 적었고 좋아하지 않은 자가 많았으니, 신의 비방(誹謗)을 당하는 것도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건대, 김제신(金悌臣)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아마 김제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혹은 유언 비어(流言蜚語)로써, 혹은 몰래 사주(使嗾)하여서 모함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풍습(風習)을 고치지 않는다면 조정의 신하들이 누가 감히 스스로 보존(保存)하겠습니까? 혹은 사감(私感)으로 인하여, 혹은 붕당(朋黨)으로 인하여 혹은 진급(進級)하기를 구(求)하고, 혹은 이름나는 것을 즐거워하여, 이미 지나간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10년 뒤에 추후하여 무고(誣告)할 때 이를 말한 자에게 물으면 말하기를, '남에게 전(傳)해 들었다.'고 할 것이요, 이를 무고를 당한 자에게 물으면 말하기를, '본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조정의 웃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서 오명(汚名)을 얻는 자들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조(祖宗朝)에서 대간(臺諫)이 남의 숨겨진 사사로운 일을 공격하여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서로 간교를 다하여 남을 모함하는 것을 엄하게 전장(典章)에 입법(立法)하여, 풍문(風聞)을 거론하여 탄핵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풍문을 거론하여 탄핵하는 자는 익명(匿名)의 투서(投書)를 수리(受理)하는 것과 같이 논(論)하게 하였으니, 인신(人臣)을 보전(保全)해서 풍속을 후(厚)하게 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우직(愚直)해서 여러 사람들의 비방(誹謗)을 불러 들였지만, 그 당시에 오로지 한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탄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비록 좀도둑의 조그만 일도 반드시 사증(辭證)의 명백한 것을 취(取)한 다음에 죄를 정하는데, 지금 대간(臺諫)이 애매한 말을 가지고 위로 천총(天聰)을 모독하고 노신(老臣)에게 추후하여 뒤집어씌우니, 노신(老臣)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또 생각하건대, 세조(世祖)의 성명(聖明)은 여염(閭閻)의 미세(微細)한 일까지도 꿰뚫어 보시지

않음이 없으신데, 신이 만약 사사로운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마땅히 성상께서 들으셨을 것인데, 어찌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낸 뒤 3개월이 지나서 세조께서 어필(御筆)로 대사헌(大司憲)을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조의 치세(治世)가 끝나도록 한 번도 임금의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비방(誹謗)을 당하고도 앞에서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밝게 위에 계신 임금께 노신(老臣)이 몸 둘 곳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대저 대간(臺諫)의 말은 비록 정도에 지나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들은 말과 위태로운 습속으로 대신(大臣)을 무함(誣陷)하는 것은 풍습을 일으키는 데에도 온당치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대질(對質) 변명하게 하시되, 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길이 버리시고 용서하지 마시며, 신이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들을 반좌(反坐)시켜, 후세(後世)로 하여금 노신(老臣)이 비방(誹謗)을 받다가 설욕(雪辱)하여서 성명(聖明)의 조정에 남은 목숨을 보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51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성종 085 08/10/15(기유) / 양성지를 불러 그의 일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전지하다 》

명하여 **양성지(梁誠之)**를 불러서 전지하기를,

"대간(臺諫)이 풍문(風聞)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 직책이다. 경(卿)은 탐오(貪汚)한 적이 없었으므로 변명하기를 청하였는데, 또한 잘못인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9 집 518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성종 085 08/10/15(기유) / 장령 김제신이 양성지의 일로 인해 피혐할 것을 청하다 》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들은 일을 감히 계달(啓達)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대신(大臣)들은 **양성지(梁誠之)**가 본래 탐오(貪汚)한 적이 없는데도 신이 근거 없는 말을 하였다고 죄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성지는 또 신더러 간교를 다하여 모함한다고 하니, 신은 청컨대 피혐(避嫌)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양성지의 사건은 사초(史草)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자(箚子)를 올려서 발명(發明)하니 옳은 것이다. 그대도 또한 사건을 듣고서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이것도 또한 그 직분(職分)인 것이다.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9 집 518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85 08/10/19(계축) / 양성지 · 유지 · 이극균 · 선형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유지(柳輊)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문양군(文陽君)으로, 이극균(李克均)을 가정 대부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선형(宣炯)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원전】 9 집 51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086 08/11/19(임오) / 재범 절도에 대해 교형 처분의 합당 여부를 전직 정승 · 대간 등이 의논토록 하다 》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육조와 대간(臺諫)이 모여서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자를 교형(絞刑)에 처(處)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 대사헌(大司憲) 이계손(李繼孫)·대사간(大司諫) 김자정(金自貞)·집의(執義) 이칙(李則)·사간(司諫) 경준(慶俊)·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헌납(獻納) 김괴(金

塊), 정언(正言) 성담년(成聃年)·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절도(竊盜) 3범(三犯)은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율문(律文)에 실려 있는 바이므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논죄(論罪) 결단(決斷)한 지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근래 절도가 매우 성행하기 때문에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재범(再犯)한 자도 아울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는데, 이것은 《속록(續錄)》에 실린 임시적인 조처입니다. 지금 도둑이 만약 잠잠해지지 아니한다면,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하여 전대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운(尹子雲)·노사신(盧思愼)·홍응(洪應),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형조 판서(刑曹判書) 현석규(玄碩圭)·공조 참판(工曹參判) 홍도상(洪道常)·이조 참판(吏曹參判) 신정(申瀞)·공조 참의(工曹參議) 김극유(金克忸)·호조 참의(戶曹參議) 정은(鄭垠)·이조 참의(吏曹參議) 최한정(崔漢禎)은 의논하기를,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는 유사(宥赦)의 전후(前後)를 따지지 아니하고 교형(絞刑)에 처하는 법은 심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범(三犯)을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유소(魚有沼)·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병조 참판(兵曹參判) 박건(朴楗)·병조 참의(兵曹參議) 노공필(盧公弼)·병조 참지(兵曹參知) 이공(李拱)·예조 참의(禮曹參議) 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법(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물(贓物)이 많은지 적은지를 헤아려서 임시하여 성상께서 재단(裁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9 집 52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성종 087 08/12/09(임인) / 이창신 · 안침 · 박숙진 등과 주계 부정 심원의 헌책에 대해 논의하다 》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한(漢)나라 경제(景帝)가 조조(晁錯)를 죽이자, 등공(鄧公)이 상서(上書)하기를, '충신(忠臣)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데에 이르러, 검토관(檢討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조조는 제후(諸侯)의 강대함을 걱정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을 올렸는데 갑자기 주살을 가했으니, 경제(景帝)의 잘못입니다. 등공이 말한 것은 진실로 한 사람의 헌책(獻策)이었습니다. 인군(人君)이

가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면, 여러 사람이 모두 다투어 좋은 말을 올리고 함께 복종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임금이 직언(直言)을 듣기 싫어하니, 말해 보아야 이익이 없다.'고 하였을 것이므로, 이것이 또한 충신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송(宋)나라 이항(李沆)이 어떤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금 천하가 무사하니 성인(聖人)이 마음을 쓸 것이 없다. 만일에 불로(佛老)에 미혹되고 주색(酒色)에 빠져서 한결같이 이 모양이면 정말로 근심이 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주계 부정(朱溪副正)이 심원(深源)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글을 올려 축수재(祝壽齋)를 파하도록 청했던 것입니다. 성상께서 비록 마침내 그 말을 들어주셨지만, 신이 듣건대, 전교(傳敎)하시기를, '심원이 이름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 합니다. 만약에 헌책(獻策)하는 자를 모두,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듣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말하려고 하여도, 나의 말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는 책망이 또한 뒤따를 것이니, 누가 마음속을 털어놓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충신의 입이 이로부터 막힐 듯합니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신하 된 자가 혹 인군(人君)의 허물을 말하고, 혹은 대신(大臣)의 죄를 논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복이고, 말하는 자의 이익이 아닙니다. 인주(人主)와 대신(大臣)이 그 허물을 듣기 싫어하여, 죄를 주려고 하여도 죄줄 이유가 없는 것이 염려되면, 이름을 얻으려 한다고 책망하니, 이는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축수재는 선왕조 때의 일인데, 당시에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 이르러 조종조(祖宗朝)의 법을 분란(紛亂)하게 하려고 하니,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였다. 이창신이 아뢰기를,

"옛날에 수(隋)나라에 아첨하고 당(唐)나라에 충성한 자가 있었으니, 옛날에 말하지 않다가 오늘날에 말한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세조조(世祖朝) 때에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할 적에, 일찍이 한 사람도 전폐(殿陛) 사이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없었고, **양성지(梁誠之)**가 대사헌(大司憲)이 되어서 10여 년이 되었어도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지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능히 말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찌 지금 말하는 자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침이 아뢰기를,

"지금 벼슬하는 자가 모두 구조(舊朝)의 신하인데, 만약에 옛날에 말하지 않다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즐겨 말을 다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도(佛道)는 허탄(虛誕)하여, 명제(明帝) 이후에 부처를 섬긴 자가 한결같이 효험이 없었으니, 불

교는 진실로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원(元)나라와 위(魏)나라가 사문(沙門)을 모두 없앴어도 마침내 그 뿌리를 근절할 수는 없었다. 내가 숭상하지 않으면 자연히 쇠퇴하여 그칠 것인데, 어찌 반드시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할 것인가? 지난번의 주계 부정(朱溪副正)의 말은 진실로 정대(正大)하였다. 내가 만약 주계를,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어찌 상(賞)을 줌이 있었겠는가? 주계의 두 번째 소(疏)에 미쳐서는 성의(誠意)가 지극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축수재를 파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주계를, '이름을 구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하였다. 안침이 아뢰기를,

"계사(繫辭)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집에서 말을 한 것이, 선(善)한 것은 천리 밖에서도 감응하고, 선하지 못한 것은 천리 밖에서도 어김이 있다.'고 하였으니, 인군(人君)이 하는 말은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창신이 아뢰기를,

"인주(人主)의 거동은 좌사(左史)가 기록하고, 그 말은 우사(右史)가 기록하니,

한 마디 말과 한 번의 거동이 만세(萬世)에 전해지는데, 가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상께서 이미 이단(異端)의 그름을 아시었으니, 마땅히 그 도(道)를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옛말에, '교제(郊祭)에는 천신(天神)이 이르고, 묘제(廟祭)에는 인귀(人鬼)가 흠향한다.'고 하였으니, 선왕의 혼령은 종묘(宗廟)에서 누리고 계십니다. 무릇 제삿날에는 문소전(文昭殿)에만 제사드리고, 기신재(忌辰齋)를 일체 혁파하신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안침이 아뢰기를,

"내불당(內佛堂)과 원각사(圓覺寺)의 천신(薦新)이 종묘와 다름이 없으니, 대체(大體)에 어찌 되겠습니까? 청컨대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무익(無益)하게 허비하는 일이 매우 많으나, 일시에 모두 혁파하기는 어려우니, 마땅히 서서히 제거해야 한다."

하였다. 우승지 박숙진(朴叔蓁)이 아뢰기를,

"이 앞서 대간(臺諫)에서 비록, '승문원(承文院)의 옛터가 공주(公主)의 집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말했으나, 모두 풍수(風水)의 허탄(虛誕)한 설(說)로 말했을 뿐입니다. 다만 공주의 집은 60간(間)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땅을 점유하는 것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간가(間架)가 광활(廣闊)하여 참람하게 궁궐과 같으니,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도성(都城)의 땅은 한도가 있는데, 대군(大君)과 공주의 집을 어디에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법을 세워서 제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주계를 가지고,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였던 것은, 내가 깊이 생각지 못하고 우연히 말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말을 다 해 주어서, 내가 심히 즐겁다. 나의 지나친 행동과 민폐(民弊)에 대해서 다시금 빠짐없이 말하라."

하니, 안침이 대답하기를,

"신이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으나, 진언(進言)하는 사람이 그 인품이 같지 아니하여 말[言]에는 선하고 선하지 않음이 있으니, 그 말이 선하면 따르고 선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인주(人主)의 재택(裁擇)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천한 사람의 말도 성인(聖人)이 채택한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언로(言路)를 여시면, 더욱 들을 수 없는 것도 들으시어, 지나친 행동은 자연히 없어지고, 백성의 괴로움도 자연히 제거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고 한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불세출(不世出)의 군주인데도, 위징(魏徵)이, '간언을 따르는 것이 점차 처음과 같지 못합니다.'고 하였으니, 나의 지나친 행동도 미리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였다. 안침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본래 역자(驛子)가 없으므로, 제읍(諸邑)의 인리(人吏)들로 차정(差定)하고, 이름하여 '관군(館軍)'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두 가지 역(役)을 하여서 매우 고되니, 신의 생각에는 한결같이 전라도·경상도 양도(兩道)의 역자(驛子)를 정하는 예(例)에 따라 생계를 두터이 해 준다면, 민폐가 제거될 것입니다. 평안도 절도사는 제사에 쓸 포(脯)라고 칭탁하고, 매년 춘추(春秋)로 군사를 모아서 수렵을 행하여 산판(山阪)을 달리므로, 인마(人馬)가 피곤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갖추어 납입하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전】 9 집 53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교통-육운(陸運) /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성종 9년 《 양성지 - 성종 9년 .... 17 건 》

성종 088 09/01/20(계미) / 예조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사진할 인원의 증원을 건의하다

성종 089 09/02/10(계묘) / 창원군 이성의 죄를 의논하게 하다

성종 089 09/02/10(계묘) / 해주진의 설치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성종 089 09/02/10(계묘) / 해착선이 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성종 091 09/04/03(갑오) / 이세광·성담년이 김수온의 강론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다

성종 092 09/05/01(임술) / 승정원에 명하여 금주령을 파하고 《실록》 상고에 대해 정승·판서에게 의논하게 하다

성종 092 09/05/06(정묘) / 정승들이 임사홍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다

성종 093 09/06/20(경술) / 중경 정승과 의정부 당상, 육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 임원준을 국문하게 하다

성종 093 09/06/22(임자) / 안선이 김국광의 국문을 청하니 이를 의논하다

성종 094 09/07/14(계유) / 이조 판서 강희맹이 이원좌의 투서에 대하여 해명하는 글을 올리다②

성종 094 09/07/20(기묘) / 중경·정승·의정부 등의 관원과 전라도 관찰사·절도사를 지낸 이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다

성종 094 09/07/23(임오) / 의정부·육조·대간들을 불러 절도죄의 처벌과 광릉을 견고하게 수축할 방안을 논의하다

성종 095 09/08/06(을미) / 사복시에 효령 대군·밀성군 등의 종친과 신하들에게 말 1필씩을 내리게 명하다

성종 096 09/09/06(갑자) / 육조와 주요 관직의 관원을 불러 주계 부정 심원이 조부에 불손한 죄를 논하게 하다

성종 097 09/10/03(신묘) / 한명회가 덕종의 능실에 돌난간과 담장 설치를 건의하다

성종 097 09/10/13(신축) / 공조 판서 양성지가 《오례의》의 병기 도설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반포하기를 청하다

성종 099 09/12/22(기유) / 영의정 정창손 등의 대신들과 중국에서 청구한 일을 의논하다

《 성종 088 09/01/20(계미) / 예조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사진할 인원의 증원을 건의하다 》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받은 전교에, '성균관(成均館) 여러 생도의 교양이 허술하니, 전례에 의하여 문신(文臣)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날마다 번갈아 사진(仕進)하여, 혹은 제술하고 혹은 강서(講書)하여 돈독하게 권장하라.' 하시었습니다. 지금 요전 수교를 상고하여, 이석형(李石亨)·노사신(盧思愼)·성임(成任)·**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번갈아 사진하여 유생에게 권과(勸課)하게 하였으나, 혹 유고하여 매일 사진하지 못하니, 교양이 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예(李芮)·어세겸(魚世謙)·이극돈(李克墩)·이봉(李封) 등 문학이 있는 자를 더 내어 번갈아 사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9 집 546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성종 089 09/02/10(계묘) / 창원군 이성의 죄를 의논하게 하다 》

명해서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의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과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세종(世宗) 때에 익녕군(益寧君) 이치(**李袳**)가 그 종의 불알을 깐 죄로 제천현(堤川縣)에 부처(付處)되었습니다. 지금 성(晟)이 한 짓은 참혹하기가 익녕군보다 심하고, 또 친히 물으셨을 때에 실정대로 말하지 않았으며, 삼사(三司)의 낭청(郎廳)이 전교(傳敎)를 받들어 그 집을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또 거절하고 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경하기가 더없이 큽니다. 청컨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소서." 하고,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 심회(沈澮)·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국광(金國光)·이조 참판 신정(申瀞)·병조 참판 박건(朴楗)·예조 참판 김영유(金永濡)·호조 참판 김순명(金順命)·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심한(沈澣)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익녕군은 다만 종의 불알을 깐 것만으로도 외방(外方)에 부처되었는데, 지금 성(晟)의 죄는 익녕군보다 심합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회남왕(淮南王) 장(長)이 어머니의 원수 때문에 심이기(審食其)를 살해하고 대궐에 나아가서 자수하니, 임금은 그 뜻이 어버이를 위한 것임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죄주지 아니하였는데, 그 뒤에 모반(謀叛)하여 멀리 촉(蜀) 땅에 귀양가다가 길에서 죽었으므로 임금이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당초에 임금이 만일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았으면 뒤에 반드시 모반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저 인정(人情)이라는 것은 전에 징계된 바가 없으면 뒤에 경계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지금 만일 엄중하게 논죄하지 않으면 뒤에 큰 죄에 빠지게 되어서 처치하기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소서."

하고,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은 의견을 아뢰기를,

"창원군 성의 죄는 비록 중하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존속 지친(尊屬至親)이므로 율문(律文)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의논드리는 자가 다들 말하기를, '외방으로 부처해야 한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성(晟)이 나이가 젊고 성품이 굳세므로, 만일 외방에 있으면 출입을 막을 것이 없어서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행할 것이고, 수령도 금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엄격하게 막아서 유사(有司)가 구속하여 가두면 혹 근심하고 분하게 생각하여 병이 나서 의외의 변고가 일어나는 데까지 이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회남왕(淮南王)이 모반하였으므로 문제(文帝)가 멀리 촉(蜀) 땅으로 옮겼는데, 도중에서 사망하니, 문제가 통곡하고 크게 후회해서 거느려 보낸 자를 목베었습니다. 그때에 의논하는 자 중에는 승상(丞相)과 어사(御史)를 목베어서 천하에 사과하고자 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회남왕이 모반하였어도 문제는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성의 죄는 여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직첩을 거두고 집에 있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면, 그 족친을 친애하고 왕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거의 둘을 다 얻을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윤필상(尹弼商)·판중추부사 이극배(李克培)·이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좌참찬 임원준(任元濬)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晟)의 죄는 불경에 관계되므로 도성(都城)에 두어서는 안 되겠으나, 나이가 젊고 성품이 굳세어서 만일 먼 지방에 귀양보내면 회남 여왕(淮南厲王)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 파직하고 가족과 함께 경기(京畿) 고을에 두고, 데리고 있는 사람 수도 되도록 적게 하여, 그 소재관(所在官)을 시켜 식량을 대어 주게 해서, 마음을 움직여 성질을 참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병조 판서 어유소(魚有沼)·계림군(鷄林君) 정효상(鄭孝常)·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한성부 판윤 어세공(魚世恭)·호조 판서 윤흠(尹欽)·예조 판서 이승소(李承召)·형조 판서 윤계겸(尹繼謙)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晟)은 다만 사람을 함부로 죽였을 뿐 아니라 불경(不敬)의 죄도 크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 이극균(李克均)은 의견을 아뢰기를,

"세종(世宗) 때에 익녕군이 종의 불알을 깠으므로 외방에 부처되었으니, 지금의 창원군 사건도 이 전례에 의거하는 것이 오히려 가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익녕군은 사리도 좀 알고 또 자기 죄도 알았었는데, 창원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한데도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그 마음에 세조(世祖)의 친아들이요 전하의 지친(至親)이라고 생각해서 다만 이것만 믿고 예의가 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만 논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원망하고 분함을 품을 것이니, 전하의 은혜가 더 없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예전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회남왕(淮南王)이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어린 아들로서 지친이고 총애받는 것을 믿고 점점 더욱 교만하여져서 마침내 모반하기에 이르니, 승상(丞相)과 종정(宗正)과 어사(御史) 등이 촉(蜀) 땅에 부처(付處)하기를 청하였는데, 원앙(袁盎)이 간하기를, '회남의 사람됨은 성품이 굳센데 지금 심하게 꺾으면 마침내 안개와 이슬을 만나서 병들어 죽을 것이니, 폐하(陛下)는 아우를 죽였다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하였으나, 문제가 끝내 듣지 않았으므로, 회남왕이 마침내 먹지 않고 길에서 죽으니, 문제가 애달파서 곧 거느리고 간 자를 목베었으나, 문제의 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창원군은 나이 젊고 성품이 본래 굳세고 사나우니, 그 귀양간 곳에서 만일에 뜻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성덕(聖德)의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서울 집에서 담을 높게 하고 그 종을 줄이고 그 술과 음식을 절제하여, 생명을 손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여서 그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다린다면, 정(情)과 법(法)에 있어서 다 마땅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성밖에 따로 두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고, 대사헌 이계손(李繼孫)·대사간 김자정(金自貞)·집의(執義) 이칙(李則)·사간(司諫) 경준(慶俊)·장령(掌令) 박숙달(朴叔達)·지평(持平) 이세광(李世匡)·헌납(獻納) 김괴(金塊)·정언(正言) 성담년(成聃年)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晟)의 죄악(罪惡)은 비록 중하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성은 성품이 본래 광포하여 도성(都城)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외방(外方)에 두어서 만일 먹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방자하여 꺼리는 것이 없어서 큰 죄에 빠질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보전하고자 하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막는 방법을 세워서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잡인과 교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노사신(盧思愼)의 의견에 따랐다.

【원전】 9 집 55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성종 089 09/02/10(계묘) / 해주진의 설치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

명해서 해주(海州)에 진(鎭)을 두는 것이 적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견을 아뢰기를,

"해주는 바다 어귀의 요해지(要害地)이므로 진을 두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만일 큰 진을 두려면

먼저 유방(留防)하는 군사의 수를 의논하여 하는데, 본도(本道)는 인물이 조잔(彫殘)하니, 청컨대 병조(兵曹)로 하여금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홍응(洪應)·서거정(徐居正)·임원준(任元濬)·윤흠(尹欽)·이승소(李承召)·윤계겸(尹繼謙)·김영유(金永濡)·김순명(金順命)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해주에 진을 두는 것은 방어(防禦)하는 계책으로서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해도는 인물이 조잔하여, 해마다 평안도의 방어와 중국으로 가는 사행(使行)의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가는 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해주의 유방군(留防軍)에 충당하겠습니까? 하물며 해주는 강령(康翎)·장연(長淵)·풍천(豐川) 등의 진에 비교하면 땅의 형세가 좀 완만하고, 또 용매(龍媒)와 가을포(茄乙浦)의 수어(戍禦)하는 곳이 가까우니, 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유소(魚有沼)·**양성지(梁誠之)**·신정(新靜)·박건(朴楗)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해주는 황해도의 큰 진이므로 수군(水軍)을 적당히 두어서 위급한 때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강희맹(姜希孟)은 의견을 아뢰기를,

"해주의 유방군을 폐지한 것은 그 용매와 가을포 등의 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을 허하게 해놓고 바깥을 방비함은 병가(兵家)의 방책이 아니니, 적당하게 군사를 두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견을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다만 해주에 군사를 둘 뿐만 아니라, 연변의 독진(獨鎭)에 다 두고자 합니다. 세조(世祖)께서 대신을 보내어 모든 도의 독진의 연혁(沿革)의 편부(便否)를 살피게 하였더니, 당시에 의논을 아뢰는 자가 말하기를, '군사를 나누면 힘이 약해지니 독진을 두는 것은 가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적이 만일 불의에 수군을 돌파하고 육지에서 횡행하여 인물을 침노하면, 본전에서 어찌 능히 제때에 구하겠습니까? 신은 연변의 독진에 예전과 같이 다 군사를 두기 바랍니다."

하고, 이계손(李繼孫)은 의견을 아뢰기를,

"해주는 용매와 강령의 두 진 사이에 있으니, 만일 두 진이 실패하여 능히 대항하지 못하면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황해도 한 도는 다 우리의 소유에서 벗어납니다. 또 그 성이 다른 진에 비해서 넓고도 견고하고 인민 또한 많으니, 한둘의 여(旅)를 두어서 모든 진의 성원(聲援)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김자정(金自貞)·이칙(李則)·경준(慶俊)·박숙달(朴叔達)·이세광(李世匡)·김괴(金塊)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해주는 비록 예전에 왜구(倭寇)가 침입한 땅이기는 하나, 도적이 늘 들어오는 길이 아닙니다. 다

만 그 때에는 남쪽 연해에 방어하는 군사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왜구가 왔다 갔다 하기를 스스로 방자하게 할 수 있었지마는, 지금은 연해의 요해지에 다 진을 설치해서 왜구를 지키니, 왜구가 비록 오더라도 갑자기 해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황해도는 인민이 많지 않은데 요역(徭役)은 다른 도보다 배나 되니, 선왕(先王)께서 그 완급(緩急)을 참작해서 강령 등 요해지에는 유방군을 두고 해주에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비록 두고자 하더라도 인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유방군의 수를 마련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전】 9 집 55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성종 089 09/02/10(계묘) / 해착선이 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

이손(李蓀)이 아뢴 바, 해착선(海錯船)이 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을 의논하였다. 정창손·한명회·노사신·윤필상·이극배·홍응·강희맹·서거정·임원준·어유서·양성지·윤흠·이승소·윤계겸·이극균·신정·박건·김영유·김순명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연변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때에 무리를 지어서 배를 운행하는 법은 지극히 세밀한데, 다만 수령(守令)이 게을리하여 주의하지 않고 폐기해서 실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해사(該司)로 하여금 더욱 밝혀서 거행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심회·김국광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연해의 각 고을의 해산물을 캐고 잡는 배가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고을의 캐고 잡는 배는 많지 않으므로, 부근의 여러 진과 약속해서 기일을 정하여 무리를 지어 바다로 나가면, 비록 도적의 배를 만나더라도 힘을 합하여 서로 구원해서 반드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에게 하유(下諭)하여 더욱 밝게 살피도록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논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하삼도(下三道)의 관찰사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에게 무리를 짓는 법을 밝게 하도록 하유하라."

하였다.

【원전】 9 집 55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어업(漁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성종 091 09/04/03(갑오) / 이세광·성담년이 김수온의 강론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다 》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어차(御次)에 들어갔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세광(李世匡)·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성담년(成聃年)이 아뢰기를,

"김수온(金守溫)은 석교(釋敎)를 숭신(崇信)하여 세조조(世祖朝)에는 출가(出家)하기를 청하였으니, 진실로 공문(孔門)의 죄인입니다. 전하께서 학궁(學宮)에 친림(親臨)하여 치도(治道)를 강론(講論)하시는데 요사한 사람을 참여 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자, 승정원에 묻기를,

"김수온이 영불(靈佛)하였는가?"

하니, 좌부승지 손비장(孫比長)과 우부승지 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김수온이 세조조(世祖朝)에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출가(出家)하면 3년 만에 반드시 성불(成佛)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이 기망(欺罔)한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산사(山寺)로 도망쳐 갔으니, 김수온이 부처를 믿는 것은 조야(朝野)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들어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문묘(文廟)에 들어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는데,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종순(金從舜)·행 호군(行護軍) 이영견(李永肩), 행 사직(行司直) 민효열(閔孝悅)·이전수(李全粹), 검참판(檢參判) 변상회(邊尙會)·이사계(李師季), 행 호군 홍경손(洪敬孫)·임수겸(林守謙), 행 사직 권지(權至)·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개(金漑)·행 호군 황치신(黃致身)·행 사직 김세민(金世敏)·행 상호군 김한(金瀚)·행 사맹(行司猛) 조수산(趙壽山)·전 부윤(府尹) 조성산(趙誠山)·시강관(侍講官)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파천 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영중추부사 김국광(金國

光)·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좌찬성(左贊成) 윤필상(尹弼商)·판중추부사 이극배(李克培)·이조 판서 강희맹(姜希孟)·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우참찬 허종(許琮)·계림군(鷄林君) 정효상(鄭孝常)·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판윤(判尹) 어세공(魚世恭)·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신숭선(愼承善)·예조 판서 이승소(李承召)·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예(李芮)·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권윤(權綸)이 입시(入侍)하였으며, 관관(館官)·시신(侍臣)·학생 모두 2천 8백여 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바른 말을 청하니, 각각 좋은 말을 진술하라."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군자(君子)를 가까이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하며,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정도(正道)를 숭상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하루같이 삼가하여 정사에 실수한 바가 없었으니, 원하건대 처음에서 끝까지 이 마음을 한결같이 하소서."

하였고, 한명회는 말하기를,

"전하께서 요(堯)임금·순(舜)임금·우(禹)임금과 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道), 그리고 무릇 옛 치란 흥망(治亂興亡)의 사적(事跡)이나 명신(名臣)의 격언(格言)을 관람하지 않으신 바가 없는데, 어찌 신들의 말을 기다린 후에야 이를 알겠습니까? 원하건대 처음에서 끝까지 한결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채침(蔡沈)의 《서경(書經)》 서문(序文)에 제왕(帝王)의 치란(治亂)의 이유를 자세히 말하였으므로, 내가 일찍이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조심하고 근신(謹愼)하였다. 그러나 지금 흙비[土雨]의 변(變)이 있으니, 천심(天心)에 부응(副應)하지 못함이 있지 아니한 것인가?"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지금 흙비뿐만 아니라 또 지진(地震)이 있었으니, 옛사람은 지진을 큰 변으로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진이 서울에는 없었다."

하자, 한명회가 말하기를,

"경상도·충청도도 역시 우리의 경내(境內)입니다. 재이(災異)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오직 임금이 덕을 닦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시대마다 있다고 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예(李芮)가 말하기를,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에 여러번 재변이 있었는데, 왕안석(王安石)이 말하기를,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보통 있는 일인데, 이는 성려(聖慮)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고, 신종도 말하기를, 재이(災異)는 천수(天數)이며 인사(人事)의 잘잘못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부필(富弼)이 듣고 탄식하기를, '인주(人主)가 두려워하는 바는 오로지 하늘인데, 만약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이는 필시 간사한 사람이 옳지 못한 말을 올려 주상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보필하고 간쟁(諫諍)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힘을 펴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는 치란(治亂)의 기틀이므로 마땅히 빨리 구(救)하여야 한다.'고 하고 곧 글을 올려 이를 힘써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안석이, '천변(天變)은 족히 두려울 것이 없고 조종(祖宗)은 족히 본받을 것이 없으며, 남의 말은 족히 근심할 것이 없다.'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죄인입니다. 임금이 재변을 만나면 마땅히 몸으로써 담당하여 경계하고 근신하면서 그치게 할 바를 강구해야 하는데, 없는 시대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사로이 보고 소홀히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전 상(商)나라 중종(中宗) 때에는 상곡(桑穀)이 조정에 났고 고종(高宗) 때에는 꿩이 솥귀[鼎耳]에서 울었으나, 모두 두려워하여 덕을 닦았으므로 재이(災異)가 해(害)는 되지 아니하여, 중종은 75년이나 나라를 다스렸고 고종은 5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는 모두 하늘을 공경하고 재이(災異)를 삼가한 효험입니다."

하였고, 강희맹(姜希孟)은 말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정성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야 능히 그 성(性)을 다할 것이며, 그 성(性)을 다할 수 있으면 가히 천지에 참여하며 화육(化育)을 협찬(協贊)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한 정성의 극진한 공(功)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도(道)는, 망령됨이 없는 것과 속이지 아니하는 것과 유구(悠久)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염계(周濂溪)가 말하기를, '착하지 못한 일에 함부로 동(動)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니, 망령됨이 없으면 정성[誠]이다.'고 하였고, 진서산(眞西山)은 말하기를, '정성이란 것은 천리(天理)의 참된 것이며, 망령됨이란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짓됨이다. 망령됨이 없다는 것은 내게 진실함이고, 속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물(事物)에 대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며, 유구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지켜서 조금도 중단(中斷)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지성(至誠)의 도(道)를 본받아 시종여일(始終如一)하면 재이(災異)가 변하여 상서로움이 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직 대인(大人)만이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여러 대신(大臣)들이 어찌 임금을 잘못된 도(道)에 들어가게 하겠는가? 내가 깊이 믿고 의지한다."

하였다. **양성지(梁誠之)**가 소매 안에서 소(疏)를 내어 올리며 말하기를,

"신은 말을 더듬어서 말은 못하고 글로 대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안으로 여색(女色)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미치거나 술과 음악을 즐기거나 집과 담장을 사치하게 꾸미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약석(藥石)이다. 내가 자리 곁에 써서 붙이고 항상 보고 반성하겠다."

하자, 정창손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르시니,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아니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고, 한명회는 말하기를,

"이제 전하께서 간하는 말에 따르고 어긋남이 없으시며 구언(求言)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며, 마음에는 경계하고 삼가함이 있으시니, 진실로 우리 나라 만세에 무궁한 복입니다. 원하건대 이러한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마소서."

하였으며, 허종(許琮)은 말하기를,

"천심(天心)이 임금을 인애(仁愛)하므로 재이(災異)를 보여서 경계한 것이니, 오직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으면 천심(天心)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서거정(徐居正)은 말하기를,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광인(狂人)이 되고, 아무리 광인(狂人)이라도 잘 생각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초년에는 뜰에서 비단 옷을 불태워 <검소하였는데,> 만년(晩年)에는 황음(荒淫)의 실패함이 있었고, 태종(太宗)은 즉위한 처음에는 정성을 다하여 힘썼으나 끝내는 십점지계(十漸之戒)가 있었으니,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끝까지 처음과 같이 삼가는 이가 적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안두는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임금이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요(堯)임금 ·순(舜)임금·우(禹)임금·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이 서로 전한 심법(心法)은 중(中)에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요(堯)임금의 '그 중정(中正)을 잡으라.'는 것과 순(舜)임금의, '사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로 모아라.'는 것과 성탕(成湯)의, '중을 세우라.'는 것과 무왕(武王)의, '극(極)을 세우라.'는 것은 모두 중(中)을 말한 것인데, 중이란 것은 마음입니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천(天)과 인(人)의 관계(關係)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득실(得失)의 기틀[機]과 감응(感應)의 묘리(妙理)는 도(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를 능히 알겠습니까?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感)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應)하므로, 만약 재이(災異)를 막으려고 하면 마땅히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아서 천견(天譴)에 보답하는 것뿐입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구경(九經)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자(孔子)가 애공(哀公)으로부터 정사를 묻는 데에 대답한 말인데, 정치하는 도(道)를 논한 것이 이보다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구경의> 조목은, '몸을 닦음

[修身], 어진 이를 존경함[尊賢], 친족과 친애함[親親], 대신을 공경함[敬大臣], 여러 신하를 내 몸과 같이 함[體羣臣],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子庶民], 백공(百工)을 권장함[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관유(寬柔)함[柔遠人], 제후를 포용함[懷諸侯]이며, 재계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의복을 갖추어 몸을 엄숙하게 가지며 예(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계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의복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동(動)하여 사물(事物)을 접(接)하지 아니하는 때이니, 바로 《중용》의 수장(首章)에 이른 바, '보이지 아니하는 곳을 조심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곳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예(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動)하여 사물을 응접(應接)하지 아니할 때이니, 바로 수장에 이른바, '군자(君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간다.'는 뜻입니다.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안팎이 서로 수양(修養)되어 몸이 닦아집니다. 그러므로 '몸을 닦으면 도(道)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도가 몸에 이루어져서 백성의 표본이 될 만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이른바, '임금이 그 극(極)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군자는 그 극진함을 쓰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어버이에게 극진히 하여 천하에사람의 부자(父子)가 되는 도리를 정하고, 그 의(義)를 극진히 하여 천하에 군신(君臣)이 되는 자들의 도리를 정하며, 그 분별을 극진히 하여 천하의 부부(夫婦)가 되는 자들을 본받게 하니 한 마디의 말 하나의 행실에까지 만백성이 본받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간악함을 버리고 여색(女色)을 멀리 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德)을 귀(貴)하게 함은 어진 이를 권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니, 참사(讒邪)를 믿으면 어진 이를 신임함을 오로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면 어진 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돈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에 가연지(賈捐之)의 상소에 말하기를, '후궁(後宮)이 미인(美人)이면 어진 자가 숨어 살고, 간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간(諫)하는 신하가 입을 다문다.'고 하였으니, 이는 저울의 형세와 같아서 이쪽이 무거우면 저쪽이 가벼워지는 것으로, 이치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간악함을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한결같이 덕을 귀하게 여김이 어진 이를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어진 이를 존경하면 미혹(迷惑)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미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치에 의심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어진 이를 얻어서 스승으로 삼으면 강구(講究)해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간악한 사람을 멀리 하고 충량(忠良)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겨서 항상 이 도(道)를 체득하소서.

그 지위를 높이고 그 녹(祿)을 후하게 하며 그 좋고 나쁨을 함께 하는 것은 친친(親親)함을 권하려는 소이(所以)이니 친애(親愛)하는 것은 부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위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며 그 좋고 나쁨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만약 일을 맡겼다가 불행히 죄가 있어서 죄를 다스리면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며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을 폐하는 것이니, 이로써 부귀(富貴)하게 하고 친후(親厚)하게 하되 일을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친애하며 보전하려는 소

하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안으로 여색(女色)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미치거나 술과 음악을 즐기거나 집과 담장을 사치하게 꾸미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약석(藥石)이다. 내가 자리 곁에 써서 붙이고 항상 보고 반성하겠다."

하자, 정창손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르시니,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아니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고, 한명회는 말하기를,

"이제 전하께서 간하는 말에 따르고 어긋남이 없으시며 구언(求言)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며, 마음에는 경계하고 삼가함이 있으시니, 진실로 우리 나라 만세에 무궁한 복입니다. 원하건대 이러한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마소서."

하였으며, 허종(許琮)은 말하기를,

"천심(天心)이 임금을 인애(仁愛)하므로 재이(災異)를 보여서 경계한 것이니, 오직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으면 천심(天心)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서거정(徐居正)은 말하기를,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광인(狂人)이 되고, 아무리 광인(狂人)이라도 잘 생각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초년에는 뜰에서 비단 옷을 불태워 <검소하였는데,> 만년(晩年)에는 황음(荒淫)의 실패함이 있었고, 태종(太宗)은 즉위한 처음에는 정성을 다하여 힘썼으나 끝내는 십점지계(十漸之戒)가 있었으니,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끝까지 처음과 같이 삼가는 이가 적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안두는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임금이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요(堯)임금 ·순(舜)임금·우(禹)임금·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이 서로 전한 심법(心法)은 중(中)에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요(堯)임금의 '그 중정(中正)을 잡으라.'는 것과 순(舜)임금의, '사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로 모아라.'는 것과 성탕(成湯)의, '중을 세우라.'는 것과 무왕(武王)의, '극(極)을 세우라.'는 것은 모두 중(中)을 말한 것인데, 중이란 것은 마음입니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천(天)과 인(人)의 관계(關係)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득실(得失)의 기틀[機]과 감응(感應)의 묘리(妙理)는 도(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를 능히 알겠습니까?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感)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應)하므로, 만약 재이(災異)를 막으려고 하면 마땅히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아서 천견(天譴)에 보답하는 것뿐입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구경(九經)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자(孔子)가 애공(哀公)으로부터 정사를 묻는 데에 대답한 말인데, 정치하는 도(道)를 논한 것이 이보다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구경의> 조목은, '몸을 닦음

[修身], 어진 이를 존경함[尊賢], 친족과 친애함[親親], 대신을 공경함[敬大臣], 여러 신하를 내 몸과 같이 함[體羣臣],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子庶民], 백공(百工)을 권장함[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관유(寬柔)함[柔遠人], 제후를 포용함[懷諸侯]이며, 재계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의복을 갖추어 몸을 엄숙하게 가지며 예(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계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의복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동(動)하여 사물(事物)을 접(接)하지 아니하는 때이니, 바로 《중용》의 수장(首章)에 이른 바, '보이지 아니하는 곳을 조심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곳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예(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動)하여 사물을 응접(應接)하지 아니할 때이니, 바로 수장에 이른바, '군자(君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간다.'는 뜻입니다.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안팎이 서로 수양(修養)되어 몸이 닦아집니다. 그러므로 '몸을 닦으면 도(道)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도가 몸에 이루어져서 백성의 표본이 될 만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이른바, '임금이 그 극(極)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군자는 그 극진함을 쓰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어버이에게 극진히 하여 천하에사람의 부자(父子)가 되는 도리를 정하고, 그 의(義)를 극진히 하여 천하에 군신(君臣)이 되는 자들의 도리를 정하며, 그 분별을 극진히 하여 천하의 부부(夫婦)가 되는 자들을 본받게 하니 한 마디의 말 하나의 행실에까지 만백성이 본받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간악함을 버리고 여색(女色)을 멀리 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德)을 귀(貴)하게 함은 어진 이를 권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니, 참사(讒邪)를 믿으면 어진 이를 신임함을 오로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면 어진 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돈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에 가연지(賈捐之)의 상소에 말하기를, '후궁(後宮)이 미인(美人)이면 어진 자가 숨어 살고, 간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간(諫)하는 신하가 입을 다문다.'고 하였으니, 이는 저울의 형세와 같아서 이쪽이 무거우면 저쪽이 가벼워지는 것으로, 이치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간악함을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한결같이 덕을 귀하게 여김이 어진 이를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어진 이를 존경하면 미혹(迷惑)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미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치에 의심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어진 이를 얻어서 스승으로 삼으면 강구(講究)해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간악한 사람을 멀리 하고 충량(忠良)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겨서 항상 이 도(道)를 체득하소서.

그 지위를 높이고 그 녹(祿)을 후하게 하며 그 좋고 나쁨을 함께 하는 것은 친친(親親)함을 권하려는 소이(所以)이니 친애(親愛)하는 것은 부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위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며 그 좋고 나쁨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만약 일을 맡겼다가 불행히 죄가 있어서 죄를 다스리면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며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을 폐하는 것이니, 이로써 부귀(富貴)하게 하고 친후(親厚)하게 하되 일을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친애하며 보전하려는 소

이(所以)입니다. 이 때문에 '제부(諸父)와 곤제(昆弟)가 원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원(官員)을 많이 두어 일을 맡기어 부리는 것은 대신(大臣)을 권려하는 소이(所以)이니, 대신은 작은 일은 친히 하지 아니하나 도(道)로써 임금을 섬기기를 스스로 다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眩惑)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현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에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저 신임을 오로지 하여 소신(小臣)이 이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임하여 현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 사람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두루 알 수가 없으므로, 군자(君子)를 들이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은 한 어진 정승을 얻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곧은 사람을 들어서 옳지 못한 사람의 위에 두면 능히 옳지 못한 자로 하여금 곧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순(舜)임금이 여러 사람 중에서 고요(皐陶)를 택하여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가 멀리 갔고, 탕(湯)임금이 여러 사람에서 이윤(伊尹)을 택하여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가 멀리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충신(忠信)하며 녹(祿)을 후하게 주는 것은 관리[士]를 권려하려는 소이(所以)이니, 정성으로 대(待)하고 후하게 기르면 관리가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기르는 데에 걱정이 없어서 일에 나아가고 공(功)을 세우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여러 신하를 내 몸처럼 하면 관리가 예(禮)로써 보답함이 중하다고 이르는 것인데, 몸처럼 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 처지에 두어서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내신(內臣)은 승정원(承政院)·예문관(藝文館)이고, 외신(外臣)은 각사(各司)인데,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무편무당(無偏無黨)하면 왕도(王道)가 탕탕(蕩蕩)하다'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내외의 신하를 한결같이 대하소서.

때를 맞추어서 부리고 세금 거두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은 백성을 권장하는 소이(所以)이니, 때를 맞추어 부리는 것은 바로 맹자(孟子)가 이른바, '농사 때를 어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고, 《전(傳)》에 이른 바, '사시(四時)의 사냥을 모두 농한기에 한다.'는 따위가 이것입니다. 거두기를 적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맹자가 이른 바, '농사짓는 자는 조(助)를 내고 세(稅)는 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심정은 모두 편하려고 하며 또 모두 부유(富裕)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를 맞추어 부리고 거두기를 적게 하는 것은 백성을 권려하는 바입니다.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하여 희름(餼廩)이 일에 맞게 하는 것은 백공(百工)을 권려하는 소이라.'고 하였는데, 희름은 초식(稍食)이고 일에 맞게 한다는 것은 그 <만든> 궁로(弓弩)를 살펴서 그 초식을 올리고 낮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하여 그 능함을 헤아리고 녹봉을 일에 맞추어서 그 노고를 보상하면 법도(法度)를 믿지 아니하거나 음교(淫巧)하게 만드는 자가 용납할 바가 없을 것이며, 게으른 자를 힘쓰게 하고 능한 자를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백공(百工)이 오면 재용(財用)이 족하다.'는 것은 공사(工事)가 통하고 농말(農末)이 서로 의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며 착한 이를 아름답게 여기고 능하지 못한 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은 먼 나라 사람을 관유(寬柔)하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절(節)을 주어서 그 가는 것을 전송하고 그 위적(委積)을 풍족하게 하여 오는 것을 맞이하며, 재주의 능함에 따라 임무를 주어서 그 잘하는 것은 아름답게 여기되, 하고싶지 아니한 것은 억지로 하도록 아니하며 그 능하지 못한 것을 가엾이 여기면 천하의 나그네가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길에 나오기를 원할 것이니, 규구(葵丘)의 회맹(會盟)에서 이른바, '빈려(賓旅)를 잊지 말자.'는 것이 이것입니다.

끊어진 대(代)를 잇게 하고 황폐한 나라를 들어 세우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위태로운 것을 붙들어 주며, 조빙(朝聘)을 때로 하며, 후하게 보내고 박하게 받는 것은 제후(諸侯)를 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끊어진 대(代)를 잇는 것은 무왕(武王)이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뒤를 세운 것이 바로 이것이고, 황폐한 나라를 들어 세우는 것은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위(衛)나라를 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빙을 때로 한다는 것은 매년 한 번씩 소빙(小聘)하고 3년 마다 한 번씩 대빙(大聘)하며 5년마다 한 번씩 조(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하게 보내고 박하게 받는 것은, 연사(宴賜)는 후하게 하고 납공(納貢)은 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지러움을 다스려서 상하(上下)가 서로 편하게 하고 그 위태로움을 붙들어서 크고 작은 것이 서로 구휼하게 하며 조빙을 때로 하여, 그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공사(貢賜)가 법도가 있어서 그 재물을 다하지 아니하게 하면, 전하의 제후(諸侯)가 모두 그 힘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보호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하니, 한결같다는 것은 성(誠)입니다. 또 구경(九經)의 근본은 스스로 수신(修身)하는 데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대학》에서 이르기를, '천자로부터 서인(庶人)까지 일체로 모두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였고, 《맹자》에는,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자기의> 몸에 있기 때문에 군자(君子)는 수신(修身)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경(九經)이라고 이르는 것의 경(經)은 경상(經常)의 일로서 진실로 만세에 바뀌지 아니하는 떳떳한 도(道)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말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체득(體得)하여 잊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원전】 9 집 57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성종 092 09/05/01(임술) / 승정원에 명하여 금주령을 파하고 《실록》 상고에 대해 정승·판서에게 의논하게 하다 》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흙비[土雨]로 인하여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해(利害)를 듣고자 하여, 전교를 내려 바른 말을 구하였는데, 거기에 술을 금하라고 한 까닭은 가뭄의 징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비가 두루 흡족하여 큰 가뭄과 큰 물의 재변이 없으니,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손순효(孫舜孝)와 박숙진(朴叔蓁)·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 때에는 비록 재이(災異)가 없을지라도 매양 농삿달을 당하면 술을 금하였으니, 허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오(端午)의 관사(觀射)에 반드시 술을 써야 하는데, 궐내(闕內)에서 쓰면 외간(外間)에서도 자연히 쓸 것이니, 금하는 것을 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금주령(禁酒令)을 파하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이르면 도리어 민폐(民弊)가 있을 것이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임원준(任元濬)이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일과 이용(李瑢)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을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약을 훔친 것은 이미 거짓된 일인 것을 알았고, 뇌물을 바친 일은 비록 있었을지라도 선왕(先王)께서 이미 벼슬길을 허락하고 임용(任用)하시어 묘당(廟堂)의 대신(大臣)에 이르렀으니, 추론(追論)할 수 없다. 가령 영의정이 본래 옳지 못한 일이 있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탄로되었다면, 또한 추론하여 죄를 주어야 할 것인가? 나의 생각에는 《실록》을 상고하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고 여긴다. 이를 의정부의 증경 정승(曾經政丞)과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는 유박불수(帷薄不修)의 비난이 있었으나, 그때에 애매(曖昧)한 일이라 하여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임원준의 일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용(瑢)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은 신이 일찍이 친히 아뢰었으며, 뇌물을 바친 일은 선왕(先王)께서 논하지 않고 임용(任用)하시어 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이 되고 의정부의 대신까지 되었으니, 추론(追論)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의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왕조에서 이미 벼슬길을 허락하여 임용된 지 이제 수십 년이 넘었고, 벼슬이 의정부에 있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미 의정부와 경연(經筵)의 임무를 파하였으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실록》을 상고하면 그때의 일이 혹시 있을 것이니, 어찌 이에 의거하여 추론하겠습니까?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또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인데, 하물며 30년 전의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래 된 범죄를 지금에 와서 일일이 법으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되도록 대우하는 길이 없고, 또 '구악(舊惡)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공의(公議)로써 이미 의정부의 벼슬을 파하였고, 겸하여 경연(經筵)의 임무도 없앴으니, 혹 죄를 가하신다면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이 이미 파직되었으니, 지나간 일을 다시 상고하여 심론(深論)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과 더불어 서로 부탁한 일은 심원이 명백히 말하였는데, 임원준은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바로 사사로운 감정을 끼고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양쪽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짓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대로 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신의 비밀한 일을 고하면, 위에서는 그 악(惡)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여, 만약에 명백히 분변하지 않고 양쪽을 그대로 두면, 비록 진짜 간신(奸臣)이 있어도 제거하기가 어렵고, 또 고알(告訐)의 풍속을 막는 바도 아닙니다. 임원준과 심원의 일을 깊이 다스려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이 약을 훔친 일은 신이 일찍이 《세조실록》을 편수(編修)하는 데 참여하여 자세히 알고 기록하지 못했으며, 황수신에게 뇌물을 준 일은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이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 어찌 추론(追論)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왕조(先王朝)에서 이미 허물을 씻어 없애고 임용하여 대각(臺閣)을 거쳐서 재상[宰輔]에 올리고, 공신[勳盟]에 참여하여 지금 의정부의 대신이 되었는데, 이제 홍문관 제유(諸儒)의 말로 인하여 전의 허물을 거두어 모아서 그 말을 사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추론(追論)하여 그대로 두지 않으면 대체(大體)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하고, 어유소(魚有沼)는 의논하기를,

"임원준의 일은 선왕조(先王朝) 때에 비록 이미 벼슬을 허락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을 쓴 것과 일을 행한 자취를 《실록》을 상고하여 계달한 뒤에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사람이 요순(堯舜)이 아니면 누가 허물이 없으랴마는, 과실을 알고 능히 고치면 이것이 착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모두 지나간 일을 추구(追咎)해서 이를 폐(廢)하여 처치한다면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길 것이니, 성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양성지(梁誠之)**·윤흠(尹欽)·윤계겸(尹繼謙)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이 황수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일은 신들이 후진(後進)이므로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나, 약을 훔친 일은 비록 《실록》을 상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마다 함께 아는 바이니, 《실록》을 상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실록》을 상고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9 집 59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 / *식생활-주류(酒類) / *역사-편사(編史)

《 성종 092 09/05/06(정묘) / 정승들이 임사홍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다 》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양성지(梁誠之)**·윤흠(尹欽)·신정(申瀞)·신준(申浚)·홍도상(洪道常)·김영유(金永濡)·유지(柳輊)·안관후(安寬厚)·김춘경(金春卿)·경준(慶俊)·박숙달(朴叔達)·강거효(姜居孝)·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하고, 윤계겸(尹繼謙)·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율학해이(律學解頤)》의 간당조(姦黨條)에, '간(姦)이란 것은 간사한 무리이고, 당(黨)이란 것은 붕당(朋黨)의 사람이다. 만약에 사람이 본래 죄가 없거나 혹은 죄가 있어도 사형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모두 이들 간사한 붕당의 사람이 망령되게 올린 참소(讒訴)의 말을 입어서, 사람을 잘못 죽이게 한 자는 참(斬)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사홍과 유자광·박효원·김언신은 단지 현석규(玄碩圭)를 소인(小人)이라고 모함하였을 뿐이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어 시행하시고, 김괴(金塊)와 김맹성(金孟性)·표연말(表沿沫)·손비장(孫比長)의 죄상은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김순명(金順命)은 논하기를,

"예로부터 붕당은 그 해가 반드시 큽니다. 임사홍은 임금을 업신여기고 대간과 교결하였으니, 그 실정을 안 자도 죄가 또한 같습니다. 표연말과 김괴·김맹성·손비장의 조율(照律)이 심히 가벼우니, 마땅히 중한 율에 따라 과단(科斷)하소서.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뒤에 경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계겸과 이극균의 의논이 옳다. 임사홍 등은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임사홍 등에게 사형을 감하신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였으니, 그 조짐이 가히 두렵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논단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간은 아뢰기를,

"법이란 것은 천하에서 공평하게 함께 하는 바이고,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사홍 등은 죄악이 깊고 중하며, 율(律)이 정조(正條)가 있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사형을 감하심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율에 의해 과단하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김순명(金順命)이 더욱 굳게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경 등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또 명하여 유자광에게 결장(決杖)할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한명회 등이 의논하기를,

"유자광에게 사형을 감하심은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니, 공신(功臣)을 삭적(削籍)하고 결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주서(注書) 양희지(楊熙止)에게 명하여 오늘 모이지 아니한 재상들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유자광이 이미 성상의 은혜를 입어 사형이 감해졌으니, 결장을 없애고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창손(鄭昌孫)·노사신(盧思愼)·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그 죄가 깊고 중하니, 율에 의하여 처결하는 것이 적당하나,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고 또 익대 공신(翊戴功臣)이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의(賈誼)가 이르기를, '대신이 죄가 있더라도 사도(司徒)의 소리(小吏)가 꾸짖고 매질하는 것은 여러 서민에게 보이게 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그 장(杖)을 속(贖)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운(尹子雲)·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이 붕당을 교결하여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의람되게 글을 올려 임금을 속였으

므로, 죄를 범한 것이 지극히 큰데, 지금 사형을 감하였으니, 성은(聖恩)이 깊고 중합니다. 공신(功臣)을 삭적(削籍)하고 결장(決杖)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의 죄악은 율(律)에 정조(正條)가 있는데, 특별히 사형을 감하기를 명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분수에 지나칩니다. 유자광이 공신으로서 성상을 속였으니, 이제 마땅히 삭적하고 결장하여 먼 지방에 유치(流置)시켜서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신을> 삭적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서용하지 아니하기가 어려우니, 이는 삭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같은 소인은 보기가 어려우니, 네 사람 중에서 죄의 괴수 한 사람은 율에 의해 시행하여 널리 보여서 뒷사람을 경계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서자(庶子)의 몸으로 지위가 극품(極品)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붕당을 교결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켜 성총(聖聰)을 모독하고, 겉으로는 충직(忠直)함을 가장하며, 안으로는 실로 간사하니, 이는 바로 소인(小人)의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죄를 밝게 바루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공신을 삭적(削籍)하고 먼 변방에 내쳐서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결장(決杖)이라면 형벌이 대부(大夫)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성주(成周)의 아름다운 법인데, 유자광이 비록 무상(無狀)할지라도, 이미 대부가 되었으니, 그 몸에 형장(刑杖)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속장(贖杖)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임사홍과 유자광·김언신·박효원은 사형을 감하고, 표연말과 김맹성·김괴·손비장은 율(律)에 의하게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은 임사홍 등에게 사형을 감하신 명령을 듣고 결망(缺望)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사홍은 소인의 정상이 모두 드러났고, 그 당류도 이미 찾았으니, 청컨대 모두 율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옛사람도 말하기를, '알고도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법을 무너뜨리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사정(事情)을 헤아려서 적당하게 결정하였으니, 경 등의 청을 듣지 않겠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사정은 진실로 사형이 마땅합니다. 붕당(朋黨)은 국가의 흥망과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달렸습니다. 유향(劉向)이 말하기를, '붕당의 친밀함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도적이다.'고 하였으니, 신은 청컨대 붕당의 신하를 기르지 마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박시형(朴時衡)의 탐오(貪汚)한 일을 윤호(尹壕)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조정 안의 대신이 모두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매우 그르게 여긴다. 경 등은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홍귀달(洪貴達)과 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만약 들었을 것 같으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시형은 성품이 인색(吝嗇)하여서 집에 있을 때에는 비록 음식과 같은 작은 물건일지라도 반드시 스스로 출납(出納)하여 처첩(妻妾)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였고, 밀양 부사(密陽府使)가 되어 부임하던 날에는 새벽에 바로 들어가서 아전들이 미처 영알(迎謁)하지 못한 자가 많았었는데, 모두 연포(練布)로써 속(贖)하게 하였으니, 그 행한 일이 대개 이와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였다." 하였다.】

【원전】 9 집 601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성종 093 09/06/20(경술) / 증경 정승과 의정부 당상, 육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 임원준을 국문하게 하다 》

명하여, 증경 정승(曾經政丞)과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그리고 육조(六曹)의 참판(參判)이상과 대간(臺諫)을 불러 빈청(賓廳)에 모여서 임원준(任元濬) 등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을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유진(兪鎭)·유순(柳洵)·이형원(李亨元)·김흔(金訢)과 채수(蔡壽) 등은 의논(議論)이 합하지 않으면 별도로 임사홍(任士洪)의 일을 상소(上疏)하여 아뢰는 것이 옳을 것인데, 끝내 채수의 의논에 따랐으니, 마치 바람에 쓸리듯이 추종한 것 같다."

하니, 이경동이 말하기를,

"의논이 합하면 합사(合辭)하여 아뢰고, 합하지 않으면 각각 의견대로 아뢰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 허물은 아니다. 다만 차오(差誤)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진은 동료(同僚) 중에서 동의(同議)한 일을 가지고 임원준에게 전하여, 자신이 수모자(首謀者)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으니, 잘못이

다. 그리고 채수가 성담년(成聃年)에게 부탁하여 상소(上疏)를 보고자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에 추측으로 한 말인데, 이는 임원준의 잘못이다. 그러니 채수·이창신은 모두 거론(擧論)하지 말 것이며, 안윤손(安潤孫)의 일은 마땅히 사증(辭證)을 끝까지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원준(任元濬)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이계산(李季山)이 신(臣)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공(公)이 탄핵(彈劾)을 당한 데 대해서는 누가 안타까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김수동(金壽童)이 나에게 말하기를, '안윤손의 말이, 이조(吏曹)에서 나를 두 번이나 주서(注書)로 주의(注擬)하였으나, 내가 낙점(落點)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임금이 임사홍(任士洪)을 죄주었지만 임사홍을 잊지 못하고 내가 일기(日記)를 써서 보여준 일을 허물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계산(李季山)의 공초에 이르기를,

"신(臣)이 김수동(金壽童)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임금은 안윤손이 사초(史草)를 써서 동료(同僚)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주서(注書)에 낙점(落點)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여긴 것을 임원준에게 말해 주었고, 안윤손이 말했다는, '평생의 영화(榮華)와 명리(名利)를 다시 얻을 수 없다. 임금이 비록 임사홍을 죄주었으나 임사홍을 잊지 못한다.'는 등의 말은 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유진·유순·이형원·김흔은 모두 채수의 꾀에 말려든 것이다. 모든 일은 사람들과 의논(議論)이 합해야만 그것을 공론(公論)이라고 하는데, 만약 남의 말에 겁이 나서 한 것이라면 어떻게 공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문하는 것이 어떤가? 이계산이 비록 안윤손의 말에 가감(加減)을 하였으나, 안윤손이 신자(臣子)로서 인주(人主)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것이니, 국문하라."

하였다. 안윤손(安潤孫)의 공초에 이르기를,

"신이 김수동(金壽童)과 대화(對話)하는 중에 김수동이 주서(注書)를 낙점받지 못한 이유를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임금의 뜻을 알겠는가? 그러나 근시(近侍)하는 신하로서 낙점을 받지 못하였으니, 임사홍의 일을 성상께서는 어떻게 여기셨겠는가?' 하였습니다. 다만 마음은 늘 황공(惶恐)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윤손(安潤孫)이 비록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은 이미 여기에 갖추어졌다. 또 유진(兪鎭)이 본관(本館)에서 동의한 일을 가지고 임원준(任元濬)에게 누설(漏說)한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유진이 본관에서 동의한 일을 가지고 임원준에게 누설한 죄는 율(律)이 장(杖) 80대에 고신(告身) 3등을 삭탈(削奪)하는 데에 해당하고, 안윤손이 주서(注書)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임금의 뜻을 추

측하여 김수동(金壽童)에게 말해준 죄는 율이 장 1백 대에 고신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유진은 율에 따라 죄줄 것이며, 안윤손의 죄는 희구진용율(希求進用律)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임원준의 일은 정승(政丞)이 의논하여 아뢰고, 안윤손의 일은 정승 이하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임원준은 파직(罷職)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정창손·한명회·심회와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어유소(魚有沼)는 의논하기를,

"안윤손이 임금의 뜻을 추측대로 헤아려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하지만, 다만 황공하다고 말했을 뿐 별로 원망한 뜻은 없었고, 또 임원준의 상서(上書)는 일이 보복(報復)에 해당되는 것이니, 성상(聖上)이 재결(裁決)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며, 홍응(洪應)·이극증(李克增)·**양성지(梁誠之)**·이승소(李承召)·어세공(魚世恭)·이숭원(李崇元)·윤계겸(尹繼謙)·강자순(姜子順)·신승선(愼承善)·이극균(李克均)·이극돈(李克墩)·김순명(金順命)·안관후(安寬厚)·정은(鄭垠)·이맹현(李孟賢)·김춘경(金春卿)·경준(慶俊)·임수경(林秀卿)·이세광(李世匡)·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안윤손의 말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준의 부자(父子)가 처음에 안윤손으로 인하여 논박(論駁)을 당했으니, 지금 임원준의 고언(告言)을 가지고 또다시 안윤손을 거론(擧論)함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고,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안윤손의 일은 비록 임원준이 고언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복직(復職)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임금의 뜻을 추측으로 헤아려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으니, 그 일은 불경(不敬)에 해당됩니다. 율(律)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임원준은 파직시키고 유진과 안윤손은 율에 따라 시행하라. 그리고 이계산의 공사(供詞)는 임원준의 공사와 저촉됨이 많고, 또 그 말이 이원좌(李元佐)와 연관되었으니, 형신(刑訊)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계산(李季山)이 장신(杖訊)의 공초에 이르기를,

"안윤손(安潤孫)이, '평생에 영화와 명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 임금이 비록 임사홍을 죄주었으나 임사홍을 잊지 못한다.'고 한 말은 신이 사실 임원준에게 말하였으나, 이원좌의 이름을 빌려서 상언(上言)한 것은 신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617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성종 093 09/06/22(임자) / 안선이 김국광의 국문을 청하니 이를 의논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안선(安瑄)이 아뢰기를,

"전번에 성계증(成繼曾)·권한(權僩)이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탄핵(彈劾)하여 파직(罷職)시키니, 성계증 등이 김지경과 소송(訴訟)하였고, 대사간(大司諫) 최한정(崔漢禎)이 황효원(黃孝源)을 탄핵하니, 황효원이 최한정과 소송하였으며,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양성지(梁誠之)**를 탄핵하니, 양성지가 김제신과 따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臺諫)이 김국광(金國光)을 탄핵하였는데, 김국광이 상서하여 대간과 변명(辨明)하고자 하니, 이 풍습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바야흐로 정승(政丞)을 탄핵하고 있으니, 두문 불출(杜門不出)함이 옳은데, 지금 상서(上書)하여 대간과 변명하고자 함은 진실로 잘못이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국문하겠는가?"

하였다. 사간(司諫) 경준(慶浚)이 말하기를,

"김국광이 탐욕스러움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국광은 상서하여 스스로 변명코자 하니, 이는 하늘을 속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요즈음 임사홍(任士洪)이 이미 죄가 결정되었는데, 임원준이 상서하여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보복(報復)하는 일이며, 임원준이 유진(兪鎭)을 유도(誘導)하여 홍문관(弘文館)에서 상소한 앞뒤 사실을 모두 듣고서는 도리어 공격을 하였으니, 이것도 크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요즈음 조정이 조용하지 못함은 전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승여(乘輿)에 미치면 천자(天子)가 표정을 고치고, 대간의 일이 날이 낭묘(廊廟)에 관계되면 재상(宰相)이 대죄(待罪)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이 김국광 등을 탄핵하였으니, 김국광 등은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들어앉아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데, 이제 감히 상서하여 변명하는 것이 예사일처럼 습관이 되어 서로서로 보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9 집 61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경연(經筵)

《 성종 094 09/07/14(계유) / 이조 판서 강희맹이 이원좌의 투서에 대하여 해명하는 글을 올리다 ② 》

비방자가 말하기를, '각도의 감사(監司)와 수령관(首領官)은 문무(文武)를 교차(交差)하는 법이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이제 영안 감사(永安監司)는 무인(武人)으로서 외람되게 감사가 되었는데, 그 도사(都事)가 무식하고 광망(狂妄)해서 일을 맡기에 부적당한 자이므로 진실로 합당치 못한데다가, 더구나 이제 감사와 도사가 모두 문신(文臣)이 아니면 법으로 마땅히 체직(遞職)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의 사촌 아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듣건대 감사와 도사에 문·무관을 교차하는 법은 양후(楊厚)가 충청도에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부터 비롯된 것이지, 정법(定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전(大典)》이나 《속록(續錄)》에 모두 실려 있지 아니하니, 《대전》에 이미 없는데,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개차(改差)하기로 계청(啓請)하겠습니까? 노공석(盧公奭)은 멀리 부모를 떠나 절역(絶域)에서 밤낮으로 분주하므로, 서울[京洛]로 돌아오고 싶어함이 진실로 그 본정(本情)일 것입니다. 만일 노공석에게 사정(私情)을 두었다면 마땅히 이 때문에 계청하여 경직(京職)으로 보낼 것인데, 과연 사촌의 아들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서 체직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신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방자(誹謗者)가 말하기를, '박숙달(朴叔達)·이세광(李世匡) 등의 무리가 비록 당상관(堂上官)을 이동[動搖]시킬 수가 없지마는, 자기네들끼리 거리낌없이 주망(注望)하여 정랑(正郎)·좌랑(佐郎)에서 며칠 안에 직질(職秩)을 뛰어올려 받았다. 비록 대성(臺省)은 육조(六曹)의 개만(箇滿)을 논하지 않으나, 어찌 유독 이조 낭관(吏曹郎官)만을 가리키겠는가? 그리고 다른 조(曹)의 낭청(郎廳)에서는 이와 같이 뛰어올려 옮긴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것은 또한 박숙달 등을 아껴서가 아니고, <강희맹이> 항상 방약무인(旁若無人)하여 좌우(左右)에서 한마디 말도 못나오게 해서 갖은 교사(巧詐)와 불법(不法)을 자행하는데, 박숙달 등의 구변이 좋음을 꺼려 주야로 생각하다가,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언관(言官)에 두어 포장(褒奬)하는 듯이 한 것이다. 사간원(司諫院)에는 유인호(柳仁濠)가 정언(正言)이 되고, 종제(從弟) 노사신(盧思愼)의 처남(妻남) 경준(慶俊)이 사간(司諫)이 되어 있으니, 사헌부(司憲府)에서 박숙달·이세광 등으로 하여금 성원(聲援)하게 한다면, 좌중(座中)에서 누가 나쁜 의견을 내어 그의 간사함을 지적하겠는가? 또 설혹 말을 낸다 해도 저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서 고할 것이고, 만일 스스로 깨닫고 먼저 아뢴다면 지난날 이삼로(李三老)·김서형(金瑞衡)·조효례(趙孝禮)·조지곤(趙智崑)·

신필(申弼) 등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성(臺省)은 육조 낭관(六曹郎官)과 예문관(藝文館) 및 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을 통용(通用)합니다. 전자에 대성(臺省)을 주의(注擬)하던 날 성상께서 묻기를, '주의한 사람을 다 내가 모르겠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인재(人材)로서 재행(才行) 있고 강개(慷慨)한 자가 여러 사람 있어서 육조 낭관(六曹郎官)과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 갔는데, 예문관은 계달(啓達)한 뒤에 쓰고, 육조 낭관은 정년(停年)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널리 구해서 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성상께서 전지(傳旨)를 내려 이르시기를, '대성(臺省)에 전주(銓注)할 때에는 육조 낭관과 예문관에 구애 하지 말고 강개(慷慨)하여 일을 말할 만한 사람을 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평(持平)에는 김흔(金訢)·강거효(姜居孝)·이세광(李世匡)을 주의하여 이세광이 수점(受點)하였고, 장령(掌令)에는 박숙달(朴叔達)·최응현(崔應賢)·안호(安湖)를 주의하여 박숙달이 수점하였습니다. 본조(本曹) 낭청(郎廳)이 비록 연달아 나가서 대성(臺省)이 되었지만, 신이 독망(獨望)한 것이 아니고 간간이 육조 낭청과 타관(他官)을 주의(注擬)하여 성상의 낙점(落點)을 받은 것이 이러한데, 신이 어찌 그 사이에 마음을 썼겠습니까?

비방자가 말하기를, '낭관(郎官)을 대성(臺省)에 주의(注擬)한 것은 성원(聲援)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성상께서 신이 마음대로 한다고 의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들 몇 사람들은 다 나이 젊고 기개가 예리하여 바야흐로 명분과 절개로써 스스로의 긍지를 가진 자들인데, 노신(老臣)에게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몸을 구부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대간(臺諫)의 의논을 누설하겠습니까? 또 경준(慶俊)은 신과 평소의 교제도 없는데, 어찌 사촌매부의 사촌형이 된다고 두둔해 줄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를 집행하는 사람이 만일 친족의 친척을 피혐(避嫌)하여 추천이나 서용을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고근 약식(孤根弱植)으로 일가붙이가 없는 사람을 얻어서 대간(臺諫)을 삼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물(人物)을 전주(銓注)하는 것은 원래 노신(老臣)과 같이 망매(茫昧)한 사람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반드시 사람마다 그 재기(才器)를 알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이 추천[吹噓]으로 인해서 쓰기도 하고, 혹은 평소부터의 들은 바로써 쓰기도 하며, 또 혹은 회합이나 만나보았을 때의 소행(素行)으로 인연하여 쓰게도 되는 것입니다. 꼭 현부(賢不)를 알아서 쓸 사람을 구하기로만 한다면 한 차례의 정사 안에 두세 사람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른바 대성(臺省), 육조 낭청, 결송(決訟)하는 관리이고, 그밖에 자질구레한 거용(擧用)에는 차오(差誤)가 없을 수 없으니, 정사를 끝마친 뒤에 제서(除書)를 살펴 조사해 보아서 만일 착오(錯誤)가 있으면 곧 계청하여 개정(改正)할 것인데, 어찌 대간에서 누설된 뒤에야 하겠습니까? 이삼로(李三老)가 아직 해유(解由)를 내지 못하였고, 김서형(金瑞衡)이 범을 잡다가 사람을 다쳤으며, 조효례(趙孝禮)가 상중(喪中)에 과거에 나아갔고, 조지곤(趙智崐)이 어버이를 병이라고 칭탁하여 정사(呈辭)하였으며, 신필(神弼)이 아직도 경직(京職)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 등, 이런 것은 신 등의 작은

지혜로는 미처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다가 혹 먼저 계청해서 고치기도 하고, 혹은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인해서 고치기도 하였는데, 신을 두고 사욕(私慾)을 이기지 못해서 망령되게 모독(冒瀆)하여 입망(入望)시켰다고 배척을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비방자(誹謗者)가 말하기를, '지난번 도목정(都目政)과 전동정(轉動政)에 수령(守令)의 빈자리가 30여 자리에 이르는데, 모두 조효례(趙孝禮) 등 횡출(橫出)한 자들을 시키고, 별제(別提)들은 봉록은 없이 애써 근무하니 조정의 관원들이 애처롭게 여긴다. 그래도 유효장(柳孝章)의 형 유효중(柳孝中)은 와서 별제(瓦署別提)로서 거우 개월(箇月)이 차자 갑자기 창평 현령(昌平縣令)을 제수하였으니, 가증하고 가증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도목정과 전동정은 애매하거나 밝히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명백히 제수(除授)한 자가 있으며, 횡출(橫出)한 자가 몇 사람이고 받을 만한 자가 몇 사람인지는 반부(班簿)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효례(趙孝禮)는 세조조(世祖朝)부터의 오래된 무사(武士)로서, 지금은 운검 차비(雲劍差備)로 시위(侍衛)하고 있는데, 태안 군수(泰安郡守)로 제수할 것을 의논할 때 병조(兵曹)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병조에서도 좋다고 해서 황경인(黃敬仁)·양인백(楊仁伯)과 함께 주의(注擬)하여 수점(受點)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의 실수를 듣고 고쳐서 바로 잡았습니다마는, 그의 실수한 일이 오래 되고 미미하여 드러나지 않은 일이어서 신 등이 소급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효중(柳孝中)은 창평(昌平)이 다시 현(縣)으로 승격될 때 그 수령(守令)으로 의논하였는데, 별좌(別坐)들의 개만(箇滿)된 치부(置簿)를 상고해 보니, 그 수는 비록 많으나 모두 시가(試可)하였고, 품질(品秩)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이분연(李賁然)·백수희(白受禧) 등 시가(試可)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다 이미 부사(府使)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라서 5품으로 굽혀 제수할 수가 없고, 오직 유효중만은 전 현령(縣令)으로서 별좌(別坐)의 개만(箇滿)이 되었으며, 달리 주의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성생(李誠生)·정자숙(鄭自淑)·유효중(柳孝中)을 주의하여 유효중이 말망(末望)으로 수점(受點)하였는데, 신이 어찌 사정(私情)을 쓴 것이겠습니까?

비방자(誹謗者)는 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겉으로는 강직(剛直)한 것 같으나 교언 영색(巧言令色)하며 간교(奸狡)하기 형용할 데가 없으니, 젊어서부터 그러하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벼슬을 올려주고, 아부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현능(賢能)한 사람이라도 멀리 배척하여 백 가지 계책을 여기에 맞추는데, 언제나 벼슬을 제수할 때에 신정(申瀞) 이하의 사람들은 반식(伴食)할 뿐으로, 감히 용사(用捨)의 시비(是非)에 말을 내지 못하니, 그 누가 논박하겠는가? 본가(本家)의 사람이나 말[馬]은 네 첩(妾)의 처소 및 강귀손(姜龜孫)과 강학손(姜鶴孫)의 집과 그 동복(同腹)들의 집에 출입을 안 하고, 거기에는 거마(車馬)가 꽉 차 있으며, 뇌물[苞苴]이 구름같이 모여 있는데, 신이 날마다 여기저기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제 뜻대로 하니,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한 일을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신이 외척(外戚)과 족당(族黨)의 반거(盤據)로 인하

여 견문(見聞)이 넓으나, 총애를 믿고 욕심을 마음대로 하여 권세가 맹호(猛虎)와 같은데다가 대성(臺省)이 또한 심복(心腹)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임금인들 어떻게 알겠는가? 연로(年老)한 **양성지(梁誠之)** 같은 이는 비록 확실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극언(極言)으로 배척(排斥)하는데, 신(臣)으로 말하면 임금의 세력을 얻고 간웅(姦雄)들을 가까이하니, 비록 명백하게 말할 만한 일이 많아도 부도(不道)한 일을 한마디도 발언하여 주달(奏達)하지 않고 있다. 아아! 양성지가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방자가 신을 장계(狀啓)함이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무릇 사람이나 동물의 애증(愛憎)과 취사(取捨)는 각각 끼리끼리 하는 것이어서 소[牛]를 가지고 말[馬]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저희끼리가 아니면 만에 하나 사랑하고자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는 아름답고 밉고 할 것 없이 궁궐에 들어가면 질투를 받고, 선비는 어질고 어리석고 할 것 없이 조정에 들어가면 시기(猜忌)를 받습니다. 신은 이미 믿음을 얻을 만한 덕이 없고 또 비방을 받는 처지에 있어서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마땅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말[馬]이라고 부르면 내가 말로써 응하고, 나를 소[牛]라고 부르면 내가 소로써 응하더라도, 내가 실상 소나 말이 아니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망령된 것이니,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랴?' 하였습니다. 헛된 말을 날조(捏造)하여 소신(小臣)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실로 바람이나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니, 일소(一笑)에 붙일 뿐입니다. 다만 사람들 가운데 승직[陞陟]에 붙고 못붙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중상(中傷)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감(聖鑑)으로 환하게 알고 계신데 신이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이제> 그 말에, '벼슬을 제수할 때 신정(申瀞)이하는 반식(伴食)할 뿐이고 감히 발언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신정 이하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 만일 반식하는지의 상황을 묻는다면 신정(申瀞)이 어찌 신을 위해서 은휘(隱諱)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정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니, 관청 행정의 잘못은 한 관청의 관리들이 함께 그 책망을 받는 것인데, 신 한 사람만을 따로 해치고자 하여 말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 말에 '본가의 사람과 말이 네 첩의 처소 및 자식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제 뜻대로 하니,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원자(元子)가 지난해 11월 27일에 비로소 신의 집에 오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달이 되도록 <신이> 밖에 나가서 잔 것은 모두 나흘입니다. 한 번은 화약고(火藥庫)의 실화(失火)를 구제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을 보고서 감히 곧바로 오지를 못하고 종[奴]의 집에서 기숙(寄宿)한 것이 이틀이었고, 한 번은 춘기(春期)·하기(夏期)의 시제(時祭) 때문에 나갔다가 자식의 집에서 잔 것이 이틀이었으며, 이 밖에는 한번도 밖에 나가서 잔 일이 없고, 온종일 다른 곳에 서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신이 몸을 쪼갤 수가 없는데, 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들여 뇌물을 받겠습니까? 또 원자(元子)에게 시종(侍從)하는 나인(內人)들이 집에 있어서 저의 동정(動靜)을 다

알고 있는데, 신이 어찌 자진해서 변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신이 외척(外戚)과 족당(族黨)의 반거(盤據)로 인하여 대성(臺省)이 심복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임금인들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데, 오늘날 언로(言路)가 통개(洞開)되어 사람마다 직언(直言)하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신이 간사한 일을 한 것이 진실로 비방자의 말과 같은데도 대간(臺諫)들이 혹시 신을 두려워해서 말을 안 한다면 홍문관(弘文館)의 여러 유생(儒生)들이 반드시 말할 것이고, 홍문관의 유생들이 혹시 신을 두려워하여 말을 안한다면 종실(宗室)의 직신(直臣)이 반드시 말할 것이며, 종실의 직신이 말을 안한다면 동렬(同列)에 있는 대부(大夫)들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하필 속으로는 모극(矛戟)을 품고서 겉으로 온화한 얼굴을 드러내어 익명서[飛書]를 궐내에 던져서 승영(蠅營)과 같은 욕심을 채우고 귀역(鬼蜮)과 같은 음모를 행하는 것입니까? 인신(人臣)으로 만일 간흉(奸凶)한 자가 있으면, 비록 권력의 중요함이 후설(喉舌)과 같고 직위의 숭고함이 묘당(廟堂)과 같더라도, 오히려 합사(閤司)하고 항장(抗章)하여 직언(直言)으로 이를 배척함도 사양치 않을 것인데, 어찌 익명(匿名)의 투서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간인(奸人)들이 그의 무리를 모아 가지고 공모로 한번의 비방을 작성하여서 밖으로는 신을 모함하기 위함이고, 안으로는 실상 성감(聖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살피소서."

하였다.

【원전】 9 집 624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성종 094 09/07/20(기묘) / 증경 · 정승 · 의정부 등의 관원과 전라도 관찰사 · 절도사를 지낸 이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다 》

증경 정승(曾經政丞)·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 및 일찍이 전라도(全羅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였다.

1. 경상도(慶尙道) 흥해(興海)의 죄수 이두생(李斗生)이 손득문(孫得文)을 시켜 이방(李方)을 결박해서 구타하여 죽게 한 일이다.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는 주사율(主使律)로써 이두생을 사형으로 논하고, 형조(刑曹)에서는 중하수율(重下手律)로써 손득문을 사형으로 논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권농관(勸農官)인 이두생(李斗生)이 권농(勸農)이며 통주(統主)로서, 이방(李方)이 관청의 일을 지체시킨다고 하여 손득문을 시켜서 결박하고 구타하여 죽게 하였으므로, 이두생이 실상 주사(主使)한 사람인데, 이제 투구살(鬪毆殺)로만 조율(照律)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마땅히 위력제박율(威力制縛律)로써 논단(論斷)해야 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손득문을 시켜서 이방을 결박하게 하였고, 손득문이 이방을 4,5차례나 발로 차는데, 이두생이 한마디도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손득문이 공술(供述)할 때의 말로는 제가 자진해서 발로 찬 것이지 이두생이 차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 마땅히 다시 국문해서 말이 일치하게 된 뒤에 죄를 정하여야 합니다."

하고, 홍응(洪應)·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손득문을 시켜서 이방을 결박할 때, 손득문은 이방이 결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랫배와 갈빗대를 너댓 번 걷어찬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두생이 만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이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그냥 난타(亂打)하는 것이 마음에 만족해서 결박·곤핍(困逼)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게 하였으니, 죄를 손득문에게만 돌려서는 안되고, 마땅히 다시 국문해서 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어유소(魚有沼)·허종(許琮)·**양성지(梁誠之)**·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손득문이 발로 이방의 갈빗대를 걷어찬 것이 이두생이 시킨 것인지 제 스스로 한 것인지 공초(供招)한 말이 분명하지 않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다시 국문해서 아뢰도록 하소서."

하고, 이승소(李承召)·김순명(金順命)·윤호(尹壕)·어세공(魚世恭)·윤흠(尹欽)·신정(申瀞)·김유(金紐)·안관후(安寬厚)·성담년(成聃年)·유인호(柳仁濩)는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지(柳輊)·신준(申浚)은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만일 그를 결박하게 하지 않았다면 손득문이 어떻게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죄(重罪)는 이두생에게 있으니, 마땅히 주사율(主使律)로써 논단하여야 합니다."

하고, 박양신(朴良信)·정은(鄭垠)·김극유(金克忸)·김자정(金自貞)·이맹현(李孟賢)·이길보(李吉甫)·임수경(林秀卿)·최반(崔潘)·안선(安璿)·이세광(李世匡)은 의논하기를,

"이방이 죽은 것은 손득문이 처음에 이두생의 말을 듣고 결박하여 구타해서 죽게 된 것이니, 투구(鬪毆)의 치명상(致命傷)으로써 중론(重論)해서는 안됩니다. 이두생은 주사율(主使律)로 하고, 손득문은 종범(從犯)으로서 하수자(下手者)이니, 마땅히 위력제박율(威力制縛律)로써 논단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노사신(盧思愼) 등의 의논에 따랐다.

1. 율문(律文) 안에,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 숙질(叔姪)은 멀리 귀양보내고, 나이가 차지 않은 친자식은 노비(奴婢)로 삼는다.' 하였는데, 만일 본계(本系)가 천인(賤人)일 경우에는 비록 노비로 삼는다 하더라도 숙질(叔姪)의 벌보다 도리어 가벼우니, 경중(輕重)에 마땅함을 잃었다는 일이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홍응(洪應)·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석을금(石乙金)은 반역자(反逆者)인 만자(萬自)의 조카자식이라 하여 극변(極邊)으로 귀양보내었고, 친자식은 나이가 어리므로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았는데, 만일 양인(良人)이면 노비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으나, 본래 천인(賤人)이면 비록 천인에 소속시키더라도 달리 악(惡)을 징계하는 뜻이 없으니, 경중(輕重)이 차례를 잃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이 이와 같으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이극증(李克增)·**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난신(亂臣)의 숙질(叔姪)을 멀리 귀양보내면서 친자식을 본도(本道)에 안거(安居)함은 경중이 마땅함을 잃는 것이니, 자녀들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도 만일 천인이면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공(魚世恭)·윤흠(尹欽)·이승소(李承召)·윤계겸(尹繼謙)·이극균(李克均)·신준(申浚)·신정(申瀞)은 의논하기를,

"천인의 연좌(緣坐)는 율문(律文)에 구분된 것이 없어서, 계유년·병자년·무자년에는 난신(亂臣)의 연좌로 처첩(妻妾)과 자녀들을 공신(功臣)의 집에 급부(給付)하였고, 정해년에 이시애(李施愛)의 연좌로는 모두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소속시켰으며,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과죄(科罪)하지 않고 때에 따라 죄를 정하였습니다."

하고, 강자평(姜子平)·박양신(朴良信)·김극유(金克忸)·정은(鄭垠)·김자정(金自貞)·이맹현(李孟賢)·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율문(律文)에, 무릇 반역자들의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와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그 자식의 처첩들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兄弟)의 자식은 호적(戶籍)이 같고 다름에 상관없이 모두 유(流) 3천 리에 안치(安置)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인(良人)에 의거한 이야기이고, 만일 천인(賤人)일 경우 백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유(流) 3천 리에 정역(定役)시키면서 친자녀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는 혹 공신의 집에 급부(給付)하기도 하고, 혹은 그전대로 천인으로 만들어서 편한 대로 살게 한 것이 되므로 친자녀가 도리어 조카 자식들보다 가벼워 달리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족(士族)과 양인(良人)이면 율

문대로 시행하고, 천인이면 율(律)에 응당 노비가 될 자는 모두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유지(柳輊)·김순명(金順命)·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난신(亂臣)의 친자식 중 <15세까지>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는 자로서 만일 천인(賤人) 계통이면 다른 도(道) 잔읍(殘邑)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유(金紐)·안관후(安寬厚)·임수경(林秀卿)·최반(崔潘)·안선(安璿)·이세광(李世匡)·성담년(成聃年)·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난신의 친자식 가운데 나이가 <15세에> 차지 않은 자로서 천인 계통이면 다만 관노비로 소속시켜 본고장에 있게 하고, 그 아우와 조카들은 먼 지방으로 유배보내어 정속(定屬)시키니, 이는 아우와 조카를 도리어 무겁게 벌하고, 친자식을 도리어 가볍게 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律)에 이르기를, '난신의 자식으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를 공신에게 급부하여 노비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의 본뜻은, 한편으로는 공신에게 상주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난신 적자(亂臣賊子)를 징계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만자(萬自)의 아들을 마침 공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공신에게 주는 법은 진실로 폐할 수 없으며, 친자식이 조카보다 도리어 가벼운 죄를 받게 되는 것을 꺼려서 다른 도(道)의 관노(官奴)로 옮겨 정하는 법을 세워 가지고 공신에게 주지 않는 예(例)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아니하니, 율문(律文)대로 두고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난신의 자녀에 친인(賤人) 계통으로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서거정(徐居正)·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이극증(李克增)·어세공(魚世恭)·이승소(李承召)·윤계겸(允繼謙)·윤흠(尹欽)·**양성지(梁誠之)**·김순명(金順命)·신정(申瀞)·신준(申浚)·이극균(李克均)·유지(柳輊)·윤호(尹壕)·정은(鄭垠)·김극유(金克忸)·김자정(金自貞)·이맹현(李孟賢)·이길보(李吉甫)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洪應)·강희맹(姜希孟)·김유(金紐)·안관후(安寬厚)·임수경(林秀卿)·최반(崔潘)·안선(安璿)·성담년(成聃年)·이세광(李世匡)·유인호(柳仁濠)는 말하기를,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대답한 바에 따랐다.

1. 황효산(黃孝山)이 적제(嫡弟) 황이경(黃以經)을 죽인 것을 장유(長幼)의 율(律)로 논단(論斷)한

것에 대한 일이다.

장창손·한명회·심회·윤사흔·김국광·노사신·윤필상·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중국(中國)에서는 첩의 자식도 다 과거에 나아가 벼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문(律文)에 적서(嫡庶)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 장유(長幼)의 법으로써 논단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하므로, 장유(長幼)로 논하지 말고 적서(嫡庶)로써 논단하여 그로써 명분(名分)을 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해당 관사(官司)를 시켜서 분명하게 법례(法例)를 만들게 하소서."

하고, 홍응·강희맹·서거정은 의논하기를,

"황효산이 적제(嫡弟)를 죽였는데, 몸은 비록 연장(年長)으로 되어 있으나, 존귀(尊貴)의 분수는 아우에게 있는 것이니, 실로 이 적체(嫡體)를 비유(卑幼)로써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적자(嫡子)가 미약하여 서장(庶長)에게 기탁(寄托)해 있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만일 비유(卑幼)라고 해서 가볍게 이런 무리들을 내버려둔다면, 적서(嫡庶)가 문란해져서 은연중 경함(傾陷)할 생각을 품게 되어 장차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황효산을 법(法)대로 처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뒤에 비록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으로 인연해서 준례(遵例)가 될 것이니, 반드시 따로 과조(科條)를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승소는 의논하기를,

"《좌전(左傳)》에서 천(賤)한 사람이 귀(貴)한 사람을 방해하고, 연소자(年少者)가 연장자(年長者)를 능멸하는 것을 육역(六逆)의 으뜸으로 삼았는데, 이른바 귀천(貴賤)이란 곧 적서(嫡庶)요, 소장(少長)이란 곧 존비(尊卑)를 말한 것으로서 그 분별이 매우 엄합니다. 우리 나라 적서의 분별은 더욱 엄하여서 향당(鄕黨)의 서차(序次)와 조정(朝廷)의 작위(爵位)에서 서얼(庶孼)의 붙이는 적자(嫡子) 축에 들지도 못하는데, 강포(强暴)하게 능범(陵犯)까지 하는 것을 장유(長幼)의 법으로써 논단하는 것은 매우 정리(情理)에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서얼이 적자를 능멸한 자는 양천상구율(良賤相毆律)에 견주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허종·어유소·**양성지**는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한데, 이제 황효산(黃孝山)이 적제(嫡弟)를 때려죽인 것을 두고 형이나 누이가 아우나 여동생을 때려죽인 법으로써 논단해서 사형(死刑)을 면하게 된다면, 서(庶)로서 적(嫡)을 능멸하는 풍습이 이로부터 생겨날 것이니, 비유(卑幼)로서 존장(尊長)을 때려죽인 법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윤흠·어세공·윤계겸·이극균·신정·신준·김순명·윤호는 의논하기를,

"율문에는 비록 적서의 분별이 없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하니 율문에 구애되어 따를 것이 아니라, 범인(凡人)이 사람을 때려죽인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강자평(姜子平)·박양신(朴良信)·김극유(金克忸)·정은(鄭垠)·김자정(金自貞)·이맹현(李孟賢)·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적서(嫡庶)의 분별이 엄하고 존비(尊卑)가 확연하여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다 등급이 있어서 중국과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서얼(庶孼)이 적제(嫡弟)를 능멸하여 때려죽이는 자는 양천상구율(良賤相毆律)에 의거하여 과단(科斷)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김유·안관후·임수경·최반·안선·이세광·성담년·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적서의 분별은 《춘추(春秋)》에서도 중하게 여긴 것이니,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적서가 서로 구타한 데에 대한 과죄(科罪)의 법이 율문에 실려 있지 않으니, 이제 마땅히 따로 과죄의 조항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적제(嫡弟)와 서형(庶兄)이 서로 죽인 자는 투구살(鬪毆殺)로써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국광·노사신·윤필상·홍응·강희맹·서거정·허종·어유소·양성지·이극균·김순명·신정·유지·신준·윤호·김유·안관후·정은·김극유·김자정·이맹현·이길보·임수경·최반·안선·이세광·성담년·유인호가 의논하기를,

"서형이 적제를 죽이는 것은 비(卑)로서 존(尊)을 죽인 것이고, 적제가 서형을 죽이는 것은 유(幼)로서 장(長)을 죽인 것이어서 서로가 존비(尊卑)와 장유(長幼)의 분별만 있을 뿐이니, 그 서로 때려 죽인 자는 다 사형(死刑)으로 처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손·한명회·심회·윤사흔·이극배·어세공·이승소·윤계겸·윤계겸·윤흠은 의논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인정(人情)에 맞고 본토 풍속에 마땅하게 된 뒤에라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적서(嫡庶)의 분별이 매우 엄하여 농민[田民]들까지도 모두 품삯을 감하여 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서형이 적제를 죽인 것을 만일 장유(長幼)의 법으로만 논단하여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재리(財利)를 전부 차지하고자 적자(嫡子)를 죽이는 자가 간혹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자(嫡子)가 비록 어릴지라도 존속(尊屬)으로써 논하고 첩자(妾子)가 비록 연장자(年長者)라도 비속(卑屬)으로써 논해야 할 것이며, 적제(嫡弟)가 서형(庶兄)을 죽인 자는 법에 의거하여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구살(毆殺)한 것으로 논한다면, 적서(嫡庶)의 분별이 엄정해져서 강상(綱常)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손순효(孫舜孝)·홍귀달(洪貴達)·이경동(李瓊仝)·김계창(金季昌)은 의논하기를,

"김국광 등의 의논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김승경(金升卿)은 의논하기를,

"서형(庶兄)이 비록 연장자(年長者)이기는 하나 존속(尊屬)이 아니고, 적제(嫡弟)가 비록 존속이기는 하나 연장자가 아니므로, 율문 중의 존비(尊卑)·장유(長幼)의 일컬음과는 어긋남이 있어서 그 구살(毆殺)의 죄를 율문에 의하여 논단할 수가 없으니, 이제 따로 천살(擅殺)의 조항을 세워서 다 함께 사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유와 존비의 분별을 더욱 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김국광 등의 나중 의논에 따랐다.

1. 전라도(全羅道) 순천부(順天府)에 석보(石堡)와 군인(軍人)을 더 설치하는 것과 어란(於蘭)·달량(達梁) 두 포(浦) 사이에 보(堡)를 설치하는 일이다.

정창손·한명회·심회·윤사흔·김국광·노사신·윤필상·이극배·신정은 의논하기를,

"처음 석보(石堡)를 만들게 된 것은 해변의 거민(居民)들이 왜구(倭寇)의 돌입(突入)을 당할 때 우선 여기에 의지하여 그 예봉(銳鋒)을 피하고자 한 것이지 연해(沿海)의 거민들을 다 투입(投入)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같이 조그마한 보(堡)는 장원(長遠)한 계책이 아니니, 적(賊)이 만일 함부로 들어온다면 거민들이 어찌 능히 이 보(堡)를 지켜서 그 수난(受難)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갓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고, 수졸(戍卒)을 골라 뽑아낼 도리도 없으니, 만일 여러 진(鎭)에서 뽑아낸다면 본진(本鎭)은 단약(單弱)해져서, 동쪽을 지탱하면 서쪽이 기울어지고 옷깃을 잡으면 팔꿈치가 드러나서 그 폐단이 다단(多端)할 것이므로, 읍성(邑城)을 견고하게 쌓았다가 만일 완급(緩急)한 일이 있게 되면 문득 들어가서 고수(固守)함만 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로 만대(萬代)의 원대한 계책이고 석보(石堡)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홍응·강희맹·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석보를 만드는 것은 진실로 유리한 일이기는 하나 이미 본고을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외에 또 석보를 둔다면 지키기가 또한 어려워질 것이고, 또 석보를 만들 만한 땅은 소재(所在)가 다 그러합니다. 다만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으나, 여력(餘力)만 있다면 <석보를> 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양성지(梁誠之)**·유수(柳洙)는 의논하기를,

"회령포(會寧浦)·마도(馬島)·달량(達梁)·어랑(於蘭) 등지의 해변에는 거민(居民)이 매우 많은데, 본고을의 성(城)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혹시 완급(緩急)이 있게 되면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그 사이에 보를 쌓는 것이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주진(主鎭)의 병사를 나누어서 지킨다면 병사가 나뉘어 힘이 약해질까 두려우니 성을 쌓을 만한 형편이 되는 땅과 군사를 조발(調發)하는 것의 마땅함을 본도(本道)의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순천(順天)의 석보(石

堡)에 수병(戍兵)을 더 두고 창고를 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어세공·윤흠·윤계겸·이극균·신준은 의논하기를,

"순천부 석보에 군인을 더 두는 것과 어란(於蘭)·달량(達梁) 두 포(浦) 사이에 보를 두는 것은 다 마땅하니, 병영(兵營)의 수졸(戍卒)들을 빼내어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도(馬島)와 회령(會寧) 두 포의 사이는 산이 험준하고 수목이 빽빽하여 백성들이 또한 드물게 살기 때문에 보루를 둘 필요는 없겠고, 여러 보루에 병기(兵器)가 적어 고단(孤單)하니 창고를 두는 것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김지경(金之慶)·박식(朴埴)·김순명(金順命)·윤호(尹壕)·조간(曹幹)·강곤(康袞)·임자번(林自蕃)은 의논하기를,

"회령포(會寧浦)와 마도(馬島)의 사이 및 달량(達梁)과 어란(於蘭)의 사이에 각각 석보를 두어서 병영(兵營)에 유방(留防)하는 정병(正兵)을 두 대(隊)로 나누어 수자리살게 하고, 각각 군관(軍官)을 보내어 이를 영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수군(水軍)일 경우라면 대·중·소의 병선(兵船)에 각각 정원[定額]이 있어서 감하여 뺄 수가 없고, 또 왜구(倭寇)가 아무리 성보(城堡)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오랜 시일을 견디지는 못할 것이니, 창고를 만들어 양식을 저축해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일찍이 사창(社倉)을 설치한 일이 있었는데, 본고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수(監守)하는 자가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하여 염산(斂散)할 때 줄어든 것이 많고 불을 놓고는 도망한 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만일 보(堡) 안에 창고를 설치하면 폐단이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이니, 거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유는 의논하기를,

"순천의 석보에 군인을 더 두고, 회령과 마도, 달량과 어란 사이에 보를 만들고서 양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수영군(水營軍)만은 배의 수효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설치하고, 다른 곳에 나누어 소속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병영군(兵營軍)은 다만 3려(旅)를 두되 역시 인원수를 감해서는 안되며, 가까운 고을에서 번상군(番上軍) 1백 명을 내어다가 새로 설치한 두 보에 나누어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근래에 남쪽에 왜구(倭寇)들이 몰래 나타나는 일이 잦은데, 방어(防禦)가 허술하니, 계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손(鄭昌孫)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9 집 629 면

【분류】 *외교-왜(倭)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군사-관방(關防)

《 성종 094 09/07/23(임오) / 의정부·육조·대간들을 불러 절도죄의 처벌과 광릉을 견고하게 수축할 방안을 논의하다 》

증경 정승(曾經政丞)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들을 불러서 정사를 의논하였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절도죄(竊盜罪)는 3범(犯)이면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再犯)하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일 경우 장물(贓物)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일이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신준(申浚)·고태필(高台弼)·김순명(金順命)은 의논하기를,

"절도죄는 장물의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3범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律文)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서 도적이 점차 성하여지므로, 재범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다만 폐단을 덜 생기게 하려는 한때의 방책인 것이니, 만일 도둑이 차차 병식(屛息)되면 3범에서 사형에 처하는 법을 도로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로부터 창고의 돈이나 곡식을 도둑질한 외에는 장물의 다소(多少)를 계산한다는 일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정해서 장물의 다소를 계산할 것 없이 재범이면 사형에 처하되, 그 가운데 정상이 불쌍한 사람은 임금이 재량껏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홍응(洪應)·강희맹(姜希孟)·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이극증(李克增)·**양성지(梁誠之)**·어세공(魚世恭)·윤흠(尹欽)·윤계겸(尹繼謙)·이극균(李克均)·신정(申瀞)·유지(柳輊)·강자평(姜子平)은 의논하기를,

"재범의 절도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속록(續錄)》에 실려 있고, 또 지금 도둑이 너무 극성하니 잠잠해질 때까지는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절도 3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律文)에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도둑이 너무 극성한 까닭에 재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역시 일시적인 임시 편법일 뿐입니다. 다만 오늘 한 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내일 한 개의 참외[瓜]를 도둑질했다고 해서 다 사형에 처한다면, 생사(生死)가 지극히 중한 일인데, 어찌 애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관(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다소(多少)를 계산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여 재범을 사형에 처하기로 한다면 재범의 장물이 1관(貫) 이상에 달하는 자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양신(朴良信)·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장물의 다소는 인가(人家)에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에 관계되는 것이지, 도둑질하는 자의 마음에 본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니, 장물의 다소를 계산하지 말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은(鄭垠)·김극유(金克忸)는 의논하기를,

"절도(竊盜) 3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율문에 상법(常法)으로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도둑이 점점 극성하기에 특별히 재범(再犯)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세워서 일시적인 폐단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장물의 관(貫) 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다 사형에 처한다면 호생(好生)의 덕(德)에 어긋남이 있으니, 장물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기를,

"절도 3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에 실려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여 온 지가 또한 오래인데, 요즈음 도둑이 점점 극성하므로 시폐(時弊)를 막고자 하여 장물의 관(貫) 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재범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호생(好生)의 덕(德)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하물며 형벌이 어떤 세대에서는 가볍게 되기도 하고 어떤 세대에서는 무겁게 되기도 하여 형벌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중국의 법을 쓰고 있으므로 시폐(時弊)를 막기 위한 임시 편법을 가지고 만세의 법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문에 따라 3범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이제 만일 가볍게 고칠 수 없다면 모름지기 재범에서는 장물의 다소를 계산해서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소서."

하고, 김유(金紐)·안관후(安寬厚)·최반(崔潘)·안선(安璿)·이세광(李世匡)·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1전(錢)을 훔친 것 따위는 비록 재범이라도 장물이 지극히 적고, 남에게 해를 입힌 것도 적으며, 또 사람마다 범하기 쉬운 일이므로, 비록 아침에 죽이고 저녁에 죽인다고 해도 역시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재범으로서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서 총액 10관 이상인 자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 광릉(光陵)의 사토(莎土)가 해마다 무너지는 것을 견고하게 수축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정창손·한명회·심회·윤사흔·김국광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능실(陵室)은 모두 안에는 석실(石室)을 만들고 밖에는 대석(臺石)을 두게 한 것이 실로 만세의 영구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조(世祖)께서 유교(遺敎)로 석실과 대석을 금하신 것은 검소한 덕

을 숭상하도록 하신 소이(所以)이므로, 이는 영구한 계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훗날 신서(臣庶)들의 분묘(墳墓)와 구별이 없게 될 것이니,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능 위가 무너지는 까닭은 오로지 석회(石灰)·세사(細沙)·황토(黃土)의 삼물(三物)로 딴딴하게 쌓아 놓아서 잔디뿌리가 깊이 뻗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니, 이제 마땅히 삼물을 좀 얕게 깍아 내리고 황토를 두껍게 쌓은 연후에 사토(莎土)로 덮으면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가 얽혀서 붕괴(崩壞)될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삼물을 깎아 버린다 해도 빗물이 스며들 까닭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옛날에 제왕(帝王)의 능실은 다 구릉(丘陵)처럼 만들어서 거의 한 길이나 되게 하였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세조께서 이런 형편을 깊이 생각하셔서 사대(莎臺)와 석실(石室)을 버리고 다만 토릉(土陵)을 만들게 하셨으니, 이는 만세(萬世)의 계책이며, 또한 검소를 숭상하는 아름다운 뜻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능을 만드는 사람이 삼물(三物)로써 단단하게 쌓고 사토(莎土)를 입혔기 때문에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자연지세(自然之勢)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삼물을 조금 깎아내고 흙을 두껍게 덮어서 너무 높지만 않게 하면 거의 옛 제도에 맞고, 무너질 염려도 없을 것이며, 또한 유교(遺敎)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김극배(金克培)·홍응(洪應)·강희맹(姜希孟)·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이극증(李克增)·**양성지(梁誠之)**·어세공(魚世恭)·윤흠(尹欽)·윤계겸(尹繼謙)·이승소(李承召)·신정(申瀞)·유지(柳輊)·신준(申浚)·고태필(高台弼)·김순명(金順命)·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기를,

"광릉(光陵)의 사토가 해마다 무너진 것은 능히 지형(地形)이 높고 가파른데다가 안에 삼물이 견고하게 높이 쌓여 있어서 밖에 쌓은 사토가 잘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비[霾雨]가 스며들면 쉽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지형이 높고 가파르면 무너지기가 쉽고, 그 터가 넓고 두터우면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삼물을 깎아 내고 사토를 쌓아서 그 터는 넓게 하고 위는 높고 가파르지 않도록 하면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석실(石室)과 사대석(莎臺石)을 쓰지 말라는 유교(遺敎)가 매우 엄하여 광릉(光陵)뿐만 아니라 영릉(英陵)·창릉(昌陵)공릉(恭陵)·순릉(順陵)등의 여러 능도 다 그러하니, 이제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강자평(姜子平)·박양신(朴良信)·김극유(金克忸)·정은(鄭垠)·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세조(世祖)께서 평일(平日)에 사대석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셨고, 예종(睿宗)께서 그 유교(遺敎)를 이어받았는데,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또 능침(陵寢)을 모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와서 대석(臺石)을 설치한다는 것은 마음에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능침의 형태가 높고 가파르니, 점점

이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난간석(欄干石)을 그만두고 축토(築土)를 더하여 능의 형태를 비스듬히 비탈지게 하여 영구(永久)히 유지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유(金紐)·안관후(安寬厚)·최반(崔潘)·안선(安璿)·이세광(李世匡)·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광릉의 사토가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은 삼물(三物)의 혼합(混合)이 돌덩이같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 지세(地勢)가 또한 높고 가파라서 잔디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니, 이제 만일 그 위를 깎아내어 좀 얕게 하고 그 터를 늘려서 쌓는다면 영구히 견고하게 되어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도(神道)는 고요함[靜]을 숭상하니, 능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만세(萬世)·영구(永久)의 계책이라면 잠시 이안(移安)하더라도 아무런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손(鄭昌孫)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9 집 632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왕실-궁관(宮官) / *건설-건축(建築)

《 성종 095 09/08/06(을미) / 사복시에 효령 대군 · 밀성군 등의 종친과 신하들에게 말 1필씩을 내리게 명하다 》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여,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玹)·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보성군(寶城君) 이합(李合)·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영원군(寧源君) 이예(李澧)·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강양군(江陽君) 이융(李濈)·춘성군(春城君) 이당(李讜)·화성군(花城君) 이심(李諶)·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부원군(富源君) 이진(李鎭)·환성군(歡城君) 이징(李澄)·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崢)·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청안군(淸安君) 이영(李嶸)·회원군(會原君) 이쟁(李崢)·축산군(竺山君) 이효식(李孝植)·연성군(蓮城君) 이직(李稷)·의천군(義泉君) 이승은(李承恩)·시안군(始安君) 이탁(李擢)·아림군(娥林君) 이정(李楨)·호산군(湖山君) 이현(李鉉)·부림군(富林君) 이식(李湜)·유성군(儒城君) 이임(李任)·수안군(遂安君) 이당(李讜)·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곡성군(鵠城君) 이금손(李金孫)·귀산군(龜山君) 이계남(李繼男)·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금산군(金山君) 이연(李衍)·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영춘군(永春君) 이인(李仁)·봉성군(鳳城君) 이이(李頤)·제천군(堤川君) 이온(李溫), 의빈(儀賓) 정현조

(鄭顯祖)·홍상(洪常)·임광재(任光載)·강자순(姜子順)·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김수온(金守溫)·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김개(金漑)·황치신(黃致身)·한계희(韓繼禧)·이극배(李克培)·홍응(洪應)·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허종(許琮)·박중선(朴仲善)·유수(柳洙)·민발(閔發)·어유소(魚有沼)·권감(權瑊)·이훈(李塤)·성임(成任)·조득림(趙得琳)·신운(申雲)·이몽가(李蒙哥)·선형(宣炯)·정효상(鄭孝常)·이극증(李克增)·한계순(韓繼純)·한치례(韓致禮)·**양성지(梁誠之)**·강곤(康袞)·어세공(魚世恭)·윤흠(尹欽)·박거겸(朴居謙)·최적(崔適)·이승소(李承召)·임자번(林自蕃)·윤계겸(尹繼謙)·구수영(具壽永)·한보(韓堡)·구문신(具文信)·유서(柳溆)·박숙선(朴叔善)·안중경(安仲敬)·이극균(李克均)·신정(申瀞)·유지(柳輊)·이존명(李存命)·신준(申浚)·홍익성(洪益誠)·낭삼파(浪三波)·김상미(金尙美)·이주(李珠)·김견수(金堅壽)·윤말손(尹末孫)·이흠석(李欽石)·조한신(曹漢臣)·유한(柳漢)·한의(韓嶬)·서경생(徐敬生)·구겸(具謙)·구치홍(具致洪)·하숙부(河叔溥)·김서형(金瑞衡)·김계정(金繼貞)·이양생(李陽生)·박치(朴埴)·맹석흠(孟碩欽)·김유(金紐)·윤호(尹壕)·박성손(朴星孫)·여의보(呂義輔)·손순효(孫舜孝)·박숙진(朴叔蓁)·홍귀달(洪貴達)·김승경(金升卿)·이경동(李瓊仝)·김계창(金季昌)·유순(柳洵)·이득수(李得壽)·김녹(金祿) 등에게 각각 아마(兒馬) 한 필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원전】 9 집 63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성종 096 09/09/06(갑자) / 육조와 주요 관직의 관원을 불러 주계 부정 심원이 조부에 불손한 죄를 논하게 하다 》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자와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종친부(宗親府)의 2품 이상, 충훈부(忠勳府)의 1품, 한성부(漢城府)·육조(六曹)의 당상관,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 등을 불러서, 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이 조부(祖父)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보성군(寶城君) 이함(李含)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심원(深源)이 조부(祖父)를 향하여 한 말이 방자하고 패역하여 무례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조부를 꾸짖은 말은 없으니, 조부를 꾸짖은 율(律)에 비추어서 극형(極刑)에 처하는 것은 과(過)할 듯합니다. 사형(死刑)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심원의 죄상은 율(律)에 바른 조문(條文)이 없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서 할 수 없이 조부를 꾸짖

은 율(律)에 견주었으니, 중(重)할 듯합니다. 또 임금의 친족에게는 응의(應議)의 예(例)가 있으니,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瓚)·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능욕(陵辱)한 죄는 율(律)에 살펴보면 죽여야 마땅하나 보성군이 고한 것은 까닭이 있어 행한 것이니, 극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박중선(朴仲善)·민발(閔發)·윤계겸(尹繼謙)·강양군(江陽君) 이융(李融)·봉성군(鳳城君) 이이(李俁)·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의천군(義泉君) 이승은(李承恩)·수안군(遂安君) 이당(李讜)·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정은(鄭垠)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심원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다만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므로 사정이 의심스러우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권감(權瑊)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의 죄가 진실로 커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니, 속적(屬籍)을 박탈하고 먼 지방에 유배시켜 종신토록 금고(禁錮)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유수(柳洙)·**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에게 방자하고 패역함이 막심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강희맹(姜希孟)·신정(申瀞)·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부자(父子)·조손(祖孫)은 천속(天屬)이므로 하나라도 범함이 있으면 죄를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사이에는 혹시 애매한 일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까닭에 대순(大舜)은 아들이 되어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고 윤길보(尹吉甫)는 아비가 되어 봉상(蜂裳)의 참소(讒訴)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그만 못한 자이겠습니까? 보성군이 심원의 불효(不孝)를 고한 것은 처음에 임사홍(任士洪)의 일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조부와 손자 사이에 분함이 쌓인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있어서 만일 <손자의>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꾸짖는 것도 좋고 매를 때리는 것도 좋으며, 남에게 죄를 지어서 집안의 잘못이 밖에 드러나면 은혜가 항상 의(義)을 덮어서 곡진히 비호(庇護)하는 것은 필부(匹夫)라도 오히려 알 것인데, 하물며 보성군은 종친으로서 어찌 이를 모르고서 감히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격(激)한 바가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그대로 따라 심원을 중한 법에 처하면 일의 대체(大體)를 잃을까 두려우며, 만약 조부와 손자가 서로 송사하여 실정을 밝히면 손상됨이 더욱 클 것입니다. 또 심원을 온전

히 석방한다면 죄상을 귀결지은 바가 없으니, 자손이 교령(敎令)을 위반한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어세공(魚世恭)·박양신(朴良信)·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꾸짖고 욕한 것 같지는 아니하나, 진실로 교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순명(金順命)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순종하지 아니한 일은 애매한 듯한데 일체 율문(律文)에 의하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조부와 손자 사이로서 여기에 이르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으니,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증(李克增)·윤흠(尹欽)·강자평(姜子平)은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종친(宗親)이 범한 것은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신준(申浚)·고태필(高台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인륜(人倫)의 변(變)을 당하여 능히 잘 처리하지 못하고 조부에게 격노(激怒)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한 말을 보건대, 그 공손하지 못한 말은 직접 조부를 가리켜서 한 것이 아니니, 꾸짖고 욕한 율로 단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고, 김유(金紐)·안관후(安寬厚)·임수경(林秀卿)·안처량(安處良)·최반(崔潘)·안선(安璿)·이세광(李世匡)·윤희손(尹喜孫)·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향하여 한 말이 불손(不遜)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합)이 심원에 대하여 임사홍의 연고로써 몹시 미워하였으므로, 이제 심원의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장고(狀告)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처리하면 사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한계희(韓繼禧)·이승소(李承召)·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합에게 대하여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어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말이 오고 가는 데에 방자하게 다투었을 뿐입니다. 또 그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율(律)에 의친(義親)의 조문이 있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하숙부(河叔溥)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이 조부를 꾸짖은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춘경(金春卿)·경준(慶俊)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능욕한 죄는 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하나, 보성군이 고한 것은 까닭이 있어 말한

것이므로 극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현(成俔)·이형원(李亨元)·김응기(金應箕)는 의논하기를,

"보성군 합이 심원과 화목하지 아니함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이므로, 이제 고한 일을 하나하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을 드러내어 말한 것은 꾸짖고 욕하는 데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위의 율(律)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 노릇을 못할지라도 아들은 아들 노릇을 아니할 수 없으니, 심원은 죄가 없지 아니합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성담년(成聃年)은 의논하기를,

"합이 작은 분함으로 인하여 그 손자를 죽을 곳에 빠뜨리니, 이는 인정(人情)으로 차마 못할 바이며, 심원도 성의(誠意)로써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조부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또한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의리(義理)로써 타일러 그 마음에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흔(金訢)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전일에 그 숙모부(叔母夫) 임사홍을 논핵(論劾)하였으니, 진실로 한 집안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논핵한 것은 공(公)에 따르고 사(私)를 잊으며 마음을 왕실(王室)에 두고 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비록 중도(中道)는 아니라 하더라도 뜻은 숭상할 만합니다. 합이 심원을 비록 골육(骨肉)으로 볼지라도 친자녀에 비하면 사이가 있는데, 심원의 연고로써 친사위가 멀리 귀양가는 데에 이르렀으니, 심원을 미워하여 죄에 빠뜨려서 해치고자 함이 매우 뚜렷합니다. 이제 만약 상례(常例)에 구애되어 순종하지 아니한 율(律)에 처하면, 위로는 골육(骨肉)의 은혜를 상하게 하고 아래로는 충직(忠直)한 기운을 저해하여 이륜(彝倫)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언로(言路)가 혹시 막히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합을 불러서 심원의 허물은 용서할 만하고 골육(骨肉)의 은혜는 서로 해칠 수 없다는 것으로써 타이르고, 다음은 심원을 석방하여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감히 미워하고 원망하지 못하는 의리를 힘쓰게 하여서, 조부를 위하고 손자를 위하여 다시 처음과 같이 되게 하여 이륜(彝倫)을 두터이하고 언로(言路)를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소사석(蘇斯碩)·서팽소(徐彭召)·민효증(閔孝曾)·최진(崔瑨)·민사건(閔師騫)·홍형(洪泂)·이균(李均)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진실로 <그 조부를> 능욕하였다면, 그 죄는 마땅히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科)할 것이나, 다만 그 고장(告狀)은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고 말한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한 것은 비록 심원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말이므로,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부가 친히 고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법에 처하면 사정이 애매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이우보(李祐甫)·안침(安琛)·권경우(權慶祐)·유호인(兪好仁)·안윤손(安潤孫)·김수동(金壽童)은 의

논하기를,

"아비는 아들에게 있어서 한 몸이 나누어진 것이라 그 사랑하고 기르는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과 생물이 모두 같습니다. 무릇 매[鷹]와 송골매[전]는 사나운 새이고, 표범과 호랑이는 사나운 짐승이며, 뱀과 살무사[虺]는 독(毒)이 있는 생물인데도 오히려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차마 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어찌 천성(天性)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舜)임금은 큰 성인(聖人)인데도 <아비인> 고수(瞽瞍)가 날마다 순을 죽이기를 일삼았고, 백기(伯奇) 역시 효자(孝子)인데도 오히려 그 아비에게서 사랑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남이 매와 송골매, 표범과 호랑이, 뱀과 살무사보다도 못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심원은 합에게 손자인데도 합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형상을 고하였으니, 모르는 이는 말하기를, '심원이 과연 죄가 있는 것이다. 어찌 조부로서 그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겠느냐?'고 할 것이나,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원이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 이 학생(學生) 가운데 뜻이 있는 자와 더불어 《소학(小學)》의 도(道)를 연구하였는데, 그때에 심원을 우원(迂遠)하다고 하여 모두 비웃어서 신충(宸聰)에 상달되는 데에 이르렀으니, 사람됨이 비록 세상 물정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일로써 볼 때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자가 아님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심원이 임원준(任元濬)·임사홍(任士洪) 등의 간사한 형상을 극진히 진술하였는데, 임사홍은 합의 사위이며, 심원에게는 숙부(叔父)입니다. 합의 마음에는 조카가 고모부의 일을 논핵하였으니 인정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여서 드디어 깊이 미워하게 된 것이고, 성상께서 심원과 임원준을 대궐의 뜰에 불러다 놓고 대질(對質)시킴에 미쳐서는 합이 증거를 만들어서 그 손자와 더불어 서로 변명하고자 하여 임사홍을 위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신 등이 그때에도 임원준의 일에 관여되어 대궐의 뜰에 이르러, 합의 소위를 보고 그가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상께서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변하여 임원준 부자를 죄주고 심원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아니하자, 합의 노여워함이 이에 더욱 깊어져서 심원을 손자로 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해치기를 생각하였으나 그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친족(親族)이 모이는 날에 능욕(陵辱)하고 횡역(橫逆)하였다고 핑계대어 심원에게 죄를 얽어서 조정에 포고하여 기어이 골육(骨肉)을 해친 뒤에야 그만 두고자 하니, 어찌 천리(天理)와 인도(人道)의 큰 변(變)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최(李璀)는 그 아비 이회광(李懷光)이 반역하려는 죄를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고하였고, 석작(石碏)은 그 아들 석후(石厚)가 임금을 죽인 악함을 진(陳)나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이회광과 석후는 모두 사형을 당하였는데, 전사(前史)에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일이 국가의 대체에 관계가 있으면 아들도 그 아비를 덮어줄 수 없고, 아비도 그 아들을 덮어줄 수 없는데, 심원이 임사홍을 논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령 심원이 친족이 모인 날에 어버이에게 사랑을

얻지 못한 것을 민망히 여겨서 끌어낼 때를 당하여 혹시 박절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비에게 세 번 간(諫)하여 듣지 아니하면 울부짖으면서 따라다니는 것인데, 손자가 조부에게 울부짖으며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합이 심원을 고발한 것은 임사홍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 데에 불과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합을 죄주고자 하면 손자의 연고로써 죄가 조부에게 미치는 것이고, 심원을 죄주고자 하면 간사한 사람의 연고로써 죄가 말한 자에게 미치는 것이니, 모두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합과 심원을 모두 대궐 뜰에 불러 놓고, 합에게는 손자를 사랑하는 도리로 타이르고 심원에게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타일러서, 둘 다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니 한결같지 아니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성군(寶城君)과 주계 부정(朱溪副正)을 동시에 불러 놓고 잘못된 이유를 깨우쳐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천륜(天倫)을 온전히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계 부정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려고 하는데,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가부(可否)를 헤아려서 다시 의논해 아뢰라."

하니, 고태필(高台弼)·이우보(李祐甫)·안침(安琛)·안선(安璿)·이세광(李世匡)·윤희손(君喜孫)·유인호(柳仁濠)·권경우(權景祐)·김흔(金訢)·성담년(成聃年)·유호인(兪好仁)·소사석(蘇斯軾)·서팽소(徐彭召)·민효증(閔孝曾)·최진(崔璡)·민사건(閔師騫)·홍형(洪泂)·이균(李均)·안윤손(安潤孫)·김수동(金壽童)은 아뢰기를,

"두 사람을 깨우쳐 타일러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정창손(鄭昌孫) 등은 아뢰기를,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일은 바른 것이 귀중한데, 보성군이 주계를 고발한 것은 오로지 임사홍의 일로 인하여 행한 것이니, 일이 바르지 못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성군을 불러서 조부와 손자의 의리로 타이르고 주계를 석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조부와 손자의 사이는 천륜(天倫)이 지극히 중하니, 조부가 비록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손자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심원이 조부에게 한 말이 이치에 어긋나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직첩(職牒)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원전】 9 집 648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왕실-종친(宗親)

《 성종 097 09/10/03(신묘) / 한명회가 덕종의 능실에 돌난간과 담장 설치를 건의하다 》

이보다 먼저 한명회(韓明澮)가 계책을 말하기를,

"덕종(德宗)의 능실(陵室)의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돌난간[石欄干]과 담장[欄墻]을 설치하소서."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가부(可否)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심회(沈澮)·파천 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우찬성(右贊成) 어유소(魚有沼)·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공(魚世恭)·이조 참판(吏曹參判) 신정(申瀞)·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식명(金碩命)·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왕(王)으로 추존(追尊)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궐전(闕典)입니다.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에 의하여 돌난간과 잡상(雜象)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필상(尹弼商)·좌찬성(左贊成) 홍응(洪應)·좌참찬(左參贊)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의물(儀物)은 마땅히 배설(排設)해야 할 것이나 신도(神道)는 고요함을 숭상하니, 능실(陵室) 근처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전일의 의지(懿旨)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숭원(李崇元)·형조 판서(刑曹判書) 윤계겸(尹繼謙)·형조 참판(刑曹參判) 하숙부(河叔溥)는 의논하기를,

"경릉(敬陵)의 의물(儀物)은 예법(禮法)에 있어서 갖추 설치해야 마땅한데, 구릉(舊陵)에 뒤미쳐서 설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기(拘忌)하는 말이니, 진실로 족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다만 당초에 의지(懿旨)로써 특별히 설치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이제 다시 품지(稟旨)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이극기(李克基)·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집의(執義) 김춘경(金春卿)·사간(司諫) 경준(慶俊), 장령(掌令) 임수경(林秀卿)·안처량(安處良), 헌납(獻納) 최반(崔潘)·지평(持平) 안선(安璿), 정언(正言) 윤희손(尹喜孫)·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이미 고명(誥命)을 받아 왕(王)으로 추봉(追封)하였으니, 능실(陵室)의 의물(儀物)은 일체 선왕(先王)의 제도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이 이어서 경인년의 의지(懿旨)를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내가 이제 대비(大妃)께 다시 품(稟)하니, 대비께서 더 설치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자,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목조(穆朝)·익조(翼朝)·도조(度朝)·환조(桓朝)는 추숭(追崇)한 뒤에 능침의 의상(儀像)을 모두 뒤미쳐서 설치하였으니, 청컨대 조종조(祖宗朝)의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9 집 654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예술-미술(美術)

《 성종 097 09/10/13(신축) / 공조 판서 양성지가 《오례의》의 병기 도설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반포하기를 청하다 》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였는데, 이르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제주(濟州)는 옛 탐라국(耽羅國)입니다. 지방이 1백리 이며 바다 밖에 멀리 있는데, 신라(新羅) 때에 비로소 내조(來朝)하였고, 고려(高麗)에 이르러서 나라를 없애고 현(縣)으로 만들었으며, 그 인구의 번성함과 산물의 풍부함은 내지(內地)에 있는 고을의 갑절입니다. 그러나 신이 보건대 역대(歷代)에 변고(變故)가 잇따라서 떨어졌다 합쳤다 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으며, 원(元)나라에서 목장(牧場)을 설치하자 이로부터 말[馬]이 크게 번식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 고을을 설치함에 미쳐서 그 권세를 나누고 그 자제(子弟)를 등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진압시켰으니, 열성(列聖)께서 먼 지방의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적당하였다고 이를 만합니다. 엎드려 듣건대 지난 가을에 왜선(倭船)이 고을의 경내에 와서 머무르자, 이에 왜국(倭國) 말을 아는 자를 보내어 후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는 대마도(對馬島)의 여러 섬과 더불어 바다 위에 같이 있어 동서(東西)로 서로 바라보면서도 언어가 각각 다르니, 오히려 가하다고 이를 것입니다. 만약 말이 서로 통하면 이는 마치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으므로, 후일의 변(變)을 글로 다 쓸 수 없을 것

입니다. 하물며 요즘 또 의심스러운 자취가 많이 있는데, 대우하기를 적당하게 하면 통역이 없을지라도 불가함이 없을 것이며, 만약 적당하게 하지 못하면 통역이 있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헤아리건대 이제 통사(通事)의 행차가 아직 저쪽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모름지기 역마(驛馬)를 급히 달려서 그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고 왜(倭)와 가깝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왜말을 익혀서 알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화포(火砲)는 군국(軍國)의 비밀한 무기인데, 고려(高麗)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비로소 원(元)나라에 들어가 배웠고, 명(明)나라 초(初)에 고황제(高皇帝)가 왜(倭)를 방어하라고 하사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서는 《총통등록(銃筒謄錄)》이 사가(私家)에 퍼져 있는 것을 모두 내부(內府)에 거두어들였는데, 그 뒤에 군기감(軍器監) 바깥 동쪽 문루(門樓)에 21건(件)을 간직하고 춘추관(春秋館)에 1건을 간직하였으니, 생각이 또한 주밀(周密)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삼가 《오례의(五禮儀)》를 보건대 화포(火砲)를 만드는 법의 척·촌·푼·리(尺寸分釐)를 숨김없이 자세히 써서 중외(中外)에 인쇄 반포하여 온 나라에 두루 퍼졌는데, 만일 간사한 자가 기화(奇貨)로 삼아서 왜적(倭賊)에게 팔면, 그것이 동남쪽 지방의 화(禍)가 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예조(禮曹)에 명하여 내외(內外)의 관청과 사가(私家)에 있는 《오례의》를 모두 거두어들이게 하여, 병기 도설(兵器圖說)이라고 이르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다시 반포하며, 또 총통(銃筒)의 제도는 1건만 남겨서 어소(御所)에 간직하고 그 나머지는 세 사고(史庫), 동문루(東門樓), 실록각(實錄閣)에 모두 언자(諺字)로 써서 각각 한 건씩 간직하며, '신견봉(臣堅封)'이라고 써서 전교를 받아 열고 닫게 할 것입니다. 군기시(軍器寺)에 있는 한 건 역시 언자(諺字)로 써서 제조(提調)가 친히 봉(封)하고, 전일에 한자(漢字)로 쓴 것은 죄다 불태워서 없애게 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을 삼는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655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 성종 099 09/12/22(기유) / 영의정 정창손 등의 대신들과 중국에서 청구한 일을 의논하다 》

중국에서 청구한 일을 의논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심회(沈澮)·우의정(右議政) 윤필상(尹弼商)·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응(洪應)·좌찬성(左贊成) 한계희(韓繼禧)·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강희맹(姜希孟)·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선(朴仲善)·우찬성(右贊成) 어유소(魚有沼)·우참찬(右參贊) 이극증

(李克增)·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공(魚世恭)·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형조 판서(刑曹判書) 윤계겸(尹繼謙)·공조 참판(工曹參判) 신정(申瀞)·호조 참판(戶曹參判) 신준(申浚)·이조 참판(吏曹參判) 박숙진(朴叔蓁)·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순명(金順命)이 의논하기를,

"별례(別例)로 진헌(進獻)하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 아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전에 이미 장만하여 바쳤으므로 이제 면제하여 달라고 청하기 어려우니, 우선 토산물로 장만하여 바치되,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면 물목 단자(物目單子)에 나지 않는다는 사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 등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역로(驛路)의 폐단을 아뢰려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대답하기를,

"구실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우리 나라 역로의 폐단을 면하게 하여 달라고 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원전】 9 집 683 면

【분류】 *외교-명(明)

성종 10년 《 양성지 - 성종 10년 .... 7 건 》

성종 103 10/04/26(임자) / 대사간 성현이 경연에서 양성지와 신정을 탄핵하다
성종 103 10/04/29(을묘) / 대사간 성현 등이 양성지와 신정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다
성종 104 10/05/01(병진) / 사간원에서 올린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안을 정승들과 의논키로 하다
성종 104 10/05/01(병진) / 정승들과 의논하여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다
성종 104 10/05/04(기미) / 공조 판서 양성지의 사직을 불허하다
성종 104 10/05/05(경신) / 여러 대신들에게 양성지와 신정의 인품에 대해 의논케 하다
성종 104 10/05/25(경진) / 함우치·양성지·이칠견·유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성종 103 10/04/26(임자) / 대사간 성현이 경연에서 양성지와 신정을 탄핵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다가, 대사간(大司諫) 성현(成俔)이 아뢰기를,

"이 책에서는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정상(情狀)을 극진하게 형용(形容)하여 말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조정(朝廷)이 잘 다스려져 평온하므로, 소위 소인(小人)이라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말하기를, '공공(工共)·환도(驩兜)가 요(堯)임금 때에도 섞여 살았으니, 소인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삼공(三公)은 도(道)를 논하고, 육경(六卿)은 직책을 나누어 맡았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예전의 육경은 바로 지금의 육조(六曹)인데, <그 가운데> 공조(工曹)는 비록 중요한 직분을 갖는 직임(職任)은 아니지만, 영건(營建)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자는 있을 바가 못됩니다.

신정(申瀞)은 탐욕(貪慾)이 끝이 없어서, 전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었을 때 대간(臺諫)이 그 탐욕함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지(梁誠之)**는 청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한 가지 재능도 없으면서 일찍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탄핵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갈려서 제수된 지 2년이 넘었으니, 공조는 백공(百工)이 모이는 바인데, 두 사람의 탐욕으로 무엇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파직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말한 바는 반드시 공의(公議)일 것이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탐욕한 일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체임시키겠는가? 보고 들은 일이 있지 않은가?"

하였다. 성현이 대답하기를,

"두 사람의 탐욕은 신만 아는 것이 아니니, 승지(承旨)·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장령(掌令)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대간이 신정(申瀞)의 탐욕함을 극진하게 논하여서 드디어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체임되었고,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이 되었을 때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말발굽에 철(鐵)을 대고 돗자리에 비단을 둘렀다.'는 등의 말을 가지고 탄핵하여 아뢰어서 파직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청렴하지 않음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현저한 바입니다."

하고,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말하기를,

"성현이 들은 바가 없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논박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숭원(李崇元)이 아뢰기를,

"물의(物議)가 과연 있었으나, 무슨 일이 탐욕하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보고 들은 일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니, 안처량이 아뢰기를,

"진실로 들은 바가 있어서 마땅히 직언(直言)하고 숨기지 않았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대간을 맡고 있는 자들은 모두 어질어서 말하는 바가 반드시 정직하겠지만, 훗날 대간이 적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말을 왜곡되게 따른다면 폐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물며 한 가지 일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관작을 파면하겠는가?"

하니, 심회가 말하기를,

"전하의 이 말씀은 천만세에 본받을 만합니다."

하였다. 성현이 아뢰기를,

"신정은 외방의 고을에 서신을 보내어 일마다 간청하였고, 소인배들이 그 문전을 둘러싸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또 양성지는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가 되어 전교서의 종[奴]을 자기 집에서 부렸으니, 이것들은 모두 청렴하지 않은 자의 소위입니다. 두 사람은 공신(功臣)인데, 지금 체임하지 않고 있다가 훗날 탐욕스럽고 법을 어긴 일이 드러난다면, 전하께서 반드시 보전(保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자, 안처량이 아뢰기를,

"제조(提調)는 구임(久任)시키면 관사 안의 일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불법(不法)한 일을 많이 행하

고, 노예(奴隷)들이 또한 <집안에> 출입(出入)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혹 청하기까지 하니, 구임(久任)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원전】 10 집 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신분-천인(賤人)

《 성종 103 10/04/29(을묘) / 대사간 성현 등이 양성지와 신정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다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현(成俔)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신하를 다루는 도리는 간사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데에 있으니, 올바른 신하는 마땅히 친애하여 가까이하고, 간사한 신하는 마땅히 소외하여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외(中外)의 백성들도 모두 이로써 조정을 살펴보는 것이니, 올바른 신하들이 조정에 모이면 간사하고 교활함이 아울러 그치게 되고, 간사한 신하들이 조정에 모이면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다투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간사하고 올바르다고 하는가 하면, 깊이 계획하고 멀리 생각하여 광대한 덕화(德化)를 돕거나, 충성스러운 말이나 곧은 논의로 임금의 직책을 돕거나, 청렴하고 근면하여 스스로 조심하여서 그 절개를 지키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는 군자(君子)가 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만을 일삼아 그 가옥을 윤택하게 하거나, 공의(公議)를 저버리고 불공평하게 하여 그 자신을 넉넉하게 하거나, 간사하게 아첨하여 그 욕심에 따르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는 소인(小人)이 되는 것이니, 그 옳고 그름과 간사하고 올바름과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어질고 현명한 임금은 관직을 설치하여 반드시 인재를 택해서 임용하였고, 여러 관원과 모든 집사자(執事者)도 변함 없는 덕(德)을 가진 좋은 사람을 쓰지 않은 바가 없었는데, 더구나 삼공(三公)·육경(六卿)으로서 그 임금을 돕는 자이겠습니까? 대저 삼공은 도(道)를 논하고 육경은 직책을 나누어 맡아서 그 교화(敎化)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기로는 삼공만한 것이 없고, 책임이 중하기로는 육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육조(六曹)는 바로 예전의 육경(六卿)으로, 임금이 예의에 맞는 태도로써 존경하는 바이고, 모든 관료가 본받으며 만민이 우러러보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조(工曹)는 재용(財用)을 맡은

부(府)로서 여러 공장(工匠)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소속되어 있는 공장이 무려 수백여 명인데, 진실로 탐욕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도둑질한다면 사사로운 산업(産業)을 영위하면서 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양성지(梁誠之)**가 판서(判書)가 되고 신정(申瀞)이 참판(參判)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직책에 알맞아서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합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신정(申瀞)은 본래 일개 간사한 소인(小人)으로서 변변치 못하고 무능(無能)하니, 그 마음으로 말하면 거리의 불량배나 다름없고, 그 재주로 말하면 보잘 것이 없으며, 교제하는 바는 모두 장사아치들이고, 일삼는 바는 모두 흥정하여 매매하는 일이어서, 여러 소인배들과 떼를 지어 서로 붙어다니며, 온갖 수단으로 이득을 살펴 수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면서도, 작은 이익에 악착스럽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끝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몰락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능히 때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양성지(梁誠之)**는 그 마음이 고루(固陋)하여 취(取)할 바가 없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맡으면 어리석어 어찌할 줄 모르므로 낭관(郎官)과 서리(胥吏)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합니다. 계교는 신정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자질구레한 탐욕은 신정보다 덜하지 않으니, 말발굽에 철(鐵)을 대었다는 비난이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속일 수야 있겠습니까? 벼슬자리에 오른 지 30여 년이 되었고, 현재의 나이가 60이 이미 넘었는데도 여진여퇴(旅進旅退)하고 환득환실(患得患失)하며, 한 가지도 나라에 보탬이 없으니, 그 시위 소찬(尸位素餐)함이 또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소인(小人)이며 취렴(聚斂)하는 신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명(聖明)의 세대에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경연(經筵)에서 신(臣) 성현(成俔)이 친히 그 일을 아뢰었더니, 전교하기를, '죄상이 뚜렷하지 않은 자는 탄핵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으므로, 신 등은 의문이 갑니다.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허명(虛名)을 드러낸 것이 사람들의 입으로 퍼진 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높은 관료들은 서로 다투어 비방하고 조소하며, 정의로운 사람들은 분개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대개 같은 반열에 있는 재상(宰相)들은 오랫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므로 그릇됨을 알면서도 괴로움을 참아가며 발설하지 못하지만, 아랫사람들 가운데 경개(耿介)한 자에 이르러서는 어찌 바른 말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이것을 승정원(承政院)에 묻는다면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대신(臺臣)·사관(史官)·관각(館閣)의 여러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더라도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는 신 등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람들의 공론(公論)입니다. 지난번에 **양성지(梁誠之)**가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었다가 대간(臺諫)의 말로써 체임(遞任)되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고, 신정(申瀞)이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가 대신(臺臣)의 상주(上奏)로써 체임되었으니, 이 역시 전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므로, 그 때에 중외(中外)에서 기뻐하며 전하의 현명한 판단에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양성지는 <공조(工曹)의> 판서(判書)로 발탁되고, 신정도 참판(參判)으로 천직(遷職)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인자하심으로써 차마 갑자기 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 양성지는 이미 2년이 넘었고, 신정도 1년을 넘었으니,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는데도, 그대로 두고서 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박을 한 것은 다만 뛰어올려 발탁하는 자료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의 밝은 예지(睿智)로써 아랫사람의 간사하고 정직함을 남김없이 환하게 알고 계실 터인데, 신정이 어찌 순수하고 근실하며 단아(端雅)한 선비이겠으며, 양성지가 어찌 공명정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어진 공경 대부(公卿大夫)가 조정의 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민하고 준수한 선비가 아래에서 반열(班列)을 이루고 있어, 비록 공훈이나 덕(德)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도 서반(西班) 천품(賤品)의 관직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그 재주에 맞을 만큼 관작(官爵)을 내리지 못하고, 그 노고에 보답할 만큼 녹봉(祿俸)을 못주는 형편인데, 어리석고 용렬한 무리가 오랫동안 어진 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앉아서 천록(天祿)을 소모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 등의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또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 가운데 혹 취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훗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인자하고 측연하게 여기는 지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홀로 그 일을 아뢴다면 혹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고, 의논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며, 탄핵하는 자가 하나가 아닌데, 어찌 훗날의 폐단을 염려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탐욕함이 풍조를 이루어 염치(廉恥)의 도의가 없어지고, 조정의 사대부(士大夫)가 청요직(淸要職)을 차지하게 되면, 거의 모두 다투어 재물을 늘려서 산업(産業)의 밑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대부뿐만 아니라 거실(巨室)·대신(大臣)이라도 가난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게 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가 벼슬하려는 뜻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성주(聖主)께서 알면서도 물리치지 못하고, 대간(臺諫)이 말해도 움직이지 못하니, 저들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여, 장차 반드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피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 등의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양성지와 신정은 모두 공신(功臣)의 반열에 있으므로, 만일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서 법을 범한다면, 이는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와 송(宋)나라 태조(太祖)는 공신을 후하게 대우하면서도 일은 맡기지 않았으므로, 선유(先儒)들이 이를 본받을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에 가득한 재상(宰相) 가운데 공신이 반이나 되니, 한나라 광무제

와 송나라 태조의 소위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자에게 직임(職任)을 제수하여 발탁하는 뜻을 보이고, 올바르지 않은 자는 한직(閑職)에 두어 시종(始終)을 보전하는 은혜를 베푼다면, 사람들이 모두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허물을 뉘우치고 옳은 바를 따르게 될 것이므로, 한 사람을 상주어 천만인을 권(勸)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 천만인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탐욕스럽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고, 노련한 사람을 다시 임명한다면, 나라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에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의정부(議政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원전】 10 집 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역사-고사(故事)

《 성종 104 10/05/01(병진) / 사간원에서 올린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안을 정승들과 의논키로 하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임금이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

"어제 간원(諫院)의 상소(上疏)를 여러 정승에게 보였는데, 정승은 보았는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에서 **양성지(梁誠之)**와 신정(申瀞)을 탐욕스럽고 혼탁하며, 청렴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지마는, 대신(大臣)에게 아직 나타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외간(外間)의 물의(物議)를 가지고 이를 탄핵한다면 뒷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은 저들과 제배(儕輩:동료)가 아니므로 무슨 일이 청렴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간의 물의는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사경(司經)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송(宋)나라 때에 어떤 한 간신(諫臣)이 말로써 대신을 배척(排斥)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간관(諫官)을 주의(注擬)할 때에 반드시 사사로이 좋아하는 자를 간관이 되게 하여 자기의 우익(羽翼)을 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함에 따라 마침내 위태로운 풍속이 이루어졌으니, 진실로 편벽되

게 외부의 논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간(諫)하는 자도 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였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양성지는 성품이 본래부터 유약(懦弱)하여 능히 아랫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반드시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공조(工曹)의 장인(匠人)은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이니, 위엄이 있는 자가 아니면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위엄이 있는 자를 가려서 그 직책을 맡게 하소서."

하였고,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은 말하기를,

"신정은 재물이 누거만(累鉅萬)으로 부(富)가 일시(一時)에 극(極)했으니, 이(利)를 탐내어 속여서 얻은 자가 아니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장령(掌令) 안처량(安處良)은 말하기를,

"양성지는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로 있은 것이 거의 30년이었는데, 서책(書冊)을 잘 팔아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통진(通津)에는 일찍이 한 이랑의 전토(田土)도 없었는데, 지금은 크게 농장(農場)을 개설하였으니, 이 또한 이(利)를 꾀하여 경영한 소치(所致)입니다. 또 신정은 무릇 맡은 바 용무가 극히 정교(精巧)하나, 그가 더불어 사귀는 자는 모두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 또한 청렴하고 고요하게 근신(謹身)하는 자의 행위는 아닙니다."

하였고, 대사간(大司諫) 성현(成俔)은 말하기를,

"양성지는 그 자식을 위하여 관직을 구할 때에 반드시 수령(守令)으로 제수시켰으며, 일찍이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가 되었을 때에 그 관서(官署)의 종 박만(朴萬)을 여러 해 동안 부려먹기를 마치 그의 집 종[家隷]과 같이 한 바가 있었으니, 이러한 두어 가지 일로써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신정은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정원(政院)에 앉아서 종일(終日)토록 하는 바가 오직 구청(求請)하는 서간(書簡)만을 쓸 뿐이었습니다. 신정과 양성지는 모두 공신(功臣)의 반열(班列)에 있으니, 만약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법에 저촉이 되면 반드시 그 종말(終末)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이들을 한가한 직책에 두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보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여러 정승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원전】 10 집 1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공업-장인(匠人)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성종 104 10/05/01(병진) / 정승들과 의논하여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다 》

양성지(梁誠之)와 신정(申瀞)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한계희(韓繼禧)·이극증(李克增)·권감(權瑊)이 의논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감추어진 일을 애써 들추어내는 것은 진실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니, 그러한 버릇을 조장(助長)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성지 등이 만일 스스로 면(免)하기를 청한다면 가(可)하겠지마는 갑자기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논박(論駁)하는 것은 나도 옳지 않게 여긴다. 다만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전교서(典校署)의 장인(匠人)을 자기 집 종과 같이 부렸습니다.'고 하니, 이것은 문책할 만하다. 그것을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문관원(弘文館員) 최경지(崔敬止)·이우보(李祐甫)·권건(權健)·이세광(李世匡)·이창신(李昌臣)·성세명(成世明)·정광세(鄭光世)·조위(曹偉)·김응기(金應箕)·안윤손(安潤孫)·김수동(金壽童)은 의논하기를,

"간관(諫官)이 양성지와 신정을 논박한 것은 참으로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니, 바라건대 소장(疏章)에 의하여 결단해서 시행하소서."

하였고, 승지(承旨) 홍귀달(洪貴達)·김승경(金升卿)·김계창(金季昌)·채수(蔡壽)·변수(邊脩)는 의논하기를,

"양성지는 공조 판서(工曹判書)가 된 지 이제 두 돌이 넘었으며, 신정은 참판(參判)이 된 지 또한 한 돌이 넘었는데, 아울러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었을 때에는 거의 7, 8년에 이르렀었습니다. 두 사람이 비록 드러난 허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의(物議)가 이와 같으니, 한 벼슬에 구임(久任)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은 함께 훈맹(勳盟)에 참여하였으니, 군(君)으로 봉(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승(政丞)에게 이르기를,

"경(卿)들의 말이 진실로 옳다. 승지들은 비록 마땅히 갈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만약 개차(改差)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상소(上疏)로 인하여 갈았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양성지와 신정은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고, 한계희는 말하기를,

"국가(國家)에서 인물(人物)을 진퇴(進退)시킬 때에는 모름지기 나타난 허물로 인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리는 것이 옳겠다고 말한 후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간(臺諫)이 두 사람의 탐람(貪婪)함을 범연(泛然)히 논(論)하는 것을 가지고 만약 가벼이 그 직책을 고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작은 허물도 일일이 들추어서 다투어 서로 공박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인심(人心)이 어지러워질 것이며, 조정(朝廷)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두 사람의 직책을 갈지 마시어 공격(攻擊)하는 풍습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0 집 1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공업-장인(匠人) / *신분-천인(賤人)

《 성종 104 10/05/04(기미) / 공조 판서 양성지의 사직을 불허하다 》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차자(箚子)를 올려 사직(辭職)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10 집 1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104 10/05/05(경신) / 여러 대신들에게 양성지와 신정의 인품에 대해 의논케 하다 》

양성지(梁誠之)·신정(申瀞) 등의 인품(人品)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박중선(朴仲善)· 어세공(魚世恭)·윤흠(尹欽)·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사람을 밝게 알아봄은 옛 성인도 어렵게 여긴 바인데, 한 사람의 훼예(毁譽)로써 가볍게 버리고 취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사람은 독립(獨立)해 있으면 세속의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동류(同流)가 있으면 세속의 좋아하는 바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 여러 사람의 헐뜯고 기리는 것도 또 가볍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당(唐)나라와 송(宋)나라 사이에 조정(朝廷)의 진신(縉紳)들이 서로 공격하면서 각각 군자(君子)나 소인(小人)이라 지목하여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른바 소인이란

반드시 모두 소인이 아니고, 그 이른바 군자란 자도 반드시 모두 군자가 아니어서, 마침내 경위(傾危)의 풍습을 이루어 혼란한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명(聖明)의 세상이므로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지마는, 만약 후세에 천망(天網)이 점전 해이해진다면, 그 폐단을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옛날에 대신(大臣)으로 오예(汚穢)와 음란(淫亂)에 관계된 자가 있으면, 오예와 음란을 범했다고 이르지 않고, 유박(帷薄)이 갖추어지지 않고 보궤(簠簋)가 꾸며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 대신을 대우함에 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성지와 신정은 오랫동안 좌우(左右)에서 모셨으며, 지위가 재상(宰相)에 이르렀는데, 사람은 요순(堯舜)이 아니고서야 누구인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비록 대간(臺諫)의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하(殿下)께서 천천히 이를 살피는 것이 옳겠습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아니하면 신하를 잃는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주상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

하였고, 박숙진(朴叔蓁)·이극돈(李克墩)·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대저(大抵) 사람에게서 장점을 취해 보면 반드시 한 가지 유능(有能)한 것이 있으니, 양성지는 해박(該博)한 노유(老儒)이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짐작(斟酌)하는 성질이 없으며, 신정은 성품이 본래부터 영오(穎悟)하여 일을 다스리는 능력(能力)은 있으나, 세상 일에 있어서는 영위(營爲)한다는 비평을 면치 못합니다. 신(臣) 등이 보고 들은 바는 이에 그칠 뿐이나, 다만 옛사람이 말하기를, '좌우(左右)가 모두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고, 모든 대부(大夫)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니, 반드시 그 어질지 못한 것을 본 연후에 이를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천천히 살피셔서 이를 진퇴(進退)하게 하소서."

하였고, 윤계겸(尹繼謙)·이숙기(李淑琦)·여자신(呂自新)·한천손(韓千孫)·이육(李陸)·이길보(李吉甫)·박안성(朴安性)·배맹후(裵孟厚)는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서로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성지와 신정은 여러 번 대간(臺諫)의 논박(論駁)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은 그 어진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고, 김여석(金礪石)·이덕숭(李德崇)·박안부(朴安阜)는 의논하기를,

"사람에는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있는데, 어진 이는 재주가 있고 덕(德)이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어질지 못한 이는 이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 양성지와 신정은 어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만 한낱 탐도(貪饕:재물과 음식을 몹시 탐내는 것))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그 사람됨과 정상(情狀)은 이보다 앞서 논박(論駁)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지금 간원(諫院)의 상소도 또한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로 물의(物議)에 맞는 것입니다. 또 공부(工部)는 비록 권세를 잡은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백공(百工)이 관장되는 곳이고, 중리(衆利)의 부고(府庫)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利)를 도모하는 무리가 그 지위의 장관(長官)이 되고, 그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대개 이름과 실제는 서로 덮어 주지 못하는 것이나, 양성지와 신정이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연유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니, 지적(指摘)할 만한 것이 없다는 한 가지 일로써 공의(公議)를 폐(廢)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빌건대 의심하지 말고 강단(剛斷)을 내리시어 염치(廉恥)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논이 들어오니, 임금이 친히 그 가운데 '사람이 요·순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라고 한 부분과, 《주역》에 이르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는다.'라고 한 말을 지우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이를 의논하라고 명한 것은 다만 중론(衆論)이 어떤가를 보고자 한 것뿐이었는데, 또 의논한 바를 보니, 지위가 높은 자는 그대로 동일(同一)한 말을 했고, 지위가 낮은 자도 또한 그대로 같은 말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요·순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는 옛사람이 인물(人物)을 범론(泛論)한 것이니, 이 의논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 말하기를, '임금이 치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진실로 그렇지 않다. 가령 임금이 스스로 신하(臣下)의 과실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라면, 의논한 바가 옳을 것이나,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일은 곧 간관(諫官)의 논란으로 인하여 그러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 대략(大略)은 옳다."

하였다.

【원전】 10 집 12 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성종 104 10/05/25(경진) / 함우치 · 양성지 · 이철견 · 유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함우치(咸禹治)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동원군(東原君) 봉조하(奉朝賀)로,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남원군(南原君)으로, 이철견(李鐵堅)을 정헌 대부(正憲大夫)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유지(柳輊)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윤흠(尹欽)을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김한(金澣)을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로, 고태필(高台弼)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원전】 10 집 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성종 12년 〈 양성지 - 성종 12년 .... 22 건 〉

성종 128 12/04/24(무진) / 한치례·김수온·양성지·권경·권팽조·지한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종 130 12/06/07(경술) / 영산 부원군 김수온의 졸기

성종 133 12/09/21(임진) / 한치례·이승소·이계손·양성지·김자행·이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종 134 12/10/17(무오) / 남원군 양성지가 중국이 개주에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성종 134 12/10/19(경신) / 2품이하의 당상관을 시험하였는데 양성지가 수석, 이승소 이파가 차석을 하다

성종 134 12/10/20(신유) / 승정원에 전교하여 양성지에게 가자하고자 하니 다음 도목정 때 아뢰게 하다

성종 135 12/11/15(을유) / 양성지·윤계겸·윤기반·어세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종 135 12/11/16(병술) / 김학기 윤석보가 양성지의 작상이 과하다고 아뢰다

성종 135 12/11/17(정해) / 헌납 김대가 양성지의 승정 대부 제수가 지나치다고 아뢰다

성종 135 12/11/18(무자) / 대사간 강자평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명령을 거두기를 청하다

성종 135 12/11/18(무자) / 집의 윤기반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명령을 거둘 것을 청하다

성종 135 12/11/19(기축) / 노원 역자 막동의 강간 사건 등에 대해 의논하다

성종 135 12/11/19(기축) / 집의 윤기반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성종 135 12/11/19(기축) / 대사간 강자평 등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성종 135 12/11/20(경인) / 집의 윤기반과 정언 윤석보가 양성지의 일을 아뢰자 좌우에게 묻다

성종 135 12/11/20(경인) / 대사간 강자평과 집의 윤기반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성종 135 12/11/21(신묘) / 사간 임수경과 지평 김석원이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성종 135 12/11/21(신묘) / 대사간 강자평과 집의 윤기반이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에 관해 상소하다

성종 135 12/11/22(임진) / 대사간 강자평과 집의 윤기반이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해 상소하다

성종 135 12/11/23(계사) / 이극돈과 강자평이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일 등을 아뢰다

성종 135 12/11/24(갑오) / 장령 김학기가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성종 135 12/11/24(갑오) / 대사헌 이극돈과 대사간 강자평이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 성종 128 12/04/24(무진) / 한치례 · 김수온 · 양성지 · 권경 · 권맹조 · 지한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한치례(韓致禮)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수온(金守溫)을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상호군(上護軍)으로,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 부호군(副護軍)으로, 권경(權擎)을 자헌 대부 행 사직(行司直)으로, 권맹(權彭)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부사정(副司正)으로, 조지(趙祉)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사맹(司猛)으로, 한보(韓堡)를 자헌 대부 부사직(副司直)으로, 이계손(李繼孫)을 자헌 대부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

【원전】 10 집 20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130 12/06/07(경술) / 영산 부원군 김수온의 졸기 》

영산 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金守溫)이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예장(禮葬)하기를 예(例)대로 하였다. 김수온의 자(字)는 문량(文良)이고, 본관은 영동(永同)이며, 증 영의정(贈領議政) 김훈(金訓)의 아들이다. 김수온은 나면서부터 영리하고 뛰어나 정통(正統) 무오년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고, 신유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에 보임(補任)되었다. 세종이 그 재주를 듣고 특별히 명하여 집현전(集賢殿)에 사진(仕進)하게 하고, 《치평요람(治平要覽)》을 수찬(修撰)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였다. 임금이 때때로 글제를 내어 집현전의 여러 유신(儒臣)을 시켜 시문(詩文)을 짓게 하면, 김수온이 여러 번 으뜸을 차지하였다.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를 지내고, 경태(景泰) 경오년에 병조 정랑(兵曹正郎)에 특별히 제수되고, 신미년에 수전농시 소윤(守典農寺少尹)이 되고, 임신년에 외임(外任)으로 나가 지영천 군사(知榮川郡事)가 되고, 병자년에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가 되었다. 천순(天順) 정축년에 중시(重試)에서 제2인으로 입격(入格)하여 통정 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발탁되었다. 그때 김수온이 어머니를 성문(省問)하러 영동현(永同縣)에 가는데, 세조가 중사(中使)를 보내어 한강(漢江)에서 술을 내리고 임영 대군(臨瀛大君)·영응 대군(永膺大君)과 여러 군(君)들에게 명하여 가서 전송하게 하였다. 무인년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제배(除拜)되고, 기묘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한성부 윤(漢城府尹)에 오르고, 경진년에 외임(外任)으로 나가 판상주 목사(判尙州牧事)가 되고, 갑신년에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었다가, 이윽고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제배되

었다. 성화(成化) 병술년에 발영시(拔英試)에 으뜸으로 입격하여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가자(加資)받고, 또 등준시(登俊試)에 으뜸으로 입격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다. 세조가 김수온의 집이 가난하다 하여, 사옹원(司饔院)과 여러 관사(官司)를 시켜 경연(慶宴)을 준비하게 하고,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정승들에게 명하여 궁온(宮醞)을 가져가서 압연(押宴)하게 하고, 또 중사를 보내어 서대(犀帶)·금낭(錦囊)·나(羅)·기(綺)·의복·화(靴)·모(帽) 따위의 물건 40여 건(件)과 안마(鞍馬)와 쌀 10석(碩)을 내렸다. 우리 조정에서 과거(科擧)를 설치한 이래로 급제의 영광에 이런 전례가 없었으며,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장원(壯元)에게 쌀을 내리는 것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무자년에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기축년에 금상(今上)이 즉위하여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가자하고, 신묘년에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의 호(號)를 내리고 영산 부원군(永山府院君)에 봉(封)하고, 갑오년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제배하고, 정유년에 다시 영산 부원군에 봉하였다. 이때에 졸(卒)하였는데 73세이다. 시호(諡號)는 문평(文平)인데, 배움이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문(文)이고, 은혜로우나 내덕(內德)이 없음이 평(平)이다. 김수온은 서사(書史)를 널리 보아 문장이 웅건(雄健)하고 소탕(疏宕)하며 왕양(汪洋)하고 대사(大肆)하여 한때의 거벽(巨擘)이었다. 전에 명(明)나라 사신 진감(陳鑑)의 희청부(喜晴賦)에 화답(和答)하여 흥을 돋우고 기운을 떨쳤는데, 뒤에 김수온이 중국에 들어가니, 중국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지칭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희청부에 화답한 사람이다.' 하였다. 세조가 자주 문사(文士)를 책시(策試)하였는데, 김수온이 늘 으뜸을 차지하였다. 전에 원각사 비명(圓覺寺碑銘)을 지었는데, 주문(主文)한 자가 많이 고친 것을 김수온이 보고 말하기를, '대수(大手)가 지은 것을 소수(小手)가 어찌 능히 고치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신미(信眉)의 아우로서 선학(禪學)에 몹시 빠져 부처를 무턱대고 신봉하는 것이 매우 심하였다. 전에 회암사(檜巖寺)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다가 그만두었는데, 그의 궤행(詭行)이 이러하였다. 또 자신을 단속하는 규율이 없어, 혹 책을 깔고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포의(布衣)를 입고 금대(金帶)를 띠고 나막신을 신고서 손님을 만나기도 하였다. 성품이 오졸(迂拙)하고 간국(幹局)이 없어 치산(治産)에 마음을 두었으나, 계책이 매우 엉성하였고, 관사(官事)에 처하여서는 소략하여 지키는 것이 없어 글하는 기상(氣象)과는 아주 달리 하므로, 조정(朝廷)에서 끝내 관각(館閣)의 직임을 맡기지 않았으며, **양성지(梁誠之)**·오백창(吳伯昌)과 함께 상서하여 공신으로 봉해 주기를 청하여 좌리 공신(佐理功臣)에 참여되었다. 일찍이 괴애(乖崖)라 자호(自號)하였고, 《식우집(拭疣集)》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원전】 10 집 22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성종 133 12/09/21(임진) / 한치례 · 이승소 · 이계손 · 양성지 · 김자행 · 이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한치례(韓致禮)를 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승소(李承召)를 정헌 대부 우참찬으로, 이계손(李繼孫)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판한성부 윤(判漢城府尹)으로,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김자행(金自行)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이칙(李則)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철견(李鐵堅)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정난종(鄭蘭宗)을 자헌 대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이병정(李秉正)을 가선 대부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이인충(李仁忠)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로, 황경인(黃敬仁)을 통정 대부 회양 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로 삼았다.

【원전】 10 집 2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134 12/10/17(무오) / 남원군 양성지가 중국이 개주에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생각건대, 자고로 천하 국가의 사세(事勢)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혹 알지 못하기도 하고 비록 이미 알아도 또 <어떻게> 하지 못하니, 이것이 모두 잘못된 일중의 큰 것입니다. 일을 먼저 도모한다면 어찌 잘 다스리고 오랫동안 안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중국이 장차 개주(開州)에 위(衛)를 설치하려 한다 하는데, 신이 거듭 생각해 보니 크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개주는 봉황산(鳳凰山)에 의거하여 성(城)을 이루었는데, 산세가 우뚝하고 가운데에 대천(大川)이 있으며, 3면이 대단히 험하고 1면만이 겨우 인마(人馬)가 통하는 이른바 자연히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한 사람이 관(關)을 지키면 1만 명이라고 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주둔하여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하였고, 또 요(遼)나라의 유민(遺民)이 여기에 근거하여 부흥(復興)을 도모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누가 우리 나라와 관계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북쪽으로는 산로(山路)로 심양(瀋陽)·철령(鐵嶺)·개원(開元)을 가리켜 야인(野人)과 연접(連接)하였고, 남쪽으로는 해도(海道)로 해개(海蓋)·금복(金復)을 가리켜서 등주(登州)·내주(萊州)와 접하였고, 서쪽으로는 요동(遼東)·광녕(廣寧)·금주(錦州)·서주(瑞州)를 가리켜 연주(燕州)·계주(薊州)로 통하니, 저들에게는 유주(維州)의 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한중(漢中)의 세가 있는 실로 동도(東道) 요충(要衝)의 땅입니다. 여름에는 만경(萬頃)의 험로(險路)이면서 오히려 충분히 의거할 수 있고 겨울에는 평평하기가 숫돌 같으면서도 곧기가 화살과 같으니, 비록 형제 부모의 나라라도 이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시에는 평안도 백성들 중 부역(賦役)을 피하는 자들의 태반이 이곳으로 가는데, 저들은 가벼운 부역으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변경 땅의 백성이 모두 그 곳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의 해로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영원한 근심거리입니다. 신이 고금(古今) 천하의 형세(形勢)로 말씀드리면, 구주(九州) 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 총령(葱嶺)과 사막(沙漠)이 약 3만 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고, 동이(東夷)는 일본으로써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이며, 남만(南蠻)은 점성(占城)과 진랍(眞臘) 땅으로서 계동(溪洞)과 열병(熱病)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巴蜀)·검각(劍閣)으로의 길로서 진(秦)나라 때에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담이(儋耳)·경애(瓊崖)의 땅으로 한(漢)나라가 비로소 군(郡)을 두었습니다. 동북관(東北關) 밖은 영주(營州)·요동(遼東)·요서(遼西)의 땅이고, 서북관(西北關)의 오른쪽은 양주(凉州)·하서(河西)의 5군(郡)이 그것이며 이후에는 중국과 교통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요수(遼水)의 동쪽 장백산(長白山)의 남쪽에 있어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 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됩니다. 단군(檀君)이 요(堯)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 조선(箕子朝鮮)·신라(新羅)가 모두 1천 년을 누렸고 전조(前朝)의 왕씨(王氏) 또한 5백 년을 누렸습니다. 서민(庶民)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士大夫)는 문무(文武)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封君)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사대(事大)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小中華)하고 부르면서 3천 9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황진(黃溍)은 벼슬살이할 만한 나라라고 하였고, 황엄(黃儼) 또한 천당(天堂)이라 하였으며, 원(元)나라의 세조(世祖)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舊俗)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고, 명(明)나라의 고황제(高皇帝)는 우리 스스로의 성교(聲敎)를 허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교(聲敎)를 가지게 한 것은 언어가 중국과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元)나라 말기에 홍군(紅軍) 20만 명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 우리가 대병으로써 쳐부수고 군대의 명성을 크게 떨친 사실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며, 또 명나라가 금릉(金陵)에 도읍(都邑)을 정하고 우리 나라가 북원(北元)과 국경을 접한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 중국이 동쪽에 있어서 한(漢)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는 군사를 남용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고, 요(遼)나라·금(金)나라·원(元)나라는 국경을 접했으면서도 핍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신은 평양(平壤)을 점거하였던 중국 세력들의 흥폐(興廢)는 말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고구려가 풍씨(馮氏)의 남은 세력을 근거로 강성해져서 수(隋)

나라 양제(煬帝)의 1백만 군이 살수(薩水)에서 대패 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여섯 차례나 원정하였지만, 요좌(遼左)에서는 공이 없었으며, 한(漢)나라는 비록 평양을 얻었으나 곧 고구려에 점거 당하였고, 당나라는 평정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삼한(三韓)의 법규를 지킨 것은 옛날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漢)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 모두 관중(關中)에 도읍하여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遼)나라는 인국(隣國)이며 적국(敵國)이었으므로, 소손녕(蕭遜寧)의 30만 병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금(金)나라는 본래 우리 나라의 평주(平州) 사람이 세웠으므로 우리 나라를 부모의 나라라 하였고, 윤관(尹瓘)이 9성(九城)을 쌓은 선춘령(先春嶺)으로 경계를 삼아 금나라가 망할 때까지 군사력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요와 금의 두나라는 모두 서쪽에 하국(夏國)이 있었고 남쪽에는 대송(大宋)이 있어서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어느 틈에 말머리를 동쪽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후 야율씨(耶律氏)가 서쪽으로 만리를 달렸으나 완안씨(完顔氏)의 남하로 패망하였고, 원나라는 혼인국(婚姻國)이라고 칭하였으나 수십년 동안 침략하였고, 중국과 남북의 오랑캐가 혼합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국경이 없었지만 그 말년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음산(陰山)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이 다시 생각건대, 국가는 한 시대에 고식(姑息)되지 말고 만세의 계책을 세워야 하며 무사한 것을 요행으로 삼지 말고 만전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천하에 금 그릇에 비길 만한 것은 잘 보전하여 깨트리지 말며, 산하(山河)가 금에 비길 만한 것은 지켜서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역대의 제왕(帝王)들이 장안(長安)·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하거나 건강(建康)·임안(臨安)에 도읍하고 혹은 북쪽으로 업(業) 땅에 도읍하거나 동쪽으로 변량(汴梁)에 도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가 북쪽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연도(燕都)가 남북의 요관(要關)이 되어, 북으로는 거용관(居庸關)에 의거하여 호원(胡元)의 목을 움켜잡고 앞으로는 중원(中原)에 임하고, 남으로는 사해(四海)를 제압하니, 명나라 태종(太宗) 문황제(文皇帝)가 도읍을 정한 후 실로 만세의 제왕이 옮기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연도(燕都)로부터 서남쪽으로 운남 포정사(雲南布政司)까지 1백 60일정(日程)이고, 동남쪽으로는 남경(南京)까지 60일정이며, 동북쪽으로 한도(漢都)까지는 겨우 30일정이고, 더구나 개주(開州)에서 압록강(鴨綠江)까지는 겨우 1일정이니, 집 앞 뜰만큼이나 가까우며 결상의 한쪽 끝이라 하여도 옳습니다. 지금 개주에 성을 쌓으면 개주로써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당참(唐站)에 성을 쌓게 될 것이며, 당참에 성을 쌓게 되면 당참에 그치지 않고 성을 쌓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곡(糧穀)의 운반을 요청하게 되면 양곡 운반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소와 운반구(運搬具)를 요청할 것이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청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며 농(隴) 땅을 얻으면 촉(蜀) 땅을 바라게 되는 필연의 이치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 바치는 동해의 생선이 주방(廚房)의 쓰임에 충당할 만한데, 어찌 특별히 남만(南蠻)의 구장(枸醬)과 죽장(竹杖)을 쓸 것이며, 우리 나라의

궁시(弓矢)와 포백(布帛) 역시 군수(軍需)로 쓰는데, 어찌 남중(南中)의 금은(金銀)과 단칠(丹漆)만을 쓰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무사하다 하여도 5백 년 후에는 무력(武力)를 남용하는 자와 공 세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일은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왕래하는 새 길을 열 것을 청한 것을 계기로 병부(兵部)에서 상주(上奏)한 것이지 정동(鄭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을 통해 교섭을 시작하였다면 정동을 통하여 그것을 끝내어야 하며, 그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뒷날의 이해 관계는 역관(譯官)들에게 달렸습니다, 바라건대 '한씨(韓氏) 족친 중에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와 통사(通事)중에 정동(鄭同)과 교제가 있는 자에게 명하여 토산물을 많이 가지고 바로 북경(北京)에 가서, 정동을 인해서 한씨에게 말하고 한씨가 어소(御所)에 말하여 개주위(開州衛) 설치의 정지를 청하게 하소서. 우리 고황제(高皇帝)는 만리(萬里)를 밝게 보시어 요동의 동쪽 1백 80리의 연산 파절(連山把截)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동팔참(東八站)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에 편리함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수백리의 땅을 공지(空地)인 채로 버려둔 것은 두 나라의 영토가 서로 혼동(混同)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일 간사한 무리들이 흔단(釁端)을 일으켜 달자(達子)나 왜인(倭人)을 가장하여 도적질한다면 실로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공(朝貢)하는 사절(使節)이 옛길로 가다가 침범이 있게 되면 철저히 방비하고, 그대로 주청하면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윤허를 얻지 못하면 그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씨가 청을 할 수 없다면 그 뒤는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의 사세(事勢)는 바야흐로 병이 크게 도진 것과 같습니다. 7년이나 된 병에 만약 3년 묵은 쑥을 구하지 못하면 이것이 당(堂)에 있으면서 화(禍)를 알지 못하고 섶을 쌓아 놓고 위해(危害)를 알지 못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주(義州)는 압록강(鴨綠江)의 험함을 배경으로 한 나라의 문호(門戶)입니다만, 듣건대 그 성(城)이 대단히 허술해서 광대들은 몸을 눕히고도 올라갈 수 있고 찬비(爨婢)가 상을 이고도 내려올 만하다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주(昌洲)·벽단(碧團)·대삭주(大朔州)·소삭주(小朔州) 등의 여러 성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곧 수축(修築)을 한다면 반드시 부역을 피해 유이(流移)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수축하지 않으면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국론(國論)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수축을 하지 않으면 의주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주가 없어지면 하나의 도(道)가 없어지는 것이니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신은 절실히 생각하건대, 지금 8도의 인민으로서 놀고 먹고 조부(租賦)를 내지 않는 자는 승려(僧侶)만한 것이 없습니다. 승려들을 동원하여 수축함으로써 보국(報國)하게 하는 것이 옳으며, 특별한 근로(勤勞)도 없으면서 까닭없이 복호(復戶)된 자와 사복시(司僕寺) 제원(諸員) 등으로 수축하게 하여 보국하게 함도 좋을 것입니다. 또 번(番)을 서고 있는 정병(正兵)과 동원되고 있는 수군(水軍)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압록강변 일대 행성(行城)을 쌓게 하고 또 따로 파절(把截)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내(道內)의 공부(貢賦)도 인삼(人蔘)

과 서피(鼠皮) 이외는 일체 면제 하고, 중국에 가는 사신[入朝使臣]도 정조(正朝)와 탄신(誕辰) 이외에는 정상대로 보내되, 쌍성(雙城)의 변(變)과 동녕(東寧) 사건은 마땅히 우려할 일이며, 따라서 감사(監司)·수령(守令)에게 직책이 없는 자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도 또한 불가합니다. 삼도(三島)와 대내(大內) 등 왜인(倭人)도 마땅히 불러서 회유하여야 할 것이며, 모련위(毛隣衛)와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도 역시 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은 신이 감히 입으로 말하지 못하며 글로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들어맞지 않게 된다면 국가의 복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반드시 후세의 근심거리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세(事勢)를 논하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고 사신의 출발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구한 견마지성(犬馬之誠)을 다할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의정부와 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 당상(六曹堂上)·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강희맹(姜希孟)·이숭소(李承召)·이극증(李克增)·유지(柳輊)·이덕량(李德良)·김영유(金永濡)·변종인(卞宗仁)·이경동(李瓊仝)·김자정(金自貞)·성숙(成俶) 등이 의논하기를,

"개주(開州)에 진(鎭)을 설치하면 우리 나라에 불리하다는 사실은 전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온 명나라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 진을 설치하는 이유로 첫째 건주위 야인(建州衛野人)의 엿봄을 막고, 둘째 조선 사신 왕래 때의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상세히 밝혔습니다. 언사는 순하고 이치에 맞으니 무슨 말로 <개주진(開州鎭) 설치의> 정지를 청하겠습니까? 또 농사의 풍흉(豊凶)과 적정(賊情)의 긴박하고 긴박하지 않음을 보아 설치한다고도 하니, 설치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녀와 환관[婦寺]을 통하여 주청(奏請)함으로써 설치를 면하려 하는 것도 정대(正大)한 방법이 아닙니다. 압록강 연변에 성을 쌓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흉년으로 정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려와 사복시 재원을 동원하는 일은 모두 시행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하였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개주(開州)에 진을 설치하는 일이 우리 나라에게 후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진실로 양성지의 말과 같습니다. 다만 주청사(奏請使)를 보내지 말자고 한 것은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한씨(韓氏)와 정동(鄭同)을 통해서 주청하자는 것도 사리에 옳지 못합니다. 의주(義州)의 행성(行城)을 축조하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압록강변의 읍성(邑城)을 사태의 긴박함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점차로 수축하는 일은 신도 전에 그 곳을 순찰하고 아뢰어서 윤허(允許)를 얻었습니다만, 본도(本道)의 인력이 넉넉치 못하여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려를 동원하여 쌓는 일은,

승려들은 본래 생업이 없어서 스스로 식량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요(料)를 지급하려면 그 수가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또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은 그 수가 1천 명도 못되고 모두 서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서 이곳으로 동원하여 부릴 형편이 못됩니다."

하였고,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개주(開州)에 진(鎭)을 설치하면 우리 나라 사신의 왕래에 유익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여 그 자리가 굳어지고 요긴한 곳에 성을 쌓고 시일이 오래 되어 외부의 침략받을 염려가 적어지면 우리 나라에는 무궁한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도는 요역(徭役)의 과중함이 다른 도에 비하여 10배나 되고 개주(開州)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압록강 연변 여러 고을과는 강이 얼면 곳곳에 통로가 생겨 왕래를 금할 수 없는 땅이 되는데 부역의 괴로움을 피하고 그 헐함을 쫓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라 백성들이 그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부득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을 상세히 살펴보면 전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사은사(謝恩使)도 중국이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개주진(開州鎭)을 설치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신은 작은 이익은 있으나 우려(憂慮)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신이 이미 출발하여 추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鎭)의 철폐를 요청하자는 의견은 장래를 생각하여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정동(鄭同)과 한씨(韓氏)를 통하여 황제에게 말하게 하자는 것은 매우 정대(正大)한 의논이 아닙니다. 어찌 나라의 체면으로 사사로이 부녀와 환관을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평안도 의주와 압록강변 성(城)의 상태가 나쁜 곳을 수축하는 일은 이미 의논하여 여러 번 전지(傳旨)가 내렸습니다만, 인력의 부족으로 일시에 착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어찌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려는 비록 역(役)이 없습니다만, 본래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아서 동원하여 부역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복시 제원은 그 수가 본래 많았으나 근래에는 감소되어 남아 있는 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어찌 다른 곳에 부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하였고, 이육(李陸)·한인(韓堙)·최영린(崔永潾)은 의논하기를,

"중국이 개주성(開州城)을 축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나라에서 새길을 청하였고 우리 나라가 조공(朝貢)하러 왕래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한다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정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말이 순서가 아닙니다. 또 환관과 부인을 통해서 성사하려는 것도 정대한 방법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으며, 더구나 개주 축성은 확정된 일이 아닙니다. 부역을 피하는 백성이 무거운 곳을 피하여 가벼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진 땅으로 잠입할 것이라는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압록강변의 축성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려는 본래 토착해 있지 않으며 사복시 제원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그들로서 축성하자는 계

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날의 의논대로 풍년을 기다려서 점차로 쌓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봉(李封)·강자평(姜子平)·구치곤(丘致崑)·임수경(林秀卿)·김학기(金學起)·김석원(金錫元)·곽은(郭垠)·윤석보(尹碩輔)·정광세(鄭光世)가 의논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철폐할 수 없어서 사신의 왕래가 해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팔참(東八站) 수일정(數日程)에 야인(野人)이 침범하는 일이 염려되어 새길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개주(開州) 등지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만 의논하니 사신의 왕래에는 조금 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개주는 의주에서 1백여 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평안도의 피폐가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닌데, 명나라측이 부역을 감면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초치할 경우 괴로움을 피하고 편안함을 따름은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니, 압록강의 물이 얼 때 백성들이 옮겨 가는 것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계책을 우선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는 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鄭同)에게 뇌물을 주고 한씨로 하여금 천자에게 말하게 하자고 합니다만, 이는 대신(大臣)이 할만한 말이 못되고 정대한 의논이 못됩니다. 어찌 환관을 인연해서 성사할 수 있겠습니까? 압록강변의 축성하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도의 계속된 기근(飢饉)으로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기 어려우니, 풍년을 기다려 점차로 쌓는 것이 옳습니다.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자를 금하는 일은 이미 국가의 조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관리에게 책임지워 일일이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승려와 복호(復戶)된 자와 사복시 제원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사정에 어두운 일이며 시행할 일이 못됩니다.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을 동원하여 축성하는 일은 식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워 또한 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하였다.

【원전】 10 집 265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성종 134 12/10/19(경신) / 2품 이하의 당상관을 시험하였는데 양성지가 수석, 이승소 이파가 차석을 하다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주공 동정론(周公東征論)과 주공 부성왕 조제후 율시(周公負成

王朝諸侯律詩)를 출제(出題)하여 2품(品) 이하 당상관(堂上官)을 시험하였는데,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수석이었고, 이승소(李承召) 이파(李坡)가 차석이었다.

【원전】 10 집 26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성종 134 12/10/20(신유) / 승정원에 전교하여 양성지에게 가자하고자 하니 다음 도목정 때 아뢰게 하다 》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양성지(梁誠之)**가 나이 많은데도 아직 학문을 버리지 않았으니, 가상할 만한 일이다. 내가 가자(加資)하고자 하니 다음 도목정(都目政) 때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원전】 10 집 26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성종 135 12/11/15(을유) / 양성지 · 윤계겸 · 윤기반 · 어세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양성지(梁誠之)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윤계겸(尹繼謙)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윤기반(尹起磻)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집의(行司憲府執義)로, 어세겸(魚世謙)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원전】 10 집 2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성종 135 12/11/16(병술) / 김학기 윤석보가 양성지의 작상이 과하다고 아뢰다 》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학기(金學起)·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와서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가 비록 제술(製述)에 수석을 하였지만 별 공덕(功德)이 없으니 정헌 대부(正憲大夫)가 된

것만도 족한데 또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린 것은 작상(爵賞)이 너무 지나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수석을 하였기 때문에 1계(階)를 더해 준 것이고 노인(老人)이어서 1계를 더해 준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작상(爵賞)은 세상 사람을 힘쓰게 하고 우둔(愚鈍)한 것을 연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에까지 지나치게 올려 주셨는데, 다음에 공덕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써 대우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성종 135 12/11/17(정해) / 헌납 김대가 양성지의 숭정 대부 제수가 지나치다고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대(金臺)가 아뢰기를,

"작상(爵賞)은 반드시 공덕(功德)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양성지(梁誠之)**가 제술(製述)로써 뛰어넘어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제수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상준 것은 제술에 수석하였기 때문이며 숭정 대부(崇政大夫)는 특지(特旨)로 준 것이다. 특지도 옳지 않다는 것인가? 태평스러울 때에는 공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또 덕 있는 자가 드물다. 전에 등용한 사람이 어찌 모두 공이나 덕이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이 반복해서 굳이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 성종 135 12/11/18(무자) / 대사간 강자평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명령을 거두기를 청하다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한명회(韓明澮)가 범한 불경죄(不敬罪)는 죽어도 마땅한데 성은(聖恩)을 지나치게 입어 목숨을 보전하고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었으니, 죽은 자를 살려 백골에 살을 붙일 것만큼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반 년이 못되어 직첩(職牒)을 돌려준다면 한명회(韓明澮)의 더할 데 없이 오만한 마음을 어느 때에나 징계하겠습니까? 또 **양성지(梁誠之)**는 보잘것없이 탐약(貪弱)한 사람입니다. 이렇다 할 공덕(功德)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만 하찮은 글짓는 재주만으로 1자급(資級)을 더하였을 때 이미 중론(衆論)이 못마땅해 하였는데, 또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더하였으니, 관작(官爵)의 외람됨이 이렇게 심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그가 늙어서도 학문 버리지 않음을 가상히 여기신다면 나이가 양성지와 같은 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며, 학문이 양성지와 같은 자도 또 한둘이 아닌데, 어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급히 명령을 거두어 여론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성종 135 12/11/18(무자) / 집의 윤기반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명령을 거둘 것을 청하다 》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생각건대, 상벌(賞罰)은 임금의 대권(大權)이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양성지(梁誠之)**는 본래 덕망이 없는데도 그 품계가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이르러 이미 분수에 넘쳤습니다. 이제 하찮은 재주로 1품을 더 뛰어 받았으니 다음에 국가에 큰 공을 세운다면 무엇을 더해 주겠습니까? 또 한명회(韓明澮)는 전날 마음에 원망을 품고 불경(不敬)한 말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임금에게 방자한 죄가 죽어 마땅하였지만, 전하께서 직첩(職牒)만 거둔 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려주라고 명하시니 불경죄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양성지에게는 하찮은 재주로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제수하였고, 한명회에게는 중죄(重罪)에도 불구하고 고신(告身)을 돌려 주라 하시니 형벌(刑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명령을 거두어 사람들의 바람을 흔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성종 135 12/11/19(기축) / 노원 역자 막동의 강간 사건 등에 대해 의논하다 》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준(成俊)이 노원 역자(盧原驛子) 막동(莫同)의 강간(强奸) 사건을 아뢰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기를,

"막동은 나이 어리고 몸이 약하며 강간당한 여인은 장대(壯大)합니다. 굳이 거절하였다면 어찌 강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면 막동은 사형(死刑)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장령(掌令) 김질(金礩)이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이렇다 할 공덕이 없는데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오른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고,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가 아뢰기를,

"시예(試藝)의 수석이라 하여 1자급(資級)을 더한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숭정 대부(崇政大夫)에까지 뛰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시예(試藝)로 올린 것이 아니라 특은(特恩)으로 올렸는데 구애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였다. 김질(金礩)과 정광세(鄭光世)가 또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는 불경죄(不敬罪)로 직첩(職牒)만을 거두었다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돌려주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은 국가의 원훈(元勳)이고, 또 이미 징계하였으므로, 직첩(職牒)을 돌려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였다.

【원전】 10 집 27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성종 135 12/11/19(기축) / 집의 윤기반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지금 **양성지(梁誠之)**가 과시(科試)에 수석한 것으로 두 품계(品階)를 올려 숭정 대부(崇政大夫)가 되었습니다만 과시는 작은 재주이며 숭정 대부는 극품(極品)입니다. 작은 재주로 1자급(資級)을 더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않은데 더구나 두 자리를 올려 극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명회(韓明澮)는 불경죄로 폄척(貶斥)된 지 얼마 안되어 다시 고신(告身)을 돌려주었습니다. 대저 한명회는 대신(大臣)이고 불경죄는 대죄(大罪)입니다. 대신이 불경죄를 범하면 외방(外方)으로 내쫓고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않아도 죄가 아직 남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혜에 따르지 말고 공의(公義)로써 결단(決斷)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성종 135 12/11/19(기축) / 대사간 강자평 등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하늘이 덕(德) 있는 이를 명하거든 오복(五福)으로 다섯 등급의 존비(尊卑)를 나타내며, 하늘이 죄(罪) 있는 이를 처벌하거든 오형(五刑)으로 다섯 종류를 경중(輕重)에 따라 적용한다 하였습니다. 상벌(賞罰)은 임금의 대권(大權)이며 천명(天命)·천토(天討)는 모두 하늘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사사로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한명회는 여러 왕대(王代)의 은혜를 두텁게 입고도 교만하고 횡포함이 날로 심하며 한 번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원망을 품어 그 말이 매우 어긋나고 교만하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만, 전하께서 특별히 법을 굽히어 직첩(職牒)만을 거두었으니 그것도 신들의 바람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몇 달이 지나서 또 돌려주라는 명령이 있으니 이 일이 천토(天討)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패악한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양성지(梁誠之)**는 심술이 고루(固陋)하고 조정에 선 지 30여 년에 내세울 만한 공이 없으며 이렇다 할 덕이 없습니다. 지조없이 휩쓸려서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얻기를 근심하였고 얻어서는 잃을까 근심하였으며, 지위가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으니 그것도 이미 과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뛰어

올려 임명하여서 남달리 총애하시니, 모르긴 합니다만 이 명(命)이 천명(天命)에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을 어떻게 권장하겠습니까? 이는 전하의 벌주고 상주는 일이 모두 사정(私情)에서 나오고 공도(公道)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상벌에 규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권장하고 저지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명령을 거두어서 공론(公論)을 위무(慰撫)하소서."

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한명회(韓明澮)의 일은 벌로써 잘못을 징계하고 은혜로써 공에 보답한 것이며, **양성지(梁誠之)**의 일은 시예(試藝)로 가자(加資)하고 특지(特旨)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승계시켰으니 포상과 은혜를 함께 베푼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였다.

【원전】 10 집 27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성종 135 12/11/20(경인) / 집의 윤기반과 정언 윤석보가 양성지의 일을 아뢰자 좌우에게 묻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윤기반(尹起磻)·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양성지(梁誠之)**의 일을 논의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양성지는 늙었고 또 글을 잘합니다."

하였고, 지사(知事) 이승소(李承召)는 말하기를,

"양성지가 자헌 대부(資憲大夫)가 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하였고, 윤석보(尹碩輔)는 말하기를,

"좌우에서 구신(舊臣)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하니 더 말할 것 없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예의(禮義)와 글 잘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져 있어서 글 잘하는 사신이 오면 반드시 시(詩)를 주고 받기를 요구하니 젊은 문신(文臣)은 학문을 게을리 할 수 없으며, 대신(大臣)은 그 임무가 중대하여 학문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과시(科試)를 명령하였고 **양성지(梁誠之)**가 수석을 차지했었다. 또 양성지는 선왕(先王)의 구신(舊臣)이어서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려 준 것이다."

하였다. 윤기반(尹起磻)·윤석보(尹碩輔)가 말하기를,

"신하의 죄는 불경죄(不敬罪)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한명회(韓明澮)는 불경으로 파직된 지 얼

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직첩(職牒)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은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데, 한 번 죄를 입었다 하여 끝까지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10 집 27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성종 135 12/11/20(경인) / 대사간 강자평과 집의 윤기반이 차자를 올려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생각건대, 상벌(賞罰)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권(大權)이라 혹시라도 신중히 하지 못하면 권장하고 징계할 바가 없게 됩니다. 한명회가 범한 것이 어찌 믿는 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훈구(勳舊)가 있어서 비록 불경죄를 범하더라도 전하께서 죄주지 못할 것이며 조정에서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고 기휘(忌諱)함이 없어서 한 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을 품고 임금에게 방자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관대하게 용서하여 직첩(職牒)을 거두었을 뿐이었으니 성은(聖恩)이 이미 무거웠습니다. 지금 또 한명회가 국가의 원훈(元勳)이라 하여 직첩을 돌려주게 하니, 이는 한명회를 징계할 바가 없어지고 그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족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양성지(梁誠之)**는 사람됨이 본래 조행(操行)이 없고 오직 뇌물만 탐내어 오마 판서(五馬判書)라는 비난도 있었고, 방석 안받침을 바단으로 쌌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을 알 만합니다. 이제 과시(科試)의 하찮은 재주로 1자급(資級)을 더한 것만도 이미 지나쳤는데 승정 대부로 뛰어올랐으니, 비록 특지(特旨)에 의한 가자(加資)라 하여도 신들은 미심쩍습니다. 양성지가 무슨 공덕이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이같이 겹칩니까? 바라건대 속히 명령을 거두어 여망(輿望)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억측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오마 판서(五馬判書)의 비난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였다.

【원전】 10 집 27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성종 135 12/11/21(신묘) / 사간 임수경과 지평 김석원이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임수경(林秀卿)이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의 죄악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만, 불경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훈신(勳臣)이라 하여 직첩(職牒)만 거둔 것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인데 겨우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그 직위를 돌려주면 그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어떻게 징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성지(梁誠之)**는 과시(科試)의 하찮은 재주로 뛰어올라 극품(極品)을 받았으니, 다른 날 큰 공로가 있으면 무엇으로써 상을 더하겠습니까?"

하였고, 지평(持平) 김석원(金錫元)이 아뢰기를,

"송(宋)나라 태종(太宗) 때 조빈(曹彬)이 공이 있어 당연히 상주어야 하였으나, 태종은 태원(太原)이 평정(平定)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으로써 상주고 벼슬로써 상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양성지(梁誠之)**는 이렇다 할 공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한명회(韓明澮)는 선대(先代)의 원훈(元勳)이라 그 공이 과오를 덮을 만하다. **양성지(梁誠之)**는 과시(課試)가 아니라 특은(特恩)으로 벼슬을 올렸으니 고칠 수 없다. 또 송나라 태종 때에는 천하가 평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찌 같은 이론으로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10 집 27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성종 135 12/11/21(신묘) / 대사간 강자평과 집의 윤기반이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에 관해 상소하다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 등이 생각건대, 관직(官職)은 덕(德)으로 말미암아 받고 계품(階品)은 공(功)으로 말미암아 승

진되어야 뒷사람들의 논란이 없게 됩니다. **양성지(梁誠之)**는 용렬하고 보잘것 없으며 혼미하고 약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본래 조행(操行)이 없고 그 마음은 오직 영리만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따라 움직이고 총애를 탐하여 지위가 자헌 대부(資憲大夫)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것만으로도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무슨 공덕이 있어 뛰어올려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임명하여 남다르게 총애하십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거든 처벌하기를 매가 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한명회(韓明澮)는 정동(鄭同)과의 사사로운 교제로 아부하고 아첨하여 사사로니 재화(財貨)를 바치거나 활을 받기도 하였으니,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개인 정자(亭子)의 치장을 호사스럽게 하여 과시하고, 임금께 아뢴 일이 허가되지 않자 원망을 품고 무례한 말을 하였으니, 신하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더구나 정동은 한명회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할 것을 빌며 땅에 엎드려 울기까지 하면서 전하에게 무례를 범했으니, 역시 한명회가 시킨 것입니다. 직첩(職牒)만을 거둔 것은 죄에 비하여 벌이 가벼워서 온 나라가 모두 분하게 여기는데, 지금 갑자기 또 직첩을 돌려 주었으니, 신 등은 죄지은 자를 징계하는 법이 이 일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중론(衆論)에 따라 명령을 빨리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역사-고사(故事)

《 성종 135 12/11/22(임진) / 대사간 강자평과 집의 윤기반이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해 상소하다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생각건대, 법은 임금의 대권(大權)이며, 조정(朝廷)의 기강(紀綱)이 훈구(勳舊)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의로움으로써 결단된 후에야 군신의 의(義)가 엄격(嚴格)해지고 상하의 구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한명회(韓明澮)의 죄는 법으로는 당연히 죽여 관대하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특별히 훈구라 하여 직첩(職牒)만을 거두었으니, 이는 법을 굽혀서 은혜를 폄으로써 신민(臣民)의 울분이 흔쾌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반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돌려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훈공이 비록 크지만 죄 또한 무겁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공(功)은 과오를 덮을 수 없으며 은혜로 의리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제왕(帝王)의 떳떳한 법이다.' 하였는데, 어찌 훈구(勳舊)라 하여

불경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한명회를 이미 징계하였다고 여기시지만,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는 전에도 또 후에도 징계한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한명회는 이전에도 죄를 범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만, 번번이 너그러운 용서를 입어 거리낌이 없었고 드디어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는 전에 징계하지 않는 탓입니다. 다만 그 작위(爵位)만 빼앗았을 뿐 도성(都城)에 있기를 허가하여 가족과 처첩(妻妾)을 여전히 거느리고 토지와 노비를 그대로 가지고 봉양하게 하였는데, 무슨 어려움으로 징계되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일찍이 신하들에게 말하 기를, '우리 나라는 금옥(金玉)과 토지를 지급하는 일이 없이 다만 관작(官爵)만으로 사대부(士大夫)를 대접하였고, 이 때문에 33년 동안에 서각(犀角) 띠를 두른 자가 3, 4인에 불과하고 금띠를 두른 자는 거의 없다.' 하였습니다. 전하는 작위(爵位)와 거복(車服) 아끼기를 세종 때에 준해 왔는데, 어찌 양성지에게만은 조금도 아끼지 않고 뛰어서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려 주었습니까? 양성지는 나이는 많지만 이렇다 할 덕이나 공이 없는데 다만 문예(文藝)의 하찮은 재주로 극품(極品)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신 등은 경연(經筵)에서 여러 번 아뢰었습니다만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얼마 전까지는 간언(諫言)을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간언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게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성종 135 12/11/23(계사) / 이극돈과 강자평이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일 등을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가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운데 직첩(職牒)을 거둔 것만으로는 너무 가벼웠습니다만, 겨우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지(梁誠之)**는 본래 공덕(功德)이 없고 또 청렴하지 않아서 여러 번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뛰어올려서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임명되었으므로 온 조정이 모두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반드시 '한명회는 공(功)이 있고 양성지는 구신(舊信)이며, 또 이미 결정된 명령이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은 공론(公論)이 있는 곳이니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명회의 범한 바는 다만 그 말에 착오가 있는 것이지 불경죄로 논할 수는 없다. 참으로 불경한 짓을 했다면 죄가 어찌 여기에 그치겠는가? 더구나 사람에 대한 징계가 어찌 시일의 길고 짧음이 있겠는가? 또 **양성지(梁誠之)**는 덕망은 알 수 없으나 조종(祖宗)의 구신(舊信)으로서 이미 늙었으므로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려 준 것이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이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가 정자(亭子) 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정동(鄭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띠[帶]를 주기로 약속하고 서로 결탁하여 사사로이 모이기로 기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설치하기를 청하여 치대(侈大)함을 과시하려던 것이 한 번 청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분을 품고 불경한 짓을 범한 죄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1년도 못되어 직첩(職牒)을 되돌려 준 것이 가(可)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성지(梁誠之)**에게 1자급(資級)을 뛰어서 올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품(人品)과 벼슬자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대사성(大司成) 자리가 비어서 이조(吏曹)에서 유효통(兪孝通)을 주의(注擬)하였더니, 세종(世宗)께서 말하기를, '어찌 자계(資階)를 뛰어넘어서 임명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청컨대 세종의 성헌(成憲)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당(上黨)이 사사로이 진헌(進獻)한 것은 대의(大義)로 논하면 잘못한 일이지만 사세(事勢)를 헤아려 보면 부득이한 일이다. 자계(資階)를 뛰어올리거나 차례를 넘어서 제수하는 것은 아래에서는 비록 주의(注擬)할 수 없으나 특별한 은전이라면 안될 것이 무엇인가?"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이 또 아뢰기를,

"중간 정도 이하의 양성지와 같은 무리가 마음으로 반드시 '양성지도 오히려 자계(資階)를 뛰어올려서 받는데 나만 왜 그렇지 못한가?' 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작위(爵位)에 대한 명령은 위에서 하는데, 얻지 못한다고 실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기를,

"관작(官爵)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당상(堂上)이 자계(資階)를 뛰어서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신숙주(申叔舟)가 북쪽의 야인(野人)을 정벌하고 허종(許琮)이 이시애(李施愛)를 토평(討平)하여 특별히 당상으로서 자계를 뛰어 받았습니만, 그 후 서정(西征) 때에는 유공자가 있었어도 자계를 뛰어 올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이 또 아뢰기를,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의 군관(軍官)은 10명 뿐이었는데 어유소(魚有沼) 때부터 사변(事變)으로 10명을 더 청하였고, 그 후 정난종(鄭蘭宗)·신주(辛鑄)가 서로 이어 절도사가 되면서 그대

로 청하여 20명을 데리고 갔고, 근래 박성손(朴星孫)이 부임할 때에도 병조(兵曹)에서 예에 따라 그대로 보내었습니다. 신이 보니, 절도사는 군관을 먹이기가 어려워서 방수(防守)라 가칭(假稱)하고 각진(各鎭)에 나누어 보내는데, 군관들이 위세를 빙자하여 뇌물받는 일이 많아서 폐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수를 줄이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북방의 사졸(士卒)들이 굳세고 용맹스러우니 군관을 감(減)할 만합니다."

하였고, 이극증(李克增)도 말하기를,

"만약 사변(事變)이 있을 경우 남도(南道)의 군사를 뽑아 옮기는 일은 이미 수교(受敎)가 있었으므로, 군관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10명이면 족하겠다."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이 또 아뢰기를,

"지금 용도(用度)의 부족으로 더 책정하는 공물(貢物)은 공안(公案)에 첨가 기재 하는데, 국용(國用)이 부족한 경우 그 때마다 특별히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공안에 첨가 기재할 것은 없습니다. 또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닭과 돼지를 호조(戶曹)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지만, 겨우 그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치할 길이 없어 가까운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합니다. 신이 듣건대, 경기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술재강이나 쌀겨도 마다하지 않으며, 원래 기르던 닭과 돼지도 기르기 어려운데, 더구나 더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戶曹)도 또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다시 대책을 마련하라."

하였다. 윤호(尹壕)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가 겨울철에는 변진(邊鎭)에 나가 지키므로 여러 고을에서 날마다 음식을 나르는데, 소를 잡고 술을 써서 잔치와 같으며, 그 폐단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여자신(呂自新)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 그 폐단을 약간 없앴습니다."

하였고, 이극돈(李克墩)이 말하기를,

"오진(五鎭)은 본래 야인(野人)의 땅이어서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인가가 드뭅니다. 조종조(祖宗朝)에 남쪽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그들이 정착하기에 힘쓰면서 법률을 느슨하게 하여 이곳은 지금 내지(內地)가 되었고 조정의 호령과 법률이 시행될 만합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 모두 무인(武人)이어서 절약을 모르고 공급(共給) 때에는 폐단이 많았습니다만, 여자신(呂自新)이 묵은 폐단을 일소하여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였는데, 윤호(尹壕)가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북쪽 사람들은 야인(野人)들과 서로 교역하는데 심지어는 철갑(鐵甲)도 사사로이 교역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이 말하기를,

"철갑을 교역할 리는 만무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가 있으니 이런 일은 마땅히 엄금되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이 또 아뢰기를,

"근래 전하께서 이문(吏文)과 한어(漢語)를 보시는데, 이문을 통해서는 중국의 정사(政事)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전하가 좋아하면 누가 즐겨 배우지 않겠습니까? 한어는 복잡한 정무(政務)에 지장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지장 있음을 알지 못하겠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윤호(尹壕)와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기를,

"무방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는데,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준(成俊)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도 역시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이극돈(李克墩)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쓸데없는 물건을 좋아하다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 하였고, 또 '지나치게 애착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 버린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생각을 두어야 할 곳은 당연히 백성들에 관한 일인데, 한어(漢語)도 역시 기예(技藝)이기 때문에 정무(政務)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정무는 마음과 뜻을 집중하지 않으면 능히 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직접 한어(韓語)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통사(通事)들이 말을 전할 때 착오가 많아서 보는 것뿐이다. 내가 한어를 본 지 오래 되었는데 이같은 기예(技藝)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자가 왜 없었는가?"

하였다.

【원전】 10 집 27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농업-축산(畜産) / *호구-이동(移動)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어문학-어학(語學)

《 성종 135 12/11/24(갑오) / 장령 김학기가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을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김학기(金學起)가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정시(廷試)에 수석하고 자계(資階)를 뛰어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랐습니다만, 양성지가 비록 백성에게 유익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었다 하여도 특별히 2자급(資級)을 올린 것은 과한데, 더구나 공덕이 없고 또 상줄 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정시(廷試)로 인하여 특별히 올린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대들은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자, 김학기(金學起)가 말하기를,

"쓸 만한 사람이면 발탁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양성지(梁誠之)**의 사람됨이 올려서 발탁할 만하지 않습니다. 또 신하의 죄는 무례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한명회(韓明澮)가 이런 큰 죄를 범하였는데도 직첩(職牒)만을 거두었다가 반 년도 못되어 갑자기 돌려주라고 명하시니, 옳은 일이겠습니까? 청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개과(改過)를 하였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마음이 밝은가 밝지 못한가에 있는 것이지 어찌 날짜가 오래 되고 오래 되지 못한 데에 있겠는가? 반드시 개과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직첩(職牒)을 돌려준 것이다."

하였다. 김학기(金學起)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세종(世宗)은 항상 말하기를, '임금의 대권(大權)은 오직 벼슬과 상에 있을 따름이니, 벼슬과 상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27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성종 135 12/11/24(갑오) / 대사헌 이극돈과 대사간 강자평이 한명회와 양성지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생각건대, 상벌(賞罰)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이 사람을 권장하지 못하고 벌이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상이 반드시 그 공에 상당하고 벌이 그 죄에 상당한 후에야, 한 번의 상으로도 1천 사람을 권장하게 되고 한 번의 벌로도 1백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韓明澮)는 비록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불경죄로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때 직첩(職牒)만 거두고 서울에 그냥 있게 하여 전과 같이 처첩(妻妾)과 자녀(子女)와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이미 형벌의 적용을 놓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 년도 안되어 또 직첩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한명회보다 가벼운 자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막중한 한명회를 이같이 벌하면 죄가 한명회보다 가벼운 자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벌 백계(一罰百戒)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성지(梁誠之)**는 비록 글 짓는 재주가 조금 있다 하여도 그것이 대신의 능사(能事)는 아닙니다. 당초 정시(廷試)에서 대신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방법이나 경제 정책을 묻는 것으로 시험하지 않고 반대로 시론(時論)으로 시험하였는데 시론은 문예(文藝)의 하찮은 재주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전하께서는 이미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수석한 자에게 상을 줄 만한 것이 있더라도 마땅히 의복(衣服)이나 거마(車馬)를 주어야 할 것을 숭정 대부(崇政大夫)라는 극품(極品)을 주었는데, 숭정 대부의 자품(資品)이 어찌 문예(文藝)의 상품이겠습니까? 또 다른 유공자와 유덕자(有德者)는 어떻게 권면하고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명하고 능력 있기가 **양성지(梁誠之)**와 비슷한 자도 오히려 해이해질 것인데, 하물며 양성지보다 더 현명한 자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으로 1천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못됩니다. 신 등이 듣건대, '공은 같고 상이 다르면 공 있는 자를 권장하는 것이 못되고 죄가 같으면서 벌이 다르면 죄있는 자를 징계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전하는 왜 한명회와 양성지를 아껴서 간언(諫言)에 따르는 미덕(美德)에 누를 끼치고 벌 주고 상 주는 대권(大權)을 잃으려 합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다.

【원전】 10 집 27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성종 13년 《 양성지 - 성종 13년 .... 7 건 》

성종 138 13/02/13(임자) /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

성종 138 13/02/28(정묘) / 이세좌·민사건이 양성지가 건의한 《고려전사》의 간행을 시행하도록 청하다

성종 139 13/03/18(병술) / 내시 정존이 조종조부터 오래 있었음으로 품계를 올려 주겠다고 승정원에 전교하다

성종 140 13/04/14(임자) / 양찬의 아비 양성지에게 사은전을 지어 올리게 하다

성종 140 13/04/20(무오) / 신정의 위조 여부를 대신들에게 묻고 의금부 당상에게 고문하여 알아내도록 명하다

성종 142 13/06/11(무신) / 행 지중추부사 양성지의 졸기

성종 148 13/11/25(기미) / 장령 윤간이 이파의 승직이 부당함을 아뢰다

《 성종 138 13/02/13(임자) /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본래 용렬(庸劣)한데다가 나이 또한 쇠모(衰暮)하여 성명(聖明)의 시대에 대죄(待罪)하며 이대로 몸을 마칠까 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특수하게 성은(聖恩)을 입어 숭반(崇班)에 초배(超拜)될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은혜가 참으로 바라지 못하던 데에서 나왔으니, 감격됨을 어찌 마음 가운데에서 잊겠습니까? 노신(老臣)이 잠잘 때나 밥먹을 때나 생각하여 보니, 오직 문예(文藝)에 대한 조그마한 재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홍조(洪祚)에 도움 되기를 바라며, 삼가 관견(管見) 12가지의 일을 들어 천청(天聽)을 더럽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고금(古今) 제왕들의 어제(御製)를 살펴보건대, 모두 성정(聖情)을 노래하여 읊조린 것이며, 어떤 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기뻐하며 지은 것이니,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조(本朝)에서도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 그리고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모두 어제(御製)가 있었습니다. 지난 갑신년에 세조 대왕께서 사성(四聖)의 어제와 친히 지으신 시문(詩文)들을 찬집(撰集)하고자 하여, 노신(老臣)을 신밀(愼密)하게 여겨 따로 <편찬하는> 국(局)을 설치하지 않고 <노신에게> 교서관(校書館)에 나아가 낭관(郎官) 1인을 거느리고 찬차(撰次)

할 자료를 널리 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붓·먹과 종이 등을 공돈(供頓)하는 모든 일은 모두 본관(本館)에서 판급(辦給)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지 수개월 만에 겨우 《조종조성제집(祖宗朝聖製集)》 1권과 《어제시문집(御製詩文集)》 3권을 수찬(修撰)하여 올렸더니, 세조께서 가상(嘉尙)하게 여기고 인지각(麟趾閣)에 비장(秘藏)하였습니다. 그 뒤 무자년 8월 14일에 신이 여러 재상들과 함께 <세조께> 문안(問安)하고 어전(御前)에 있을 적에 세조께서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명하여 《어제집(御製集)》을 꺼내게 해서 신에게 부탁하기를, '더 수집을 하여 빠짐 없이 기록하라.' 하고, 이어서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 '조종(祖宗)의 시문(詩文)을 내가 장차 간행(刊行)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지은 것에는 희어(戱語)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경이 삭제하여 없앨 것은 없애고서 간행하여 널리 보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조께서 선가(仙駕)를 타고 빈천(賓天)하시어 매달려서 호곡(號哭)함이 망극(罔極)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신숙주와 더불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수찬(修撰)하고, 또 《예종실록(睿宗實錄)》을 수찬하였습니다. 신이 또 《지리지(地理誌)》·《동문선(東文選)》·《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책들을 수찬하였습니다만, 미처 보고를 올리지 못한 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완연(宛然)하여 어제인 듯하고, 어제(御製)하신 두 문집이 아직도 대내(大內)에 있습니다. 하물며 명령하신 여러 책들은 모두 편집을 시작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노신의 천식(喘息)이 아직 남아 있을 적에 일찍이 수찬한 《어제집》과 예종·덕종의 《어제집》, 그리고 금상(今上)께서 친히 지으신 시문(詩文)들도 전교외서(典校外署)에 나아가 낭관(郎官) 1인과 해문(解文) 1인을 거느리고 마음을 다하여 편차(編次)하여 선왕(先王)의 유의(遺意)를 거의 마무리짓고, 전하(殿下)의 은덕에 보답하게 하소서. 한편 후세(後世)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본조(本朝) 열성(列聖)들에게 모두 제작(製作)이 있어서 영세(永世)토록 전하여짐을 알게 하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편찬하는 수말(首末)은 《세조실록》에 자세히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성려(聖慮)를 두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춘추관(春秋館)에 1건(件)의 《고려사(高麗史)》가 있는데, 혹은 권초(權草)라 일컫고, 혹은 홍의초(紅衣草)라 일컫고, 혹은 전문(全文)이라 일컫습니다. 세종 무진년에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인쇄하여 낼적에 신에게 명령하여 감수(監修)하고 교정(校正)하게 했습니다만, 인쇄를 마치자 세종께서 《고려사》를 편수한 것이 공정(公正)하지 못했음을 들으시고 반포하기를 정지하였으며, 붓을 들었던 사신(史臣)들도 이 때문에 죄를 얻었습니다. 무인년에 이르러 세조께서 사정전(思政殿)에 거둥하였을 적에 신이 권남(權擥)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여서 직접 이 문제를 아뢰고 명을 받아 본고(本稿)를 개정(改正)하고서 권남과 신의 이름을 서명(署名)하였는데, 지금도 참고가 됩니다. 위의 《고려사》는 실지로는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全)》이었으며 착오(錯誤)된 곳을 이제 개정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춘추관에 명령하여 본고(本稿)를 찾아서 전교서(典校署)에 내려 보내

인쇄하여 반포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홍문관(弘文館)에 《자경편(自警編)》 5책이 있는데, 이는 송(宋)나라의 종실(宗室) 조선료(趙善料)가 지은 것으로서, 일대(一代)의 임금과 신하들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전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종 대왕께서 이 책을 깊이 감탄하여 칭찬하였으며, 그 때의 《치평요람(治平要覽)》도 이것을 본떠서 찬집(撰集)된 것입니다. 그런데 《치평요람》은 너무나 한만(汗漫)하여 고찰(考察)하기 어렵지만, 이 《자경편》은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으니, 이를 인쇄하여 특별히 한 번 열람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동국여지승람》은 문한(文翰)의 요긴한 서적입니다. 산천(山川)의 형승(形勝)과 주군(州郡)의 연혁(沿革)들을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으며, 풍속의 좋고 나쁨과 인재의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이 서적으로 인하여 상고하게 되며, 심지어 시(詩)로써 물상(物像)을 읊조린 것과 문(文)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들도 모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명령하시면 사문(斯文)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지리지(地理誌)》는 국가의 도적(圖籍)으로서 역대(歷代)에 모두 있었습니다. 송(宋)나라에는 《구역지(九域誌)》가 있었고, 명(明)나라에는 《일통지(一統誌)》가 있었습니다. 신이 세종 대왕 때에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誌)》를 찬수(撰修)하였었고, 세조 대왕 때에도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일을 명령받았었는데, 예종 대왕이 즉위하여서는 편찬을 빨리 마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무자년 겨울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무술년 1월에 서책이 완성되어 진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인쇄하여서 관부(官府)에 수장(收藏)하여 주시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서적을 깊이 수장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전사(高麗全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본조(本朝) 역대의 《실록(實錄)》, 그리고 《총통등록(銃筒謄錄)》·《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동국문감(東國文鑑)》·《동문선(東文選)》·《삼한귀감(三韓龜鑑)》·《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승문등록(承文謄錄)》·《경국대전(經國大典)》·《경외호적(京外戶籍)》·《경외군적(京外軍籍)》과 제도(諸道)의 전적(田籍)·공안(貢案)·횡간(橫看), 그리고 제사(諸司)·제읍(諸邑)의 노비(奴婢)에 대한 정안(正案)·속안(續案) 등을 각각 네 건(件)씩 갖추게 하는 외에 세 곳의 사고(史庫)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게 하며, 또한 긴요한 서적들은 춘추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여 길이 만세(萬世)에까지 전하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지도(地圖)는 관부(官府)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민간(民間)

에 흩어져 있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에는 고려의 중엽 이전에는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가 있었고, 아조(我朝)의 처음에는 이회(李薈)의 팔도도(八道圖)가 있었으며, 세종조에는 정척(鄭陟)의 팔도도(八道圖)와 양계(兩界)의 대도(大圖)·소도(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조에는 신(臣)이 만들어서 진상한 팔도도(八道圖)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삼읍도(三邑圖)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신이 만들어서 진상하는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제주 삼읍도(濟州三邑圖)와 안철손(安哲孫)이 만든 연해 조운도(沿海漕運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유소(魚有沼)가 만든 영안도 연변도(永安道沿邊圖)와 이순숙(李淳叔)이 만든 평안도 연변도(平安道沿邊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영(監司營)에도 각기 도(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승(倭僧) 도안(道安)이 만든 일본·유구국도(日本琉球國圖)와 대명 천하도(大明天下圖)도 비단과 종이로 만든 족자(簇子)가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만든 지리지 안에는 팔도 주군도(八道州郡圖)·팔도 산천도(八道山川圖)·팔도 각일 양계도(八道各一兩界圖)·요동도(遼東圖)·일본도(日本圖)·대명도(大明圖)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서 가장 긴요한 것들을 모두 관에서 거두어 홍문관에 비장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도 한결같이 관에서 거두어 의정부(議政府)에 보관하게 하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총통등록(銃筒謄錄)》은 병가(兵家)의 비장이 되는 서적으로서, 세조조에 최산해(崔山海)와 신의 장인 변상근(邊尙覲)이 각기 한 건씩 받아서 오로지 화포(火砲)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는데, 지난 병진년에 <이 책들을> 모두 대내(大內)로 거두어 들이게 하였음은 참으로 주밀(周密)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관에 한 건이 있고 문무루(文武樓)에 21건이 있는데, 만일 간사한 사람이 훔쳐가서 이(利)를 삼는다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신이 원하건대 지금 이후부터 성상께서 보는 한 건 외에는 모두 언문(諺文)으로 서사(書寫)하여 내외(內外) 사고(史庫)에 각기 한 건씩 보관하게 하며, 해당하는 신하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군기시(軍器寺)에 한 건을 두어서 제조(提調)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한자(漢字)로 서사된 것은 모두 불태워 버려서 만세를 위하는 계책으로 삼게 하소서.

1. 신이 엎드려 들으니 당(唐)나라 개원 때에 토번(吐蕃)이 《모시(毛詩)》와 《상서(尙書)》를 요구하였으나, 당나라에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일에 영안도 관찰사가 《고려사》를 요청하여 그 경내(境內)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고려사》는 전공(戰攻)의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전부 기록한 것이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물며 본도(本道)의 산천이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경계가 야인(野人)과 맞닿은 곳이어서 전에는 탁청(卓靑)과 조휘(趙暉)의 사건이 있었고, 뒤에는 역적 이시애(李施愛)의 변란이 있었습니다. 무릇 일은 미리 방지(防止)하여서 곡진(曲盡)하게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려사》를 도로 거두

어 들여서 사관(史館)에 보관하고, <영안도에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각 1부씩을 주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당(唐)나라의 등세륭(鄧世隆)이 표문(表文)을 올려 태종의 문장들을 찬집(撰集)하기를 청하였는데, 태종이 말하기를, '양(梁)나라 무제(武帝) 부자(父子)와 진(陳)나라 후주(後主)와 수(隋)나라 양제(煬帝)는 다 문집(文集)이 있었지마는, 어찌 나라가 망(亡)함을 구하였던가? 그러니 임금 된 이로서는 덕정(德政)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문장을 하여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양성지는 <태종의> 이러한 말이 훌륭함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소(疏)를 올려 청하였음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임금이 좋아하고 숭상함을 헤아려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아첨을 바친 것이 심하다." 하였다.】

【원전】 10 집 29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과학-지학(地學) / *군사-군기(軍器)

《 성종 138 13/02/28(정묘) / 이세좌 · 민사건이 양성지가 건의한 《고려전사》의 간행을 시행하도록 청하다 》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이세좌(李世佐)·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여 《고려전사(高麗全史)》 홍의초(紅衣草)를 간행하기를 주청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간행하지 말도록 청합니다. 신이 그 서적을 보니 매우 상밀(詳密)하게 된 것이어서 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적이 어떠한가?"

하였다. 송질이 대답하기를,

"양성지는 신의 처조부(妻祖父)입니다. 양성지가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세조께서 그 서적을 소중하게 여기어서 권남(權擥)에게 명령하여 양성지와 더불어 그 책을 간행하라고 하였다가 곧 다시 그 일을 정지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서적은 지금의 《고려사》와 비교하면 자못 자세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적을 가져다가 <궁내로> 들여라."
하였다.

【원전】 10 집 30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성종 139 13/03/18(병술) / 내시 정존이 조종조부터 오래 있었음으로 품계를 올려 주겠다고 승정원에 전교하다 》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정존(鄭存)에게 품계를 올려 주려 하니, 다음 정사(政事) 때 다시 아뢰어라. 내가 <정존이> 매를 잘 조련시켰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조종조부터 오래 있었던 환관(宦官)이기 때문이다. 전일에 **양성지(梁誠之)**에게 자급을 높여 준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원전】 10 집 310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재정-진상(進上) / *과학-생물(生物)

《 성종 140 13/04/14(임자) / 양찬의 아비 양성지에게 사은전을 지어 올리게 하다 》

전교하기를,
"양찬(梁瓚)에게 승지(承旨)를 제수한 것이 어찌 그 아비 때문이겠는가? 쓸 만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나 **양성지(梁誠之)**를 불러서 사은전(謝恩箋)을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양성지가 즉시 와서 사은전을 지어 사은하였으니, 그 사은전에 이르기를,
"엎드려 아뢰건대 상유(桑楡)의 늙은 나이에 건곤(乾坤)의 넓으신 조화(造化) 같은 은총(恩寵)을 입어, 새와 같고 송아지 같은 천한 자식이 일월(日月) 같은 은덕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려우니, 가슴에 새겨 두어 어찌 그침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타고난 성질이 오활(迂闊)하고 일 처리하는 것이 거칠어서, 성조(盛朝)에 벼슬한 지 40년 동안에 일찍이 털끝만큼의 보익(補益)도 없었으며, 조정의 탄핵(彈劾)을 받은 지 5, 6년이 되어 한갓 시위 소찬(尸位素餐)의 비난을 남겼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종신(終身)해도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

까? 넓으신 은총이 망극(罔極)하여 서대(犀帶)의 반열(班列)에 뛰어 올려 주시고,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젊은 자식에게 또한 용후(龍喉)의 직임을 제수하여 주셨습니다. 신(臣) 양찬(梁瓚)과 같은 자는 일찍이 궁마(弓馬)를 업으로 하고 시서(詩書)를 배우지 않았는데, 예묘(睿廟)의 막대(莫大)한 은총을 받아 벼슬이 당상(堂上)을 더럽히게 되고, 성대(聖代)의 특별하신 권애(眷愛)를 입어 벼슬이 금병(禁兵)을 맡게 되었으니, 은총이 두터운 대우가 이미 깊고 분수[涯分]에 또한 만족합니다. 하물며 이 시종(侍從)의 열(列)은 더욱이 어리석은 자가 있을 곳이 못됩니다. 장차 직임(職任)이 무거워서 이기지 못하고, 간혹 계책(計策)이 졸렬(拙劣)하여 손상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감격과 두려움이 번갈아 모여들어, 두렵고 황송함이 진실로 더합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항상 어리석은 자식과 더불어 더욱 충성[衷赤]을 다하여,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는 결초 보은(結草報恩)하겠습니다. 영원히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여, 아들로선 효자(孝子)가 되고 신하로선 충신(忠臣)이 되어, 소절(素節)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양찬은 무사(武士)이나 궁마(弓馬)에도 잘하는 바가 없었고, 탐욕(貪欲)이 많고 간사하기가 그 아비보다도 더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의 이 제수(除授)에 물론(物論)이 매우 놀랍게 여겼고, 이로부터 정원(政院)이 더욱 경시(輕視)되었다." 하였다.】

【원전】 10 집 3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성종 140 13/04/20(무오) / 신정의 위조 여부를 대신들에게 묻고 의금부 당상에게 고문하여 알아내도록 명하다 》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三殿)에 문안(問安)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신정(申瀞)의 차첩(差帖)과 판부(判付) 등을 <가지고 와서> 아뢰니, 명하여 어제 의논한 재상(宰相)들을 불러서 묻기를,

"신정이 <차첩을> 위조(僞造)한 것을 내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고령(高靈)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안도에 있을 때에 잡아 오지 말도록 하였다. 지금 국문(鞫問)한 공사(供辭)를 보니 스스로 변명할 길이 없다. 신정이 비록 재상이나, 지금은 이미 재상이 아니다. 마땅히 형신(刑訊)을 해야 할 것인데, 경들은 어째서 의논하기를,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라.'고 하였느냐? 그가 신숙주(申叔舟)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후세에서 어찌 이 시대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겠느냐?"

하였다. 정창손·한명회·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강희맹(姜希孟)·이극증(李克增)·유지(柳

軽)·정괄(鄭佸)·이경동(李瓊仝)·신주(辛鑄)·조익정(趙益貞)·변종인(卞宗仁)이 의논하기를,

"신정이 제 손으로 한 정상(情狀)이 이미 명백하니, 다시 스스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형신(刑訊)할 필요가 없이 죄를 정해야 한다.'고 의논해 아뢰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위조한 정상을 끝까지 추궁하려고 한다면,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파(李坡)와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신 등의 본의(本意)는 고문(拷問)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천천히 물어가며 말이 궁하게 된 연후에 형장(刑杖)을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상(情狀)이 더욱 명백해졌는데도, 다만 자기가 하였다는 것을 명언(明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속히 고문(拷問)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신정이 승지와 병조 참의·이조 참판·공조 참판이 되었을 때의 동료(同僚)와 당상관(堂上官)·낭청(郎廳) 등을 불러서 <위조한> 차첩(差帖)의 필적(筆跡)을 물어보니, 이극배(李克培)와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이극증(李克增)·한계희(韓繼禧)·윤계겸(尹繼謙)·유지(柳軽)·호산군(湖山君) 이현(李鉉)·김순명(金順命)·김자정(金自貞)·이우보(李祐甫)·윤기반(尹起磐)·안호(安瑚)·윤석보(尹碩輔)·송영(宋瑛)·유문통(柳文通)·신수근(愼守勤)·서규(徐起)·이창신(李昌臣)·정이교(鄭以僑)·이복선(李復善)은 아뢰기를,

"차첩 안의 필적은 신정이 손수 쓴 글씨와 같습니다."

하고, 변수(邊脩)와 허종(許琮)은 아뢰기를,

"평소에 교분(交分)이 없고, 1, 2일 동안 같이 앉아서 공사(公事)에 서명(署名)하였을 뿐이므로, 신정의 필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정수곤(丁壽崑)은 아뢰기를,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였으며, 비록 서로 동료가 되기는 하였으나 공조(工曹)는 <본래> 일이 간소(簡素)하여서, 당상관이 좌기(坐起)하는 날은 한 달에 3, 4일에 지나지 아니하고, 모든 공문서는 당상관만이 스스로 서압(署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신정의 필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세광(李世匡)은 아뢰기를,

"신정은 지난 정유년 8월 15일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고, 신은 그해 10월 초 2일에 좌랑(佐郎)에서 체임(遞任)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가 겨우 45, 6일뿐이었고, 또 본래 상종(相從)하지 않아서 그의 필적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급(決給)은 아전이 쓴 것이 아니니, 그것은 신정이 손수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즉시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에게 명하여 수가(隨駕)하지 말고 곧 신정을 고신(拷訊)하여 아뢰게 하였다.

【원전】 10 집 32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출판-인쇄(印刷) / *인사-관리(管理)

《 성종 142 13/06/11(무신) / 행 지중추부사 양성지의 졸기 》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양성지의 자(字)는 순부(純夫)이고, 남원인(南原人)이며, 증 의정부 우찬성(贈議政府右贊成) 양구주(梁九疇)의 아들이다. 정통(正統) 신유년 진사(進士)·생원(生員) 시험에 합격하고, 또 문과(文科)에 제 2인으로 합격하여 처음에 경창부 승(慶昌府丞)에 제수되었다가, 성균 주부(成均主簿)로 옮겼다. 임술년에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에 임명(任命)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되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어느 날 세조(世祖)가 상참(常參)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양성지가 아뢰기를, '성체(聖體)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절주(節酒)하도록 하소서.'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오직 그대고 나를 아낀다.' 하고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가(加)하도록 명하였다. 이해에 집현전이 파(罷)해지자, 임금이 세자 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옮기게 하였다. 박팽년(朴彭年) 등이 주살(誅殺)되자, 사람들이 '양성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공모했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이 때를 당하여 사람으로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양성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을 보증한다.' 하였다. 경진년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에 승진되었다가, 신사년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계미년에 양성지가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여 서적(書籍)을 간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양성지를 제학(提學)으로 삼고,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가(加)하였다. 갑신년에 구현시(求賢試)에 합격하니, 세조가 일러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경(卿)을 오활(迂闊)하다고 하나, 나는 경과 서로 아낀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제수했다가 얼마 후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하였다. 병술년에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고, 무자년에 《세조실록(世祖實錄)》 찬수(撰修)에 참여하였다. 성화(成化) 기축년에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전임(轉任)되고, 신묘년에 순성 명량 좌리 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號)를 하사받고, 남원군(南原君)으로 봉하였다. 정유년에 다시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었다가, 대관(臺官)의 논박(論駁)을 받고서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바꾸고, 신축년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임금이 2품 이하의 당상(堂上) 문신(文臣)을 전정(殿庭)에 모아서 시(詩)와 논(論) 각 1편 씩을 시험하였는데 양성지가 장원을 차지하였으므로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초배(超拜)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諡號)를 문양(文襄)이라 하였는데,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襄)이라 한다. 양성지는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박람 강기(博覽强記)하고, 촉문(屬文)을 잘하였으나, 혈후(佶詬)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겁나(怯懦)하여 절조가 없었다. 일찍이 집현전에 있을 때에 동렬(同列)들이 그를 더럽게 여겨 배척하여 함께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랫동안 춘추관(春秋館)에 있었는데, 무릇 부탁이 있으면 요하(僚下)로 하여금 간략하게 글로 적게 하였다. 뒤에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가 되었는데 대중(臺中)에서 말할 일이 있어도 그대로 전교서에 앉아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세조가 혹 자기 뜻을 거역한다 하여 대관(臺官)을 국문할 때에도 반드시 이르기를, '내가 양성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줄 안다.' 고 하여 특별히 국문을 면하게 하였다. 그가 이조(吏曹)·공조(工曹)의 판서(判書)로 있을 때에 동취(銅臭)라는 말이 파다하였으며, 말(馬)을 뇌물로 주는 자는 말편자를 박아 준다고 칭탁하고서 바치고 채단(彩段)을 뇌물로 바치는 자는 돗자리로 싸서 주므로, 그때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여 말하기를, '말 발굽에 돈이 들어 있고 돗자리 속에 비단이 들어 있다.'고 하고, 또 오마(五馬)의 조롱도 있었다. 혹자(或者)는 '말발굽에 돈이 들었고 돗자리에 채단이 들었다는 말은 곧 다른 재상을 가리킨 것이고 양성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미워하여 하류(下流)에 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이었다. 금상(今上)이 즉위(卽位)하자 양성지는 김수온(金守溫)·오백창(吳伯昌)과 상소(上疏)하여 논공 행봉(論功行封)을 청하여 드디어 좌리 공신에 참여하였다. 일찍이 당(唐)나라·송(宋)나라의 율시(律詩) 수십 수(首)를 초(抄)하여 《정명시선(精明詩選)》이라 이름을 붙여서 올리고 후한 상(賞)을 받았다. 그리고 상서(上書)하여 건론(建論)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모두 오활(迂闊)하여 쓸 만한 것이 못되었다. 어느 날 봉장(封章) 십여 통(通)을 가지고 춘추관(春秋館)의 요속(僚屬)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아뢴 것인데 《사기(史記)》와 아울러 기록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요속들이 증빙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써 비난하자 양성지가 오히려 비밀히 청탁하였는데, 마침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화를 내면서 자책(自責)하여 이르기를, '노부(老夫)는 쓸 모가 없도다.' 하고, 뒤에 곧 전후(前後) 소장(疏章)을 모아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남원군주의(南原君奏議)》라 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세조(世祖)께서 나를 왕좌지재(王佐之才)가 될 만하고, 제갈량(諸葛亮)에게 견주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듣는 자들이 광릉(光陵)의 하교(下敎)가 농담[調戱]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원전】 10 집 342 면

【분류】 *인물(人物)

《 성종 148 13/11/25(기미) / 장령 윤간이 이파의 승직이 부당함을 아뢰다 》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윤간(尹倎)이 아뢰기를,

"이파(李坡)는 별다른 공로가 없고 다만 글을 강(講)한 것으로써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뛰어 올렸으니, 뒤에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공을 세우면 장차 무엇으로 상(賞)을 주겠습니까? 작상(爵賞)은 임금이 신하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전자에 **양성지(梁誠之)**·정괄(鄭佸) 등도 모두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 자급을 뛰어 올렸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드디어 격례(格例)를 이루면 벼슬이 어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파(李坡)의 초자(超資)를 어찌하여 글을 강(講)한 것으로써 얻었다고 하는가? 재주가 쓸 만하면 어찌 자격(資格)에 구애하겠는가? 이제 승평(昇平)한 날이 오랜데, 만약 변경의 공(功)을 세우기를 기다려서 자급을 올리면 쓸 만한 인재가 반드시 침체(沈滯)됨이 많을 것이다."

하였고, 헌납(獻納) 이종윤(李從允)이 아뢰기를,

"만약 한 급(級)을 올리는 것이라면 신 등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한 품(品)을 뛰어서 제수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파는 쓸 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초자(超資)하도록 명하였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이제 다시 두도록 명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성상께서 삼대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천하로써 어버이를 봉양함은 효도의 지극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창고가 쓰기에 족한데 어찌 반드시 장리를 놓은 뒤에야 삼대비전의 쓰는 것을 위한다 하겠습니까? 내수사 노자(奴子)가 장리를 빙자하여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많으니, 청컨대 두지 마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이창신은 대의(大義)로써 아뢰는 것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대군(大君)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다시 이 법을 세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창신의 말은 대의(大義)로는 옳으나, 천자는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고, 제후(諸侯)는 한 나라를

집으로 삼는데, 한 나라의 창고가 어느 것이 국왕의 소용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법을 다시 세운 것은, 어찌 자손의 생활을 위해서 이 재물을 놀린다는 이름을 얻겠는가? 다만 삼전(三殿)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삼전(三殿)에서 몇 말의 쌀을 쓸 때에도 반드시 하나하나 풍저창(豊儲倉)과 군자감(軍資監)에서 가져다 쓰겠는가? 또 내가 비록 1천만 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삼전(三殿)에서 어찌 즐겨서 마음 편히 받겠는가? 만일 삼전(三殿)에서 안심하고 쓰게 하려면 내수사 장리를 다시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사(內需司) 노자(奴子)가 폐단을 일으키는 자를 과죄(科罪)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 수령이 환자곡[還上穀]을 지나치게 거두는 것도 죄를 주는데 내수사 노자가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엄하게 징계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이창신이 말하기를,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합니까?'고 하였는데, 이름을 장리(長利)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장리라는 이름을 고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실상을 고치기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였다.

【원전】 10 집 41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구휼(救恤)

성종 14년

《 성종 156 14/07/08(무술) / 대사헌 손순효와 대사간 박계동이 합사하여 송영을 논핵하다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손순효(孫舜孝)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박계성(朴繼姓)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가 《대전(大典)》을 상고하건대,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자로서 사로(仕路)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동반(東班)의 벼슬을 제수(除授)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만세의 상법(常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경인년·신묘년 사이에 내린 전지(傳旨)에, '난신에 연좌된 자는 대성(臺省)·정조(政曹)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서용(敍用)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때 대간(臺諫)이 상소하여 논박하였는데, 다시 내린 전지에, '난신에 연좌된 자로서 사로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동반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제수된 자는 모두 서반(西班)으로 옮겨 임명하되, 이미 부임한 수령(守令)은 체대(遞代)할 때에 서반에 서용하라.'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전하께서 인심(仁心)에서 발하여 성헌(成憲)에서 멈추신 것입니다. 송영(宋瑛)은 난신의 조카이고 그 현능(賢能)함도 알 수 없는데, 다만 집안이 종척(宗戚)에 관계되므로 성은(聖恩)을 관대하게 입었습니다. 감찰(監察)에 제배(除拜)된 것은, 마침 전하께서 용잠(龍潛) 때이고 국가에는 근심이 많은 때였는데, 세조(世祖)께서 승하하시고 예종(睿宗)께서 편찮으시어 조정(朝廷)이 당황하였으므로 요행히 얻은 것입니다. 선전관(宣傳官)에 제배된 것은 한때의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이고, 유사(有司)에서 법에 따라 서경(署經)하여 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감찰을 제수(除授)하였으니 이제 고칠 수 없다.'고 전교하신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김국광(金國光)은 전에 삼공(三公)을 지냈으나 다시 제배 할 때에 대간이 논박하기 때문에 고쳤고, **양성지(梁誠之)**는 전에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으나 다시 제배할 때에 또한 대간이 논박하기 때문에 멈추었으니, 어찌 기왕에 허물하지 않았다 하여 그대로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난신에 연좌된 무리가 당초 죄를 바룰 때에는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다가, 방면(放免)된 뒤에는 사로(仕路)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기를 바라고, 이미 사로에 통하면 또 현직(顯職)을 바라서, 오직 자신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대간(臺諫) 때문이고 정조(政曹)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얻을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얻고야 마니, 조정에서 악(惡)을 징계하는 법과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에 있어서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간언(諫言)을 따라 거절하지 않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 의심하지 않으시며, 무릇 정사(政事) 하나하나를 으레 법에 따라 지키셨는데, 송영만은 기이한 재능이 없는데도 세 번이나 대관(臺官)을 제수하시니, 신들이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하여 개차(改差)하고 다시 좋은 사람에게 제수 하여 이목(耳目)의 벼슬을 존중하신다면, 매우 다행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10 집 48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성종 18년

《 성종 200 18/02/26(병신) / 양성지가 소장한 태조 어제시 등을 바친 병조 정랑 송질에게 표피를 내려주다 》

병조 정랑(兵曹正郎) 송질(宋軼)이 처조(妻祖) **양성지(梁誠之)**가 소장한 태조 어제시(太祖御製詩) 한 수(首), 태종 어제시(太宗御製詩) 두 수 세조 어제시(世祖御製詩) 서(序) 아울러 한 수와 군신 응제시(群臣應製詩) 두 권(卷)을 바치니, 전교하기를,

"송질이 사사로이 간직할 수 없음을 알고서 바쳤으니, 그 뜻을 상줄 만하다."

하고, 표피(豹皮) 한 장(張)을 내려 주었다.

【원전】 11 집 192 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연산군 4년

《 연산 029 04/03/26(임술) / 지평 신복의가 이창신의 일에 대해 논하다. 문과 방방을 하다 》

지평 신복의가 아뢰기를,

"**양성지(梁誠之)**는 탐오(貪汚)하다 해서 대사례(大射禮)에 참예하지 못했으며, 정인지(鄭麟趾)는 재물을 모았다 해서 삼로 오경(三老五更)에 참예를 못했사온데, 지금 창신(昌臣)은 심술이 부정함이 탐오하고 재물 모은 데에 비할 바 아니온즉, 청컨대 빨리 강서관(講書官)의 소임을 바꾸옵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문과(文科)에 정인인(鄭麟仁) 등 33인을 뽑았다.

【원전】 13 집 30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연산군 11년

《 연산 058 11/07/19(임인) / 응방 제조 2원을 가설하게 하여, 이손 등으로 맡게 하다 》

전교하기를,

"응방 제조(鷹坊提調) 2원을 가설(加設)하라. 이손(李蓀)·김수동(金壽童)은 비록 매나 개의 일을 알지는 못하나 마음을 대해 일을 보살핀다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없으랴. 차임(差任)하라. 일찍이 들으니 '세조조(世祖朝)에 대사헌(大司憲)으로 하여금 사찰(寺刹)의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하는데, 이제 풍속이 순박해진 때를 당하여 아랫사람에 어찌 위의 명을 싫어하고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랴!"

하였다.

세조가 불교를 숭상하여,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원각사(圓覺寺)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그 뒤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녹수(綠水)의 집을 감독하여 짓게 하였다.

【원전】 14 집 11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진상(進上) / *건설-건축(建築)

중종 13년

《 중종 034 13/08/12(기묘) / 조강에 나아가니, 송 진종이 천서를 받은 고사를 논하고, 15일 추석에 풍정하기를 아뢰다 》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민수원(閔壽元)이 아뢰기를,

"이 책에서 말한 '천서(天書)'의 일은 지금으로 살펴보면 어린아이 장난과 같습니다. 그 처음에 왕흠약(王欽若)이 계획을 꾸민 것은 오직 구준(寇準)을 바로 배척하고자 하였을 뿐이었는데, 송 진종(宋眞宗)이 학문이 없고 사심(私心)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에서 상서가 내렸다고 속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도 '왕단(王旦)의 의견에도 불가함이 없겠는가?' 하였으니, 왕단이 황제에게 존중을 받았음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다만 왕단이 재상의 도량은 있었으나 과단하고 용감한 기절(氣節)이 없었으므로 그 잘못을 힘껏 쟁변(爭辨)하지 못하여 황제로 하여금 이런 허탄(虛誕)한 일을 숭상하게 하였으니 왕단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그를 절개를 잃은 풍도(馮道)에 비하는 이도 있었으니, 아마도 세상에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용납된 때문일 것입니다. 왕단이 마침내는 뉘우치고 그의 아들에게 유언(遺言)하기를 '머리를 깎아버리고 염(殮)을 하라.' 하였으니, 왕단도 그 생애를 바르게 마치지 못함을 스스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소인이 틈을 보고서 그르쳤으니, 인주가 좋아하고 숭상함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조(我朝)의 세조(世祖)께서 불도(佛道)를 좋아하시매, **양성지(梁誠之)**가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부처에게 절하였는데,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임을 모른 것이 아니라, 세조께서 바야흐로 불도를 숭상하시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오는 15일에 유생의 전강(殿講)이 있다고 하니, 이는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곧 추석이니 속칭 삼명일(三名日)입니다. 삼명일인 정조(正朝)·단오·추석에는 어버이가 있는 사대부(士大夫)는 술상을 올려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어버이가 없는 사람은 묘소를 찾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상께서 자전(慈殿)이 계시는데, 매양 재변을 두려워하고 또 자전이 금지하시어, 명일(名日)이 되어도 풍정(豊呈)을 올리는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속절(俗節)에 자전께 잔치상을 올리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며, 유생의 전강(殿講)도 물려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원전】 15 집 47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중종 30년

《 중종 079 30/01/10(신미) / 불순한 말을 한 홍섬의 일에 대해 허황이 그 전말을 아뢰고 여러 신하들이 논의하다② 》

소세양은 아뢰기를,

"신은 경악(經幄)에 오래 있어서 시사(時事)를 두루 보았습니다. 기묘년 당시에는 조정에 잡다한 의논이 없어서 당(唐)·우(虞) 삼대(三代)의 정치에 이르렀다고 일컬었으므로 괴이하고 과격해지는 폐단이 이루어지는 줄을 모르다가, 패하게 된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그 시비를 몰라서 다만 품은 생각을 펴다가 죄받은 것이라고 핑계대었습니다. 다행히 조정의 공론에 힘입어 이제는 이미 쾌히 정하여졌습니다. 그 뒤로 사림(士林) 간에 시비가 비로소 정해져 언론이 겨우 통하였는데, 심정(沈貞)과 이항(李沆)이 서로 의논하여 '조광조(趙光祖)의 여습(餘習)이 있다.' 하고 배척하며 중간에 가로막고 서서 위복(威福)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다복(多福)하여 그들 스스로 죄를 받아 패하였습니다. 박씨가 변을 꾸민 일은 여염의 미천한 백성이라도 누가 모르겠습니까.' 위에서 통쾌하게 죄를 결단하시어 이렇게 여러 갈래가 된 폐단이 이제 대강 정하여진 듯하나, 기묘년의 유류(遺類)와 권간(權奸)의 여얼(餘孼)과 박씨에게 당부(黨附)하는 자들이 사이에 끼어들어 틈을 벌이고 서로 시비하여 사론(邪論)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으니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위에서 그 시초에 처리를 잘못하여 이런 폐단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섬은 시종(侍從)·대간(臺諫)·독서당(讀書堂)을 지내어 조정의 반열(班列)에서 드날렸는데, 감히 사론으로 언관(言官)을 겁주어 동요시키려 한 데에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추문하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위에서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우러러보아 감화될 것이며, 소인이라도 제멋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접때 신은 외방(外方)에 있었으므로 조정의 시비를 잘 알지는 못하나, 사정(邪正)을 가리고 시비를 정하는 것은 성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고, 손주(孫澍)는 아뢰기를,

"군자와 소인이 나뉘는 것은 마치 얼음과 숯이 같은 그릇에 용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홍섬의 일은 조정에서 환히 아는 바이니, 쾌히 결정하면 사론이 절로 그칠 것입니다.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시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허항(許沆)은 아뢰기를,

"정광필은 처음에 기묘년 사람들을 속이고 또 권간(權奸)을 속이고 마지막에는 후진을 꾀어 흉악을 반복하나, 형적이 괴격(詭激)하여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였으므로, 아부하는 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얼마 안 됩니다."

하고, 소봉은 아뢰기를,

"귀양간 사람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을들을 드나들며 위태하고 간사한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사람이 두려워서 동요하도록 하며 관청에서 버젓이 음식을 바치도록 하니, 철저히 금지하여 그 간사함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채세영은 아뢰기를,

"홍섬의 말은 송순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이미 드러난 것을 엄히 다스려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광필이 22년 동안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반복하고 무상(無狀)함으로 일세(一世)를 속인 것이 바로 사론의 뿌리인데, 뿌리를 엄히 다스리면 지엽(枝葉)은 다스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광필이 수상(首相)으로서 하는 짓이 이러한 것을 위에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 정상을 역력히 환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근래 사론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길이 여러 갈래이므로 사정(邪正)과 시비가 뒤섞여서 그런 것입니다. 흉악한 무리의 싹에서 여러번 변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국가가 복이 있어 위태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홍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아비도 추문하여야 합니다."

하고, 황효공은 아뢰기를,

"요즈음의 일과 전에 정광필이 한 일을 위에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행히 성상께서 환히 아시고 국가가 복이 있어 사론하는 무리의 정상이 이미 드러나서 시비가 절로 정하여졌으나, 끝내 인심이 위사(僞詐)하여 분명한 일이라도 숨기는 것이 버릇이 되었으니, 홍섬의 일은 참으로 끝까지 추문하여야 하고 그 아비도 아울러 추문하여야 합니다."

하고, 심언경은 아뢰기를,

"요즈음의 논의를 보면, 송순(宋純)과 박홍린이 서로 힐난한 뒤로 사정(邪正)이 갈라졌는데, 오늘 시비를 결정하여 정로(正路)가 밝아지면 뭇 간사한 자가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홍섬이 밤에 대사간의 집에 가서 위태하고 간사한 말을 많이 하여 두려워 동요하게 하였으니, 매우 흉패합니다. 어제 간원이 체직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견딜 수 없이 두렵습니다. 대저 간관을 자주 체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주 체직하면 뭇 간사한 자가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고, 윤임(尹任)은 아뢰기를,

"사론이 뚜렷하다면 반드시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홍섬 부자가 말한 것은 간사하여, 한 집안에서 우연히 나온 것만이 아니니, 끝까지 추문하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심언광은 아뢰기를,

"요즈음 대간이 논란하는 것이 있으면 여염 사이에서 서로 대간을 시비하니, 누가 감히 나랏일을

하겠습니까. 홍섬은 허항(許沆) 만을 겁주어 동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때의 언론을 맡은 자를 다 겁주어 동요시켜서 저지하려 한 것입니다. 예전에 왕안석(王安石)이 신법(新法)을 시행하고자 하여 정이(程頤)와 논란하였는데 그 아들 왕방(王雱)이 '한기(韓琦)와 부필(富弼)을 효수(梟首)하면 신법이 시행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왕안석이 반드시 왕방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섬의 말은 초야의 사람이 망언(妄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 아비 홍언필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보고 그 아들과 늘 말하였으므로 홍섬이 허항에게 이 말을 한 것이며, 반드시 이 말로 허항을 겁주어 동요시키려 한 것은 허항이 대사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언론할 때에 장관(長官)은 먼저 말하고 하관(下官)은 먼저 말하지 않으니, 매우 그릅니다. 대저 하관의 의논이 격렬해져서 시비가 뒤섞이면 상관은 재제할 뿐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홍섬이 허항을 겁주어 동요시키려 한 것은 허항만이 아니라 한때의 사람들을 다 동요케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최세절은 아뢰기를,

"사론(邪論)을 마음대로 하려는 자는 혹 나랏일에 힘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겁을 주어 동요하게 하여 저지합니다. 이제 성상께서 밝게 살펴 아시고 조정이 당당하니 사정(邪正)이 절로 분별될 것입니다.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심언광은 아뢰기를,

"허항만이 나랏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뭇 선비가 다 하는데, 홍섬이 허항만을 동요시키려 한 것은 조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허흡은 아뢰기를,

"홍섬이 밤에 신의 집에 와서 '영공(令公) 형제는 명예와 지위가 매우 높으나, 우리 아버지도 「화를 반드시 먼저 입을 것이다.」 하였다. 대간의 길이 어찌 그리 넓은가.'라고 했으니, 그 정상이 매우 흉악합니다. 대저 사류가 말을 다 못하는 것은 기묘년 이후로 조정에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여러 갈래이므로 시비가 정하여지지 않아서 사론(邪論)이 때지어 일어나는데, 정광필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기묘년 사람들이 패할 때에는 구제하여 명예를 바랐고, 기묘년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김극핍·심정(沈貞)·이항(李沆)이 위복(威福)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면서 선비 중에 말하는 자가 있으면 '조광조(趙光祖)의 여습이 있다.' 하고 배척하니, 정광필은 또 그 간사한 자들에게 붙어 흉사(凶邪)한 짓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패하고 나서는 외롭고 위태로운 줄 스스로 알고 일가붙이를 시켜 사림 간에 폭로하여 후진(後進)을 속이고 꾀어서 잘 보이려 하였으니, 그 흉악함을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홍섬의 일은 이미 드러났으니, 다스리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기묘년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도 있고, 권간의 무리에 붙는 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서 변화를 관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인심이 의심하니, 오늘 시비를 결정하소서. 그러면 사론이 절로 그칠 것입니다. 천안(天顔)을 지척에 대하고도 말을 않으니, 밖에 있어서는 알 만합니다."

하고, 허항은 아뢰기를,

"정광필은 기묘년 사람에게 어울려 붙고, 기묘년 사람이 패하고 나서는 도리어 권간의 무리에 붙고, 권간이 패하고 나서는 다시 후진의 무리를 꾀었으니, 줏대없고 무례하여 매우 흉악합니다. 정광필은 기묘년 사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자신을 지키는 꾀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묘년의 사류(士類)를 아낀다면 신묘년의 사류는 무슨 죄가 있었기에 어육(魚肉)처럼 참살하려 하였겠습니까. 정광필은 다스림이 밝지 못한 세상을 만났더라도 그 속이는 술책을 마음대로 부릴 수없을 것인데, 더구나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조정이 당당한데 감히 속이는 꾀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기묘년 사람도 정광필에게 속은 것을 모르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이렇게 갈래길이 많은 폐단을 늘 간(諫)하려 하였으나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좌우에 입시(入侍)한 자는 다 마음을 열어 숨김없이 아뢰어야 하는 처지인데 잠자코 말이 없으니, 홍섬의 일만이 상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세도 상심됩니다."

하고, 김근사는 아뢰기를,

"허항이 아뢴 것이 옳습니다. 조정에 갈래가 많아진 지 오래인데, 그대로 구습을 따라 결정하지 않아서 사론이 틈타고 끼어들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변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요즈음 귀양간 사람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데, 치성(熾盛)하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니, 금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김안로는 아뢰기를,

"조정에 길이 많은 폐단을 신이 이미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평소에 사사로이 의논하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각각 회포를 아뢰게 하소서. 이제 조정의 신하가 모두 입시(入侍)하였고 남은 자는 얼마 안 되는데, 더구나 여기 있는 자는 보필하는 신하가 아닙니까? 이 일은 조정의 반열(班列)에서 시끄러이 논란되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묘년 사람들은 몰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나라에 죄를 입은 자가 많은데, 오래되면 또한 마음을 고쳐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천도(天道)도 오래되면 바뀌는 것이니, 조정에서 기묘년 사람을 소통시킬 만하다고 생각하면 등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대저 조정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아서 사론(邪論)이 어지럽고 사림(士林) 가운데에서 늘 옥사(獄事)가 일어나는데, 옥사가 그치지 않는 것은 곧 근본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의혹된 지 오래되었는데 내일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오늘 시비를 아주 정하소서. 시비가 정하여지면 누가 감히 그 형적을 숨기고 그 사이에서 저지하겠습니까. 드러나게 되면 중한 법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서 조정이 환히 알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김근사는 아뢰기를,

"조정에 길이 많은 폐단을 여기에 들어온 신하에게 하문하여 시비를 정하소서."

하고, 황효공은 아뢰기를,

"홍섬이 말한 것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을 것이므로 죄다 들은 뒤에 아뢰고자 한 때문에, 반드시 상세히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하고 나면 물의가 반드시 절로 나올 것입니다. 대저 조정에 갈래가 많으므로 사론이 끊이지 않으니, 시비를 결정하여 흉악한 무리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강징은 아뢰기를,

"홍섬이 대간의 집에 가서 이 사론을 발설하였으니, 지극히 간사합니다. 대저 위에서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시면, 간사한 꾀가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섬이 말한 것은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의심할 일이 아니나, 이제 조정에 갈래가 많은 폐단을 의논만 하고 파하면 안된다. 아무 아무는 이러하다고 말하면 조정에서 확정하겠거니와 성지를 굳게 정한다 하더라도 조정의 의논이 정하여지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허항이 아뢰기를,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는 것은 위에서 하시는 것인데, 좌우에 입시한 신하가 갈래가 많은 폐단을 논하지는 않고, 번번이 성지를 굳게 정하시라고만 아뢰니, 이는 **양성지(梁誠之)**가 7년 동안 간관으로 있으면서 다른 논란이 없이 늘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아야 한다고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고, 김안로는 아뢰기를,

"아무 아무라 말하여 제거하면 다치는 자가 많을 것이니, 그 형적이 드러난 뒤에 중한 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대저 그 뿌리를 제거하면 지엽(枝葉)은 다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도둑이 변하여 군자가 된다.' 하였으니, 임금이 어떻게 거느리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모두 천성이 군자인 사람 만을 얻을수 있겠습니까. 속아서 잘못 간사한 무리에 붙은 자들은 마음을 고쳐서 변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허흡은 아뢰기를,

"이 길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나랏일이 크게 잘못 될 것이니, 오늘 반드시 결정하여 시비를 가려 바루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항은 아뢰기를,

"뜻대로 못한 자와 속아서 잘못된 자, 그리고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일컫는 자가 있어 사론(邪論)을 힘쓰고 시비를 어지럽히는 것은 다 정광필이 줏대없이 빌붙어서 후진을 속여서 꾄 데에서 근원한 것입니다. 또, 그 스스로 고상한 체하는 자가 참으로 고상한 자이겠습니까. 정광필을 엄히 다스리면 홍

섬 같은 무리는 죄주지 않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임용한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근원을 다스린다면 그 흐름은 절로 맑아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그 시비를 정하여 한꺼번에 다스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안로는 아뢰기를,

"그 사람을 추문(推問)하여 죄를 정하고자 하면, 조정이 소요하여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속아서 잘못된 사람은 조정에서 취향을 바로잡아 줄 따름입니다. 잠시 기다려서 그래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버티거든 그 소굴을 없애어 진정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뜻으로 조정에 하유(下諭)하고 엄하게 경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랫사람의 생각은 '정광필이 다시 일어나면 나 자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여, 그를 가리켜 원로(元老)로서 덕이 큰 사람이라 하며, 간사한 말을 퍼뜨려 조정을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큰 일이 정하여지고 나면 작은 일은 날날이 정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상께서 환히 아시니 쾌히 시비를 가리소서. 육국(六國)의 각축하던 전국(戰國) 시대에도 신하를 복종시켜 쓸 수 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고 조정에 다른 일이 별로 없으니, 어찌하여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비를 정하는 일은 승전을 받들어 중외에 효유하라."

하였다. 김안로가 아뢰기를,

"하유하신다면 자세하게 글을 짓되, 전에 논한 국시(國是)가 크게 정하여졌다는 뜻과, 어느 길은 어떠하고 어느 길은 어떠하다는 것과, 귀양사는 사람이 겁을 주어 동요하게 하려한 말까지도 자세히 갖추어 지으소서. 중외에 효유한 뒤에, 감히 간사한 말을 함부로 하여 그 간사한 술책을 부리려 하면 조정에 반드시 소문이 있을 것이니 천둥 같은 위엄을 엄하게 보여 마땅히 중법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황효공은 아뢰기를,

"홍섬이 '우리 아버지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읽으며 허황에게 보이고 싶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그 책을 보면 홍언필의 뜻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섬의 일은 어제 이미 거두었고, 대신을 면대하고 나서 추문하려 하였으니, 전지를 받들어 추문하라."

하였다. 채낙이 아뢰기를,

"홍섬이 말한 것에는 뿌리가 있을 것이며, 승복하면 절로 드러나겠으나, 반드시 그 뿌리를 안 뒤

에야 정상이 사악하고 조정이 여러 갈래라는 것도 분명하여질 것입니다. 지난 12월 신이 수찬(修撰)이었을 때에 홍섬이 홍문관에 와서 '대간의 길이 어찌 그리 넓으냐?' 하고 또 이조의 낭관을 천거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신은 본디 홍섬과 교분이 없으므로 그 속을 몰랐습니다. 신이 그의 벗들에게 들으니, 홍섬은 평소에 조심성이 많다 하는데 요즈음은 이러하니, 한 집안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번번이 사론(邪論)을 내어 언관들을 동요하려 하니, 엄히 다스려서 시비를 가리소서."

하고, 정희렴은 아뢰기를,

"홍섬의 일은 상세히 아뢰고자 하였으나 뿌리가 많을 것이므로 곧 상세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홍섬이 제 아비 홍언필의 말을 들어서 말하기를 '지금을 어떤 때라고 생각하느냐?' 하며 공론을 견지하는 사람을 겁주어 동요시키려 하였는데, 그 근원이 비롯된 데가 있고 기미가 이미 드러났으니,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논의가 정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박충원이 아뢰었다.

"간원의 뜻은 정희렴이 아뢴 것과 같습니다. 홍섬은 사론(邪論)을 힘쓰고 그 아비 홍언필은 때를 만나 행세하는 자인데, 여러 가지로 위협하여 동요시키려 하니, 이는 조정에 이론(異論)이 많은 폐단으로 나랏일이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시(國是)가 정하여지면 이러한 사파(邪派)는 그 간사함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원전】 17 집 562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중종 32년

《 중종 086 32/12/19(갑자) / 혜성의 출현으로 재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논하다 》

영의정 윤은보, 우의정 홍언필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관상감이 '혜성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는데, 오늘 정원에서 또 '혜성이 나타난 것이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므로, 관상감의 관원을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대체로 재변은 비록 경중(輕重)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혜성은 바로 변고의 큰 것이다. 지난 신묘년에 이런 혜성의 출현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간인(奸人)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하였으니 변고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감응됨이 있는 것이다. 지금 비록 큰 간인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니 두려워하며 반성해야 한다.

요즈음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외부의 의논이 시끄럽다.'고 하였다. 옛날부터 소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할 때에는 반드시 당류(黨類)를 끌어서 진출하게 하여 자기편으로 삼았었다. 삼흉(三凶)의 심복이 되었던 자들은 그 죄를 형용할 수 없다. 그러나 더러 외모(外貌)로 붙좇았던 자들까지 전부 다스린다면 떠들썩하게 소요할 것이다. 그 때문에 진정시키고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앞서 이미 여러 번 말하였다. 처음 삼흉을 제거할 때에 대간이 만약 아무개는 아무개의 무리라고 지목하여 경중을 참작하고 구별하였더라면 뒤에 떠들썩하게 소요하는 폐단은 없었을 것이다. 그뒤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징치(懲治)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스스로 안정(安靜)할 수가 없었다. 지금 논계(論啓)한 심언광(沈彦光)·권예(權輗)·김광철(金光轍)은 틀림없이 세상의 평판이 있어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류는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기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혜성의 변고는 신이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변고는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반성하고 수양한다면 저절로 감응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이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대개가 인심을 진정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을 삼았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논입니다. 만약 삼흉(三凶)의 심복(心腹)이 되었던 자라면 당연히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붙좇은 자들은 모두 독기(毒氣) 있는 세력을 두려워하여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찌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저 삼흉들이 함정[機陷]을 만들어 더러 아무개는 박씨(朴氏)에게 아부하였다고 하며, 혹은 조정의 일을 망령되게 옳다 그르다고 하였다 하며, 혹은 실의에 빠져 조정에 들락거리며 일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모함을 꾸미기 때문에 붙좇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을 해친 것이 없는 자는 추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만약 전부

추구하여 의논한다면 사람마다 스스로 의심하고 두렵게 여겨 끝내 안정되는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대간이 처음 만약 분별하였다면 뒤에 추구하여 의논하는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들어보니 세상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언광과 권예는 삼흉에게 드나들었다고는 하나 심언광은 뛰어난 재주는 있으나 사특함은 없으며, 권예도 본래 그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조정에서 끝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간은 그를 높은 직임에 서용하지 말라는 의논만 했을 뿐입니다. 김광철의 일은 틀림없이 그가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실수한 것입니다. 대간이 아뢴 말도 그로 하여금 징계되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저녁에 혜성을 보았는데 운기가 있어 혜성처럼 보였으나 신묘년의 그 빛살이 환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다만 흰 기운이 두어 장(丈)쯤 되는데 머리와 꼬리는 구름이 짙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이의 큰 것이니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만약 비상(非常)한 변고를 보인다면 마땅히 비상한 덕(德)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시 성찰(省察)과 염려를 더하여야 합니다. 저 두세 사람의 일은 신은 지방에 있을 때의 일이라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은 응당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만약 처음에 분별하여 아뢰었더라면 뒤에 어찌 어지러운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기묘년에 관련된 사람들을 논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소급하여 추론하였기 때문에 매우 소요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관대하게 용서하는 때이고 심언광과 권예는 모두 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여기에 그쳤으니, 앞으로 반드시 점차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삼흉들은 늘 '변고는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하여, 상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었고, 또 '상의 마음이 견고하고 안정되었다.'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술책을 이루고자 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굽어보는 것이 매우 밝은데 어찌 환하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성(老成)들이 모두 돌아와서 조정이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만약 노성의 말을 듣고 옛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킨다면 조정이 저절로 화평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요스럽게 될 뿐입니다. 조정에 도(道)가 있으면 혜성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도가 없다면 혜성이 없더라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정치에 있어서는 더욱 스스로 반성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과 시종이 모두 진정시키고 화평하게 하려고 관대하게 용납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저 몇몇 사람들을 다만 높은 반열(班列)에서 체임만 하였다. 진정시키는 뜻은 마땅히 살피고 염려해야겠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홍문관의 차자에 '처치(處置)하신 것이 적합하여 서울과 지방의 인정에 정말 들어 맞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간의 처치한 것이 매우 적당하기 때문에 서간이 만연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홍언필이 아뢰기를,

"비록 옥당(玉堂)의 차자가 아니더라도 상께서 어찌 조정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고 감히 말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담론하며 거리낌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기미입니다. 옛날 정자산(鄭子産)이 향교(鄕校)를 허물지 못하게 하면서 '선(善)과 악(惡)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남들이 비록 그르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듣고 고칠 수 있다면 이것은 선(善)이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 유생들이 논(論)할 바를 꺼려하지 않으니 이것은 더욱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추방당한 신하를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조정에서는 혹시라도 어지러운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노성한 사람들이므로 털끝만큼이라도 일을 일으킬 염려는 없습니다. 신도 보잘것없는 자질로 외람되이 대신의 반열에 끼었는데 두려워하는 생각을 감히 일각(一刻)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즈음 탐욕하는 풍습이 날로 심하여 수령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여 폐단을 끼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각별히 죄를 다스리기는 하나 조금도 징계(懲戒)되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만약 솔선하여 검소함을 보인다면 탐욕하는 풍습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경(北京)에 가는 일행이 금은(金銀)을 많이 가지고 가서 무역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 폐단이 점점 극성해지면 아마도 뒷날에 공물(貢物)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자(李滋)가 홍문관의 관원으로 있을 적에 특명으로 의주(義州)에서 부정을 적발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 등의 짐바리를 그 경중(輕重)을 헤아려서 지나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을 가려서 파견하고 거듭 엄격하게 살피고 조사하게 하되 가끔 관원을 파견하여 강(江)가에서 부정을 적발하도록 하면 틀림없이 너무 지나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삼흉(三兇)의 시대에는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자는 감사(監司)나 사신(使臣)으로 선발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근신하지 않는 사람을 구차스럽게 가려서 파견하여 국가의 체모를 손상시켰으니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어찌 모두 현명하겠습니까. 다만, 조현범(趙賢範)과 같이 탐욕스럽고 거친 무부(武夫)는 결단코 파견할 수 없습니다. 성종조에는 사명(使命)을 중대하게 여겨 무릇 사신으로서 적합한 사람 다수(多數)를 서계(書啓)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으로 대궐에 나아갔었는데 낙점(落點)하여 보냈으니 지금도 예전대로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경(北京)에 갈 때에 관원을 파견하여 부정을 적발하게 한 것은 과연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주 할 수 없다. 사신(使臣)과 서장관(書狀官)을 가려서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살피고 단속을 더하게 한다면 비록 관원을 보내어 부정을 적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외람된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그전에는 은(銀)의 유출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죄율(罪律)도 엄중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가려는 은을 반드시 신 바닥에 감추거나 농(籠) 속에 넣어서 갔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고 공공연하게 가지고 갑니다. 이제 만약 별도로 내신(內臣)을 보내어 강가에서 부정을 적발하도록 한다면 틀림없이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얼음이 얼어붙은 뒤에는 강 건너편에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관원을 보내어 부정을 적발하게 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바꾼 물건을 본값에 준하여 비교하되 만약 그 물건이 본값에 합당하지 않고 짐바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官)에서 몰수하여 그 죄를 징계하게 하면 묵은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북경(北京)에가면 상(賞)으로 내려주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 물건으로 바꾸어 온다면 가지고 간 물건으로 그 많고 적은 것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윤은보가 아뢰기를,

"상(賞)으로 내려주는 것은 주로 의복인데 일정한 숫자가 있으니 이것은 쉽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물건은 만약 많으면 으레 관에서 몰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무릇 통사(通事)가 가지고 가는 것이 어찌 모두 자기 물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을 많이 싸가지고 가기 때문에 짐바리가 더욱 많습니다. 만약 특별히 더 엄격하게 금지시킨다면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을 전적으로 흐리멍덩한 관상감 관원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전에 문관(文官)이 별을 관측한 사례가 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안국(金安國)이 천문(天文)을 압니다."

하고, 홍언필은 아뢰기를,

"성세창(成世昌)도 천문을 압니다. 평상시에 그의 집안에서 별의 형상을 그려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세창이 지금은 틀림없이 눈이 어두울 것이나 그로 하여금 조짐을 점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성종조에도 김응기(金應箕)와 조지서(趙之瑞)로 하여금 천문을 관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옛날

의 예(例)대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혜성이 비록 병상(兵象)이라고 하나 이 때문에 병사(兵士)를 훈련시키거나 군졸(軍卒)을 점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함께 기용하는 것은 국운을 영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더러 무신을 승지(承旨)나 참의(參議)로 삼았는데 요즈음에 와서 참여시키거나 기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문무(文武)의 도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 수레는 틀림없이 뒤집힙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지모(智謀)와 사려(思慮)가 심원한 사람을 가려 명망을 길러서 기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충국(趙充國)·등예(鄧艾)·왕준(王濬) 등은 모두 지모와 사려가 심원했기 때문에 공(功)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기르지 않았다가 갑자기 풍진(風塵)의 경고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신은 벌의 변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아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조윤손(曺潤孫)을 병조 판서로 삼으셨는데, 그 밖의 합당한 사람도 모름지기 명망을 기르게 하여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무신(武臣)이 명망을 기른 뒤라야만 사졸(士卒)들을 향하여 나아갈 바를 알게 될 것이다. 경의 말이 매우 절실하고 마땅하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평안도 강가의 각진(各鎭)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강계(江界)는 적의 침입을 가장 받기 쉬운 곳인데 또 흉년을 만나, 일정한 주거없이 방랑하는 자가 태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즈음 오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상의원(尙衣院)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초피(貂皮)를 민간(民間)에 지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가죽은 진상(進上)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많이 잡아 서울에 와서 바꾸어 상납하는데 값이 너무 비싸므로 주민들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상하는 인삼(人蔘)은 제용감(濟用監)에만 바치는데, 지금은 각 고을에서 이것을 빙자하여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징수하여 사사로이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에게 부쳐 보내어 중국 물건과 바꾸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곤궁한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뒤로는 진헌(進獻)하는 인삼 외에는 지나치게 징수하지 말도록 각별히 하유한다면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쪽 지방의 군졸(軍卒)들이 강가의 각진(各鎭)에 방비하러 들어가게 되면 절도사(節度使)가 순행(巡行)하면서 군장(軍裝)을 점검하는데, 만일 장구(裝具)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곤장으로 벌을 가하기 때문에 군졸들이 그것을 매우 괴롭게 여겨 점점 곤궁하고 초췌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갑자기 변방에 변고가 생기면 이렇게 곤궁하고 초췌한 사람들로 어떻게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

까? 남쪽 지방의 군졸들은 모두 활을 잡았던 사람도 아니며 보졸(步卒)이 많고 길이 평탄치 않은데다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이 일찍이 감사(監司)로 있을 적에 보니 겨우 1식(息)의 노정(路程)만 가도 말이 피로하고 사람도 피곤하여 행진(行進)이 지체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군사(軍士)들이 군장(軍裝)을 소지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명령을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이 험난하여 소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도사가 점검하면서 곤장으로 처벌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형상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각진(各鎭)의 군인(軍人)은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 그 군인의 수를 계산하여 군기시(軍器寺)의 낡은 군장을 그 수에 맞춰 들여 보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바꿔가면서 전해 주도록 하되 군사들 자신이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매우 편리하고 용이할 듯합니다. 신이 늘 그것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매우 타당하다. 군기시(軍器寺)의 오래 묵은 군장은 아뢴 대로 들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요즈음 간인(奸人)들이 자기들의 악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엄중한 형벌로 위엄을 세워 감히 자기들을 의논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대체로 한 사람이라도 그의 생업을 얻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변고를 보이는 법입니다. 옛 말에 '형벌이라는 것은 정치를 돕는 기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형벌을 쓸 필요가 없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중정(中正)한 도리에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정상을 살피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여 사람의 목숨 살리기를 힘쓴다면 죄없이 잘못 걸려든 사람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벌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留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반드시 형옥(刑獄)에서 일어나므로 재앙을 없애는 방법이 어찌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형옥의 일은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었다.

"신이 들으니, 함경도의 추장(酋長)으로 경원(慶源)에는 작질금(作叱金), 경흥(慶興)에는 유울미(劉吾乙未)였습니다. 이 두 사람 뿐이었기 때문에 대접하고 주는 물품이 각별히 넉넉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윤(方輪)이 병사(兵使)가 된 뒤로부터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한 진(鎭)에 10여 명의 추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접대하고 주는 것이 번거롭게 많으며, 그 뒤로는 추장이 나오는 것이 전보다 3배나 되는데, 접대하고 주는 것이 모두 민정(民丁)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정주(丁酒), 정어(丁魚)라 합니다. 그러니 적은 수의 주민으로서 허다한 추장을 공궤(供饋)하기에 그 형세가 틀림없이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진(各鎭)의 추장을 한꺼번에 줄여 버리면 반드시 원망과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뒤로는 사망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추장을 세우지 말아서 점차로 없앤다면 저절로 그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전에 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이 되어 함경도에 왕래하였는데, 경성(鏡城) 이북은 민호(民戶)가 3천 32호이며 부령(富寧) 이북은 민호의 수가 적은 데다가 군정(軍丁)으로서 액수(額數)에 빠뜨려진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또 이 도(道)는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육진(六鎭)에서는 모두 백자기(白磁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들이 반드시 어물(魚物)로써 바꾸어 가는데, 그 폐단이 큽니다. 서울의 백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감사(監司)가 있는 곳에 유시(諭示)를 내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폐단은 큰 것이기 때문에 아룁니다.

또 지난날에는 만약 피인(彼人)이 귀화하여 벼슬에 나아가려고 하면 으레 겸사복(兼司僕)에 임명하고 집을 주어 살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내속(內屬)시키려는 계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도 벼슬을 바라는 자가 없고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자손으로서 향화(向化)한 자입니다. 만약 벼슬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면 예전의 예(例)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조종조에서 어찌 우연한 계책으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원전】 18 집 15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

선조 35년

《 선조 157 35/12/04(신묘) / 시강원에 학행이 있는 사람을 뽑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시강원이 아뢰기를,

"춘방(春坊)은 시강(侍講)하는 곳이므로 학문이 넉넉한 사람을 많이 모아야 경의(經義)를 널리 강론하여 보익(補益)됨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 겸관(兼官)이 있긴 하지만 직사에 전념하지 못한 채 한만하게 왕래할 뿐이며, 실관(實官)도 학문이 넉넉한 사람을 얻어 직책을 맡기기 어려우므로 사체(事體)에 마땅치 못한 듯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반드시 박학(博學)하고 문행(文行)이 있는 사람을 좌우의 관리로 택차(擇差)해 온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고려사(高麗史)》 찬출 목록(纂出目錄)을 상고해 보면, 신석조(辛碩祖)·이석형(李石亨)·신숙주(申叔舟)·어효첨(魚孝瞻)·김예몽(金禮蒙)·**양성지(梁誠之)**·이극감(李克堪) 등이 본원의 좌우보덕(左右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경(司經) 등의 관리가 되었고, 근래에는 노수신(盧守愼)·송찬(宋贊)이 역시 좌우사서(左右司書)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보도(輔導)하고 강론하는 곳에는 문학의 선비를 가려서 모으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 직임에 알맞은 사람이 있으면 꼭 한 관아(官衙)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규례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겸관은 직임에 전념하지 못하므로 구례(舊例)에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한 관아에서 3명씩을 차출하다가 곧 2명을 줄였으므로 늘 서연(書筵)에서 토론할 때면 구차하고 고루하여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겸관을 옛날처럼 많이 설치할 수는 없겠으나 조종조의 고사와 근래의 예에 의거하여 좌우의 실관을 차출하소서. 그리고 규례(規例)대로 구차하게 충당하지 말고 반드시 학행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례(古例)를 잘 알 수는 없으나 법전(法典)에 있을 것 같다. 법전에 정해진 인원수가 있다면 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살펴서 조처하라."

하였다.

【원전】 24 집 43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인조 15년

《 인조 034 15/05/15(임오) / 최명길의 국가의 재건 상이 국가를 지키었다는 내용과 문제를 다룬 차자 》

우의정 최명길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예지스러워 큰일을 해낼 자질이 있으셨으며 혼란을 타개하고 중흥한 공로는 조상에 빛나셨는데, 불행하게도 십수 년 이래로 여러 차례 큰 변란을 만나 갖은 험난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중간에 법과 제도를 창립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폐단을 보완하려고 하셨으니, 대동법(大同法)이나 호패법(號牌法) 등의 일은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가 받들어 행하기를 삼가지 않아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전하의 의욕적인 뜻은 점차 총명하고 과단성 있던 처음만 못하여졌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변은 갑작스레 만난 천지개벽 이래 미증유의 병란(兵亂)으로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던 것인데, 전하께서 모욕을 참고 몸을 굽혀 종묘사직을 보전하셨습니다. 시대의 형세를 참작하고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이것과 바꿀 계책이 없었습니다. 성덕에 있어서 무엇이 손상되셨기에 신이 누차 향안(香案)을 모시면서 천안을 살펴보니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다 우울한 표정으로 늘상 근심에 쌓여 즐겁지 못한 것이 있으신 듯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명께서 고금의 사변을 달관하지 못하시어 전일에 출성(出城)하셨던 일만을 가지고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고 계신 듯합니다. 이에 대해 어리석은 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골대(龍骨大)가 차사로 왔을 때, 나이 젊은 대각의 신하가 지나치게 경망한 논박을 하였는데 묘당에서는 제대로 진정하여 막지를 못해서 앉아서 하늘에 닿는 화를 초래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여러 신하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도 속으로 이미 그것이 옳은 계책이 아닌 줄을 알면서 제대로 엄하게 거절하지 못하셨으니, 이것은 전하의 허물입니다.

남한 산성의 싸움에서는 고립된 성이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다 보니 안과 밖이 통하지 못하여 명맥이 단절되어, 안으로는 성첩을 지키는 장사가 얼고 굶주려 죽어가고 밖에서는 팔도의 구원병이 서로 잇따라 무너졌으며, 성중에 있는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 없는데 강화도에서 패전 보고가 갑작스레 도착하자, 잠깐 사이에 군정(軍情)은 술렁거리고 불측한 변고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는 지혜 있는 이도 그 지혜를 쓸 곳이 없고 용맹한 자도 그 용맹을 시험할 곳이 없습니다. 가령 전하께서 융통성없이 필부의 절개를 지키셨더라면 종묘 사직은 멸망했을 것이고 백성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열어 단번에 깨닫게 하셔서 묘당의 의견을 받아들

이시고 백성들의 바람을 따르시니, 하루 안에 위기가 변하여 종묘 사직의 혈식(血食)을 연장하게 되고 생령이 어육(魚肉)됨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어짐과 큰 용맹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공자는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친다'고 하였고, 《춘추공양전》에 이르기를 '권도를 실시하는 것은 죽거나 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권도를 행하는 것에 도리가 있으니, 스스로를 폄하하여 권도를 행한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의 변동이고 무궁한 것은 의리입니다. 천하가 무사할 때는 상경을 잘 지키는 일은 현명한 자나 불초한 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능히 변통하여 도와 더불어 함께 행한 다음에야 마침내 성인(聖人)의 큰 권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미자계(微子啓)는 손을 뒤로 묶은 다음 입에 규벽(圭璧)을 물고서 무왕에게 귀순하였습니다. 무왕은 몸소 그 포박을 풀어주고 예우하여 송(宋)나라에 봉해 탕(湯)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공자(孔子)는 '은나라에 세 인인(仁人)이 있었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제(齊)나라 공자(公子) 규(糾)의 난에 관중(管仲)은 죽지 않고 포로가 되기를 청하였는데, 자로(子路)와 자공(子貢)이 모두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니, 공자는 '관중은 천하를 한 차례 바로잡아 백성이 지금까지 그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어찌 평범한 남녀들이 절의를 지키다 스스로 죽어 도랑에 나뒹굴어도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겠는가.' 하였습니다.

가령 이 두 사람이 자기 일신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수치스럽고 천한 행위임을 모면할 수 없는데 무엇을 족히 취하겠습니까. 오직 때에 따라 의리에 맞추고 몸을 굽혀 권도를 행하여, 혹 조종의 혈식(血食)을 중하게 여기기도 하였고 혹은 혜택이 사물에 미치게 할 마음이었으므로 공자가 모두 인(仁)하다고 허여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 성밖으로 나가신 경우는 원래 미자와 관중이 겪었던 모욕스러움은 없었으며, 종묘를 보전하고 생령을 보호한 공로는 옛날에 비하여 빛이 납니다. 가령 세상에 공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두 사람에게 허여했던 것으로 전하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듣건대 선비들 사이에 '나라의 군주는 사직에 죽어야 한다.'는 설(說)로 오늘날의 일을 비꼬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미혹된 말입니다. 대개 나라의 군주는 사직에 죽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예기(禮記)》의 말인데, 해석하는 이들은 '나라가 망하면 역시 망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그 군주가 죽지 아니한 것을 허물한 것은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융통성 없는 선비들이 경문(經文)의 본뜻은 알지 못하고 한낱 깊이 없는 고루한 견해로 망녕스레 조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아, 미자는 은나라의 일개 공자(公子)이며 관중은 제나라의 미천한 신하로서 모두 종묘 사직과 민생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없는데도 포로가 되거나 천하를 구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았는데,

더구나 천승(千乘)의 군주는 종묘 사직과 생령이 의탁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몸을 가볍게 하여 도랑에 죽어 덩구는 것을 달게 여기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옛일에 찾아본다면 경(經)과 전(傳)의 분명한 교훈과 성인과 현인의 지난 자취가 모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로 살펴본다면 조정의 기로와 산림의 노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무리가 있어 시의에 달하지 못하고 융통성 없이 자기 견해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식견이 밝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그릇되고 망령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역시 책망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다만 전하의 고명함으로도 마치 지난날의 일에 대해 혐의스러운 마음을 가져 의지와 기백이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쇠약함을 일으키고 잘못됨을 털어버리는 사업을 다시 어디에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크게 민망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리(羑里)의 재액은 성스러운 철인이 구금된 것이므로 사문(斯文)의 다급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문왕(文王)은 능히 도를 좇아 덕을 배양하고 시기가 아닌 줄을 알고 언행을 삼가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지혜로 두루 방비하여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므로 포승줄에 묶였어도 모욕이 아니었고 도를 굽혀 죽음을 모면하였지만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易經)》에 '명이(明夷)는 어려울 때임을 알고 바르고 곧게 하는 것이 이롭다. 안으로는 문명(文明)하면서 밖으로는 유순하여 환난을 견디어낸 것이니, 문왕이 그러하였다.' 하였으니, 대체로 성인이 일찍이 곤경을 당하지 않던 것이 아니라 오직 정당한 도리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곤경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전하의 명이이니 가령 전하께서 어려운 때임을 알고 바르고 곧은 덕을 더욱 쌓으신다면, 이 역시 문왕과 같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일로 속상해 하지 마소서. 천운은 돌고 돌아 흘러가면 되돌아오기 마련이며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회생하고 비(否)가 극에 달하면 태(泰)가 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의 지극한 덕과 순박한 행실은 백왕의 으뜸이시며 춘추는 아직 젊으시고 정무에도 부지런하시니, 진실로 이러한 때에 군신 상하가 협심 분발하여 함께 국사를 도모한다면 하늘의 뜻을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으며 민심을 진정시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비방을 정지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뜻을 세우는 것이며, 정치를 하는 데는 요령이 있으니 인재를 얻는 것이며, 수하를 제어하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기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안으로 세우고 덕을 몸에 닦아서 현명하고 유능한 이를 등용하며 기강을 닦아서 밝히고도 정치와 교화가 펴지지 않고 백성들의 비방이 멈추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널리 찾아내어 쓰는 것이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이지만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며, 공정하게 듣고 아울러 살피는 것이 진언을 듣는 도리이지만 시시비비를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시비가 결정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해지면 앞서의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활 쏘는 것에 비유한다면 전심 일의로 오직 표적을 맞추기만을 구한다면 비록 명중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적을 것이며, 남에게 흔들려서 자주 그 표적을 옮긴다면 비록 명중하는 것이 있더라도 적을 것입니다.

정묘년 변란에 화친으로 전쟁이 그쳤으니, 이것은 화친의 효과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만 좋아하는 무리가 괴이한 논의를 주장하여 화친을 주장한 자는 노예로 삼고 화친을 배척한 자는 주인으로 삼아 십여 년 동안 묘당과 대각이 서로 어긋나 오늘날의 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바로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조정이란 사방의 기강이며, 대신이란 인주의 심복이며, 육조(六曹)란 인주의 고굉이며, 대각이란 인주의 이목이니, 고굉과 이목으로 각기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바로 심복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조정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신과 육조와 대각에서부터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과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대신의 반열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진실로 심복의 의탁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래 규정으로 본다면 비록 재주가 관중(管仲)과 제갈양(諸葛亮) 같고 충성이 왕촉(王蠋)과 위징(魏徵) 같아도 아마 재주를 펼쳐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사(署事)가 혁파되자 대신이 그 직책을 잃었고, 낭천(郎薦)이 시작되자 양전(兩銓)이 그 직책을 잃었으며, 피혐(避嫌)이 일어나자 대각이 그 직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정치를 하시고자 아니하신다면 그뿐이지만 만일 정치를 해보시려고 하신다면 이러한 잘못된 예는 마땅히 변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삼대(三代)의 관직 제도는 아득히 멀어서 그 자세함을 알 수 없지마는, 서한(西漢)의 정치는 오로지 삼공에게 위임하였고 그 말엽에 왕망이 정권을 전담하여 마침내 찬탈의 모의를 이루었으며, 동한(東漢)은 이것에 징계되어 삼공의 위망이 비록 높았으나 그 권세는 자못 가벼워 정사를 모두 상서(尙書)에게 결재를 받았으니, 동한의 정치가 서한에 못 미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唐)나라나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동평장사(同平章事)에게 전임하여 삼공이 용관(冗官)이 되었으니, 비록 옛 제도와는 다르지만 정령(政令)을 내는 것과 형벌과 포상을 실시하는 것과 인재를 등용하고 마는 것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동평장사란 것은 마치 오늘날 비국 유사의 임무와 같아서 벼슬도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며 나이도 별로 쇠모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무를 비록 전담한다 하여도 핍박되는 혐의가 없으며, 나이가 쇠모하지 않았으므로 일이 비록 번잡하다 하여도 응체될 걱정이 없습니다. 관직을 설치하게 된 그 본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하는 도리에 식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사(署事)하는 규정은 중간에 폐지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갑작스레 회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역시 약간은 조정하여 국사를 꾀하고 정치를 논하는 곳에 약간의 정신 운용의 기틀이 있게 한 다음에야 국사를 마침내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비변사는 즉 송(宋)나라 때의 추밀원

(樞密院) 제도로서 삼공이 여기에 있으면서 국사를 논의하니 역시 의정부와 유사한 곳이나, 다만 임시로 설치한 곳이므로 일이 많이 구차하고 사람들이 보기를 도리어 육조(六曹)나 대각보다 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다스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신이 보기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효과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비변사란 호칭을 바꾸어 마치 옛날의 중서성(中書省)이나 추밀원, 혹은 고려의 도평의사(都評議司)의 호칭과 같게 하고, 유사 당상 두 명을 추천하여 낙점(落點)을 받아서 국가에서 임명장을 내려 실직이 있으면 겸대라고 호칭하고 실직이 없으면 이것으로 실직을 삼아 오로지 본사의 임무만 관장케 하여 그 명예와 이름이 삼사(三司)나 양전(兩銓)보다 위에 있게 하며, 기타 당상은 참예기밀(參豫機密)이라는 명칭으로 역시 정목(政目)에서 임명장을 내리되 마치 지제교나 겸춘추의 예와 같게 하며, 모든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삼공이 총재가 되고 유사 당상이 주관을 하되 육경 및 추밀의 여러 신하들이 참여하여 토론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체통이 높아지고 일이 법도가 있어서 한(漢)나라의 승상부(丞相府)와 우리 나라의 서사청(署事廳)과 당(唐)나라의 중서성과 송(宋)나라의 추밀원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으로 권세가 무겁다는 혐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위치가 가볍다는 탄식도 없을 것이어서, 국사가 훌륭히 이루어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크고 작은 관리의 임명이 모두 전장(銓長)에게서 나오는데, 유독 이조와 병조의 낭관(郎官)은 낭청(郎廳)에게 천거하게 하므로 당하 청망(淸望)의 임명이 모두 낭관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랑(銓郎)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때때로 조정을 흔들고 매번 낭관을 천거할 때가 되면 나이 젊은 명류들이 기염을 토하며 서로 배격하여 반드시 다투어야 할 곳으로 알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당론(黨論)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선조(宣祖)께서 이 풍습을 깊이 미워하여 특별히 명하여 혁파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병조 낭청은 으레 성명을 기록하여 본조에 비치하고 차례대로 의망(擬望)하며, 이조에서는 그 기명록을 버려서 형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단스러운 풍습은 모조리 혁파되지 않아, 비록 낭관을 천거하는 형적은 없으나 실지로는 낭관을 천거하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 규정을 단호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당론은 종식될 때가 없을 것이며 조정은 조용할 때가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병조에 있어서는 비록 이조의 낭관을 천거하는 것처럼 폐단스럽지는 않으나 나이 젊은 낭관이 각기 친분이 있는 이를 끌어대어 반드시 모두가 합당한 사람을 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낭관을 지냈던 자는 재국(才局)의 우열을 논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 중의 의망의 차례로 의망하여 고하의 차등을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관직을 위하여 인재를 선택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 일체 혁파하여 전적으로 전조(銓曹)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옛날에는 대간이 각자가 일을 말하되 견제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

할 수 있어서 충성스러운 자, 아첨하는 자, 올곧지 못한 자, 정직한 자를 분별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대간이 하나의 조그만 일을 논하려 하여도 반드시 전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피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견을 지킬 수 없게 하니,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요순(堯舜)이 아닌 이상 일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유독 대간에게만 어찌 조그만 허물도 없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조종(祖宗) 때 대간이 추고를 당하면 양사에서 서로 조사하여 진실로 그 직책에 알맞으면 가벼이 교체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성종(成宗) 때의 고사를 보니,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는 9년을 대사헌직에 있었으니 국가 원기의 충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옥당의 유신이 양사보다 중하여 비록 추고를 당하여도 평소와 같이 직위에 있고, 모든 차론(箚論)하는 일은 이의가 있으면 오직 다수를 따르며 그러고 싶지 않으면 회피하여 참석하지 아니하되 또한 차자를 올려 자기의 소견을 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삼사의 사례도 이치상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도리가 옛날 같지 않고 야박한 것이 풍습으로 굳어져 만일 사람마다 각기 일을 말하게 한다면 소요스럽고 너저분하여지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다만 옥당의 예에 의거하여 다수로 주장을 삼고 그 나머지는 혹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별도로 소견을 진달하되 그 마음이 모두 공정한 데서 나오게 한다면 모두 포용하여도 해로울 것은 없으니, 비단 언로를 더욱 확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충분히 협동하는 아름다움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대관(臺官)은 혹 전일 재직시에 추고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인피(引避)하지 말 것이며, 다만 헌부의 관원은 조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의에 합당합니다. 선조(宣祖) 때는 피혐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아 오히려 옛스러움에 가까웠으나 혼조 말년에 이르러서는 대간이 자주 난처한 일을 만나서 혹 평상시의 복장으로 출입하였다고 칭하기도 하며 혹은 재신(宰臣)을 범마(犯馬)하였다고 칭하기도 하면서 교묘하게 인피하는 계책을 삼았는데, 잘못된 습관이 한번 열려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남아 있으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계책을 마련하여 교묘하게 인피하는 자와 진실로 허물을 범하여 혐의를 들어 자수하는 자는 그 정상과 잘못의 경중에 따라 혹 변방의 직무를 맡겨 내치기도 하고 혹 그 직책을 파직하기도 하여 대간이라고 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직 피혐(避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혹 주상의 엄지(嚴旨)가 있거나 혹은 남에게 들어난 배척을 받았다면 정상을 호소하고 물러나기를 구하여 공의(公議)를 기다리는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공의가 그의 출사를 이미 허락하였다면 굳이 재차 인피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혹 아래에서 체직하기를 청하는데 군상이 특별히 체직하지 말라고 명하면 은혜에 대해 더욱 감격하여 언책(言責)에 더욱 힘써야 마땅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삼사의 공론이라고 핑계하여

반드시 체직하고야 마니, 이것은 임금의 진퇴시키는 고유 권한을 도리어 아래에서 빼앗은 것이니 아주 부당합니다. 이 폐단도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옥당에서 차자를 올릴 일이 있으면 먼저 간통(簡通)을 발하여 반드시 동료가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처리하는데, 양사는 개좌(開坐)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에서 먼저 계사의 초를 구성해서 집에 있는 동료에게 간통하여 하루 내에 귀일되게 하려고 하니, 동료가 혹시 집에 있지 않을 경우 서리(書吏)는 간통을 들고 도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새로 아뢸 것이 있으면 으레 해가 저물게 되며, 동료도 그 간통을 보고 비록 자기 견해와 같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계사를 올리기에 급급해 하기 때문에 긴요한 일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혀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관의 사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사의 계사도 옥당의 규례에 의하여 반드시 일제히 한자리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하고 동의하는 이는 연명으로 써서 올린다면, 군색하고 바쁠 걱정도 없고 또한 정밀하게 살피는 이익도 있을 것이며, 각 관원의 논의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물어볼 것도 없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군국의 대정에 관계되지 않으니 당초부터 대단한 손익도 없는데 굳이 이때에 급급히 할 필요가 있는가.' 하겠지마는, 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상이 너그럽고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절도가 있다면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모두 그 알맞음을 얻어 일신이 강녕하고 재앙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의 거조는 곧 국가의 기상입니다. 어찌 기상의 급급함이 이와 같은데 능히 강녕한 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이란 진실로 시기를 기다리고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군중을 움직이는 것과 법과 제도를 변역하는 등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일 진달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전례를 변통하는 것이니 행하는 것은 한 호령의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비국을 변통하는 일만은 자못 중대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잡아 구제할 희망이 만무하며, 또한 시행하는 것도 역시 매우 편이하고 조금도 번거로울 걱정이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과단성 있게 시행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신의 이 말을 묘당에 내려 정부와 육조, 삼사 장관으로 하여금 합의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잘 보았다. 차자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원전】 34 집 68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숙종 26년

《 숙종 034 26/05/13(을사) / 사간원에서 잦은 체직으로 인한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

간원(諫院)에서 논핵(論劾)하기를,

"대각(臺閣)의 피체(避遞)가 너무 잦은 것은 실로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아침에 임명된 사람이 저녁에 체직되어 차제(差除)가 부산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국조(國朝)의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이 된 이래 9년 동안 옮기지를 않았으니, 잦은 피체가 본시 옛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승정원에 신칙하여 긴요하지 않은 피사(避辭)는 일체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39 집 56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정조 즉위년

《 정조 002 00/09/25(계사) / 규장각을 창덕궁 금원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 관원을 두다 》

규장각(奎章閣)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 관원을 두었다. 국조(國朝)에서 관직을 설치한 것이 모두 송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으나 유독 어제(御製)를 존각(尊閣)에 간직할 바로는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가 있지 않았다.

세조조(世祖朝)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군상(君上)의 어제(御製)는 운한(雲漢)과 같이 하늘에 밝게 빛나니 만세토록 신자(臣子)는 마땅히 존각(尊閣)에 소중히 간직할 바이기 때문에, 송조(宋朝)에서 성제(聖製)를 으레 모두 전각을 세워서 간직하고 관직을 설시하여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신 등으로 하여금 어제 시문(詩文)을 교감하여 올려서 인지각(麟趾閣) 동쪽 별실(別室)에 봉안하되 규장각(奎章閣)이라 이름하고, 또 여러 책을 보관한 내각(內閣)은 비서각(祕書閣)이라 이름하며, 다 각기 대제학·직제학·직각·응교 등 관원을 두되 당상관은 다른 관직이 겸대(兼帶)하고 낭료(郎僚)는 예문관 녹관(祿官)으로 겸차(兼差)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세조가 빨리 그 행할 만하다고 일컬으면서도 설시할 겨를이 없었다. 숙종조에서는 열성(列聖)의 어제(御製)·어서(御書)를 봉안하기 위하여 별도로 종정시(宗正寺)에 소각(小閣)을 세우고 어서한 '규장각' 세 글자를 게시(揭示)하였는데, 규제(規制)는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임금이 즉위하여서는 먼저 선조(先朝)의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채제공(蔡濟恭) 등을 명하여 개국(開國)하고 영고(英考)의 어제를 편집하여 목판에 새기고 영고의 어묵(御墨)을 모사(摸寫)하여 돌에 새겼으며, 또 어제가 중외(中外)에 흩어져 있어 인쇄(印刷)되지 않은 것은 설국(設局)하여 등사(謄寫)하되 1본(本)은 원릉(元陵)의 편방(偏房)에 봉장(奉藏)하고 1본은 대내 별전(大內別殿)에 임시로 봉안하고는 대신을 불러 하교하기를, '우리 선대왕의 운장(雲章)·보묵(寶墨)은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존신 경근(尊信敬謹)하는 바가 어찌 보통 간찰(簡札)에 비할 것이겠는가? 의당 한 전각(殿閣)을 세워서 송조(宋朝)의 건봉(虔奉)하는 제도를 따라야 하겠으나 열조(列祖)의 어제·어필에서 미쳐 존각에 받들지 못한 것을 송조에서 각 왕조마다 전각을 달리하는 것과 같게 할 필요가 없으니 한 전각에 함께 봉안(奉安)하게 되면 실로 경비를 덜고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도가 될 것이다. 아! 너 유사(有司)는 그 창덕궁의 북원(北苑)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라.' 하고, 인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나 단청을 하는 것을 힘써 검약(儉約)함을 따르라고 명하였는데 3월에 시작한 것이 이 때에 와서 준공되었다.

처음에 어제각(御製閣)으로 일컫다가 뒤에 숙묘(肅廟) 때의 어편(御扁)을 따라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는데,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툇마루였다. 그 뒤에 당저(當宁)의 어진(御眞)·어제(御製)·어필(御筆)·보책(寶冊)·인장(印章)을 봉안하였는데 그 편액(扁額)은 숙종의 어묵(御墨)이었으며, 또 주합루(宙合樓)의 편액을 남미(南楣)에 게시하였는데 곧 당저의 어묵이었다. 서남쪽에는 봉모당(奉謨堂)이었는데, 【곧 옛날 열무정(閱武亭)인데, 《여지승람(輿地勝覽)》 궁궐지(宮闕志)에는 고제(古制)를 따라 고치지 않고 다만 감탑(龕榻)을 설치하여 분봉(分奉)한다고 되어 있다.】 열성조의 어제·어필·어화(御畫)·고명(顧命)·유고(遺誥)·밀교(密敎)와 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장지(狀誌)를 봉안하였다. 정남(正南)에는 열고관(閱古觀)인데 상하 2층이고, 또 북쪽으로 꺾여 개유와(皆有窩)를 만들었는데 중국본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고, 정서(正西)에는 이안각(移安閣)인데 어진·어제·어필을 이봉(移奉)하여 포쇄(曝曬)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서북쪽에는 서고(西庫)인데 우리 나라 본(本)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대신과 이조 당상·홍문관 관원을 소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은 모두 송제(宋制)를 모방하였는데 열성조의 어제는 아직 봉안할 곳이 없었다. 이에 후원(後苑)에 규장각을 세우고 이미 어제를 봉안하였으니 관장하는 관원이 없을 수 없다. 당(唐)나라 이상은 학사(學士)의 명칭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승여(乘輿)가 있는 곳에 다만 문사(文詞)나 경학(經學)의 선비로써 별원(別院)에 숙직하게 하고 가끔 불러서 제서(制書)를 초안하게 하였으니, 대개 관제(官制)를 세우고 직무를 분담하여 점차로 형세를 갖추어지는 것은 형세가 그런 것이다. 선조(先朝)에서 편차(編次)하는 사람을 설시하여 오로지 어제를 관장하였는데, 그 일만 있고 관직은 없었으니 또한 이를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열성조 어제의 존봉(尊奉)을 위하여 송나라의 구제(舊制)를 모방하여 한 전각을 창건(創建)하였으니, 관원을 명하여 전수(典守)하게 하되 편차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직위를 채우는 것은 진실로 점차 갖추어 가는 의의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제학은 곧 송나라의 학사(學士)이고 직제학은 곧 송나라의 직학사(直學士)이다. 또 당하(堂下)에 직각(直閣)·대교(待敎)를 둔 것은 송나라의 직각과 대제(待制)를 모방한 것이니 실시한 것에 근거가 있고 변통에 모두 편의를 얻었는데, 경 등은 그 편부(便否)를 진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거조는 전모(前謨)를 넓혀 문교(文敎)를 진작시킬 것이니, 전각이 있으면 관원을 두어 전수(典守)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옥당에 명하여 《송사(宋史)》의 관제(官制)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하교하기를,

"열성조의 어제 수만 권을 전각을 세워 간직하는 것은 곧 송조(宋朝)의 용도(龍圖) 등 여러 전각의 의의를 취한 것이다. 내가 만든 바에도 또한 편차(編次)의 관원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새로 창설한 관제가 아니라 곧 선조(先朝)에서 편차하던 사람이다."

하였다. 그리고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 조정 관직의 이름을 참고하여 이조(吏曹)로 하여금 개정(開政)하여 의망해 차출하게 하였는데, 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을 규장각 제학으로, 홍국영(洪國榮)·유언호(兪彦鎬)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았다. 제학 2원(員)은 문형(文衡)과 양관(兩館) 제학의 통망인(通望人)으로, 직제학 2원은 부제학의 통망인으로, 이조에서 장망(長望)하여 수점(受點)하게 하였고, 송나라 학사·직학사의 규례에 의하여 다른 관직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직각 1원은 일찍이 옥서(玉署)를 지낸 사람으로써 하고, 대교(待敎) 1원은 한권(翰圈)·주천(注薦)·설서(說書)의 통망인(通望人)으로서 홍문록(弘文錄)과 한권의 예에 의하여 회권(會圈)을 거쳐 계하(啓下)하고 이조에 이문(移文)하여 차출하게 하였으니, 【이때 미처 회권하지 않고 곧바로 뽑아 의망하였다.】 무릇 6원인데 모두 당나라 한림원(翰林院) 육학사(六學士)의 규례를 모방한 것이었다. 하교하기를,

"규장각 제학 이하 관원이 숙배(肅拜)할 때에 홍로(鴻臚)가 찬배(贊拜)하는 것은 송나라의 용도각(龍圖閣) 학사가 편전(便殿)에 전문(箋文)을 올리는 규례를 따른 것이며, 제학 이하가 합문(閤門) 밖에서 숙배하는 것은 송나라의 처음 제수된 용도각 학사에게 내전(內殿)으로 나가 문안하도록 명하였던 내한(內翰)의 규례와 같이 한 것이니, 곧 우리 조정에서 정원(政院)·옥당(玉堂)이 차비문(差備門) 안에서 문안하는 뜻이다.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탄일(誕日)의 문안은 송조의 규례를 따라 모방하여 문안의 예를 합문에서 행하게 된 것이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교외(郊外)에 동가(動駕)할 때에 승지에게 말을 주는 것이 이미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규례에 별군직(別軍職)에도 또한 동가 때에 내구(內廐)에서 말을 주었는데 더구나 예로 높여야 할 곳이겠는가? 이 뒤로는 성(城) 안이나 성 밖으로 동가할 때에 규장각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 관원은 비록 본직(本職)의 반열에 있더라도 내구마(內廐馬)를 타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원전】 44 집 62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정조 5년 《 양성지 - 정조 5년 .... 2 건 》

정조 011 05/02/13(병진) / 내각에 저장한 서적의 정리를 신칙하다
정조 012 05/08/18(무자) / 각신을 소견했는데, 직제학 심염조가 규장각의 각호와 관제에 대해 아뢰다

《 정조 011 05/02/13(병진) / 내각에 저장한 서적의 정리를 신칙하다 》

하교하기를,

"광묘조(光廟朝) 때 유신(儒臣) **양성지(梁誠之)**가 건의하여 지금껏 내각에 저장한 서적(書籍) 가운데 뒷면에 있는 도서(圖書)에는 '조선국 모세 어장(朝鮮國某歲御藏)'이라고 일컫고, 명나라 연호를 쓰되 해자(垓字)로 쓰며, 앞면에 있는 도서에는 '조선국 어장서(朝鮮國御藏書)'라고 일컫고 전자(篆子)로 써서 책에다 찍어서 만세(萬世)토록 환히 전해 보이게 했다. 이 또한 추술(追述)하는 일단(一端)이 되는 것이니, 내각에서는 잘 알고 있으라."

하였다.

【원전】 45 집 210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서책(書冊)

《 정조 012 05/08/18(무자) / 각신을 소견했는데, 직제학 심염조가 규장각의 각호와 관제에 대해 아뢰다 》

각신(閣臣)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봉모당(奉謨堂)에 봉안(奉安)한 어제(御製)를 이제 고출(考出)하면 《보감(寶鑑)》의 편집 자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니, 한두 직제학이 서호수(徐浩修)·이병모(李秉模)와 함께 전심으로 고출하게 하라."

하였다. 직제학 심염조(沈念祖)가 아뢰기를,

"신 등이 예문관에 있으면서 《실록(實錄)》을 고출할 적에 삼가 살펴보건대, 광묘(光廟) 계미년에 규장각을 설치하는 일 때문에 정신(廷臣) **양성지(梁誠之)**가 상소를 올려 건청(建請)하였는데, 윤허의 명이 있어서 처음으로 내각(內閣)을 설치하고 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태학사(太學

士)· 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응교(應敎) 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응교는 곧 지금의 대교(待敎)입니다. 각호(閣號)와 관제(官制)가 오늘날의 제도와 꼭 들어맞아서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의 규모가 서로 부합되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다. 그때의 규모가 오늘날의 것과 모의(謀議)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으니,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각호와 관제를 이미 강정(講定)했다면, 과연 각(閣)을 건립하고 관(官)을 설치했었는가?"

하자, 원임(原任) 직제학 정민시(鄭民始)가 대답하기를,

"이미 인지당(麟趾堂) 동쪽에 각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각은 건립한 것 같습니다만, 관직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원전】 45 집 260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정조 15년

《 정조 032 15/05/03(정축) / 태학의 유생들에게 《강목강의》를 써내는 일을 맡기도록 명하다 》

각신(閣臣) 이만수(李晩秀)·서영보(徐榮輔)와 사성 성종인(成種仁)을 불러 만나보고 전교하기를,

"내가 《자치통감강목》 가운데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으로 직접 문목을 지어 유생들에게 조목별로 대답하게 하였는데, 이는 유생들과 더불어 역사를 논란하여 그들의 의론과 식견을 보고자 한 것이다. 이제 이미 책이 이루어져 그것을 정서해야겠는데 직각(直閣)이 마침 어제(御製)의 글을 교정하는 일을 관장하느라 틈이 없는 것 같다.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책을 교열하거나 베껴 써서 올리는 것은 곧 우리 나라의 고사(故事)이니, 경서 중에 존경각(尊經閣) 판본으로 가장 좋은 것은 모두 태학생들이 쓴 것이다. 선정 이이(李珥)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을 가지고 구두점을 찍은 일이 태학에 미담으로 전해 오며, 요즘 일로 말하더라도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또한 유생들이 베껴 쓴 것이 있으니, 이번에 이 《강목강의》를 써내는 것이 어찌 더욱 영예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사성과 대사성은 거재생(居齋生)이나 외방에 있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글씨를 잘 쓰는 자를 뽑아서 나누어 맡아 써서 올리도록 하라. 지난번 《강목강의》를 내려보내 써 올리게 할 때면 지방의 선비들도 오히려 참여했으니, 하물며 서울에 있는 유생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니, 만수가 아뢰기를,

"이는 유생들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니 반드시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30세 이상인 자는 나누어 쓰게 하고 40세 이상은 대조하게 하라. 성균관에 기숙하는 늙은 유생도 대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이 첫머리에 각기 글씨 쓴 사람의 성명을 써서 올릴 것이며 대사성과 사성, 그리고 직강 김희조(金熙朝)는 모두 일찍이 초계 문신을 지낸 사람이니, 일을 마친 뒤에 본관에 모여 교정해서 들이도록 하라."

하고, 또 종인에게 전교하기를,

"전 대사성의 말을 들으니 지난번 식당에서 나이 순서대로 앉는 예법을 시행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러쿵저러쿵 하는 논란이 없어졌는가?"

하니, 종인이 아뢰기를,

"지금은 의견이 통일되어 서로 다른 의론은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대(三代) 때에는 일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자들도 천자의 원자(元子)와 함께 나이순으로 앉았으

니, 천자의 원자가 어찌 우리 나라의 사대부들만 못해서 그랬겠는가. 또 우리 나라의 전례(典禮)로 말하더라도 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할 때에는 유관(儒冠)에다 유복(儒服) 차림으로 여러 유생들과 마주서서 세 번 읍을 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한 가지 일로써 군신·부자·장유(長幼)에 관한 세 가지의 좋은 도리를 알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조정이 장차 태학에서 나이를 따지는 예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유생들이 이를 생각한다면 감히 깨달아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감독 신칙하지 않고도 감동해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점을 여러 유생들에게 효유하라."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고 대제학 **양성지(梁誠之)**가 규장각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각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글들을 모으게 했는데 듣건대 그 책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니 장차 간행을 해야겠다."

하니, 영보가 아뢰기를,

"그가 직접 쓴 서찰 몇 폭을 그 후손에게서 얻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문집을 간행할 때 그것을 책 뒤에 함께 새겨서 넣도록 하라. 서문은 내가 지금 구상하는 중이다."

하였다. 또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에게 발문을 지어 올릴 것을 명했는데 그가 규장각을 세운 초기에 제학을 지냈기 때문이다.

【원전】 46 집 219 면

【분류】 *왕실(王室) / *출판(出版)

정조 16년

《 정조 034 16/03/24(계사) / 인재 등용의 규정을 바로 세우라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는 인재를 쓸 때에 오로지 이름 있는 벼슬에서 취하는데, 이름 있는 벼슬 중에도 또한 등급이 있어 먼저 1등급을 차지한 자는 그 밖의 권점(圈點)이나 통망(通望)을 받아야 하는 벼슬에는 다시 일삼을 것이 없다. 한번 수(守) 대제학을 지내면 양관(兩館)의 대제학도 자연 그 속에 있고, 한번 예문관 응교를 지내면 부제학 이하 문관도 또한 자연 그 속에 있다. 이보다 낮은 이조 직임에 이미 통망(通望)된 자는 경연관이나 사헌부의 장령, 지평의 의망으로 융통되지 않는 자가 없고, 이조의 낭관은 곧 6품인데 으레 4품인 사인(舍人)에 붙인다. 분관(分館)하기 전에 한림(翰林)의 권점에 참여된 자는 서비 한림(西飛翰林)이라고 써넣고 7품인 세자 시강원의 설서(說書)에 통망하는데, 만약 6품으로 승급되면 순조롭게 문학과 사서로 오르며 양사(兩司)에 통망(通望)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저 내각(內閣)을 설치한 본 뜻이 어떠한데, 절목(節目) 중에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많은가. 대교(待敎)를 일찍이 지낸 자가 다시 직각(直閣)에 권점을 받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더구나 직각과 대교의 권점에서 이조의 낭관, 홍문록(弘文錄), 설서에 통망된 자와 한림에 주의(注擬)된 사람으로 취사(取捨)하게 하는 것은 더욱 전도된 혐의가 있다. 지금부터는 이미 대교를 지낸 자는 다시 직각에 권점을 하지 말고, 7품의 홍문관 박사 이하부터 세자 시강원 벼슬과 승문원과 6품의 여러 자리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빈자리가 나는 대로 즉시 의망하고, 이미 직각(直閣)을 지낸 자는 사인(舍人)과 이조와 삼사(三司)에도 또한 빈자리가 나는 대로 즉시 의망하라. 이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라.

또 고 대제학 **양성지(梁誠之)**가 건의하여 본각(本閣)에 대제학을 두도록 청하자 세조께서 옳게 여겼는데, 규장각을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사체가 매우 구차하다. 내각의 대제학 한 자리도 또한 고사(故事)를 따라 설치하고 만약 차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일찍이 대제학을 지냈거나 권점을 받은 사람으로 의망하여 임명하고, 만약 규장각의 제학으로 정승에 임명되면 저절로 대제학으로 승급하도록 해야 한다. 송나라 때 자정전(資政殿)에는 다만 학사(學士)만 있었으나 갑자기 학사가 정승 벼슬로 승진되는 것으로 인하여 별도로 태학사의 자리를 설치하였으니, 이 또한 옛 법도로서 본받을 만한 점이다. 규장각으로 하여금 알고 있게 하라."

하니, 이에 제학 오재순(吳載純)이 아뢰기를,

"규장각의 관제(官制)는 이미 새 규정이 있으니, 지금부터 직각과 대교에 관한 권점(圈點)이 있은 뒤에 권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후일 권점을 매길 때 그대로 쓰도록 하고, 만약 새로 권점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합하여 권점을 매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6 집 283 면

【분류】 *인사(人事)

정조 17년

《 정조 037 17/01/25(기미) /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올리다 》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올렸다.

【내영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

1. 본영의 설치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났건만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호칭들도 정해지지 못하였다. 지금 내·외영을 함께 두고 규모를 크게 마련하는 때를 당해서는 당연히 호칭을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병방(兵房)에 대한 일은 당연히 다른 영문의 규례에 따라 대장이라 호칭해야 할 것이나 본영의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니, 의당 어영사(御營使)의 옛 제도를 본떠 병방을 장용 내사(壯勇內使)라 하고 크고 작은 문서들에서의 호칭도 역시 어영사를 어영 대장이라 호칭하는 규례를 본떠 대장이라 호칭한다. 이미 내·외영을 두었으니 내사(內使)는 그대로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임하되 비국 당상이 역시 예겸하도록 한다.

1. 향색 제조(餉色提調) 1원은 시임 호조나 선혜청의 당상을 이조가 의망해서 낙점을 받는 것으로 하되, 만일 세 사람을 의망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에 지낸 사람을 계청하여 통의(通擬)하도록 한다.

1. 본영의 대장은 일찍이 장신(將臣) 이상을 지낸 사람으로 제수한다.

1. 각영의 장신들이 혹은 명소패(命召牌)를 차고 혹은 밀부(密符)를 차기도 하나, 군중에서의 호부(虎符)는 곧 국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본영의 일은 전보다 더욱 자별한 만큼 부신(符信) 등의 절차도 의당 옛날 제도를 써야 할 것이니, 본영사(本營使)가 차는 것은 호부를 쓰도록 한다.

1. 군향색(軍餉色)의 낭청(郎廳)은 다른 군문(軍門)의 예에 따라 종사관(從事官)이라 호칭하고, 음관으로 일찍이 군수를 역임한 문벌과 이력이 있는 사람을 본영에서 품지하여 삼망을 갖추어 제수한다. 그리고 직인(職印) 하나를 장용영종사관인(壯勇營從事官印)이라고 새겨서 사용한다.

1. 각영에 중군(中軍)을 둔 것은 조련할 때에 호령을 승접하는 직무를 행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것을 두고 안 두는 것이 그리 긴중할 것이 없다. 또 광묘조(光廟朝) 때에 후원(後苑)에서 습진과 조련을 할 적에도 윤사로(尹師路)와 **양성지(梁誠之)**가 좌상(左廂)·우상(右廂)의 대장이 되어 이를 거행하면서 중군을 설치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용대장(龍大將)·호대장(虎大將)을 창설할 때에도 그들이 열무정(閱武亭) 조련에 참여한 때문에 역시 중군은 두지 않고 대장이 직접 호령을 받아 거행하였다. 그리고 정초청(精抄廳)을 설치하였을 때에도 대장 아래 별장만을 두어 금위영에 합속시키고 금군의 좌·우 별장으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깃발을 흔들고 북소리를 울리며 호령을 주고 받게 했었다. 본

영의 군제(軍制)가 대부분 국초의 제도에서 본뜬 것이고 보면 중군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니 본영에는 중군을 두지 않는다.

1. 별장(別將) 1원은 일찍이 포도 대장이나 훈련 도감의 중군이나 금군의 별장을 지낸 사람 중에서 차출한다.

1. 군제는 각기 근거한 바가 있으니, 3부(部) 6사(司)의 제도가 있고 5영(營) 3사(司)의 제도가 있다. 3부는 바로 북방의 군제이고 5사는 곧 남방의 군제이다. 부(部)에는 천총(千摠)이 있고 영(營)에는 영장(營將)이 있는데, 본영은 5사를 두어 척씨(戚氏)의 남방 군제를 본떴으니 천총은 두지 않는다.

1. 기왕 천총을 두지 않은 바에는 본영의 파총(把摠)이 바로 다른 군문의 천총이니 이력(履歷)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에 준해야 할 것이다. 파총은 가선 대부인 병사(兵使) 이하로 일찍이 방어사를 지낸 사람에 이르기까지 융통해서 차출하되, 일찍이 변경을 다스린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 전교에 의해 제수된 자는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방어사의 이력을 가지고 바로 곤임(閫任)에 의망하는 규례를 적용한다.

1. 선기장(善騎將)은 일찍이 변경이나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지낸 사람으로 차출한다.

1. 초관(哨官)은 당하 정3품 이하 관원의 천거가 있는 출신인(出身人)으로 차출한다.

1. 본영에 방위하는 친위병으로 이미 마군(馬軍)·보군(步軍)을 두었으나 보군은 단지 3초 뿐이라서 1사(司)의 제도에 차지 않으니, 2초를 더 두어 1사 5초의 제도에 맞게 한다. 그리고 어가가 지나게 되는 지방 고을에서나 섣달 공물 마련을 위해 사냥을 하는 곳에서는 향군(鄕軍) 20초를 나누어 배치해서 4사를 만들어 5사의 제도를 갖춘다.

1. 난후 창검군(攔後槍劍軍)은 이미 본영에서 대령하게 되어 있으되, 혹 60명이나 혹 30명을 임시해서 품지를 받아 거행토록 한다. 그리고 임시해서 금위영의 아병(牙兵) 중에서 70명 정도와 어영청의 겸내취(兼內吹) 30명까지 도합 1백 명을 본영에 이속시키고, 요포(料布)와 수요 물자들도 인원수에 따라 떼내어 이속시킨다.

1. 가초 군병(加抄軍兵)의 수용에 드는 비용은 불가불 구분지어 조처해야 할 것이니, 부족한 수효로 돈 8천 냥, 무명 80동(同), 쌀 4천 석을 좋을 대로 힘써 마련하여 그들 비용의 뒷받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처의 향군을 각기 그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처음 정한 규정에 따라 거행한다.

1. 배봉진(拜峰鎭)을 설치한 데에는 그 의의가 가볍지 않다. 일찍이 선왕의 능을 모셨던 곳이니, 각영의 참군(參軍)에게 맡겨 소홀하게 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진둔(鎭屯)을 설치하여 그곳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진의 별장은 본영이 스스로 임명하되, 전직의 직함이나 또는 이미 출신한 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부천(副

薦)과 말천(末薦)으로 추천된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임명한다.

1. 노량진은 매년 현륭원에 행행할 때에 거가가 들러서 주필하는 곳이고 보면 사체가 다른 곳과는 자별하다. 그러니 해당 진의 별장은 본영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리로 바꾸고, 별아병(別牙兵) 1초는 부근의 백성들 중에서 뽑아 통솔하되, 배봉진의 아병 2초와 합해서 3초의 제도로 만든다. 그리고 배봉 별장의 깃발은 별후사 파총(別後司把摠)이라 호칭하고, 노량 별장의 깃발은 별아병장(別牙兵將)이라 호칭한다." 외영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

1. 수원부에 현륭원을 모신 뒤로 보호하는 절차를 한껏 다하고 있으나, 3품 고을 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체모를 높이는 뜻이 아니다. 또 군사 일로 본다면 본영의 내영·외영이 함께 설치되었고, 직무로 본다면 행궁의 정리 책임이 주어져 있으니, 이점이 전하의 마음속에서 영단을 내려 특별히 유수로 승격시킨 연유라 할 것이다. 관을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한 데에 따라 양도(兩都)에 비겨 한 등급을 높여서 문신인 경우는 정2품 이상으로 한정하여 묘당이 의망해 추천하고, 대신 무장(大臣武將)의 경우는 특지에 의한다. 그리하여 수원부 유수로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의 호칭을 겸한다.

1. 외영의 군제를 금방 바로잡았는 바, 조련에 참가하는 군사는 별효사(別驍士) 2초, 마병(馬兵) 4초, 속오군(束伍軍) 26초, 각종의 표하군 5백 47명, 치중군(輜重軍) 2백 명인데, 이것은 이미 훈련도감의 군제를 본뜬 것이니,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둔다. 그리고 근래에 조련이 오랫동안 중지되어 군정(軍政)이 허술해졌다. 그러니 지금 크게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병든 마필(馬匹)과 지쳐 있는 군사들을 특별히 찾아내어 기어코 진작시켜서 일신되도록 해야 한다. 조련은 본부가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되, 가을이 된 뒤에 다른 군문의 예에 따라서 품지하여 조련을 행한다. 그리고 비용의 쌀로 양인(良人)의 봉족(奉足)이 낸 2천 석은 그대로 외영에 소속시켜 받아 유치한다.

1. 본부는 삼남의 요충으로 현륭원을 이미 이곳에 모셨고 또 행궁을 두었으니, 그 체모를 높이고 요새지를 중히 하는 도리가 전보다 자별하여야 할 것이다. 성을 축조해야 한다는 의논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더구나 유수부로 승격된 뒤이고 보면 더욱 당연히 바로 시설해야 할 것이다. 성을 축조할 물력(物力)을 먼저 구획하여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 본부와 안산창(安山倉)에 소재한 환곡과 군량 등 각종 곡물들을 모두 축성곡(築城穀)으로 명목을 지어서 매년 그 모조(耗條)를 거두어 들여 차차로 경영해나갈 뒷받침으로 삼을 것이다.

1. 본부에 아직은 성을 축조하지는 못하나 앞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미 순서가 정해진 일이고 보면 성정군(城丁軍)을 불가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에 총융청의 소관으로 집에 머무는 군관 1백 50인, 본부의 소관인 방어사영의 번을 면제받은 군관 2백 90인, 토포사의 소속으로 번을 면제받은 군관 4백 59인을 수첩 군관(守堞軍官)으로 호칭을 바꾸고, 본부의 군수 별무사(軍需別武士) 2천 2명에서 마

사(馬士) 2백 4명을 감하고 유방군(留防軍) 7백 2명을 성정군이라 명칭하여 성을 수비하는 제도를 이루도록 한다.

1.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이미 요새로서의 중요한 지역이자 또 군량을 쌓아둔 곳이니, 방어하는 도리를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전에 충융청의 소관이었던 장초(壯抄) 2초,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백 25명을, 본성의 소관 아래 모집해 들인 군관 30인, 수첩군관 1백 30인, 아병 2초, 봉족군(奉足軍) 4백 명, 별무사 1천 5백 23명과 합해서 성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본성에 전속시키고, 그 중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백 25명은 본래 쌀을 납부하는 군인들이었으니, 그 납부한 쌀은 외영에서 받아 유치한다.".】

【원전】 46 집 375 면

【분류】 *군사(軍事)

정조 20년

《 정조 044 20/03/12(무오) / 무학 양성 방안, 호구 감소 문제, 조사의 장복의 재료 등에 대해 논의하다 》

차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봄이 이미 저물어 가는데도 날씨가 아직껏 차서 꽃소식이 막연하니, 사관이 충분히 기록할 만한 일이다."

하니,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정월의 추위는 천하가 다 같다고 하니, 꽃이 필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으나, 아침에 북악산을 쳐다보니 또 눈빛이 있었습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눈 역시 제 철이 아니다."

하였다. 그리고 시동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무학(武學)이 있었기 때문에 주자(朱子)가 일찍이 무학 교수(武學敎授)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 나라 **양성지(梁誠之)**의 상소에서 상고할 수가 있다. 무학을 폐지하면서 훈련원으로 고쳤는데, 만약 무성묘(武成廟)를 세운다면 무학이 크게 갖추어질 것이다. 주자가 일찍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일러 예악(禮樂)을 거의 통했다고 하였으니, 공명은 실로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기에 합당하다."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담박명지 영정치원(澹泊明志寧靜致遠) 여덟 글자는 후학들에게 큰 공이 있기 때문에 고 중신 김만중(金萬重)이 일찍이 '공명을 문묘에 종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였는데, 명나라에서는 가정(嘉靖) 연간에 일찍이 문묘에 종향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청 감사 임제원(林濟遠)이 하직 인사를 할 때에 말하기를 '민호(民戶)가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비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어찌 민망스럽지 않은가."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제원이 아뢴 말은 너무 과중한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토지는 더 넓히지 못하지만 인구는 날로 번성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진년 이전에는 성 안에서부터 강 밖에 이르기까지 인가가 즐비하였다고 하는데, 근년 이래로 옛날 즐비하던 가호가 태반이 비어버렸는데도 어찌 호구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하기 전에는 외읍(外邑)의 이속(吏屬)들이 경성에 많이 올라와서 시일을 오래 경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을 사서 그대로 사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 그때에 강 밖의 인가가 즐비했음은 사세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사치하는 폐단이 음식이 의복보다 심하니, 바라건대 성궁(聖躬)께서 몸소 검소함을 숭상하시어 크게 변화하기를 도모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사(朝士)의 장복(章服)에 반드시 갑사(甲紗)를 쓴 것은 30년 사이에 불과하며 전에는 상방(尙方)에서 구하더라도 얻기가 어려웠으니, 어찌 매우 귀하지 않았겠는가. 단사(單紗)는 역시 가볍고 약하여 오래가지 못해서 생초(生綃)와 다름이 없으니 입을 만한 물건이 못된다. 내가 일찍이 보니 고 상신 이복원(李福源)이 익선(翊善)으로 있을 때 남색 장복을 입었었다. 그러니 지금 이후로는 4품 이상은 남색이나 초록색으로 통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일찍이 조신(朝臣)의 화상(畵像)을 보건대 남색 장복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일에 조정이 규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당면한 급선무는 장원한 계책을 가지는 것 만한 것이 없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대신 뿐이다. 상업(相業)의 '업' 자는 바로 성사(成事)·성공(成功)의 뜻인데, 내가 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실로 규모를 정하고 사공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크게 변화시키거나 작게 변화시키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야 군덕을 협찬하고 상업을 이룰 수가 있으니, 경은 힘쓰라. 내가 8년 동안 마음을 써서 겨우 좌상을 얻었고, 또 8년이 되어서야 겨우 경을 오게 하였다. 만약 경이 종래에 나와서 세상과 부침(浮沈)을 같이 했더라면 오늘날의 인망을 성취하기를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 8년 뒤에 또 어떻게 경과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시동이 아뢰기를,

"금부의 문안(文案)에 '특교(特敎)로써 지워버린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홍국영(洪國榮)과 이재간(李在簡)처럼 흉역한 자의 죄명을 어찌 깎아내서 씻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겉으로 보면 비록 온당치 못한 듯하나 나 역시 근거한 바가 있다. 국영에 대한 대계(臺啓)의 율명(律名)은 바로 처자를 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었고, 의금부에 있는 문서에는 '귀환 전

리(歸還田里)'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귀환은 기왕 죄명이 아니고 보면 아직껏 의금부에 머물러 두는 것은 실로 의의가 없는 것이다. 이재간의 죄는 좌상 및 김 봉조하가 상소하여 처음 알았는데 한 번 추문하기도 전에 길에서 지레 죽었다. 그런데 그에게 극률을 가하는 것은 끝내 법 밖의 처벌에 관계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심이지·심환지·이형원 등이 서로 이어서 극력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635 면

【분류】 *왕실(王室) / *교육(敎育) / *사상(思想) / *의생활(衣生活)

정조 21년

《 정조 047 21/12/13(무신) / 훈련원에서 올린 절목 》

훈련원에서 본원(本院)의 절목을 올렸다.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

『본원의 설치는 옛날 국초(國初)의 성대할 때에 있었는데, 훈련관(訓鍊觀)으로 일컫다가 관(觀)을 고쳐 원(院)으로 하였으며 군자 제주(軍諮祭酒)의 직임과 사마 참군(司馬參軍)의 칭호가 질서정연하게 갖추어져 찬란하게 볼 만하였습니다. 한 번 원(院)을 건립하여 관원을 설치한 뒤로부터 무예를 훈련시키고 병사(兵事)를 연습시켰습니다. 예법은 맹추월(孟秋月)에 인사를 선발하는 것을 모방하고 재예(才藝)는 당(唐)나라 장수 학정옥(郝廷玉)이 법을 아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무과를 거쳐 병권을 장악한 이가 모두 이 원(院)과 이 관(觀)에서 출발하였는데 지금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삼가 문양공(文襄公) **양성지(梁誠之)**의 비변(備邊) 10책(策)을 살펴 보건대 '나이 40 이하의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의 갑사(甲士) 중에 기식(器識)이 있고 문자를 아는 자를 자원에 의해 취하여 훈련관에 입학시키고 입번(入番)하거나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무경(武經)》을 습독(習讀)케 하되 그 격식은 성균관의 예를 본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훈련관은 곧 송조(宋朝)의 무학(武學)과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훈련관에 독소(纛所)와 함께 태공망(太公望)의 사당인 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세우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60일 동안 훈련관에 나아가 장(杖)을 연습하고, 방패(防牌) 쓰는 법도 훈련관에서 연습하게 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훈련관 습독관(習讀官)은 《통감(通鑑)》·《무경(武經)》·《장감(將鑑)》·《병요(兵要)》·《진법(陣法)》·《병장설(兵將說)》을 읽히고 있는데 《통감》을 제외하고 혹 《병정(兵政)》을 추가하소서.' 하였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기를 '무과(武科)의 초시(初試)와 원시(院試)는 훈련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취(試取)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내금위(內禁衛)는 병조에서 도총부(都摠府)·훈련원 당상과 같이 시취하며 모든 군사의 시취도 같다. 다만 정병(正兵)의 연재(鍊才)는 훈련원이 시취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무과는 문과(文科)의 예에 의하여 제수하되, 별시위(別侍衛) 및 훈련원 권지(訓鍊院權知)를 나누어 차임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2월과 9월의 20일에 본조와 도총부의 당상이 교외(郊外)나 훈련원에서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족친위(族親衛)·각품(各品)의 반당(伴倘)·장용위(壯勇衛)의 병기를 점고(點考)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출직(黜直)하는 군사는 상번(上番)한 군사를 도와 순찰하는 외에는 3 일에 하루는 훈련원에 나아가 진법을 연습하고 활을 쏜다. 이것을 관장하는 부장(部長)은 본원의 당하관과 같이 시험을 점검한다.' 하였습니다.

《속대전(續大典)》에 이르기를 '금군(禁軍)의 취재(取才)와 내삼청(內三廳) 출신의 취재는 병조·

도총부·훈련원이 시재(詩才)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무릇 거자(擧子)의 정거(停擧)는 훈련원의 참외(參外)인 시임 3원(員)이 모여 의논한다.' 하였습니다. 또 고(故) 봉사시 정(奉常寺正) 차천로(車天輅)가 지은 본원의 중창상량문(重刱上梁文)을 살펴보니 '병조 판서 월사 상공(月沙相公)이 옛것을 개혁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새롭게 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층계 섬돌과 넓은 뜰은 한(漢)나라의 평락관(平樂觀)보다 넓고, 굵은 기둥과 큰 집은 위(魏)나라의 화림원(華林園)보다 고대(高大)하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제(官制)의 연혁(沿革)이 일정하지 않고 원해(院廨)의 흥폐(興廢)가 때가 있었다는 것과 도감(都監)의 설치가 이 원(院)에서 비롯되고 종루(鍾漏)의 관장(管掌)을 이 관(觀)에 붙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종조(太宗朝) 17년에 본관(本觀)에서 속전(屬田)을 마련하여 무사를 기르게 할 것을 청하였고, 세조조(世祖朝) 4년에 훈련관에 명하여 진법을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성종조(成宗朝) 원년에 명하여, 각년(各年)의 무과 출신으로 한산(閑散)하여 소속이 없는 자는 품계에 따라 습독 권지(習讀權知)로 차임하고, 날마다 본원에 나아와 병법을 읽고 활쏘기를 연습하며, 당상이 문·무의 재능이 있는 자를 고찰하여 병조와 도총부에 보고하여 시취(試取)해서 동·서반(東西班)의 수령·첨사(僉使)·만호(萬戶)에 조용(調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 년에 본원에서 기로연(耆老宴)을 열어 2품 온상으로 나이 70이 된 사람은 모두 나아오도록 허락하였으며, 도승지에게 명하여 선온(宣醞)하게 하고 드디어 매년 중구일(重九日)을 잔칫날로 삼았습니다.

우리 중종조(中宗朝)에 와서 중흥(中興)의 대업이 실로 본원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漢)나라의 남북군(南北軍)이나 당(唐)나라의 천책부(天策府)와 같은 대열에 서면서 존엄해졌습니다. 인조조(仁祖朝)에 충정공(忠定公) 이귀(李貴)가 능마아청(能麽兒廳)을 설치하여 병서(兵書)의 고강(考講)을 관장하게 하고, 당상과 낭청은 도정(都正)과 습독관(習讀官)이 예겸(例兼)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先朝) 때에 와서 상신(相臣)이 강연에서 아뢰자 본원(本院)에 능마아청을 합하였고 특명으로 중수(重修)하여 단청이 일신되었습니다. 하늘이 옥련(玉輦)을 돌리어 왕의 덕화(德化)를 다시 입게 되고 말위(靺韋)가 영광스럽게 움직이니 초목에 빛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 임어하신 이래로 문교(文敎)를 크게 펴시어 억조 백성은 형용하기 어려운 큰 교화를 입고 사방은 소리 없는 음악을 듣게 되니, 장수를 누리고 사람을 진작시키는 아름다움이 우주에 성대히 넘쳤습니다. 이윽고 또 한 번 늦추고 한 번 조이는 도를 깊이 생각하시어, 병학(兵學)에 관한 모든 책을 수집하고 무예에 관한 강론을 집성(集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도인 문무(文武)를 아울러 쓰니 보고 느껴서 사방이 바람처럼 고무되었습니다. 어가(御駕)가 남영(南營)에 임어하시자 마자, 따뜻한 윤음(綸音)이 북신(北宸)에서 곧 내려졌는데 자세한 건물을 짓는 책임과 간

절한 유지의 방도였습니다. 이에 광대한 건물이 함께 이루어지니 한 원(院)이 굉걸(宏傑)합니다. 날아오를 듯한 건물은 고대(高大)하고 화려하니, 아, 성대합니다. 이곳에 있게 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군들 흥기(興起)하고 분발해서 우리 성상의 도야(陶冶)하고 진작시켜 주시는 성대한 덕과 지극한 뜻에 부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해야 할 조건을 아래에 개록(開錄)합니다.

금군(禁軍)을 창설하던 초기에 반드시 이 훈련원에서 무예를 익히고 혹 금중(禁中)에서 열병(閱兵)을 시험하기도 하였으니, 굉원(宏遠)한 계책과 경장(經長)한 도모에 대해 칭송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영(各營)의 삭조(朔操)와 중일제(中日製)의 예에 의하여 매월 조련(調鍊)을 행하고 가운데 달에는 사습(私習)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병조 판서가 교외에서 군대를 훈련하는 것이 군대를 훈련하는 대요(大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옛날 용장(龍將)과 호장(虎將)으로 나누어 과습(課習)을 훈련시킨 것이 성대하게 성과가 있었으므로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제도로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원의 건물이 다시 새롭게 된 상황에서 전례를 참작하여 다시 달마다 연습하는 옛날 규례를 신명(申明)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하고 실지를 힘쓰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별장(別將)이 반드시 매월 초하루에 본원(本院)에 모아 나아가고 물러나며 달리고 쫓아가는 절도를 연습시키는 동시에 봄가을에는 병조 판서가 교장(敎場)에서 조련을 시행하여 군대의 위용을 떨쳐야 할 것입니다.

교장을 노량(鷺梁)으로 확정한 것은 본래의 옛날 법이 못됩니다. 남소영(南小營)·사아리(沙阿里)·모화관(慕華館)을 막론하고 편리할 대로 설행(設行)함으로써 구례(舊例)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습(私習) 및 조련(組鍊)과 관련하여 응당 행해야 할 사례(事例)는 병조로 하여금 절목을 찬성(撰成)하여 계하(啓下)받은 다음 거행하게 하소서.".】

【원전】 47 집 56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끝 -

연보(年譜) # 표시는 윤월임.

세종 9년

○ 9월 29일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재직함.

세종 28년

○ 11월 8일 《태조실록(太祖實錄)》을 춘추관 기주관(記注官)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記事官)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바치게 하다.

세종 31년

○ 2월 5일 춘추관에서 《고려사(高麗史)》 개찬에 대해 사관 양성지 등과 논의하다.

세종 32년

○ 1월 15일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가 비변(備邊)에 대한 열 가지 방책을 올리다. : 사졸을 골라서 뽑을 것, 장수를 가려서 세울 것, 군량을 저축할 것, 군사용 기계를 정비할 것, 성(城)과 보(堡)를 수축하고 관방(關防)을 정할 것, 행성(行城) 쌓는 일을 논의할 것, 왜인을 잘 대접할 것 등을 상소하다.

"신이 감히 장수와 군졸을 뽑고 군량을 저축하며 기계(器械)를 준비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는 것이 당금(當今)의 급무(急務)라고 하는 것이옵니다."지금은 군사의 수효가 서울의 시위 군사(侍衛軍士)를 제외하면 군사가 겨우 10여 만이온데, 선군(船軍)이 일부분이고 시위 진군(侍衛鎭軍)과 수성군(守城軍)이 일부분이며 연호 잡색군(烟戶雜色軍)이 일부분이므로 선군(船軍)은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또한 쓸 수 없고, 잡색군(雜色軍)은 관호(官戶)나 혹은 향리(鄕吏)나 혹은 천례(賤隷)로서 모두 연호(烟戶)의 집사인(執事人)이옵고, 다만 시위 진군(侍衛鎭軍) 수만 기(數萬騎)만이 조발(調發)할 수 있는 군사입니다. 이것은 군액(軍額)은 비록 있사오나 정병(正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기에 한심(寒心)하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호구(戶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사람들이 많이 누적(漏籍)되고, 또 제색 잡역인(諸色雜役人)이 군목(軍目)에 예속되지 않은 것이 많은 까닭이옵니다. 옛날 당나라 장수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평정하고 호수를 조사한 것이 70만을 내려 가지 않았사온데, 신라(新羅)의 수효는 그 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또한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동서(東西)가 1천 4, 5백 리이고 남북(南北)이 1천 2, 3백 리가 되니, 그 사이에 70만 호(戶)는 될 것이고 호(戶)마다 세 사람의 장정이 나오면 무릇 2백 10여 만명이 될 것이

다.' 하였는데, 이는 성인(聖人)이 만리(萬里) 밖을 밝게 본 말이옵니다."“대개 장수는 삼군(三軍)의 사명(司命)이오니 그 용맹으로만 취하는 것은 불가하옵고, 또한 문인(文人)으로서 약간의 무예(武藝)를 안다는 것만으로 취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전조(前朝)에서 유장(儒將)을 많이 썼사온데, 강감찬(姜邯贊)·김부식(金富軾)·조충(趙沖)·김득배(金得培)가 이것입니다. 만일 무신(武臣)으로써 장수를 삼는다면 또한 문신(文臣)을 써서 부장(副將)을 삼아 서로 더불어 문무가 겸제(兼制)되어 그 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옛사람이 이르기를,'비록 10만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고 하루의 양식밖에 없으면 하룻 동안의 군사밖에 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용병(用兵)의 도리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사를 일으킬 때면 농사가 때를 잃어 의례 흉년드는 해가 많고, 조전(漕轉)하는 비용도 또한 적지 않아서 진실로 염려되옵니다."“신은 듣자옵건대, 조조(晁錯)가 말하기를, '기계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 군사를 적에게 주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대저 중국이 전쟁[戎馬]을 버티어 가는 것은 오직 기계의 정교함에 힘입는 것입니다."“대개 군진(郡鎭)이라는 것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임금이 험한 곳에 성보를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옵니다."“대개 서울은 근본이 되는 땅이니, 근본의 땅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방의 민심이 또한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대저 성곽(城郭)이 견고한 연후에야 민심이 안정되어 사수(死守)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개 고금 천하의 국가 일은 자치(自治)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자치(自治)가 이미 엄(嚴)하면 비록 외적의 침범이 있을지라도 근심될 것이 없습니다."“대개 행성(行城)을 쌓는 것은 국가의 중사(重事)이온데, 신이 듣자오니, 성을 쌓는 곳이 서쪽으로 인산(麟山)에서부터 동쪽으로 경흥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里)로서, 해마다 춘추(春秋)로 수만 명의 장정을 징발하여 수월(數月) 동안 역사시켜도 그 쌓는 바가 수십 리에 불과하다 하옵니다."“대개 지난 가을에 대마도(對馬島) 왜인이 양식을 구하기를 마지 않았사온데, 신이 이를 듣고 생각하기를, 예로부터 모두 북방의 염려되는 것은 알면서 남쪽 도적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에 격노(激怒)하여 모두 일어나면 바닷가 수천 리에 농사꾼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졸(士卒)들은 분명(奔命)하여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오니, 어찌 이보다 백배(百倍)만 되오리까. 국가에서 종씨(宗氏)를 대우함에 매우 잘하고 있었사오니, 비옵건대, 구례(舊例)대로 조금 우대(優待)하여 비록 요구하고 졸라대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들어줌이 마땅하고, 만일에 명분(名分)이 없이 주는 것을 그르다 한다면, 종정성(宗貞盛) 등의 작명(爵命)을 더해 주고 인하여 녹봉(祿俸)이라 하여 주오면 명분도 바르고 말[言]도 순하며, 저들도 또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종 즉위년

○ 7월 6일 임금이 장차 세자(世子)를 위하여 황보인(皇甫仁)을 사(師)로, ... 양성지를 문학(文學)

으로 삼다.

○ 9월 7일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양성지가 문과의 별시를 없애는 등 과거제도의 개정을 건의하다

○ 9월 17일 왕세자가 처음으로 서연(書筵)을 열다. 우문학(右文學) 양성지 등이 소학을 강론하다.

문종 1년

○ 11월 25일 집현전 교리 양성지가 강무장(講武場) 주위에 사는 백성들의 금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토록 건의하다.

"근년에 강무장을 크게 넓히어 금수(禽獸)가 번성(繁盛)하여 화곡(禾穀)을 해치니, 주민의 태반이 유리(流離)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유망(流亡)하였으나 공부(貢賦)는 옛날과 같으니, ... 빌건대 정부(政府)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의논하여, 철원(鐵原)·평강(平康)·이천(伊川)·양평(楊平)·지평(砥平)·춘천(春川)·홍천(洪川)·횡성 이외에는 헤아려 <공부(貢賦)를> 파하여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國家)에서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한 것은 그 조석(朝夕)으로 의논하고 생각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너희들이 모든 국가의 일에 대하여 극진하게 의견을 말하고 숨김이 없으니, 내가 대단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예의(銳意)로 다스림을 구하여 여러 신하가 윤대(輪對)하면 반드시 언사(言辭)와 안색(顔色)을 바로 하고 듣는 데 매우 열심이었고 고달픔을 몰랐으며, 혹은 해가 중천(中天)에 이르러도 수라를 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또 야대법(夜對法)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문종 2년

○ **《문종실록》** 편수관 명단에 '중직 대부 행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中直大夫行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양성지(梁誠之)**'가 포함되다.

단종 1년

○ 1월 7일 직집현전(直集賢殿) 양성지가 군신 사이에 서로 닦아야 할 도(論君道)에 대해 상서하다.

단종 1년

○ 10월 17일 세조가 양성지를 시켜 《조선도도(朝鮮都圖)》, 《팔도각도(八道各圖)》, 《주부군현각도(州府郡縣各圖)》 각 1건 등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다.

세조가 정인지(鄭麟趾)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우공 지리(禹貢地理)의 제도가 있었고, 또 주관 관제(周官官制)의 글이 있다. 지리와 관제는 대(代)마다 각각 닦았으니, 본조(本曹)에서도 마땅히 옛일을 모방하여 《조선도도(朝鮮都圖)》 1건, 《팔도각도(八道各圖)》 1건, 《주부군현각도(州府郡縣各圖)》 1건 및 백관의 관명(官名)·직사(職事)·관리의 수(數)를 만들어서 옛 것을 상고하고 상정(祥定)하여 국가 만세의 보배를 삼아야 하겠다." 하고,"누가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냐고 물었다. 정인지가 직전(直殿) 양성지(梁誠之)를 천거하기를, 그는 일찍이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를 편수하였으니, 마땅히 이 사람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양성지를 시켜 관장하게 하였다."

○ 11월 2일 양성지가 정부에서 평안도 변방에 대신을 보내어 살펴본 후에 수비를 거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청하다.

단종 2년

○ 1월 27일 직집현전 양성지가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편찬하여 바치다.

○ 2월 9일 양성지가 시전(市廛)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한성부의 간사한 아전들을 엄히 다스리기를 청하다.

○ 4월 17일 세조가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만들고자 하다. 집현전 직전(直殿) 양성지는 지도에 밝으므로 지도 제작의 지시를 받다.

○ 6월 1일 검토관(檢討官) 양성지가 흉배를 입어서 조장(朝章)을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세조 1년

○ 7월 5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민심을 얻어야 한다·예속(禮俗)은 본국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儀從本俗)·문무(文武)를 하나 같이 대접해야 한다(侍文武如一)·큰 나라를 섬기는 예법에서 사명(使命)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백성을 좀 휴식케 하면서 사대(事大)의 체통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등 12가지 상소를 하다.

"대개 신은 듣건대 서하(西夏)는 그 나라의 예속(禮俗)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원호(元昊)는 본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금의(錦衣)와 옥식(玉食)은 번국(蕃國) 사람 체질에 편리한 것이 아니다' 하였고, 금(金)나라의 세종(世宗)도 또한 매양 상경(上京)

의 풍속을 생각하며 종신토록 잊지 않았습니다. 요(遼)나라에서는 남부(南府)·북부(北府)가 있었고, 원(元)나라에서는 몽관(蒙官)·한관(漢官)이 있었는데, 원나라 사람은 그 근본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비록 중원(中原)을 잃었어도 사막(沙漠) 이북의 본토는 옛과 같았습니다.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遼水)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萬里之國)이라 불렀습니다. 삼면(三面)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區域)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풍토(風土)와 기후(氣候)도 역시 달라서 단군(檀君) 이래 관아(官衙)와 주군(州郡)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성위(聲威)와 교화(敎化)를 펴 왔으며, 전조(前朝)의 태조(太祖)는 신서(信書)를 지어 국민을 가르쳤는데, 의관(衣冠)과 언어(言語)는 모두 본국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의관과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면 민심이 정착되지 않아서 마치 제(齊)나라 사람이 노(魯)나라에 간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전조 때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서로 잇달아서 몽고(蒙古)로 투화(投化)한 것은 한 국가로서는 매우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의관은 조복(朝服) 이외에 반드시 다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고, 언어는 통사(通事) 이외에 반드시 옛 습속을 변경하려 할 것이 아니며, 비록 연등(燃燈)·척석(擲石)이라 할지라도 역시 옛 습속을 좇아도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 8월 12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에 명하여 《지리지(地理誌)》를 편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다.

○ 11월 10일 평안도 경차관(平安道敬差官) 양성지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지도를 바치고, 변방의 방어 계책 등 도내 편의 사건 18조를 아뢰다. : 강변의 모든 군(郡)을 승급시킬 것, 강계(江界)에 지방민 관원을 채용할 것, 강계에 군수품을 저축할 것, 평양성을 증축할 것, 지방민 관원을 승급시킬 것 등 18개안을 상소하다.

○ 12월 27일 의정부에 전지(傳旨)하여 직제학 양성지 등을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하다.

세조 2년

○ 1월 12일 **양성지(梁誠之)**에게 관작(官爵)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다.

○ 1월 25일 시강관(侍講官) 양성지가 내조한 왜인(倭人)·야인(野人)에게 궁마(弓馬)를 내려주지 말도록 청하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接待)할 때에 증유(贈遺)하는 물건이 너무 많아 장차 잇대기가 어려울 것이 염려되고,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내조자(來朝者)에게 궁마(弓馬)를 내려 주시는데, 궁마는 바로 적의 침략을 막는 기구이니 가볍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며, 저 사람들이 우리 나라 궁시(弓矢)의 제도를 보고 경리(輕利)하다고 생각하여 본뜰 수도 있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양성지가 또 지도(地圖)·관제(官制) 등의 일을 아뢰므로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다.

○ 2월 20일 경연에서 시독관 양성지가 언로를 열 것을 청하다. 또 형벌(刑罰)을 신중히 하고, 작

상(爵賞)을 중하게 하며, 급사중(給事中)을 설치하고, 《고려사(高麗史)》를 반포하는 등의 일을 아뢰다.

○ 3월 18일 경연에서 시강관 양성지가 경학(經學)을 집현전(集賢殿)이나 삼관 유생(三館儒生)도 강습(講習)함이 옳겠다고 아뢰다.

○ 3월 28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대사례(大射禮) 거행 무위(武威)와 사기(士氣) 앙양·오경(五京) 증치(增置)·번부악(蕃部樂) 설치·매년 봄·가을로 동교(東郊)에서"전 조선왕(前朝鮮王) 단군(檀君), 후 조선왕(後朝鮮王) 기자(箕子), 신라(新羅)의 시조(始祖)·태종왕(太宗王)·문무왕(文武王), 【두 왕은 고구려·백제를 통합하였음.】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영양왕(嬰陽王), 【수병(隋兵)을 대패(大敗)시킴.】 백제(百濟)의 시조, 고려(高麗)의 태조(太祖)·성종(成宗)·현종(顯宗)·충렬왕(忠烈王)" 이상 12위(位)를 합제(合祭)하고,"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인문(金仁問)·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 백제의 흑치상지(黑齒常之)와 근일에 정한 전조(前朝)의 배향 16신(配享十六臣)과 한희유(韓希愈)·나유(羅裕) 【합단(哈丹)을 막는 데 공이 있었음.】·최영(崔瑩)·정지(鄭地) 【왜구(倭寇)를 막는 데 공이 있었음.】 등을 배향(配享), 무성묘(武成廟)를 세워서 제례(祭禮)와 배식(配食)은 대략 문묘(文廟)의 제도에 따르고, 또 신라의 김유신(金庾信),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 고려의 유금필(庾黔弼)·강감찬(姜邯贊)·양규(楊規)·윤관(尹瓘)·조충(趙冲)·김취려(金就礪)·김경손(金慶孫)·박서(朴犀)·김방경(金方慶)·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方實)·최영(崔瑩)·정지(鄭地), 본조(本朝)의 하경복(河敬復)·최윤덕(崔閏德)"등 역대의 무장 배향(配享) 무성묘(武成廟)를 세울 것, 공신 배향,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등 문묘에 배향(配享)·문무(文武)의 과법(科法) 개혁·선진 중국에 유학생 파견·노비와 백정에 관한 제도 개선 등 24개 안의 상소를 하다.

○ 5월 21일 시독관 양성지가 경연에서 임금이 밤에 대신(大臣)들 집에 여러 번 행차한데 대하여 불가함을 아뢰자 이개(李塏)가 그 말을 듣고"양공(梁公)은 경제(經濟)의 재사(才士)라고 하더니, 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구나."하다.

○ 11월 9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보덕(左輔德)으로 활약함.

세조 3년

○ 3월 12일 판사(判事)로 활약함.

○ 3월 15일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양성지가 친히 상제(上帝)를 남교(南郊)에 제사지내셨으니 조성(祖聖)의 존시(尊謚)를 더 올릴 것, 제왕(帝王)의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컬을 것, 국가의 문서를 사고에 보관할 것, 의제(儀制)를 정하는 조목, 호적(戶籍)을 밝히는 조목, 의창(義倉)을 충실하게 하는 조목, 쓸데없는 관원[冗官]을 도태(淘汰)시키는 조목, 작은 현(縣)을 병합(併合)하는 조목

등 12개조를 상언하다.

"전대(前代)의 역사를 상고해 본다면, 요(遼)나라와 금(禁)나라에서 사개(使价)를 보내어 와서 생신(生辰)을 하례(賀禮)하게 했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다만 탄일(誕日)이라 일컬어 예(禮)가 매우 간략(簡略)했으니, 본시 불가(不可)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당사(唐史)》를 살펴보건대, 발해(渤海)의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前麗]의 옛 장수인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망했으므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동국(東國)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의 융성(隆盛)한 것은 다만 발해(渤海)만 일컬었을 뿐이고 삼한(三韓)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신(臣)은 가만히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요제(堯帝)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土地)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되고, 생치(生齒)가 번성(煩盛)하고 군사와 마필(馬匹)이 강성하고 백관(百官) 제도가 성대한데, 비록 별도로 연호(年號)는 세우지 못하지마는 유독 고구려(高句麗)의 옛 것을 계승하여 절일(節日)을 일컬을 수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 6월 28일 판서운관 사(判書雲觀事) 양성지가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 서문을 바치다.

○ 10월 22일 훈련관 사(訓鍊觀使)로 활약하다.

○ 10월 22일 훈련관 사 양성지가 둔전(屯田)·용관(冗官)·사졸(士卒) 등에 관해 올린 편의(便宜) 사항 4조를 올리다. : 의창(義倉)을 충실하게 하는 대책을 세울 것, 둔전법(屯田法)을 크게 실행할 것, 총통위(銃筒衛)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번상(番上) 군사를 더 정할 것, 장술(杖術)과 방패술을 훈련시킬 것 등 4조의 상소를 하다.

"먼저 힘쓸 바는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두 가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백성의 삶을 잘 기르고, 군비가 완벽하면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 벼농사가 흉년이 들고 게다가 누차 포흠(逋欠)을 견감(蠲減)하여, 의창(義倉)이 부실하고 군자(軍資)도 또한 모손(耗損)되었으니, 보충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諸司)에서 징속(徵贖)한 물건과, 외방의 어염(魚鹽)과 바꾼 것으로써 수량을 충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고, 둔전법(屯田法)을 크게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 10월 27일 양성지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다.

세조 4년

○ 9월 26일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가 위(衛)와 부(部)의 형식과 명칭(衛部形名)에 대하여 아뢰다. : 오위(五衛)의 깃발의 색깔 제정에 대해 상언하다.

세조 5년

○ 8월 20일 임금이 승정원에 잠서(蠶書)를 교정하는 일을 말하고 그 교정을 양성지에게 맡기다.

○ 10월 1일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가 새로 잠서(蠶書)를 찬술(撰述)하여 바치다.

○ 11월 22일 행 호군(行護軍) **양성지(梁誠之)**로써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후원(後苑)에서 습진(習陣)케 하다.

○ 11월 30일 양성지에게 《의방유취(醫方類聚)》를 교정하게 하다.

세조 6년

○ 2월 12일 송처관·양성지 등에게 《손자주해(孫子註解)》를 교정하게 하다.

○ 3월 10일 호조 참판 김순 경창부윤(慶昌府尹) 양성지를 명(明)에 보내 칙서에 대해 회주(回奏)하고 표리(表裏)를 내려 준 것에 대하여 사례(謝禮)하다.

○ 3월 14일 어찰(御札)로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양성지에게 전국의 서책을 정비하고 보존에 주의할 것을 명하다.

○ 6월 9일 사은사(謝恩使) 김순 부사 양성지가 칙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세조 7년

○ 7월 2일 **양성지(梁誠之)**를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제수하다.

○ 7월 18일 교서관 제조(校書館提調)로 활약함.

○ 8월 27일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 등에게 언문(諺文)으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번역하게 하다.

세조 8년

○ 1월 28일 양성지를 예문관(藝文館) 제조(提調)로 삼아 간행한 서적을 고열하게 하다.

세조 9년

○ 3월 29일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등에게 실록(實錄)을 춘추관(春秋館)에서 상고[攷]케 하고 주악(酒樂)과 절화(節花)와 어제시(御製詩)를 내려 주다.

○ 5월 30일 양성지가 서책을 상고하여 교정한 다음 올린 글에서 연호 표시, 규장각(奎章閣)의 설

치를 건의하다. 임금이 양성지의 학구열을 극찬하다.

"빌건대, 지금의 장서(藏書) 뒷면의 도서(圖書)는 '조선국 제6대 계미세 어장서(朝鮮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 본조(本朝) 9년·대명 천순(大明天順) 7년이라.' 일컫고, 진자(眞字)를 가지고 이를 쓰며, 앞면의 도서(圖書)는 '조선국 어장서(朝鮮國御藏書)'라 일컫게 하고, 전자(篆字)를 가지고 이를 써서 제책(諸冊)에 두루 나타내어, 만세(萬世)에 밝게 보이며, 혹 신라(新羅)와 전조(前朝) 성시(盛時)의 예(例)에 의하여 따로 연호(年號)를 세워서 표지(標識)를 삼게 하소서."

○ 9월 5일 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찬을 명하다.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수교(讎校)하게 하다.

○ 9월 20일 양성지(梁城之)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삼다.

○ 9월 27일 《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찬을 양성지가 맡고, 신숙주·권남이 감수하게 하다

○ 11월 12일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척(鄭陟)·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등이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바치다.

○ 11월 15일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등을 불러서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사정전(思政殿)에 헌가(軒架)소를 베풀고,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악생(樂生)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다. 또 양성지와 더불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일을 의논하다.

○ 11월 17일 양성지의 제안을 이때에 받아들여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弘文館)으로 하고 겸관(兼官)을 정하다.

○ 11월 23일 박원형을 홍문관 대제학으로, 양성지를 제학으로, 노사신을 직제학으로 삼다.

○ 11월 25일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등이 시측(侍側)하고 악장(樂章)을 의논하여 정하다.

세조 10년

○ 1월 15일 원구(圓丘)에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음악을 사용하였다. 그 의례를 정하다.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 등에게 말 1필씩을 하사하다.

○ 4월 26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가 홍문관의 서적에 관한 일에 대해 의논하여 사목(事目)을 만들게 하다

○ 5월 28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가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제도인 방납(防納)을 폐지하라는 상언을 하다.

○ 6월 29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가 어전(御前) 강독(講讀)인 전강(殿講)에서 사학

(史學)도 강독할 것을 상언하다. : 예문관(藝文館)의 겸관(兼官) 20인을 정하게 골라서 그 장기(長技)에 따라서 이학(理學)·사학(史學)의 두 학업(學業)으로 나누어서 전공할 자를 둘 것을 제안하면서 《삼국사기(三國史記)》·《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전사(高麗全史)》를 전공할 자 5인을 정하여 두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아뢰다.

○ 8월 1일 양성지가 고금(古今)에 용병(用兵)하던 방도를 두루 참고하여, 감히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고,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고, 군정(軍情)을 보살피고,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고, 군령(軍令)을 간략하게 하는 5가지 일을 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삼아, 이로써 군제(軍制)를 정(定)하고, 군기(軍器)를 정비하고, 군문(軍門)을 갖추고, 군정(軍丁)을 보호하고, 군사를 사열(査閱)하는 등 그 차례를 만들어 우러러 예람(睿覽)을 바란다며 10조목을 상서하다.

○ 9월 8일 **양성지(梁誠之)**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고, 《무경(武經)》을 주석(註釋)하고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자급(資級)을 올렸는데, 당상관(堂上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다.

○ 9월 19일 승정원에 첩종령(疊鍾令)을 행할 것을 통지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를 잡류장(雜類將)으로 삼다.

* 첩종령(疊鍾令) :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던 신호의 하나. 군대를 집합시켜 사열하기 위한 신호로 큰 종을 쳐서 알렸다.

세조 11년

○ 3월 9일 효령 대군 이보가 원각경(圓覺經) 수교(讎校)를 마쳐 잔치를 베풀다. **양성지(梁誠之)**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삼다.

○ 6월 1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가 바다와 연못에 둑을 쌓고 내와 포구를 막아 농경지를 넓혀 노는 사람을 없게 하는 일, 소의 밀살을 금지할 일, 양곡 씨앗을 비축하는 일 등 농업에 대해 4가지 상소(勸農四事)를 하다.

○ 7월 25 양성지에게 오륜과 관계되는 것을 찬술케 하고 《오륜록(五倫錄)》으로 간행하다.

"《삼강행실도》와 제사(諸史)를 상고하여, 오륜(五倫)에 관계되는 것 수십 조(數十條)를 찬술하여 올려라. 내가 장차 관람하고 재정(裁定)하여 만세(萬世)토록 사람을 가르치는 법(法)으로 삼겠다." 하므로, **양성지(梁誠之)**가 찬진(撰進)하였더니, 명하여 노사신(盧思愼)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교정하게 하고, 드디어 명하여 《오륜록(五倫錄)》이라 이름하였다."

○ 7월 27일 **양성지(梁誠之)**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다.

○ 8월 2일 중궁(中宮)과 더불어 희우정(喜雨亭)에서 수전(水戰)을 구경하다. **양성지(梁誠之)**를 불

러 말하기를,"근일에 헌부(憲府)를 정품(正品)으로써 올린 것을 경(卿)은 아는가? 헌부(憲府)는 나라의 이목(耳目)이니, 하루라도 게으르고 소홀하면 백관(百官)이 능이(陵夷)하여지니, 내가 경(卿)을 임용한 것은 그것을 진작시키려 함이다."하다.

* 대사헌은 종2품인데, 이때에 특별히 양성지를 위하여 정품 즉 정2품으로 올린 것이다.

○ 11월 15일 대사헌 양성지가 군국 편의 10사를 올리다. : 장수의 순찰을 논의할 것, 양계와 제주의 자제를 등용할 것, 왜인과 야인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명나라 사신에게와 같이 여악(女樂)을 쓸 것 등을 상소하다.

"군국(軍國)의 일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도모하여 만전의 계책을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는 경계가 다른 나라와 연접하여 방어하기에 고생하니 무수(撫綏)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등이 들어 있다.

세조 12년 * #는 윤월임.

○ 3월 #29일 양성지에게 세자를 가르칠 책을 초록하게 하다. 글을 만들어 바치니, 이름을 《유선서(諭善書)》라 내려 주고 서연(書筵)에 진강(進講)하기를 명하다.

○ 3월 #29일 최항·김국광·한계희·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케 하다.

○ 5월 14일 김수온·양성지 등 발영시(拔英試)에서 선발된 자들을 승진 임용하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품계(品階)를 올려 주었는데, 자궁(資窮)이 되어 직질(職秩)을 승진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아들과 조카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허가하다.

○ 7월 1일 궐내(闕內)에 간수한 《대명강해율(大明講解律)》과 《율학해이(律學解頤)》·《율학변의(律學辨疑)》 등의 책을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이를 교정(校正)하게 하고 중외에 간인 반포케 하다.

○ 8월 13일 대사헌 양성지 등이 옛 제도와 같이 서경(署經)할 것을 건의하다.

○ 10월 2일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양성지(梁誠之)** 등에게 명하여 역(易)·천문(天文)·지리(地理)·의(醫)·복서(卜筮)·시문(詩文)·서법(書法)·율려(律呂)·농상(農桑)·축목(畜牧)·역어(譯語)·산법(算法) 등 제서(諸書)의 유취(類聚)를 간선(揀選)하도록 하다.

○ 10월 24일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서거정(徐居正)·**양성지(梁誠之)** 등을 제서(諸書)의 유취(類聚)를 써서 바치도록 하고, 이어 술자리를 베풀다.

○ 11월 2일 시무(時務) 10조에 관하여 대사헌 양성지가 상소하다. 중국 조정에서 장차 개주(開州) 등지에 위소(衛所)를 세우려고 하니, 이것은 국가 문정(門庭)의 걱정이므로 개주 등지에 위(衛)의 설치를 중지 시켜야 할 일, 병사는 모두 재주 시험을 거쳐서 뽑을 일, 함흥 이북의 각군을 종친에

게 식향(食鄕)으로 줄 일, 공신에게 평안도의 주군(州郡)을 식읍(食邑)으로 줄 일 등을 올리다.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고, 식량은 백성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국가의 동남쪽에 적국(敵國)으로서는 대마도(對馬島)가 가까운데, 만약 훗날에 편안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멀리 가서 정벌할 필요도 없으며 험지(險地)에 들어가서 이익을 다툴 필요도 없고, 다만 경주(輕舟) 수백 척으로 바람을 타고 바로 그 곳으로 나아가서 화포(火砲)로써 그 주즙(舟楫)을 다 불살라 버리면 되옵니다,""대저 병졸(兵卒)은 정예(精銳)함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군정(軍政)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함길도와 평안도(平安道) 변방의 일에 관한 것 등이다.

○ 11월 4일 병법과 사기(史記)와 지도의 집록(輯錄)과 전강(殿講)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가 상소하다 : 모든 서적을 수찬(修撰)할 때 사기(史記)와 병서(兵書)와 지도를 함께 편찬할 것, 중국 사서와 함께 국사도 진강할 것 등을 상소하다. 양성지가 찬술(撰述)한 《동국도경(東國圖經)》을 임금이 장차 목판(木板)에 새겨서 보겠다고 하다.

"빌건대, 제가(諸家)의 병법(兵法)과 사기(史記)와 지도(地圖)를 모두 집록(輯錄)하도록 하여 일대(一代)의 전고(典故)를 이루게 하고, 이어서 전강(殿講)하는 날 혹은 주연(酒宴)의 여가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속편강목(續編綱目)》과 《동국사략(東國史略)》과 《고려사(高麗史)》 등의 책을 진강(進講)하도록 하여, 전대(前代)의 성패(成敗)를 상고하여 당금(當今)의 치도(治道)를 논하게 된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법(兵法)과 사기(史記)는 <소용되는 것만> 뽑아서 기록하기가 어렵겠다."

하고, 이어서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 "양성지가 찬술(撰述)한 《동국도경(東國圖經)》은 내가 장차 목판(木板)에 새겨서 보겠다."

○11월 17일 문적의 관리에 관한 10조목을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하다.

"조종(祖宗)의 실록(實錄)은 한 나라 만세(萬世)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교서(典校署)에 명하여 3건(件)을 인출(印出)하여 외방의 3사고(史庫)에 수장하게 하소서. 외방의 3사고(史庫)는 서적(書籍)을 수장하는 곳인데 인구(人口)가 서로 떨어진 곳을 가려서 이를 옮기도록 하소서. 서적(書籍)이 중국에서 온 것은 비록 혹시 흩어져 없어지더라도 오히려 다시 구할 수가 있지마는 다만 본국(本國)의 서적(書籍)은 진실로 한 번 잃기만 하면 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빌건대 우리 나라에서 찬술(撰述)한 서적은 10건(件)을 만들어서 분산 보관케 하소서. 《총통등록(銃筒謄錄)》은 국가의 비밀 문서(秘密文書)인데, 만일 간첩(間諜)이 이를 훔쳐서 이로 인해 이익을 삼는다면 동남(東南)의 해(害)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언자(諺字)로 써서 베껴 내외(內外)의 사고(史庫)에 각기 3건(件)씩 수장하고, 홍문관(弘文館)의 3건(件)은 신(臣)이 굳게 봉(封)한다고 일컫게 하고, 그 한자(漢

字)로 써서 베낀 것은 모두 불살라 없애게 하여서 만세(萬世)를 위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우리나라의 문적(文籍)은 단군(檀君) 시대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역력히 상고할 수가 있으니, 다른 번국(蕃國) 요(遼)·금(金)·서하(西夏)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본국(本國)의 문사(文史)와 공사(公私)의 문권(文券)은 장차 남아나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엄중히 보관케 하소서 등이다."

세조 13년

○ 1월 4일 농우(農牛) 도살 금지에 관하여 대사헌 양성지가 상소하다. : 소를 잡는 금지법을 무겁게 할 것을 상소하다.

○ 1월 25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찬술(撰述)하여 올리다.

○ 5월 28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북방을 비어(備禦)하는 15개조의 사의(事宜)를 올리다.

"근일에 군사와 마필(馬匹)이 정제(整齊)되지 못하여, 혹은 도보(徒步)로 가고, 혹은 노자(奴子)에게 쌀을 짊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니, 금후로는 제도(諸道)에서 징병(徵兵)할 때에 잘 헤아려서 봉족(奉足)을 넉넉히 주어 군장(軍裝)과 마필(馬匹)과 양료(糧料)를 넉넉히 갖추게 하소서."'병사(兵士)가 무력(武力)이 있는데도 군장(軍裝)이 없는 자는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관(官)에서 지급하여 수용(收用)하소서."'의주(義州)와 강계(江界) 등지의 방수(防戍)를 배나 더 근신(謹愼)하게 하여,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이 있는 곳까지도 또한 북방에 이 성식(聲息)이 있는 것이 새지 않도록 하소서."

○ 6월 10일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의 일에 대하여 착하게 직언(直言)하였다고 하며 대사헌 양성지에게 채단(綵緞) 1필(匹)을 하사하다.

○ 7월 8일 친정(親征)과 변방 방어에 관하여 대사헌 양성지가 상소하다.

○ 7월 26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수성 도정(壽城都正) 이창(李昌) 등에게 명하여 「성제 공수도(聖制攻守圖)」를 고열(考閱)하고 병기(兵器) 제도를 상고(詳考)하게 하다.

○ 8월 6일 노비 종군, 유구국에 대한 지나친 예물 등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가 4개조의 상서를 하다.

"대가(大家) 세족(世族)들이 중외(中外)에 포열(布列)하여 국가의 지주(支柱)가 되도록 공사 천구(公私賤口)로서 재예(才藝)를 이루어 시험에 입격(入格)하여 장용대(壯勇隊)에 속하는 자 이외에는 양인(良人)이 되는 길을 자주 열어 주지 말고, 노주(奴主)의 분수(分數)를 백세(百世)토록 바꾸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목면(木綿) 1만 필(匹)과 면주(綿紬) 5천 필을 유구국(琉球國)에 보낸다고 하

는데, 신이 그윽이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 9월 6일 이시애(李施愛) 난 평정을 기려 대사헌 양성지의 평삭방송(平朔方頌)을 바치다.

○ 10월 13일 **양성지(梁誠之)**·박안성(朴安性)·이극기(李克基)·김순명(金順命)·이경동(李瓊仝)·안호(安瑚)·박양(朴良)·유종준(柳宗濬) 등에게 명하여 실록(實錄)과 여러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북정록(北征錄)》에 기록할 만한 일을 표(標)하여서 아뢰게 하다.

세조 14년

○ 6월 18일 대납·사창·의창·형·노비법·교화·병용에 관하여 사헌부 대사헌 양성지가 6개조의 상소를 하다.

"수령(守令)이란 자는 부상(富商)에게 구부리고, 권세(權勢)에 제어되는 무리이라서 다만 민정(民情)이 원하는 바의 쌀·콩과 초목(草木) 등류와 같이 백성이 쉽게 판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납을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강제로 불러다가 문권(文券)을 만들어 다 대납하게 하되, 값을 징수할 즈음에는 관(官)에서 거두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촌락(村落)을 횡행(橫行)하여 뜻대로 수렴(收斂)하게 하니, 발가벗기고 종아리를 때리는 등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 집에 있는 것을 다하여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면 책임을 친린(親隣)에게까지 미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대소 인민이 오오(嗷嗷 : 뭇사람이 슬퍼하는 모양)하며 알몸으로 배를 주리고 조석(朝夕)을 보전하지 못하는데도, 홀로 상고(商賈)의 무리만은 풍족하게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립니다.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일수록 더욱 가난하니, 그 전하의 박시 자민(博施字民)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 7월 29일 **양성지(梁誠之)**·이석형(李石亨) 등을 불러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강(講)하게 하고 또 마음의 성정(性情)을 논(論)하였는데, 대답하는 것이 모두 뜻에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모(冠帽)를 벗고 부(浮)를 하도록 명(命)하다.

○ 8월 10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에게 명(命)하여 조종(祖宗)의 어제(御製)를 실록(實錄)이나 여러 곳의 일기(日記)에서 찾아내어 아뢰도록 하니, 양성지가 예조(禮曹)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심방(尋訪)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르다.

○ 8월 14일 임금이 어제시(御製詩)를 내어 **양성지(梁誠之)**에게 주며 이르기를, 네가 다시 수멱(搜覓)을 더하여 빠짐이 없이 초록(抄錄)하라고 하다.

○ 12월 《세조실록》 찬수관(纂修官) 명단에"지관사(知館事) 순성 명량 좌리 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 겸 홍문관 제학(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 남원군(南原君) 신(臣) **양성지(梁誠之)**"가 들다.

예종 즉위년

○ 9월 28일 석전(朝夕典)에 배례(拜禮)하는가의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절하는 수(數)를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에게 의논하니, 신숙주가"배례를 하면 마땅히 네 번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 때에 옛 제도를 참작하여 의주를 정하였는데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예문관 유신(藝文館儒臣)을 데리고 다시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다.

예종 1년 # 표시는 윤월임.

○ 2월 #10일 양성지를 공조 판서로 제수하다.

○ 4월 25일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가 아뢰기를, "민수(閔粹)가 사초(史草)에 신(臣)이 구용(苟容)하여 관여되지 않았다고 썼으니, 신은 사국(史局)에 사진(仕進)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다.

○ 6월 29일 국정 전반에 관하여 공조 판서 양성지가 28개조의 상소를 하다. :

중국에서 장색(長墻)을 쌓는 일에 대하여,

"본국은 안팎이 산과 강으로 되어 있어 넓이가 몇만 리(里)이고, 호수(戶數)가 1백 만이고, 군사가 1백 만으로, 요(堯)임금과 아울러 섰고, 주(周)나라에는 신하가 되지 않았고, 원위(元魏)와는 통호(通好)하였으며, 풍연(馮燕)에는 정성을 바쳤고, 수(隋)나라는 육사(六師)가 대패(大敗)하였고, 당(唐)나라는 손님으로 대우하였고, 요(遼)나라는 패군(敗軍)하여 처참하였으며, 송(宋)나라는 섬겼고, 금(金)나라는 부모(父母)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원(元)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도 또한 삼한(三韓)이라 이르고 하하(下下)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동(遼東)의 동쪽 1백 80리는 연산(連山)을 경계로 하여 파절(把截)을 삼았으니, ... 연산 파절(連山把截)은 고황제(高皇帝)가 정한 바이므로 양국의 봉강(封疆)은 서로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장차 동팔참(東八站)의 길에 담장[墻]을 쌓아서 벽동(碧潼)의 경계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이는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급히 달려서 상주(上奏)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평양부(平壤府)를 승격시켜서 서경(西京)으로 하고, 한성부(漢城府)·함흥(咸興)·경주(慶州)·전주(全州)·개성부(開城府)와 더불어 육경(六京)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형세를 굳게 하고, 서인(西人)의 마음을 수습하고, 지도(地圖)를 나누어 형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사(高麗史)》를 반포하는 일에 대하여,

"《고려사》는 전조(前朝)의 치란(治亂)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의 권징(勸懲)이 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역란(逆亂)의 일이 있다면 소위 역란하는 자는 역대(歷代)의 역사가 모두 있는 것이니, 어찌 홀로 전조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참칭(僭稱)한 일이 있다면 전조의 태조(太祖)가 삼한(三韓)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원(改元)하여서 종실(宗室)을 칭하였고, 금(金)나라 사람이 추대하여 황제(皇帝)로 삼았고, 고황제(高皇帝)는 스스로 성교(聲敎)가 있다고 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참칭하는 데에 혐의가 되겠습니까?" "이는 비단 일시의 계책이 아니고 만세의 무궁한 계책이 되는 것이니, 빌건대 우리 나라에서 찬술한 여러 서적 가운데 부득이한 비밀 문서(秘密文書) 외에 《고려전사(高麗全史)》와 같은 것은 옛날대로 전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의창(義倉)을 넉넉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금후로 백호(百戶)의 현(縣)에서는 의창에 5백 석(石), 군자(軍資)로 5백 석을 쌓고, 천호(千戶)의 군(郡)에서는 의창·군자 또한 각기 5천 석씩을 쌓아 인근 고을에 옮겨서 균등하게 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나라에서 다방면으로 포치(布置)하여 10년을 기하여 족한 연후에라야 그만두게 하면, 곧 민생(民生)에도 매우 다행이고, 군국(軍國)에도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아악(雅樂)을 보존하는 일에 대하여,

"악(樂)에는 아악(雅樂)·속악(俗樂)·당악(唐樂)·향악(鄕樂)이 있고, 남악(男樂)이 있고, 여악(女樂)이 있으며, 또 번부(蕃部)·잡기(雜伎)도 있고, 또 헌가(軒架)·고취(鼓吹)의 제도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향악(鄕樂)은 신라(新羅)로부터 비롯되었고, 아악(雅樂)은 송(宋)나라에서 대성악(大晟樂)을 내려 준 것인데, 그 종(鍾)·경(磬)·태상(太常)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상세히 의논을 더하여 정하여서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을 병행하여 폐하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의사(醫師)를 보내는 일에 대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성인(聖人)을 내신 것은 하늘이고, 천심(天心)을 받들어 만민(萬民)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성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8도(八道)의 주·군(州郡)에 모두 수령(守令)을 두어서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고 백성을 옷입고 밥먹게 하며, 또 각기 교수(敎授)·훈도(訓導)를 두어서 경학(經學)·예의(禮義)를 가르치고 있으니, 성인(聖人) 군사(軍師)의 책임은 매우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질병의 우환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바이므로, 관(官)을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어서 그 재앙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신민(臣民)이 임금[蓋轂]의 밑에 있으면서, 의사(醫師)가 있어 그 약(藥)을 맡고 의원(醫員)이 있어 그 병(病)을 진단하니, 진실로 사람마다의 큰 행복입니다. 외방의 각 관에 이르러서는 비록 의생(醫生)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그 수를 채울 뿐이고, 비록 심약(審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빈궁한 마을의 백성들이 뜻밖에 질병

에 걸리면 심하게 괴로와하는 상황을 귀와 눈으로는 차마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율학(律學)의 생도(生徒)는 매 주(州)마다 1인씩 맡아서 취(取)하니, 빌건대 이 예에 의하여 매 현(縣)에서 1인, 군(郡)에서 2인, 도호부(都護府) 이상에서 3인씩을 취하여 전의감(典醫監)에 소속시켜서, 1년이나 3년간 의서(醫書)를 강독(講讀)하고 의사(醫事)를 학습하게 하여, 각기 산관(散官)을 제수하여서 임시로 그 맡은 일을 알게 하고,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등을 주어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전조(前朝) 의사(醫師)의 예에 의거하여 아무 관[某官] 심약(審藥)이라고 칭하고, 특별히 그 집의 요역(徭役)을 감면하며, 향약(鄕藥)을 사용하여 한 고을의 백성을 구하여 그 성과가 있는 자는 그 자급을 더하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포폄(褒貶)하게 하며, 3년 만에 체대(遞代)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왕정(王政)은 이에 막대해져서 인수(仁壽)의 강역(疆域)에 사는 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옹성(甕城)을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 등이다.

○ 7월 7일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지금 계감청에서는 병자년을 세조 원년으로 칭하였고, 춘추관에서는 을해년을 원년으로 칭하였으니, 어찌 된 것인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양성지(梁誠之)** 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을해년에 즉위하셨으니, 만약 이 해로 칭하지 않는다면 원래 노산(魯山)에 관계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세기대전(世記大全)》을 상고하여 보아도 또한 을해년을 원년으로 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다.

○ 1년 7월 7일 동지사(同知事) 양성지 등의 의견대로 을해년을 세조 원년으로 삼게 하다.

○ 8월 21일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 행 중추부 첨지사(行中樞府僉知事) 송처관(宋處寬)·정자영(鄭自英) 등에게 명하여, 사정전(思政殿)의 월랑(月廊)에 모여서 종친(宗親)·문신(文臣)·제장(諸將)·제학 유생(諸學儒生) 등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다.

○ 9월 18일 **양성지(梁誠之)**를 겸 춘추관 지사(兼春秋館知事)로 삼다.

○ 《예종실록》 찬수관(纂修官)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하였다.】에 지관사(知館事) 순성 명량 좌리 공신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 겸 홍문관 제학 남원군(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南原君) 신(臣) **양성지(梁誠之)**가 들어가다.

성종 1년

○ 2월 9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공조 판서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호전(戶典)·공전(工典)을 교정(校定)하게 하다.

성종 2년

○ 3월 27일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성종 등극의 공으로 양성지 등에게 좌리(佐理) 공신(功臣) 3등을 내려 주게 하다.

○ 12월 18일 《세조대왕실록》 의 수찬관들에게 상을 내리다.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등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 표리(表裏) 1습(襲)씩을 내리다.

성종 3년

○ 1월 16일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할 때의 독책관(讀冊官)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 등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내려 주다.

○ 5월 10일 《예종대왕실록》 의 수찬관(修撰官) 양성지 등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 주다.

○ 8월 16일 실록 봉안사(實錄奉安使)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가 하직하다.

성종 4년

○ 6월 8일 세종(世宗)·문종(文宗)·세조(世祖)·예종(睿宗)의 실록(實錄)의 인출(印出)을 끝낸 공을 논하여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匹)씩을 내려 주고,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내려 주다.

○ 12월 13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남원군(南原君)에 제수하다.

성종 6년

○ 2월 18일 알성시(謁聖試)를 원상(院相)에게 전교하고 성균관에 출사하여 가르칠 재상을 추천하게 하였는데, 신숙주가 연성 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좌찬성 노사신(盧思愼)·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를 추천하여 아뢰다.

성종 7년

○ 4월 11일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의 건의로 춘추관 시정기(施政記)를 사국(史局)의 직임을 띤 고위 관직자가 늘 감독케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와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를 추천해 아뢰다.

○ 12월 17일 노사신 등에게 우리 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모아 **양성지(梁誠之)**가 지은 《지리지(地理志)》 에 첨가하여 실으라고 명하다.

성종 8년

○ 8월 6일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친사 문묘송(親祀文廟頌)을 바치고 아울러 서(序)하다.

○ 9월 16일 남원군 양성지가 의주·안주·황주 등지의 성 축조에 관하여 상소하다.

○ 10월 2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제수하다.

○ 10월 4일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차자(箚子)를 올려 양성지가 탐오(貪汚)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음으로 대사헌에서 파직시킬 것을 상언하다.

○ 10월 4일 사간(司諫) 경준(慶俊)이 차자(箚子)를 올려 양성지를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제수한다는 명을 거두기를 상언하다.

○ 10월 5일 양성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양성지에게 명하여 왕명을 기다리게 하다.

○ 10월 5일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이 양성지의 직임을 바꿀 것을 건의하다.

○ 10월 5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남원군(南原郡)에 제수하다.

○ 10월 9일 임금이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양성지(梁誠之)**의 탐오의 사례(事例)를 《실록(實錄)》을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다.

○ 10월 11일 임금이 좌우(左右)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실록(實錄)을 상고하니 **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사건은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구차스레 변명하였다.[苟容]'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대간(臺諫)의 말은 진실로 헛된 것이다." 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말하기를, "신이 친히 예종(睿宗)의 명(命)을 받들고서 국문(鞫問)하였는데, 과연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신하들이 말하면 들어주시고 계책을 올리면 따르시니 진실로 아름다운 미덕(美德)이십니다. 그러나 신진(新進)의 인사(人士)들이 마땅히 간(諫)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간(諫)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풍문(風聞)을 거론(擧論)하여 탄핵(彈劾)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대신(大臣)들이 반드시 서로 평안하지 못할 것이며 그 조짐이 또한 장차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취모구자(吹毛求疵)하여 남의 숨겨진 허물을 논(論)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하다.

○ 10월 11일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과 사간(司諫) 경준(慶俊)을 불러서 묻기를,"전일에 **양성지(梁誠之)**의 일은 사초(史草)에 상고하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대들이 남에게 들은 것일 게다."하니, 김제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들은 지 이미 지금 10년이 되었고, 금일에 들은 것도 아니며, 또한 사초(史草)에 기록되었다고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하고, 경준이 말하기를, "신은 다만 양성지의 청렴(淸廉) 개결(介潔)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논(論)하였을 뿐입니다."하다.

전지하기를, "그대들이 한갓 풍문(風聞)만을 가지고 가볍게 대신(大臣)을 논하여 죄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지의 일은 외인(外人)들이 모두 시끄럽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다.

○ 10월 12일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과 헌납(獻納) 김괴(金塊)가 아뢰기를,"**양성지(梁誠之)**의 탐오(貪汚)한 일은 사림(士林)에서 시끄럽게 떠든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니, 듣는 자들이 누군들 놀라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 등이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명하시어 실록(實錄)을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대간(臺諫)이 반드시 사책(史策)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무슨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풍문(風聞)을 거론하여 탄핵한 다음이라야 옹폐(壅蔽)의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다.

○ 10월 12일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을 무고한 것에 관하여 상소하다.

○ 10월 14일 임금이 시연(侍宴)한 재상(宰相)들에게 이르기를, "**양성지(梁誠之)**가 다시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일을 발명(發明)하고자 하는데, 일이 허망(虛妄)한 데 관계되니, 김제신(金悌臣)도 또한 잘못이다.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하여서 아뢰라."하고, 허종(許琮)·유자광(柳子光)·권감(權瑊)·홍도상(洪道常)·이극돈(李克墩)·김영유(金永濡)·김영견(金永堅)이 의논하기를,"양성지는 애매한 말 때문에 비방(誹謗)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신의 말은 옛날에 들은 것에서 나왔으니, 대간(臺諫)이 대신(大臣)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죄책(罪責)을 당한다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 사초(史草)를 상고하여도 이미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양성지에게도 또한 혐의(嫌疑)스러움이 없어졌으니, 양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다. 임금이 허종 등의 의논한 것에 따르다.

○ 10월 14일 남원군 양성지가 자신을 무고한 것에 관하여 상소하다.

○ 10월 15일 **양성지(梁誠之)**를 불러서 전지하기를, "대간(臺諫)이 풍문(風聞)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 직책이다. 경(卿)은 탐오(貪汚)한 적이 없었으므로 변명하기를 청하였는데, 또한 잘못인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다.

○ 10월 15일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들은 일을 감히 계달(啓達)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대신(大臣)들은 **양성지(梁誠之)**가 본래 탐오(貪汚)한 적이 없는데도 신이 근거 없는 말을 하였다고 죄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성지는 또 신더러 간교를 다하여 모함한다고 하니, 신은 청컨대 피혐(避嫌)하고자 합니다."하니, 전지하기를,"양성지의 사건은 사초(史草)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자(箚子)를 올려서 발명(發明)하니 옳은 것이다. 그대도 또한 사건을 듣고서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이것도 또한 그 직분(職分)인 것이다. 피혐하지 말라." 하다.

○ 10월 19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제수하다.

성종 9년

○ 4월 3일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바른 말을 청하니, 각각 좋은 말을 진술하라." 하니, **양성지(梁誠之)**가 소매 안에서 소(疏)를 내어 올리며 말하기를, "신은 말을 더듬어서 말은 못하고 글로 대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안으로 여색(女色)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미치거나 술과 음악을 즐기거나 집과 담장을 사치하게 꾸미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약석(藥石)이다. 내가 자리 곁에 써서 붙이고 항상 보고 반성하겠다." 하다.

○ 8월 6일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여 **양성지(梁誠之)** 등에게 각각 아마(兒馬) 한 필씩을 하사하게 하다.

○ 10월 13일 공조 판서 양성지가 먼 지방 제주 사람들이 마음 붙이고 살도록 잘 대우하고 왜구의 접근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며, 《오례의(五禮儀)》에 기록되어 있는 화포 만드는 법이 누설되어 왜적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병기 도설(兵器圖說)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반포하기를 청하다.

"제주(濟州)는 옛 탐라국(耽羅國)입니다. 지방이 1백리 이며 바다 밖에 멀리 있는데, 신라(新羅) 때에 비로소 내조(來朝)하였고, 고려(高麗)에 이르러서 나라를 없애고 현(縣)으로 만들었으며, 그 인구의 번성함과 산물의 풍부함은 내지(內地)에 있는 고을의 갑절입니다. 그러나 신이 보건대 역대(歷代)에 변고(變故)가 잇따라서 떨어졌다 합쳤다 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으며, 원(元)나라에서 목장(牧場)을 설치하자 이로부터 말[馬]이 크게 번식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 고을을 설치함에 미쳐서 그 권세를 나누고 그 자제(子弟)를 등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진압시켰으니, 열성(列聖)께서 먼 지방의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적당하였다고 이를 만합니다. 지난 가을에 왜선(倭船)이 고을의 경내에 와서 머무르자, 이에 왜국(倭國) 말을 아는 자를 보내어 후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화포(火砲)는 군국(軍國)의 비밀한 무기인데, 고려(高麗)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비로소 원(元)나라에 들어가 배웠고, 명(明)나라 초(初)에 고황제(高皇帝)가 왜(倭)를 방어하라고 하사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서는 《총통등록(銃筒謄錄)》이 사가(私家)에 퍼져 있는 것을 모두 내부(內府)에 거두어들였는데, 그 뒤에 군기감(軍器監) 바깥 동쪽 문루(門樓)에 21건(件)을 간직하고 춘추관(春秋館)에 1건을 간직하였으니, 생각이 또한 주밀(周密)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삼가 《오례의(五禮儀)》를 보건대 화포(火砲)를 만드는 법의 척·촌·푼·리(尺寸分釐)를 숨김없이 자세히 써서 중외(中外)에 인쇄 반포하여 온 나라에 두루 퍼졌는데, 만일 간사한 자가 기화(奇貨)로 삼아서 왜적(倭賊)에게 팔면, 그것이 동남쪽 지방의 화(禍)가 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예조(禮曹)에

명하여 내외(內外)의 관청과 사가(私家)에 있는 《오례의》를 모두 거두어들이게 하여, 병기 도설(兵器圖說)이라고 이르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다시 반포하며, 또 총통(銃筒)의 제도는 1건만 남겨서 어소(御所)에 간직하고 그 나머지는 세 사고(史庫), 동문루(東門樓), 실록각(實錄閣)에 모두 언자(諺字)로 써서 각각 한 건씩 간직하며, '신견봉(臣堅封)'이라고 써서 전교를 받아 열고 닫게 할 것입니다. 군기시(軍器寺)에 있는 한 건 역시 언자(諺字)로 써서 제조(提調)가 친히 봉(封)하고, 전일에 한자(漢字)로 쓴 것은 죄다 불태워서 없애게 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을 삼는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성종 10년

○ 4월 26일 대사간(大司諫) 성현(成俔)이 경연에서 양성지와 신정(申瀞), 두 사람이 탐욕(貪慾)하다고 탄핵하다. * 신정은 성종 6년에 졸한 신숙주의 아들임.

○ 4월 29일 대사간 성현 등이 양성지와 신정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다.

○ 5월 1일 사간원에서 올린 양성지와 신정에 대한 탄핵안을 정승들과 의논키로 하다.

○ 5월 1일 **양성지(梁誠之)**와 신정(申瀞)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고, 임금이 정승(政丞)에게 이르기를, "경(卿)들의 말이 진실로 옳다. 승지들은 비록 마땅히 갈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만약 개차(改差)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상소(上疏)로 인하여 갈았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양성지와 신정은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는가?"하다.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였고, 한계희는 말하기를,"국가(國家)에서 인물(人物)을 진퇴(進退)시킬 때에는 모름지기 나타난 허물로 인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리는 것이 옳겠다고 말한 후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간(臺諫)이 두 사람의 탐람(貪婪)함을 범연(泛然)히 논(論)하는 것을 가지고 만약 가벼이 그 직책을 고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작은 허물도 일일이 들추어서 다투어 서로 공박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인심(人心)이 어지러워질 것이며, 조정(朝廷)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두 사람의 직책을 갈지 마시어 공격(攻擊)하는 풍습을 막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다.

○ 5월 4일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차자(箚子)를 올려 사직(辭職)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 5월 5일 여러 대신들에게 양성지와 신정의 인품에 대해 의논케 하였으나, 탄핵 반대 의논이 많았다.

○ 5년 25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남원군(南原君)에 제수하다.

성종 12년

○ 4월 24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 부호군(副護軍)에 제수하다.

○ 6월 7일 영산 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金守溫)이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예장(禮葬)하기를 예(例)대로 하다. **양성지(梁誠之)**·오백창(吳伯昌)과 함께 상서하여 공신으로 봉해 주기를 청하여 좌리 공신(佐理功臣)에 참여되다.

○ 9월 21일 **양성지(梁誠之)**를 자헌 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하다.

○ 10월 17일 남원군 양성지가 중국이 개주에 위(衛)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

"지금 듣건대 중국이 장차 개주(開州)에 위(衛)를 설치하려 한다 하는데, 신이 거듭 생각해 보니 크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개주는 봉황산(鳳凰山)에 의거하여 성(城)을 이루었는데, 산세가 우뚝하고 가운데에 대천(大川)이 있으며, 3면이 대단히 험하고 1면만이 겨우 인마(人馬)가 통하는 이른바 자연히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한 사람이 관(關)을 지키면 1만 명이라고 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주둔하여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하였고, 또 요(遼)나라의 유민(遺民)이 여기에 근거하여 부흥(復興)을 도모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누가 우리 나라와 관계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
"비록 형제 부모의 나라라도 이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시에는 평안도 백성들 중 부역(賦役)을 피하는 자들의 태반이 이곳으로 가는데, 저들은 가벼운 부역으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변경 땅의 백성이 모두 그 곳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의 해로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영원한 근심거리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요수(遼水)의 동쪽 장백산(長白山)의 남쪽에 있어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됩니다. 단군(檀君)이 요(堯)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 조선(箕子朝鮮)·신라(新羅)가 모두 1천 년을 누렸고 전조(前朝)의 왕씨(王氏) 또한 5백 년을 누렸습니다. 서민(庶民)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士大夫)는 문무(文武)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封君)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사대(事大)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小中華)하고 부르면서 3천 9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황진(黃溍)은 벼슬살이할 만한 나라라고 하였고, 황엄(黃儼) 또한 천당(天堂)이라 하였으며, 원(元)나라의 세조(世祖)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舊俗)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고, 명(明)나라의 고황제(高皇帝)는 우리 스스로의 성교(聲敎)를 허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교(聲敎)를 가지게 한 것은 언어가 중국과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元)나라 말기에 홍군(紅軍) 20만 명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병으로써 쳐부수고 군대의 명성을 크게 떨친 사실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며, 또 명나라가 금릉(金陵)에 도읍(都邑)을 정하고 우리 나라가 북원(北元)과 국경을 접한 형세가 그렇

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 중국이 동쪽에 있어서 한(漢)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는 군사를 남용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고, 요(遼)나라·금(金)나라·원(元)나라는 국경을 접했으면서도 핍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신은 평양(平壤)을 점거하였던 중국 세력들의 흥폐(興廢)는 말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고구려가 풍씨(馮氏)의 남은 세력을 근거로 강성해져서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1백만 군이 살수(薩水)에서 대패 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여섯 차례나 원정하였지만, 요좌(遼左)에서는 공이 없었으며, 한(漢)나라는 비록 평양을 얻었으나 곧 고구려에 점거당하였고, 당나라는 평정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삼한(三韓)의 법규를 지킨 것은 옛날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漢)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 모두 관중(關中)에 도읍하여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遼)나라는 인국(隣國)이며 적국(敵國)이었으므로, 소손녕(蕭遜寧)의 30만 병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금(金)나라는 본래 우리 나라의 평주(平州) 사람이 세웠으므로 우리 나라를 부모의 나라라 하였고, 윤관(尹瓘)이 9성(九城)을 쌓은 선춘령(先春嶺)으로 경계를 삼아 금나라가 망할 때까지 군사력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요와 금의 두나라는 모두 서쪽에 하국(夏國)이 있었고 남쪽에는 대송(大宋)이 있어서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어느 틈에 말머리를 동쪽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후 야율씨(耶律氏)가 서쪽으로 만리를 달렸으나 완안씨(完顔氏)의 남하로 패망하였고, 원나라는 혼인국(婚姻國)이라고 칭하였으나 수십년 동안 침략하였고, 중국과 남북의 오랑캐가 혼합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국경이 없었지만 그 말년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음산(陰山)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이 다시 생각건대, 국가는 한 시대에 고식(姑息)되지 말고 만세의 계책을 세워야 하며 무사한 것을 요행으로 삼지 말고 만전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천하에 금 그릇에 비길 만한 것은 잘 보전하여 깨트리지 말며, 산하(山河)가 금에 비길 만한 것은 지켜서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개주(開州)에서 압록강(鴨綠江)까지는 겨우 1일정이니, 집 앞 뜰만큼이나 가까우며 걸상의 한쪽 끝이라 하여도 옳습니다. 지금 개주에 성을 쌓으면 개주로써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당참(唐站)에 성을 쌓게 될 것이며, 당참에 성을 쌓게 되면 당참에 그치지 않고 성을 쌓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곡(糧穀)의 운반을 요청하게 되면 양곡 운반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소와 운반구(運搬具)를 요청할 것이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청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며 농(隴) 땅을 얻으면 촉(蜀) 땅을 바라게 되는 필연의 이치입니다." "개주위(開州衛) 설치의 정지를 청하게 하소서. 우리 고황제(高皇帝)는 만리(萬里)를 밝게 보시어 요동의 동쪽 1백 80리의 연산 파절(連山把截)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동팔참(東八站)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에 편리함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 "지금의 사세(事勢)는 바야흐로 병이 크게 도진 것과 같습니다. 7년이나 된 병에 만약 3년 묵은 쑥을 구하지 못하면 이것이 당(堂)에 있으면서 화(禍)를 알지 못하고 섶을 쌓아 놓고 위해

(危害)를 알지 못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주(義州)는 압록강(鴨綠江)의 험함을 배경으로 한 나라의 문호(門戶)입니다만, 듣건대 그 성(城)이 대단히 허술해서 광대들은 몸을 눕히고도 올라갈 수 있고 찬비(餐婢)가 상을 이고도 내려올 만하다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주(昌洲)·벽단(碧團)·대삭주(大朔州)·소삭주(小朔州) 등의 여러 성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곧 수축(修築)을 한다면 반드시 부역을 피해 유이(流移)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수축하지 않으면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국론(國論)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수축을 하지 않으면 의주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주가 없어지면 하나의 도(道)가 없어지는 것이니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신은 절실히 생각하건대, 지금 8도의 인민으로서 놀고 먹고 조부(租賦)를 내지 않는 자는 승려(僧侶)만한 것이 없습니다. 승려들을 동원하여 수축함으로써 보국(報國)하게 하는 것이 옳으며, 특별한 근로(勤勞)도 없으면서 까닭없이 복호(復戶)된 자와 사복시(司僕寺) 제원(諸員) 등으로 수축하게 하여 보국하게 함도 좋을 것입니다. 또 번(番)을 서고 있는 정병(正兵)과 동원되고 있는 수군(水軍)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압록강변 일대 행성(行城)을 쌓게 하고 또 따로 파절(把截)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내(道內)의 공부(貢賦)도 인삼(人蔘)과 서피(鼠皮) 이외는 일체 면제 하고, 중국에 가는 사신[入朝使臣]도 정조(正朝)와 탄신(誕辰) 이외에는 정상대로 보내되, 쌍성(雙城)의 변(變)과 동녕(東寧) 사건은 마땅히 우려할 일이며, 따라서 감사(監司)·수령(守令)에게 직책이 없는 자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도 또한 불가합니다. 삼도(三島)와 대내(大內) 등 왜인(倭人)도 마땅히 불러서 회유하여야 할 것이며, 모련위(毛隣衛)와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도 역시 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은 신이 감히 입으로 말하지 못하며 글로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들어맞지 않게 된다면 국가의 복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반드시 후세의 근심거리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세(事勢)를 논하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고 사신의 출발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구한 견마지성(犬馬之誠)을 다할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다.

○ 10월 19일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주공 동정론(周公東征論)과 주공 부성왕 조제후 율시(周公負成王朝諸侯律詩)를 출제(出題)하여 2품(品) 이하 당상관(堂上官)을 시험하였는데,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수석(首席)하다.

○ 10월 20일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양성지(梁誠之)**가 나이 많은데도 아직 학문을 버리지 않았으니, 가상할 만한 일이다. 내가 가자(加資)하고자 하니 다음 도목정(都目政) 때 다시 아뢰어라."하다.

○ 11월 15일 **양성지(梁誠之)**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에 제수하

다. * 숭정대부 : 종1품의 관계(官階)임.

○ 11월 16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학기(金學起)·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와서 양성지가 정헌대부(正憲大夫)가 된 것만도 족한데 또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올린 것은 작상(爵賞)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면서 철회를 건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17일 헌납(獻納) 김대(金臺)가 아뢰기를,"작상(爵賞)은 반드시 공덕(功德)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양성지(梁誠之)**가 제술(製述)로써 뛰어넘어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제수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정헌 대부(正憲大夫)를 상준 것은 제술에 수석하였기 때문이며 숭정 대부(崇政大夫)는 특지(特旨)로 준 것이다. 특지도 옳지 않다는 것인가? 태평스러울 때에는 공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또 덕 있는 자가 드물다. 전에 등용한 사람이 어찌 모두 공이나 덕이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이 반복해서 굳이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18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한명회(韓明澮)의 불경죄(不敬罪)를 거론하며 탄핵을 요청하였고, **양성지(梁誠之)**는"탐약(貪弱)한 사람으로 이렇다 할 공덕(功德)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만 하찮은 글짓는 재주만으로 1자급(資級)을 더하였을 때 이미 중론(衆論)이 못마땅해 하였는데, 또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더하였으니, 관작(官爵)의 외람됨이 이렇게 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양성지를 탐약(貪弱)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18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양성지(梁誠之)**는 본래 덕망이 없는데도 그 품계가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이르러 이미 분수에 넘쳤습니다. 이제 하찮은 재주로 1품을 더 뛰어 받았으니 다음에 국가에 큰 공을 세운다면 무엇을 더해 주겠습니까? 또 한명회(韓明澮)는 전날 마음에 원망을 품고 불경(不敬)한 말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임금에게 방자한 죄가 죽어 마땅하였지만, 전하께서 직첩(職牒)만 거둔 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려주라고 명하시니 불경죄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양성지에게는 하찮은 재주로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제수하였고, 한명회에게는 중죄(重罪)에도 불구하고 고신(告身)을 돌려 주라 하시니 형벌(刑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명령을 거두어 사람들의 바람을 흔쾌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19일 장령(掌令) 김질(金礩),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가 양성지가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오른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시예(試藝)로 올린 것이 아니라 특은(特恩)으로 올렸는데 구애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하다.

○ 11월 19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양성지의 숭정대

부 제수의 철회와 한명회의 불경죄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19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한명회가 교만하고 횡포하니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양성지는 숭정대부의 제수 명령을 빨리 거두어 공론(公論)을 위무(慰撫)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어서(御書)로 이르기를,"한명회(韓明澮)의 일은 벌로써 잘못을 징계하고 은혜로써 공에 보답한 것이며, **양성지(梁誠之)**의 일은 시예(試藝)로 가자(加資)하고 특지(特旨)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승계시켰으니 포상과 은혜를 함께 베푼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하다. *한명회는 파직된 바가 있으나, 국가의 원훈(元勳)이라 하여 직첩을 돌려준 바 있음.

○ 11월 20일 집의(執義) 윤기반(尹起磻)·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양성지(梁誠之)**의 일을 논의하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양성지는 늙었고 또 글을 잘합니다."하였고, 지사(知事) 이승소(李承召)는 "양성지가 자헌 대부(資憲大夫)가 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하였으며, 윤석보(尹碩輔)는"좌우에서 구신(舊臣)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하니 더 말할 것 없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하자, 임금이"우리 나라는 예의(禮義)와 글 잘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져 있어서 글 잘하는 사신이 오면 반드시 시(詩)를 주고 받기를 요구하니 젊은 문신(文臣)은 학문을 게을리 할 수 없으며, 대신(大臣)은 그 임무가 중대하여 학문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과시(科試)를 명령하였고 **양성지(梁誠之)**가 수석을 차지했었다. 또 양성지는 선왕(先王)의 구신(舊信)이어서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려 준 것이다."하였다. 윤기반(尹起磻)·윤석보(尹碩輔)가"한명회(韓明澮)는 불경으로 파직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직첩(職牒)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정승(政丞)은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데, 한 번 죄를 입었다 하여 끝까지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다.

○ 11월 20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한명회가 '나는 훈구(勳舊)가 있어서 비록 불경죄를 범하더라도 전하께서 죄주지 못할 것이며 조정에서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하여 교만하고 방자하다고 하면서 직첩을 거둘 것과, 양성지가 탐오하다고 하면서 숭정대부 제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서(御書)로 이르기를,"억측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하다.

○ 11월 21일 사간(司諫) 임수경(林秀卿) 등이 한명회(韓明澮)와 양성지를 탄핵하다.

○ 11월 21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양성지의 숭정대부 제수의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22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윤기반(尹起磻) 등이 양성지의 숭정대부 제수의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 11월 23일 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등이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처사의 부당함을 아뢰다.

○ 11월 24일 장령(掌令) 김학기(金學起)가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처사의 부당함을 아뢰다.

○ 11월 24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 등이 한명회와 양성지에 대한 처사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하다.

성종 13년

○ 2월 13일 남원군(南原君)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할 것을 요청하는 12개조의 상소를 하다.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 그리고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모두 어제(御製)가 있었습니다. 지난 갑신년에 세조 대왕께서 사성(四聖)의 어제와 친히 지으신 시문(詩文)들을 찬집(撰集)하고자 하여, 노신(老臣)을 신밀(愼密)하게 여겨 따로 <편찬하는> 국(局)을 설치하지 않고 <노신에게> 교서관(校書館)에 나아가 낭관(郎官) 1인을 거느리고 찬차(撰次)할 자료를 널리 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붓·먹과 종이 등을 공돈(供頓)하는 모든 일은 모두 본관(本館)에서 판급(辦給)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지 수개월 만에 겨우 《조종조성제집(祖宗朝聖製集)》 1권과 《어제시문집(御製詩文集)》 3권을 수찬(修撰)하여 올렸더니, 세조께서 가상(嘉尙)하게 여기고 인지각(麟趾閣)에 비장(秘藏)하였습니다. 그 뒤 무자년 8월 14일에 신이 여러 재상들과 함께 <세조께> 문안(問安)하고 어전(御前)에 있을 적에 세조께서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명하여 《어제집(御製集)》을 꺼내게 해서 신에게 부탁하기를, '더 수집을 하여 빠짐 없이 기록하라.' 하고, 이어서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 '조종(祖宗)의 시문(詩文)을 내가 장차 간행(刊行)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지은 것에는 희어(戱語)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경이 삭제하여 없앨 것은 없애고서 간행하여 널리 보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조께서 선가(仙駕)를 타고 빈천(賓天)하시어 매달려서 호곡(號哭)함이 망극(罔極)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신숙주와 더불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수찬(修撰)하고, 또 《예종실록(睿宗實錄)》을 수찬하였습니다. 신이 또 《지리지(地理誌)》·《동문선(東文選)》·《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책들을 수찬하였습니다만, 미처 보고를 올리지 못한 지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선왕(先王)의 유교(遺敎)가 완연(宛然)하여 어제인 듯하고, 어제(御製)하신 두 문집이 아직도 대내(大內)에 있습니다. 하물며 명령하신 여러 책들은 모두 편집을 시작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노신의 천식(喘息)이 아직 남아 있을 적에 일찍이 수찬한 《어제집》과 예종·덕종의 《어제집》, 그리고 금상(今上)께서 친히 지으신 시문(詩文)들도 전교외서(典校外署)에 나아가 낭관(郎官) 1인과 해문(解文) 1인을 거느리고 마음을 다하여 편차(編次)하여 선왕(先王)의 유의(遺意)를 거의 마무리짓고, 전하(殿下)의 은덕에 보답하게 하소서. 한편 후세(後世)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본조(本朝) 열성(列聖)들에게 모두 제작(製作)이 있

어서 영세(永世)토록 전하여짐을 알게 하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고려사》는 실지로는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全)》이었으며 착오(錯誤)된 곳을 이제 개정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춘추관에 명령하여 본고(本稿)를 찾아서 전교서(典校署)에 내려 보내 인쇄하여 반포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홍문관(弘文館)에 《자경편(自警編)》 5책이 있는데, 이는 송(宋)나라의 종실(宗室) 조선료(趙善料)가 지은 것으로서, 일대(一代)의 임금과 신하들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전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종 대왕께서 이 책을 깊이 감탄하여 칭찬하였으며, 그 때의 《치평요람(治平要覽)》도 이것을 본떠서 찬집(撰集)된 것입니다. 그런데 《치평요람》은 너무나 한만(汗漫)하여 고찰(考察)하기 어렵지만, 이 《자경편》은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으니, 이를 인쇄하여 특별히 한 번 열람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동국여지승람》은 문한(文翰)의 요긴한 서적입니다. 산천(山川)의 형승(形勝)과 주군(州郡)의 연혁(沿革)들을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으며, 풍속의 좋고 나쁨과 인재의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이 서적으로 인하여 상고하게 되며, 심지어 시(詩)로써 물상(物像)을 읊조린 것과 문(文)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들도 모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명령하시면 사문(斯文)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지리지(地理誌)》는 국가의 도적(圖籍)으로서 역대(歷代)에 모두 있었습니다. 송(宋)나라에는 《구역지(九域誌)》가 있었고, 명(明)나라에는 《일통지(一統誌)》가 있었습니다. 신이 세종 대왕 때에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誌)》를 찬수(撰修)하였었고, 세조 대왕 때에도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일을 명령받았었는데, 예종 대왕이 즉위하여서는 편찬을 빨리 마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무자년 겨울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무술년 1월에 서책이 완성되어 진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인쇄하여서 관부(官府)에 수장(收藏)하여 주시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서적을 깊이 수장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전사(高麗全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본조(本朝) 역대의 《실록(實錄)》, 그리고 《총통등록(銃筒謄錄)》·《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동국문감(東國文鑑)》·《동문선(東文選)》·《삼한귀감(三韓龜鑑)》·《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승문등록(承文謄錄)》·《경국대전(經國大典)》·《경외호적(京外戶籍)》·《경외군적(京外軍籍)》과 제도(諸道)의 전적(田籍)·공안(貢案)·횡간(橫看), 그리고 제사(諸司)·제읍(諸邑)의 노비(奴婢)에 대한 정안(正案)·속안(續案) 등을 각각 네 건(件)씩 갖추게 하는 외에 세 곳의 사고(史庫)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게 하며, 또한 긴요한 서적들은 추춘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

여 길이 만세(萬世)에까지 전하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지도(地圖)는 관부(官府)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게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에는 고려의 중엽 이전에는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가 있었고, 아조(我朝)의 처음에는 이회(李薈)의 팔도도(八道圖)가 있었으며, 세종조에는 정척(鄭陟)의 팔도도(八道圖)와 양계(兩界)의 대도(大圖)·소도(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조에는 신(臣)이 만들어서 진상한 팔도도(八道圖)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삼읍도(三邑圖)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신이 만들어서 진상하는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제주 삼읍도(濟州三邑圖)와 안철손(安哲孫)이 만든 연해 조운도(沿海漕運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유소(魚有沼)가 만든 영안도 연변도(永安道沿邊圖)와 이순숙(李淳叔)이 만든 평안도 연변도(平安道沿邊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영(監司營)에도 각기 도(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승(倭僧) 도안(道安)이 만든 일본·유구국도(日本琉球國圖)와 대명 천하도(大明天下圖)도 비단과 종이로 만든 족자(簇子)가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만든 지리지 안에는 팔도 주군도(八道州郡圖)·팔도 산천도(八道山川圖)·팔도 각일 양계도(八道各一兩界圖)·요동도(遼東圖)·일본도(日本圖)·대명도(大明圖)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서 가장 긴요한 것들을 모두 관에서 거두어 홍문관에 비장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도 한결같이 관에서 거두어 의정부(議政府)에 보관하게 하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총통등록(銃筒謄錄)》은 병가(兵家)의 비장이 되는 서적으로서, 세조조에 최산해(崔山海)와 신의 장인 변상근(邊尙覲)이 각기 한 건씩 받아서 오로지 화포(火砲)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는데, 지난 병진년에 <이 책들을> 모두 대내(大內)로 거두어 들이게 하였음은 참으로 주밀(周密)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관에 한 건이 있고 문무루(文武樓)에 21건이 있는데, 만일 간사한 사람이 훔쳐가서 이(利)를 삼는다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신이 원하건대 지금 이후부터 성상께서 보는 한 건 외에는 모두 언문(諺文)으로 서사(書寫)하여 내외(內外) 사고(史庫)에 각기 한 건씩 보관하게 하며, 해당하는 신하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군기시(軍器寺)에 한 건을 두어서 제조(提調)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한자(漢字)로 서사된 것은 모두 불태워 버려서 만세를 위하는 계책으로 삼게 하소서."

"당(唐)나라 개원 때에 토번(吐蕃)이 《모시(毛詩)》와 《상서(尙書)》를 요구하였으나, 당나라에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일에 영안도 관찰사가 《고려사》를 요청하여 그 경내(境內)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고려사》는 전공(戰攻)의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전부 기록한 것이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물며 본도(本道)의 산천이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경계가 야인(野人)과 맞닿은 곳이어서 전에는 탁청(卓靑)과 조휘(趙暉)의 사건이 있었고, 뒤에는 역적 이시애(李施愛)의 변란이 있었습니다. 무릇 일은 미리 방지(防止)하여서

곡진(曲盡)하게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려사》를 도로 거두어 들여서 사관(史館)에 보관하고, <영안도에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각 1부씩을 주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등이다.

이에 대해 사신은 "이는 임금이 좋아하고 숭상함을 헤아려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아첨을 바친 것이 심하다."고 논평하다.

○ 2월 28일 이세좌(李世佐)·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양성지가 상소하여 주청한 《고려전사(高麗全史)》 홍의초(紅衣草)를 간행할 것을 아뢰다.

이세좌·민사건이"**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여 《고려전사(高麗全史)》 홍의초(紅衣草)를 간행하기를 주청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간행하지 말도록 청합니다. 신이 그 서적을 보니 매우 상밀(詳密)하게 된 것이어서 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다.

○ 4월 14일 임금이 양성지의 아들 양찬에게 승지를 제수하고 사은전(謝恩箋)을 지어 올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양찬(梁瓚)에게 승지(承旨)를 제수한 것이 어찌 그 아비 때문이겠는가? 쓸 만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나 **양성지(梁誠之)**를 불러서 사은전을 지어 올리게 하라." 하다. 양성지가 즉시 와서 사은전을 지어 사은하다.

○ 6월 11일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졸(卒)하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하기를 예와 같이 하다. 그 졸기(卒記)에"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양성지의 자(字)는 순부(純夫)이고, 남원인(南原人)이며, 증 의정부 우찬성(贈議政府右贊成) 양구주(梁九疇)의 아들이다. 정통(正統) 신유년 진사(進士)·생원(生員) 시험에 합격하고, 또 문과(文科)에 제 2인으로 합격하여 처음에 경창부 승(慶昌府丞)에 제수되었다가, 성균 주부(成均主簿)로 옮겼다. 임술년에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에 임명(任命)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되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어느 날 세조(世祖)가 상참(常參)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양성지가 아뢰기를, '성체(聖體)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절주(節酒)하도록 하소서.'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오직 그대가 나를 아낀다.' 하고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가(加)하도록 명하였다. 이 해에 집현전이 파(罷)해지자, 임금이 세자 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옮기게 하였다. 박팽년(朴彭年) 등이 주살(誅殺)되자, 사람들이 '양성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공모했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이 때를 당하여 사람으로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양성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을 보증한다.' 하였다. 경진년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에 승진되었다가, 신사년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계미년에 양성지가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여 서적(書籍)을 간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양성지를 제학(提學)으로 삼고, 자

헌 대부(資憲大夫)를 가(加)하였다. 갑신년에 구현시(求賢試)에 합격하니, 세조가 일러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경(卿)을 오활(迂闊)하다고 하나, 나는 경과 서로 아낀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제수했다가 얼마 후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하였다. 병술년에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고, 무자년에 《세조실록(世祖實錄)》 찬수(撰修)에 참여하였다. 성화(成化) 기축년에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전임(轉任)되고, 신묘년에 순성 명량 좌리 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號)를 하사받고, 남원군(南原君)으로 봉하였다. 정유년에 다시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었다가, 대관(臺官)의 논박(論駁)을 받고서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바뀌고, 신축년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임금이 2품 이하의 당상(堂上) 문신(文臣)을 전정(殿庭)에 모아서 시(詩)와 논(論) 각 1편 씩을 시험하였는데 양성지가 장원을 차지하였으므로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초배(超拜)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諡號)를 문양(文襄)이라 하였는데,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襄)이라 한다. 양성지는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박람 강기(博覽强記)하고, 촉문(屬文)을 잘하였으나, 혈후(佶詬)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겁나(怯懦)하여 절조가 없었다. 일찍이 집현전에 있을 때에 동렬(同列)들이 그를 더럽게 여겨 배척하여 함께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랫동안 춘추관(春秋館)에 있었는데, 무릇 부탁이 있으면 요하(僚下)로 하여금 간략하게 글로 적게 하였다. 뒤에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전교서(典校署)의 제조(提調)가 되었는데 대중(臺中)에서 말할 일이 있어도 그대로 전교서에 앉아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세조가 혹 자기 뜻을 거역한다 하여 대관(臺官)을 국문할 때에도 반드시 이르기를, '내가 양성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줄 안다.'고 하여 특별히 국문을 면하게 하였다. 그가 이조(吏曹)·공조(工曹)의 판서(判書)로 있을 때에 동취(銅臭)라는 말이 파다하였으며, 말(馬)을 뇌물로 주는 자는 말편자를 박아 준다고 칭탁하고서 바치고 채단(彩段)을 뇌물로 바치는 자는 돗자리로 싸서 주므로, 그때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여 말하기를, '말발굽에 돈이 들어 있고 돗자리 속에 비단이 들어 있다.'고 하고, 또 오마(五馬)의 조롱도 있었다. 혹자(或者)는 '말발굽에 돈이 들었고 돗자리에 채단이 들었다는 말은 곧 다른 재상을 가리킨 것이고 양성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미워하여 하류(下流)에 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이었다. 금상(今上)이 즉위(卽位)하자 양성지는 김수온(金守溫)·오백창(吳伯昌)과 상소(上疏)하여 논공 행봉(論功行封)을 청하여 드디어 좌리 공신에 참여하였다. 일찍이 당(唐)나라·송(宋)나라의 율시(律詩) 수십 수(首)를 초(抄)하여 《정명시선(精明詩選)》 이라 이름을 붙여서 올리고 후한 상(賞)을 받았다. 그리고 상서(上書)하여 건론(建論)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모두 오활(迂闊)하여 쓸 만한 것이 못되었다. 어느 날 봉장(封章) 십여 통(通)을 가지고 춘추관(春秋館)의 요속(僚屬)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아뢴 것인데 《사기(史記)》 와 아울러 기록할 만하

다.'고 하였으나, 여러 요속들이 증빙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써 비난하자 양성지가 오히려 비밀히 청탁하였는데, 마침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화를 내면서 자책(自責)하여 이르기를, '노부(老夫)는 쓸 모가 없도다.' 하고, 뒤에 곧 전후(前後) 소장(疏章)을 모아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남원군주의(南原君奏議)》라 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세조(世祖)께서 나를 왕좌지재(王佐之才)가 될 만하고, 제갈량(諸葛亮)에게 견주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듣는 자들이 광릉(光陵)의 하교(下敎)가 농담[調戱]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하였다.

성종 18년

○ 2년 26일 병조 정랑(兵曹正郎) 송질(宋軼)이 처조(妻祖) **양성지(梁誠之)**가 소장한 태조 어제시(太祖御製詩) 한 수(首), 태종 어제시(太宗御製詩) 두 수 세조 어제시(世祖御製詩) 서(序) 아울러 한 수와 군신 응제시(群臣應製詩) 두 권(卷)을 바치니, 가상히 여겨 상을 내리다.

전교하기를,"송질이 사사로이 간직할 수 없음을 알고서 바쳤으니, 그 뜻을 상줄 만하다."하고, 표피(豹皮) 한 장(張)을 내려 주다.

연산군 11년

○ 7월 19일 임금이 세조가 불교를 숭상하여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원각사(圓覺寺)의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한 옛일을 말하며 아랫사람이 위의 명을 받고 싫어하여 소홀히 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다.

전교하기를,"일찍이 들으니 '세조조(世祖朝)에 대사헌(大司憲)으로 하여금 사찰(寺刹)의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하는데, 이제 풍속이 순박해진 때를 당하여 아랫사람에 어찌 위의 명을 싫어하고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랴!" 하였다. "세조가 불교를 숭상하여,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원각사(圓覺寺)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그 뒤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녹수(綠水)의 집을 감독하여 짓게 하였다." 하다.

중종 13년

○ 8월 12일 동지사(同知事) 이유청(李惟淸)이 인주(人主)가 좋아하고 숭상함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아뢰면서 세조(世祖)께서 불도(佛道)를 좋아하시매, 대사헌 **양성지(梁誠之)**가 부처에게 절한 것을 예로 들다.

이유청이 "소인이 틈을 보고서 그르쳤으니, 인주가 좋아하고 숭상함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조(我朝)의 세조(世祖)께서 불도(佛道)를 좋아하시매, **양성지(梁誠之)**가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부처에게 절하였는데,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임을 모른 것이 아니라, 세조께서 바야흐로 불도를 숭상하시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다.

중종 32년

○ 12월 19일 홍언필이 아뢰기를, 사명(使命)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신으로 적합한 인물을 가려서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성종 때 양성지지의 예를 들다.

홍언필이 "성종조에는 사명(使命)을 중대하게 여겨 무릇 사신으로서 적합한 사람 다수(多數)를 서계(書啓)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으로 대궐에 나아갔었는데 낙점(落點)하여 보냈으니 지금도 예전대로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여 사신(使臣)의 선발을 신중히 할 것을 건의하다.

선조 35년

○ 12월 4일 시강원이 아뢰기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는 조종조(祖宗朝)에서 반드시 박학(博學)하고 문행(文行)이 있는 사람을 좌우의 관리로 택차(擇差)해 온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고 하면서 양성지 등이 본원의 시강을 맡았다고 하다.

시강원이"춘방(春坊)은 시강(侍講)하는 곳이므로 학문이 넉넉한 사람을 많이 모아야 경의(經義)를 널리 강론하여 보익(補益)됨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 겸관(兼官)이 있긴 하지만 직사에 전념하지 못한 채 한만하게 왕래할 뿐이며, 실관(實官)도 학문이 넉넉한 사람을 얻어 직책을 맡기기 어려우므로 사체(事體)에 마땅치 못한 듯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반드시 박학(博學)하고 문행(文行)이 있는 사람을 좌우의 관리로 택차(擇差)해 온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고려사(高麗史)》 찬출 목록(簒出目錄)을 상고해 보면, 신석조(辛碩祖)·이석형(李石亨)·신숙주(申叔舟)·어효첨(魚孝瞻)·김예몽(金禮蒙)·**양성지(梁誠之)**·이극감(李克堪) 등이 본원의 좌우보덕(左右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경(司經) 등의 관리가 되었고, 근래에는 노수신(盧守愼)·송찬(宋贊)이 역시 좌우사서(左右司書)가 되었습니다."하다.

* 춘방(春坊)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

인조 15년

○ 5월 15일 우의정 최명길이 올린 차자(箚子)에서 일찍이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는 9년을 대사헌

직에 있었다고 하며 관직을 가벼이 교체함의 부당성을 지적하다.

최명길이 차자에서 "조종(祖宗) 때 대간이 추고를 당하면 양사에서 서로 조사하여 진실로 그 직책에 알맞으면 가벼이 교체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성종(成宗) 때의 고사를 보니,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는 9년을 대사헌직에 있었으니 국가 원기의 충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 하다.

숙종 26년

○ 5월 13일 사간원에서 국조(國朝)의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이 된 이래 9년 동안 옮기지를 않았으니, 잦은 피체가 본시 옛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 잦은 체직으로 인한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간원(諫院)에서 논핵(論劾)하기를, "대각(臺閣)의 피체(避遞)가 너무 잦은 것은 실로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아침에 임명된 사람이 저녁에 체직되어 차제(差除)가 부산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국조(國朝)의 **양성지(梁誠之)**는 대사헌이 된 이래 9년 동안 옮기지를 않았으니, 잦은 피체가 본시 옛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승정원에 신칙하여 긴요하지 않은 피사(避辭)는 일체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다.

정조 즉위년

○ 9월 25일 세조조(世祖朝)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건의한 규장각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 관원을 두다.

"규장각(奎章閣)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 관원을 두었다. 국조(國朝)에서 관직을 설치한 것이 모두 송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으나 유독 어제(御製)를 존각(尊閣)에 간직할 바로는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가 있지 않았다.

세조조(世祖朝)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군상(君上)의 어제(御製)는 운한(雲漢)과 같이 하늘에 밝게 빛나니 만세토록 신자(臣子)는 마땅히 존각(尊閣)에 소중히 간직할 바이기 때문에, 송조(宋朝)에서 성제(聖製)를 으레 모두 전각을 세워서 간직하고 관직을 설시하여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신 등으로 하여금 어제 시문(詩文)을 교감하여 올려서 인지각(麟趾閣) 동쪽 별실(別室)에 봉안하되 규장각(奎章閣)이라 이름하고, 또 여러 책을 보관한 내각(內閣)은

비서각(秘書閣)이라 이름하며, 다 각기 대제학·직제학·직각·응교 등 관원을 두되 당상관은 다른 관직이 겸대(兼帶)하고 낭료(郎僚)는 예문관 녹관(祿官)으로 겸차(兼差)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세조가 빨리 그 행할 만하다고 일컬으면서도 설시할 겨를이 없었다. 숙종조에서는 열성(列聖)의 어제(御製)·어서(御書)를 봉안하기 위하여 별도로 종정시(宗正寺)에 소각(小閣)을 세우고 어서한 '규장각' 세 글자를 게시(揭示)하였는데, 규제(規制)는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임금이 즉위하여서는 먼저 선조(先朝)의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채제공(蔡표시) 등을 명하여 개국(開國)하고 영고(英考)의 어제를 편집하여 목판에 새기고 영고의 어묵(御墨)을 모사(摸寫)하여 돌에 새겼으며, 또 어제가 중외(中外)에 흩어져 있어 인쇄(印刷)되지 않은 것은 설국(設局)하여 등사(謄寫)하되 1본(本)은 원릉(元陵)의 편방(偏房)에 봉장(奉藏)하고 1본은 대내 별전(大內別殿)에 임시로 봉안하고는 대신을 불러 하교하기를, '우리 선대왕의 운장(雲章)·보묵(寶墨)은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존신 경근(尊信敬謹)하는 바가 어찌 보통 간찰(簡札)에 비할 것이겠는가? 의당 한 전각(殿閣)을 세워서 송조(宋朝)의 건봉(虔奉)하는 제도를 따라야 하겠으나 열조(列祖)의 어제·어필에서 미쳐 존각에 받들지 못한 것을 송조에서 각 왕조마다 전각을 달리하는 것과 같게 할 필요가 없으니 한 전각에 함께 봉안(奉安)하게 되면 실로 경비를 덜고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도가 될 것이다. 아! 너 유사(有司)는 그 창덕궁의 북원(北苑)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라.' 하고, 인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나 단청을 하는 것을 힘써 검약(儉約)함을 따르라고 명하였는데 3월에 시작한 것이 이 때에 와서 준공되었다." 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교외(郊外)에 동가(動駕)할 때에 승지에게 말을 주는 것이 이미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규례에 별군직(別軍職)에도 또한 동가 때에 내구(內廐)에서 말을 주었는데 더구나 예로 높여야 할 곳이겠는가? 이 뒤로는 성(城) 안이나 성 밖으로 동가할 때에 규장각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 관원은 비록 본직(本職)의 반열에 있더라도 내구마(內廐馬)를 타도록 허락한다." 하다.

정조 5년

○ 2월 13일 임금이 내각에 저장한 서적의 도서(圖書) 표지(標識)를 세조 때 양성지의 건의를 유념하도록 하다.

하교하기를,"광묘조(光廟朝) 때 유신(儒臣) **양성지(梁誠之)**가 건의하여 지금껏 내각에 저장한 서적(書籍) 가운데 뒷면에 있는 도서(圖書)에는 '조선국 모세 어장(朝鮮國某歲御藏)'이라고 일컫고, 명나라 연호를 쓰되 해자(垓字)로 쓰며, 앞면에 있는 도서에는 '조선국 어장서(朝鮮國御藏書)'라고 일컫고 전자(篆子)로 써서 책에다 찍어서 만세(萬世)토록 환히 전해 보이게 했다. 이 또한 추술(追述)하는 일단(一端)이 되는 것이니, 내각에서는 잘 알고 있으라."하다.

○ 8월 18 규장각의 각신(閣臣)을 소견하며 규장각(奎章閣)의 직제가 세조 때 양성지의 건청(建請)과 동일함에 신기해하다.

직제학 심염조(沈念祖)가 아뢰기를, "신 등이 예문관에 있으면서 《실록(實錄)》을 고출할 적에 삼가 살펴보건대, 광묘(光廟) 계미년에 규장각을 설치하는 일 때문에 정신(廷臣) **양성지(梁誠之)**가 상소를 올려 건청(建請)하였는데, 윤허의 명이 있어서 처음으로 내각(內閣)을 설치하고 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태학사(太學士)· 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응교(應敎) 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응교는 곧 지금의 대교(待敎)입니다. 각호(閣號)와 관제(官制)가 오늘날의 제도와 꼭 들어맞아서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의 규모가 서로 부합되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다. 그때의 규모가 오늘날의 것과 모의(謀議)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으니,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각호와 관제를 이미 강정(講定)했다면, 과연 각(閣)을 건립하고 관(官)을 설치했었는가?" 하자, 원임(原任) 직제학 정민시(鄭民始)가 대답하기를, "이미 인지당(麟趾堂) 동쪽에 각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각은 건립한 것 같습니다만, 관직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다.

정조 15년

○ 5월 3일 임금이 양성지에 대하여 크게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 하며 고(故) 대제학 양성지의 문집을 간행케 하고 친히 서문을 짓겠다고 하다.

상이 이르기를, "고 대제학 **양성지(梁誠之)**가 규장각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각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글들을 모으게 했는데 듣건대 그 책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니 장차 간행을 해야겠다." 하니, 영보가 아뢰기를, "그가 직접 쓴 서찰 몇 폭을 그 후손에게서 얻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문집을 간행할 때 그것을 책 뒤에 함께 새겨서 넣도록 하라. 서문은 내가 지금 구상하는 중이다." 하였다. 또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에게 발문을 지어 올릴 것을 명했는데 그가 규장각을 세운 초기에 제학을 지냈기 때문이다.

정조 16년

○ 3월 24일 인재 등용의 규정을 바로 세우라 전교하면서 양성지가 규장각에 대제학을 두도록 청한 것을 유념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고 대제학 **양성지(梁誠之)**가 건의하여 본각(本閣)에 대제학을 두도록 청하자 세조께서 옳게 여겼는데, 규장각을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사체가 매우 구차하다. 내

각의 대제학 한 자리도 또한 고사(故事)를 따라 설치하고 만약 차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일찍이 대제학을 지냈거나 권점을 받은 사람으로 의망하여 임명하고, 만약 규장각의 제학으로 정승에 임명되면 저절로 대제학으로 승급하도록 해야 한다. 송나라 때 자정전(資政殿)에는 다만 학사(學士)만 있었으나 갑자기 학사가 정승 버슬로 승진되는 것으로 인하여 별도로 태학사의 자리를 설치하였으니, 이 또한 옛 법도로서 본받을 만한 점이다. 규장각으로 하여금 알고 있게 하라." 하다.

정조 20년

○ 3월 12일 임금이 우의정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무학(武學)이 있었다는 양성지의 상소를 참고로 하다.

우의정 윤시동에게 "옛날에 무학(武學)이 있었기 때문에 주자(朱子)가 일찍이 무학 교수(武學敎授)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 나라 **양성지(梁誠之)**의 상소에서 상고할 수가 있다. 무학을 폐지하면서 훈련원으로 고쳤는데, 만약 무성묘(武成廟)를 세운다면 무학이 크게 갖추어질 것이다. 주자가 일찍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일러 예악(禮樂)을 거의 통했다고 하였으니, 공명은 실로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기에 합당하다." 하다.

정조 21년

○ 12월 13일 훈련원에서 본원(本院)의 절목을 올리다. 그 절목에
양성지의 비변십책(備邊十策) 가운데서 채택할 것을 아뢰다.

훈련원에서 올리기를,"삼가 문양공(文襄公) **양성지(梁誠之)**의 비변(備邊) 10책(策)을 살펴 보건대 '나이 40 이하의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의 갑사(甲士) 중에 기식(器識)이 있고 문자를 아는 자를 자원에 의해 취하여 훈련관에 입학시키고 입번(入番)하거나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무경(武經)》을 습독(習讀)케 하되 그 격식은 성균관의 예를 본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훈련관은 곧 송조(宋朝)의 무학(武學)과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훈련관에 독소(廚所)와 함께 태공망(太公望)의 사당인 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세우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60일 동안 훈련관에 나아가 장(杖)을 연습하고, 방패(防牌) 쓰는 법도 훈련관에서 연습하게 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훈련관 습독관(習讀官)은 《통감(通鑑)》·《무경(武經)》·《장감(將鑑)》·《병요(兵要)》·《진법(陣法)》·《병장설(兵將說)》을 읽히고 있는데 《통감》을 제외하고 혹 《병정(兵政)》을 추가하소서.' 하였습니다." 고 하다.

조선왕조실록 눌재 양성지편

2006. 9. 15 인쇄

2006. 9. 25 발행

발행처 : 김포문화원 (031)982-1110

발행인 : 김포문화원 원장 조한승

조선왕조실록(눌재양성지편) 사료정리 : 김기열 문학 박사

편집위원회 간사 :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신송철

제자 : 유강 김병훈(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인쇄제작 : 씨티21

김포시 사우동 249-8 눌재회관 202호

TEL. (031)998-6161

(비매품)